

통독정책에 관한 시정보고

(1971년 서독연방정부)

내독관계성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1**

1972. 2

국 토 통 일 원



발 간 사

1. 이 자료집은 서독 연방공화국정부가 1971년도에 서독연방의회에 제출한 독일통일을 위한 국정보고의 완역이다.
2. 특히 이 보고자료에는 양독간의 분야별 비교 자료를 수록하여 동·서독에 개재된 공통점 또는 대립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이 자료집은 비단 동·서독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문제 연구에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믿어 이문헌을 발간하는 바이다.

국 토 통 일 원 조 사 실

목 차

서 언	9
서 문	17
약자, 기호 설명	725
제 1 장	
양독일국과 상호관계 - 그 전망과 추세	35
1. 양독일의 동·서동맹체와의 결합	35
a) 정치적 결합	35
b) 안전보장정치적 결합	47
c) 경제적 결합	53
국제경제적 제약체제의 기본구조	53
공동작업의 제형태	55
경제적 공동작업체제의 발전	62
세계무역에 있어서의 서독과 동독의 위치	67
2. 제 3국에 있어서 양독일의 활동상황	73
a) 제 2국에 있어서의 대표권	73
b) 후진국원조기구	75
c) 후진국원조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관련	81
d) 서독과 동독의 후진국원조정치활동	82
3. 동·서독일간의 교역증진	95
4. 기타의 접촉	101
5. 부 록	108
제 1 장 주 석	108

제 2 장

인구구조와 생업구조	117
1. 인구와 거주면적	121
a) 주택인구와 연령구조	121
인구실태	121
인구증가	123
연령별구성	124
b) 자연적 인구증가와 그 요인	127
산아제한	127
결혼, 이혼, 가족구조상태	131
사망율	134
c) 이 민	136
외국이민	136
독일내 이민	139
d) 인구밀도와 분포	141
2. 생 업	148
a) 생업과 생업가능성	148
취업인구	148
취업과 생업가능성	150
생업가능성의 상실	156
b) 경영분야 종사	158
c) 직업과 직업교육	162
직업구조	162
자격부여구조	167
d)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부녀자 편입	177

3. 부 록	182
방법에 관한 참조	182
제 2 장에 관한 주석	187

제 3 장

생산과 생산력	199
1. 전 체 산 업	205
2. 공 업	211
a) 총생산고	211
b) 제생산요소	215
생산요소 노동	215
생산요소 투자력	217
c) 생산요소들의 배합	221
d) 제생산요소의 생산력	225
e) 1968년도 동등 생산포텐셜 평가	230
3. 농 업	237
a) 경영구조	237
b)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요소배치	242
c) 농업생산	246
생산실적	246
생산구조	250
d) 농업생산력	255
e) 농업에 있어서의 구조적변화	259
4. 부 록	262
방법에 관한 참조	262

제 3 장에 관한 -주석	279
제 4 장	
지상구조의 주요소	287
1. 교 통	291
a) 교통의 공급구조	292
b) 생산요소의 배합	295
c) 교통생산 요소	298
d) 지상구조 증축에 있어서의 계획목적과 우선권	304
2. 에너지산업	307
a) 동력원공급	307
b) 동력소비량성장	314
c) 에너지산업의 성장경향	319
3. 주택건축	320
a) 주택건축	320
b) 주택공급	323
4. 부 록	329
방법에 관한 참조	329
제 4 장에 관한 주석	336
제 5 장	
수입, 소비, 생활비	341
1. 사회생산품사용	346
2. 수 입	351

a) 노임정책, 임금계약제도	351
b) 개인소득	357
c) 수입금에 대한 법적공과금 부담	372
d) 세대별 수입	377
3. 가격과 구매력	390
a) 가 격	390
b) 소 비	397
c) 생계비 - 구매력과 비교하여	402
4. 생활기준지수	412
a) 특정상품의 1인당소비량	415
b) 장기사용 가재도구소유량	417
c) 여 행	419
d) 저축과 축재	424
5. 부 록	430
방법에 관한 참조	430
제5장에 관한 주석	444
계 6 장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전망	453
1. 사회보장제도기구	462
a) 보장제도의 기능적구성	462
b) 보장제도의 회원조직과 보험의무	467
c) 사회보장담당기구	471
2. 사회보장의 재정	473
a) 재정시스템	473

b) 재정처리방법	476
c) 사회보장과 그 재정을 위한 지출	482
d) 사회보장 소득	490
3. 사회보장제도의 업적	493
a) 질병, 해산, 사고	493
b) 양로	516
c) 상해	529
d) 가족	536
e) 생계위험	543
f) 취조사회사업 - 구제사회사업	555
E) 기타 업적	558
4. 부 록	560
방법에 관한 참조	560
문 헌	560
제 6 장에 관한 주석	584

제 7 장

교육과 직업교육	589
1. 학교경영체에서의 직업교육	595
a) 직업교육정책의 출발점	595
b) 직업교육제도의 발달	599
c) 이 이론적 제도의 발달	608
d) 경영체의 직업교육과 직업교육규칙	613
e) 개혁시발 : 단계적 직업교육과 기초직업	618
단계적 직업교육 계획	618

2. 실업전문학교 및 대학의 직업교육	631
a) 전문학교 직업교육	631
b) 대학 직업교육	642
c) 통신교육과 통신수강	651
3. 부 록	654
방법에 관한 참조	656
제 7 장에 관한 주석	658

제 8 장

청소년 실태에 관하여	665
1. 청소년과 사회	670
a) 청소년정책,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에 관한 입법	670
b) 청소년통합과 현실참여	680
청소년기구	680
노동, 직업, 청소년	686
정치교육	696
2. 청소년동태와 입장	704
a) 정치적 분야	704
b) 자유시간 분야	707
3. 부 록	711
방법에관한 참조	711
제 8 장에 관한 주석	715

Faint, illegible text scattered across the page, possib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서 언

서독연방정부는 작년초에 처음으로 내각수상의 국정보고용으로 독일문제 발전과 동·서독 상호관계 실정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그간 우리 독일인은 국토 양단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평화에 기여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국토의 어느 한 부분도 영구히 이 과업에 여행할 수는 없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독일인에게서 민족자결권(das Recht auf Selbstbestimmung)을 박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므로써 국제연합 헌장과 우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동·서간에 정치적 대립을 각변한 침체화를 겪고 있으며, 이 대립을 한 민족 즉 우리민족 내부에서 참고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구라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구라파에 있어서 평화의 보장될려면 서독과 동독이 상호 관계를 평화적으로 조약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독정부는 이에 관한 견해를 명시하였다. 서독내각수상은 서독정부의 견해를 동독 각의(Minister-rat)의장 Willi Stoph에게 Kassel에서 20개 조목으로 그 윤곽을 표시함바 있다.

서독 내각수상은 동·서 양독일이 다 같이 출발점으로 삼어야 할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 독일 내에 두개의 국가를 성립시키고, 각기 국내 주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자주적이며, 어느한편도 상대편을 대신하여 행위하거나 대표하지 못할 것

☒ 백림과 전독일 및 양 독일의 4대강국에 대한 응분의 의무 등에 관한 4대강국의 회의사항과 특별 권한의 지속

☒ 백림과 서독간의 결합증강

서독내각수상은 양 서독간의 관계개선과 조정을 위하여 동독과 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 조약은 여타의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효력을 갖어야 하며 양국의 입법기관에 이관되어 찬성을 얻을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야 하며 - 그때까지는 각료급 전권위임자 임명과 그 상임 대리인의 교차 - 양국간의 교류에 필요할 수 속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법(das Zwischenstaatliche Recht)에 의거하는 경우와 같이 독일내 양국간에 조성하여야 할 관계는 인권과 동등권 평화적 공존의 원칙과 상호간에 배척행위를 포기한다는 원칙에 기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약을 원칙으로 하고 서독은 동독과 공동으로 국제기구에 있어서 양측의 회원 자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준비할 용의가 있다.

서독정부는 물론 그러한 협정을 특히 국제기구에 있어서의 회원 자격에 관한 협정같은 것을 총중합 조정의 실현과 결부시키고 있다.

중합 조정은 특히 독일내에 인간들에게 결정적인 조약의 각 분야를 실현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원칙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폭력에 의한 위협과 폭력행사의 포기

☒ 양국민의 평화적 공존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모든 행위의 중단

☒ 구라파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 군비 축소, 군비통제를 위한 모든 노력의 지지

이러한 문제는 독일이 처해 있는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조정되어야 할 문제들이기도 하다.

☒ 임의이주 (Freizügigkeit) 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 여행왕래의 확대

☒ 분산 가족들의 수습

☒ 경계선 부근에 군·면의 문제를 친밀한 입장에서 해결할 것

☒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학술, 운동의 교류에서 부터 통산관계 확대에 이르기까지의 공동작업 강화

☒ 양국 국민에 불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국 법률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모순점 제거

동독은 양단 독일간에 개재하고 있는 조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들을 제시한데 대하여 그것은 다만 서독에 의해서 동독에 대한 후견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동독은 공동사회적인 질서 (Gemeinschaftliche Ordnung) 와 이데오로기의 대립에서 버서닌 자주적인 민족의 통일 (die Einheit der Nation) 을 거부하였다. 또한 동독에 있어서만 독일민족과 그 진보적 후손들이 존속한다는 부당한 주장을 제기하기 까지 이하였다.

그러나 독일민족이 두개의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존속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년간 중요시하여왔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문제를 동독식으로 새로운 해결을 가함으로써 해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독일내에 사람들의 한 민족의 일원으로써 생존하는 것에 찬성하느냐의 여부와 그들이 민족의 단일성을 고집할 의향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뿐만아니라 독일 입점국들이 여전히 두개의 국가에 생존하는 모든 독일인이 한 민족의 일원이며 독일 역사에 공동적으로 결부된 후손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을것인지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다.

본인은 이 문제가 시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서독과 동독은 입점국들이 쓰라린 경험을 한 후에 끝내는 우리 양 독일과 국교를 맺기에 이른것을 본보기로 삼아 상호간에 교류할 것을 배워야 한다.

양단 독일은 상호관계를 다음과 같이 형성해야 한다. 즉 긴장을 실제로 제거할 것과 지속적인 조정에 의해서 입점국들로 하여금 독일내의 긴장이 또다시 분규를 이르킬지 모른다는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 독일이 기점으로 삼어야 할 원칙을 <평화적 공존의>원칙 또는 규칙이 일정한 병존(Nebeneinander)의 원칙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칭호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 폭력포기를 의무화시킬 것 모든 양 독일국가 간에 분규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
- 영토의 불가침(die territoriale Integrität)과 경계선을 존중할 것. 이것은 민족적 숙원을 협상 방식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상이한 사회제도하에 있는 국가들이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

력할 용의. 단일 민족에 소속하는 두개의 국가를 위해서는 이점이 바로 핵심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지성적으로 정치적 논의를 할 용기가 필요하다. 국내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자주권을 제각기 존중한다 함은 이데오로기 분야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포기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Kassel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조정을 위하여 이 원칙들에 부합될만한 신임을 제시하였다. 서독 정부는 이것으로써 독일내에서의 대화를 위한 서독정부측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토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독이 우리와 함께 이 문제들에 관해서 논의한다면 이러한 제안 속에서 서독이 동독을 배척한다든가 또는 후견역을 할려고 한다든가 하는 아무런 요소도 발견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쌍방은 모두가 만약에 공동작업을 시도할 경우 그것이 다난한 작업이리라는 점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여기에 제시한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완수한 양 독일간의 비교는 몇몇 중요한 생활분야도 포함하고 있어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교는 이것이 출현하기 이전에 1969년 9월과 12월에 그 전역을 갖고 있다. 1970년 서독 수상이 국정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양 독일의 생활상태 또는 양 독일에 공통되거나 대립적인 문제들을 묘사하여 수상의 보고를 보완해보자는 계획은 이미 전년에 세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그 당시 이렇게 까다로운 파업에는 좀더 장시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수상이 구두로

보고한 것에 대하여—토론할 수 있도록 독일정치의 진전에 관한 또는 독일국내 관계의 현황에 관한 몇몇 자료를 국회에 수교하는 정도로 멈추었다.

오늘 여기에 제시한 비교는 각학계의 대표들에 의해서 계속하게 할 것이며 또한 계속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양단된 독일에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하에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자중하기에 필요한 포괄적인 형상이 점차로 성립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동생활(Zusammenleben)을 조정하는데 요망되는 과정을 위해서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좀더 강화된 정신적 화해를 위해서는 계속 과학의 기여가 있을 것이다.

과학은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양단 독일에 있어서의 정치적제도의 공통성, 차이점, 대립점과 근본적으로 판이한 정치적 의지형성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기술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성립과정도 서술하여야만 할 것이다. 즉 결국에는 쌍방의 정치적 영도력의 역사의식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테마로 하는 작업이 부분적으로는 이미 착수되었고, 또는 명년분으로 계획된 것도 있다.

본인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즉 마치 과거에 기술되었던 사실들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 계도를 현재 서술하는 것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런것은 과학자의 의도가 아니며, 작업을 위촉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서독정부의 의향도 아니다

이러한 점은 제 2참에서 제 8장까지의 서술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거기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별 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제 1 장에서도 해당된다고 본다. 그것은 비교 대조에 불과하다. 즉 EWG와 상호경제원조협의회, NATO와 Warschauer 협정, 동독과 서독의 개발원조 등등이다. 이러한 대조를 하였다 해서 그것이 곧 질적 대등시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실사 국제법학자나 국민경제학자의 냉정한 언어를 정치적 대립이나 피상적 일치를 좀더 강조할 목적으로 추후에 수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동독의 통계문헌이라든가 동독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도.

서독정부는 학술적 위원회가 하는 작업을 동의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Peter C. Ludz 교수지도 하에 있는 학술적 위원회가 활약하여 여기 제시한 자료를 얻은 것이다.

본인은 일찌기 본인에 의해서 부여한 작업위임과 Ludz 교수가 제안한 계획에 관하여 서독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서독정부는 초안전체를 인가하고, 위원회 작업을 지원하며 그 성과를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회에 소개하라는 본인의 제의에 순응하였다.

이러한 자료가 연방내각에 제시되었고 연방 정부의 전문적 대표들이 충분히 토의하였다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 자료에 대한 책임은 학술적으로는 Ludz 교수가 주관하는 위원회에 있는 것이다.

위원회와 정부가 각별히 긴밀한 협동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제 1 장에서 문제제기에 따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본인은 이러한 자료를 단시일내에 작성하였고 그것도 단지 수중에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학술적으로 새로

운 것을 제시하여 준 분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인은 Ludz 교수와 그가 지도하는 학술위원회 회원 그리고 협
조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Egon Franke

독 일 내 독 관 계 상

서 문

1970년 1월 14일 연방수상 Willy Brandt가 행한 보고에 첨부하였던 <국정보고용 정부측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었다. 즉 양 독일국사이에 확실한 비교는 지금까지 아직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료>에서도 강조되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협의에서나마 양 독일국에 있어서의 교육, 과학 연구의 발전에 관한 비교를 위하여 이미 1969년 8월 4일과 1969년 9월 8일자 전정부 보고에서도 상당한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1970년도 <자료>에서는 진일보하여 양단독일을 상호 분리시키는 요인이 되는 대립은 가까운 장래에 극복될 수 있으며 원칙적인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전년도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테마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다.

- I. 독일문제 발전과 동·서 양독일간의 유대
- II. 양단 독일내에 있어서의 경제와 교역
- III. 독일국내 관계
- IV. 서부백림과 동독변경

성립사에 관하여

연방수상 Brandt는 1970년 1월 14일 그의 국정보고에서 양독일에 있어서의 판이한 생활영역을 차기 국정보고에서 비교해보겠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그후 독일국내문제장관 Egon Franke는 1970년초에 Peter C. Ludz 교수에게 양독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적영역에 관한 비교를

위한 초안을 완성할 것과 동시에 1971년도 <자료>작성을 위하여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중견층과학자단을 확보할 것을 위임하였던 것이다. 과학자단은 Ludz 교수 지도하에 기한부로 연구를 담당하였으며 1970년 11월 말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적 연구단의 불편부당성은 당초부터 명명백백한 사실이었다. 1970년 여름 추가로 구성된 정치적 대화씨클은 다만 조언적인 기능을 갖었을 뿐이었다.

시초부터 위임자와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간에 합의사항은 Ludz 교수와 더불어 과학적 연구단이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각장은 인쇄되기 전에 판여 각부처에 이첩되어 그 대표자들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다. 제1장은 특별한 의의가 있는 까닭에 이 부분에서는 과학자들과 판여 각부처와의 협동은 강화되었다.

과학자단에 위임된 최초의 과제중의 하나는 <생활영역 (Lebensbereiche)> 개념을 적당하게 해설하는 것이었다. <Lebensbereiche>는 정치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die sozio-ökonomische Grundlage der Politik) 이다 - 즉, 이러한 기반이 없이는 양독일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나 정치적구조가 그 차이점에서 분명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기반이 바로 생활영역인 것이다.

제2장에서 제8장까지 사이에 제시된 <자료>안에 논술한 양독일 내의 경제적, 사회적영역은 이러한 의미에서 <Lebensbereiche>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근본원리와 과학적이해 (Grundaxiome und Wissenschafts-
Verständnis)

이번 <자료>에서 파악한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생활영역
(Lebensbereiche)>은 비단 병렬이 아니라 세가지 근본원리에
입각해서 선택하여 비교한 것이다. 즉,

- ☐ 양 독일의 경제급 사회제도는 능률적으로 교도되어 있다.
- ☐ 양측의 경제급 사회제도는 성장과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 ☐ 양측의 경제급 사회제도는 과학, 연구, 교육, 직업교육면에서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동서독일의 경제 사회제도에 있어서 일정한 유사성을 원칙적으
로 가정한다하여도 아직은 서독과 동독간에 개제하고 있는 근본
적인 정치적 차이마저 초월했다고 착각할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해서 과학적 연
구단이 착수한 작업은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부분분야를 비교하
기 위하여 본질적인 자료를 정사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근본원리의 선정은 곧 과학적연구단이 어떻게 공동한 과학적이
해에 도달할것인가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즉 그것은 비판적 합
리주의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비판적 실증주의 (Pos-
itivismus) 이다. 이것은 경험적 서술과 분석 (empirische
Deskription und Analyse) 에서 그 정당성을 찾는것이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가치판단을 사실진술 (Tatsachenaussagen) 과
분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합리주의가 약속하는
것은 인식이나 개혁을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와 1969년 10월 28일자 정부성명서에 명확하게 표

현된 독일국내 관계들(die innerdeutschen Beziehungen)을 위한 계획 즉 <대결에서 협동으로(von Konfrontation zu Kooperation)>이라는 프로그램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단의 모든 단원들은 그들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 서있던 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서독정부의 개혁의지의 표현이라고 수락하였다. 그들은 그뿐만아니라 서독정부가 그들에게 부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모든 이데오로기에 대하여 비판적인 합리주의의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태도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데오로기는 사회적 현실의 요소(Element)이며, 사실(Faktum)이라고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데오로기는 그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적합한 방법론적기구(Instrumentarium)로써 연구하여야 한다.

양독일의 사회제도 비교를 함에 있어서 설정할 수 있는 (Instrumentarium)은 아직 만족할만한 형식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기에 제시한 조사연구가 진행중에는 전혀 정치적 사회적 규범(Norm)의 분석은 기도하지 않았다.

1971년의 <자료>는 구체적인 사회적구조와 과정(Strukturen und prozesse)들을 명백히 하는데 한정하였다.

방법적 공정성과 여러가지 처리방법을 포괄함으로써 비판적 합리주의, 양독일 사회제도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점, 또는 그 유사성, 병행적 발전 등을 연구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능력으로 인해서 합리주의는 무비판적 가치판단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뜻하는 바는 곧 과학이론적 자세가 자연

다음과 같은 것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즉,

- ☒ 양독일의 근본적인 정치적 차이점이나 융합불가능성을 말소하는것.
- ☒ 상대방국에게 없는 사회규칙의 동종성 또는 동등가치를 주장하는것.
- ☒ 각기 상대방국에게 자기편의 사회정치적 규칙이 역사적으로 더 고차적인 발전울한 형태라고 추천하는것.

그러한 추천에서 표현하게되는 역사적, 정치적 결정론(Determinism)은 필연적으로 이데오로기의 독단론(Dogmatism)에 빠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독단론은 비판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동등하게 가르치는 사회과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을지고 연구하는 과학자단은 그러한 독단론을 이구동성으로 거부하였다.

연구단의 공통적인 과학적이해는 -독일의 전후사에 처음있는일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하였다. 즉, 이번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단 각부문의 학자(경제학자, 법률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교육학자, 청소년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집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적 사회제도의 각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를 위한 전문가들이 또한 동구부력(Ost-block)의 사회주의제도의 연구조사를 위한 전문가들과 합동연구할 것을 쾌히 승락하였다는 사실이다.

공동연구에 있어서 수많은 질문, 특히 서방측 경제, 사회제도 연구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험이 끝난 방법론적인, 일정한 방법에 따른 관점이 비교분석을 위하여 결실을 보게되었다.

이번 합동연구에 의해서 공동적인 과학적 이해가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 부단히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다른 통로에 관하여 토의함으로써 정선한 논제와 연구발단의 공정성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러한 발단이 독단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토론하는 중에 과학자들 내에서 재삼 증명되었다.

<본 보고자료>의 성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과학적 이해는 구체적인 자료를 얻음으로써 그것이 진실임이 증명되었다.

여기에 약술한 학이론적 자세는 추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요구완수를 촉진하며, 경험적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이러한 과학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양 독일의 정치적 제도의 본질적인 경제, 사회적 원칙을 비교하며 서술하고 부분적으로는 분석할 수도 있게 되었다.

조사 목적

양 독일의 각기 상이한 <생활영역>을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우선 동독과 서독에 관하여 신빙할만하며 실제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될 경우에 비로서 의의있게 연구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한 조사의 목적은 우선 동·서독일에서 선택한 분야에 대한 실제비교(Ist-Vergleich)를 한번 작성해보자는데 있다.

자료의 횡적비교, 종적비교 및 유형론은 차후의 연구활동에 미루고 여기서는 보류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

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료의 도움을 받아 유사하거나 동질의 문제를 분석하는 일은 아직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구체적인 구조 해명을 목적으로 구상한 실제비교는 역사적 분석같은 것은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계속 제외하며 예보(die prognose)나 미래학적인 설계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제외한다.

그런까닭에 연구단은 양독일 사회제도에 대한 견해의 일치 또는 견해의 배치에 관하여 언명하는것을 조심스럽게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언명은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과학적 연구단은 그들의 과제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즉,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분야에 대한 동독과 서독간의 차이점과 병행점, 유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맡은 바 과업에 상응하는 것이다.

계통적 분류

여기에서 취급된 것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한정되고 있다.

제 1 장 양단 독일국가와 상호관계

- 전망과 추세 -

제 2 장 인구와 생업구조

제 3 장 생산물과 생산력

제 4 장 지상구조의 주요소

제 5 장 수입, 소비, 생활기준

제 6 장 사회보장의 주요전망

제 7 장 교육과 직업교육

제 8 장 청소년실태

제 1 장은 총괄적기능 (Klammerfunktion) 을 차지하고 있다. 제 1 장에서는 비록 최초의 시도이지만 서로 판이한 정치적제도를 각기 비교하는 경제적, 사회적 분석은 국제정치와의 대극적인 연관속에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사회의 구조도 항상 국제정치 속에 그것이 표출되어 있음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하고 있다.

<보고자료> 전반에 걸쳐서 제 1 장이 제 1 장으로서의 가치를 내포하고있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로서 실증되는 것이다. 즉, 정치, 군사, 경제 조약들이 제 2 장에서 제 7 장사이에서 작성된것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사실을 배경으로해서 고찰될 경우이다.

방법론에 관하여

개별적인 비교에 있어서 동독은 서독을 기준으로하여 측정되었다. 그 이유는 이 비교는 서독에서 작성되었으며 서독정부를 위하여 연구작성한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할 점은 동독은 서독에 비하여 소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협소한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양독일국간에 상관관계가 조사되는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자료 (예컨대, 인구, 취업인구, 공업생산) 를 상대적인 자료 (예컨대, 매평방 km 당 인구, 종업원 1인당 공업생산) 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람표부록에 앞서 개요를 첨부하였고, 이러한 개요는 특히 중요한 대수지표를 포괄하고있다)

근본적으로는 조사의 기초를 이루고있는 것은 통계적인 근본자료이다.

서술방법으로서는 비교가능한 자료의 경험적, 통계학적 기재방법을 채택하였다. (비교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도 대체로 언급하였다)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호관계를 위해서 등한히할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과학적방법에 따라 자료변형(개조)을 하였다.

경험적 통계학적 기재방법과 병행하여 주석을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사실이해에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만.

모든 주석에 있어서는 특히 제 7장, 제 8장에서 내재성원칙(das Prinzip der Immanenz)을 고려하였다. 즉 사회적 연관성은 동.서독에서 그때그때 당연지사로 보이는 그대로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경험적 통계학적 기재방법과 주석을 결부시킴으로써 <자료>작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방법의일원론(Methodenmonismus)은) 대두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료를 얻는 방도가 다양하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서술이 순전히 단일적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다.

모든 과학적 분석은 객관성을 고수하려는 노력과 일치한다. 여기에 제시한 조사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또한 이에 따른 개별적인 진술의 확률도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침해되었다.

이점에 관해서 지적할 수 있는것은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각기 상이한 선우구조(Präferenzstruktur)이며 또한 상이한 통계학적 자료제공 등이다. 대체로 서독에 대해서는 동독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신빙할만한 자료가 소용된다. 질적문제도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서 양독일에 있어서의 대학생교육수준같은 것을 들수있다) 오히려 양적문제 (-에로 대학수료자수)가 결정적이고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 진술을 불허하는 수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진술을 포기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자의라고 설명해서는 안된다.

통계 지리학적 기본단위는 서백림을 합친 독일연방공화국과 동백림을 합친 동독이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1964년에서 1969년 사이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종종 1960년으로 소급하기도 하고 1970년까지 역장되기도 하였다.

실재비교가 중요한 까닭에 회고적인 것은 예보나 마찬가지로 삭제되었다. 발전경향은 다만 그것이 현실재를 이해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고 간주되었을 때만 약술하였다.

기술적 보조

1971년도 <보고자료>는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8장(P.1 ~ P.186)과 일람표부록(P.187 ~ P.374)로 구성되어 있다. 각개별장의 성과에 관한 요약은 각장의 서두에 수록하였다. (제1장은 예외) (P.25, P.49, P.71, P.85, P.115, P.147, P.167)

일람표부록에는 각장에 중요한 비교가 일련번호로 수록되어 있다. 그뿐만아니라 특별한 일람표(Ubersicht로 표시된 개요)와 도표를 본문에 첨부하였다.

일람편의를 위하여 부록에 일람표나 본문중에 일람표, 도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전문용어사전과 약자풀이표 대수지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다. 기타 인쇄양식에 따른 개별적인 조항에 관하여는 <주석>에서 설명해놓았다.

구 분

여기에 연구작성한 <보고자료>는 정선한것을 서술하였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본다. 이미 상술한바와 같이 본<보고용 자료>는 양독일국에 있어서의 생활영역의 전망에 한하여 작성된것이다. 그 뿐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이 참여하여 <자료>를 결정하기에 이른것이다.

허용된 시간내에서는 불철주야로 작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시한 경험적비교에 의한 최초의 시도를 달성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할때에 개별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연구작성한 자료에 있어서는 이미 연구작성한 자료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다.

경제문제에 관한 장절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이미 다년간에 걸쳐 작성해놓은 연구의 도움으로 용이하게 과거의 자료를 얻을수가 있었다. 새로운 연구조사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제고무되고, 다만 몇몇 경우에만 완수되었을 뿐이다.

결국 자료형편이나 자료선경이 비교적 전망을 한다는 조건하에서는 많은 분야에 걸쳐 별로 유리한것은 못되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8장은 그러한 <생활영역>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양독일의 사회제도 이해를 위해서, 또는 양독일 국가들의 상호경쟁을위해서나 결국에가서는 동독과 서독이 장차 예상되는 협동을 위해서 모두 마찬가지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작성한 <생활영역>내부에도 아직 현시점에서 파악할수 없거나 미급한 일련의 개별적인 문제들과 부분적부합체가

남아있다.

허용된 시간이나 곤란한 자료형편(특히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각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취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즉,

제 1 장에서 정치(국가, 민주주의)에 관한 핵심적 개념의 분석.

제 2 장에서 취업노동자(기술공과 숙련공, 미수공 등)의 작업반 조직(die Leistungsgruppeneinstruktur), 직업구조의 발전, 작업장에 새로운직업의 종류, 기계화, 자동화의 빈도.

제 3 장에서 상위한 경제체제(특히 계획방법과 지도방법 및 경제기구), 투자활동의 비교파악.(투자능력도 포함해서 고려한)

제 4 장에서 각개 에너지소유자(1차에너지, 2차에너지 primär-Sekundärenergie)들의 경쟁상황, 각 교통분야에 대한 상세한 분석, 지역적 주택공급과 그 질적문제,

제 5 장에서 개인경영주와 조합원의 수입실태파악.

제 6 장에서 자발적 사회복지사업 실적파악, 경영과 기업에 관한 규약(종업원의 여러가지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형식도 포함) 사회보장을 형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

제 7 장에서 교과내용과 성적평가.

제 8 장에서 일정한 정지범위(직업정지, 스트라이크, 종교및 성생활의 정지), 청소년범죄문제와 반사회화 등.

전 망

양독일에 있어서 총체적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필요한 몇몇 분야는 방법론적 혹은 방법적고려로 인해서 또는 시간적이유로 인해서 본<자료>에서는 전혀 취급되지 않았다.

여기에 누락된 문제분야를 논함에 있어서는 통치체제, 경제조직에 관한 경험적 서술적비교가 중요하다. 또한 법률제도, 특히 헌법과 행정법, 민법, 가정법, 형법, 노동법, 상법, 사법제도에 관한 비교가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연관속에서 법률학, 법률실무에 관한 몇몇 부분적분야도 형식논리적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독일국내에 문화, 학문 체제에 관한 경험적 체계적 비교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년내에 정치적 통치조직과 법률제도에 관한 경험적, 서술적비교를 시작할 것을 미리 배려하고 있다.

공동연구자 명단

과학적 연구단에 소속인원은 다음과 같다.

Carl Ludwig Furck

Walter Hornstein,

Rolf Krengel,

Heinz Markmann,

Heinz Markmann,

Dieter Mertens,

peter Mitzscherling,

peter Christian Ludz (단장),

Ralf Rytlewski, (조수),

정치문제 토론 참여자:

Leo Bauer (사회자)

Wolfram Dorn,
Reimut Jochimsen,
Carl Heinz Neukirchen,
Waldemar Ritter,
Ulrich Sahn,
Ilse Spittmann,
Ernst Günter Stern,
Jürgen C. Weichert,

기타 협조한 인원명단:

Gerhardt Arneth,
Alex Baumgartner,
Henrik Bischof,
Peter Brokmeier,
Martha Engelbert,
Elke Furck-peters,
Gerhard Göseke,
Jens Hacker,
Armin Hegelheimer,
Barbara Hille,
Manfred Holthus,
Hartmut Jäckel,
Walter Jaide,
Günther John,
Werner Karr,

Dietrich Kobschull,
Giesela Kiesau,
Wolfgang Kirner,
Willi Knecht,
Johannes Kuppe,
Horst Lambrecht,
Manfred Liebrucks,
Ursula Ludz,
Heinrich Machowski,
Dieter Mahncke,
Manfred Melzer,
Konrad Merkel,
Jürgen Micksch,
Wolfgang Mudra,
Jürgen Nötzold,
Charlotte Otto-Arnold,
Otto Peters,
Hans-Dieter Raapke,
Manfred Rexin,
Lutz Reyher,
Peter Rosenberg,
Werner Schefold,
Gottfried Schmeiser,
Theodor Schweisfurth,

Ignaz Seidel-Hohenfeldern,

Hans-Gert Tönjes,

Alexander Uschakow,

Hartmut Vogt,

Gerhard Wettig,

Herbert Wilkens.

제 1 장 양단 독일국가와 상호관계

제 1 장 양단 독일국가와 상호관계

- 전망과 추세 -

[I] 서독의 서방측 연합체와의 결합 급 동독의 동구측 동맹체와의 결합

1. 1971년에 서독-서방측 연합체간에 성립된 국제법상의 결합과 동독-동구측 동맹체간에 성립된 결합은 전 전승국들의 독일에 대한 전후정치의 결과이다. 또한 양단 독일국가들의 독자적인 정치의 성과이며 결과적으로는 독일과 관련된 문제들 밖에서 생긴 세계정치발전의 성과이다.

1945년에 독일이 주권을 상실하였다해도 1949년 독일에 수립된 두개의 정치적 통일은 단계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권을 획득한 것이라 하겠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양단독일은 제각기 서구 또는 동구라파에서 발전해가는 국가군에 즉시 통합되거나 그후 수년간에 통합되었다.

a) 정치적 결합

전쟁결과로 생긴 결합

2. 세계제 2 차대전 전승국가로써 미국, 영국, 불란서와 소련을 들수 있다. 전승국가들은 서독과 동독에게 광범위한 주권 요소를 이양한 후에도 계속 독일전체를 전구라파 평화질서에 편입시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가

타에 그들은 연합국 협정이나 점령군법에 기인하는 권리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유보 사항

3. 1952년 5월 26일자 독일조약 < Deutschlandvertrag (DV) > (주 1)에 의하여 서독과 미, 영, 불 3대국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3대국은 백림과 전독일에 관하여 지금까지 행사하여왔거나 보지하고있는 권리와 책임을 독일재통일과 평화조약원칙도 포함하 | 유보한다. >

1954년 3월 25일 소련이 동독주권 선언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정되었다 (주 2)

<< 소련은 4대강국협정에 의하여 소련에 부여된 책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능을 유보한다 >

1955년 9월 20일 동독 소련간에 체결된 주권조약 (Souveränitätsvertrag) (주 3)은 <독일민주공화국 (동독)과 소련방사 전독일에 관계되는 국제적 협정에 따라 부담하게된 의무를 감안해서 > 이루어진 것이다.

1955년 9월 20일에 소련정부 결의 중에서 고등변무관부 (Hohe Kommission)의 해체에 관하여 소련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하고있다.

<< 4대강국의 합의에 의한 결의에서 생긴 소련의 전독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이것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

1964년 6월 12일자 소련 동독 우호조약은 제 9조에

따라 양당사국가간의 협정 또는 Potsdam 협정도 포함하여 기타 국제적 협정에서 생긴 쌍방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준급하지않고 있다.

평 화 조 약

4. 양 독일에 대하여 전승국은 각기 평화조정을 이룩할 의무가 부가되었으며 양 독일은 그들의 독일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DV 7조에 따라 3대국과 서독은 다음과 같은 점에 합의를 보았다. 즉 그들의 공통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는 독일과 전 적대국들간에 자유로 합의된 전독일을 위한 평화조약적인 규정을 지속성있는 평화의 기초로 삼을 것과 그때까지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공통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협력할 것이다. 즉 재통일된 독일은 현 서독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구라파의 공동사회에 생생할 국가가 될 것이다.

DV 7조에 따라 조약체결국들은 <결정적인 독일국경선 확정은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질때까지 연기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백림에 관해서는 1949년 5월 12일자 기본법(Grundgesetz, 약자 GG) 비준서에 3대강국이 GG 23조에 관한 유보를 언명하였으며 백림은 연방에 의해서 통치될 수 없다는 3대국의 견해를 단언한바 있다.

서독은 독일조약(DV) 6조에서 3대강국에 대하여 백림

에 있어서의 최고통치권 소지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3대강이 백림에 관한 의무를 용이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독이 그들에게 협동해줄 것이 바로 그것이다.

1952년 5월 26일과 1954년 10월 23일자 3대국 고등변무관 (die drei Hohen Kommissare) 서한에 의하여 3대강국은 서독정부에게 <백림 대표권과 백림주민 대표권을 대외적으로 보증할 것> 승인하였다.

1952년 5월 21일자 연합군사령관 성명에 의하여 3대강국은 백림문제도 몇몇 유보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국제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서독에 승인하였다 (주 4)

1955년 9월 20일자 동독-쏘련 주권조약 (Souveränitätsvertrag DDR/UDSSR)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체결되었다. 즉 <조인각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적 국가로써 독일이 통일을 재건하도록 공동노력하는 것과 독일과 평화조약에 의한 조정을 이루하는 것은 독일인민과 쏘련인민 급 기타의 구라파인민들의 이익과 합치된다 > 제 5 조에서 쏘련과 동독은 <협상에 의하여 전독일을 위한 평화적 조정을 이루하는 것>을 그들의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있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양국은 평화조약에 의한 조정과 독일통일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기반위에서 착수할 것이다 > 라고 천명하였다.

1964년 6월 12일자 우호조약에서 쏘련과 동독은 <독일 평화조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 독일 통일 실현을 평화

적이고 민주적인 기반에서 추진시키고자하는 양국의 소망>을 강조하였다.

제 7 조에서 소련 . 동독 양국은 <<두개의 주권 독일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여...하나의 평화를 사랑하며 민주적이고 통일된 독일국가 창건은 양 주권 독일국들 사이에 평등한 협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들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1967년 3월 15일자 동독 화란 우호조약 1967년 3월 17일 동독, 체코 우호조약 1967년 5월 18일 동독 헝가리 우호조약, 1967년 9월 7일 동독 불가리아 우호조약, 1968년 9월 12일 동독 몽고 우호조약(주 5) 통일련의 우호조약에서 동독을 동맹국들과 다음과 같은 점을 선언하고 있다. 즉 독일평화조정은 두개의 주권독일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차 하나의 통일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를 초래한다는 것은 협정 도상에서>>결과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동백림에 관하여는 소련이 최고통치권 소유자로서 동독으로 하여금 동백림을 국제적으로 대표할 것을 승인하였다. (주 6) 동독의 구체조약들은 동백림에도 적용된다.

서백림에 관하여 소련과 동독은 1964년 6월 12일자 조약 6조에서 서백림은 자치적, 정치적 단일체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였다.

5. 양 독일은 자기 동맹국들에 대하여 폭력포기정책의 의무가 있으며 상호 협의할 의무와, 상대방국의 민주주의 이해에 적합한 정치를 할 의무가 부가되어있다. 동시에 각 조약

상대국들은 검열약관과 해약고지약관에 의하여 조약상의 권리현상이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하여 노았다

폭 력 포 기

6. 독일조약(DV) 3 조에서 서독은 UN헌장 원칙과 일치하고 구주이사회(EuroParat)정판의 목적과 일치하는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부가되었다.

NATO 회원국으로서 서독은 NATO조약 1조에 따라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모든 폭력위협이나 폭력사용을 억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서독은 또한 London 9 대강국회의 총장 제 5부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약속하고 있다. 즉 <독일 재통일 또는 현서독 경제선의 변경을 절대로 폭력수단에 의해서 초래하지 않을것과 서독과 기타 여러 국가사이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것>이다.

서독은 평화적 분쟁조정에 대한 여타의 의무사항과는 관계없이 WEU조약 제 10조에 따라 WEU상대국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소송문제에 관해서는 IGH의 재판권에 복종해오고 있다.

소송문제중 다른것은 화해수속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주 7)

동독은 1955년 9월 20일자 조약 2조에서 <<구라파 급 전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연맹규약 원칙과 합치하는> 국제적 정치를 할 용이가 있음을 천명

하였다.

1964년 6월 12일자 조약 제 3조에서 동독은 상술한 바와 동일한 정치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1955년 5월 14일자 Warschauer 조약 회원국으로써 동독은 <국제연맹 규약에 일치하도록 하며... 동독의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폭력에 의한 위협, 폭력의 행사를 억제하고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이행은 사실상 소련에 의하여 요청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로 인해서 다시 지양되고 있다.

동독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와의 우호 조약 또는 몽고와의 조약에서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신봉한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다.

협 의

7. 독일조약 제 7조 4항에 따라 3대강국은 서독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즉 전독일에 관하여 3대강국의 권한행사와 관계가 있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독일조약 제 6조 1항에 따라 3대강국은 서독과 백림에 관한 그들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협의할 것이다.

NATO 조약 제 3조와 WEU 조약 제 8장 3항에 따라 조약서명국들은 영토불가침성이 위기에 처하였거나, 정치적 자주성 또는 어느 한 정당의 안전보장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무, 국방정책 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한 상호 협의의무사

항은 1963년 1월 22일자 독불조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주 8)

1970년 가을에 구라파공동체 6개 회원국 정부는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정치적 협의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동독과 소련은 1955년 9월 20일자 조약 제 2조 2항에 따라 <양국의 이해에 저촉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상호 협의할 의무가> 부가되었다.

Warschauer 조약 제 3조에 따라 동독과 동맹 회원국들은 <<그들의 공동이해에 저촉되는 모든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상호 협의할 의무가 있다. 즉 무장기습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상호 협의할 것이다.

동독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와 우호조약은 각기 쌍방국가에게 양조약국의 이해에 관계되는 중요한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상호 협의할 의무를 부가시키고 있다.

1967년 9월 7일자 동독, 불가리아 우호조약은 쌍방이 당해문제에 있어서 다만 협의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그 문제에 대하여 동조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치적 근본규칙

8. 동맹 체제에 편입함으로써 양독일은 정치적 결합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합은 양 독일자체의 목표설정이나 또는 동맹 상대국들의 근본적 목표설정에 합당한 것들이다.

WEU 회원국으로써 서독은 <민주주의 원칙, 개인적 또는 정치적 자유, 입헌적 전통 법의 존중>을 확고히 하고 보

존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것은 서독과 그 동맹 상대국들에게 <공동적인 유산>인 것이다.

NATO 가맹국으로써 서독은 회원국들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원칙, 개인과 법치의 자유 등에 입각한 국민의 자유, 국민의 공동유산, 국민의 문명을 보증할 것>을 선언하였다.

NATO 조약 제 8 조와 WEU 조약 제 11 장에 따라 서독은 조약조인국 중 어느 한 상대국에게라도 상치되며 본조약들과 부합되지 않는 국제적 의무나 동맹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부가되어 있다.

Warschauer 조약 회원국들은 조약문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제도의 일정한 원칙에 고정되어있지는 않다.

서방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일정한 사회경제 제도에 강력히 결부되어있는 이유는 소련이 주장하는 국가분야의 <사회주의 국제주의> 원칙과 (Moskauer Doktrin 또는 1968년 이래 소위 Breshnew Doktrin) 공산당 분야의 푸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인한다.

<사회주의 국제주의> 원칙은 소련과 동독에 의해서 국제법적 규범이라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규범은 그 법적기반을 쌍방의 우호조약 또는 국제습관법 (Völkergewohnheitsrecht)에 두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형제와 같은 우정과 긴밀한 협동, 상호 원조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그들 각국에 건설함에 있어서 상호간에 베풀어줄 의무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사회주의 국가간에 강력한 결합이 대내

제 1 장

대외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소련형 사회주의의 사회경제모델을 따를 의무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공동체>의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 연합체의 일원으로 소속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각 사회주의 국가는 자국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집단이익에 따라서 좌우되어야 하는 것이다.

1968년 4월 6일자 헌법 제 6 조 2 항에 의하여 동독은 국법으로 <사회주의 국제주의>의 원칙을 자국의 의무로 정했다. 즉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사회주의 소련 급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각 방면의 협동과 우호관계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라고 정해져 있다.

정당분야에 있어서 동독의 부차적 결합은 지도적 정치세력으로서의 SED(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자세에서 생긴 결과이다.

1963년 당규 제 4 조에 의하면 SED는 <푸르레타리아 국제주의정신에 입각하여 Kpdsu 급 기타의 모든 공산당 또는 노동당과의 형제적인 결합>을 공고히 하였다.

SED는 Kpdsu의 경험과 그 정강의 이념에 따르고 있다.

동독의 헌법체계에 있어서 SED가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치 뿐만아니라 SED와 Kpdsu와의 강력한 결합은 곧 동독과 소련의 강력한 결합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다. SED의 위치는 동독헌법 제 1 조 1항에 따르면 <노동자계급과 말코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하에 사회주의를 공동으로 실현시키는 도시와 농촌에 노동자의 정치적 기구>이다.

Warschauer 조약 회원국으로써 동독은 제 7 조 1항에 따라 <기본조약의 목적에 배치되는 목표설정을 할 어떠한 연합이나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고 또한 협정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검열약관과 해약고지약관

9. 각 조약국은 독일조약 제 10 조에 따르면 독일조약의 재검과 수정조약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독일이 재통일되었을 경우 또는 조약조인국들의 참여나 동의를 얻어 독일재통일이나 구라파연합을 초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국제적인 양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검열도 역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즉 <모든 조인국의 견해에 따라 본조약시행중의 현상에 근본적인 성격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여지는 경우>이다.

10. NATO 조약은 제 13조에 따라 1969년 이래 1년기한부로 해약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WEU 조약은 제 14장에 따라 1968년 이래 해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11. 1955년 9월 20일자 동독-소련 주권조약은 제 6조에 따라

제 1 장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독일통일이 수복될 때까지> 또는 합의에 의한 변화 또는 외군철수때 까지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2. 1964년 6월 12일자 동독-쏘련조약은 20년 기한부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제 10 조 2항에 따르면 <통일된 민주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독일 국가 창설 또는 평화조약체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20년 기한 만료전에도 각 정당의 소망에 따라 재고할 수 있게>되어 있다.

동독-불가리아 우호조약도 제 10 조 2항에 따라 통일된 민주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독일 국가가 창설될 경우에는 역시 재고될 수 있는 것이다.

동독-포랜드 우호조약은 이러한 경우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제 11 조 2항)

동독-체코스로바키아, 동독-헝가리 우호조약들은 상술한 바와 같은 특성을 가진 통일 독일국가 형성 후에는 재고해야 한다.(각 제 11 조 2항에 따라)

20년 기한부로 되어있는 Warschauer 조약은 기한만료 1년전에 각 회원국이 해약예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쏘련의 견해에 따른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원칙들이 모든 조약관계에 간섭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13. 그뿐만아니라 Warschauer 조약은 구라파에 있어서 집단안전보장제도의 창설, 또는 집단 안전보장에 관하여 상술한 목적에 소용될 법 구라파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조약종료를 예상하고 있다.

b) 안전보장정치적 결합

군사적 전망

14. 서독과 동독은 두개의 동맹체 NATO와 Warschauer 협정 중 각기 그 하나에 소속되고 있다.

서독은 1955년 5월 4일 이래 북대서양 동맹 회원국이다. 이 동맹은 상호 협조와 방위기구에 의하여 서독에게 안전보장을 하고있는 것이다.

서독은 공동방위에 대하여서 일정한 기여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서독 국방군의 전투부대는 전반적인 방위에 편입되어 있다.

서독 군대의 병력은 WEU의정서 Nr II에 따라서 제한되어있다(주 9) 군비제한은 의정서 Nr III에 따라 서독이 양보를 하고 있다(주 10) 의정서에서 서독은 ABC무기생산과 또 기타 몇몇 무장체제를 포기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의무사항의 엄수는 WEU의 군비감축국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다. 안전보장정책은 서독에 있어서는 세가지 전망하에있다. 즉 서독은 첫째로 고정된 군사균형을 유지하는데 협력한다.

둘째로는 이러한 기반에서 동서간의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구라과의 평화를 공고히 한다. 셋째로는 각국의 군비제한과 감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1970년 5월과 12월에 있었던 NATO의 각료회의에서

동맹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상술한 3대목표를 추종할 용의가 있음을 새삼 회의록에서 명시하였다. 서독의 긴장완화 정책(Entspannungspolitik)은 이 회의석상에서 특히 관심을 이끌었으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았다. 서독정부는 군비부담의 정당한 분배를 위하여 구라과주의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여 그 성과를 견우었다.

서독도 세계적 군비균형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은 평화유지와 평화조성의 효율적인 정책일 위하여 전제가 되는 것이다.

서독정부의 정책은 공포제거에 의한 안전보장이 평화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사실과 긴장제거에 의한 안전보장도 필요불가결한 보완적 요소로서 첨가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서독정부의 동구라과제국에 대한 화해노력은 이 안전보장 정치관계에서도 다른 수단으로서 균형정책의 계속을 시도한 것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독일 소련조약과 독일 폴란드 조약은 구라과의 안전보장정치적 상태를 변형시키지 않았다. 설사 이러한 조약들이 현실화한다 하여도 그것은 Warshauer 협정국들과 서독사이에 관계를 장차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양측이 균형의 유지에 기인하여 나간다면 더욱이 그러한 것이다.

동독은 1955년 5월 Warschauer 조약국의 기구 회원국(Warschauer 조약)이 되었다. 동독이 Warschauer 조약과의 견고한 결합을 하였음은 1968년 4월 6일자 동독의

헌법과 또한 헌법에 포함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관계를 형성할 의무를 내포하기므로써 완벽하게 되었다.

Warschauer 협정은 중 구라파에 있어서 북대서양 동맹보다 본질적으로 더 강력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병력은 공격에 대한 방위 또는 소련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병력보다 더 강하다.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그뿐만 아니라 -서방측과는 대조적으로- 해마다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동독의 병력은 완전히 Warschauer 협정의 군사기구에 통합되어 있다. 동맹체의 유사시에는 Warschauer 조약의 전 가맹국들이 동독의 군사부대 배치에 관해서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서방측에 있어서는 전쟁위기가 현재 파소평가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위기가 긴장완화정책의 성과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군사병력의 존재는 역시나 관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하여 서독정부는 강력히 동 서간에 있어서의 일정한 상호 병력감소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

15. 양 독일은 그들의 안전보장정책 의무이행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소비하고 있다. 1970년 서독의 국방비 총액은 22.65 Mrd. Mark 이다. (Mrd = 10억) (주 11) 공식 표명된 동독의 국방비는 6.7 Mrd Mark 이다 (주 12) 이것은 인구 1인당 액수로 계산하면 서독에 있어서 368

DM이고 동독에 있어서 390M이다. 국방비 지출의 국민총생산량에 대한 비율은 서독에 있어서는 3.8% (백림 원조 포함하면 4.3%이다) 동독에 있어서는 5.9%이다. 서독에 있어서는 인구 1,000명당 8명이 권방 방위군이고 0.3명이 연방 경계선방위를 위해서 무장하고 있고 동독에 있어서는 11명이 인민군이고 18명이 직장전투대 또는 민병대로 되어 있다.

-동맹 약관- (Bündnisklanseln)

16. NATO조약 5조와 NEU조약 5장에 따르면 동맹체 유사시라는 것은(Bündnisfall) 조약 가입국의 하나 또는 수개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가하여 졌을때에 있는 것이다. 동맹 가입국의 하나가 다른 동맹국을 공격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맹체 유사시라고 할수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WEU조약 5장에 따라 군사적 보호는 구라파 내에 공격에 제한 되어있고 NATO조약 6조에 따라서는 구라파 또는 북 아메리카에 있는 조약 당사국의 영토에 까지 군사적 보호권이 확대되어 있고 또한 하지선 북방의 북대서양 영역에 있는 당사국들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의 영토권내에 까지 확대되어 있다.

17. 백림의 군사적 보호에 관해서는 3대강국이 특히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백림은 NATO 조약 6조에 의하여서 NATO의 안전보장권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NATO 조약 5조의 의미에서 행하여지는 공격은 <구라파 내에

조약 가맹국의 점령군에 대한 무장공격 > 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있다. 3대 강국은 1954년 10월 3일 런던 9개국 회담 총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선언하였다.

즉 <백림의 안전과 복지 또는 3대강국의 백림에 있어서의 지위보전은 현 국제정세에 있어서 자유세계의 본질적인 평화의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3대 강국은 책임완수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에 있어서는 백림 영역내에 병력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또한 3대 강국은 백림에 대한 모든 공격을 그들의 병력 또는 그들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취급할 것이다. 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 (주 13) 기타의 NATO 회원국들은 이 3대강국 성명을 1954년 10월 23일 파리 15개국 회담에서 계승하였다. 백림보호에 대한 모든 NATO 가맹국의 의무사항은 재삼 확인되었으며 특히 1961년 NATO 12월 회담에서 그러하였다.

NATO 조약 5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동맹체 유사시에 있어서 당사국 자신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범위내에서 집단방위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WEU 조약 제 5장은 이에 반하여 군사적·지원행위에 대한 자동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Warschauer 조약 4조에 따르면 동맹체 유사시라는것은 일개 또는 수개 참여국가에 대한 <무장 기습>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동맹체 유사시라고 하는것은 동독과 쏘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 파의 우

호조약에서 규정되어 있다. 조약문구에 따르면 동맹 가입국의 하나가 다른 동맹 가입국을 기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장기습에 해당된다.

한 동맹국 내의 혁명을 제 3국에 의하여 지원한 것도 <무장 기습>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채로 있다. 이 경우에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이 간섭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동독과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 동맹국에서 발발한 혁명 <반동 혁명>을 지원하는것 뿐만아니라 반동 혁명에 직면하여 대외적인 지원없이도 이를 조정 중재하는 것을 국제법상에 국제적인 의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반동 혁명>개념이 동독이나 소련에 공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비밀>이라는 말을 첨가하므로써 그 개념에 신축성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적 사회주의 방향으로 비 폭력적으로 수행되어가는 혁신평과정도 또한 반동 혁명에 포함되는 결과가 된다.

지리적으로 동맹체 유사시는 Warschauer 조약과 또한 동독과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우호조약에 따라서 구라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동독과 헝가리 불가리아 우호조약에 있어서는 원조 약관(約款)은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

동 백림은 Warschauer 조약의 방어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주 14)

Warschauer 조약 4 조는 동맹체 유사시에 침략의 희생

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즉시 필요 불가결하다고 보여지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서 원조를 시행할 의무를 당사국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c) 경제적 결합

19. 1945년 이래 발전으로 인하여 또는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상이한 근본제도로 인하여서 처음부터 상호간에 경제적 인 향방이 판이한 경향이 생겼다. 서독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기구와 회의의 회원이 되었다(그 중에서도 특히 OEEC, GATT, UNCTAD 세계통화기금) 동독은 전부터 동 구라파 부력 각국의 소련 영도하에 있는 경제동맹에 소속하고 있다.

경제적 협동의 특별한 형체는 서 구라파에 있어서는 1950년대 초기 이래로 구라파 단일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 발전한 것이다.

석탄과 강철을 위한 구주 공동체(EGKS)와 구주 경제 공동체(EWG) 구주 원자력 공동체(EURATOM)의 설립은 경제적 수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였다.

국제 경제조약 제도의 근본 구조

- EWG의 목적과 구성 -

20. 6대 구주 공동체에 있어서 서독은 벨지움 불란서 이태리 룩셈부르크 화란 등과 공동으로 1970년에 있어서의 완전한 경제적 통합의 방도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의 목적은 공동시장의 설립과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단계적으로 단일화하는데에 있다. 여기에서 관세동맹은 로-마조약의 핵심문제의 하나이다. 경제연맹과 통화연맹의 계속적인 발전은 현재 협의중에 있다.

EWG에 있어서의 유력한 기관들은 위원회와 각료회의이다. 위원회는 각료회에 제안을 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다. 각료회의는 공동체의 행정기구이다. 각료회의의 결의는 그것이 노선과 해결에 관한 한 회원국들에 대해서 직접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규정에 관제될 경우에는 시민 개개인에 대하여 직접 권한을 발동한다 (주 15)

구라파의회는 지금까지 다관 협의적인 기능단을 하여왔다. 공동체에 대한 임무 특히 경제정책과 통화정책분야에 있어서의 임무를 확대하여 위임시키므로써 생길 의회적권확장에 관해서는 협의중에 있다.

- RGW의 목적과 구성 -

21. 동구라파에 성립된 상호 경제원조 평의회는 원칙적으로 EWG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은 불가리아, 체코스로바키아, 동독, 몽고인민공화국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헝가리와-형식상으로는-알바니아 등이다.

EWG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정치적 목표설정은

차치하고 - RGW의 특이한 쌍무적 강령(綱領)에 있다.
정관에 따르면 RGW는 국제적 통상에 의한 국제적 사회주의적 분업의 촉진을 위한 기관으로 되어있다(주 16)

RGW의 기관은-우선 평의회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은 제한된 권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로 EWG의 기관들과 같이 초 국가적인 사무 당국은 아니다. RGW 기구는 다만 추천사항을 진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추천사항이라는 것은 국내활동을 위하여 각기 국법의 변형이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협동 형제

- EWG 내의 관세연맹 -

22. 공업생산품에 대한 대량 수입제한은 이미 1962년 1월 1일 이래 존재하지 않는다. 르-마조약에서 규정되기 이전에는 EWG 내부에서 단일 시장규율을 토대로 하고있는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내국관세가 면제되었고 또한 공동관세 정율(Zolltarif)이 실시되었다.

관세정율연맹은 몇가지 결함 예를 들어서 1972년 1월 1일 이후에야 비로서 적용될 광산물에 대한 공동관세에 관하여서와 같은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주 17)

관세정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조치는 이미 강구되었다.

관세연맹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주 18) 또한 관세연맹의 완전 현실화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도 해소하여야 할 일련의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예로서는 기술적인 통상 장애의 제거 또는 세금의 조화 등이다.

- EWG 내의 공동 농업시장 -

23. EWG 내에서 통합과정이 가장 진보한 것은 농업분야이다. 1970년 포도주와 담배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이후 거의 모든 농업생산품 통상은 EWG 내부에 있어서는 통상장애로부터 벗어나 자유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는 공동 농업정책의 자금조달은 구라파지번 기금(Ausrichtmugsfonds)과 보증기금(Garantiefonds)에 의해서 지급되어왔으나 1978년 이후부터는 공동체 지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 재력에서 자금전액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합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타의 임무수행 책임은 공동체로 이양될 것이다.

공동체의 중요한 농업시장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있는 비중의 불균형은 모든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에 통합시킨 농업구조정책과 사회정책에 의해서 항구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주 19)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만 EWG의 많은 지역에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있는 인원이 과잉상태인 것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EWG 내의 경제정책

24. EWG 각국의 상품시장에서 통합수준이 고도에 달하고 노동시장에서 임의 이주권이 거의 완전히 회복되고 자본의 유통성도 상당히 성장된 이후 회원국의 경제정책 통합과 발전의 보조가 일치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발전에 불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주 20)

이러한 문제는 Franc 평가절하와 DM(독일 마르크)의 평가절상이 1969년에 실시됨을 기회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농산물가격이 US-Dollar와 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 농산물가격제도는 단기적으로 정해져야 하였다.

각 시장의 통합과 경제정책의 동등화사이에 템포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개별적인 나라의 지장이 다른 나라로 전파작용을 하는 악순환이 점차 강해져갔으며 한편 국민 경제정치적 Instrumentarium은 그 활동기능을 상실하였다.

- EWG내에 경제 금 통화연맹에 대한 내규 -

25. EWG내에 시장경제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 내의 사회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전통에 각기 차이가 있는 까닭에 자유경쟁관계나 국가적 계획관계에 관한 개념에 차이가 생긴다. (주 21)

26. 경제정책의 조화에 따르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공

동체가 설립한 정보센타나 상담기구는 여러가지 경제정책위원회에서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적으로하는 조연도 융통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간에 도달한 통합정도를 촉진시킴에 따라 동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는데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연합을 지향하여 계속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회원국들이 공동체기구의 강화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권리를 점차 포기하고 구속력이 없는 상담에서 구속력이 있는 다수결제로 이양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1969년 Haag에서 개최된 6개 EWG 회원국 정부수뇌회의 결의에 따라 경제 급 통화연맹의 단계적 창설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킬 것을 Werner-위원국에게 위임한바 있었다.

1970년 10월에 제시한 Werner-plan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

- EWG의 대외적 강화 -

27. EWG의 대외강화와 내부에 있어서의 경쟁조건 조화를 위하여 모든 EWG 각국은 공동 통상정치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는 각종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위한 본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 실례로서는 덤핑(投賣)술책에 대비한 보호조치 공동적인 통제철폐책략 일정한 수입에 대

한 검열조정, 수입활당제의 공동관할 등에 관한 규정들이다
원칙상으로는 다만 공동체만이 통상정책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현재로서는 공동체 가입제국과 제
3국 간에 많은 협정이 각 국가별로 성립되어 있으며 그
러한 협정은 각료회의의 재가를 얻어 갱신되고 연장될 수
있는것들이다.

EWG의 통상조약 체결권한(자격)을 인정하지 않고있는
RGW소속 각국과도 1972까지는 쌍무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서독 급 각 EWG 소속국은 우선 제각기 소련
또는 기타의 RGW회원국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
는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공동 통상정책의 구체화 특히 공동체가입국의
수출촉진체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RGW에 있어서의 통합문제성 -

28. 시장통합 또는 관세연맹에 관한 문제성이나 논쟁점은 RGW
소속국들에 있어서는 전혀 대두하지 않든가 EWG에 있어서
와는 현저하게 판이하다.

따라서 RGW소속국들을 위한 관세연맹의 현실화는 RGW
각국의 전체 통상이 상호간에 국립 대외무역기구의 쌍무협
정을 토대로 하여 청산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EWG에 있어서와는 달리 RGW통상에서 나타나는 통화권

제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명백하지 않다.

1964년 이래 존재하고 있는 경제협동을 위한 국제은행 (KGW-Bank)는 다만 (Clearing-Stelle) 수표교환소의 기능만을 하고있을 뿐이다.

RGW내에 여타의 통합을 위하여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루우불화폐의 태환성 부족과 참여국들의 국민경제 발전상태에 있어서 그 차이가 EWG의 경우보다 본질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지장이 생기는 원인은 RGW회원각국이 기국가적기관을 위해서 주권방기를 함에 있어서 각기 상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은 RGW 각국에 있어서 계획경제의 조건하에 전 RGW 지역을 위한 공동 중앙 경제계획을 창조함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다.

1964년 이래 협동작업의 주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민경제계획의 동격화는 고작해야 통합을 위한 제일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RGW 내에 예상계획의 평준화 -

29. 계획평준화는 우선 쌍무적으로 완수된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또는 기술과학적 공동작업(행동)을 위한 정부급의 잡다한 쌍무위원회에서 완수된다. 그러한 위원회를 동등은 RGW 각국과 형성하여 양측의 협약들에 의하여 상호간에 상품교환, 기술제휴, 특허, 특허권 교류를 조직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경우 지원과 보조기능은 각 RGW기관이 담당할 직무이다. 경제계획 평준화를 함에 있어서 RGW의 권한은 다만 자료 면에서 <<추천>>하는 것과 처리방법문제를 결의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만장일치원칙과 의무를 부과시키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서 RGW는 비교적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RGW정관 제 4 조 비교) 이 점에서는 1970년 Warschauer 이사회에서 있었던 협약도 본질적인 것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았다.

생산전문화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달성한 지금까지의 생산실적이 바로 이러한 지지부진성의 표식이다.

이러한 협약에 따른다면 동독공업은 특히 정밀기계공업, 광학의 정밀기계, 전기공업장비, 화학공장, 씨켄트공장, 금속가공공장용 장비, 수송장비, 기중기장비 등에 집중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제공된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 전문화협약에 입각한 기계생산공급은 동독 총수출량의 약 10%를 1967년에 차지하고 있다 (주 24)

- RGW내에 기타의 협동작업 형태 -

30. 공동작업 강화를 위한 여타의 가능성은 일련의 특별기구설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RGW의 Intermetall, Interchemie 화물차주차장 등) 이러한 기구에서 동독은 회원국으로서 대표적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기구의 추천이나 결의도 역시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기는하나 각 회원국

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도 즉시 확정력 (Rechtskraft) 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다만 한정된 경제적 분야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에서만 유효하다. 가입국수는 RWG의 $\frac{2}{3}$ 이하인 경우가 많다. 동독은 모든 특별기구의 회원이다. 동독과 동구라과 상대국 사이에 공동작업의 다른 형태는 본질적으로는 전망이 가능한 분야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 실례로써 RGW 영역내의 전력동맹에 대해서도 이것은 해당된다. 그러나 이 동맹에 의해서 동독은 전 전력소비량의 불과 1%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서 송유관계도 (das pipeline-system) 는 소련 석유를 동독에 수송하게 하고 1차 에너지도입에 13%를 기여하고 있다.

기타의 쌍무협 또는 공동생산은 원자재 (原料) 산출개발에 소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도 동독의 신용대부 (Kredit) 가 발급된다.

새로 설립된 RWG의 <투자은행>은 1971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특히 상술한 개발계획의 재정청산을 수행하게 되어있다.

경제적 협동체제의 확충

- EWG 가입 상의 -

31. 로마조약에 따라 모든 구라파국은 EWG 회원국이 될수있다. 그것은 설립회원국의 민주주의제도와 비교할만한 민주주의

사회제도를 소유한 나라에 한한다. 그러나 1963년과 1967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의 가입상의 실패에 도라가고 말았다.

Haag 에 정상회담 (1969년 12월)에서 EWG 확장 의지가 강조된 이후 1970년 6월 30일 제차 가입상의가 시작하였다.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각국 동시가입과 더불어 EWG는 정회원가입은 논의될 수 없는 EFTA 각국 그리고 핀란드 등과 특별관계를 협정할 준비를 갖추었다.

- EWG의 연합협정 -

32. EWG 가입가능성과 더불어 연합협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특히 구라파의 제국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연합과 동시에 가입국은 원칙상 자유무역지역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며 이 지역은 관세 급 무역제한의 순차적인 철폐를 실시하게 된다.

그뿐만아니라 EWG의 재정원조는 대체로 연합협정과 결부되어 있다. 서독은 구라파발전기금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1958년 자동적으로 EWG에 가담하게 되었던 아프리카 18개국이 1960년대 초기에 그들의 주권을 획득하고나서는 그들의 법적연합형태와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4년에 성립하여 1969년에 연장한 아프리카 18개국 및 마다카스카르와의 Jaunde 협정은 연합가입국의 이익을 참작

한 것이다. 기타의 연합협정들은 동부 아프리카 각국 즉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및 튀니시아 마룩크 등과 체결되었다.

EWG는 그 이외에도 구라과 2개국 즉 토이기, (1964년) 회랍(1962년)과 연합조약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EWG와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유-고슬라비아는 OECD와 부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 RGW의 확장 -

33. RGW는 형식상 공개적 국제적 기구이다(RGW 정관 2조 2항)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중앙계획경제와 국유 또는 집단재산에 의한 경제체제가 생산 수단면에 특색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1962년 몽고 인민공화국이 정회원으로 되었고 1964년 유-고슬라비아가 평의회에 연합되었다(주 25)

- EWG 및 RGW와의 경제적 결합 -

34. WEU에 있어서는 특히 EWG와 구라과 자유통상지역(EFTA)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취급되고 있다.

1960년 이래 OEEC의 후계기관인 OECD는 무엇보다도 의견교환소로서 또는 EWG, EFTA, USA, 캐나다, 일본 사이에 유대를 유지하는 조임체로서 봉사하여왔다. 현재에도 개발정책의 평준화를 수행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 이외에도 서독은 UN 또는 UNCTAD, UNIDO, ECE, GATT 등의 가장 중요한 경제기구에서 협동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 서독의 연구 계획 교도적 협동작업 -

35. 1969년 NATO 내에 현대 사회문제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환경보호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핵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서독은 우주핵연구센터(CERN)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이 1953년 설립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구라파에 있어서에 기초연구를 국제적 기반위에서 추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CERN은 protonen - Synchron을 보유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서독은 <<Dragon-projekt>>에서도 협동연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영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Hochtemperatur-Gas-reaktor (고압가스로)이며 1959년 OECD의 하부기구인 ENEA (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다.

서독은 그뿐아니라 영국, 화란과 협동하여 우라늄 농화(濃化)용 개스 원심분리기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서독은 우주 연구와 통일중계분야에서도 ELDO, ESRO, CETS 및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제도를 위한 구라파 각료회의에서 협동하고 있다.

- 서독의 쌍무협정에 의한 결합 -

36. GATT설립 이래 관세는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세계무역은 점차로 자유화되었다. 이러한 발전에 의하여 쌍무 통상협정은 서독에게는 의미가 없어졌다. EWG내에 통상정책조화에 관한 협정 이후 서독의 쌍무 통상협정의 분량은 계속 감축되었다. 쌍무협정은 서독에 대하여서는 다만 이중과세 범위내에서의 RGW 각국과의 통상조정을 위하여서만 큰 의의가 있을뿐이다.

- 동독과 사회주의 각국과의 경제적 분류 -

37. RGW의 각별히 쌍무적인 특징으로 인하여서 또한 경제적 정치 군사적 동맹간에 광범한 일치로 인하여 사회주의 국가간에서는 원칙상 OECD나 WEU와 같은 본질적인 기구에 해당할만한 협동 형태 또는 ELDO, ESRO, CERN등에서와 같은 계획 교도적 협동에 해당할만한 협동형태가 없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RGW에서 독립한 몇몇 연구계획교도적 협동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Dubna에 핵 연구 연합 연구소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그 연구소는 핵 물리적 기초연구를 하는 곳이다. 그 창설 회원국으로서 알바니아, 북한, 월맹, 중공 등이 소속되어 있다. 우주연구분야에 대한 공동노력의 준비를 위한 회의가 또한 그 하나이다. 이 회의에는 RGW 각국 외에 큐-바도 참여하고 있다 (주 27)

Warschauer 협정 제 8 조에서 동 협정은 동독에게 기타의 사회주의 각국과 경제적 협동을 할 정치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세계무역에 있어서의 동독과 서독의 위치

38. 1969년 서독은 세계 제 2위의 수출 수입국이였다.

서독이 세계 총수출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10%를 초과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8.8% 이었다.

동독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1969년도에 세계 수입량의 각 1.5%이다.

제도적인 유대는 서독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그 액면이나 지역구조에 큰 작용을 하고 있다.

EWG 통상 상대국의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1958년 이래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그에 반해서 동독의 총 대외 무역에 대하여 RGW 통상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1959년 이래 거보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 서독의 대외통상구조 -

39. 로마조약 체결 첫째인 1958년도 수출고 37Mrd. DM 중 46.8%가 NATO 각국 상대 수출량이다. 그중 25.6%는 EWG 소속국에 대한 수출실적이다. 기타는 대부분 1960년 이래 EFTA에 소속하고 있는 동맹국 및 USA 캐나다가 수출대상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출고 반 이상이 방위동맹에 소속하지 않은 각국을 상대로한 것이된다. (부록 일람표 A1, A2, 참조)

10년후 총수출고는 약 170% 100 Mrd DM 정도의 상승을 보였으나 안전보장동맹 소속국에 대한 수출고는 39.5%로 저하하였다. 그 반면 대 동맹국 수출고는 60%로 증대하였다. 이러한 증대는 주로 EWG소속국에 대한 수출고상승(37.5%)이 주인이라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USA는 예외이나 기타의 동맹국들은 그들의 절대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판매시장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하다. EWG내에서는 불란서가 화란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발전추세는 1969년에도 지속하였다. 거기 모든 중요상품이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9년도 전 수출의 85%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있는 공업완제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그중 약 60%는 동맹국으로 37.3%는 EWG 각국으로 수출되었다. (부록 일람표 A2 참조)

서독의 수출면에서 확정적인 발전은 수입면에서도 해당되는 추세이다. 다만 상품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비동맹국으로 부터 구입한 물품은 서독 총수입량의 49.1%(1958년도) 38.1%(1968년도)를 차지하고 있다. 1968년도 식료품,오락물품원료재등 수입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

동년도에 상기 비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공업완제품이 그 90.2%이다. (부록 일람표 A3, A4 참조)

이러한 발전의 원인은 원자재수입이 광경소재지에 달려있다는 점과 발전도상국 또는 국영통상국들로 부터 비교적

많은 식료품을 수입하고 있는 까닭에서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완제품수출은 아직 기술면에서 충분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동독의 대외무역 구조 -

40. 1960 년에서 1969 년까지 동독수출량이 9.27 Mrd Valuta-Mark (1 Valuta-Mark = 0.24 US - Dollar) 에서 17.44Mrd Valuta-Mark로 약 88 %의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수출 지역구조는 변하지 않고있다.

RGW소속국에 대한 동독의 수출은 1960 년대에 총수출량의 68 %라는 높은 비율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의 지속은 RGW내에 주요 통상 상대국인 소련 (42%) 체코슬로바키아 (10%) 폴란드 (7%)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공업국》에 대한 수출고는 서독을 포함하여 20 %에서 22 %로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부록 일람 표 A 5 . A 6 참조)

동독과 RGW각국 간에 상품거래 구성내요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완전히 보고된것이 별로 없다. 통계는 상품구조에 관해서 대략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동독의 수출은 공업완제품, 특히 연구분야용의 완제품이 주요부분이다. 작년도 RGW각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기계류와 시설장비용품이 동독의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8 %이다.

이것으로써 동독이 전 RGW소속국중 최고로. 기계류 공급

실적을 올렸다. (주 28)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독은 RGW 각국과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고도의 발전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그것이 동독의 경제면에 표출된 것이다.

쏘련에 대한 기계류 시설장비용품 공급은 1960년 이래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 쏘련 총수출의 약 60%에 달하고 있다.

소비품 수출분(分)은 1960년에서 1968년까지 대략 12%에서 16%로 상승하였다. 기타의 RGW국들과의 통상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정할 수 있다.

1960년도 동독수입에 RGW 각국이 차지한 비율은 66.3%이다. 1960년에 비하여 1969년에는 2.8%가 상승하여 69.1%로 되었다.

동시기에 동독의 수입량도 9.22Mrd에서 17.24Mrd Valuta-Mark로 약 87%의 증대율을 보이고 있다. 수입면에서도 쏘련은 동독 대외무역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6년도에는 동독수입의 42.5%가 쏘련에서 도입되었다 (부록 일람표 A5, A6 참조)

RGW 블록 내 통상 초량에 대한 동독의 비중은 포렌드, 불가리아 때문에 약간 후퇴하였다.

동독수입이 RGW내 총수입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58년에서 1968년까지 18%이다. (주 29) 그러나 현재 RGW 내에서는 쏘련(37%) 다음으로 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코스로바키아(13%)에 앞서고 있다.

(부록일람표 A5, A6 참조)

수입면에서는 동독의 원자재 의존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입구조에도 약간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기는 하다. 즉 부분적으로는 원자재의 비중이 감퇴하고 기계와 시설재가 통계상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1965-1966년에 관찰할 수 있다. 이것도 약 15% 정도에 불과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독일 경제활동지역이 양단되어있는 까닭에 동독은 특히 원자재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재 조달은 현재 전반적으로 소련 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소련의 공급품은 동독내의 중공업생산(석탄, 철광석, 선철 강철제품)과 1차에너지 형태의 개량(석유)에 사용되고 있다.

기계시설재의 발주도 황목할만큼 증대하였다.

기타의 RGW 각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소련으로 부터의 수입과 현저하게 판이하다. 포렌드가 공급하는 품목은 원료, 연료(石炭, 石炭코크스) 금속, 농산물이 여전히 주요 품목이기는 하나 기계류 공업시설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1963년도 20%에 비하여 1970년도까지는 50%로 상승하고 있다.

체코스로바키아는 RGW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상호 유사한 상품구조를 교환하고 있는 동독의 통상상대국이다. 양국의 상호 물품교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계류와 자동차류다.

헝가리로 부터의 수입은 기계류, 자동차류의 수입증가로 인해서 식료품 수입을 물리치고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 1 장

불가리아로 부터의 수입에 있어서는 여전히 농산물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 자본, 특히 및 면허 거래 -

41. 서독의 해외자본투자는 대부분이 (50 % ~ 60 %) EWG, EFTA 각국과 USA에 집중되어 있다. 그 투자는 약 50 %가 유가증권이고 30%가 신용대부 또는 차관이고 10%가 직접투자 또는 국고투자로 되어 있다.

자본 수입은 EWG 또는 EFTA 각국 및 USA에서 들어온다. 수입 자본은 직접 투자, 유가증권구입, 신용대부 또는 차관이 각 $\frac{1}{3}$ 씩으로 되어 있다.

약 4억 DM 상당의 특허 또는 면허에서 얻는 서독의 수익은 NATO 소속국과 비동맹국들에서 각기 절반씩 들어온다. 서독이 특허 및 면허 때문에 지출하는 금액은 약 1 Mrd. DM으로 수익에 배액이 된다. 가장 중요한 상대국은 거의 모든 공업부문에 대하여 변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USA이다. 즉 모든 특허 및 면허의 49%가 USA에서 나오고 있다.

RGW지역에 있어서는 국제 자본 시장이없고 자본거래는 일반적으로 양국간의 신용대부 허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신용대부의 금액 또는 조건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정보자료가 지시되어 있지 않다. RGW내에 특허 거래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주 30)

[2] 제 3국에 있어서의 양 독일의 활동상황

42. 양 독일의 제 3국에 있어서의 활동상황은 제 3국과 국제적 기구에 대해서 서독과 동독이 개발한 활동의 한 단면만을 제시할 뿐이다.

a) 제 3국에 있어서에 대표기관

- 대사관 및 영사관 -

43. 서독과 동독의 발전도상국에 있는 대표기관은 다음에 표시된 일람표 1 (Übersicht 1)에 보는바와 같다.

(일람표 1 생략 별첨 참조)

경제문제 또는 문화문제는 서독을 대표하여 경제담당자와 문화담당자가 각기 취급한다.

동독의 대사관에는 통상정책부가 설치되어 있고 총영사관에 통상대표부가 부속되어 있다. 동독은 외국주재 대표부에 라이푸치히 대결본시 (Leipziger Messe) 집회소의 분실과 해외무역 회의소를 보충하여 배치하고 있다.

- 통상 대표부 -

44. 현재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에 주재하고 있는 서독의 해외 무역 회의소 (통상대표부)는 독일 상인과 외국상인간의 자유로운 연합, 기업, 청구, 경제대리점 등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부 주재국측에서는 그러한 대표부가 서독 정부의 대표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제 1 장

상술한 대표부들은 양국간의 회의소로써 조직되어있고 서독과 해당 상대국간에 경제거래를 육성, 촉진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동독은 1970 년도에 7 개국에 정부급 경제사절단, 통상사절단 및 통상대표부를 유지하고 있다. (주 31) 6 개국에는 은행협정에 따른 통상대표부가 있다. (주 32)

동독은 또한 토이기에서 해외통상 회의소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업무를 보고있다. 리비아에서는 1970 년 이래 경제사절단 단장이 정부 위임자행세를 하고 있으나 완전한 외교단 자격은 없다.

일람표 2.

무역협정

지 역	서 독	동 독
아 프 리 카	1	5
아 시 아	2	4
라 틴 아 메 리 카	12	6
	15	15

(Übersicht 2 생략)

- 문화시설 (kulturelle Institutionen) -

45. 서독은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 등 제 3국에 74개의 문화시설 (71개 Goethe-Institute와 기타 3개 문화시설 107개 독일학교 기타 수많은 양국 합작단체를 설립하여

일 략 표 3.

무역대표부

지 역	서 독	동 독
아 프 리 카	18	4
아 시 아	26	3
라 틴 아 메 리 카	30	2
	74	9

문화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동독은 1969년말 7개국에 문화센터를 제 3국에 유지하고 있다. (주 33)

전 문화시설은 동독의 인민우호연맹 산하에 소속하고 있다. (Übersicht 3 생략)

b) 발전도상국 원조 기구

46. 서독의 연방경제협동성 (BMZ)는 서독의 발전도상국 원조원

제 1 장

칙과 계획을 작성하고 기술원조 수행을 조종하며 발전도상국원조 당국을 관리한다. 자본원조에 대한 원칙작성은 연방경제성(BMWi)와 협조하여 행한다. 서독의 대외정책적 중요사항은 외무성(A.A)과의 협동에 의하여 확인하게 된다.

교통, 농업, 보건, 통신제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연방 각 부처가 개발계획의 책정, 실행에 참여한다. 경정은 국무위원회에서 배린다.

47. 동독에 있어서는 개발정책활동은 SED의 중앙위원회(ZK-Apparat) 특히 <국제결합부(Internationale Verbindung)>과 <외국정보부(Auslandsinformation)>의 감독을 받게 된다. 모든 국립기관, 집단기구, 우호단체들은 그 문화정책적 활동이 국제우호단체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평준화되어 있고 또한 SED의 지시를 받는다.

동독의 각료회의는 인민의회와 추밀원(Staatsrat)의 행정기구로서 발전도상국원조를 정부급수준에서 수행하고 평준화하며 감독할 임무가 있다. 각료회의는 관리, 위원회, 평의회 각 부(部)가 소속하고 있는 관청기구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소수의 예외를 제하고는 모든 중앙기구는 동독의 개발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그외에도 경제전문학교(Berlin-Karlhorst)도 각료회의에 예속하고 있다. 발전도상국 경제연구소가 이 학교에 병합되어 있다.

제 3 국의 개별적 정치평가는 외무성이 제공한다.

potsdam-Babelsberg에 있는 <Walter Ulbricht> 국가학 및 법률학사원의 국제관계 연구소(개발도상국 부 Abteilung der Entwicklungsländer)가 상술한 정치평가를 지원한다.

통상교류에 관한 사무정리 각국에 있어서의 계획수립과 실시감독은 외국경제성의 책임소관사항이다. 개발정책에 중요한 일련의 관청들이 외국경제성 산하에 있다. -외국무역회의소, Leipzig대 걸본시 사무소 Interwerbung 유한회사 기타 각종 외국통상기업 등.

기술적 직무수행(계획수립 등) 발전도상 국가들과의 학술적 공동연구문제들에 대하여는 Limes 유한회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 국립기관과 준 국립기관 -

48. 서독에는 국립기관과 더불어 반관 반민 성격의 기관이 다수 발전도상국원조에 관여하고 있다. 사설기관도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있다.

서독정부가 개발정책 임무대행을 위촉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재건을 위한 신용조합 (die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W)

개발도상국 원조 액면내에서 신용대부신청과 계획검토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체결 약속한 자금지불 계약에

합당하게 신용대부의 사용여부와 상환 감시 등을 관장

◎ 연방 발전도상국 원조처 (BIE)

기술원조 계획수행 본부로서 설치된 것이며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경제, 상공업 및 보건제도의 촉진계획 시행 실업과 전문기술직의 직업교육제도 촉진 농업원조 계획 촉진 국제기구의 다변계획을 위한 인력원조 등이다. 직무수행을 위하여서는 GAWI를 이용한다.

◎ 발전도상국 원조를 위한 독일촉진 유한책임 회사 (GAWI mbH)

관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 3 국에 직업교육훈련소 설립 및 이에 필요한 기술 교육교재준비 모범공장 설립 기술분야의 모범작업장 및 농업분야의 모범농장 설립등이며 파견되어온 숙련공에게 직장도 알선한다.

◎ 경제협동을 위한 독일 유한책임 회사 (일면 개발회사 DEG)

공익사업으로서 발전도상국에 투자를 위한 개인 주도권과 개인 자본 유동화를 원조한다.

◎ 독일 개발봉사단 (DED)

각 직능별 지원자를 경제 및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에 배치한다.

◎ 발전도상국을 위한 독일재단
발전도상국 출신의 숙련공 직업훈련을 위주로 하고 독일 노동자가 발전도상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권장한다.

◎ 개발정책을 위한 독일연구소
각 학과별 대학졸업자를 개발정책의 특수 임무를 위하여 9개월 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Friedrich-Ebert 재단, Konrad-Adenauer 재단, Friedrich-Naumann 재단은 사회정치적 교육을 촉진시킨다. 또한 사회조직원조계획을 자체부담으로 수행한다.

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Carl-Duisberg 회, Friedrich-Ebert 재단은 제 3 국에 있어서의 지도적 인재 양성에 공헌하고 있다.

독일 개발정책의 범위내에서 성인교육 대책촉진은 상술한 3개재단과 독일 대학협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 3 국내에 집단기업조합의 협동을 위한 집단매개물 배치하는 지난 2년간에 의식적으로 촉진되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독일 방송시설 연구공동체, Friedrich-Ebert 재단, Konrad-Adenauer 재단이 활약하고 있다.

교회는 가톨릭교의 경우는 <Misereor>운동, 신교의 경우는 <세계를 위한 빵 Brot für die Welt>운동을 전개하여 들어온 회사금으로 발전도상국 원조기관을 창설하였다.

서독내의 노동조합들도 일부는 Friedrich-Ebert 재단과 공동으로 개발정책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직업교육을 촉진시키고 민주주의적 종업원기구를 지원한다.

49. 동독에서는 FDGB가 제 3국의 수많은 노동조합연맹과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간부 직업훈련 또는 기부 연대기증 등에 의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SED에 감독을 받고있는 집단 조직체들이 자기 제 3국의 해당 조직체들과의 유대강화를 담당하고 있다.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다.

- 자유독일 청년단 (FDJ)
- 독일 기자연맹 (VDJ)
- 독일 민주 여성동맹 (DFD)
- 독일 소비조합 연맹 (VDK)
- 상호 농민 원조 연합 (Vdg B)
- 독일 읍면회 (DSu G)
- 독일 체육 연맹 (DTSB)
- 민주주의 독일 국민전선

이상의 조직체와 더불어 수많은 지역적 국민적 우호단체가 있으며 국제우호를 연맹의 보호를 받고 있다.

- 사유경영과 사설기구 -

서독의 사유경영은 외국에서의 그 투자활동과 외국무역관계에 의해서 제 3국들을 위한 업적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

는 셈이다. 개인기업과 더불어 몇몇 사설기구가 개발정책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관여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발도상국 노동협동체

독일수공업회

지역국별 연합회 이 연합회는 아프리카 연합회, 중동아시아 연합회, 동남아시아 연합회, 라틴아메리카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각 기술상사

이러한 기구들의 활동은 모두 주로 협의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동독에는 사회제도사상의 이유에서 사설 개발도상국원조는 없다.

c) 개발도상국 원조와 국제기구와의 연합

개발도상국원조의 다각적 분야에 있어서 서독이 기여한 것은 국제기구내에서의 적극적 협조와 통화에 관한 실적에 반영되어 있다.

서독은 UN의 회원국이 아니기는 하나 UN내에서 또는 UN 특별기구내에서 협조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세계은행과 그 자매기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와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IDA) 및 세계통화기금(IWF) 등에 출자하고 있다.

기타 OECD, GATT, EWG의 구라파 개발기금 등에도 출자하고 있다.

현재 각 기구에 대한 공적 개발도상국 원조의 약 19%를 주관하고 있다.

52. 동독도 마찬가지로 UN 회원국이 아니며 UN 또는 그 특별 기구 범위 내에서는 발전도상국 원조를 하지 않고 있다.

RGW 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독은 공산주의 노선의 국제적 집단 기구에 강력히 관계하고 있다. 특히 세계평화평의회, 세계노동조합동맹, 기자국제기구, 세계민주청년동맹, 국제학생동맹, 국제민주여성연맹, 아아연대기구 등이다.

재정후원은 특히 세계평화평의회, 세계노동조합동맹, 기자국제기구 등에 집중되고 있다.

a) 서독과 동독의 개발정책적 활동

53. 서독과 동독에는 각기 여러가지 개발도상국 원조형식이 있다. 즉 자본원조와 기술원조가 그것들이고 이에 소속되는 것이 교육투자와 사회투자이다.

서독에서는 공적 보장을 받는 한 방대한 사설신용대부나 직접투자도 제 3국에 있어서의 개발도상국원조 실행에 가산되고 있다.

54. 개발정책적 활동개시 이래 (1950년) 1965년 말까지 서독은 동독에 비하여 막대한 자본을 제 3세계 각국에 제공하고 있다 (주 36)

동독은 서독에 비하여 근소한 재정소비이나 그것도 몇몇

선정국에게만 집중시키고 있다. 동독의 개발정책구상은 서독의 그것에 비하여 그 목적설정이 명백히 다르다.

55. 서독정부는 제 2차 10년간을 위한 국제연합의 전략문서의 견해에 따르고 있다. 즉 제 3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경제성장은 연간 평균 총사회생산량의 6%에 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는 종래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회적 영향에 관해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개발정책의 목적과 수단 -

56. 서독의 개발정책 목적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식할 수 있다. 즉 제 3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장기적인 국제적 계획의 범위 내에서 촉진하는 것. 신용대부조건을 개선하는 것. 공급조건을 제한하는 것. 제 3세계 각국을 위하여 포괄적이 과세우선제도를 실시할 것. 기술원조 특히 직업교육원조를 확장할 것 등이다.

동독은 발전도상국원조를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 부여하고 있다. 동독에서도 자본원조 기술원조는 통상정책적 조치와 더불어 중요하다.

서독과의 차이점은 동독이 개발정책계획에 있어서도 자기 사회제도 선전 표시에 중점을 두고있는 점이다.

특히 아랍 제국 Tansania, Guinea, Mali, 또는 인도, 세이롱, 버마, 칠리 각국들과 다소 정도가 낮기는 하나 보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우루가이 등 각국에서 그러한 사실을 볼수 있다.

- 정치적 활동 -

57. 서독의 개발정책은 서독정부의 평화정책 불간섭원칙 모든 국가들과의 협동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정책은 대외 문제와 독일정책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신축성을 1969년이래 유지해 왔다.

서독정부는 종전과 같이 동독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승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각 경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독의 개발정책이 서독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제2의 독일 국가를 국제법상 승인할 것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동독이 자신을 유능한 경제상대국, 사회주의 문화국이라고 빈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 면에서 서독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독은 비 공산주의 상대국 및 공산주의 상대국 또는 제3세계의 수다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해방운동과 유대를 맺고 있다.

동독의 개발정책의 정치적 목적은 특히 국회의원 교환 동독 국회의원내 크립에 의해서 수행된다.

기타 소위 친목주간 승인위원회라 하여 성명 발표, 회의

학술회의, 페스티벌 개최 등에 의하여 국제법상의 승인을 얻고자 선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문 화 활 동 -

58. 서독의 대외 문화정책은 독일에 대한 선입감을 불식하고 제 3 세계 각국과의 문화정책적 협동에 의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외 문화정책도 대외정책의 일부이다.

광의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교육원조는 제 3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한다.

동독의 대외 문화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서독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치적 주목적 즉 국제법상의 승인 획득이라는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 동독은 제 3 세계의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다수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

59. 서독은 1968년 말까지 제 3 세계 14 개국과 동독은 15 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그와 병행하여 서독의 학술연구소와 제 3 세계 각국의 학술연구소와의 사이에는 수다한 접촉이 있다. 이러한 접촉은 <di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독일 연구 협동체> <der Deutsche Akademische Austauschdienst 독일학사 교류처> <Alexander-von Humboldt 재단>이 추진하고 있다.

서독의 청년단 체육단과 제 3 세계 각국의 그것들과의 사이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접촉은 1969 ~ 1970 년도에 확대되었다.

서독의 문화 교육대책을 위하여 연방회계에 책정된 자금의 상당한 부분을 국제기구들 특히 UNESCO, OECD의 학술위원회 등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부록 일람표 A 2 참조)

동독의 문화교육정책은 이데오로기 선전 활동이나 마찬가지로 지역중점주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집약되고 있다. 즉 학자, 학생, 기자, 운동선수 초대 이에 수반하는 장학금 지급 어학훈련과정, 영화상연, 댄스파티, 음악회 등의 기구조직 등이다.

일 랑 표 4

제 3 세계와의 문화협정체결

국 가	체 결 년 월 일	
	서 독	동 독
아 프 가 니 스 탄	1961. 4. 18	
알 제 리 아		1966. 12. 12
보 리 비 아	1966. 8. 4	
칠 레	1956. 11. 20	1966. 12. 5
다 호 메		1964. 9. 20
에 콰 돌	1969. 3. 13	
가 나		1961. 10. 9 (폐 기)
기 니 아	1967. 11. 23	1958. 11. 17

국 가	체 결 년 월 일	
	서 득	동 득
인 도	1969. 3.21	1964. 2.20
인 도 네 시 아	1965. 1.30	1964. 4.28
이 략		1959. 4. 1
캄 보 디 아		1964. 2. 2
콜 롬 비 아	1960.10.11	
콩 고 , 브라자 빌		1970. 3.14
마 리		1964. 3.20 과 1964. 6. 3
파 키 스 탄	1961.11. 9	
페 루	1964.11.20	
세 베 갈	1968. 9.23	
수 단		1967.10. 9
남 예 멘		1969.10.18 과 1970. 1.29
터 키	1957. 5. 8	
튜 니 시 아	1966. 7.19	
아 랍 공 화 국	1959.11.11	1965. 3. 1

(일람표 4 생략 별표참조)

- 공보활동 -

60. 제3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서독 공보활동의 목적은 서독의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독일에 대한 호감을 이르기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람회, 영화, 뉴스영화, 광고, 논설, 기사, 사진전시회 등을 통하여 사회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동독의 공보활동 목적은 자국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업국이라고 선전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선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막대한 서적 팜플렛트, 신문잡지 또는 주간지, 일간지에 기사 또는 선전광고를 낭비하고 있다.

동독은 공보활동 분야에 있어서 일련의 라디오 방송 협정, 텔레비존 방송협정, 영화협정, 뉴스교환제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 3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동독공보활동을 위한 권한은 우선 각료회의에 방송위원회와 보도대리부(ADN)에 소관이다.

- 경 계 활 동 -

1969년도 서독의 실적고는 1968년도에 비하여 약 30%인 8.2 Mrd DM이 증가하였다. (공사 총 실적) 이것으로써 1968년 제 2차 세계통상회의에서 설정한 실적목표량의 1.36%를 초과 실현하였다. 본래는 총사회생산의 1%를 발전도상국 원조에 충당하도록 되어있다.

그중 약 75%가 민간층에서 지불한 것이다. 한편 1969년도 서독의 공적(관영)총실적은 약 2.1Mrd DM에 달한다.

62. 합작형식의 공적 발전도상국원조중 53.8%가 자본원조이다. 기술원조와는 반대로 최근 2년간에 자본원조는 감축되었다.

1969년말까지 총 92건의 자본원조 협정이 서독과 제 3세계 각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1969년 자본원에 대한 평균조건은 상환기간 26.5년 7.6년 치, 3.2% 이자로 되어있다. OECD의 발전도상국원조 위원회가 추천하는 조건이 열망되고 있다. (상환기간 30년 8년거치 2.5% 이자)

동독도 자본원조 및 기술원조를 부여하고 있다. UNCTAD 보고(주 38 참조)에 의하면 동독은 1954년에서 1965년 사이에 발전도상국원조로 1.3Mrd DM 상당의 신용대부를 제공하였다. 1960년에서 1968년 까지 부담액은 총 1.1 Mrd DM이다.

동독의 자본원조는 보통 경제기술협동에 관한 협정의 범위내에서 장기 전설신용대부로서 상환기간 10~12년 2.5% 이자지불 조건으로 부여한다.

1970년까지 동독은 총 13건의 상술한 바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독은 상환기간 5~8년 이자 2.5%~6%로 되어있는 단기 또는 중기 끌어 신용대부는 항술 기술협동에 관한 협정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1970년 까지 14건 협정)또는 통상협정, 지불협정(Zahlungsabkommen)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 기 술 원 조 -

63. 서독은 1969년 기술원조로 약 860 Mill DM을 제공하여

제 1 장

공적인 합작원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독이 1969년 체결한 기술원조에 관한 39개 협정 범위 내에서 1954년 이래 근 1400개 계획이 시작되었고 700개 프로젝트 이상이 이미 완결되었고 기타는 준비 또는 실시과정에 있다.

동독은 기술원조를 주로 학술-기술 협동에 관한 법정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1970년 까지 14개 협정이 체결되었다. 기술원조는 보건제도 분야의 9개 협정 기술공 직업훈련의 5개 협정, 우편-송신제도의 4개 협정에 대하여서도 공여되었다.

- 다 과 원 조 -

64. 서독의 다변적 원조실적-국제기구의 원조계획에 의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원국에 유리하게 하는 원조실적-은 1969년 약 1.6Mrd DM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총 실적고의 19%에 해당한다.

서독의 UN 원조계획에 대한 출자는 매년 항상 증가되어가고 있다. 특히 UN의 기술원조계획과 UN의 특별기구에 대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EWG의 개발기금에 대한 출자 약 150Mill DM을 포함하여 1969년도에 서독은 약 300Mill DM을 다변적 원조에 공여하고 있다.

자본대부 또는 응모지불 (Subskriptions-Zahlung) 등의 형식으로 공여한 다변적 원조실적은 약 170Mill DM에 달

한다.

- 개인 경영 실적 -

65. 직접적인 공적 개발원조실적과 더불어 개인 경영활동(투자와 수출)을 위한 정부의 촉진책이 중요하다.

수출과 자본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증, 개발원조 세법 이중과세협정, 투자촉진계약, 구주부흥계획(마살푸랜)의 정주기금에 의한 신용대부(ERP-Niederlassungsfonds) 독일 개발회사(DEG)의 참여 등이 그것이다.

동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개인경영이 지금까지 개발정책적인 사업에 제약을 하였다.

- 교회의 원조 -

66. 1960년에 시작한 양 기독교회의 회사활동(카톨릭 교회의 Misereor 운동과 신교의 세계를 위한 빵-Brot für die Welt 운동)이 서독에서는 1969년도에 약 80Mill DM을 제공하였다. 그것으로써 서독의 교회는 1958/59년에서 1968/69년 사이에 총액 760Mill DM에 달했다. 1969년 최초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교회세 수입(35Mill DM)으로 부터의 자금이 또한 여기에 가산된다. 연방의 보조금 60Mill DM을 합치면 1969년도에 교회는 175Mill DM을 배당한 셈이다.

동독내의 신교회는 <세계를 위한 빵> 회사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수입은 약 24Mill 동독 말크이다.

- 통상 관계 -

67. 발전도상국가들에 대한 통상관계는 통상 및 재정협정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다. 1969년 말까지 서독에 의하여 65건, 동독에 의하여 46건의 계약에 조인되었다. 통상액수는 일람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발전도상국 원조의 지역적 중점 -

68. 서독이 90개국중에서 개발정책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한편 동독은 개발도상국 원조를 약 12개국에 중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독의 개발도상국 원조의 중점을 경제 기술분야에 있어서 1969년도에 다음과 같다.

아랍국가 - 모로코, 튀니시아

흑인 아프리카 - 가나, 당가니아

남아메리카 - 알제틴, 브라질, 칠리, 페루

아세아 -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아프리카니
스탄

동독의 경제 기술분야에 대한 발전도상국 원조의 중점은 1969/70년에 다음과 같다.

아랍국가 - 알제리아, 통일아랍공화국, 세리아, 이락,
남부 예멘, 수단

흑인 아프리카 - 당가니아, 기니아, Mali

아세아 - 인도, 캄보디아 (1960년 6월까지) 세일론,
버마

서독의 기술원조 목적을 위한 실적은 1969년도에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에 대략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다 (주 39)

서독의 농업원조는 (주 40) 원칙적으로 아프리카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요르단 케냐 튀니시아 브라질에 배당되고 있다 (1969년 말까지 3.19 Mrd. DM)

동독은 농업원조를 기니아 (농업학교) 탕가니아 (동물보건센터) 통일아랍공화국 (개간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1969년도에 서독의 개인 경영실적은 특히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지역적 중점 배치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과 마찬가지로 독일 기업가들의 투자활동에 가장 매력적인 것은 리비아, 인도와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 지역 특히 아르헨틴,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다.

일람표 5

제3세계국가들과 동,서독의 대외무역 (백만 마르크)

년 도	총 대 외 무 역			제3세계국가들과의 무역	
	수출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6	수 입	72,670	14,448	6,462	575
	수 출	80,628	14,403	10,594	761
1967	수 입	70,138	14,735	6,059	598
	수 출	87,045	15,531	10,858	768
1968	수 입	81,179	15,147	6,592	588
	수 출	99,551	17,037	12,202	693
1969	수 입	97,972	18,445	7,614	692
	수 출	113,557	18,664	13,245	848

(일람표 5 생략 부록참조)

삼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든가 상품교역의 실질적인 증진 등이 바로 상기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음.

◎ 현재 서독과 동독 양 국민경제 사이에 연간 약 40억 DM 상당의 상품이 교역되고 있다.

◎ 1970년도에는 상품교역은 1967년도에 비하여 약 60% 증

[3] 독일 내국 통상의 발전

69.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분야에서도 볼수 없으리만큼 질서정연하며 고정된 관계가 양단 독일 간에 존속하고 있다.

독일 내국통상(IDH)에 관하여 쌍방이 재가될 것이다.
(주 41)

◎ 서독정부는 1970년도에는 1969년도에 비하여 약 15%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70. 독일 내국 통상(IDH)의 계약체결에 토대가 되고있는 것은 속칭 <백림협정>으로 알려져있는 1951년 9월 20일자 점령지역간 통상협정이다.

계약자체나 계약에 입각하여 설정된 여러가지 개별적인 규정은 그간 누차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적응하도록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쌍방이 인정하고 있는 상품교역을 위한 법적기반이 되고있다.

정치적인 고려에서 백림협정은 당시의 통화유통지역의 제한조건(부차규정)(Währungsgebietsklausel)으로 체결되었다. 즉 쌍방의 대표가 각기 통화유통지역에 대하여 서명하였다.

서경결과 백림도 계약에 포함되었고 통상의 일정한 부분을 백림경제가 차지하게 되었다. 본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연말에 3개월 기한부로 해약고지권이 있게 되어있다.

제 1 장

이 협정은 상품거래, 근무왕래, 지불제정 (Zahlungsverkehr) 등을 조정한다. 협정의 실질적 수행은 서독의 경우 1949년 이래 서백림에 주재하고 있는 점령지역 내 통상을 위한 신탁관리소가 관장하고 있으며 동독의 경우는 대외경제성이 관장한다.

- 청 산 (거래 완료) -

71. 계약변경을 고려하여 독일 내국 통상의 청산은 현재 다음과 같다.

- ◎ 상품교역은 전적으로 양 변이 즉 공급과 구입이 장기에 걸쳐 균등하게 한다.
- ◎ 지불제정은 쌍방의 지폐발행은행을 거쳐 어음청산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 ◎ 독일 내국 통상은 서독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 된다.
- ◎ 지불단위는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DM와 일치하는 어음청산단위로 한다.
- ◎ 통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지불제정에 있어서 과도인출 (引出)의 가능성에 대한 협정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Swing은 동독 측에서 최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동독의 사정이 지불곤란하다는 이유로 1971년에 예상하였던 Swing증가는 이미 1970년 5월에 그것을 앞질렀고 현재 440Mill. DM로 확정되었다.

- ◎ 지불계정의 공제 (Abrechnung) 는 여러가지 구좌 (Konto) 로 중앙은행에서 한다. 현재는 2개의 상품구좌 (Warenkonto) (I 과 II) 와 근무 구좌 (Dienstleistungskonto) (III) 로 한다. (주 43)
- ◎ Konto I 에 대하여는 교역할 상품의 협정가격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으나 Konto II 의 상품은 공급-구매가격에 따라 자유다 (주 44)
- ◎ 독일 내국 통상에 있어서 모든 상사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
서독과 동독내의 상대편 상사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입허가와 상품송하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독에서는 1969년 12월 이래 공급과 구입의 절반분에 대해서까지는 개별적인 승인을 얻을 의무가 해제되었다.
- ◎ 상술한 3개 어음정산 Konto 이외에도 1958년 이래 특별콘토 (sonderkonto S.) 가 성립되었다. 이것으로써 동독에게 현금지불구입의 가능성이 생긴 셈이나 실제 이용도는 미미하다 (주 45)

- 상품 구조 -

72. 서독은 동독의 가장 중요한 통상상 내국이며 동독 총 대외무역의 40%를 집중시키고 있는 소련 다음으로 중요한 통상 대상국이다. 1969년도에는 동독의 총 대외무역 매

상교의 10%가 서독에서 소화 되었다.

서독이 동독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서 동독 생산물 판매에 있어서 특혜형식의 특별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공업생산품의 판매면제

농업생산품에 있어서 Abschöpfung의 면제 과세 특혜 수송비 절약에 의한 경쟁의 이득 등이다.

서독에 대해서는 독일 내국 통상의 의미는 경제적 면에서 볼때 비교적 미미한 것이다. 통상상대국으로써는 동독이 11위를 차지하고 있다(덴마크 다음, 일본, 노르웨이 보다는 앞서고 있다) 서독의 총 대외무역고의 약 2%정도가 대 동독통상액이다.

73. 동, 서독 간의 통상 상품구조는 우선 두가지 특징을 들수 있다(부록 이람표 A1, 2 참조)

첫째로 양독일 간의 통상 상품구조는 양 독일의 국민경제 발전상황과 적합하지 않으며 양국의 총 대외통상 상품구조와 다르다.

둘째로 양독일의 통상상품구조는 별로 다르지 않으며 그 이유는 몇몇 상품군에 중점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내국 통상 상품구조는 일정하다.

투자용자재 특히 기계제조품의 비율은 22%~15%로 현재 비교적 적은편이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또는 반제품 특히 농업, 식품공산품이 15~25%로 최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독으로 부터의 구입상품은 대동소이하다.

1969 년도에 직물 식료품 등이 동독의 전 생산품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보아도 이 사실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품목확장제를 확립한바, 있고 그것은 동독의 고도로 질적향상한 공업완제품 판매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다.

1963년 이래 동독은 독일 내국 통상에서 일시적으로 중요한 공급품목이었던 갈탄, 광유생산품에서 상당한 매상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손은 차후에 농산품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보상할 수 있었으나 고급 공업 완제품으로 대치하였다.

공업, 완제품은 동독으로 부터의 총구입량의 46%에서 56%로 1967년과 1969 사이에 증가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보아 독일 내국통상관계가 정상화 도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발전 현상 -

74. 독일 내국 통상에 있어서 상품거래는 최근 수년간에 전체적으로 강력한 증진발전을 보이고 있다.

상호 공급량의 증가는 1960년~1969년 간에 2.1에서 3.84Mrd. DM로 상승하였다 (부록 일람표 A.1 참조)

물론 이러한 상승현상이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1960년과 1966년에도 상당한 매매감퇴가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기와는 달리 1966년 후에는 신속히 정제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 1969년에는 이미 매상한계선인 4 Mrd. DM에 육박하였고

1970년도에는 상호 상품공급액수가 4.5 Mrd DM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독이 서독에 대하여 발주량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독일 내국 통상 사정에 특이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독은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있는 한편 동독도 대서후 공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매계약의 증가는 서독정부가 제한 완화대책과 통상촉진 대책을 세움으로써 가능하거나 용이해진 것이다. (주 48)

물론 현재 독일 내국 통상의 실정은 대차대조표에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것이 주목할만한 사실이기는 하다. 그 이유는 급격한 매상고 상승의 결과 서독측으로 부터의 공급량의 증대가 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내국 통상의 지속적인 성장은 동독의 경제가 생산품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동독의 생산품은 서독 시장에서의 품질과다가격이 문제가 된다.

또한 이 통상의 경제상의 한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의 접촉 (주 49)

- 연령 생활자의 여행 -

75. 1969/70 년에도 역시 동독당국의 과전대표단 일행 또는 수입자 (代理人) 들을 제외하고서는 동독 시민중에서 노인 또는 조기에 근무불가능하게 된 자들에게만 서독에 여행할 수 있는 제한된 가능성이 부여되었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하는 인원수는 매년 백만이상이며 1965년 이래 그 숫자는 변치않고 있고 1970 년도에는 근본적이 변화는 보이지않고 있다.

- 동독 여행 -

76. 동독에로의 여행 왕래도 동일한 규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독 당국은 서독에 정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이 1년에 한번 친척 방문차 동독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그 친척이라는 것은 제 1 또는 제 2 친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문기간은 4주일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외에도 Leipzig가 대점본시를 참관하기 위한 여행은 가능하다. 기타 동독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기구의 초청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여행도 할수 있다. 이에 반하여 실업가들이 주최하여 조직된 관광여행 왕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독으로 여행하는 서독 시민의 수효는 동독의 연금 생활자의 여행자 수보다 더 많다. 즉 1967년도 약 1.4

제 1 장

백만명 1968년도 약 1.26 백만명이고 1969년도 1.1백만명의 서독 정주 독일인이 동독으로 여행하였다. 1970년 8개월간의 여행자수는 921,000명에 달하였고 따라서 1970년 1년간에는 1969년도에 비하여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

- 행정면에 있어서의 관청간의 공조(共助) -

77. 동독과 서독의 행정관청 사이에는 광범위한 공조왕래가 있다. 특히 신원부문, 청소년선도, 보험제도, 사회제도, 보건제도 등의 각 분야에 있어서 그러하다. 물론 동독의 관청들은 어느 일정한 구름의 인사문제 또는 사무분야에 관하여서는 공조를 거부하고 있다. 즉 서독 연방공화국으로부터의 망명자에 관한 문제 또는 가족 결합문제, 복구문제, 손해배상문제, 금전 반환문제 부담의 조정(전서중에 입은 손해의 보상)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서독의 지구 또는 실무상의 주무관청은 공조를 직접 동독의 지구 또는 실무상의 해당 관청에게 청원한다.

이러한 문제는 말단 행정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상례이다.

1968년 9월까지의 동독의 담당 각 부서에서 직접 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신원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결재서류를 지구위원회에 의해서 서독의 해장주(州) 내무장관에게 송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동독측에서 서독 관청에 공조신청을 전달해왔을 경우 그 처리는 통일성이 없다. 즉 각 관청이 직접 회답을 동독

의 해당관청에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법률상의 공조 -

78. 동독과 서독의 법원, 검사국 사이에는 민사문제와 형사문제에 있어서 법률상의 공조 또는 관청간의 공조거래가 존속하고 있다.

동독으로 부터의 신청은 재판중에 있는 법원이 직접 지구 또는 실무상의 당해 법원에 전달되지 않는다.

서백림 법원의 관할일 경우에는 동독 법무장관이 공문을 백림 사법평의회의원(Justizsenator)에게 발송한다.

해결된 안건은 백림법원 또는 서독법원에 의하여 동독으로 송부한다.

서독에서 제출하는 법률상의 공조신청은 법원에서 법원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법무장관을 거쳐서 동백림 법무부에 전달되고 해결된 서류는 동독으로 부터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서독으로 반송된다.

이러한 수속절차는 1970년 여름 이래로 실시하게 되었고 동독이 종래 존속해온 양 독일의 법원 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공조거래를 허용하지 않게 된 이후부터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의 공조지대는 완전히 폐지되거나 않을까하는 위협마저 생겼다.

양 독일의 검찰국 간에 법률상 또는 관청간의 공조거래 이루어지는 절차는 서독내의 지방 또는 실무상의 당해 검찰국이 신청을 동독의 검찰총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제 1 장

양 독일의 검찰국 간에 직접적인 거래는 1968년 이래 동독에 의하여 거부되고 있다.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법률상 또는 관청간의 공조거래는 1953년 5월 2일자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관청간의 독일 내국 공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치국가의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 교 통 부 문 -

79. 철도왕래 승객왕래는 1970년 기차시간표 변동이래 백림왕래는 개선되었다. 이에따라 백림 Hannover 간 한정구역을 전보다 한시간 단축하여 두개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여행용 차량도 부수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철도화물왕래는 1969년 이래 사정이나 여건에 변함이 없다. 도로교통에 있어서도 여객수나 기타 상황에 변한 점이 없다.

백림왕래는 1968년도에 비하여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화물자동차 298,000대 승용차 918,000대 내륙선 박왕래에 있어서는 백림왕래가 쌍방간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독과의 선박왕래는 전년도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양 독일간의 항공왕래는 아직도 없다.

- 우 편 과 전 신 부 문 -

80. 양 독일간의 우편왕래는 특히 편지, 소화물, 우편소포 왕래

는 아직도 장기 유효기간부이기는 하나 해결되어가고 있다. 동독의 검열, 압류처분 등에 의한 방해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전신왕래에 있어서의 난점은 아직 제거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1970년에는 해제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 4월 29일 회담이 성과로써 서독체신부와 동독체신부 간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양측은 전화선과 테렉스선을 연결시켜 줄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독일 내국 전화왕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존속해온 34선 외에 40개 전화선을 연결시키게 되었다. 그 외에도 양 백림 간에도 테렉스선과 전보통신선이 연결되었다.

이러한 개선책에 의하여 통일 내국 전화소통에 있어서 활목할만큼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소통의 정상화를 위하여서는 계속 전화선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동서백림간의 전화소통의 재개는 아직도 여전히 참고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1970년 4월 29일자 협정에 있어서 동독의 우체국에 매년 균일료지불이 규정되어 있고 1973년까지 균일료금지불은 연간 30 Mill. DM에 달하고 있다.

이 금액은 편지, 소포, 전화, 전보, 테렉스, 해양통신, 라디오중계 등의 업무와 보충선시설비용 전력선 시설비에 소요된 양측의 비용 보상에 충당한다.

- 문화 접촉 -

1969/70년에는 문화적 접촉면에 새로운 진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정부수뇌회담이 Kassel에서 개최된 후에도 동독측에서 재차 문화적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승인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서독이 문화접촉을 계기로 동독에 침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문화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동독자신은 서독 내에서 그들의 독일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온갖짓을 다하고 있다.

- 운동 관계 -

82. 1970년도 독일 내국 운동교류에 있어서 대전회수를 개관하며 1969년도에 비하여 후퇴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1969년도에는 대전수 57회 참가인원수 992명이었음에 반하여 1970년 전반기에 대전수는 불과 10회에 참가인원수는 173명이다(그중 서독주최 3회, 동독주최 7회) 이에 반하여 국제 운동경기에의 출전회수는 감퇴하지 않고 있다.

1970년 7월 2일 최초로 Halle/Saale에서 양독일 체육계 대표단이 회담하였다(서독:독일 스포츠연맹 DSB, 동독:독일 체조-스포츠연맹 DTSB) 회의석상에서 DTSB 회장은 스포츠교류는 정치적 예정조건에 제약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언명한바 있다.

DTSB가 확인한 것은 그들이 국제규정에 입각하여 행동하는한 IOC와 국제연맹에 의하여 보장된 서독 스포츠연맹

의 입장을 인정함과 동시에 서백림을 서독운동기구의 소속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 11월초 München에서 속개된 회담에서는 양 독일간의 스포츠관계를 재개할 것에 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 청소년 회합 -

83. 1970년도에는 성장하는 세대간에 수많은 회합이 있었다. 이러한 회합이 주로 동백림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동서독 각 지방출신이었다. 동독의 여러 도시 동촌에서도 양 독일출신의 청소년들이 대화를 나누고 토론도 하였다 (제 Ⅲ장과 비교)

제 1 장

부 록

제 1 장에 대한 주해

1. BGBI, II. 1955 년도판 P. 305
2. Europa-Archiv, 1955 년도판 P. 6534
3. BBI. 등록판 I, 1955 년도 P. 918
4. 백림문제에 관한 기록문서 (1944 - 1959)
München 1959 년도판 P. 183 P. 229
5. 동독의 GBI 1967 년도판 P. 50 (포랜드)
P 54(CSSR), P 120 (헝가리) P 123 (불가리아)
동독 GBI. 1968 년도판. P. 348 (몽고)
6. 1954년 12월 15일자 외국 근무처에 관한 Vo와 비교
VOBI von GroB-Berlin I, 1954 년도판 P. 632
7. BGBI .. II, 1955 년도판 P. 283
8. BGBI .. II, 1963 년도판 P. 707
9. BGBI .. II, 1955 년도판 P. 262. BGBI .. II. 1961 년도
판 P. 745
10. BGBI .. II. 1955. P. 266
11. NATO-Kriterien(NATO 試金石)에 따름 백림원조 제의
12. 기타의 국방비는 기타의 행정분야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300000 명의 민병대에 대한 비용은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3. Archiv der Gegenwart 1954 년도판 P. 4765
14. MamPel. 백림의 소련점령지구 1963 년도판. Frankfurt/M

-Berlin에서 발간 P. 383

15. <politische, militärische und wirtschaftliche Zusammenschlüsse und Pakte der Welt> 제 9판과 비교 1969
6. 30 일 신개정증보판
Heinrich von Siegler, Hans-Wilhelm Haers 공편
1969년도 Bonn-Wien-Zürich 판 . p. 55 이하
16. RGW정관은 1962년 6월에 변경되었음
(동독 GBI, I. 1960. p. 283)
17. <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 과 비교
편집자 구주공동체 사무총장 . Brüssel 1970년도 연간 제 3호
Nr.2. p. 19 이하
18. < Die deutsche Wirtschaft und die EWG > 와 비교 편
집자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신개
정증보판 제 3판 Bonn. 1969년도 p. 36
19. < EWG-Agrarmarkwirtschaft im Zeichen des Übersch-
üBabbbaus > 비교 < Nachrichten für den Außenhandel
Nr.4 1970년 1월 6일 간행 > 에 수록
20. Lothar Floss 저 < Stufenplan für den Aufbau einer
Winer Wirtschafts-und Währungsunion in Europäisch-
en Gemeinschaft > 참조 < Der deutsche Volks-und Be-
triebswirtschaft > 16년간 (1970)
Nr. 2. p. 21이하에 게재분 >
21. < Gegensätze und Kompromisse i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sdebatte > 참조 < DIW-Wochenbericht,
Nr. 26/1970 에 게재분 1970년 6월 25일 발행 p. 18

제 1 장

22. < J.F Deniauer Eine neue Etappe bei der Verwirklichung der gemeinsamen Handelspolitik > 참조 < Bullet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3. Jg (1970), Nr.2 p.5 이하에 게재분 >
23. 몽고인민공화국 이외에 유고슬라비아와 부분적 으로 RGN와 유대를 맺고 있다.
24. Rocznik polityczny i Gospodarczy. Warszawa 1969 년판 P. 826
25. < politische militärische und Wirtschaftliche Zusammenschlüsse und pakte der Welt (Anm. 15) P. 29 이하 > 참조
26. 1970년 7월 구주 13개국 과학연구원장들은 구주 우주국 설립에 합의 ELDO, ESRO, CETS가 이에 편입될 예정, 이직은 구주 우주계획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 Europa hat kein Geld für Weltraumpläne > 참조
< Süddeutsche Zeitung Nr 177 1970년 7월 25,26일에 게재분 >
27. < politische. militärische und wirtschaftliche Zusammenschlüsse und pakte der Welt (Anm.15), S.32 >
참조
28. < United Nations. Economic Bulletin for Europe, Bd XXI. Nr. 1. S.21 > 참조
29. < Office Statistique des Communautés Europeenes, Bloc Orientale, 1969.

- Nr.6. P. 15 >에 의거하여 산출
30. < Bocznik polityczny i Gospodarczy, warszawa 1969 P. 826 >인용
 31. 사이푸라스 .쿠웨이트 .레바논 .Mali .모로코 .삼비아 .튀니시아
 32. 부라질 .치리 .에쿠이도르 .코롬비아 .메키스코 .우루가이
 33. 치리 .사이푸라스 .이락 .코롬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공화국
 34. < Kurt Hesse 저 Das System der Entwicklungs hil-
fen.Berlin 1969. P. 36 >참조
 35. < A. Kurse-Rodenbacker, 와 H.Dumke 공저
W.V. Götz 협조 : Kapitalhilfe Berlin 1970 년판 P.16 >
참조
 36. 1950년~1965년 간에 서독은 28728.1Mill.DM 동독은
960 Mill DM 조달.
 37. 소위 < 1% 약관 > < partners in Development,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Ch-
airmann : Lester B. Pearson), New York-Washington -
London 1969 년판 P. 143 이하 >참조
 38. UNCTAD(TD/B/128), 1967년 7월 21일 UNCTAD(TD/
BC. 3/61) . 1968년 12월 11일 UNCTAD(TD/60) 1968
년 2월 1일(광의의 신용대부)
 39. < Memorandum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zur
DAC-JahresPrufung 1969 년도판 P. 21, 1970 년도판
P. 25 >참조
 40. 농업원조는 모든 농업생산실적의 증진 . 생활능력있는 경영체

제 1장

창설 건전한 농업구조를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 Wissenschaftlicher Beirat zur Agrarhilfe, Gutachten zur Agrarhilfe (1964) >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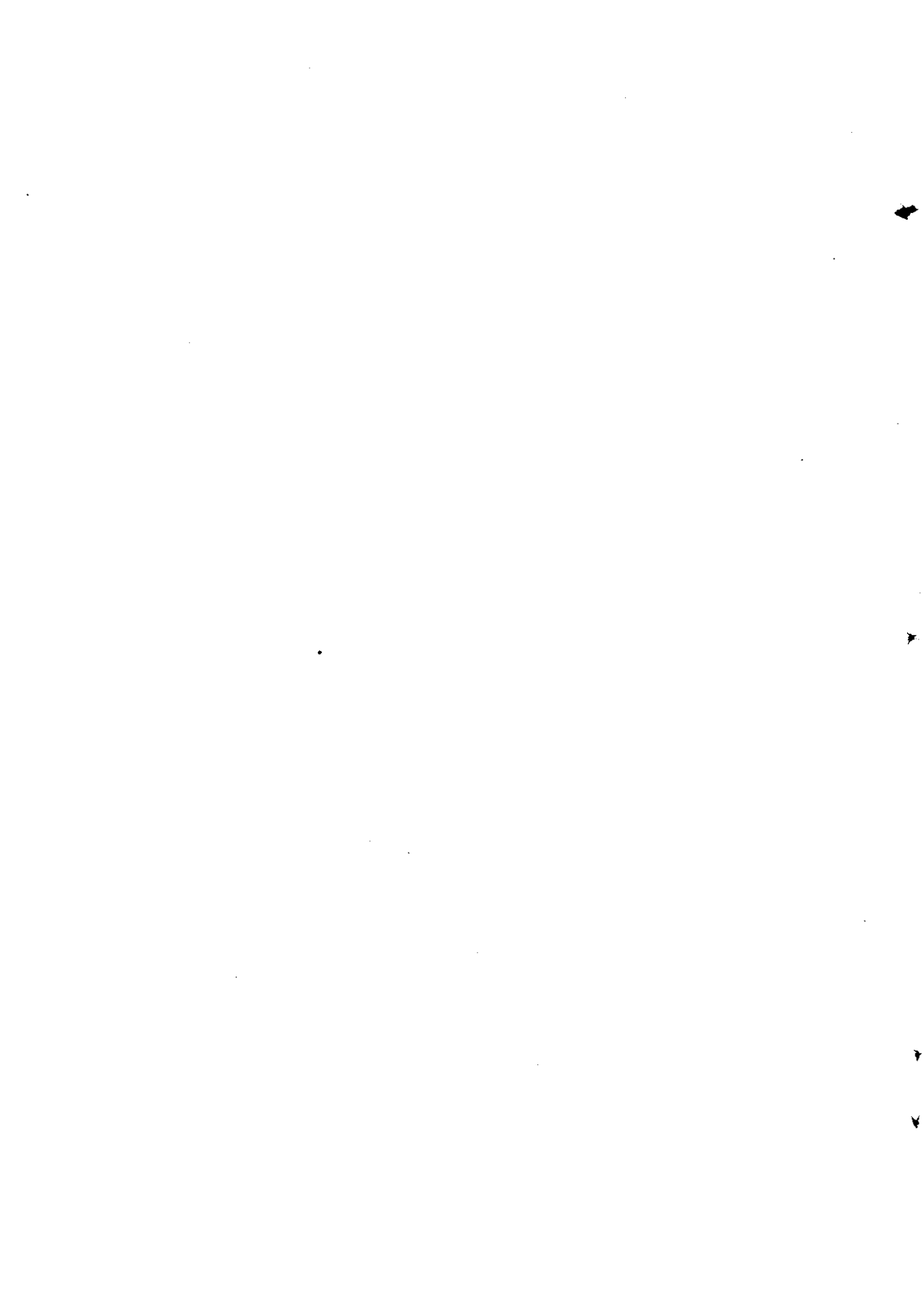
(Handbuch der Entwicklungshilfe II.A. 11/21 에 게재분)

41. 연방통계국 자료에 의거 (1969 년도 . 제공칙 180 Mill.DM. 구입칙 80 Mill.DM 의 수행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42. 다음 문헌 참조 : < R.Sieben 저 Innerdeutscher Handel, 3. Aufl. Frankfurt am Main; > H. Lambrecht 저 Die Entwicklung des Interzonenhandels von sein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Berlin 1965 (특별판 DIW Nr.72 의 특별판)
43. Konto I 에 대하여는 소위 <경물품> 즉 서독이 구입하는 물품으로는 광산물, 기계제조품, 공급하는 물품으로는 철, 강, 철제품, 기계제품 등이 공제되어 있고 Konto II 는 소위 <연물품> 을 공제되어 있다.
44. 최근 서독의 구매정책이 현저히 자유화함에 따라 공산품에 있어서 현재 약 70 품목이 아직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약 200 개의 배당액이 정해져 있다.
45. 현금지불 구입이 최고에 달하였던 1967년에 약 100 Mill DM 이다.
46. IDH (독일내국통상) 은 대외무역과 엄격히 구별된다.
47. 1969 년 서독의 공급은 약 60%. 1970 년 전반기에 약 30% 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각 전년도비)
48. < die Wochenberichte des DIW, Berlin : Interzonenhandel zwischen Stagnation und neuen Impul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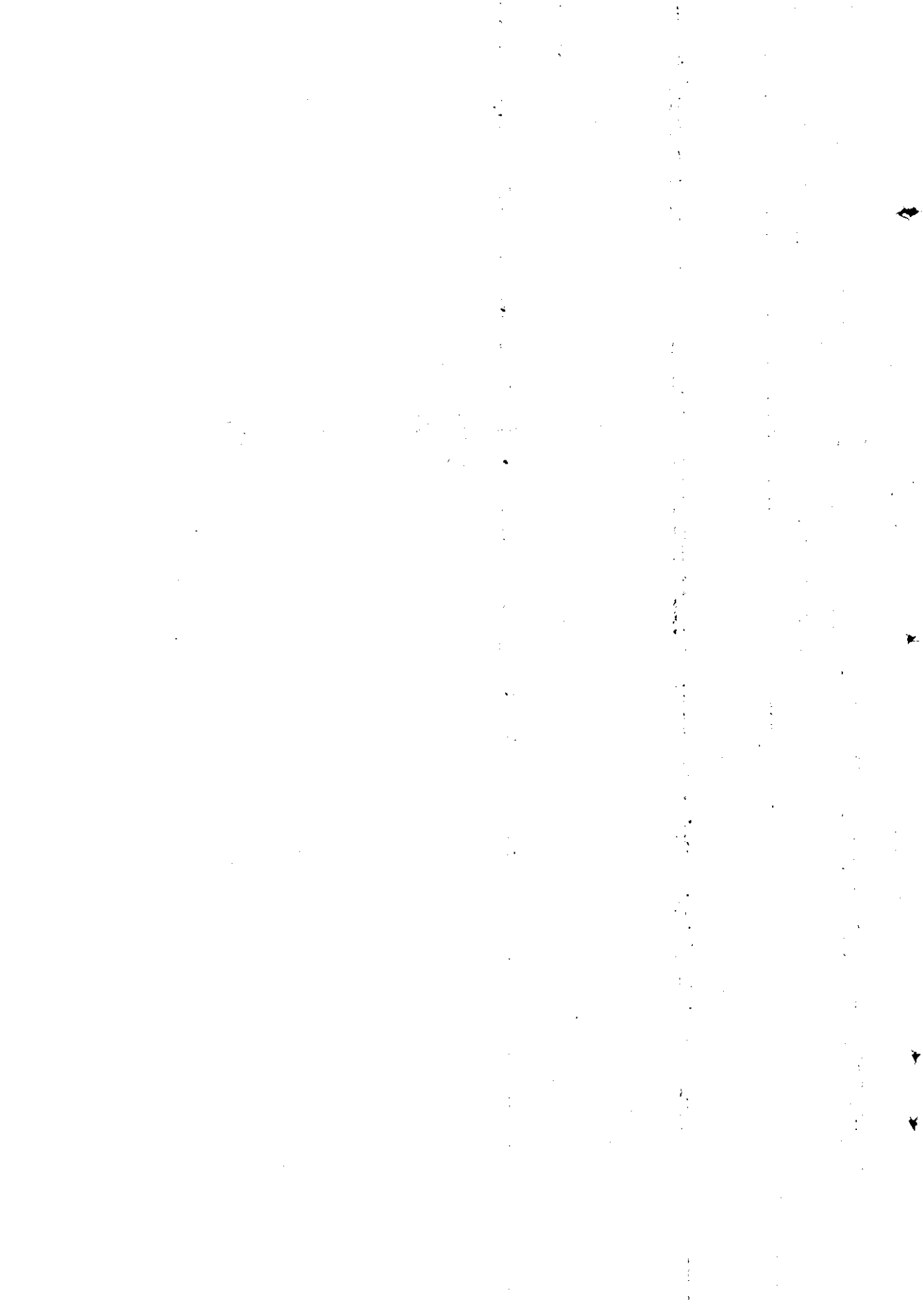
(40/1976) >참조

49. 여기에 인정한 접촉들은 제Ⅲ장에서 계속하게 된다.

이 조항은 1970년 1월의 국정보고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던 분이다.



제 2 장 인구와 생산구조



제 2 장 인구와 생업구조

- ☒ 면적으로 보아 동독(108 173 $g km$)의 2배 정도가 되는 서독(면적 = 248 571 $g km$)에 1969 년에 동독보다 약 3 배되는 인구가 살았다. (동독 = 일천칠백칠만육천명 - 17,076,000 명, 서독의 인구 = 육천 팔십 사만 팔 천명 - 60,848,000). 인구를 기준으로 본 동서독의 관계도 계속 서독쪽으로 기울어 지는 방향으로 변해 가고 있다. 그 중요한 두가지 이유를 들라면 인구의 자연증가 원인을 들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동독에서 인구가 서독으로 옮겨가는 데서 그 둘째 이유를 찾을수 있겠다.

(84 - 89)

- ☒ 서독의 인구밀도는 1969 년 동독의 인구밀도보다 훨씬 높은 율을 보였다. (서독의 경우 매 평방킬로미터에 245 명의 인구가 살았고, 동독의 경우에는 매 평방킬로미터에 158 명의 인구가 살았다)

(125)

- ☒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성격이 형성된 인구의 연령분포(Alter-saufbau)는 동·서독 공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경우 남-여 주민과 그리고

취업가능 인가와 취업 불가능한 노년층 인
구간의 불균형 상태는 서독의 경우와는 달
리 훨씬 그 차이가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눈에 띄는 현상이
다.

(90 - 93)

- ☒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점에 관해서 살펴
보면 동·서독 공히 조혼 (Frühhe) 을
하고 일찍이 가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출생인구는 동·서독 공히 줄어 들고 있다.

(94 - 110)

- ☒ 인구사망을 볼것 같으면 서독의 경우는 중
년층 남자에 사망율이 비교적 높고, 동독의
경우에는 여자에 이 사망율이 높다.

(111 - 115)

- ☒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보면 동·서독 공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여 주
고 있다. (출생과 사망율 간에는 차이가
있다)

(116)

- ☒ 이혼율은 동·서독 공히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 매 일천명을 단위로 살펴
볼 때, 동독에 있어서 이혼하는 수는 지난
수년 동안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바
있어, 그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동독이 서독

보다 반쯤 더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107 - 108)

- ☒ 서독의 경우 주민의 수가 적은 지역과 그리고 불리한 연령구조 (Altersstruktur) 를 나타내 보이던 지역들은 지난 몇해 사이에 외국인이 들어 오므로써 균형이 이루어 졌다.

(117 - 120)

- ☒ 주민의 분포가 낮고, 불리한 연령구조를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 인구의 접입 (외부로 부터) 이 없는데서 오는 여러가지 영향등은 동독에 있어서는 거의 전 인구를 완전히 계획적으로 분산 및 편입시키므로써 해결해 냈으나 필요 이상으로 인구의 편입을 조작했다. 이와같은 인구의 분산 편입은 특히 여성과 연금을 타는 나이에 달한 노년층의 취업자들에 있어서 그러한데, 동독에 있어서의 여성과 노년층 취업 비율은 서독보다 훨씬 높다.

(135 - 141)

- ☒ 동독에 있어서의 취업율은 지난 몇해 동안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계속 상승했다.

1969년 동독 전체인구중 50.9%가 취업을 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취업

율중의 하나다. (서독=44.4%)

(136 - 137)

- ☒ 취업인구중에서 피고용자 비율은 동·서독 공히 늘어나고 있다.

(131)

- ☒ 경제분야를 기준으로 살펴 볼때의 생업종사자의 분포는 동서 양독 공히 유사하며, 고도의 산업화된 국민경제의 기본구조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독에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은 서독의 경우보다 높고, 근무분야(Dienstleistungsbereich)별로 볼 때에는 서독의 경우보다 낮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발전경향은 동·서독이 다 같이 비슷하다. 즉,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게(동일하게) 높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 농업분야의 취업은 줄어 들어가고 있고, 근무 분야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145 - 150)

- ☒ 직업구조도 대체로 동·서독이 비슷해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

(151 - 157)

- ☒ 60년대에 서독은 우수한 노동력을 동독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을 받은 지식층이 동독으로

부터 먼 곳으로 (특히 서독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독의 경우 사정
이 달라져서 대학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전
체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독이 서독
을 능가한다고도 볼수 없을지 모르나 비슷
한 수준에 달했다고 할수 있겠다. 여기에
서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은 동독이 전문학
교를 졸업한 많은 기술자를 가진 점이며,
이 점에 있어서 동독은 서독을 능가하고
있다.

(158 - 166)

- ☒ 우수한 상급 노동력의 전문 분야별 구조
(Fachrichtungsstruktur)를 살펴 보면
동·서독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동독은 공학과 자연
과학 방면의 직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크게 두드러 지고 있다.

(167 - 171)

1. 인구와 주거지 (Bevölkerung und Raum)

a) 주거민과 연령구조 (Wohnbevölkerung und Altersstruktur)

인구현황

84 독일연방공화국 (西獨) 의 영토는 248 571 $q km$ 로서, 영토가

제 2 장

108 173 *qkm*가 되는 동독(DDR)보다 배이상 크다.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00:44 비율을 서독과 동독이 각각 보이고 있다.

- 85 동·서독의 이 영토에 거주한 인구를 살펴 보면 1969년말 평균 60,848,000명이 서독에 살았고, 동독의 인구는 17,076,000명이 였다. (주 1)

이에 따르면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100:28이 된다. 서독과 동독의 지면과 인구의 비교만을 보더라도 동·서독에 있어서의 인구밀도의 차이를 알아 볼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제 1 절 d 항목을 참조 해 볼것)

독일인과 외국인

- 86 1969년말 서독의 인구는 61,195,000명이었는데 이중에서 58,750,000명이 독일인이 였고(독일국적소유자), 2,445,000명이 외국인이었다.

동독에 거주한 외국인의 수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대략 독일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서독의 경우와 비슷할 것이다. 동·서독에 있어서의 독일국적 소유자의 인구비율은 이렇게 볼때 100:29가 된다.

종 교

- 87 종교를 기준으로 볼 때의 인구 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64년에 서독에 있어서의 신·구 기독교에 속해 있었던 신자는 전 인구의 96.3%였고, 동독의 경우는 이 숫자가

67.5%였다. 서독인구의 49.7%가 신교신자였고, 동독인구의 59.4%가 신자였다. 구교신자는 서독의 경우 전체인구의 46.6%였고, 동독의 경우에는 8.1%밖에 되지 않았다. 서독의 경우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에서 얼마 되지 않은데 비해 동독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31.6%가 아무런 종교를 믿지 않고 있었다.

인구의 증가

88. 독일연방공화국(西獨)의 인구는 -해마다 늘어난 성장비율은 비록 다르더라도 - 1964년에서 1969년까지 사이에 줄곧 끊임없이 늘어 나서 58,266,000명에서 60,848,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2,582,000명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것을 퍼센트로 계산하면 4.43%가 늘어난 것이다. (도표 A 10을 참조해 볼것)

이와 동일한 기간 사이에 동독의 인구는 16,983,000명에서 17,076,000명이 되었으니, 전부 합쳐서 93,000명의 인구가 늘어났다. 퍼센트로 보면 0.55%가 늘어난 셈이다. 그렇지만 동독의 경우에 있어서 숫자상으로 나타난 인구의 증가율은 최고 증가율을 나타내 보인 1968년의 인구 17,080,000명을 생각해 보면 동독의 인구가 1964년에 1969년에 이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중단없이 증가했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다. (주 2)

동·서독의 인구비율은 계속적으로 서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서독의 인구는 두가지 점으로

증가해 가고 있다. 그 첫째로 인구의 자연증가를 들수 있고, 그 둘째로는 서독으로 들어오는 넘쳐나는 인구이동을 들수 있다. 그러나 동독의 인구는 경제상태에 빠져 있다.

89 1968년을 기준으로 해외 연방통계국(統計局)이 산출해 낸 예상에 의하면 기원 2000년 1월까지의 서독의 인구는 68,947,000명으로 늘어 나겠다고 한다. (1968년을 기준으로 해 보면 15%의 인구증가가 있게 되는 셈이다)^(주3)

1964년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낸 좀 오래된 공식 계상 통계에 의하면 기원 2000년의 동독 인구는 19,458,000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주4)

1964년에 작성한 예상통계와 그리고 너무나 과도하게 예상치를 매긴 1968년의 예상통계(17,182,000)에 의하면 기원 2천년 까지의 동독의 인구 증가율은 13.2%에 해당된다.

동·서독이 산출해 낸 인구증가 예상은 양쪽 다 같이 실제의 인구 발전과는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서독의 경우 연방 통계국이 최근 산출해서 실증한 바에 의하면 이미 1970년의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예상 인구 증가율 보다는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다.

동독의 인구 증가 예상치는 이미 1969년에 실제인구증가치와도 크게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예상 인구는 17,214,000명이 였으나 실제인구는 17,075,000명이였다)

연령별 분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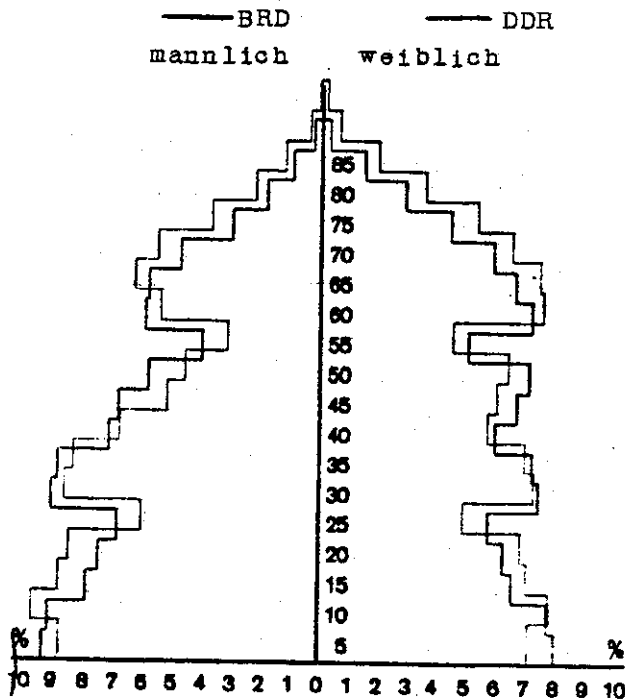
90 피라미드식 분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연령분포 구조는 동서독 공히 비슷하다. (도표 A 11참고)

이 분포 구조의 몇가지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20세에서 25세까지 사이의 연령군이 크게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인구의 출산이 줄어들었다.)
2. 35세에서 40세까지 사이의 연령군이 크게 줄어들었다. (1930년대의 경제공황동안 인구의 출산이 줄어들었다)
3. 40세 이상 인구층에 있어서 남자가 부족하다. (양차 세계대전에서 남자들이 전사한 때문이다)

Schaubild 1

Altersstruktur der Bevölkerung Ende 1968



제2장

4. 50세에서 55세까지 사이의 연령군에 있어서 인구가 크게 줄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생산이 줄어 들었다)

91 그렇지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다.

1. 1968년의 서독인구의 18.9%가 60세 혹은 그 이상의 연령자 였는데 반하여 동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연령군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2. 10세에서 20세까지의 연령군에 해당하는 인구분포는 서독의 경우 전 인구의 13.5%였고, 동독의 경우는 14.9%다.
3. 40세에서 55세 까지에 해당하는 인구 분포는 서독의 경우 전 인구의 16.9%를 차지하고 있고 동독의 경우는 이 수치가 14.6%다.
4.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동·서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남	여
서독	1000	1106
동독	1000	1179 (주 5)

92 서독의 경우 15세에서 65세까지에 해당하는 주민이 전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독의 경우는 이 연령군에 해당하는 총이 전체 동독 인구의 61%만 차지하고 있다. (주 6)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독에 있어서는 취업할 수 있는 노동능력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과 노인이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독의 경우 많기 때문으로도 (출기)

더욱 그러하다.

1968 년의 생업능력자, 유년자, 노년층

연령군	서독의 비율에 있어서 동독		
	계	남	여
0세 - 15세이하 까지	28.6	28.7	28.6
15세 - 65세이하 까지	27.0	25.7	28.1
65세 - 2이상	33.8	33.6	34.0
계	28.3	27.3	29.1

b) 인구의 자연발전과 인구발전의 제동인

- 93 인구의 자연발전은 인구의 출생수와 인구 사망율에서 매년 생겨나는 차이에서 오는 결과다. 생산율에 대해서는 주어진 인구의 연령구조와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임신가능한 연령에 해당하는 여자들에 있어서의 생산수등)

일반적 (Generatives Verhalten)

출생비율 (Geburtenquote)

- 94 출생비율 (인구 매 1000 명에 대한 출생 - 사생아를 제외한 -) 은 1969 년서 서독이 14.8 이고, 동독이 14.0 이 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동·서독 공히 구라파에 있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 현재 가장 낮은 출생비율을 가진 나라임을 말해

제 2 장

준다. 1968년에 독일연방공화국(西獨)은 (26개국중에서) 끝으로 일곱(七)번째 나라였다.

독일민주주의인민공화국(東獨)은 1968년에 구라파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스웨덴과 더불어 끝에서 두번째 나라였다. 룩셈부르크가 맨 마지막 나라였다. 이와 같은 「서열순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뿐만아니라 인구의 연령구조도 역시 중요성을 갖는다.

출생의 감퇴 (Geburtenrueckgang)

- 95 1964년에서 1969년까지 사이에 동·서 양독에 출생 감퇴 현상이 일어났다. (도표 A 12 와 13 참조)

도표 7 출 생 감 퇴

해	출 생		퍼센트율로본 변화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4	1 065 437	291 867		
1969	903 458	239 256	-15.2	-18.0

- 96 이와 같은 인구감퇴현상이 일어난 원인중의 하나는 여성 인구에 있어서의 연령구조의 변화라 하겠고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일반적인 경향에 변화가 생긴데서 찾을 수 있겠다.

도표 8 연령과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본 출생수의 변화

해	서 독			
	살아서 난 출생			
	실 제 수	예 상 수 ^(주)	연령으로 인 한 변화%	일반경향으로 인한 변화%
1964	1 065 437	1 065 437		
1969	903 458	1 051 847	-1.3	-13.9
해	동 독			
	살아서 난 출생과 사생아			
	실 제 수	예 상 수 ^(수)	연령으로 인 한 변화%	일반경향으로 인한 변화%
1964	291 867	291 867		
1969	239 256	277 759	-5.2	-12.9

97 1964년에서 1969년까지 사이에 불리한 연령구조로 인해서 일어난 출생감퇴현상은 서독의 경우 1.3%에 지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동독의 경우는 5.2%나 된다.

98 일반적인 경향으로 인한 변화는 그 유사성이 크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서독이 동독보다 약간 많은 감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독=13.9%, 동독이 이에 대하여 12.9%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주 7)

99 살아서 출생하는 유아의 수를 15세에서 45세까지의 여성 인구에 관련시켜 볼 때 이 수치는 일반적인 임신가능

제 2 장

숫자 "에 달한다. 일반적인 경향과 비추어 볼 때 이 수치는 달라진다. 동·서독과 같이 수치가 감퇴되어 가고 있다. (주 8)

도표 9 일반적인 임신가능 수치

해	서 독	동 독
1964	86.8	87.5
1969 ^X	75.0	71.3

X = 임시 숫자

- 100 매 연령별로 구분하여 매 1000명 여자에게서 얻어지는 출생수 (Geburtensziffer) (연령별 임신가능수)를 고찰해 보면 출생 빈도수가 연령이 젊은 어머니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출산이 점점 아주 특정한 연령에 집중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서독의 경우 관찰해 낼 수 있다. 서독의 경우도 특정한 연령에 집중되는 현상은 일어나고 있으나, 젊은 어머니들 쪽으로 출산빈도수가 이동(移動)되지 기울어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 101 연령별로 본 임신(가능)수치는 동·서 양독이 1964년 뿐만 아니라 1969에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1964년에 서독에서 가장 높은 출산수치를 보여 주고 있는 연령군은 24세에서 25세까지의 여자들로 나타나 있고(이 연령에 해당되는 여자 매 1000명에 대하여 179명의 출산), 동독의 경우 최고 출산율을 보여주는 연령은 벌써

20 세에서 21 세까지의 그룹이다. (매 1000 명의 여자에 대하여 192 명의 출산) 이후 4 년이 지난 뒤 1968 년에는 서독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연령군은 21 세에서 22 세의 여자층이 였고 (160 명), 동독의 경우는 20 세에서 21 세가 이 높은 출산율을 보였는데, 4 년전보다는 더욱 높은 율을 보여 주고 있다. (205 명)

- 102 동·서 양독에 다 같이 가족계획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특징으로 들수 있는 현상이다. (주 9)

결혼, 이혼 및 결혼여부로 본 가정 상황 구조

결 혼

- 103 초혼 연령에 대한 평균을 낸 통계에 의하면 (도표 A 15 와 A 16 을 참조!) 서독에 있어서의 결혼 연령이 동독의 경우보다 높다 (늦다). 동독의 출산율과 서독의 출산율을 비교해 볼때 서독이 젊은 여자들에 있어서 동독 보다 적은 출산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결혼 연령이 동독보다 늦은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 두 현상은 상호 일치하고 있다.

평균 결혼 연령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 제 2 결혼과 그 뒤의 결혼에 관한 것도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로서는 초혼의 평균 연령을 알수가 없다.

1968	남		여	
	서독	동독	서독	동독
평균 결혼 연령	28.5	28.2	25.2	25.2
초혼의 평균 결혼 연령	25.8	24.5	23.2	22.4

104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별 조사에 의하면 서독의 경우 1968년에 19세때 가장 결혼을 많이 했는데 이는 전체 결혼자들을 연령별로 볼때 거의 12%에 해당하고 동독의 경우에는 18세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혼했는데 동독에서 1968년에 결혼한 전체 수의 16%에 가깝다.

1968년 이전의 몇년 동안에도 연령별 비율은 이와 비슷했다. (주 10)

105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서 보다 늦게 결혼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즉, 서독에 있어서 1968년에 결혼한 전체 남자의 43%, 전체 여자의 67% 가까운 사람이 아직 25세가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동독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결혼한 모든 남자의 51%가 그리고 결혼한 모든 여자들의 69% 넘는 사람들이 그들이 결혼할때 아직 25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106 매 인구 1000명을 단위로 해서 결혼을 하는 수는 동·서독 공히 1960년대에 줄어 들었다. 이것은 결혼 적령기에 달하는 사람들이 결혼직후에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 60년대말에 와서는 결혼하는 수가 약간은

제 2 장

- 108 동독에 있어서 서독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혼법과 종교(신앙)구조 그리고 여성층이 광범히 하계 경제적 독립(自)성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인한 차이가 그 원인으로 생각되어 질수가 있겠다.
- 109 동일한 연령층을 상대로 동·서독의 이혼자들의 상호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동독의 경우가 모든 연령군에서 서독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결혼 여부로 본 가정상황 구조

- 110 동·서독이 보여주고 있는 결혼 연령의 차이는(도표 A 15 와 16을 참조할것) 결혼 여부로 본 가정 상황 구조에도 나타나 있다. 20세에서 25세까지의 남자들 중에서 서독의 경우 미혼자가 82%에 가깝고, 동독의 경우는 61%에 약간 미달하는 형편이다. 20세에서 25세까지의 여자들을 살펴 보면 서독의 경우는 꼭 절반이 미혼이고, 동독의 경우는 미혼녀가 농이 약간 못된다. 이에 해당하는 연령군의 결혼관계를 살펴 보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비슷한 차이를 동·서독이 보여 주고 있다. 배우자를 외별하는 연령구조를 살펴 보면 동·서독의 경우 그 차이가 별로 크지(보통) 않다.

사 망 율

- 111 인구의 자연 발전문제는 서독이 동독보다 다음의 두가지 이유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첫째=서독은 동독보다 유리한 연령구조때문에 출산율이 동독보다 높다. 둘째로=그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령구조라는 이유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인구 매 1000 명을 기준으로 본 매년의 사망율을 바탕으로 한) 서독의 인구 사망율이 동독보다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표 A 18 참조할 것) (주 11)

유아 사망율

112 1966년 이래 유아 사망율이 서독의 경우 동독 보다 높다. (도표 A 20 참고할 것) 유아 사망율의 감소도 1964년에서 1969년 까지 사이에 동독이 서독보다 더 많이 줄어 들었다. (동독=30% 줄고, 서독=9%가 줄어 들었다)

113 유아 사망율은 생후 일개월에 있어서의 사망율을 살펴 보면 서독의 경우가 동독의 경우보다 더욱 불리한 형편이다. 동독이 이 분야에서 이와 같이 결정적인 성과를 올린 것은 산모 보호와 유아 보호 체제를 광범히 하게 시행했던 이유이다. (제 6 장 참고할 것)

그러나 생후 2개월 부터는 유아 사망율은 서독의 경우가 동독의 경우 보다 낮다.

114 구라파 26개국 중에서 유아 사망율의 경우 서독의 제 12위를 차지하고, 동독은 불란서와 더불어 9위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수명

115 남·여별 그리고 연령별 사망율에 상응하게 출생에서 고령에 이르기 까지 볼 때 서독에 있어서의 남자의 평균 수명은 동독보다 낮다. 그러나 소녀와 부인들의 경우는 이것이

제2장

반대로 동독이 서독 보다 평균 수명이 낮다. (도표 A 21을 참고 해 볼것)

출산 과잉

- 116 출생아수와 사망자수를 교차해 보면 서독의 경우 통계적으로 산출 계산된 최종년도의 수치는 159000명의 출산과잉을 보이고 있고 동독은 4000명의 사망과잉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69년도) (도표 A 13을 참고 할것) 인구의 상대적 자연 변화율은 동독이 0.02% 이고, 서독이 0.03%다. 이로서 서독은 세계 인구의 자연증가면에서 끝에서 네 (4) 째가 되고, 동독 제일 마지막이 된다. (주12)

○. 인구의 이동

해외 이주 (민)

- 117 서독의 인구는 오래전 부터 서독을 떠나서 이주해 가는 사람보다 서독으로 들어 오는 사람수가 초과하므로 인해서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 이주 (민) 조치 = Positiver Wanderungssaldo). 지난 10년동안 단 한번 부정적 이주민의 조치현상이 일어났다. (negativer Wanderungssaldo) 즉 1967년도의 경우 그러므로 국외 이주는 인구 발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도표 A 22 참조할것)

도표 13

서독에 있어서의 국외이주 (민) (이 통계에서는 동독과 서독간의 인구 이동을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독과

오더 나이세 (Oder - Neiße) 강 이차지역간의 인구 이동도 제외되어 있다.

단위 = 1000

년 도	서독으로 들어 온 인구	서독을 떠난 인구	결과 (差異)
1962	566.5	326.3	+ 240.2
1963	577.0	426.8	+ 150.2
1964	698.0	457.8	+ 240.8
1965	791.7	489.5	+ 302.2
1966	702.3	608.8	+ 93.5
1967	398.4	604.2	- 205.8
1968	657.5	404.3	+ 253.2

쑤오쓰 = 전문총서 A, 제 3 권, II, 1967년, 1968년분은 연방 통계국 자료에 의함.

독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자 (민)

118 독일로 들어오는 이주민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1969년의 평균을 보면 서독의 경우 1,36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했다. 1970년에는 이 수자가 1,800,000명으로 늘어 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해당하는 동독의 경우를 서독의 경우와를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끔 전해지는 뉴스에 의하면 동부 진영국가 (Ostblocklander) 들에서 온 노동자들이 지난 얼마 동안 동독에서 취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

제 2 장

이 동독으로 와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기는 한다.

동독에 있어서의 거주 인구의 발전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동·서독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이가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인구와 생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잠재능력에 관계되는 모든 구조비교의 경우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를 관찰해 볼 수가 있다.

동독과 포올랜드로 부터 오는 이주자들

119 서독과 동독간의 주민의 이주나 이동현상(도표 A 23 참조)은 1962년 부터는 그리 큰 의의가 없으리 만큼 줄어들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아무튼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것 보다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오는 현상이 대부분의 경우다. 이와 같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금 생활 연령에 달한 사람이고, 이 이주민 중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라는 것은 지난 몇해의 경우 단지 16%에 불과하다.

120 서독과 오더·나이세강 이동지역간의 주민의 이동경우도 역시 서독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동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서독의 인구 발전이나 변환에는 이것은 거의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더·나이세 이동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 중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층은 비율을 내 볼 필요도 없으리 만큼 경미하다. 오더·나이세강 이동지역에서 오는 이주민의 경우 가족을

한데 모이게 한다는 조치 (Familienzusammenführungsmaßnahmen) 의 일환으로 팔미암아 동독으로도 이주해 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독으로 이주해 가는 오더·나이세강 이동 지역의 주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무튼 그러나 이 수는 극히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서독 내륙간의 인구(주민)이동

- 121 (동·서 양독의 국경선을 사이에 놓고 독일 국경 내부에서 오가는 이주를 말하는) 내륙 간의 주민 이주의 경우는 그 심도에 있어서 동·서 양독이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범 위 (Volumen)

서독의 경우 인구의 이동 (읍·군의 경계선 밖으로 가는 이주) 은 1964년 이래 거의 일정하다. 매년 한 군에서 다른 군이나 호에 해당하는 지역 (Kreis) 으로 이주해 가는 수는 매 인구 1000명에서 약 48명 꼴이 된다. (도표 A 24 참조) (주 13)

동독 자체에 있어서의 인구의 이동은 서독의 경우 보다는 그 범위가 훨씬 적고, 그 뿐만 아니라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1964년에 있어서의 주민이동은 동독에서 매 인구 1000명에 대하여 31건을 들수 있고, 1967년까지는 이 숫자가 18건으로 줄어 들었다.

동·서독에 있어서의 이 추세의 차이는 내륙 주민 이주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도표 14 매 인구 1000 명에 대한 내국 주민의 이동

해	서독의 백분율에 비추어 본 동독의 경우
1964	66.4
1965	59.2
1966	43.6
1967	37.8

도표 14의 자료에 관해서는 도표 A 24 를 참조할것.

122 1964 년 까지의 인구의 이동에 대한 남·여 성별을 구분해서 산출해 낸 통계가 동·서독 다 같이 있었다. 이 통계 숫자에 의하면 인구(주민)의 이동에는 남자보다 비교적 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 졌다.

인구의 분포

123 인구 이주 비교표에 의하면 서독의 경우 이 이동의 물결로 인하여 생기는 인구의 이동 (Bevölkerungsverlagerung)은 출몰 남·북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헷센주 (Hessen),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그리고 바이에른 지방 (Bayern)으로 이동이 행해지고 있다. (주 14)

서독의 경우처럼 이렇게 중심적으로 행해지는 인구 이동현상은 동독의 경우에는 찾아 볼수가 없다. 인구 이동에서 전출자 보다 전입자가 많은 것은 주로 백림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전입자가 전출자 보다 많은 이 밖의 지역들은 동독 전체에 두루 산재해 있다. (지도 1 과 2 를 참고할것)

변경지역 (Randgebiete)

124 이 밖의 경우에도 특정한 경향들이 서독에서 동독의 경우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있다. 동독과 이웃하고 있는 서독의 변경지역들은 1967년에 약 19000명의 전출자를 전입자보다 많이 내므로써 만 지역에 빼끼고 말았다. 동독과의 국경지대에 종여 있는 29개 읍·군중에서 19개군이 마이너스 현상(전출자가 더 많음)을 이르켰다. 전입자가 더 많았던 군은 10개군이 였는데 이들은 북부 변경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다.

동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경향을 일반적으로 찾아 볼수가 없다. 서독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동독의 군들은 26개군인데 1967년에 있어서 전출자가 전입자 보다 많았던 곳은 12개군이 였고 이와 반대로 전입자가 전출자 보다 많았던 곳은 14개군이 였다. 이주민의 수등은 재료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아 볼수가 없다. 전입자가 전출자 보다 많은 변경지역군들은 동독의 경우 주로 남부 지역에 몰려 있다. (지도 3을 참조할것)

d) 인구밀도와 인구분포

125 서독의 경우 인구밀도는 매 평방킬로미터당 235명(1964년)에서 245명으로 늘어 났다(1869년). 동독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에 인구밀도의 증가는 불과 157명에 158명으로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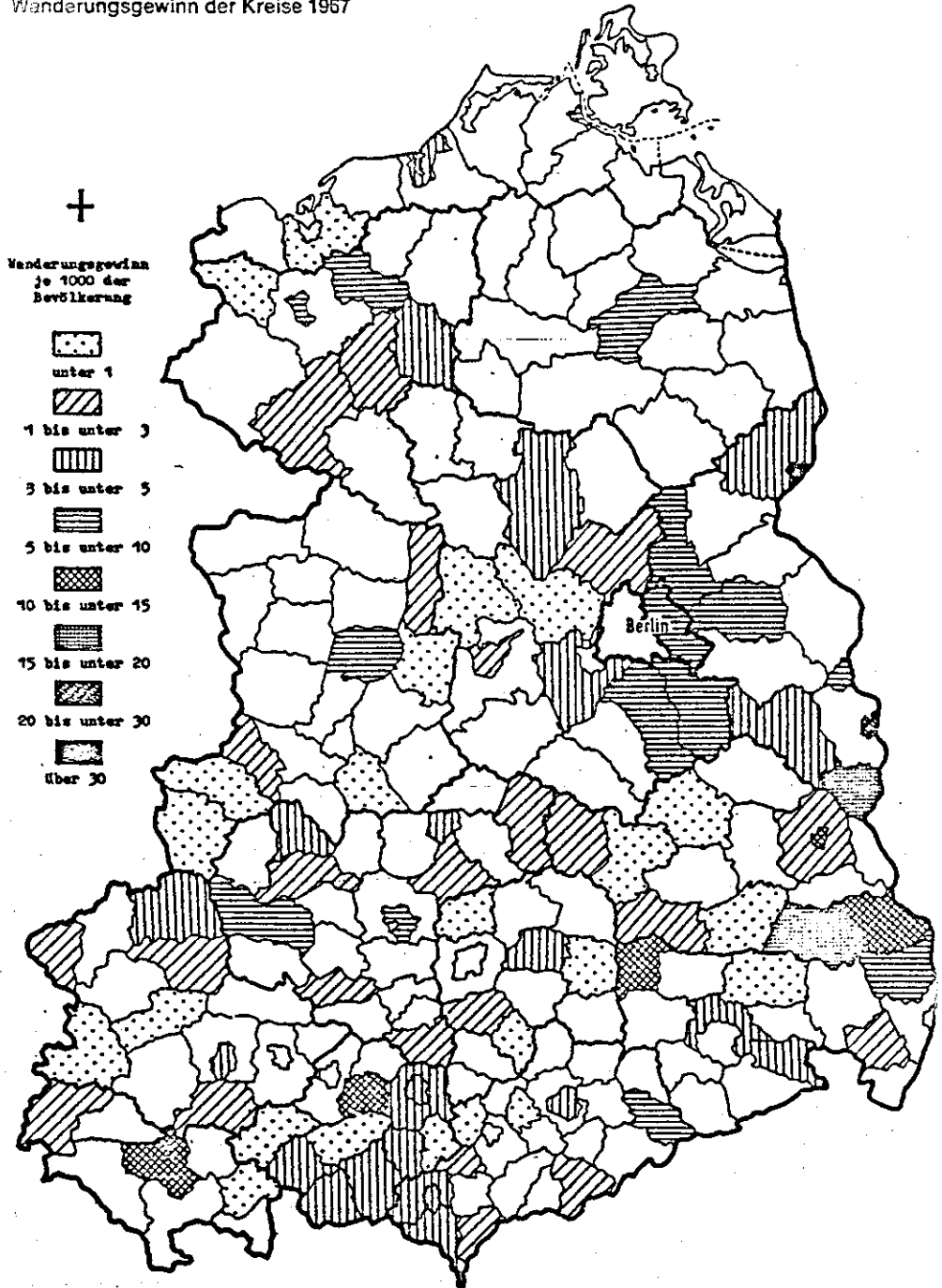
불어 났을 뿐이다.

인구밀도는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높고, 이 차이는 점점 더 커가고 있다. 인구밀도는 서독이 1964년에는 동독보다 거의 반쯤 더 높았고(49%), 1969년의 경우는 서독이 동독보다 반이상을 훨씬 넘는 55.1%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볼수가 있다.

도표 15 인구밀도(매 평방키로미터당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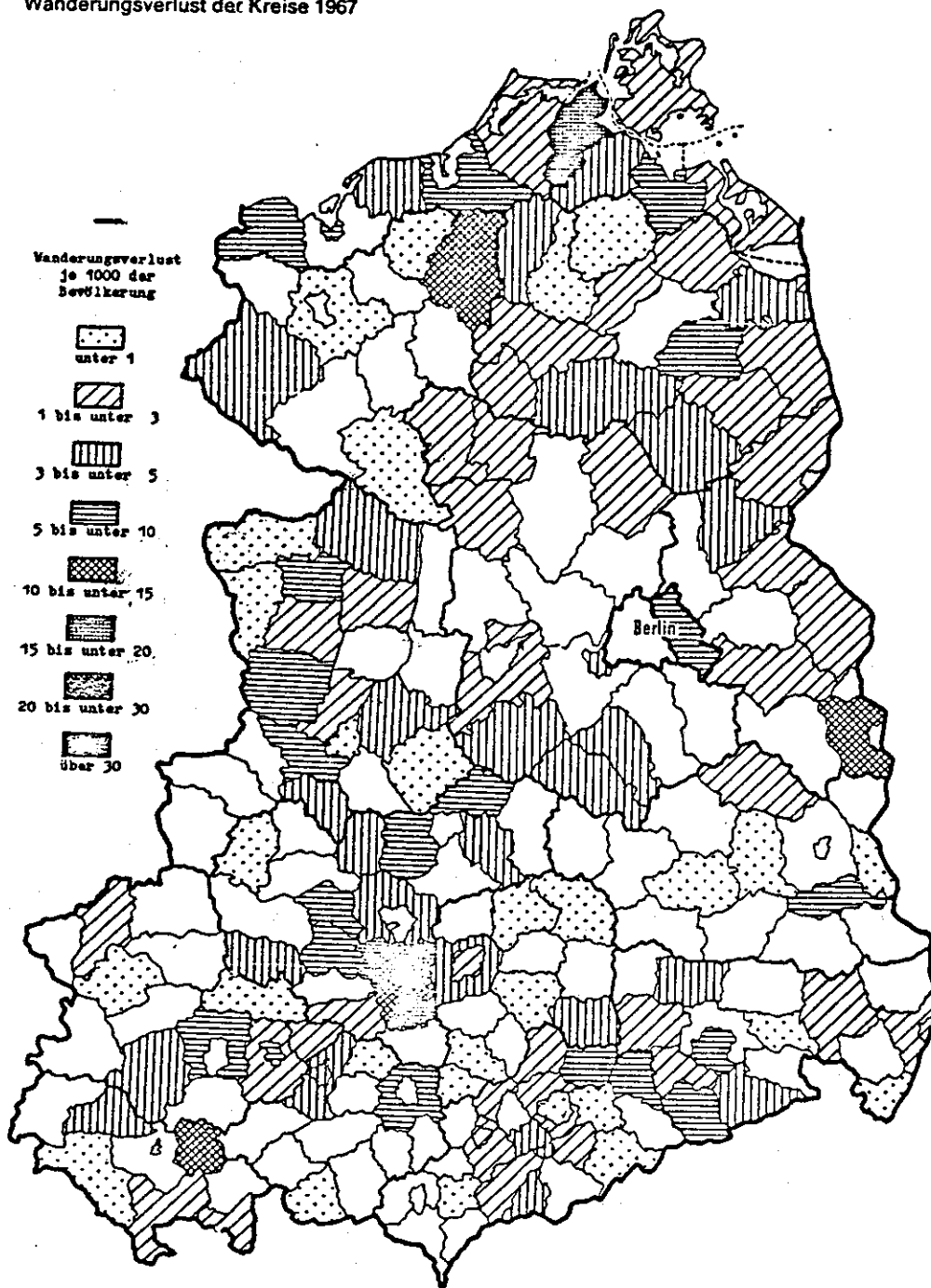
년 도	서 독	동 독	서독의 배분율과 비교해 본 동독
1964	235	157	67.1
1965	238	157	66.2
1966	240	158	65.8
1967	241	158	65.6
1968	242	158	65.3
1969	245	158	64.5

Wanderungsgewinn der Kreise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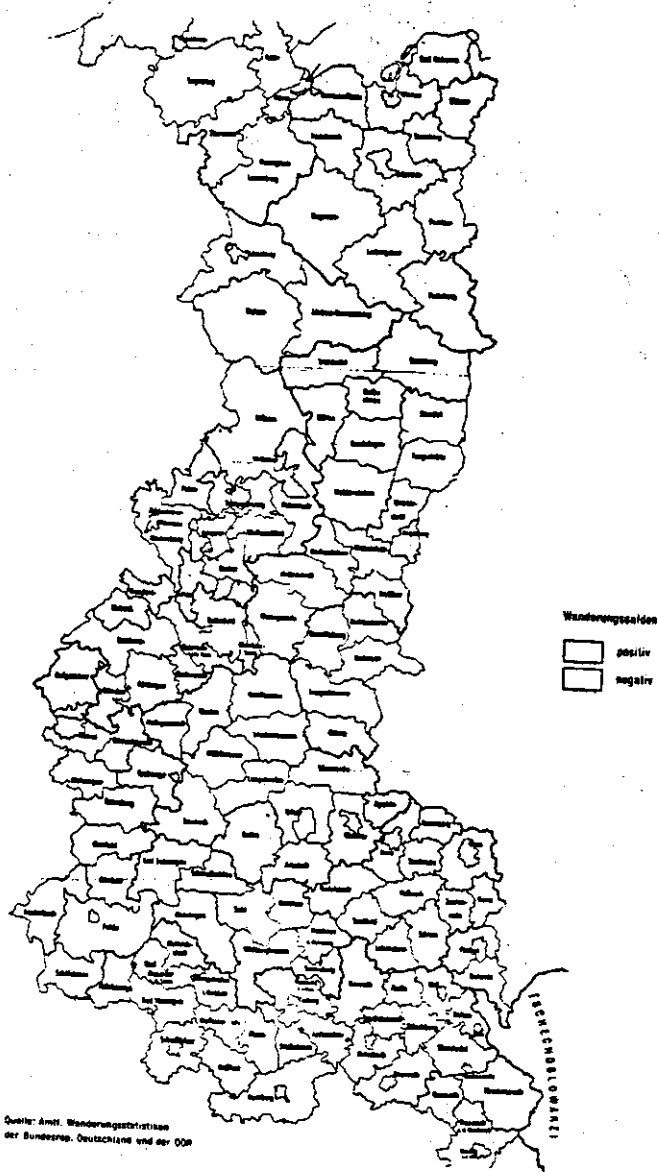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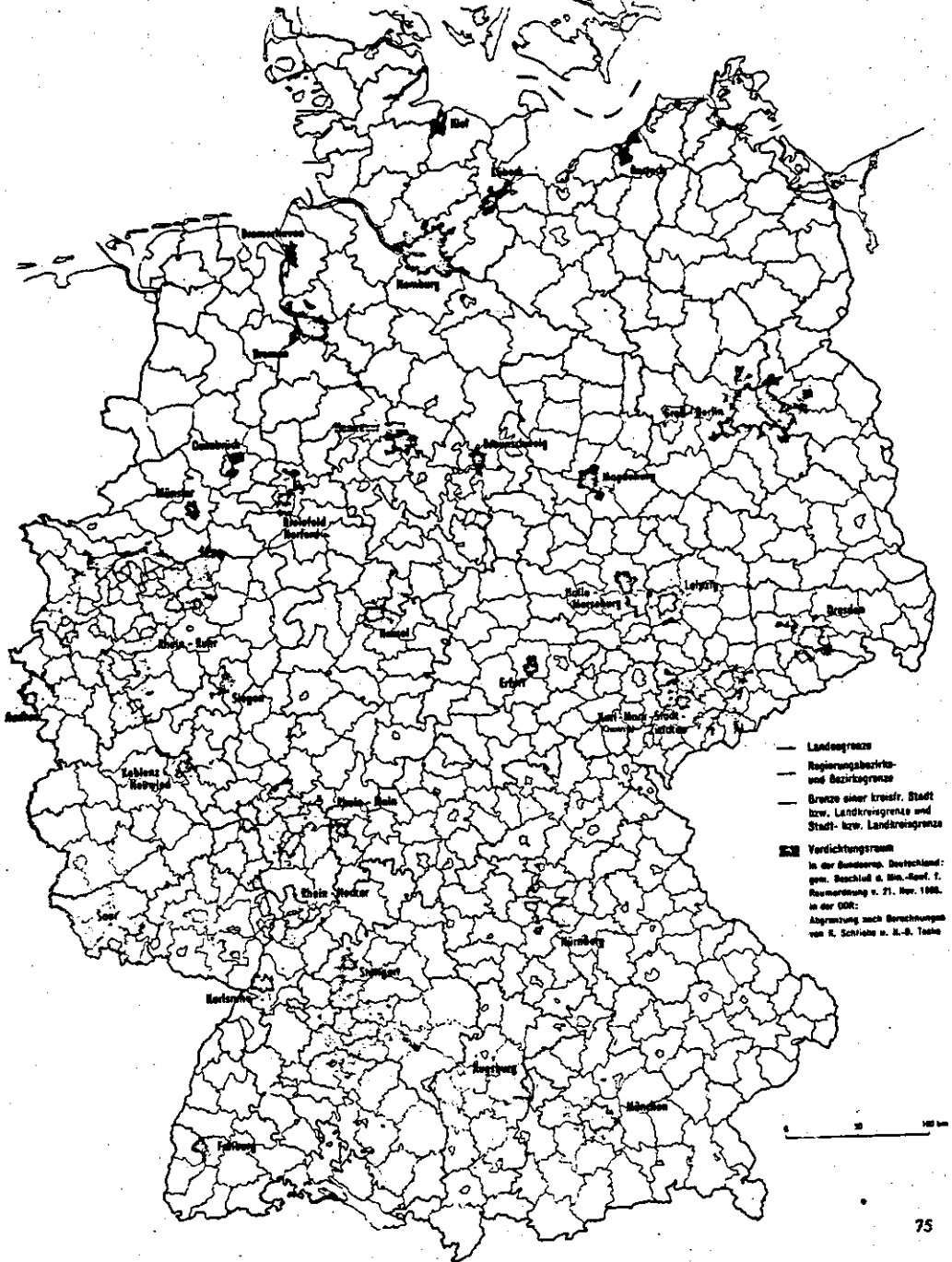
Wanderungsverlust der Kreise 1967



Wanderungssalden in den jeweiligen Zonenrandgebieten 1967



Verdichtungsräum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126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인구 분포의 경우 보다는 인구가 많은 지역(도시등)에 집중하는 율이 적다.

도표 16

가장 적은 지역들(마을, 촌락등)과 가장 큰 대도시 분포 인구의 백분율(% , 1968년)

지역 인구 수	서 독	동 독
500 명이하	4.8	7.6
100,000 명이상	32.1	21.9

서독에 있어서는 10,000 명에서 50,000 명의 주민을 가진 도시(지역)들의 인구가 무엇 보다는도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은 최하위급의 마을이나 촌락은 물론이고, 대도시들의 지급들에서도 역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저하다. (인구 100,000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의 경우) (주 15)

원형 구심(집중)지역 (Ballungsräume)

127 24 개의 원형구심지역 (Ballungsräume) 들이 이웃하고 있는 소도시들과 지역들에 무엇보다도 점차 뻗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다. 반면 이들 원형구심지역들의 대도시적인 중심지들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증가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68 년에서 1969 년으로 옮겨가는 사이에 몇 개의 대도시들은 다시 인구가 늘어났다. (주 16)

그리고 동독의 경우에도 인구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 2 장

비교적 큰 안전성이 유지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국내적인 인구의 이동이 별로 많지 않은 동독의 실정으로 보아 이는 당연한 일이다. (도표 A 25 참고할 것). 동독에서는 적은 마을이나 리에 해당하는 지역들에서 극히 적은 인구의 감소현상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인구 2,000 명에서 100,000 명에 이르는 도시들에 무엇보다도 인구가 늘어 나고 있다. 대도시의 인구가 전출해 나가는 현상은 별로 볼 수가 없다.

동독의 경우 인구가 많이 집중하는 원형구심지역이 있다. 그런데 이들 8개의 인구 집중지역을 살펴 보면 지난 몇해 동안에 인구가 들어가고 있는 경향은 별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집중 지역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을 찾아볼 수 없는데 비하여 오히려 동독에는 새로운 중심지들 (Zentren) 이 전통적인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들 이외에 형성되어 갔다. (Schwedt, Eisenhüttenstadt, Senftenberg-Hoyerswerda) (지도 4를 참고할 것)

2. 생업활동 (Erwerbstätigkeit)

a) 생업종사인구와 생업기본 (잠재) 능력 (Erwerbsbevölkerung und Erwerbspotential)

생업활동에 종사하는 인원 (Erwerbspersonen)

128 1969년 연평균으로 계산하여 서독에는 2천 7백만 생업종사 인구가 있었다. (실제 생업 종사자와 기록되어 있는 실직자를 합쳐서) 동독의 경우 동일한 1969년에 약 8백 70만

명의 생업 종사 인구가 있었다. 이것을 서독과 동독을 백분율을 내어 비교하면 그 비율은 100:32이 된다. (그런데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을 보면 100:28이 된다.

(도표 A 28을 참고할것)

- 129 경기변동에 따른 약세현상은 고려에 넣지 않더라도 벌써 여러해 동안 서독에 있어서는 생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1969년에 서독의 생업종사 인구는 1964년의 형편을 0.5% 모자라는 실정이였고, 1970년의 경우는 1964년의 경우를 약간 증가하는 실정이였다. 그러나 여러 외국으로 부터 많은 노동인구가 서독으로 수입되 들어 오는 일이 없었드라면 이 기간동안에 있어서의 서독의 생업(노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이만큼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 기간동안 독일 국내인의 생업종사 노동인구는 2%를 넘는 만큼 줄어 들었다. (600,000명) (주 17)

서독에 있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으로 부터도 별로 언급할 만한 노동력이 수입해 들어 오지 않았는데도 -4%가 잘 되는 노동(생업에 종사하는)인구가 늘어났다(340,000명). 생업종사(노동)인구는 줄곧 늘어나고 있었으나, 최근 몇년 동안은 그러나 그 속도가 늘어(늦어)지고 있다.

남·여 성별 (Geschlecht)

- 130 생업종사인구의 구조를 감안하여 볼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인구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이 동독보다 훨씬 낮다.

여성이 차지하는 생업종사 비율이 서독에서 줄어들고 있는 데도 동독에서는 계속 늘어 나고 있다.

도표 17

생업종사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년 도	서 독	동 독
1964	36.4	44.2
1969	35.6	45.8

동독에 있어서 여성이 직업에 종사하는 활동은 오래전 부터 특별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제 2 절 d 를 참고 해 볼 것) (주 18)

직업상의 지위와 위치 (Stellung im Beruf)

131 생업에 종사하는 인구 분포를 그들이 차지하는 직업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볼때 사회구조들도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립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백분율상의 비율은 서독의 경우가 동독의 경우 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일을 협력하는 가족의 식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생산 공동 조합 (Produktionsgenossenschaft) 에 속해 있는 회원들도 독립해 있는 사람과 일을 협력하는 가족의 식구들의 범주 (카테고리) 에 넣어서 계산한다면 구조상의 차이는 물론 상당히 줄어들는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늘어나고 피고용

노동자 (Arbeitsnehmer) 의 비율은 위에서처럼 「자립 내지 독립 직업인과 이들의 가족중에서 일을 협력하는 사람들」의 카테고리 속에 동독의 생산 공동 조합의 농업분야의 회원들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더라도 피고용 노동자의 비율은 서독의 경우 동독보다 훨씬 적다. 상업과 복무분야 (Dienstleistungs-bereich) 에 있어서도 서독에 비교적 동독 보다는 많은 독립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이들을 같이 협력하는 가족의 식구들이 있다. 동·서 양독에 있어서 다 같이 견습생 (Lehrlinge) 의 수는 모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약 5% 정도가 된다. 이들 견습생들의 증가율은 서독의 경우가 동독의 경우 보다 천천하다 (느리다)

도표 18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人口) 의 분포
(Verteilung der Erwerbspersonen)

	백분율로 본 비율 (%)				발전상향		서독의 백분율에 비해 동독의 경우
	1964년		1968년		1968년 (1964년=100)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자립 (사업) 경영자 (Selbständige) (노동인)	11.4	3.2	11.2	2.6	95.4	83.3	7.6
일을 같이 협력하는 가족의 식구들	8.7	2.1	7.8	1.2	88.2	57.2	5.0
생산협동조합의 회원들	-	12.7	-	12.2	-	98.0	-
피고용 노동자	79.9	82.0	81.0	84.0	99.0	104.5	34.1
이중에서 견습생	(4.6)	(3.7)	(5.1)	(4.9)	107.3	134.2	31.5
생업종사자	100.0	100.0	100.0	100.0	97.5	102.0	32.9

연령 (Alter)

132 그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의 연령을 살펴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생업종사자의 연령으로 본 노화현상은 - 전체 인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1 절 a 항목을 참고해 볼것!) - 서독의 경우는 동독의 경우처럼 그렇게 현저하지가 않다. 1964년 (주 19) 서독에 있어서의 전체 생업종사자들의 72 %가 50세 이하의 연령자였다. 이와는 반대로 동독의 경우는 50세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자가 전체 생업종사자의 67 % 밖에 되지 않았다. (도표 A 27을 참고할것)

133 생업에 종사하는 남자 노동인구의 연령구조를 동·서독 나누어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눈에 띈다=즉, (25세에서 50세 까지의) 중간 연령층의 비율이 서독의 경우에 동독의 경우 보다 현저히 높다. (서독의 경우 51.3 %인데 대하여 동독은 46.7 %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연금연금에 달한 남자들이 생업종사 인구에 대해서 갖는 의의는 (비중) 동독의 경우에 서독의 경우 보다 크다.

134 25세 이상 - 그리고 60세를 넘을 때 까지의 - 의 직업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의 경우 동독의 경우처럼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다. 여기에서 다음의 사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두어야겠다. 즉, 동독에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을 마치는 여성들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최하위 연령자들 (14세에서 17세 까지의 연령자) 이 차지하는 전체 노동인구에 대한 비율은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생업 취업 (비율) 과 생업 (잠재) 능력 (Erwerbsbeteiligung und ErwerbsPotential)

135 1969의 생업종사 비율은 (Erwerbsquote) 서독이 44.4%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이는 50.9%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동독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이다. (도표 A 26을 참고할 것) 여기에서 서독의 경우 서독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함께 계산하지 않는다면 서독의 44.4%는 약 1%쯤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에 넣어야겠다. 동독의 생업종사 (就業)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율을 보이는 나라 중의 하나다. 구라파에서는 이와같은 높은 동독의 생업종사율은 증가하는 나라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뿐이다.

136 인구의 생업 종사 비율을 따져 보면 서독의 경우는 1964년에서 1969 사이에 전체적으로 2.2%가 늘어는데 반하여 - 서독에 있어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율은 높아졌는 데도 불구하고 - 동독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동안에 1.8%나 늘어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 (Unterschiede nach Geschlecht)

137 남자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에 있어서의 동·서독의 생업종사비율은 서로가 차이난다. 서독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 비율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매년 평균적으로 0.5%가 줄어들고 있다) 동독에서 이 비율이 거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직업을 가지는 여성 인구의 생업종사 비율은 동·서독이 서로가 크게 다르다. 서독의 경우는 지난 5년간 여성 생업종사자의 비율이 2.1%가 줄어들었는데 동독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에 3.2%가 늘어났다.

138 남자들의 경우는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동·서독 다 같이 비슷하다. (60%) 아마도 현재의 상황을 여전히 현실적으로 반영해 둔다고 볼수 있는 1964년의 경우에 대한 비교를 보면 아무튼 남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평균 생업취업 연한수명 (Erwerbslebensdauer)이 동독이 서독의 경우 보다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도표 A 29 참고해볼 것)

연령군과 성별에 따른 1964년의 생업종사비율 (%)

(Erwerbsquoten 1964 nach Altersgruppen und Geschlecht (in %))

연 령 별	서 독			동 독		
	남	여	계	남	여	계
14세 - 25세까지	73.3	64.5	69.0	72.7	62.3	67.6
14세 - 65세까지	89.2	46.6	66.8	89.8	60.9	73.9
25세 - 65세까지	94.3	41.8	66.2	95.3	60.5	75.7
65세와 그이상 연령자	23.8	7.6	13.9	31.7	6.8	16.4
계	62.5	32.2	46.6	60.1	39.9	49.1

139 전반적으로 생업에 취업하는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형성하는 것은 이렇게 따져 보면 서독의 경우에 동독에 비하여 여성 취업율이 훨씬 적다는데서 찾아 볼수 있다. 『여성의 직업활동』이라는

문제는 이 문제가 지닌 중요한 의의가 있고 하여 별도로 나누어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서 단지 언급해 두어야 하는 것은 여성들의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비교된 분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간 연령군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즉, 25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생업에 종사한 비율은 1964년에 서독이 모든 여자들중에서 41.8%였는데 동독의 경우는 60.5%였다. 1964이래 이 연령군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생업에 취업하는 비율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이것을 노동력의 잠재 능력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만약 서독에 있는 여성인구가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동독만큼 이 연령군에서 높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1964년에 서독의 여성 생업취업자는 실제 보다는 3백만명이 잘되는 수만큼 더 많았을 것이다. 현재의 경우에도 이 가정은 역시 성립한다.

연령에 따른 생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

(Erwerbsbeteiligung nach Alter)

- 140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구분하면 서독의 경우 평균비율(值)가 말해 주는 것 보다는 동독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은 더욱 적다. 거주 인구의 연령구조를 볼것 같으면 서독의 경우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생업 취업능력면에서 동독의 경우 보다 유리하다 서독의 인구의 연령 구조를 만약에 동독의 인구에 대해서 적용하면 (즉 동독 인구의 구조가 서독 인구의 구조와 같다고 한다면 -역자주) -동독에 있어서의 높은 생업 취업률

제2장

때문에 - 동독의 전체 생업 취업율은 서독 보다 7.4%가 높은 것이 된다. (이는 물론 가정이다 -역자주)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동독의 인구의 연령 구조와 특유한 생업 종사 비율이 서독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님 -역자주) 동독 경제는 오늘날 실제 동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노동인구 보다는 약 70만명이 적은 생업취업 인구를 가지고도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 141 앞으로 동·서독에 있어서의 생업종사 인구의 연령구조의 성별에서 오는 차이 구조가 지금과 같이 생업 취업율을 나타내 보일 것 같으면 여러가지 방법적인 문제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주어진 인구진단(주 20)에 의하면 서독의 경우 1980년까지 생업 취업율은 크게는 아니더라도 계속 줄어들겠고 서독의 경우는 약간 늘어 날 것이 예상된다.

실업(직) (Arbeitslosigkeit)

실업

- 142 서독 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등록된 실업자의 노동력을 전부 흡수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 서독연방정부는 실업율을 없애는 "고도의 취업율"을 달성할 목표를 가진 안정법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공식적인 방침에 의해서는 실업이 없다. 이따므로 직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통계적인 숫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할 수 있는 숫자만 나타나 있다. 이런 관제로 양체제의 비교는 순전히 가설적인 방법에 의해지는 것이다.
- 143 서독의 경우 지난 10년이 지나가는 동안(1960년에서

1970년 까지) 다음과 같은 실업자수가 산출되어 졌다.

도표 20

서독에 있어서의 등록된 실업자

	1000 명에 대하여	잠재능력의 백분율에 비하여
1960년 - 1970년 까지의 평균	216	0.8
최대치(수)(1967년)	459	1.7
최소치(수)(1965년)	147	0.5

출처(전) = (연방 노동국 공식보고)

Amtliche Nachrich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Mitteilungen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1969년 Heft 9, 페이지 668.

이 기간에 있어서의 실업자의 일반적인 발전경향이라는 것은 확실히 포착해 낼 수가 없다. 그러나 일종의 순환적인 움직임은 살펴 볼 수가 있다.

144 최소(생업 취업경향을 나타내 보이는) 제질, 즉 주로 저울에 있게 되는 동계생업자의 경우에도(라 할지라도) "실업의 비율"(Erwerbslosensockel)은 연평균 136,000명(생업 종사 잠재 능력의 0.5%에 해당)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수자는 무엇보다도 유동성(Fluktuation) 요인을 통해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수자는 특정한 임의의 날을 조사일로 정해 놓고 이날의 결과를 이 통계조사의

제 2 장

재료로 삼았기 때문이다.

서독에 있어서 이 수치를 넘어서는 실업자가 나타날 때는 - 동계 영향으로 인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 상업과 산업경기 여하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만약에 동독에 있어서의 실업자 형편을 통계적으로 산출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유동성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 비율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독에 있어서의 이 유동성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 비율은 서독에 있어서의 경우보다 약간 하회할 것으로 생각되며 약 0.4%가 될 것이다. 경기에 따른 실업현상은 동독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동독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추이현상은 생업 취업자의 일부를 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리를 시작해 나가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독에 있어서의 경기변동으로 인한 실업자 현상이라는 것은 숫적으로 보아 서독에 있어서 이 현상이 나타내는 경기여하에 따른 최대 수치와 평균수치 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b) 경제분야(별)로 본 취업 (Die Beschäftigung in den Wirtschaftsbereichen)

145 생업 종사면으로 볼 때 동·서독, 다 같이, 고도로 발달된 산업국가의 국민경제의 기본구조(Grundstruktur)에 해당된다. (도표 A 30 참고할 것) 그렇지만 더 세부로 나누어 파고 들어가 고찰해 보면 틀론 구조적인 차이를 동·서독이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경제 체제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고 그러나 서로 상이한 국제 관계 구조에 참여 내지 처해 있는 데서 오는 결과로 인한 것도 또한 그 원인이 되겠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 3장과 제 4장을 참고 할 것)

농업 (Landwirtschaft)

- 146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를 살펴보면 서독의 경우 전체에서 10%가 되어 13%의 비율을 보이는 동독의 경우보다 농업종사인구가 적다. 이와 같은 구조상의 차이는 2차대전 결과로 전입해 들어온 인구의 그리고 농업정책의 제 결정 (토지개혁 = Bodenreform)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겨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다.

산업 (Industrie)

- 147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경제분야 (광산업, 에너지 분야 경제 = Energiewirtschaft... 상품을 생산하는 수공업등을 포함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를 따져보면 동·서독이 인구의 생업종사자 비율로 보아 대략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 22)

상업, 교통, 복무 (Handel, Verkehr, Dienstleistung)

- 148 이 밖의 경제분야 - 상업 (무역 포함 - 역자주), 교통, 공사복무

제2장

등 - 들은 서독이 전체적으로 보아 동독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상업과 복무수행 부문에 적용되는 것이다. 교통부문과 통신부문에는 서독의 경우에 동독보다 비교적 약간 적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독이 동독보다 높은 자가용등으로 인한 기동성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제2절 2항을 참고 할것)

도표 21

경제분야와 남·여별로 구분해 본
1968년도의 생업 종사인구 구조
(비율=%)

경 제 분 야	서 독			동 독		
	남	여	총합	남	여	총합
농업과 산림 부문	7.2	15.1	10.0	13.2	13.0	13.1
가공 및 세공분야 (광산과 에너지부문포함)	44.5	30.7	39.6	46.2	35.9	41.5
건축	11.5	1.2	7.8	11.4	1.9	7.1
상품생산분야	56.0	31.9	47.4	57.6	37.8	48.6
상업(무역포함)	8.9	17.9	12.1	5.9	16.0	10.4
교통과 통신	7.4	2.6	5.7	7.5	5.2	6.5
상업과 교통	16.3	20.5	17.8	13.4	21.2	16.9
복무분야	20.5	32.5	24.8	15.8	28.0	21.3
(총합) 경제전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의 발전 (Beschäftigungsentwicklung)

- 149 1965년과 1968년의 동·서독에 있어서의 취업 발전 상황을 비교 고찰해 볼때에 다음의 사실을 배려해야 한다. 즉 1968년이란 해는 서독에 있어서는 아직 까지도 크게 열세이 작용했다는 것을 1968년 이후 부터서야 비로소 취업자 비율은 서독에서 (점점) 크게 올라 갔고 (1965년을 = 100으로 함) 끝내는 열세현상이 완전히 극복되고 1970년에 와서는 1950년 이래 최고수준에 달했다. 이와는 반대로 1965년과 1968년 사이에 동독에서는 취업 비율이 전체로 보아 2%가 늘어 났다. 1969년에도 이같은 상승현상은 계속되었다.

구조의 변화 (Strukturänderungen)

- 150 취업 구조의 발전을 경제분야별로 살펴 보면 동·서독이 또한 유사한태가 상당히 많다.
- ◎ 동·서독 다 같이 농업 분야의 종사 인구가 감소되어 같다. 그렇지만 이 감소현상은 서독의 경우 동독의 경우보다 어느정도까지는 빨리 진행 되었다.
 - ◎ 서독에서 한 차례 있었던 경기애 따른 동요현상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면 -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를 기준하여 - 산업화의 도는 동·서독에 있어서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 건축 분야의 취업비율이 서독의 경우 줄어 들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에서는 급히 늘어 났다. 건축 분야의 종업

상황을 경제분야 전체에 관련시켜 고찰해 볼 것 같으면 동·서독이 점점 근사하게 가까워져 가고 있다. 즉, 1960년에 있어서의 이 분야의 종업 비율은 동독이 서독보다 아직 까지도 1.4%가 낮았다. 그런데 반하여 1968년에 와서는 이 차이가 0.7%로 줄어 들었다.

- ◎ 상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서독 공히 절대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었다(줄어 들었다.) 이 분야의 비중은 서독의 경우가 동독 보다는 계속해서 좀 높다. (어디까지나 종업 비율을 말하는 것임-역자주)
- ◎ 교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서독의 경우 동독에 비하여 눈에 띌 정도로 급속히 줄어 들었다.
- ◎ 동·서 양독에 있어서 종업 인구구조가 여타의 복무 부문쪽으로 추이되어 가고 있음을 볼수 있다. 동독의 경우 매우 이질적이긴 하나 이 분야가 서독의 경우 보다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적다. 그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의 증가는 동독의 경우가 서독의 경우보다 얼마않되기는 하나 약간 높다.

C) 직업과 교육 (Berufe und Ausbildung)

직업구조 (Berufsstruktur)

151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의 직업구조를 경제분야별로 비교하여 그 의의를 찾아내는 일은 구분상의 이유와 통계상의 이유로 인하여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동·서독에 있어서 소유권 형태 (Eigentumsformen)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는 점을 덧붙혀 언급해야 겠다. 그 이유인즉 서독에 있어서는 피고용자가 아닌 자기기업으로 하는 경영자나 그 가족의 식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제 기능들이 동독에 있어서는 특수 교육을 받은 피고용자(노동자)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된다.

직업 부문으로 본 생업종사자(Erwerbsfähige nach Berufsabteilungen)

152 직업 분야별(9개 직업 부문=9 Berufsabteilungen)별로 생업 종사자를 대략 구분해 보면 1964년의 경우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서독이 직업구조면에서 계속 유사성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도표 A 32참고할것)

- ◎ 기초자료 산업(Grundstoffindustrie)(광업, 제철업, 화학등)에 관계되는 인구는 동·서독 공히 전체 직업인구의 약 3%쯤씩 차지하고 있다.
- ◎ 산업에 관련된 자료의 가공과 강공(Stoffbe-und Verarbeitung) 부문에 종사하는 직업은 -동·서독의 비슷한 높은 수준의 산업화에 상당하게 - 전체 생업 종사인구의 약 31%를 동·서독이 각각 보여 주고 있다.
- ◎ 공학 기술에 관계되는 직업(기술자-Ingenieur, 기사-Techniker, 공학 관계 기능공을-technische Fachkräfte)은 동·서독이 각각 4%쯤되는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독의 경우에는 1964년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인구가 3.9%였으므로 동독의 경우(4.7%) 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2장

- ◎ 농업에 관계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를 비교해 볼 때 서독의 경우는 11.3%, 동독의 경우 12.5%를 나타내므로 서독이 동독보다 약간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 ◎ 상업과 교통분야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는 동·서독이 각각 전체 생업 종사 인구의 약 1/5쯤 씩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 ◎ 교육, 문화, 학문(Wissenschaft) 부문에 종사하는 직업인구는 서독의 경우 5%가 되고, 동독이 7%를 보이고 있으므로 서독이 동독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 이밖의(복무 분야) 직업의 경우는 동·서독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6%)
- ◎ 이와는 반대로 경제매니지먼트(Wirtschaftsleitung), 행정(Verwaltung), 법률관계 분야(Rechtswesen)에 종사하는 직업은 서독이 17%의 비율을 보이고, 동독이 1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훨씬 높은 취업율을 보이고 있다.

직업군으로 본 생업 (Erwerbsfähige nach
] Berufsgruppen

- 153 직업을 36군으로 좀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은 동·서 양독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직업 구조면의 차이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동독의 경우 보다 서독에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다음의 직업군들이다=

광업분야 직업

관화등의 도서분야 직업

상업과 음식영업부문 직업

중개 및 대여업 (Vermittler und Verleiher)

종교분야 직업

법률관계 분야 직업

154 서독의 경우와 비교할때 동독이 이와는 반대로 서독보다 높은 취업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직업군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섬유제 제조업자 제지업자, 제지세공업자 (부문)

방직 (제조) 업자 방직세 (가) 공업자

유리제조 (업) 자 요업 (자) (Keramiker)

보조 노동자 (Hilfsarbeiter)

기계공과 이 부문에 속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이밖의 기술 기능공

내륙 항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산림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직업자)

수의학 부문에 종사하는 직업인

교육 (Bildung) 과 문화 부문에 종사하는 직업인

당직이나 보안관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155 성별 (남·여별) 에 따라서 구분해 볼 것 같으면 특히 눈에 띄이는 것은 여성 취업인들의 직업구조가 남자들의 직업 구조보다는 그 차이가 훨씬 두드러 지게 크게 나타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서독을 비교해 보면 -도표 A 34 ,

제 2 장

A 35 A 36을 참고 해 볼것!

경제부문에 따른 직업의 분포 (Verteilung der Berufe auf Wirtschaftszweige)

- 156 경제부문에 따른 직업 분포가 나타내는 동·서독 간의 차이는 무엇 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이다. (도표 A 37참고) =
- ◎ 공학이나 기술관계 직업은 동독의 경우 서독보다 경제계 분야에 더 많이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여성 취업인구의 경우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현상이 특히 나타나는 것은 농업 부문이고, 그러나 에너지 산업 분야와 광업분야와 그리고 가공과 세공을 하는 실업분야의 경우에도 동독은 서독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 ◎ 경제지도(매니지먼트와 비슷한 부문-Wirtschaftsleitung), 경영(관리포함) 그리고 법률관계 직업들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분포도 동독의 경우가 서독보다 더 광범히 한 영역에 걸쳐서 널리 분포되어 있다. (경제분야 전역에 걸쳐서)

직업구조의 발전 (Entwicklung der Berufsstruktur)

- 157 동·서독에 있어서의 1964년 이래의 직업구조의 발전에 관해서는 주어져 있는 자료 (Information)가 극히 적다.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 순진 양성 (Berufsnachwuchs) 즉 견습공 (Lehrling) 의 직업 구조의 발전이라고 하겠다. 이 보고서의 제 7 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체로 보아서는 그래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는 지금까지의 구조적 차이가 일반적으로 계속 유지 되던가 아니면 이 차이가 커져가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미 1964년에 서독의 경우 보다 동독이 더 많은 생업 종사자의 취업율을 보이고 있던 직업군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경향이 견습공(생)(Lehrlinge)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질적 구조(Qualifikationsstruktur)

- 158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생업 종사자들의 질적 구조(주 23)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1964년에 있어서의 동·서독에서 취업하고 있던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자들의 상함을 경제분야와 (남·여별) 성별에 따라서 여기에 비교해 보았다.

물론 1964년도의 이 자료는 그동안 바로 이 분야에서 일어난 발전으로 인하여 낡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인포메이션으로는 그 이후의 것은 아직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고등 수준의 자질을 갖춘 노동력에 있어서 이루어진 몇가지 가장 중요한 발전경향을 분석하므로써 1964년의 이 분화된 현황 비교를 보충할 수 있을 뿐이다.

대학졸업자(Hochschulabsolventen)

- 159 1964년에 서독에는 919,000명의 대학졸업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령 65세까지) (도표 A 38을 참고할것) 이들 중에서 약 1/4에 가까운 수(225,000명)가 여성이

제2장

었다.

이와 같은 해에 동독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직업인들 중에 199,000 명의 대학 졸업자가 있었다. 동독의 경우 여자 대학 졸업자가 전체 대학 출신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서독의 경우 보다 근소하게 적은 편이었다. 이로서 1964년에 서독에 있어서의 취업 인구를 대학 졸업자와 관련시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 서독 = 1,000 명의 취업인 중에 34 명의 대학 졸업자가 있었고

동독 = 1,000 명의 취업인 중에 23 명이 대학 졸업자 였다.

도표 22

1964년도에 있어서의 경제분야와 남·여
성별에 따른 대학 졸업자 취업인구(구조
=%로 표시)

경제분야	서독			동독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농업과 임업	0.8	(0.8)	0.8	4.1	1.3	3.5
가공 및 세공분야 (광업과 에너지산업포함)	17.4	4.6	14.2	16.9	5.9	14.3
건축	1.9	(0.4)	1.5	1.9	(0.1)	1.5
상업	4.5	7.8	5.3	2.3	2.4	2.4
교통과 통신	1.3	(0.4)	1.1	1.9	0.7	1.6
복무분야	74.2	86.1	77.1	73.3	89.6	77.0
경제전체(통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60 대학 졸업자가 경제 각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형편은 극히 얼마 안되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서독이 거의 같은(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동독의 경우 서독보다 높은 대학 졸업자의 취업 비율을 나타낸 분야는 농업과 교통관계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서독 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는 건축과 상업제통 부문이다.

여자대학졸업자 (Akademikerinnen)

161 경제분야별로 보아 여자 대학졸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각 부분별 분포는 동·서 양독이 역시 꽤 비슷하다. 그런데 눈에 띄일 정도로 예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상업부문이다. 서독의 경우 상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대학 졸업자의 1/3 이 넘는 수가 여자인데 동독의 경우는 여자 대학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이 겨우 될까 말까 하다. 전체 여자 대학 졸업자의 9/10 에 가까운 수가 동·서독 공히 복무분야에 집중되어 근무하고 있다.

전문학교졸업자 (Fachschulabsolventen)

162 1964 년도 서독에 있어서의 생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 전문학교 출신자수는 1,070,000 명이었으며 이중에서 21%가 여자였다.

동독의 경우는 동일한 해에 369,000 명의 생업에 종사하는 전문학교 졸업자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였다.

이렇게 살펴보면 1964 년도에 있어서 서독의 경우 생업에

제 2 장

종사하는 인구 1,000명중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40명이었는데 동독의 경우는 이 비율이 43명에 해당된다. 이미 이당시에 동독경제가 전문학교 출신자들을 서독보다 더 많이 (비율로 보아)가지고 있었다.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자 (Hoch-und Fachschulabsolventen)

163 완전히는 해결할수 없는 구분에 관한 몇가지 문제 때문에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생들을 합쳐서 다루는 것이 대학 졸업자와 전문학교 졸업자를 서로 분리시켜 다루는 것보다 의의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졸업생과 전문학교 졸업자로 생업에 종사하는 수는 서독의 경우 1964년도에 전부 합쳐서 1,990,000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 450,000명이 여자였다 (22.6%)

동독의 경우를 살펴 보면 생업에 종사하는 전체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자는 568,000명이고, 이 중에서 여자는 160,000명이다. (28%)

동·서독의 생업 종사 인구의 비율이 $\frac{32}{(동)} = \frac{100}{(서)}$ 인데, 대학과 전문학교를 졸업한 취업인구를 비교해 보면 남녀합쳐서 $29(동) = 100(서)$ 이 되고; 여자의 경우 $36(동) = 100(서)$; 남자의 경우 $27(동) = 100(서)$ 이 된다.

도표 23

경제분야별로 본 대학 졸업자와 전문학교 졸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비율 (%로 표시)

경 제 분 야	서 독			동 독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농업과 산림분야	9.8	2.0	5.6	4.5	0.6	2.7
가공 및 세공분야 (광업과 에너지산업포함)	5.8	1.9	4.6	6.0	1.0	4.0
전 축	3.5	(3.7)	3.5	3.6	1.4	3.4
상 업	5.5	3.0	4.2	3.9	0.7	1.8
교통과 통신	5.7	3.9	5.4	4.3	0.9	3.1
복 무 분 야	22.9	9.9	16.6	28.2	13.8	19.9
경 제 전 반	9.0	4.6	7.4	8.7	4.2	6.7

164 서독은 고도의 수준을 지닌 생업 종사 인구를 수급하는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동독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서독은 전문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동독 보다 비례적으로 보아 적게 가지고 있으나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비례적으로도 더 많고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 점에 관해서 결정적인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은 내독 문제에 있어서의 전출이동 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이 현상으로 인하여 동독은 전후시기에 동독에 살고 있던 대학을 거친 아카데미키의 1/3쯤은 서독에 빠져고 말았다. (주 24)

만약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이동현상이 없었더라면 동독이 서독에 비하여 전문학교 교육을 받는 층이 훨씬 유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독의 고급수준노동력이 전체

제2장

노동(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4년에 이미 서독을 능가했을 것이다.

그동안 동독의 1964년의 상황을 계속 유지했다고 가정하고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자수를 계산해 보면 고급수준의 취업현황은 서독의 비율을 십중팔구는 능가했을 것으로 본다. 서독이 1980년까지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체 취업인구와 대학 및 전문학교 출신 취업자의 비율에 대한 공식(국가) 목표가 동독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보다 그 비율이 낮다.

- 165 고급수준의 취업인구가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4년에 있어서 서독의 경우 7.4%였고, 동독의 경우 6.7%였다. 남·여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그 차이는 위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 본 고급수준의 취업인구(Hochqualifizierte nach Wirtschaftsbereichen

- 166 경제분야 하나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면 동·서독의 경우가 부분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난다.
생산을 하는 경제분야(산업, 수공업, 건축)에서의 동·서독의 취업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고급수준의 취업인구)
복무분야(Dienstleistungsbereich)에 종사하는 고급수준의 취업인구는 서독이 동독보다 낮다. 그밖의 경우에는 정반대다. (즉 서독의 경우가 높다. 역자주)

전문분야별로 본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자

(Hoch-und Fachschulabsolventen nach Fachrichtungen)

167 각 직업 구조를 분석한 것을 보충함에 있어서 이밖에도 여기에 동·서독에 있어서의 고급수준의 노동력을 종합하여 전문분야별로 비교했다. (도표 A 39, A 40, A 41을 참고할것)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자를 합쳐서- 동독의 경우에 서독보다 비교적 비중이 큰 것은 주로 다음의 몇가지 전문분야들이다. =

교육에 관계되는 학문과 정신과학들, 교육학

자연과학 (주로 -물리학, 화학, 물리학)

공학에 관계되는 학문들, 주로 광(산)업, 야금(학), 기계 제조분야

다른 한편 서독과 비교하여 동독이 비례적으로 서독보다 약한 (적은)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부문은 다음과 같다. =

예술과 관계되는 제 전문분야

전문학교의 공예 (공업포함) 부문

법률에 관한 학문분야

신 학

보건학 (분야)

농 업 (분야)

대학졸업자 -전문분야와 직업별로 본-

(Hochschulabsolventen nach Fachrichtungen und Berufen)

168 대학졸업자에 있어서의 전문분야 구조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분야에서도 역시 자연과학과 공학관계의 전문분야를 이 동등의 경우 서독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일련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그러나 고등수준의 이를 취업자들은 대학졸업자와 전문학교 졸업자 별로 따져 보면 동·서독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동·서독이 차지하고 있는 대학 졸업자의 평균비율(서독:동독-100:21.7)에 비추어 볼때 동독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전문분야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부문이다.

농업과 산림학 부문(100:59) 농업과 산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의 비율이 동독의 경우 이 분야가 경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서독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서독보다 강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광산(업)과 야금학(100:40.0)

기계제작(100:37.0)

물리학(100:38.4)

화 학(100:30.0)

생물학(100:57.7)

치 학(100:57.7)

수의학(100:30.9)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독에 비하여 적은 비율(전체 취업 인구나 비교했을때의 객분율-역자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부문들이다=

전자공학(100:18.2)

신 학 (100 : 12.4)

법 학 (100 : 17.1)

고 학 (100 : 17.1)

예술의 제 분야 (100 : 19.5)

169 한 나라의 국민이 특별히 중요한 복무부문을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
으로 - 예를 들어 매 의사에 대해서 할당되는 주민 (인구)
의 수, 교사 일인에 대한 학생수 - 등의 특수한 밀도수가 쓰
이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상관관계는 다른 곳에서 언
급되어 질 것이다. (제 5장과 제 7장을 참고할 것)

170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 가기 위해서 끝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의 직업구조를 1964 년도의
동·서독을 여기에서 고찰 비교해 보았다. (도표 A 42 참고
할 것) (주 25)

이와 같이 비교 고찰해 나감에 있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 졌다고 하겠다. 즉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인
구가 차지하고 있는 직업 구조상의 제 차이와 공통점들은
이미 위에서 언급된 바 있는 전문 분야별 구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비슷한 차이와 공통점을 나타내 보이
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분야별로 본 고급수준의 노동력 (취업자) 의 발전

(Entwicklung der Hochqualifizierten nach Fachrichtungen)

171 본 보고서의 제 7 장은 1964 년 이래의 대학 졸업자와

제 2 장

전문학교 졸업자들의 전문분야 구조 (Fachrichtungsstruktur) 의 발전에 관하여 자세히 인포메이션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발전 (상) 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여기에서 언급된 현상분석과 연결시켜 본다면, 1964 년도의 경우를 비교 고찰함에 있어서 확인된 동·서독에 있어서의 고급수준의 취업인구들이 차지하고 있던 전문분야 (별) 구조상에 차이는 1964 년 이래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직업 구조의 발전에 관한 연구 조사를 할 때에 얻어지는 인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생겨 나고 있다). 이미 1964 년도의 비교에서 서독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던 제 전문 분야를 고찰해 보면 거의 예외없이 동독의 경우가 지난 몇해동안에 대학 졸업자들과 전문학교 졸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독의 경우보다 높다. 부분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 광산 (업) 과 야금, 기계제자, 농업, 임업등의 분야에 종사한 대학 졸업자의 수는 예를 들어 1967 년도의 경우를 보면 동독의 경우가 서독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법률학과 신학 분야는 서독에 비교해 볼 때 동독은 전체 대학 졸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자취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d) 생업활동에서 차지하는 여성들의 위치

(Zur Eingliederung der Frauen das Erwerbsleben)

172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언급한바 있지만 서독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생업활동은 동독의 경우 보다 그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적다. (주 26)

서독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들의 생업 활동 전망때문에 이하에 이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점을 비교한 가장 중요한 몇가지 결과를 종합해 놓았다.

173 1969 년도에 서독에서는 총인구의 52.4%가 여자였고, 동독의 경우는 54.0%가 총인구중에서 여자였다.

연령구조와 생업에 취업하는 비율

(Altersstruktur und Erwerbsbeteiligung)

174 여성 인구의 연령구조를 생업 종사능력이라는 점에 관련시켜 살펴보면은 서독이 동독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1964년도에 동독의 여성인구 중에서 14세에서 60세까지의 연령층은 56.4% 뿐이 었지만 서독의 경우 이 연령층에 해당된 여성의 수 전체 서독 여성 인구의 60.7%에 달했다. (도표 A 28 과 윗 절의 1 a 를 참고할것)

175 이와 같이 서독이 동독보다 유리한 연령구조(여성)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생업 종사 비율은 동독 보다 훨씬 낮다. 여성들의 취업 비율이 서독의 경우 침체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반하여 동독의 여성 취업 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표 24

여성들의 생업 종사 비율 (%)

해	서 독	동 독
1964	32.2	39.9
1965	31.9	41.1
1966	31.5	41.5
1967	30.3	42.1
1968	30.0	42.4
1969	31.1	43.1

176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생업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 보면 각개 연령군별로 볼때 부분적으로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도표 A 30을 참고할 것) 중년층과 고령층(25세에서 65세까지)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취업 비율이 동독의 경우 서독보다 훨씬 높은 것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데 현재 주어져 있는 통계를 볼 것 같으면 그 구분이 세분화되지 않은 결과로 바로 중년층(25세에서 40세까지)에 있어서의 생업종사 비율의 차이를 알아 볼수 없게 되어 있다. 동독에 있어서 여성들이 결혼을 하므로 인하여 생업 종사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취업을 하는 수가 서독의 경우 보다 많고 그리고 또 결혼후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적 간격이 훨씬 빠르다.^(주 27)

경제분야별로 본 취업비율 (Erwerbsbeteiligung nach Wirtschaftsbereichen)

- 177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 인구중에서 서독의 경우 농업과 산림업 분야를 예외로 하고 (주 28) 여성 취업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모든 경제분야에서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도 거의 전 분야에서 동독보다 비율이 낮다.

도표 25

1968 년도에 있어서의 경제분야별로 본 여성 취업자들의 비율 (생업 취업인구 %로 표시)

경 제 분 야	서 독	동 독
농업과 산림학	53.9	45.0
가공 및 세공부문 (광산업과 에너지산업포함)	27.6	39.2
건 축	5.3	11.9
상품생산부문	23.9	35.2
상 업	52.6	69.2
교통과 통신	16.2	36.6
상업과 교통	41.0	56.7
복 무 분 야	46.8	59.5
경제 전반 (통계)	35.6	45.3

178 동독에 있어서의 여성 취업자비율의 증가현상은 모든 경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단지 농업과 산림학 부문 뿐이다. 지난 몇해 동안에 특별히 증가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분야는 건축과 복무분야였다. (도표 A 30 과 A 31 을 참고할것) 서독에 비하여 훨씬 높은 이같은 여성 취업인구의 비율은 모든 직업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들에 있어서도 동독의 경우 여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현상은 현저한 바 있다. (도표 A 30 과 A 31 참고할 것)

여자견습생 (공) (Weibliche Lehrlinge)

179 동·서독에 있어서의 여성 견습공들의 직업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은 지금까지 살펴본 발전(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나갈것이라는 것을 예기할수 있도록 해 준다.

180 후진의 양성면에서 여성들의 직업교육이 아마도 서독의 경우가 동독 보다는 약하게 추진되어 발전해 나온 것 같다. 견습공 전체를 놓고 볼 때 서독의 경우에 1969년에 여자 견습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였고 이에 대하여 동독의 경우는 45%나 되었다. (도표 A 118 을 참고할 것)

여자 견습공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7년도에 있어서 서독의 경우 직업 전체 분야에 걸쳐서 동독 보다 낮았다. (도표 A 119 와 A 120 을 참고할 것)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가정경제직업」(Hauswirtschaftsberufe) 이라는 직업군인데 이 분야는 동·서독이 그 비율로 보아 비슷하다.

직업군으로 나누어 고찰할 때 여성들의 견습공들이 견습공 전체의 비율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넘는 직업군은 서독의 경우 같은 해에 7개의 직업군 뿐이었다.

- (섬유 제조자 및 세공자 ;
- 피혁 제조자 및 세공자 ;
- 상업과 관계되는 직업 ;
- 가정 경제와 관계되는 직업 ;
- 체 육 ;
- 조직 , 행정 , 사무계통의 직업 ;
- 예술분야 직업)

그런데 동독의 경우는 같은 해에 평균 여성 비율을 넘는 직업군이 20여군이나 있었다. 여기에서 공학, 기술 계통의 직업 분야에서의 여성 견습공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의 경우가 동독 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어 금속관계 직업군의 견습공 중에서 여자 견습공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7년도에 서독의 경우 2%였는데 동독은 9%가 되었다. 기술분야 직업들, 기계공과 그리고 이에 속하는 직업들과 그리고 전자공학계통의 경우 서독과 동독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서 독	:	동 독
39 %	:	56 %
0 %	:	25 %
0 %	:	12 %

1962년에서 1967년 사이에 동독에서 여자 견습공들 중에서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부문은 피혁제조와 가(세)공 및

제2장

예술 부분의 직업에 관한 직업군들에서 뿐이다. 그러나 동독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같은 기간중에 15개의 직업군에 있어서 비율의 증가 현상이 일어났다. 발전의 비율이 감퇴현상을 이르킨 직종은 서독의 경우 소계를 하는 직업 (Reinigungsberufe) 이였고, 동독의 경우에는 교통관계 직업에서 였다.

고급수준을 지닌 노동력으로서의 여자(여성)
(Frauen hochqualifizierte ste Arbeitskräfte)

- 181 고급 수준의 능력을 지닌 생업 취업자들 중에서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4년의 경우 서독이 동독보다 명확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 보였다. (23% 서독-대 28% 동독; 도표 A 41을 참고할 것) 이러므로써 여자 대학 졸업자와 전문학교 졸업자를 두고 동·서독을 비교해 보면 100 (서독) : 36 (동독) 이 였다. 동·서독에 있어서의 여성 인구 전체를 비교해 보면 같은 기간에 있어서 100 : 30 이 였다. (서) (동)
- 182 1964년도에 서독에 있어서 1000명의 14세에서 65세까지의 처녀와 부인들 중에서 대학과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2명이 였고, 동독의 경우는 1000명의 처녀와 부인들 중에서 27명이 대학과 전문학교 출신이 였다. (서독의 경우와 같이 14세에서 65세 까지의 여자들 중에서)

3. 부 록 (Anhang)

방법론적 참고 사항 (Methodische Hinweise)

-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 본보고서의 제2장에 행해진 통계학적 기술들은 이 문제와 관계되는 통계국 (Statistische Amt) 들의 공식 자료에 입각해서 (사용해서) 행해진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원전들과 일치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모든 경우에 콘트롤 되어 질수는 없었다. 원전의 신빙성이나 통계자료의 사용이 매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 자료를 사용해서 특별한 결론을 끌어내는 일을 포기했다. 가능한 한도내에서 여기에 언급된 여러가지 표징들 (경제분야, 직업, 전문 부문)을 구분하는 구분체계 (Klassifikationssysteme) 들을 이들 표징들과 일치시켜 좋았다. 이와 같은 통계적 비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기술된 공통성들이 동·서 양쪽에 있어서의 기본구조와 발전경향의 차이를 통해서 그 밑바닥에 놓였던 (기본이 되었던) 재료로 충분히 증명되어 졌으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 **■ 생업종사 활동** ■ 절 (Abschnitt) 에 사용된 통계들은 대부분의 경우 1964 년도에 관한 통계다.

(동독의 경우 = 국민 인구 조사와, 직업 (인구) 조사 ;

서독의 경우 = 소인구 조사 (Mikrozensus) 에 대한 보충조사기 바탕을 이루었다)

(통계적) 비교를 현재까지 지속해 나가는 일은 일부분의 경우에만 가능했다.

2 a) 에 대하여 =

동독에 있어서의 생업에 종사하는 취업 인구수에 대한 숫자

제2장

들은 독일 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의 통계를 받아 들인 것이다. 1969년도의 경우는 동독의 통계 년보에 수록된 데이터들을 사용한 것이며 이 자료들은 또한 독자적인 계산에 의해서 보충되어 졌다. 서독의 경우에는 이에 사용된 숫자들은 통계년보(Statistischen Jahrbuch)에 따랐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통계년보)

2 b)에 대하여 =

동독에 있어서의 경제분야별 생업 종사 취업 인구의 분포에 관한 숫자는 (백림소재의 DIW =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독일 경제연구소 통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밖의 생산부문** (Sonstige Produzierende Zweige) 항목은 북부부문영역에 참가시켜서 다루었다. (도표 A 18) 산업분야별구분(도표 A 19)은 본 보고서 제 3장에서

에 대하여 =

1964년도의 **직업구조** 비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서독 = 1964년에 시행되었던 소인구조사에 대한 보충조사의 결과 이 자료들을 비교하는 가능성은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서독에 관해서 사용된 숫자들은 연령 65세인구에까지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조비교라는 점에서 볼때 이는 아무런 이렇다 할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동독 = 1964 년도의 국민 및 직업조사의 결과 이 결과는 동독의 (국가) 중앙통계국 (Staatliche Zentralverwaltung für Statistik der DDR)에 의해서 발간된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를 할 목적으로 서독에 대한 (통계) 자료들은 동독의 직업체계 (Berufssystematik)에 맞도록 고쳐서 사용했다. 이를 위하여 직업제별 (Berufsklassen) (4 계별 - Steller)에 따른 전환 수치 (Umsteigeschlüssel)를 발전시켰는데 그 양적 범위 때문에 여기에는 수록할 수가 없다. 부분적으로는 동·서독에 있어서의 직업구분의 최소단위를 (Einheiten der Berufsklassifikationen) (직업계층 - Berufsklassen)도 역시 더 이상 비교되어 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보다 덜 세분화된 단위들 (직업군 - Berufsabteilungen)을 비교할 때에는 이와 같은 극히 드물게만 나타나는 불일치현상 (Unstimmigkeiten)은 거의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2 c)에 대하여 =

질적 구조 (Qualifikationsstruktur)

1964 년도의 생업에 종사하는 대학 졸업자들과 전문학교 졸업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동독이 이에 해당하는 반계를 (Systematiken) (1964 년도에 시행되었던 전국민 인구조사와 직업 (인구)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바 있는 것 같은 대학 내지 전문학교에 있어서의 주전공 (Hauptfachrichtcupen) 체제)은 서독의 체제 (소인구 조사)에 맞도록 변경시켜서 사용했다. 동·서독에 있어서의 대학 졸업자라는 정의는 1964 년도의 경우

제 2 장

동일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것은 전문학교 졸업자 군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1964 년도의 VBZ (인구 및 직업별 (인구) 조사) 에 나타난 동독 데이터들에 대하여 서독의 경우 엔지니어학교 (Ingenieurschulen) 와 테크니커학교 (Technikerschulen) 그리고 전문학교 (Fachschulen) 의 일부에서 졸업하는 졸업자들에 관한 인구조사에 기록된 숫자를 대치 (비교) 시켜 놓았다. 이들은 - 동독에 있어서의 전문학교 졸업자 정의에 맞게 - 동독의 국민 (인구) 조사와 직업 (인구) 조사에 과감히 포함시켜 졌다.

제 2 장 의 주 석

1. 1969 년 말 인구분포는 다음과 같다 = 동독이 17,075,000 명, 서독이 61,195,000 명, 다음에서 계속 행해지는 구조비교에서 통계자료는 서독의 경우 연평균을 말해주고, 동독의 경우는 연말수자를 말해주는 것으로 때문에 통계자료는 이 두 수의 상호비교만을 보여주고 있다. 동독의 경우 연말인구 숫자와 연평균인구 숫자가 얼마되지 않으므로 이같은 비교를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서 양독 인구숫자에는 외국군 주둔 병력이나 이 병력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그 뿐만 아니라 동독의 인구 발전에 관한 재료면에서 보더라도 발표된 숫자는 상당한 의심을 삼고도 남음이 있다. 사실 동독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해 인 1964년의 인구는 근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인구수를 보여 주었던 해인제 이점이 인구문제 재료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 1963년이나 혹은 1962년에 대한 공식적인 인구문제 재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1969년까지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다고 볼수 있다.
3. 제 2의 인구예상 통계는(서독의 1968년에서 2천년 까지) 연방통제국이 산출해 낸 AZ 06 BVB/F 68을 참고해 볼것. 이 인구 예상 통계에서 외국인의 서독 거주 예상은 1968년 1월 1일의 인구 비례 수준이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4. 동독이 발간한 1955년의 인구 통계 연보. 페이지 220.

제 2 장

5. 동·서독에 있어서의 남·여 비율의 차이는 50 년대에 많았던 동독인구의 서독으로의 피난 이주의 결과는 아니다. 이미 1946 년을 보면 동·서독에 있어서의 남·여 비율의 차이는 오늘날 보다 훨씬 컸다. 다음과 같이 =

오늘날의 동독지역 - 100 (남) 135 (여)

오늘날의 서독지역 100 125

그러나 전후 동·서독 내부에서 일어난 인구 이동은 연령별 분포 구조에는 영향을 끼쳐서 차이가 나게 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기 바람 =

D. Storbeck = (저)

Soziale Strukturen in Mitteldeutschland (중부 독일 (= 독일) 에 있어서의 사회구조)

(이 저서는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n Mitteldeutschland = 중부 독일에 있어서의 경제와 사회) 의 제 4 권으로 출간되었음

발행은 서독의 『전독 관계부』 내에 있는 독일 통일 문제 자료 연구 위원회가 한 것으로 백림, 1964 년 페이지 16 이하를 참조해 볼 것)

6. 60 세에서 65 세에 해당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동·서독이 취하고 있는 정년퇴직법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통계로는 연금생활자가 이 통계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만약에 동·서독이 연령법을 감안한다면 정세학적인 사회능력 (demographische Sozialleistung) 은 동·서독의 차이가 더욱 커진다. 제 5 장은 6 장 참고할 것.

7. 연방 통계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70 년 상반기 서독의

경우 일반적인 경향을 낮추어 잡아서 산출해 낸 예상 출생수
자도 또한 현저하게 그 예 보다도 줄어 들었다고 한다. 이
와 같은 관찰은 인구팽창과 그리고 인구발전에 대해서 행하게
될 앞으로의 예상설정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8. 동·서 양독을 국가적 단위로 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은 여기
와 그리고 이하에서 제한된 경우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
에 언급되는 숫자들을 계산해 내는 데 쓴 계산 방법들이 서
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독의 경우 임신가능 수를 그해의 중
간을 기준으로 삼은 여성인구를 산출해 낸 것이고, 동독의 경
우는 이와는 달리 연말의 여성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산출해
낸 것이다. 이 같은 연령별로 볼 때의 임신가능 수치를 끌
어 낼 때에 특히 눈에 띄게 관찰해 볼 수가 있다.
9. 서독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출산감퇴현상은 주로 가정에서
3 제나 혹은 그 후의 아이들(자식)에게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출산율이 젊은 어머니들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

참고 = Wista 5/1970, 페이지 232 이하.

10. 결혼할 능력을 가진 남자들의 1968년도 연령구조를 다른 도
표 A 14에 의하면 그 전해인 1967년과 비교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므로 연령구조적 영향말고도 이밖의 특수영향들(Son-
dereinflüsse)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지 않을수
없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연령은
- 1967년 = 23세 (10%)
1968년 = 21세 (11%)

11. 동·서독이 사망율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 고이

제2장

는가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추측을 해 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서독의 사망 원인통계가 서로 비교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세계인구의 자연율은 현재 1.8%고, 구라과의 경우는 0.65%다. (이 수자는 집계된 최근 5년간의 평균이다.)
13. 동·서 양독이 '이주'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아무런 확실한 재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행해지는 비교숫자를 가지고는 이 문제 (인구이동이나 이주)를 깊이 분석이나 해석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비교표들이 동·서독에 있어서의 인구의 이동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만은 틀림없다고 보겠다.
14.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 정부가 발표한 지역구분 (Raumordnung) 보고서를 참고할것.
1968년도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국회 인쇄물 (Bundestags-Drucksache) V/3958, 페이지 5 그리고
Wista 7/1970, 페이지 337 이하
15. 지난 몇해 동안 (1966년에서 1969년 까지 사이에) 서독의 57개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난 (증가한) 도시는 20개 도시밖에 안된다.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극히 경미한 인구의 증가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인구 증가 현상을 나타낸 이 20개 대도시의 증가 인구 반 이상을 훨씬 넘는 인구가 뮌헨 (München) 시의 인구 증가였다.
16. 이 문제 관해서는 Schliebe와 Teske 의 논문 =
"Verdichtungsraume in West- und Mitteldeutschland"

(서독과 중부독일 (=동독)에 있어서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을 참고 할것.

이 논문은 잡지 = "Raumforschung und Raumordnung" 의 1969년 11월에 간행된 제 27월호, 제 4권에 수록되 있음.
이 잡지의 페이지 145 이하에 .

17. Mitteilungen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 und Berufsforschung (노동시장과 직업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의 보고서), 1969년, 제 9권 (Heft 9) 페이지 662 .

18. 이 보고서에 다루는 시기 이전의 동독에 있어서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활동의 의의와 발전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논문을 참고해 볼 것.

D. Störbeck = (저)

Soziale Strukturen in Mitteldeutschland (중독 < =동독> 에 있어서의 사회 구조), 페이지 102 이하.

19. 1964년 이후의 자료는 아직 제공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문제와 그리고 이후에 계속될 동·서독을 비교하는 경우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1964년의 통계자료에 바탕을 두어 비교하겠음.

20.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 und Berufsforschung (노동시장 연구와 직업연구 보고), Stuttgart, 1970년 Heft 1, 페이지 27.

22. 서독의 경우 이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1968년에

제 2 장

동독보다 낮았는데 이것은 경기 변동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다. 1970년의 서독의 생업 종사비율은 동독의 비율과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23. 교육정책적 분야에 있어서의 경향과 이것이 질적 구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 제 7장을 참고 할 것 - 동·서독에서 점점 생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노동력에 관한 정책 경향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 6장을 참고해 볼 것.
24. 대학 졸업자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전체 생업 종사 인구에 비해서 그 비율을 내어 보면 1964년에 서독의 경우 3.4%가 되고 동독의 경우는 2.3%가 된다. 만약에 독일내부에서 이와같은 (서독으로) 이주하는 진출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1961년에 행했던 서독의 인구 조사와 직업 조사의 결과에 바탕을 두어 계산해 본다고 하면 그 당시의 동·서독에 있어서의 대학출신 취업자가 전체 취업 인구에 대해서 갖는 비율은 3.2%(서독)과 3.0%(동독)가 된다. 이 밖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다. 즉 오더 나이세강 이동 지역으로 부터 비교적 많은 아카데미커가 서독으로 들어오므로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5. 전문학교 졸업자들의 직업구조를 비교해 보는 일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주어진 통계자료로 이와같은 비교고찰을 행해 나갈수 없었기 때문이다.
26. 본 보고서의 제 6장에는 동독에서 여자들을 생업에 종사토록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할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교취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해 두었다=즉, 서독의

경우와는 반대로 동독에서는 미망인 연금 (Witwenrenten) 은 특정한 인적 전제조건을 수행할 경우에만 한해서 지불되는 것이다. (연금, 직업 내지 생업 종사불능, 아이들의 수와 나이에 따라서)

27. 여론 조사에 의하면 동독에 있어서의 처녀들의 생활계획 (인생계획) 은 벌써 일찍부터 될수만 있으면 직업을 중단함이 없이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라며 될수만 있으면 완전히 직업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처녀들은 점점 취업인으로서의 높은 수준을 배양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처녀들은 공학 기술 계층의 직업을 택하는 때도 많고 이들 중에서 몇사람은 이미 처녀 대장 (Domänen der Mädchen) 이 되어 버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컴퓨터등의 재료 처리 분야에서는 여성이 80%나 되고, 화학분야의 전문 노동자의 경우는 60%정도가 여성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 할것=

W.Friedrich 저 = Jugend heute (오늘날의 청소년)

(동) 백림, 1966년;

U.Siegel (논문) = Die Berufstätigkeit der Ehefrau im Meinungsbild Jugendlicher (청소년의 여론에 비추어 본 결혼한 부인들의 직업활동),

in = Arbeit und Arbeitsrecht (노동과 노동법) (잡지)

1969년, 제 11분책, 페이지 337 이하 -

H.Grasse (저 - 박사 학위 논문) =

Berufswunsch und Berufsweg Weiblicher Jugend (소녀들과 젊은 여자들의 소망 직업과 직업과정) Leipzig 1965년.

제 2 장

D. Bernholz = (논문) In den Oberschulen entscheidet sich = Werden mehr Mädchen Technik studieren ?

(중고등학교 과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보다 많은 여자들이 공학을 (대학에서) 공부할 것인가?),

in = Das Hochschulwesen (대학제도) (잡지) , 1965 년 .

Heft 10 ;

H. Winnig = (저 - 박사 학위 논문)

Über das Verhältnis individueller und genereller Interessen in der Studienmotivation und Studienbewerbung bei Schülern der EOS (EOS = Erweitste Ohernhule 확장된 중·고등학교)

(EOS 학교 학생들에 있어서 공부를 택하게 된 동기와 입학 지원에 나타난 개인적 관심과 일반적 관심과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 ,

Patsdam , 1965 년

동독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심성의 변천과는 완전히 달리 서독에 있어서는 젊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도 직업 활동이 갖는 의의는 가정을 이루워야 한다는 뜻에 분명하게 뒤져 있다.

(즉 결혼이 직업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 여자주) 여자들이 직업상으로 점차 수준을 높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있어서는 오늘날 대부분 (과반수 이상) 의 여자 (처녀) 들이 평생 (일생동안) 직장생활을 할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 할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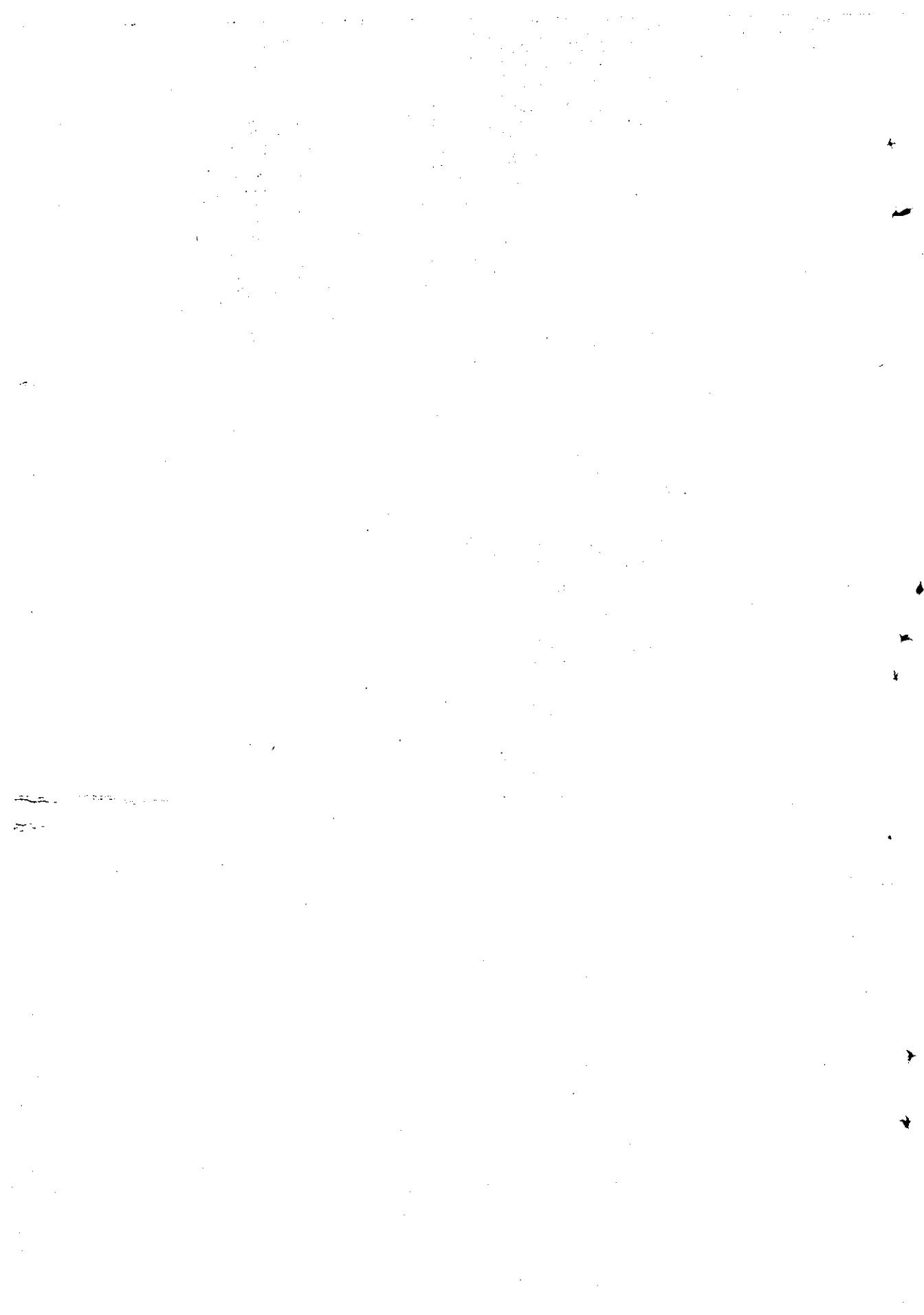
F. Weltz = (저)

Bestimmungsgrößen der Frauenerwerbstätigkeit (여성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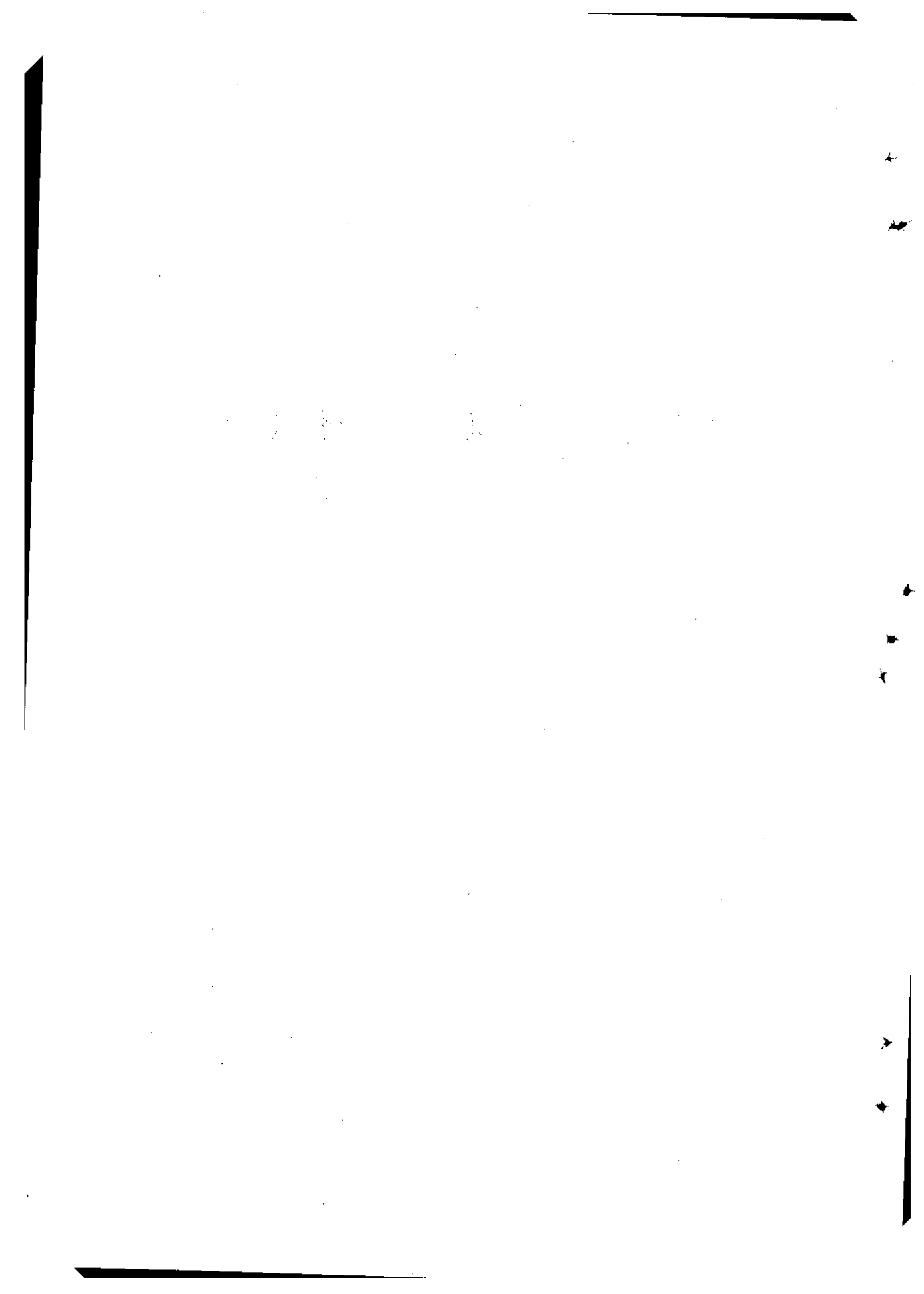
생업(취업)활동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요소들)
München 1970년.

(Weltz의 이 논문은 노동시장과 직업문제를 연구하는 연방
노동국의 연구소의 위탁에 의하여 저술된 조사 보고서다).

28. 여기에 나타나 있는 높은 여성 취업 인구 비율은(주업으로
생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동하고 있는 가족의
식구로 이루어진 여성 인구가 많은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수
있다.



제 3 장 생 산 과 생 산 성



제 3 장 생산과 생산성 (Produktion und Produktivität)

- ☒ 실제 사회생산(품)의 성장은 -수준은 동.서독이 차이가 있지만 - 1960년에서 1969년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동.서독이 거의 같이 성장해 나갔다.
서독:매년 4.8% 동독:매년 4.5%가 각각 증가 성장을 보았다.

그러므로 동.서독의 수준의 발전은 더욱 컸다. 성장의 동요현상(Wachstumsschwankungen)은 서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1947년도의 불경기 현상으로 인하여 동독보다 더욱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다.

(183)

- ☒ 동독과 서독의 경제의 생산구조(Produktionsstrukturen)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서독의 경우에 동독보다 취업비율이 높은 분야는 다음과 같다.
상업, 교통, 통신, 동독의 경우 서독보다 많은 취업비율을 나타내보이는 분야는, 산업과 농업이다.
생산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부문은 건축 경제분야다. (Bauwirtschaft)

(184)

- ☒ 경제발전에 걸친 노동력의 생산성(Gemativirtschaftliche Arbeitsproduktivität)은 경제 전 분야에 걸친 평균으로 보아 서독이 동독 보다 약

반쯤은 더 높은 것이라고 추정 된다.

그렇지만 지난 몇해 동안에는 이같은 생산성이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발전되어 나갔다.

(186)

- ☒ 만약에 농업을 제외한다면 생산성의 성장 (Produktivitätssteigerung) 템포를 기준으로한 경제분야별 순위 (Rangordnung)는 동.서독에 있어서 다음의 경제분야가 완전히 같다.

산 업
 교 통
 건 축
 상 업
 복무분야

그렇지만 농업 부문의 생산성 성장이 서독의 경우 최첨단을 걸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의 경우 끝에서 두번째를 마크하고 있다.

(187)

- ☒ 서독을 100으로 기준삼아 동독과 비교할때, 동독은 생업에 종사하는 취업 인구가 약 34%가 되고, 총시설 능력 (Brutto-Anlagevermögens) 약 29%를 가지고 1960년에서 1968년까지 사이에 산업분야에서 24.5%의 생산을 해냈다.

(189, 193, 197)

동시에 동독은 서독과 비교할때 자산(資本)능력의

약 85% , 노동생산능력(性)의 약 72% , 그리고 자본
생산능력(Kapitalintensität)의 약 85%에 해당
하는 생산을 이룩해 냈다.

(200, 205, 206)

- ☒ 비교적 다음과 같은 산업분야가 서독의 경우 강하
게 그 분포를 이루고 있다.

야금학(Metallurgie) , 화학산업 , 이밖의 금
속가(細)공 분야의 산업(특히 자동차제조) 이와
는 반대로 동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부문이 비
교적 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産業) , 광 산(業) , 목제품 , 문화(用)품
(Kulturwaren) , 섬유(방직)의복류 , 식료품과 기
호품(Genu mittelindustrien)산업 , 다음의 몇
개 산업 분야는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 다같이 산
업 생산면에서 거의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재료 , 전자공학 , 조선(業) , 피혁품(目) , 구두
류(Schuhpezwaren) , 모피류 , 섬유소(Zellstoff)
종이류 , 다판서(Polygraphische)산업 , 유리류 ,
요업

- ☒ 산업 부문별로는 생산구조와 종업(就業) 구조는
동 , 서독이 1968년도의 경우 1960년도 보다 서
로 유사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산 및
종업구조상의 유사성을 생산시설 능력면의 유사성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설면은 그렇지 않다.
-역자주)

(191, 194, 198)

- ☒ 서독에 있어서의 산업의 자본 집중도 (Kapitalintensität) 노동 (力) 의 생산성 (Arbeitsproduktivität) 그리고 자본의 생산성 (Kapitalproduktivität) 은 극히 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독에 있어서 보다 높다.

(200.205.207)

- ☒ 동독의 산업이 처해있는 후진성 (Rückstand) 은 1968년도의 서독의 경우와를 비교해 보면 자본 집중도에 있어서는 서독보다 약 3년 뒤져 있으며 노동 (力) 의 생산성이라는 점으로 볼때에는 약 7년 반이 란 시간을 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 생산잠재 능력 (Produktionspotentials) 의 계산 (노동력과 자본을 완전 투입했을때 얻을 수 있는 생산을 말함) 을 볼것 같으면 서독은 1960년에서 1968년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대 생산 (能力) 이 실제 생산된것과 비교해 보면 10%쯤 높고, 동독의 경우는 25%나 높다.

이 수치는 서독은 그의 생산 잠재 능력 (곧 최대 생산 능력) 을 91% 활용하고 있고 동독은 그의 최대 생산능력을 80% 밖에 이용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14)

- ☒ 장래성이 있는 화학과 금속 가 (細) 공 부문이 생산 용량 (Produktionsvolumen) 과 생산 동인 (Produktionsfaktoren)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의

경우 전체적으로 동독보다 높다. 동독은 금속유
가공 (Mineralölverarbeitung) 과 자동차생산
부분 (Fahrzeugbau) 에서 특별히 두진성을 나타
내 보이고 있다.

(192.196)

- ☐ 동독은 토지 개혁 (Bodenreform) 을 하고 또
농업부분의 생산 공동체 (Produktionsvolumen)
를 만들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1969년도에 있어
서 서독이 동독보다 100배도 넘는 농업 부분의
생업이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독의 농업 부
분의 생업 (Betriebe) 이 갖는 평균 규모 (Du-
rchschnittsgröße) 는 서독의 평균 규모보다
약 50 배 가량이나 큰 현상을 가져 왔다.

(215-217)

- ☐ 1957 / 61 년과 1969 년 사이에 있어서의 서독과
동독의 농업 생산 성장률 (Zuwachsraten) 을
서로가 상이한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독이 거의 같다.

(222)

- ☐ 식량생산 (Nahrungsmittelproduktion) 은 - 매
인구마다 곡물단위 (Getreideeinheiten) 를 적
용하여 계산하에 1968 년도에 서독은 동독보다
약 1 / 6 쯤 낮았다. 농업 생산물에 관한 자급,
자족도 (Selbstversorgungsgrad) 은 1968 년도
에 서독이 77 % , 동독이 85 % 를 보여주고 있었

(230)

☒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품들의 서열 순서는 동-서독이 같다.

동물성 식품 생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으뜸이 가는것이 었다; 돼지고기, 우유, 소고기
식물성 식량의 생산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으뜸이 되는 식량이 있다; 곡식(物), 사탕무, 감자

(228.229)

☒ 1968년에 서독의 농업은 그의 식물성 농산물 생산에 동독보다 비교적 적은 농업 가동면적 (Nutzfläche)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동독보다도 훨씬 적게 금비(商品肥料) (= Handelsdünger)를 필요로 했다.

동물성 농산물의 생산부분에 있어서도 서독은 동독보다 비교적 적은 사료와 가축을 투입했다.

(219.233.234)

☒ 1958년에 동독의 농업은 서독농토 생산성 (Flächenproduktivität)의 약 4/5을 그리고 최대 노동력을 투입해서 얻을수 있는 노동(力) 생산성의 (西獨의) 약 3/5쯤에 해당하는 생산을 해 냈다.

(232.235)

1968년에 동독에는 매 헥타의 농업에 이용할수
- 이용 면적 (Nutzfläche)에 270명의 인
살았고, 서독에는 434명의 주민이 살았다.

같은 해에 동독에서는 매 인구(-人) 당 11.8 dz (= Doppelzeitner - 200 파운드 무게에 상당) (그러니까 11.8 × 200 파운드가 되었음-역자주)의 곡물(단위량)이 농업 부문에서 생산되고, 서독에서는 9.9 dz가 생산되었다. 그러므로 매-인 인구당 서독은 서독보다 19% 높은 생산성을 보여 주었다.

(230)

1. 전체(總)경제(Gesamtwirtschaft) ^{주 1}

183. 실제상의 총사회생산은(Bruttosozialprodukt) ^{주 2} 1960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사이에 동-서독이 거의 같은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나타내 보였다.

이 기간동안에 있어서의 서독의 연평균 성장률은 4.8%였고 동독의 연평균 성장률은 4.5% 였다.

여러해 사이에 일어난 발전(주 3)은 이와같은 평균치(Mittelwert)에서 차이가 나는데 특히 서독의 경우 경기상으로 일어난 동요현상으로 인하여, 해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도표 A43 과 A4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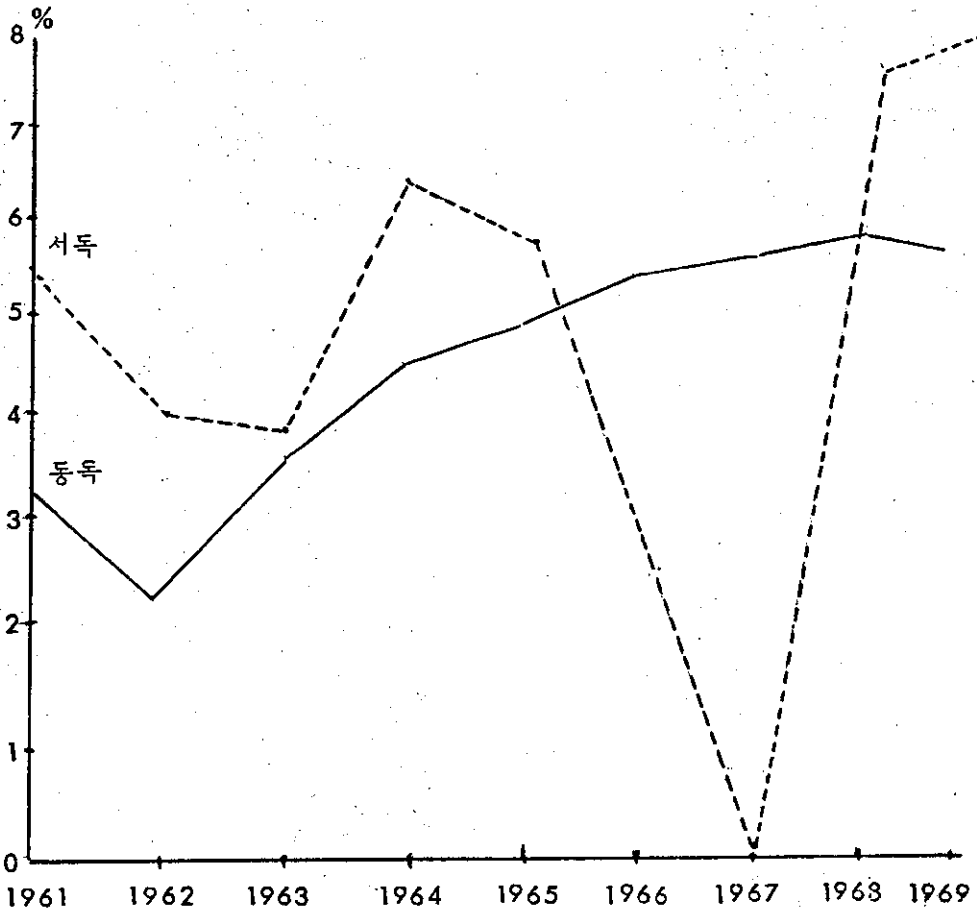
그라프 2

전년도에 비교해본 동-서독에 있어서의 총사회생산의 실제 성장

Reales Wachstum des Bruttosozialprodukts in der Bundesrepublik und in der DDR

in % gegenüber dem Vorjahr

(%로 표시)



7) 생산구조 (Produktionsstrukturen)

184 서독과 동독의 생산구조는 (Produktionsstrukturen) 를 살펴보면 전체 생산무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각분야 (Sektoren) 마다의 비율이 서로 상이하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수 있겠다. 동-서 양독에 있어서 다같이 산업 (Industrie) (주 4)

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에 있어서의 산업의 우위는 동독에 비하면 약간 낮다(서독; 47%, 동독; 51%).

농업도 역시 동독의 경우 전체 경제부문의 생산에 기여하는 도가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다른 한편 교통부문의 전체생산에 대해서 기여하는 도가 동독의 경우 서독보다 낮다. 상업과 비무분야가 차지하는 생산비율(Produktionsanteile)을 보면 동독의 경우가 서독보다 비교적 훨씬 적다.

- 185 구조변화를 볼것 같으면 동-서독이 다같이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국민경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따라가고 있다. 즉, 산업이 평균을 넘는 비율로 팽창해 나가고 있는 반면 농업이 총 국내생산(Bruttoinlandsprodukt) (주 5)에 기여하는 도는 줄어들었다.

아무튼 눈에 띄이는 일은 동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전체 경제산업 업적의 9%에서 10%(주 6)가 농업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서독의 경우에 농업이 전체 경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

동독에 있어서는 그동안 건축활동이 강화되고 그리고 서독에 있어서는 건축활동이 비교적 퇴보현상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동-서독에 있어서의 건축(경제)분야의 성장 비율은 7%로 서로 가까워 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까워 지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서독에서 일어났던 불경기로 말미암아 더욱 촉진되어 갔던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力)의 생산성”(Arbeitsproduktivität)

도표 26

1960년도와 1969년도의 서독과 동독의 총국내 생산
 (구조는 1967년도의 물가를 DM와 M로해서 %로표시)
 (Aufkommen des Bruttoinlandsprodukts i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1960 und 1969)
 (Struktur in% zu preisen von 1967 in DM bzw.M)

분 야	1960		1969P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총 국 내 생 산 (Bruttoinlandsprodukt)	100.0	100.0	100.0	100.0
공 제 기 장 (額) (Abschreibungen)	8.2	7.4	10.7	9.7
순 국 내 생 산 (Nettoinlandsprodukt)	91.8	92.6	89.3	90.3
총국내생산에대한기여(細目)				
산 업 ¹	43.5	47.3	47.4	51.0
건 축	7.2	5.7	7.0	6.9
농 업	4.8	13.1	3.8	8.9
교통, 우편(체신)장거리통신	6.2	5.1	5.9	5.0
상 업 ²	14.0	10.0	13.2	9.3
그 밖의 생산분야 ³	-	1.4	-	1.5
비 무 무 문 ⁴	24.3	17.4	22.7	17.4

(주)

1. 광산(業) . 에너지산업 . 생산성 수공업을 포함하는 의미로서의 산업
2. 동독의 경우 : 숙박업과 음식업을 포함한 국내상업 (Binnenhandel)
3. 연구활동 (Forschungsbetriebe) 과 발전계획부문 (Entwicklungsbetriebe) 경제를 지도하는 기구 (Wirtschaftsleitende) 출판사등
4. 국가 개인의 가계 (政) (Haushalte) . 그리고 생업종사 성격을 띄지 않고 있는 기구들

P. 임시로 산출해낸 수자 (Vorläufige Zahlen)

출처 (재료) : 서독 - 연방 통계국 (Statistisches Bundesamt)

동독 - DIW (백림소재의 독일 경제문제 연구소) 의
 Herbert Wilkens 의 미출판 원고 (unveroffentlichtes Manuskript Herbert Wilkens
 DIW, Berlin

산출방법에 관해서는 부록으로 이 장의 말미에 언급한
 " 방법론적 설명 " (Methodischen Hinweise) 을
 참고 할것

" 노동 (力) 의 생산성 " (Arbeitsproduktivität)

186. 경제전반에 걸친 노동 (力) 의 생산성 (주 7) 이 동 - 서 양독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 생산성의 증가는 1969년에 있어서는 서독이 1960년의 수치에 준하여 보면 148%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제 3 장

동독은 143%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동-서독의 생산성 증가 비교에 나타난 5%는 1961년에서 1963년 사이에 일어난 동독경제 성장의 휴식기간(DDR-Wachstumspause) 이래 줄줄 존재해 오고 있는 것인데 서독에 경제 불경기가 한참이던 때는 잠깐 동안은 동-서독의 경제 생산성의 증가 차이가 2%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중기적으로 볼때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지난 몇해 동안의 노동 생산성은 그 성장도가 거의 비슷하게 빨랐다.

“경제 분야별로는 서열순서”(Rangordnung der Wirtschaftsbereiche)

187. 경제 각분야의 생산성 성장연도에 비추어본 순위(도표 A45 참조할것)는 우선 농업을 잠정적으로 도외시 한다면 동-서양독이 같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산 업
2. 교통, 통신
3. 건 축
4. 상 업
5. 복무부문(국가를 포함함)

농업 부문에 나타난 불균형적인 현상은 특기할만 하다. 농업은 서방 계 산업국가들에 있어서 전통적인 선두주자(Spitzenreiter)로서 생산성 성장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독에 있어서의 농업은 상업과 복무부문의 사이에 비로서 그 위치를 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한 제 원인은 본장의 제 3 절에 가서 자세히 다루어

다루어 지게 된다 (연구조사 된다).

188. 생산성 변화가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 비슷했다 하더라도 그 質的) 수준은 아무 차이가 없다. 수준으로 말할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보아 동독이 서독보다 약남쯤 뒤져있다. 몇개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조사 연구결과가 주어져 있지않는데 반하여 이하에서 계속되는 분석검토에서는 서독과 동독의 있어서의 생산성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 (주택 건축과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제 4 장을 참고할것).

2. 산업 (주 8) (Industrie)

a) 총생산 (Brutttoproduktion)

189. 산업의 총생산 (도표 A46, A 47, 그리고 A 52 를 참고할것) - 총매상 (高) 와 이에 더하여 그때 그때의 재고변화 현황과 그리고 주어져 있는 시설을 포괄한 - 은 동독의 경우 서독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1960 년에서 1965 년에 이르기 까지 31% 가 늘어 났다. 1968 년도 까지는 산업의 총생산이 동독의 경우가 서독보 다 배리 늘어 났다. 절대적 총 생산 (Die absolute Brutttoproduktion) 은 - 1962 년도 서독의 (物) 가격으로 비추어 보아 - 동독이 7 백 20 억마르크 (1960 년) (72 Mrd. DM) 에서 1 천 1 백 25 억마르크 (1968 년) (= 112.5 Mrd. DM - 전부 서독의 DM 화폐로 계산한 것임 - 역자 주) 로 늘어났고, 서독은 3 천 1 백 30 억 (313 Mrd. DM - 1960 년) 마르크에서 4 천 5 백 50 억 마르크 (455 Mrd. DM) 로 성장해 갔다.

		1960 년	1968 년
동	독	72 Mrd. DM (7 백 = 20 억 마르크)	112.5 Mrd. DM (1 천 1 백 25 억 마르크)
서	독	313 Mrd. DM (3 천 1 백 30 억 마르크)	455 Mrd. DM (4 천 5 백 50 억 마르크)

동독은 1960 년에서 1965 까지 사이에 서독 생산량의 23 %에서 23.5 %씩을 각각 생산해 냈고 1966 년에는 약 24 % , 1967 년에는 (서독의 물경기) 약 26 % 그리고 1968 년에는 서독의 약 25 %에 해당되는 생산을 해 냈다.

“ 생산구조의 변화 ” (Veränderung der Produktionsstruktur)

190. 생산구조는 동-서 양독에 있어서 1960 년이래 크게 변화되었다. 동-서양독에 다 같이 그 비율이 줄어든 분야는 다음과 같다.

광 산 (業)

야금 (Metallurgie)

섬 유

의 (衣) 류

피혁제품 , 구두제품 , 모피제품

식료품

기호품 (Genussmittel)

동-서 양독에 있어서 그 비율이 다같이 늘어남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産藥)

화 학

전자공학

자동차산업 (생산)

서독에 있어서 행해진 생산성 구조의 변화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균 성장율을 훨씬넘는 화학산업이 그 출발성을 이루고 있고 서독의 경우는 (서독에 있어서의 화학산업의 성장에 비하면은 훨씬 약하기는 하지만) 역시 화학 부문의 성장이 이쯤인데 이에 결하여 급 성장율을 나타낸 것은 금속가(細)공 부문산업의 발전이 었다.

소비를 주로 하는 산업(경공업, 식료품산업, 기호품산업)들은 동독의 경우 1960년에서 1968년 까지를 살펴보면 약 40%에서 약 36%로 줄어 들었다. 서독에 있어서도 위에 언급한 산업분야는 또한 32%에서 30%로 줄어 들었다.

이렇게 볼때 소비를 위주로하는 산업이 생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독의 경우가 서독의 경우보다 비교적 강하게 대포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주 9)

동독의 경우 금속가(細)공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다. 동독에 있어서의 금속가(細)공 산업은 거의 전적으로 자동차 제작(生産)에만 쓰이고 있다. (주 10)

기본 재료 산업(Grundstoffindustrien)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 서독이 전체적으로 보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1968년도 - 서독 - 39.5%

동독 - 38.3%)

제3장

에너지 공급과 건축자재 부문은 동. 서독이 생산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그런데 반하여 광산(業)은 동독의 경우가 서독보다 훨씬많은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야금과 화학부문에 일어났다. 이 두부문은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훨씬높은 생산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 1968년도와 1960년도의 생산구조의 비교 ” (Vergleich der Produktionsstruktur 1968:1960)

191. 동독의 생산구조는 1968년도에 있어서는 1960년도의 경우 보다는 서독의 생산구조와 덜 차이가 났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 통계자료를 수록하는 일은 포기했다).

서독과 비교해 볼때 특별히 강력한 비율을 나타내 보이는 동독의 산업구조상의 경제분야는 다음과 같다.

광산(業) (특히 갈탄(褐炭) 광업)

조선업

목재품과 문화상품 (Kulturwaren)

섬유품목

식량과 기호품 (Genussmittel)

비교적으로 아주 약한 비율을 보이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

야금 (분야) 등이다.

동. 서독 사이에 존재하던 차이는 1968년 까지도 다음의 제 분야에서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전자공학

기계 제작

금속 제품

정밀기계 산업과 광학산업

피혁제품, 구두 및 모피제품

유리와 요업 (Keramik)

192. 동 . 서독에 있어서의 성장율이 높은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8 년도가 1960 년도의 경우보다 명확히 높다. 이 기간 동안 동독은 금속 가(細)공 산업을 서독보다 더 강력히 발전 시켰다. 이와 반대로 서독에 있어서의 화학산업의 발전 속도가 동독의 경우보다 높다(빠르다).

b. 생산요소 (Produktionsfaktoren)

“생산요소로서의 노동” (Produktionsfaktor Arbeit)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들 (Beschäftigte in der Industrie)

193. 전수공들을 포함한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의 수는 서독의 경우 1960 년에서 1968 년에 이르는 사이에 약간 줄어들었다. 즉, 827만명에서 810만명으로 줄었다(도표 A 48.A 53을 참조할것). 이와는 반대로 동독에서는 286만명에서 293만명으로 취업인구(産業에)가 증가했다. (주-12)

소비를 위주로 하는 경제분야 거의 전역에 걸쳐서 취업인구가 줄고 금속 가(細)공 산업분야 전체에 있어서 취업인구가 늘어났다는 점에 착안하여보면 동 . 서독에 있어서의 발전의 추세는 거의 동일하다.

기본 재료 산업 (Grundstoffindustrien)에 있어서는

동독의 경우 취업인구가 늘어났고 서독은 화학 부문에서 강력한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취업인구가 줄어 들었다.

취업자부문의 성장에서 제일 첨단을 걷는 경제분야는 다음과 같다.

서독 :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인쇄부문 (Druckereien),

전자공학

동독 : 금속 가(細)공 산업

“취업인구 구조” (Beschäftigtenstruktur)

194. 동, 서독에 있어서의 개별산업 분야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서로 비교해 보면 1968년도에 있어서의 양독의 취업인구 구조가 1960년도의 경우 보다는 더 비슷하다는 점을 알수 있다.

195. 서독과 비교하여 동독의 경우에 비교적 보다 많은 취업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경제분야는 다음과 같다.

광산(業)

조선(業)

건축재료

목재상품과 문화상품 (Kulturwaren)

섬유류

피혁제품, 구두류, 모피제품

유리와 요업

식료품산업 및 기호품산업

서독에 비하여 비교적으로 취업인구가 적은 동독의 경제 분야

야 금

전자공학

다판화 산업

의 류

섬유소 산업 및 제지산업 (Papierindustrie)

소비를 주로 하는 산업들에 종사한 취업인구는 1968년에 동독에 있어서는 33.5%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 중에서)였고 서독의 경우는 30%를 나타내 보였다.

196. 전 세계적으로 현재 고도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경제 부문들 (금속 가-세공, 화학)에 종사한 취업 인구는 1968년도에 동독의 경우는 약 48%였고 서독은 53%의 취업율을 나타내 보였다.

생산요소로서의 시설능력 (Produktionsfaktor Anlagevermögen)

“총 시설능력” (Brutt-Anlagevermögen)

197. 산업에 있어서의 총 시설능력 (BAV = Brutt-Anlagevermögen) 즉, 한 특정한 기간에 사용될수 있는 모든 산업시설을 재 조달할때 필요한가치 (Wiederbeschaffungswert)은 1972년도의 기 격에 준하여 계산할때 1960년에는 2천3백3십억 마르크 (233 Mrd. DM)였는데 1968년에는 3천8백90억 마르크 (389 Mrd. DM)로 늘어났다. (도표 A 50, A51, A54 참조)

이와같은 기간에 동독에 있어서의 산업 총 시설능력 (DAV)은 - 1962년도의 서독의 가격에 준하여 산출해 볼때 7백억 마르크에서 1천1백20억 마르크 (112 Mrd. DM)로 늘어났다. 발전 속도는 서독이 동독보다 약간 빠르다.

서독 : 1968년도 : 1960년도의 167%에 해당

동독 : 1968년도 : 1960년도의 160%에 해당

1960년도에 있어서의 동독의 사용가능한 산업 총 시설능력은 서독의 약 30%에 달했으며 1968년에는 서독의 약 29%에 달했다.

이와같은 발전에서 가장 선두주자는 서독에서 금속가(細)공 산업이 였다. (+ 89%) 소비를 위주로 하는산업 (+ 64%)과 기본재료 산업 (+ 60%)들은 성장도가 상이하다.

기본 재료 산업이 비교적 약한 총시설 능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다.

즉, 광산(業)은 휴향조치를 취하므로써 1965년 이래 그의 능력을 제한해 왔다. 그러므로 1968년에 지내고 있는 광산(業)의 능력이라는 것은 1960년도에 비교할때 거의 아무런 변화를 하지않은 총시설능력 (BAV)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겠다.

동독에 있어서는 기본 원료(재료) 산업 (+ 69%)와 금속가(細)공 산업 (+ 68%)의 총시설능력 (BAV)이 가장 큰 성장을 나타내 보였고 이 뒤를이어 경산업 (+ 39%)과 식료품(산업) 및 기호물품 산업 (+ 25%)이 큰 성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198. 산업에 있어서의 산업 구조와 취업구조를 비교해 볼때 서독

과 동독은 60년대 말에 60년대초기 보다는 서로 별 큰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총시설 능력의 발전에 관하여 동.서독을 비교해 볼때는 이는 완전히 그와 정반대 현상을 이르고 있다. 즉, 광산(업)에 있어서 침체 상태는 이 분야가 차지하는 서독에 있어서의 비율을 크게 감소시켜 놓았다. 그와는 반대로 서독에 있어서 금속가(細)공산업이 전체 산업의 총 시설 능력에 대해서 갖는 비율은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분야별 순위」 (Rangordnung der Sektoren)

199. 서독과 동독에서 투자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우선 순위가 크게 다른데 이것은 각 경제부문을 비교해 보면 (총 시설 능력(BAV)의 성장도와 관련하여 분명해 진다(1968년)).

서	독	동	독
1. 건축재료		1. 전자공학	
2. 이밖의금속가(細)공산업		2. 광산(業)	
3. 전자공학		3. 유리와 요업	
4. 유리와 요업		4. 에너지산업	
5. 섬유소및제지산업		5. 야금	
6. 에너지산업		6. 기타의금속가(細)공산업	
7. 화학		7. 건축자재(재료)	
8. 다판화산업		8. 화학	
9. 목재및문화제품		9. 의류, 재봉제품	
10. 의류산업		10. 다판화산업	

서	독	동	독
11.	식료품및기호산업	11.	목재및문화제품
12.	야 금	12.	조 선(藥)
13.	섬유(직물)산업	13.	섬유소및제지산업
14.	피혁류, 구두(신발) 및모피류	14.	섬유(직물)산업
15.	조 선(藥)	15.	식료품및기호산업
16.	광 산(藥)	16.	피혁, 구두(신발) 및모피류

성장 비율의 분포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들이 있다. 위에 언급한 16개 부문의 성장비율의 분포를 보면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풀어져 있다. 즉, 서독의 경우 첨단산업 부문과 하위군(Schlußgruppe)에 많은 경제 분야들이 위치해 있고 이에 대하여 동독의 경우에는 중간층이 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도표가 보여주는 것 처럼 이와같은(比較) 이유로 구조의 변화는 서독의 경우에 동독에 있어서 보다 그 경향으로보아 훨씬크게(짚게) 일어나고 있다.

도표 27

16개 산업분야의 성장율

(Zuwachsraten in 16 Sektoren der Industrie)

총시 설 능력 1968년 (1960 = 100)	16개 산업 분야의 분포	
	서	동
100 에서 110 까지	1	-
110 " 120 "	-	-
120 " 130 "	1	2
130 " 140 "	1	3
140 " 150 "	1	3
150 " 160 "	2	2
160 " 170 "	2	3
170 " 180 "	3	1
180 과 2 이상	5	2

c) 생산요소의 결합 (Kombination der Produktionsfaktoren)

"자본 집중도의 의미" (Bedeutung der Kapitalintensität)

200. 자본 집중도(매 취업인에 대한 총 시설능력 : 도표 A 55를 참고 할것)는 생산과정에서 실현되어지는 노동(力) 생산성에 대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달해진) 수준의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자본 집중도의 절대적 수준 (Absolutes Niveau der Kapitalintensität)

1960년에 서독의 산업에 있어서 매취업 인구당 투입된 DAV (총 시설 능력) 는 28.100 마르크였고 1968년에는 48.000 마르크 였다. 동독에서 이기간 동안 투입된 일인취업업 인구당 BAV 는 1960년에 24.600 마르크, 1968년에 38.400 마르크 였다. 자본 집중도 (Kapitalintensität) 는 서독의 경우 1960년에서 1968년에 이르는 사이에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상승했다.

서독 : + 71 % , 동독 : + 56 %

1960년에서 1962년 사이에 동독이 이룩한 평균 자본 집중도는 서독이 이기간 동안 이룩한 자본 집중도의 약 87% 를 매년 달성했고 1968년의 경우에는 단지 80 % 밖에 이룩하지 못했다.

각 경제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산업의 평균치에서 멀어진 자본 집중도는 기술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동. 서독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있어서 동독의 집중도 (Intensität) 는 서독의 집중도에 뒤지고 있다. 1968년도에 이 집중도가 거의 비슷했던 부문은 다음과 같다.

화 학

피혁제품 구두 (신발) 모피제품

섬유소와 제지

유리와 요업

그런데 광산(鑛)의 경우에는 동독의 자본 집중도가 서독보다 분명하게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입 되도록 갈탄 채광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산(鑛)은 동독에 있어서 서독의 경우 보다는 비교적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 집중도의 발전”(Entwicklung der Kapitalintensität)

201. 자본 집중도의 발전은 개별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1960년에서 1968년까지 사이에 그 분야에 따라 크게 다르게 (차이나게) 행해져 나갔다.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 매 취업 인구당의 자본투입(Kapitaleinsatz)이 대략 비슷하게 되어나간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産業)

광 산(鑛)

화 학

전자공학

의 류

다판화 산업(Polygraphische Industrie)

이 밖의 나머지 부문들의 경우에는 서독의 집중도(Intensität)가 동독보다 빨리늘어 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크게 차이나도록 빨리 늘어났다.

202. 발전상에 이와같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에 있어서의 공학(기술적인)여건은 비슷하다. 이 여건이 주로

제 3 장

1968 년도의 구조상 (Strukturbild) 을 규정짓고 있다.

자본 집중도 순위 (Rangordnung der Kapitalintensitäten)

서	독	동	독
1.	에너지 산업	1.	에너지 산업
2.	광산 (業)	2.	광산 (業)
3.	화 학	3.	화 학
4.	식료품 및 기호품	4.	야 금
5.	건축 재료	5.	건축재료
6.	야 금	6.	섬유소 및 제지
7.	섬유소 및 제지	7.	식료품 및 기호품
8.	조선 (業)	8.	유리 및 요업
9.	섬유 (방적)	9.	섬유 (방적)
10.	다판화 산업	10.	조선 (業)
11.	기타금속가 (細) 공 산업	11.	다판화산업
12.	유리 및 요업	12.	기타금속가 (細) 공 산업
13.	목재 및 문화상품	13.	목재 (상품) 및 문화상품
14.	전자공학	14.	전자공학
15.	피혁상품, 구두 (신발) 모피류	15.	피혁상품, 구두 (신발) 모피류
16.	의 류	16.	의 류

위의 순위표에서 보는바와같이 9개산업 부문이 그 순위가 같고 (1, 2, 3, 5, 9, 13, 14, 15, 16) 3개 산업 부문의 경우는 1968년에 그 순위차는 단지 1순위 뿐이다 (7/6, 10/11, 15/16)

11/12) 자본 집중도가 동독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보면 야금과 유리 및 요업은 서독에 비하여 훨씬 그 순위가 앞이며 그대신 식료품 산업과 기호품 산업은 서독에 있어서 보다 훨씬 그 순위가 뒤로 처져 있다.

203.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자본 집중도 성장 순위를 작성해 보면 여기에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의 산업들은 동일한 순위를 차지한다. 동·서 양독의 경우 다같이 화학부문의 자본 집중도 성장이 비교적 약한것이 눈에 띄인다(각각 47%씩)이 에 대한 원인은 이 분야가 자본을 절약하는 기술분야의 진보를 크게 이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수 있다.

d) 산업요소의 생산성 (Produktivität der Produktionsfaktoren)

204. 생산 요소들을 항상 변화시켜 서로 콤비네이션을 시켜나가므로써 경제의 생산성을 계속 증대시킬수 있다는 산업국가들을 배웠는데 이것은 (고도발전을 한) 산업국가들의 경제발전의 특징중의 하나다 (생산 요소들을 계속달리 서로 콤비네이션을 시키는 것으로 자본 집중도가 상승한다).

“기술의 발전” (Technischer Fortschritt)

이러한 생산을 노동(力) 투입에 관련시켜 고찰해 보면 노동(力)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대개 비슷한 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생산을 자본투입에 관련시켜 보면 자본의 생산성 (Kapitalproduktivität)은 단지 천천히 변화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증명된다. 생산을 연합된 (콤비네이션된) 요소 투입 (Faktoreinsatz) 에 관련시켜 본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잉여요소 (Restkomponente) 들은 종종 "기술진보" (technischer Fortschritt) 라고 불리운다.

노동 (力) 생산성 뿐만 아니라 자본 생산성도 기술의 발전 (진보) 와 대치요소 (Substitutionskomponent) 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본을 통한 노동 (力) 의 투입은 노동 (力) 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의 생산성을 꺾는다 (낮춘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는 - 그 자체적으로 볼때에 - 이 두 요소의 생산성을 다같이 높인다.

“노동 (力) 의 생산성” (Arbeitsproduktivität)

205. 매 취업인구당의 총 생산치 (Bruttoproduktionswert) 는 서독의 경우 1960 년에 37,900 마르크 (1962 년의 가격으로 계산) 였는데 1968 년에는 56,200 마르크로 올랐다 (늘어났다) (도표 A 56 을 참고할것) 이에 대한 동독의 총 생산치 (매 취업인구당) 는 1960 년에 25,2000 마르크 였고 1968 년에는 38,500 마르크는 늘어났다.

1960 년에서 1968 년 까지의 이 매 취업 인구당의 총 생산치 증가를 퍼센트로 산출해 보면 동독의 경우는 53 % 의 증가율을 보이므로써 48 % 의 증가율을 보인 서독보다 약간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동. 서 양독에 있어서의 매 취업인구당 총 생산치를 감안해 보면 식료품 및 기초산업이 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뒤를 이어 기본자료 산업이 등장한다. 금속 가 (細) 공

산업과 경 산업의 생산성은 서로가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두 산업 분야는 동 . 서독에 있어서 공히 기본 자료 산업에서 행해지는 생산성에 비추어 볼때 약반쯤이나 된다.

이들 16개 산업 분야를 그들이 차지하는 노동(力) 생산성이란 점에 관련시켜 그순위를 구분해 보면 우선 순위의 경우에는 동 . 서 양독에 있어서 일치되는 점이 많다.

서	독	동	독
1. 에너지 산업		1. 에너지 산업	
2. 식료품 및 기호품		2. 식료품 및 기호품	
3. 화 학		3. 화 학	
4. 야 금		4. 다판화 산업	
5. 섬유 및 제지		5. 섬유 및 제지	
6. 건축자재		6. 광산(業)	
7. 직물(방직)		7. 건축자재	
8. 목재제품 및 문화제품		8. 전자공학	
9. 광산(業)		9. 야 금	
10. 조선(業)		10. 목재제품 및 문화제품	
11. 기타금속가(細)공 산업		11. 의류및 재봉류	
12. 전자공학		12. 조선(業)	
13. 다판화 산업		13. 기타금속가(細)공 산업	
14. 피혁제품, 구두(신발)모피제품		14. 직물(방직)	
15. 의 류		15. 유리 및 요업	
16. 유리 및 요업		16. 피혁제품, 구두(신발) 모피제품	

“자본 생산성” (Kapitalproduktivität)

206. 1960년의 경우 서독은 매 1000 마르크 당 총생산 시설 능력에 대하여 1347 마르크의 총 생산치(가치)를 생산해 였고 1968년의 경우는 1171 마르크다(도표 A 57을 참조 할것). 동독은 1960년에 1026 마르크 1968년에 1003 마르크에 해당하는 총 생산치(가치)을 각각 생산해 였다.

그런데 분야별로 나누어 볼때 최대의 총 생산치를 나타내 보인 것은 1960년 1968년의 서독의 경우 4017 마르크 와 3227 마르크 였고 동독에 있어서는 1960년에 8094 마르크 1968년에 6794 마르크에 해당하는 총 생산(Bruttoproduktion)을 해 였다.

그리고 분야별로 나누어 볼때 최소의 총 생산치를 나타내 보인 분야는 서독의 경우에 1960년에는 367 마르크 였고 1968년에는 361 마르크 였다. 동독의 경우는 1960년에 456 마르크 1968년에 421마르크의(最低) 총 생산을 각각 해 였다.

207. (工学) 기술적인 여건들이 동.서 양국에 있어서 산업 분야의 순위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본의 생산성은 자본 집중도가 늘면 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이에 크게 의존되어 상대적으로 준다. 즉, 매 취업인구당 투입되는 자본의 투입(Kapitalausstattung)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본의 생산성을 그만큼 높아진다(그리고 노동(力)의 생산성(Arbeitsproduktivität)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든다)

서	독	동	독
1.	의류산업	1.	의류산업
2.	피혁제품, 구두(신발) 모피제품	2.	식료품 및 기호품
3.	목재제품 및 문화제품	3.	다판화 산업
4.	전자공학	4.	전자 공학
5.	식료품 및 기호품	5.	목재제품 및 문화제품
6.	화 학	6.	기타 금속가(細)공 산업
7.	기타금속가(細)공 산업	7.	조선(業)
8.	직물(방직)	8.	피혁제품 및 구두(신발) 모피제품
9.	섬유소 및(製)지류	9.	섬유소 및 지류
10.	다판화 산업	10.	직물(방직)
11.	유리와 요업	11.	화 학
12.	야 금	12.	건축자재
13.	조선(業)	13.	야 금
14.	건축자재	14.	유리 및 요업
15.	광산(業)	15.	광산(業)
16.	에너지(산업)	16.	에너지(산업)

서독에 비하여 동독이 1968년도에 모인 가장 낮은 자본 생산성을 다음의 몇개 산업 부문이다.

유리와 요업(서독의 50%)

피혁제품, 구두(신발), 모피제품(서독의 51%)

야금(서독의 57%)

화학(서독의 67%)

그리고 서독에 비하여 최고의 자본 생산성을 보인 부문은

다음과 같다.

의 류(서독의 211%)

다관화산업(서독의 183%)

석로품 및 기호품

산 업(서독의 141%)

산업 전체 분야의 평균을 보면 동독의 산업은 1968년 서독의 86%에 해당하는 자본 생산성을 보여 주었다.

(도표 A 57을 참고할것)

e) 1968년도 동독의 생산 잠재능력의 계산 (Berechnung des Produktionspotentials der DDR im Jahre 1968)

208. 위에 제시된 비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토록해 준다. 즉,

☒ 동독의 생산성 후진현상 (Produktivitätsruckstand)은 (매 취업인구당의 자본집중도에 의거해서 산출된)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 전체생산과 취업 그리고 전체 총 생산 시설능력에 대해 서 차지하는 각개 산업부문의 비율은 서독의 경우를 동독의 경우와를 비교해 볼것 같으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이 두개의 차이-즉, 그때마다 가용할수 있는 생산잠재능력의 평균투자와 위에 언급된 그때 마다의 "구조효과"(Struktureffekte)-는 산술적으로 계산해 낼수가 있다.

“(生産)요소의 생산성과 자본 집중도”(Faktorproduktivitäten und Kapitalintensität)

209. 1968년에 동독의 생산을 주어져 있는 계산에 의하면 292만 5천명의 취업 인구(서독의 36.1%)와 1.123억 마르크의 시설능력을 가지고(서독의 28.9%) 1.125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총 생산(서독의 24.7%)을 이룩해 냈다.

위에서 비교를 해 나가는 동안 특히 눈에 띄이는 것은 동독에 있어서의 매 취업 인구당 자본 투입(Kapitaleinsatz)뿐만 아니라(生産)요소로서의 노동(力)과 자본의 생산성은 서독 보다 낮다는 것이다.

매 취업인구당의 동독에 있어서의 자본 투입 : 서독의 80%

(生産)소요로서의 노동(力)의 생산성 : 서독의 64%

(生産)요소로서의 자본의 생산성 : 서독의 85%

위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기도 하다. 즉, 동독에 있어서 성취되는 노동(力)의 생산성은 가용 자본 집중도와 관련시켜 보더라도 서독의 경우보다 낮다. 다음에 기술되는 데이터들은 1968년도의 경우를 취급한 것이다.

제 3 장

도표 28

총(生産) 시설 능력과 관련시켜본 총 생산(마르크와 %로 표시)
 (Bruttoproduktion in Relation zum Brutto-Anlageverm-
 ögen(in DM bzw %))

	서 독	동 독	비 율	
			서 독	동 독
매 취업인구당의 총(생 산) 시설능력	47.980	83.380	100 : 80.0	
매 취업인구당의 총생산	56.200	38.460	100 : 68.4	
비 율(관계)	100:117.1	100:100.2		

도표 29

1968 년도의 서독과 동독이 나타내보인 생산능력의 차이 : 구조
 에 관련된 차이와 순수차이 (마르크와 %로 표시)

	서 독	동 독		순수차이	% 율		
		추 산	구조효과		서 독	동 독	
매 취업인구당 총 (생산) 시설능력	47.980	38.380	36.160 ¹	-2.220	11.820	24.6	10.8
노동(力)의 생산성	56.200	38.460	38.480 ²	20	17.720	31.5	46.1
자 본 의 생 산성	1.171	1.003	1.116 ³	113	55	4.7	5.5

주 1 : 서독의 취업(人口) 구조와 비교해본 동독의 당해 부문의
 자본집중도 (DDR-Branchen-Kapitalintensitäten gewich-

tet mit BRD-Beschäftigtenstruktur)

주 2 : 서독의 취업 (人口) 구조와 비교해본 동독의 당해 부문의 노동 (力) 생산성 (DDR-Branchen-Arbeitsproduktivitäten gewichtet mit BRD-Beschäftigtenstruktur)

주 3 : 서독의 생산구조와 비교해본 동독의 당해 부문의 자본생산성 (DDR-Branchen-Kapitalproduktivitäten gewichtet mit BRD-Produktionsstruktur)

“구조로 인한 차이” (Strukturbedingte Differenzen)

210. 동. 서독의 전체생산은 동. 서독의 노동 (力) 과 자본 투입의 결과이며 그리고 동. 서독이 지니고 있는 각 분야의 산업구조 즉, 각개 경제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이한 비율로 인한 결과이다.

다음에 제재하는 제산결과가 보여주는 것과같이 만약에 동독의 경제분야구조 (Branchenstruktur) 가 서독의 구조와 일치했다라면 1968 년도의 동독의 자본 집중도는 2.220 마르크나 실제 산출된것 보다 더 낮았을 것이다. 자본 집중도의 “순수” 차이는 1968 년도에 (구조로 인한 것인데) 매 취업 인구당 1.1820 마르크로서 동. 서독의 자본집중도가 통계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차이보다 더 높다. 노동 (力) 과 자본의 평균 생산성이 생산구조의 차이때문에 갖게 되는 차이는 1968 년도에 노동 (力) 의 생산성의 경우 최소치를 나타내 보였다.

211. 서독과 동독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자본 생산성의 통계적 차이는 (1968 년 = 168 마르크) 삼분의 2 (2/3) 는 “구조효과

(Strukturreffekt)이며 능률과 관련되어 있는 순수차이는 55마르크로 비교적 근소하다. 이와같은 현상은 낮은 자본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 분야가 동독의 경우 1968년도의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독의 산업은 서독의 경우와 같은 비율의 생산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매 생산된 단위에 대하여 매 취업 인구당 서독의 경우보다는 약 6% 높은 자본 집중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동독의 자본생산성은 - 순수능률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서독에 있어서 보다 거의 9% 정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차이는 동독과 서독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능률의 차이 (Leistung unterschied) 를 설명하기에는 족하지 않다. 실제로 동독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능력로 서독의 경우보다 낮다.

“ 잠재능력 계산의 결과 ” (Ergebnisse einer Potentialrechnung)

212. 1968년도에 있어서의 동독의 생산 잠재능력 (Produktionspotential) 을 산출해 내려는 종합시도는 (도표 A 58 을 참고할것) 다음과 같은 문제의 제기로 부터 출발한다.

만약에 (경제) 분야들의 노동 (力) 생산성이 가용할 수 있는 자본 집중도에 상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한다 할것 같으면 1968년도의 동독의 전체 총 생산은 각개 산업분야가

주어진 취업인구와 주어진(生産)시설 능력을 가지고 해 낼 수 있는 전체총 생산은 얼마나 높을 것인가?

“상응하는 수준”(entsprechendes)이란 말은 동시에 이룩해 놓은 자본의 집중도가 1968년도의 동독수준과 같을때의 서독 각 경제분야가 달성시킨 노동(力)의 생산성(Arbeitsproduktivität)을 말한다.

213. 통계적 산출은 동독의 경우 1968년도에 16개 산업부문중에서 7개 부문이 생산과 능력(Kapazität) 사이에 아무런 비율을 차지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즉, 다음의 7개 부문이다.

에너지(산업)

광 산(業)

전자공학

목재제품 및 문화제품

화류 및 개봉제품

다판화 산업

식료품 및 기호품산업

이 밖의 부문들에 있어서는 동독은 1968년도에 많건 적건 간에 하여간 산출되었던(예상했던)능력에 달하지 못했다.

특별히 그 차이가 큰것은 다음의 부문들에서 있다.

유리와 요업

피혁제품, 구두(신발)모피제품

야 금

그러나

화 학

건축 자재
이밖의 다른 금속가(細)공 산업
직물(방직) 등의
부문에 있어서도 서독의 수준에 비추어 볼것 같으면 동독
의 능력(Kapazitäten)은 근소했다.

“산업잠재능력 전반”(Produktionspotential insgesamt)

214.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1968년도에 있어서의 동독의 산업생
산 잠재능력을 전체적으로(모두 합쳐서) 1.400억 마르크
로 나타냈다. 실제 생산(effektiven Produktion)은 1.125
억 마르크 였다. 서독의 경우 1968년도의 생산 잠재능력은
추정하여 5.000억 마르크였고 실제 총생산(effektiven
Bruttoproduktion) 4.553억 마르크 였다.

동독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해에 의하면 동독의
생산 잠재능력은 매년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는 것이다. 잠재능력 구비가 나타내는 시기적인 동요현상은
서독의 경우 동독의 경우보다 꽤 현저한바 있다. 그러나 주
어진 노동(力) 투입과 자본 투입으로 실제로 이룩해낸 생
산은 서독의 경우 동독의 경우보다는 잠재능력에 훨씬 가깝
다. 그러므로 여기에 산출된 서독의 1960년에서 1968년
도에까지의 평균능력(最大)이용도(Kapazitätsauslastung)
의 계수(Koeffizienten)는 91%고 동독의 경우는 80%
다.

3. 농 업 (Landwirtschaft)

a) 경영구조 (주 13) (Betriebsstruktur)

215. 농업경영구조 (도표 A 59 참할것) 는 동 . 서 양 독 에 있어서
근 본 바탕 에서 부터 서로 다른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서 독 에 있어서는 농 가의 경영 (농업) 을 유지 하고 그리고
장래 하는 일은 처음 부터 일 급에 속 하는 사회 개혁 적인 목표 를
이루고 있다. 농업 의 경영 구조 개선 을 위한 조 치는 서 독
에 서는 다음 의 부문 에만 한 한다. 즉 . 시장 경제 적 질 서 와
농 촌 (업) 가 점 의 경영 기본 상 (Leitbild) 그리고 사유 재산
에 대 한 기본 권 (Grundrecht) 이 속 해 있는 부문 에 한 한다

“ 경영 의 규모 ” (Betriebsgröße)

216. 동 독 에 있어서는 농업 의 경영 구조는 중앙 의 경제 수단 과 방
법 에 의 해서 여러 단 계 를 나누어 완전 히 그 모습 이 변 모 되었
다. 농 촌 (업) 의 경영 이 농업 생산 공동 체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로 합 쳐 지므로써 농업 (사) 의 면 적 규모
로 볼 때 유리 한 전 제 조건 을 가지고 있음 에 도 불구하고 동 독
에 서는 경영 의 평균 면 적 규모 에 ‘ 알맞 는 최대 요소 콤비네이 션
(Optimale Faktorkombination) 을 달성 하는 일 에 지금까지
성 공 하지 못 했다 .

서 독 의 경 우 농업 경영 의 평균 규모 가 너무 적은 것은 기계 부
문 의 발전 (진 보) 을 이용 하는 데 있어 서 으뜸 가는 저 해 요소 가
되 어 있고 따 라 서 (生産) 요소 로 서 서 의 능 토는 최대 콤비네이
션 을 불가능 게 하는 요소 인 데 반 하여 동 독 에 있어서는 (生産)

제 3 장

요소로서의 노동(力)과 자본을 투입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중
중요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생산조합 국민소유의 재산”(Produktionsgenossenschaft
en Volkseigene Güter)

217. 동독에 있어서의 농업경영 구조는 두개의 경영형태에 의해서
특징지워 지고있다. 즉, 그 하나는 농업 생산조합(LPG:Landw-
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인데 이
조합은 생산수단(Produktionsmittel)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과(個人的) 사유재산을 혼합하여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人民)재산(VEG:Volkseigen-
en)인데 이 재산은 생산수단에 있어서 국가의 재산을 사
용하고 있다. 농업생산조합(LPG-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사회화(Vergesellschaftung)하는 도에 따라서 다음
과 같은 세가지 유형을 나눈다. 농업생산조합 유형 I, II,
III. 1969년에 동독의 농업 이용면적(LN: landwirtsch-
aftliche Nutzfläche)은 630만 헥타였다. 이농토
중에서 약 86%는 LPG(농업생산조합)에 의해서 경작되고
약 7%는 VEG(인민 재산단)에 의해서 경작되었다. 이와같
은 LN(농토의 이용면적)의 93%가 9836 LPG와 527 V
EG에 의해서 경작되었으니 이 전체 농토는 단지 10.363
개의 농업경영(단)에 의해서 경작되어졌다.

평균경영 규모를 볼것같으면 LPG의 경우 약 550헥타의
농토를 매 경영단이 갖고있고 (LPG 형 I과 형 II는 약 257
헥타의 농토를 가지고 있고 LPG형 III은 약 767헥타의 농토를

가지고 있다) VEG는 약 824헥타의 농토를 가지고 있다. LN(농토)의 약 0.3%는 매 5헥타가 충분히 잘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349개의 원예 생산조합(OPG)의 경작지이다. LN(농토의 나머지 약 7%는 "이밖의 사회주의적인 경영"(0.2%)과 "그 밖의 경영단"으로 나누어 경작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극히 적은 인포메이션만 있을뿐이다(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타의 사회주의적인 경영들"이라는 것은 지방 단체들이나 공법상의 법인체(Korperschaften)들과 시설(Anstalten)들에서 행해지는 경영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하여 "기타의 경영들"(ubrigen Betrieben)이라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집단적으로 합쳐질수 없는 중연산출에 있는 대규모 경영들과 그리고 일부분의 경우에는 사유시설(Privater Institutionen)(병원, 양노원)의 농업 경영등과 교회의 경영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농업)경영”(Einzelbetriebe)

218. 서독 농업의 특징은 농가적인 개별경영(der bauerliche Einzelbetrieb) 1949년에 서독에는 1.272만헥타 즉, 1.385만 헥타에 달하는 전체 농토(LN)의 92%가 되는 농토에 1헥타 이상의 규모를 가진 116만개가 되는 경영단들이 농사를 지었다. 다른 한편 나머지 113만헥타(8%)의 농토는 1헥타 이하의 농토를 가진 경영단과 그리고 경영단의 테두리 밖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에 의해서 농사지어 가고 있다. 1헥타 이상의 농토를 가진 경영(단)의 평균 규모는 11헥타의 농토였다.

이와같이 볼때 1969년에 서독에 있어서는 농토의 92%가 평균 규모 11헥타를 가진 116만개의 농업 경영 단, (농가)에 의해서 경작되었고 동독의 경우는 농토의 93%가 평균규모 564헥타의 농토를 가진 농업 경영단에 의해서 경작되었다.

(농업)경영단(농가)의 경작농토의 면적을 농사(경영)의 구조에 대한 특징으로 받아 들인다면은 이 농토의 면적은 서독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아 만족지 못하다는 사실이 들어난다. 경영(농사)을함에 있어서 쓰일(농토의) 면적을 늘일 가능성은 생산 요소로서의 농토가 지니고 있는 부동산성(Immobilität) 때문에 비교적 좁게 제한되어 있다. 경영(농사짓기)의 규모확장에 필요한 농토는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얻어진다. 즉, 완전 생업으로서의 경영(Vollerwerbsbetriebe)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수입을 올릴수 없게되어 해체되거나 혹은 주생업 수단은 아니더라도 수입을 첨가 시키기 위해서 하는 농사짓기(Zuerwerbsbetriebe)로 나 혹은 부수적인 생업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농사짓기(Nebenerwerbsbetriebe)로 변모해 가는 경영들(농사짓기)로 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매입함으로써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토의 확장이 이루지는 것을 일부의 예로 들수 있다.

“경영(농사짓기)의 수와규모”(Anzahl und Größe der Betriebe)

219. 1960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사이에 서독에서는 1헥타 혹은 그 이상의 농토를 가진 경영(농사)이나 대규모(농사

짓기) 경영들의 수가 228,000 개소가 줄어들므로서 16.5%가 없어진 셈이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212,600 헥타의 농토 즉, 1.6%의 농토가 규모가 줄어들었다. 1949년에서 1969년 사이에 (농사) 경영체들은 490,700 개소 즉, 29.8%가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농토도 557,000 헥타가 줄었으니 퍼센트로 따지면 이것이 4.2%가 된다. 평균적으로 보아 지난 20년간 LN(가용농토)는 매년 27,900 헥타가 적어졌다.

이와같이 농토로서 사용되다가 탈락되는 농토는 대부분의 경우 비농업적인 목적에 쓰이게 되고 극히 적은 일부분의 경우에만은 1헥타 이하의 농토를 가진 (농사) 경영에 전입되어 계속 농업적인 목적에 쓰이게 되었다.

1헥타 이상의 가용농토(LN)를 가진 대 단위경영들의 평균 규모는 1949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사이에 8.1헥타에서 9.3헥타로 확장되었으며 1969년까지에는 11.0헥타로 늘어났다. 10헥타 이상의 농토(LN)를 가진 대 단위급경영들만을 고찰해 보더라도 평균 규모는 크게 달라진 바 없다. 1949년에 대 단위당 평균규모는 21.2헥타였는데 1969년에는 21.7헥타로 늘어났으니 그리고 변화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20헥타 이상의 농토(LN)를 지닌 대 단위(농업)경영들만을 살펴보면 1949년에서 1969년 사이에 오히려 36.0헥타에서 34.1헥타로 줄어들었다.

동독의 경우에는 모든 농업 생산조합(LPG)의 평균규모가 1960년에서 1969년 이르는 사이에 281헥타에서 550헥타로 늘어났으며 농업생산조합(LPG) 제Ⅲ형의 경우에는 539헥타에서 767헥타로 그 규모가 커졌고 VEG의 평균규모는

591헥타에서 824헥타의 농토(LN)로 늘어났다.

b) 농업에 있어서의 (生産)요소의 투입(Faktoreinsatz in der Landwirtschaft)

220. 전체투자(Gesamtinvestitionen)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의 경우 1960년에 6%였고 1969년에는 8%였으며 동독의 경우는 1960년에 12%였고 1969년에는 15%였다. 이와같은 수치들은 동독에 있어서의 농업에 대한 총 투자한계에 관해서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주재 있지 않으므로 비교를 해 볼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전체투자에서 차지하는 농업투자가 비교적 높은 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동독으로서는 산업국가들 중에서 첨단 위치에 놓여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21. 노동(力)을 자본으로 대치시키는 현상은 동독의 농업에 있어서는 서독의 농업에 있어서 처럼 그렇게 많이 퍼져있지 않다. 1964년에서 1969년 사이에 동독에 있어서의 농업 관계 노동력

「비료」(Düngemittel)

222. 산업(工業)분야에서 제조된 경영도구들의 공급과 투입은 동.서 양독의 농업에 있어서 출몰 증가되어 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금비(상품비료)의 경우에 해당된다. 동독은 서독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시비를 집약적으로 행하는 십(10)개국 그룹에 속한다. 동.서 양독에서 사용되는 비료를 수(量)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도표Tabelle

A 60을 참고) 동독의 경우 처음부터 매 토지면적 단위당 투입하는 칼리 (Kali) 염이 서독보다 많았으며 1964년 / 65년 대 부터는 질소도 서독보다 많이 시비한다는 것이 나타난다. 인산염 (磷酸鹽: Phosphat) 의 경우는 최근에서만 서독의 수량수준에 달했다.

서독에 비교해서 훨씬 불리한 공급상태에 있는것은 동독에 있어서는 농업에서 사용되는 사료공급 (Futtermittelversorgung) 분야다. (제 3 절 . . 를 참고할것)

제3장

도 표 30 (Übersicht)

매 100헥타당의 가용면적에 비추어본 완전노동력 (AK)
 (1964년 - 1969년) (Vollarbeitskrafte(AK) je 100 ha la-
 ndwirtschaftlicher Nutzflache(1964년 - 1969년)

경영규모와 형태	매 100헥타의 가용농토 (LN) 를 기준으로 해본 완전노동력 (AK)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경영전체	서독 (주 1)					
	16.5	15.1	16.4	14.2	13.7	13.2
그중에서 다음과같은 규모를 가진 경~ 들 0.5에서 2헥타의 가용농토를 지닌 경영	61.2	83.2	84.9	84.4	83.7	85.6
2헥타에서 5헥타까지 의 농토 (LN) 를 가진 규모	32.0	31.9	31.3	31.1	30.4	29.9
5헥타에서 10헥타의 LN을 가진 규모	21.1	21.2	20.3	19.9	19.4	18.7
10헥타에서 20헥타 까지의 LN을 가진 규모	14.3	14.2	13.6	13.4	13.1	12.7
20헥타에서 50헥타 까지의 LN을 가진 규모	9.2	8.7	8.6	8.3	8.0	7.8
50헥타이상의 LN을 가진 규모	7.6	7.0	6.6	6.2	5.9	5.5
경영전체	동독					
	16.2	15.9	15.5	15.2	14.5	14.0
이중에서						
LPG	15.6	15.4	15.2	14.9	14.3	13.8
VEG	16.7	16.4	16.3	16.2	15.8	15.0

주 1 : 통계는 경제년도 1963/64 에서 1968/69 까지를 다루고 있다.

“ 농업 기계 ” (Landwirtschaftliche Maschinen)

223. 농업관계 공학기계류의 투입은 동·서 양독에서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다. (도표 A 61을 참고할것) Schlepper ()의 전체수는 1969년까지 줄곧 늘어나고 있다.

1969년에 있어서의 서독의 경우 매 100헥타의 LN (가용농토)에 대하여 238대의 위력을 가진 Schlepper ()가 있었고 동독에는 105대의 위력을 가진 Schlepper ()가 쓰였다. 매 10,000헥타의 곡물농토 (Getreideflache)에 대해서는 서독의 농업은 311대의 (複式) 수곡기를 가지고 있었고 동독의 농업은 78대의 (複式) 수곡기를 가지고 있었다.

동·서 양독의 농업에 대한 이와같은 (시설에 관한) 숫자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서독에 있어서는 많은 (농사) 경영들에서 적당하지 못하며 높은 비율의 자본이 기계부문에 투입 (자)되었고 이를 기계가 그리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그러나 이와같은 비교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동독에 있어서의 농업시설의 설비수준을 볼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도록 해준다. 즉, 동독의 농업에 있어서 상당한 예비능력이 노동 (力)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사용되지 않은채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결론에 달하게 한다. (본장의 제 3 절 d를참고해 볼것) 동독의 농업이

(Schlepper) 와 대규모 기계를 경제학 적으로 볼때 충분히
히 갖추고 있지 못한데 대한 이유는 동독의 농업을 지역적
으로 그리고 경영면에서 개혁하여 그 구조를 변경하는데 필
요한 높은율의 자본 필요성 (Kapitalbedarf) 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본장의 제 3 절 e 를 참고할것) 농업부문에 투
입되고 있는 자본의 투자율은 높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계
부문에 제공되는 자본의 투입은 명백히 불충분한 것으로 보
인다.

o) 농업 생산 (Agrarproduktion)

생산 업적 (Produktionsleistungen)

224. 전체농업 부문생산을 량적으로 그 업적을 따져볼때 1968 년
은 동 . 서 양국에 공히 지금까지 최고기록을 올린해 였다.
(Rekordjahr) (도표 A 62 를 참고할것)

〃 총 농토생산 〃 (Brutto-Bodenproduktion)

225. 농업상 이용할수 있는 가용농토 (LN) 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생산에 대한 전체량 (Gesamtmenge) 을 다루는 총 농토 생
산 (Brutto-Bodenproduktion) 은 서독의 경우 5.8000 만
톤의 곡물단위 (GE) 로 상승해 갔고 동독의 경우는 2.340
만톤의 곡물단위 (GE: Getreideeinbeit) 로 상승해 갔다.

이로서 1968 년도에 있어서의 식물성 전체 곡물 생산량은
1957 년에서 1961 년에 이르기까지의 5 개년간의 동 . 서독의
곡물 생산량을 각기 평균을내어 비교해 보면 서독 : 4.810 만

톤, 동독: 1.920 만톤의 곡물단위 서독의 경우 21%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동독의 경우는 2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동독의 가용농토를 서독의 가용농토에 비교하면 약 45%에 해당하는데 동독에 있어서의 이 가용농토에서 이룩해 낸 농토의 생산업적(Bodenleistung)은 대략 서독에 있어서의 농토의 생산업적 전체와 비교할때 약 40%에 해당된다.

“가축의 사육”(Viehhaltung)

226. 농업부문의 가축사육에서 이루어 지는 업적은 1957년/61년에서 1968년에 이르기 까지 서독의 경우 전체적으로 4.260 만톤의 곡물단위에서 5.250 만톤의 곡물단위로 늘어 나므로써 980 만톤의 곡물단위의 증가를 보여 주었으며 동독은 1.460 만에서 1.750 만톤의 곡물단위로 늘어 났으므로 290 만톤의 곡물단위 증가를 전체적으로 각각 나타내 보였다.

이 수치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동. 서독과 같이 약 23%의 성장을 나타내 보였음을 다행 준다. 서독이 보유하고 있던 가축수량에 비교할때 1957년/61년에는 약 43%에 해당하고 1968년에는 약 40%에 해당하는 전체 가축수량(Gesamtviehbestand)을 보여준 동독의 가축업적(tierischen Leistung)을 서독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1957/61년에는 약 34%에 해당되고 1968년에는 약 33%에 해당된다.

“식량의 생산”(Nahrungsmittelproduktion)

227. 농업상의 식물생산(Pflanzenproduktion)과 동물생산(Ti-

제 3 장

erproduktion)에서 얻어지는 식량(Nahrungsmittel)과 원료(Rohstoff)의 양은 1968년에 서독의 경우 5,980 만톤의 곡물 단위로 늘어났고 동독의 경우는 2,010 만톤의 곡물단위로 늘어났다. 이것은 1957/61년도와 비교할때 1,360 만톤의 곡물단위(OE) 즉, 30%의 성장을 서독이 이룩해 낸것을 의미하며 (1957/61년: 4,620 만톤, 1968: 5,980 만톤의 곡물단위) 동독의 경우는 390 만톤의 곡물단위 즉, 24%의 증가성장을 뜻한다. (1957/61년: 1,620 만톤의 곡물단위, 1968년: 2,010 만톤의 곡물단위) 동독의 농업이 이룩해낸 식량생산(Nahrungsmittelproduktion)은 1957/61년에 경우에는 서독의 농업이 이룩해낸 식량생산의 약 35%가 되며 1968년에는 34%가 겨우되는 생산을 해 냈다.

식량 생산에 쓰인 사료를 뺀 식량생산에 해당하는 순 식량생산(Netto-Nahrungsmittelproduktion)은 1957/61년에서 1968년에 이르는 사이에 서독의 경우 870 만톤의 곡물단위 즉, 약 21%에 해당하는 증산을 해 냈으며(4,080 만톤의 곡물단위에서 4,950 만톤의 곡물단위 생산을 이룩해 냈음) 동독은 390 만톤의 곡물단위 즉, 약 28%에 해당하는 증산을 해 냈다(1,400 만톤의 곡물단위에서 1,790 만톤의 곡물단위 생산을해 냈다). 수입한 사료(Futtermitteln)의 개량(Veredelung)은 1957/61년에서 1968년에 이르는 사이에 서독에서는 490 만톤의 곡물단위 즉, 약 92%에 해당하는 양이 늘어났고(540 만톤에서 1,030 만톤의 곡물단위로 늘어났음) 동독의 경우는 20 만톤에 곡물단위 즉, 7%

의 증가를 나타내 보였다. (1957/61년 : 220 만이었고,년에는 240 만톤의 량이 되었음)

1957/61년까지 사이의 전체식량생산의 증가는 서독의 경우 36%에 해당되는 1,360 만톤의 곡물단위가 수입해온 사료의 개량 (Veredelung von Importfuttermitteln) 에 그 바탕을 두고있고 동독의 경우에는 5%에 해당하는 390 만톤의 곡물단위가 이같은 수입사료의 개량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체식량 (넓은 의미의) 생산의 증가는 이밖에도 이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농토의 생산능률의 상승에 의해서 서독의 경우는 29%의 증가를 보게되고 동독의 경우에는 45%의 증가를 보여 주었으며 (소, 말 따위의) 끄는 짐승 (家畜) 의 사료를 절약하고 (Zugviehfutter) 유용가축 (Nutztviehfutter) 의 사료들보다 높게 평가하므로써 얻어진 (食量) 생산의 증가는 서독의 경우 35%가 되며 동독의 경우는 이것이 50%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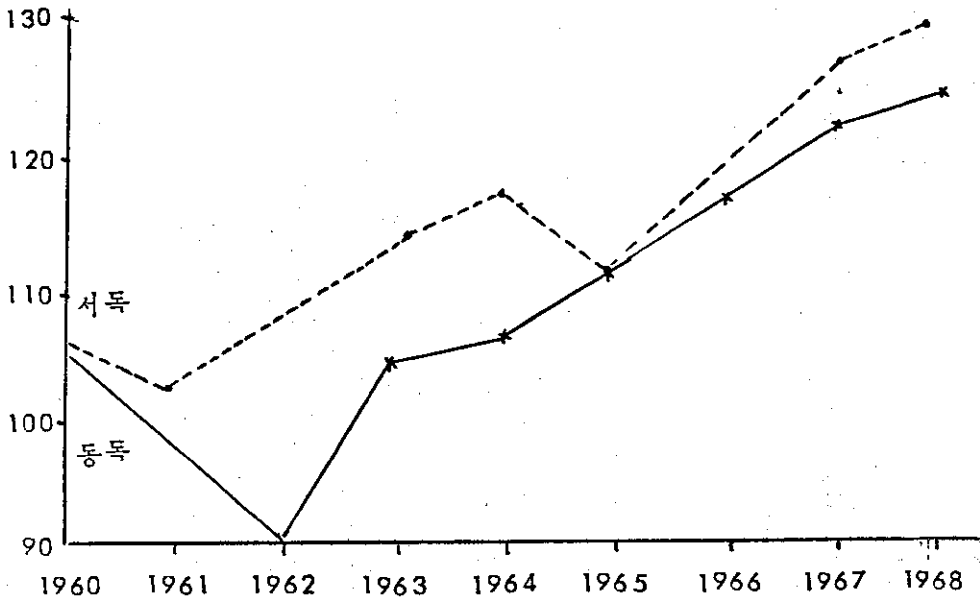
(Schaubild 3)

그라프 제 3 (3)

동 . 서독에 있어서의 식량 (넓은 의미의 식량) 의 발전

(Entwicklung der Nahrungsmittelproduktion in der Bundesrepublik und in der DDR)

(지수 1957/61년 : 100) (Index 1957/61 : 100)



생산구조 (Produktionsstruktur)

228. 농업생산 구조에는 동물성과 식물성 생산별로 나누어본 농업 생산 전체와 이 기본 생산부문의 세부구조까지도 포함하는 이 농업생산 구조는 동 . 서 양독과 같이 동물성 식량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색이다 (도표 A 63을

참고 할 것). 식량생산 전체에서 동물성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8년 서독의 경우 79%였고 동독의 경우는 75%였다. 서독의 경우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가용농토중에서 980만 헥타의 농토 즉, 전체농토의 약 71%에 해당하는 농토가 사료생산에 쓰이고 있으며 동독의 경우는 420만 헥타 즉, 전체 농토의 약 67%에 해당하는 농토가 사료생산에 이용되었다. 전체 식물성 식량생산(총 토지생산)중에서 서독의 경우 약 70%(4,030만톤의 곡물단위)가 사료로 쓰였으며 동독의 경우는 약 66%(1,540만톤의 곡물단위)가 사료로 쓰였다. 여기에서 사료의 양식이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전체 가용농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상의 비율이나 혹은 전체 식물성 기본생산중에서 가축의 사육에 쓰이는 사료의 량적 비율을 고찰하던지 안하던지간에 하여간 아무튼 사료사업(Futterwirtschaft)과 유용가축의 사육이 전체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의의는 동.서 양독에 있어서 다 같이 현저한바 있다.

“가축의 수량과 사료의 배급”(Viehbestand und Futtermittelversorgung)

229. 가축의 수량과 사료의 배급은 상호간에 밀접한 유기적 관련이 있으므로 이 양자간의 관계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식량생산 부문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1968년까지 동독에 있어서의 가축의 수량은 서독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다같이 서독의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국내에서 생산된 사료와 외국에서 생산된 사료 전체중에서 (동 . 서에서 쓰인) 대단위 가축에 사용된 사료는 서독의 경우 43.8 dz 곡물단위이며 동독의 경우 38.9 dz 곡물단위였다.

역주 : [dz = 200 파운드 (무게)]

현재 주어져있는 가축수량에 비추어 볼때 동독에 있어서의 사료산업능력에 대하여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단백질로 된 소화가능한 생프로 테인 (Rohprotein) 과 (단백질이 많은 영양사료 (Kraftfutter) 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에 동독이 서독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료평가면에서 효율성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해 진다. (참나무의 열매 따위의) 돼지를 살찌우는 먹이 (Schweinemast) 를 볼때 1968년에 이것이 매kg당 평균 늘어남에 따라서 서독의 경우는 약 4kg의 곡물 단위만 쓰여진데 반하여 동독에서는 평균 6kg의 곡물단위를 소비했던 것이다. 사료평가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는 그 경향으로 보아 비슷한데 이것은 양계용 사료와 계란생산과 그리고 젖소 우유 생산면에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규모와 생산경향 (방향) 면에서 합리적으로 구분된 가축의 수량에 알맞게 그리고 최고의 능률을 낼수 있도록 사료를 공급해야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치 못한 동독 농업이 처해있는 중대한 생산문제들중의 하나다 동독의 경우에 사료산업이 지니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중요한 원인은 상업사료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이 결여돼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상업사료를 마련 하는때는 높은 비율의 국민경제적 지

출이 뒤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동독의 경우 대부분 이물 사료는 서방진영의 세계시장을 통해서 즉, 미화가격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서독도 역시 달라가적으로 서방 세계시장에서 이물 상업사료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고가의 가치를 지니고있는 식물성 단백질 사료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단백질 사료는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귀리의 엑스트라혼이나 콩깻묵과 낱화생묵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동독은 외화절약을 위하여 이와같은 고가의 사료들을 주로 내독(동, 양독면의) 무역을 통하여 서독으로 부터 구입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 까지 가축수량과 사료산업간의 불구형은 서독에 있어서의 형편과 비슷한 Erhaltungsfutter(조사료)와 Leistungsfutter(농사료)을 위해서 취해지는 소비비율을 달할 수 있으리만큼 줄어 들지않았다.

“동물성 식량생산”(

230. 동물성 식량생산의 분포를 볼때 양돈생산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부문이 식료품생산(NMP:Nahrungsmittelproduktion)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8년에 동, 서독 다같이 약 27%나 되었다. 동물성 식료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이와는 다른 식료품들의 서열순위를 볼것 같으면(전체 식량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련시켜서)서독의 경우 식용소고기와 젖소 우유가 각각 20%씩으로 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란이 7% 식용 새(닭등)류 3%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동독의 경우 젖소 우유가 19%로 제 2위로 차지하고 있으며 식용 소(고기)류는 16%로 제 3위를 차지하고 제란이

제 3 장

6% 식용 새류(닭등)가 3%로 그뒤를 따르고 있다.

양기르기와 염소 양육에서 얻는 식량생산은 서독에 있어서 1968년의 경우를 보면(전체 식료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0.5%가 되었으므로)(전체 식량 생산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동독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의의가 훨씬 적다.

“식물성 식량생산”(Pflanzliche Produktion)

231. 식물성 식량 생산부문을 볼것같으면 1968년도에 동.서 양독에 있어서 곡물생산(Getreideproduktion)이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독의 경우:전체 식량생산의 9%가 곡물생산이였고 동독의 경우는 전체 곡물생산의 11%가 곡물생산이 였다) 사탕무우 생산이 서독의 경우 전체 식량생산에서 4%가 되고 동독이 7%가 되므로 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감자 생산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서독의 경우:전체 식량 생산의 3%:동독의 경우:전체 식량생산의 4%) 식물성 식량 생산부문에 1968년에 나타난 동.서독 간의 차이들은 유류과종, 과일, 포도즙(汁)과 그리고 이밖의 다른 특수 재배면에서 볼때 동.서독이 가지고 있는 경제와 자연 환경 및 상황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 하겠다. 유류과종 생산이 서독의 경우(전체 식량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로)(전체 식량생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동독의 경우에 비하여 그 비중이 훨씬 적은데 반하여 과일 포도즙과 그리고 이밖의 다른 특수재배면은 동독의 경우(전체식량 생산의 약 2%)가 서독의 경우에 비하여

(전체식량 생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비중이 훨씬 적다.

“농산물 생산의 능력” (Kapazität der Agrarproduktion)

232. 식량 생산량을 식량 배급을 받아야 할 국민을 참작하여 고찰해 볼것 같으면 여기에 농업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식량 배급 능력이 산출된다 (도표 A 64 를 참고할것) 농토 생산량이나 혹은 모든 산출된 식료품의 량을 감안 하던지 않하던지 간에 이와는 상관없이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식량공급 능력은 동독이 인구 밀도가 적은 관제로 서독보다 높다.

1968년에 서독에는 매 100헥타의 가용 농토면적에 434개의 주민이 살고 있었고 동독에는 27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동년에 서독에서는 매 인구당 농업부문에서 생산된 식료품은 9.9 dz 곡물 단위였고 동독의 경우는 매 인구당 11.8 dz 곡물단위가 농업 부문에서 생산되었다. 이렇게 볼때 농업에서 생산된 매 1인 인구당의 생산능력(식료품 생산)은 동독의 경우가 서독보다 19%가 더 높았다.

233. 전체 농업생산을 합하고 그리고 곡물단위를 고려해본 식량 자급자족도는 1968년도의 경우 서독이 77% 였고 동독은 85% 였다.

d) 농업의 생산성 (Produktivität der Landwirtschaft)

234.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은 농업 부문의 경우 단기 계산된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한 생식량과 가축사육의 생산성 같은 것은 서로

비교 될수 있다. (도표 A 64 를 참고할것) 그리고 동. 서 양독에 있어서의 노동력 생산성을 대략 그 단위구조로 보아 비교할수가 있다. 그렇지만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 생산성을 비교 서술해냄에 있어서는 극복될 수 없는 여러가지 장애물 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재료의 부족과 그리고 농업부문에 투입되는 소비량에 대한 가치평가가 동. 서독이 서로 다른데서 찾을수 있다.

「토지면적을 기준으로한 생산성」 (Flächenproduktivität)

235. 전체 농토생산물 면적단위에 관련시켜 고찰해 볼것같으면 식물성 농산물 생산의면적 생산성이 산출된다. 최고 수확을 보인 1968년 서독에 있어서의 매 가용 헥타의 농토당 생산업적은 41.8 dz 곡물 단위였으며 동독은 매 가용 헥타의 농토당 생산업적이 36.8 dz 곡물단위였다. 이렇게 볼 때 동독은 약 12%쯤 서독의 수준에서 미달되었다.

매 가용헥타의 농토에서 생산되는 순수 식료품 생산은 (수입 사료를 포함하지 않는) 자체의 바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농업생산 전체 능률로 인하여 행해지는 농토면적 생산성을 말해 준다. 동. 서독의 농토자체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은 식량 생산소등은 매 헥타의 가용 농토당 1968년 에 있어서는 서독의 경우 35.7 dz 곡물 단위였고 동독에 있어서는 28.2 dz 곡물 단위였다.

만약에 순수 식량 생산의 면적 생산성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동독이 이룩해낸 농업 생산수준은 서독의 수준에 비교해 보면 21%가 낮다.

〃가축사육의 생산성〃 (Produktivität der Viehhaltung)

236. 모든 종류의 가축과 가축의 나이를 생체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를 합해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500 kg의 생체중량이 대가축단위 (Großvieheinheit) (GV)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도움으로 살으면 전체 가축사육의 생산성이 산출되어 진다. 대가축단위를 적용시켜 보면 1968년에 이루어진 전체 농업의 가축사육에서 동물성 생산업적은 서독의 경우 42.1dz 곡물단위 였으며 동독의 경우는 35.3dz 곡물단위를 보여 주었다.

가축사육의 생산성면을 볼때 동독의 수준은 서독의 수준에서 16%가 뒤 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노동(力) 생산성〃 (Arbeitsproduktivität)

237. 농업 노동력 통계를 범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동. 서독의 방법이 차이가 나므로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노동적 생산성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가능할수가 없다. 서독의 경우는 그 헥타이상의 가용농토를 가진 농업경영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 현황을 산출할때에는 주업노동력과 비주업노동력으로 구분하여 가지고 그 특정한 경제년도의 평균을내어 다시 완전 노동력을 산출해 낸다. 여기에서 완전 노동력 (AK Vollarbeitskräfte)이라 함은 그해 전체 기간동안에 농업에 종사하는 완전노동 가능한 인원과 일치하거나 혹은 2400 노동시간이나 아니면 280일간의 노동일과 완전노동력과를 동일시 하고 있다.

동독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 인구를 완전 노동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서독의 경우와 비슷하게 수치를 산출해 내거나 혹은 실제로 농업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력을 파악해 나온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차한계선 내에서는 이룩해낸 노동력 생산성에 대해서 단지 대략적인 근사치만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이다.

동독에 있어서의 완전 노동력을 산출해냄에 있어서는(여기에서 말하는 완전 노동력이라는 것은 1년에 적어도 2100시간의 노동을 하는 완전고용 가능한 인원을 말한다).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인들을 완전 노동력을 산출해내기 위하여 0.9를 2배로 곱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1968년에 동독의 농업에 종사한 사람의 수는 914,486 완전 노동력(AK) 내지 매 100헥타의 가용 농토에 종사한 사람의 숫자는 14.5 완전노동력(AK)이었으며 서독의 경우는 농업에 종사한 인구가 1,661,000의 완전 노동력 내지 매 1000헥타의 가용 농토당 13.2의 완전노동력(AK)을 지난 1968/69 경제년도에 나타내 보였다.

식료품 생산의 양적 규모를 이에 해당하는 완전 노동력과 연관시켜서 고찰해보면 서독의 농업에 있어서는 1968년, 69년도에 매 완전 고용 노동력에 대하여 360.2dz 곡물단위의 생산을 해 냈으며 동독의 경우는 매 완전노동력 당 219.8dz의 곡물단위를 생산해 냈다. 이로서 동독에 있어서의 농업상의 노동력생산성은 서독의 수준에서 39% 뒤지고 있다.

e) 농업에 있어서의 제 구조적변화(Strukturelle Veränderungen in der Landwirtschaft)

238. 서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어서도 지난 몇해전 부터는 농업부문이 경제 전반의 발전에 적응토록하는 과정을 급속화시켜서 관찰시켜 보려는 강력한 노력이 크게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동.서 양독이 지니고 있는 경제 및 사회 질서상의 여러가지 차이나는 전제들 때문에 동.서 양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농업 구조상의 제변화도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띄고 있다.

서독에서는 개별 농업경영의 구조를 개선하려는데 농업정책상의 제 조치가 집중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장기적으로 경영 생명을 유지해 나갈 능력을 가진 농민경영(농사짓기)을 이룩해 내고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농업경영단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유지되어 질수 있는 과도적 해결을 이루워 내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일은 서독의 국가적 농업정책은 구주 경제공동체(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EWG)의 범위내에서만 행하여 질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독과 구주 경제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특별한 농업정책상의 문제는 식료품의 구조적 과잉생산인데 이와같은 구조적 과잉생산은 생산능력을 줄이고 따라서 농업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메쓰를 대지 않을수 없도록 하는 강제상황을 낳고 있다.

서독의 형태와는 반대로 동독의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성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전체 생산범위를 더욱 확장하려는 노력이 크게 행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강력한 집중을 불러 이끄는 과정이 시작되어 졌다.

“새로운 협동형식”(Neue Kooperationsformen)

239. 1968 년도에 농업과 식료품 경제산업의 부분체제가 형성되므로 인하여 동독의 농업구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부분체제에는 다양한 생산을 해내고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던 LPG ()와 VEG ()같은 농업 경영단이 점차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 대신에 극소수의 생산 종목에 전문하는 생산단위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두개의 집중화 과정(현상)이 시작되었다. 그 하나가 수평적인 집중화 과정인데 여기에는 여러개의 LPG, VEG가 합쳐지고 그 밖의 다른 농업 경영체들이 합쳐서 협동 공동체(Kooperationsgemeinschaft)로 결합되는데 이 공동체내에서 여기에 결속된 각 경영체들은 어느특정한 색산품이나 생산품군을 생산하는데 전문적으로 종사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경제적으로 협동 공동체로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LPG 와 VEG가 법적으로는 자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이들이 협동 공동체내에서 다하는 협력은 자유의전에 의한 협력으로 이해 되도록 하려는 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두번째로 들수있는 집중화 과정은 이미 언급한바 있는 첫

번째 집중화 과정에 비교한다면 그 의의가 훨씬 적은 것인데 아무튼 이 두번째의 집중화 과정에서는 농업(상의) 경영체(농사) 가공산업과 그리고 식료품 무역(상업)간에 행해져야 할 수직적인 협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므로서 각기 어느한 특정한 생산품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협동연맹의 조직형식이 생겨나는데 예를 들자면 우유 협동연맹 (Kooperationsverband Milch) 육류협동연맹 등

서독의 농업에 있어서도 점차 협동형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협동의 중요한 목적들은 생산수단을 보다 잘 이용하고 농토의 기동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동독에 있어서의 농업상의 협동형식들이 서독에 있어서 보다 훨씬 광범히 하고 존 의의를 지니고 있다.

농업과 식료품 경제를 중심으로한 경제의 부분체제 (ökonomische Teilsystem)를 통하여 동독에서는 공.산업의 생산방법에 가까히 갈 수 있는 농업 생산방법이 발전되어 질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산의 집중과 전문화를 통하여 새로운 생물학적인 방법과 새로운 공학적인 기계체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되게 하려는 것이다.

공.산업의 생산방법을 농업에 적용시키는 일은 계속해서 교육적인 적용을 가능케 하고 농업에 있어서 취해지는 사회적 조치가 또한 기타의 경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산업의 생산방법을 농업에 사용하므로써 장기적으로는 공.산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면에 이루어져 있는 경제 및 사회적 계 차이점들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서독의 농업과 동독의 농업에서 취해진 구조면의 조치들을

고찰해 볼것같으면 동. 서 양독에 있어서의 경제사회 발전은 더욱 달라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수 있게 하고 있다.

4. 부록 (Anhang)

방법론적 참고사항 (Methodische Hinweiss)

1. 경제전반에 관하여

사회생산과 전체 경제상의 노동(력)생산성을 산출해 내는 일은 서독의 경우에 대해서는 간단한 일이였으며 충분히 주어져 있는 자료를 단지 재 편성하기만 하면 되었다. 동독의 경우 서독의 경우와 직접 비교할수 있을 만한 사회생산 산출(제산)은 공식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또한 공표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 동독의 사회생산에 관해서는 추정되어 지는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과 그리고 거기에 적용된 방법론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언급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다.

“ 자 료 ”

“ 사회생산산출 ”

서독 : 연방 통계국 : 수정된 국민경제의 전체제산 - 잠지 “ 경제와 통계 ” (Wirtschaft und Statistik) 1970 년도 제 2 호와 3 호에 발표되어 있음

동독 : 통계 년보 (Statistisches Jahrbuch) 1970 년호

와 그 이전 몇호들 그리고 백림소재 DIW (독일 경제
문제 연구소)의 추정

“생업취업자수”

서독 : Erlangen 소재의 노동시장 및 취업문제 연구소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Erlangen)

동독 : 백림소재의 DIW 통계년보들과 추정

“가격 기초”

사회생산의 실제적 발전을 기술해 내는데 필요한 가격기초
로서 1967년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동
독에 있어서의 근년의 국민 생산계산은 전부 1967년의 가
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발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독의
경우에는 1967년의 가격(가치)은 1962년도의 가격으로
계산된 순수 성장율을 적용시켜서 그 수치를 느리던가 줄어
던가 했다. 발표된 수치들을 서로가 비교해 볼수 있는가의
여부가 경제 분야를 구분해서 한계를 지음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는가에 여하여 달려있는 경우라면 이 비교치는 일반
적으로 꽤 괜찮은 것이라 할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강력히
집합된 부분분야(Teilbereiche)들만이 연구조사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문은
“상업”(무역포함)과 “그 밖의 생산성인 제 업적” 부문뿐
이다. 서독에 있어서의 이들 부문에 대한 계산 산출의 경
우와는 달리 동독에서 상업부문을 다룰때는 호텔업과 음식점

영업은 포함시켜서 취급하는데 대외무역 (Außenhandel) 은 함께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동.서독의 이부분에 있어서의 통계수치의 차이는 그렇지만 거의 아무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여 생산과 생산성 면에 있어서의 순위는 이것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를 이르지 않는다. 동독에 있어서 "그 밖의 다른 생산적인 업적" 부문이라는 것은 서독의 체제로 볼 때는 주로 공.산업과 공무집행 운영부문에 제산하여 포함시키는 제 활동들이다.

공무부문의 산출

공무 집행 부문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물질적 가치가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공무부문만이 동독의 사회생산 산출에 포함되어 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생산 통계를 통해서는 시민의 물질적인 제 생활조건들이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 전체통계를 내면서 동.서독을 비교해 나가는데 결여 되어있는 부문은 추정 제산해 나갔다. 이를 통계가 (발표) 되어 있지 않는 부문은 "공무 수행계획 부문" "국가"와 "생업 특성을 지니지 않은 개인의 가계와 조직" 들이다. (서독의 개념 정의)

백림에 있는 DIW (독일 경제문제 연구소)는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다.

비물질적인 분야가 동독의 총 국내 생산에 기여하는 도는 물질적인 부문이 다하는 기여의 5분의 1보다 약간 높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밝혀져다. 이 비율은 지난 몇년 동안에 거의 변화지 않고 지속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공. 산업국가들에 있어서는 제 3기 산업부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동독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제 3기 산업 경향을 의의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물질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부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므로써 이와같은 경향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취업인구와 자본투자 수치를 살펴보면 공무 부문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수 있다.

1960년에서 1969년 까지 사이에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인구의 23%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의 주업 말고도 공무에 복무하는 활동을 했으며 투자 부면을 볼것 같으면 22%에 달한다.

생산성의 산출

취업 시간량에 대한 통제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노동(力) 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 취업 인구당 총 국내 생산을 선택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것 같으면 동. 서독의 이 부문에 관한 통계적 비교는 따라서 사실과는 다른 인상을 야기시키고 말수도 있을 것이다.

☐ 노동시간 단축 속도에 있어서 (만약에 서독에 있어서의 노동시간이 동독의 경우보다 급속히 줄어 든다면 서독에 있어서의 생산성 증가는 너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파트타임 노동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에 있어서 (만약에 서독의 경우에 파트 타임 노동이 비교적 적은비율을 차지 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만큼 서독의 생산성 수치가 너무높은 현상을 보일수 있을 것이다)

☒ 노동함에 있어서 행해지는 초과시간의 수에 있어서 (초과 노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성의 상승이 나타나는데 그 실례로 서독에 있어서의 경기상승의 경우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부정확한 요소를 어느정도 지니고는 있지만 하여간 노동력 생산성에 관해서 동 . 서독의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 상당한 심빙성과 그리고 충분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수 있다.

산업에 관하여 (2)

여기에서 비교된 것은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산업에 관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구분에 입각하여 다루었다.

기본자료산업 - 5개부문 (에너지 산업과 광산 부문을 포함함)

금속가공산업 - 3개부문

경공업 (산업) - 7개부문 식료품 및 기호품 산업 - 1개
부문

비교한 시기는 1960 년에의 1968 년에 이르기 까지의 8 년간이다.

비교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国民) 총 생산

취 업

총 시설능력과

이 변수에서 추출해 낼수있는 범위내에서 다음의 부문을 비교해 보았다.

노동(力)생산성

자본 생산성

자본 집중도 (Kapitalintensität)

수치의 산출은 동.서독의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차이를 될수 있는 대로 제거할수 있는 비교계산방법을 통하여 보완 되었다. 동독의 생산 잠재 능력을 산출해 내고 서독에 관한 여러가지 통계와 이를 비교 고찰하는 것이 본장의 맡미를 차지하고 있다.

총 생산치 (Bruttoproduktionswert)는 동.서에 있어서 대체로 비슷하게 진행되어 있다. 이 총 생산치 속에는 재고 품무의 변화와 이에 관련되는 수치를 포함한 생산이 들어 있다.

자 료 (Quellen)

서독 : 서독의 공식통제는 총 생산치가 내포하고 있는 2중적인 계산을 이유로 들어 총 생산치를 계산해내는 일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의 이 생산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산출되어 지지도 않는다. 1962년에 실시된 산업통계 (Industriezensus) 결과는 (주 14) 그렇지만 다른 부문과 함께 다음의 분야가 기록해 내는 총생산치에 관한 자료는 수록하고 있다.

즉, 1960년과 1961년 그리고 1963년 이후의 몇해에 관하여 산출해 놓은 전 생산(Nettoproduktion)에 관한 공식 지수를 도움으로 삼아 우리에게 의하여 계속 추진되어지고 있는 제 분야의 총 생산치에 관한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총 생산을 DIW(독일 경제문제 연구소-백림소재)의 추산에 입각하여 산출해 낸 것이다.

동독: 동독의 통계년보 - 1964년에서 1968년까지 1968년에 관한 계산은 백림의 DIW가 1969년의 동독의 통계년보에 입각하여 그리고 산업 제 분야의 변화된 체제를 감안하여 추정적으로 산출해 낸 것에 기초를 두어 처리했다.

동. 서독의 비교: 1967년을 평균잡아 비교했다. 약 200을 넘는 생산군에 관한 통계숫자를 바탕으로 삼아서 백림의 DIW가 추정해낸 통계에 따랐다. 참고-동독과 서독산업에 있어서의 노동(力)의 생산성-비교고찰 H Wilken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발표자 DIW의 주보(Wochenbericht) 백림 37년호 Nr 20/70 동론문 138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동. 서독 관계는 동독의 옛날 산업부문 체제를 감안하여 새로 종합한 것이며 본 보고서에서도 사용했다. 1961년에서 1966년 까지와 그리고 1968년까지의 비교 고찰은 1967년도의 동독의 생산을 1962년도 현재의(西独)마르크(DM) 가격에 따라서 산출해낸 것에 바탕을 두어 행해낸 것이다.

그리고 이 동독의 생산은 동독의 통계년보에 발표된 총생산 지수를 도움으로 하여 계속 진척시켜 고찰해 나갔다.

이와같은 비교의 기준으로는 1962년도의 서독에 있어서의

물가수준이 그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하여 동독의 불변화 계획물가를 서독의 물가수준에 비추어 새로제 산해 냈다. 이일은 1967 년도의 생산통계를 도움으로 삼아 이루어 졌다. 약 200 개의 동 . 서독에서 생산되는 생산군을 서독마르크 (DM) 로 평가해 보았으며 종합란에서 언급한 바 있는 부분별 구분에 따라서 나열했다. 이렇게 하므로써 얻어진 대표치는 - 서독의 총 생산 규모를 기준하여 - 전체적으로 약 45 % 에 달했다. 원래 바랬던 대표치도의 상승은 인포메이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다.

1967 년도에 있어서의 동 . 서독의 총 생산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해 냈다. (주 16) (동독 : 서독 . 서독을 100 으로 잡음) :

에너지 산업	29.2
광산업	58.4
야금	14.5
화학	24.3
건축자재	24.7
전자공학 산업	26.0
조선업	31.5
이밖의 금속가공산업	20.1
목재 및 문화상품 (제품)	30.9
섬유류	34.6
의류 및 재봉제품	29.6
피혁제품 구두및 모피제품	24.9
(製紙原料) 인 펄프및 지류	26.8

다판화산업	23.9
유리 및 요업	24.7
식료품 및 기호품산업	32.5
산업전체 (合計)	26.1

서독의 (1962년도 물가에 기준하여 산출해낸) 1967년도
의 관계와 총 생산규모를 도움으로 삼아 1967년도의 동독
의 총 생산규모를 산출해 냈다. (1962년도의 서독 마르크
로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총 (生産) 시설능력 (Brutto-Anlagevermogen)

총 (生産) 시설 능력은 특정한 조사를 정해놓거나 혹은 어
느 특정한 시기를 정해 놓고 그때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과
시설들 (기계, 기타시설, 자동차)이 지니는 재 구입 가격 (価
値) (Wiederbeschaffungswert) 과 일치한다. 여기에 나
타나는 변화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산출된다.

$$\begin{aligned}
 & \text{처음의 시설현황 (Anfangsbestand)} \\
 & + \text{총 시설투자} \\
 & - \% \text{과손된 시설} \\
 & = \text{결과적으로 나타낸현황 (Endbestand)}
 \end{aligned}$$

자 료

서독 : 백림소재의 DIW가 행해낸 산업능력 총계 (Industrie-
lle Vermögensrechnung)

동독 : 상동의 DIW가 행해낸 산업능력 통계 DIW가 산출해
낸 동독에 관한 데이터는 동. 서독을 비교하기 위하여 1962

년도의 서독 마르크로 다시 고쳐 계산해 냈다. 여기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0.8이 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동독의 총 시설 능력이 서독에 대하여 갖는 가격 상황을 1.25가 된다고 추산해 냈다. (주 17)

DIW의 통계는 동·서독의 경영체중에서 일반적으로 10명 이상의 취업자(종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산출했다. 동독의 경우에 대하여 산출해낸 DIW의 통계에는 사회주의 산업의 기본시설현황에 관한 공식 수학에 그 바탕을 두어 계산해낸 것이다. (1968년의 동독 통계연보 56 페이지를 참고해 볼것) 반국영기업체와 개인기업체의 기본생산수단(施設)은 백림소재의 DIW에 의해서 추정산출되어진 것이다.

취업자

서독의 경우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취업자에 관한 데이터가 연평균으로 산출되어 있고 여기에는 견습생(Lehrlinge)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10명 이상의 취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영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자 료

서독: Wiesbaden소재의 연방 통계국이 산출해낸 산업보고에 나타난 숫자를 토대로 했음.

동독: 동(部)백림소재의 국가 중앙통계국(Staatlichen Zentralverwaltung für Statistik)이 산출해낸 산업보

고에 나타난 숫자를 토대로 했음.

분야별 구분 (Gliederung der Sektoren)

일련번호

서 독 (41개 분야)	동 독 (21개 분야)
<p>I. 기본원료 산업</p> <p>1. 에너지 공급 (1)</p> <p>2. 광산 (業) (2-6)</p> <p>3. 제철산업 (7)</p> <p> 주제 (鐵), 광철주조 Temper- gie ereien () (8)</p> <p> Ziehereien과 병압연공장 (9)</p> <p> NE 산업 (10)</p> <p>4. 화학산업 (11)</p> <p> 광유세공 (12)</p> <p> 고무세공과 석면세공 (13)</p> <p> 합성물질세공 (14)</p> <p>5. 석류 및 토지산업 (Industri- e der Steine und Erden) (13)</p> <p>II. 금속가공 산업</p> <p>6. 전자공학산업 (16)</p> <p>7. 조선업 (17)</p> <p>8. (기타금속 가공산업)</p> <p> 철근건축 (18)</p> <p> 기계제조 (19)</p> <p> 자동차 제조산업 (20, 21)</p> <p> ESRM 산업 (22)</p> <p> 정밀기계산업과 광학산업 (23)</p>	<p>I. 기본원료산업</p> <p>1. 에너지 산업 (1)</p> <p>2. 광산 (業) (2)</p> <p>3. 야금 (3)</p> <p> 주조공장과 대장장이 (4)</p> <p>4. 화학산업 (5)</p> <p>5. 건축자재 산업 (6)</p> <p>II. 금속가공산업</p> <p>6. 전자공학 산업 (7)</p> <p>7. 조선 (業) (8)</p> <p>8. (기타금속가공산업)</p> <p> 중 (工業) 기계제조 (9)</p> <p> 일반 기계제조 (10)</p> <p> 자동차 제조산업 (11)</p> <p> 금속제품산업 (12)</p> <p> 정밀기계산업과 광학산업 (13)</p>

서 독 (41 개 분야)	동 독 (21 개 분야)
Ⅲ. 경공업 (산업) 9. 제재소와 목공소 (24) 운동기구산업, 장난감류산업, (音)악기산업 (26) 10. 섬유 (직물) 산업 (28) 11. 의류산업 (28) 12. 피혁산업 (29-31) 13. 펄프 (製紙原料) 산업과 제지 (32) 14. 인쇄산업과 복제산업 (34) 15. 제도산업 (35) Ⅳ. 식료품 산업과 기호품산업 16. 식료품산업과 기호품산업 (37-41)	Ⅲ. 경공업 (산업) 9. 목재제품과 문화제품 (14) 10. 섬유 (직물) 산업 (15) 11. 의류, 재봉제품 (16) 12. 피혁제품, 구누 (신발) 제품 모피제품 (17) 13. (製紙原料) 펄프와의류 (18) 14. 다판화산업 (19) 15. 유리와요업 (20) Ⅳ. 식료품산업과 기호품산업 16. 식료품산업과 기호품산업 (21)

농업에 관하여 (3) (Landwirtschaft)

서독과 동독의 농업을 비교함에 있어서 주로 1957년/61년에서 1968년까지 사이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1949년에서 1969년까지 사이로 동. 서독의 경영구조, 요소투입, 생산과 생산성등을 비교고찰하였다.

이 비교의 기초로는 동. 서독의 공식 통계가 각각 바탕으로 쓰였다. 서독의 농업통계가 전체 통계의 영역안에 집합되어 있는 서독의 농업생산 규모를 매년마다 보고해 주고 있는데 대하여 동독의 경우는 총괄적인 농업생산 데이터 (총 농토생산, 동물성 전체농산물, 식료품생산, 순 식료품생산) 에 관

하여는 서독의 경우와 비교될 때 공식 통계가 주어져 있지 않다. 때문에 총 생산에 관한 통계는 여러가지 상이한 식물성 생산품과 동물성 생산품과 가축의 종류에 따른수에 관해서 만들어진 부분 통계를 참고로 삼아서 추정적으로 산출되어 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자 료 (Quellen)

경영구조

서독 : 독일연방 공화국의 식량과 농업과 그리고 산림부문에 관한 통계년보 (1970 년) 와 그 이전의 제 통계년보를 독일연방공화국 국회 제 6 차 선기기간 인쇄물 (Drucksache) VI / 372 (1970 년도 보고서) Bonn 발행 1970 년 2 월 6 일 페이지 21-25

동독 : 1970 년도의 동독통계년보와 동년보 그 이전호들

요소투입

서독 : 1970 년도해 식량 , 농업 , 산림학부문에 관한 통계년보와 그이전 호들

동독 : 1970 년도해 동독의 통계년보와 동년보의 그 이전호들

(西) 백림 공과대학의 농업정책과 농업 통계 연구소의 원칙에 따른 취업인구의 완전노동력에 관한 환산통계 . 환산요소 0.9 는 다음의 동독에서 나온 교통과로 일치한다.

O Krause, L Löhrike, A Meurer, G Ewert (業者) 대규모 노동력을 가진 경영체에 있어서의 노동력 문제의 해결방안과

농업에 있어서의 노동력 현황에 관한 연구

(Zur Arbeitskräftesituation in der Landwirtschaft und Wege zur Lösung des Arbeitskräfteproblems in Betrieben mit geringem Arbeitskräftebesatz)

in: Zeitschrift für Agrarökonomik (농업경제잡지) 제 7 권 (1964년) 제 7집 (Heft 7) 페이지 204

A Ball: 사회주의적인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공업화와 노동 (力) 경제

(Technisierung und Arbeitswirtschaft im sozialistischen Landwirtschaftsbetrieb)

in : 농업에 있어서의 산업화에 준하는 생산, 할레, 뷔벤 베르크의 마르틴, 루터 대학교의 학술잡지 1965년도의 학술잡지, 1965년도 특집호 페이지 53

(Industriemäßige Produktion in der Landwirtschaft Wissenschaftliche Zeitschrift der 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R Hübner : 1970년도 드레스덴 대지에 있어서의 지역적인 농업 노동력 발전 균형에 관한 방법과 결과 (Methodik und Ergebnisse einer regionalen Landwirtschaftlichen Arbeitskräfte-Entwicklungsbilanz im Bezirk Dresden für 1970)

in : 백림 (東) 의 훔볼트 대학교 학술잡지 수학 자연과학 제 17권 (1968년) . 제 6호 페이지 866

농업생산

서독 : 식량·농업·산림성(部) (연방정부) 제 6 과

(Abt VI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의 전체통계가 규칙(정주)적으로 연방정부의 식량·농업·산림성의 통계연보에 발표되며 이는 또한 정부의 농업현황에 관한보고(청서 - Grune Berichte)를 다루는 국회인쇄물(Bundestagsdrucksachen)과 농업경제 잡지에도 수록된다.

동독 : (西)백십 공과대학의 농업정책과 농업통계 연구소의 K.Merkel이 완성한 통계(일부는 발표되지 않았음). 이 통계가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은 K.Merkel의 논문: 동독 농업의 생산능율(Die Erzeugungsleistung der Landwirtschaft der DDR)

in: 동독 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Beitrage zur Entwicklung der Landwirtschaft der DDR). E.Schinke. H.-U. Thimm이 발행 Gießen 1970년 페이지 64-91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농업)생산치의 비교는 통계 방법론적인 면에서 일치할 보고 있으므로 상당히 훌륭한 비교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다. 경제년도를 기준으로 삼는 서독정부 통계와는 달리 동독의 경우는 일반년도를 기준하여 통계를 내는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동.서독의 농업 생산에 관한 비교를 함에 있어서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곡물단위

여러가지 농업생산품들의 자연량을 합산하고 전체결과를 하나의 수로 표시해 낼수 있기 위하여 이의 기준으로 곡물단위 (GE: Getreideeinheit) 를 사용한다.

이와같은 곡물단위 (GE) 제를 택하는 것이 농업생산의 전체결과를 표시함에 있어서 화폐로 그 가격을 산출해서 나타내는것 보다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마다의 가격이나 가격상황과는 관계없이 곡물단위로 표시하므로써 특정한 곡물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 dz 곡물과 1 dz · 곡물단위와는 동일한 것이다.

대부분의 식물성 생산품 분류는 그 생산품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의 량에 따라서 그 순위가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은 1 : 2.5 : 2.4로 계산된다.

인건이나 동물의 식량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혹은 전연 사용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들 즉, 예를 들어 씨앗들과 섬유식물 같은 유사한 농토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과 그 소득을 비교하여서 얻어지는 가격치로 그 순위를 정했다.

동물성 농산물의 평가는 이를 생산물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의 량을 사료로 계산했을때 얻어지는 결과에 따랐다.

동물성 생산물의 가격치도 그러니까 곡물에 관련시켜본 효력치를 기준으로 산출해 냈다.

생 산 성

농업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쓰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가

제 3 장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농업에 있어서의 노동(力)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매 완전노동력당 얻어지는 식료품 생산을 선택했다.

부정확한 점들이 취업인구를 완전 노동력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환산해 나갈때 생겨 날수가 있다. 그러므로 동·서독의 농업에 있어서의 노동(力) 생산성에 대한 상호 비교는 제일가능한 근사치를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다는 달리 식물성 농산물의 농토면적 생산성(매 헥타의 기육농토에 대한 총 토지생산)과 농업의 농토면적 생산성(매 헥타의 가용 농토에 대한 순수식량생산) 그리고 가축 사육의 생산성(매 대가축 단위당의 동물성 전체능율)들의 경우는 그 비교를 통하여 충분히 정확한 비교치가 산출되어 질수 있을 것이다.

자 료

서독 : 독일연방 공화국의 식량·농업·산림에 대한 통계년보에 수록된 수학(1970년도)와 그 이전의 통계년보에 발표된 숫자에 입각하여 산출했음

동독 : (西)백림공과대학의 농업정책과 농업통계 연구소(일부는 미발표 부분이 있음)

제 3 장에 대한주석

1. 이하에 전체경제면에서 행해지는 생산과 생산성에 관한 보고가 행해 지며 사회생산(品)의 이용(使用)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 5 장을 참고

2. 1967 년도의 물가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했으며 서독은 DM로 동독은 M로 표시

동독의 총 사회생산에서 보무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구별된 재료와 아직 간행되지 않은 여러 재료를 도움으로 하여 평가되었다. 생산성에 관한 연구조사(Produktivitätsuntersungen)를 위해서는 실제 발전을 산출해 내는 일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동독에 있어서는 물가의 가격요소(Preiskomponent)들은 명목상(額面上)의 발전 범위 내에서는(테두리안에서는)근소한 비율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산출해낸 데이터들은 그것이 최소 몇년간에 한하는 한 다른 비교의 경우에는 사용될수도 있겠다.(예를들어 본보고서의 제 6 장을 참고해 볼것)

3. 이와같은 결과는 동.서 양독에 있어서 아주 경미한 정도의 생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의 증가를 가지고 이루어 낸것인데(연평균 서독: +0.3%, 동독: +0.4%) 동독의 경우는 상당히(현저하게)높아진 생업 취업율의 결과였다(1969년도의 생업취업 비율: 서독- 44.4%, 동독- 50.9%)

4.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은 광산(業), 에너지산업, 노동하는 수공업(arbeitendes Handwerk)을 포함한다. 이 수공업에는 건축업은 포함이 시키지 않고 있음.

제 3 장

5. 총 국내산업은 (Bruttoinlandsprodukt) 국내에서 이루어진 요소수입 (Faktoreinkommen) 과 간접세 (금) 공제기장 (額) 을 포함한다. Faktoreinkommen (총 임금액 - Bruttolohnsumme , 사회보장 , 이익 (金) , 이자등)
6. 이 가격은 중기간에만 유효한 것이다. 1969 년에 근소 하게 나타난 비율은 흥작으로 인한것이다.
7. 노동생산성은 여기에 있어서 국내총생산 량에서 1967 년의 가격으로 매 노동자의 비율로 측정한 것이다.
노동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에 대한 증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것인데 자료입수의 곤란으로 말미아마 불가능 하다.
8. 이 산업부문의 보고는 동-서 양독에서 취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전제조건 , 목표와 방법 (手段) 들을 다루지 않으며 단지 산업 통계상의 자료 (데이터) 의 변화 발전을 제시하는데만 그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에는 다음의 분야들이 포함 된다. 가 (業) , 에너지 (産業) - 여기에는 건축산업 (Bauindustrie) 은 포함지 않았음)
9. 전체생산에서 소비를 주로하는 산업과 소비를 (가까운) 목적으로 삼지않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나라의 국민경제의 성장 (熟) 도를 재는 가능한 척도 (기준) 으로 쓸수 있다.
즉 , 성장 (熟) 도가 늘어나면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산업 국가들에서도 소비를 주로하는 산업이 차지하는 산업이 차지

하는 비율은 역시 줄어 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성장데이터)는 (이와같은 구조에 관한 데이터만으로는) 아직 생활수준을 말해 준다고는 할수가 없겠다. (이점에 관해서는 제 5 장을 참고할것)

10. 여기에서 다음의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겠다.

즉, 상호 경제원조 위원회(RGW: 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에서 약정된 노동분담(Arbeitsteilung)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조약때문에 동독은 특정한 자동차형은 아예 전연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버스-Omnibusse 중간 및 대형 승용 자동차등)

11. 노동시간에 대한 정확한 동서독 비교는 자료수집 결여로 불가능하다. 서독은 노동시간에 대하여 공업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으나 동독은 비교할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있다.

동독에서는 평균노동시간이 서독보다 길기 때문에 서독에 비교하여 동독의 노동시간은 밝혀진것 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한편으로 동독에 있어서는 노동시간이 불규칙 하기때문에 정확한 노동시간을 파악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12. 전체경제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제 2 장을 참고할것 거기에 또한 남,여 성별에 따른 취업인구의 분포에 관한 숫자가 제시되어 있다. (1964

년도의 경우에 한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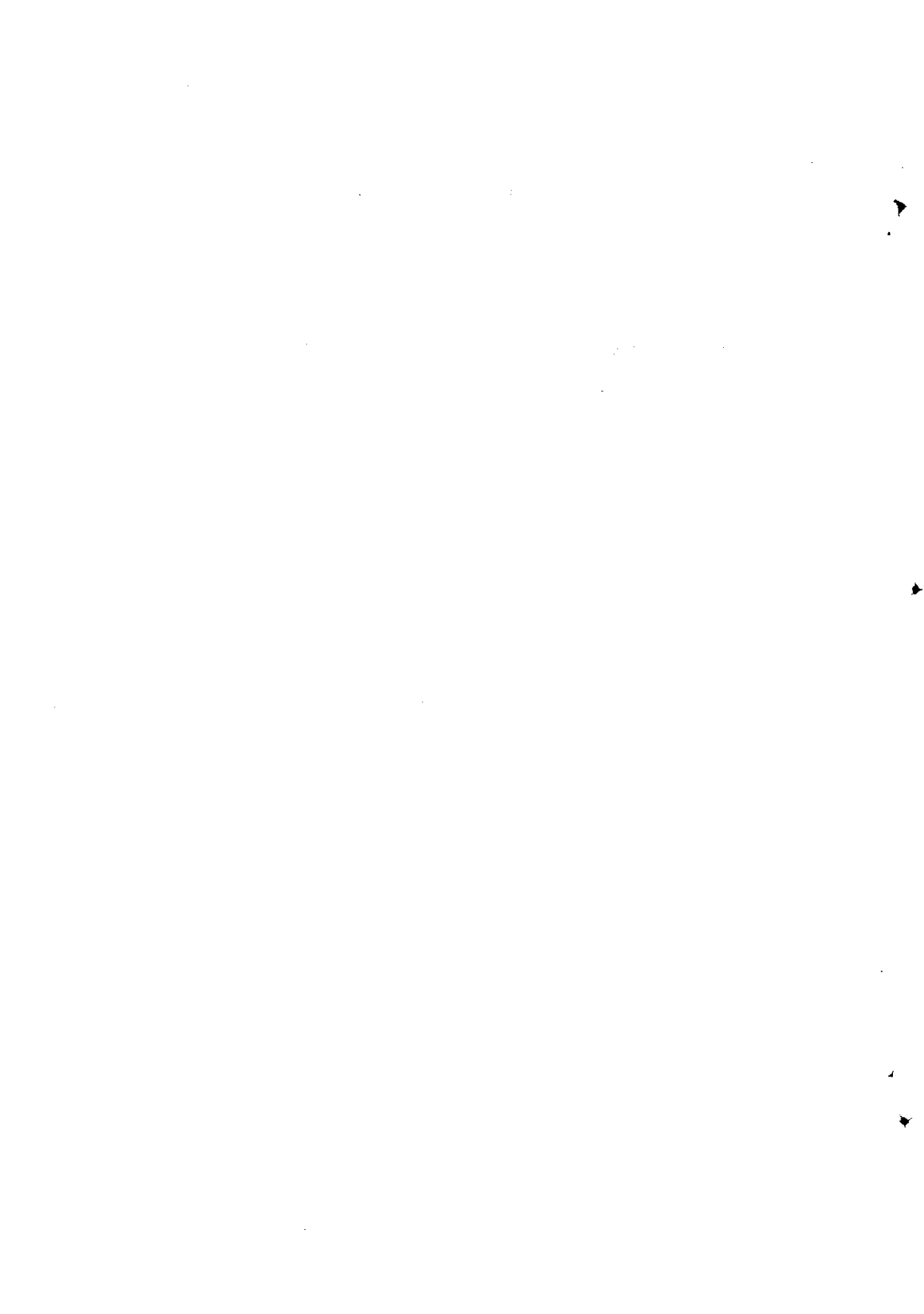
13. 경영구조란 용어는 여기에서 주로 농토의 소유가 경영(즉, 농업경영)면에 나타나고 있는 분포와 그리고 농업생산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경영규모(Betriebsgroßen)의 구분이란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14. 생산부문통계(Zensus im Produzierenden Gewerbe) 제 2호 산업분야별로 구분된 건축산업을 제외한 기업과 경영결과(Unternehmen- und Betriebsergebnisse für die Industrie ohne Bauindustrie nach Industriezweigen 1966년 10 동 페이지 124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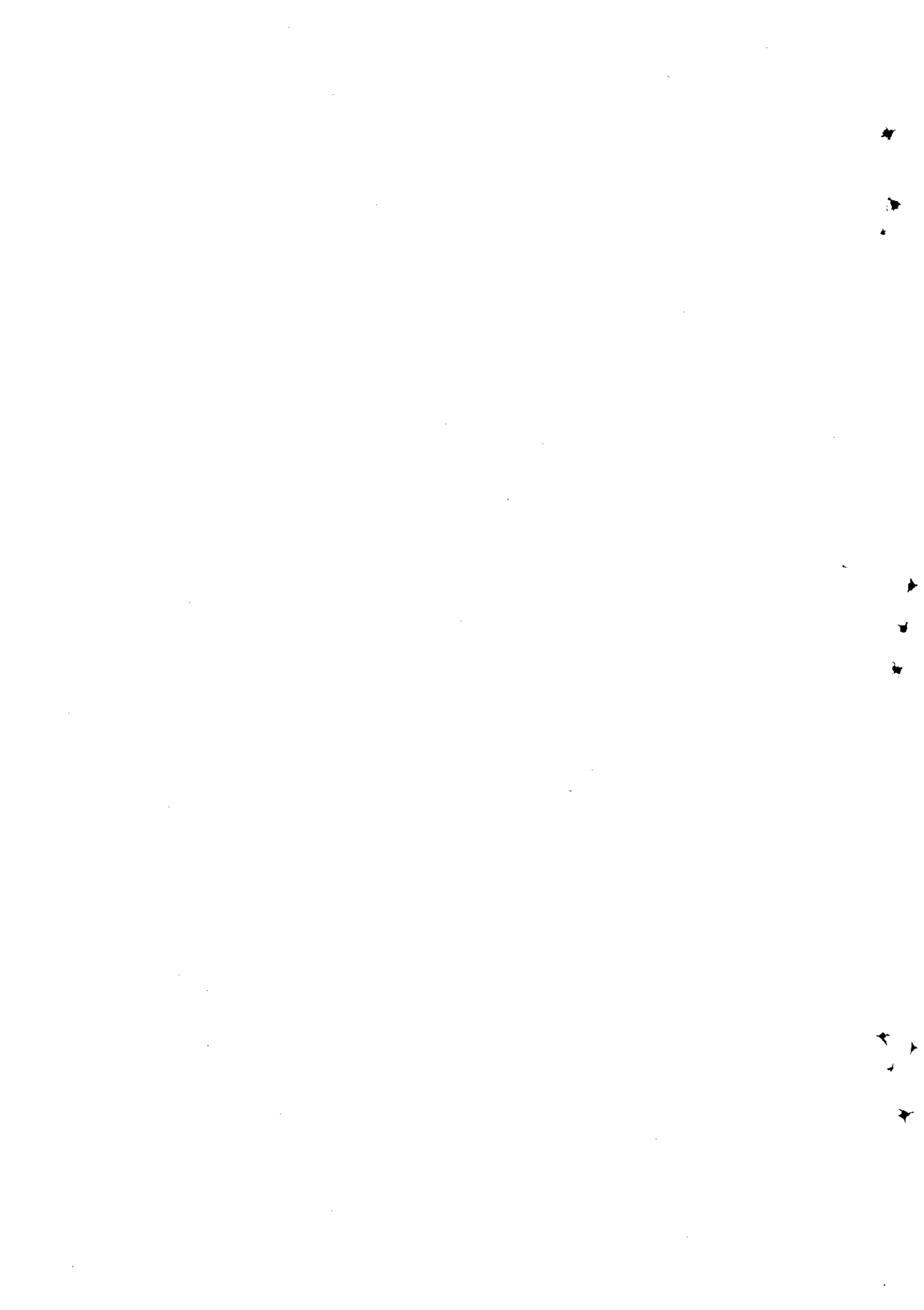
15. "공. 산업부문의 순수생산 지수"(Indexziffer der industriellen Nettoproduktion)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지수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숫자들은 각각 개수에 바탕을 두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력기에는 2중수학과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개 지수의 계산은 순 생산치의 도움을 받아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수(Me ziffer)를 총 생산치의 계속 산출에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다.

16. 본 통계를 이루워 내는 데는 백림소재 “독일경제 문제연구소” (DIW)의 경제학 석사 H. Wilkens 씨의 힘이 컸으므로 여기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17. 여러 상이한 가격추정을 종합해서 산출해낸 지수에 따라서 나타난 것은 1.27 비율 이었는데 이것을 1.25로 간략화 시킨 것이다.



제 4 장 지상구조와 주요소



비가 동독보다 낮다. 개인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

(281-284)

- ☒ 전체 에너지 소비 (산업, 전환부문, 개인 가정)은 서독의 경우 개인 일인당 기준으로 볼때 동독보다 근소한 차이를 적으며, 그대신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급속히 증가되어 가고 있다.

(272)

- ☒ 서독도 동독도 충분한 에너지 저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기본 에너지에 필요한 수요를 자체적으로 장려 충족시킬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동·서독은 다 같이 에너지를 외국으로 부터 수입해 들여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264-270)

- ☒ 새 주택 건립은 1950년에서 1968년에 이르는 사이에 매 인구 일인당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서독이 동독의 3배 건립했다.

(277-282)

- ☒ 1950년도에 있어서의 주택 수급은 -주택수를 기준으로 볼때 -서독의 사정은 동독보다 나았다. 거주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동·서독이 같았다. 1968년도에도 인구 1인당 주택 가용수는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불리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968 년도에 있어서의 매 인구당 거주 면적은 서독이 23평방미터에 달하고, 동독 19 m²에 달했다.

(283)

- ☐ 주택의 수요는 1950 년도에서 1968 년도에 이르는 사이에 서독에서는 960 만호의 주택이 늘어나므로써 1950 년도에 비하면 거의 배로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기간동안에 동독에서는 95 만호의 주택이 늘어나서 1950 년도에 비하면 19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81-284)

- ☐ 옛날 주택은 서독의 경우에 동독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다. 새로 짓는 주택들에는 시설양상의 차이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다.

(285)

- ☐ 노동자들의 집세에 내는 지출은 1950 년에서 1968 년에 이르는 사이에 서독의 경우 4 배이상으로 늘어 났으며, 동독의 경우는 집세 지출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질적으로 비교될 만한 주택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은 서독의 경우에 동독보다 2 배내지 3 배까지 비싸다.

(286)

240. 동·서 양쪽에 있어서의 교통의 구조와 능력을 오늘날까지도 많은 경우에 1945년까지 이룩해 놓은 공동발전과 그리고 독일이 분할될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현존하고 있는 통일적인 교통망은 -양국이 서로 상이한 목적 설정을 가지고- 전후시기에 이룩해 낸 재건 및 완성기간에도 근본적으로 그 구조를 변경시킬 수가 없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는 동·서로 통하는 교통망이 그 중심을 이루었던 것인데, 즉 이와 같은 동·서 주축에 입각한 철도망과 원거리 교통망 그리고 주 수로 연결로로서 이루어진 중앙독일 공업지대의 운하(Mittellandkanal)를 갖춘 동·서 교통망 대신에 우선 남·북을 잇는 교통망이 크게 등장하게 되었으나 이 교통망은 오늘날까지도 부분적으로만 원만한 완성을 보고 있다. (특히 동독에서는 Infrastruktur를 확장해 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41. 독일의 분할과 그리고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여러가지 정치경제분야에 걸친 결과들은 동·서독 국경등의 변경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띠고 있다. 즉 이를 변경 지지로 통하고 있는 도로망의 재건을 방해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이 도로망을 재건하는 일을 크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과 동독은 현재 7개의 철도통과선과 5개의 자동차 통과도로만 연결되어 있다. 동독의 경우에는 이뿐만 아니라 포울랜드와 체코슬로바키아와로 두개의 철도 통과선과 3개의 자동차 통과도로선으로만 연결되어 제

한 되어 있다.

동·서 양진영간의 정치적 건강상태의 결과로 백림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버렸다. 백림은 동독 교통망내에서도 백림이 한때 누렸던 옛날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다.

a) 교통의 공급구조 (Angebotsstruktur des Verkehrs)

■ 철도망 (Eisenbahnnetz)

242. 철도망의 기장은 서독이 현재 약 34,000 km가 되고, 동독이 약 15,000 km가 된다. 이들 철로중에서 동·서독이 약 절반씩 간선철도로 쓰이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서독의 철도망의 밀집도는 비교적 높다.

지선들은 벌써 폐선되어 버리긴 했으나 그러나 이 부문에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 이르기는 일은 이래 계획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철도의 전철화는 동·서독이 그 부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독은 약 8,600 km의 철도망을 전철화 했고, 동독은 1,200 km를 전철화 했다. 철도의 전철화는 처음에는 동독에서도 서독만큼한 규모로 실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5년 이래로 이 계획을 디-젤 동력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밀려 뒷전에 밀려지고 말았다. 동독의 경우 1975년에 이 디-젤 기관차가 전체 철도기관차의 83%를 점하게 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 도로망 (Strabennetz)

243. 도로망과 그리고 특히 원거리 도로망의 발전은 동독과 서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의 도로망은 상당히 크게 확장되었다. 아우토반(高速道路)만 하더라도 지난 10년동안에 1,400km가 늘어서 4,000km가 되었고 연방도로(Bundesstrabe)는 7,000가 늘어서 32,000km가 되었고 그리고 도로(Landstraben)가 18,000km가 늘어서 125,000km로 확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도로망의 질이 또한 향상되어 크게 늘어난 도로의 역할을 해 나갈수 있도록 되어 졌다. 250,000km가 되는지방도로(Gemeindestrabe)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연습한 점들이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하겠다.

동독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기존 도로 즉 1,400km의 아우토반, 11,000km의 원거리 도로, 33,000km의 주도로, 57,000km의 지방도로를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는데만 겨우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인 도시교통을 살펴 볼것 같으면 지상 교통을 덜어주는 지하철망과 고속철망(S-Bahnnetz)이 양독의 경우에 이미 60년대에 추진 실행되어 졌는데, 이와는 달리 동독에서는 현재 비로소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

● 수로 (Wasserstraben)

244. 내륙 수로의 경우 4,000km이상의 완전 항해 가능한 하천과 운하를 가지고 있는 서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독에서

제 4 장

보다 훨씬 큰 바 있다. 왜냐하면 이 내륙 수로들은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므로써 경제적 중심지들을 연결해 줄뿐만 아니라 바다 항구를 이들 경제적 중심지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될 당시에 동독에는 훌륭하게 건설된 1,700 km이상의 간선도로망이 있었는데, 이 늘 도로망은 교통의 주류가 남북으로 통하게 됨에 따라서, 백림의 지위가 변화됨에 따라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엘베강과 오더강이 동독의 국경을 이루는 강들로 되어 버림에 따라서 한 때 지였던 중요한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서독에 있어서 내륙 수로항해의 능력이 늘어나고, 수로가 확장된 결과로 내륙 항구가 확장을 보게 되었다. 동독의 경우에는 내륙 항구는 거의 확장이 나 손을 보지 못했다. 동독의 수로망들도 또한 별로 크게 확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독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수로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수로 연결지가 세워졌거나 혹은 계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젤강, 라인, 마인, 도나우강의 운하, 베카강, 북남운하) 기존운하등에도 (충부 독일 공업지대 운하, 도르트문트, 엘스강 운하)보다 대규모의 선박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항 공 수 송 ● (Luftverkehr)

245. 항공 수송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높은 성장율은 서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어서도 상용 비행장(공항)을 확장시키는 결과에 달하게 했다. 서독에서 주력을 다하여 화

장한 것은 프랑크 푸르트(라인강변) 공항과 쾰른-본 공항이었다. 동독에 큰 비중을 두어 확장시킨 공항은 백림 쇠네펠트 비행장인데 이 비행장은 국제적인 대형 항공기 공항으로서 백림 고속철망과 그리고 아우토 반 도로망과 연결되어 있다.

● 유 송 관 ● (Pipelines)

246. 서독에서는 광유수송이 동독의 경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58년에 이미 서독에서는 원거리 유류 수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경우는 광유의 원거리 수송망이 세워진 것이 최근 2, 3년전 부터의 일이다. 원거리 유류 수송은 1969년에 서독의 경우 약 1,600 km의 기장에 걸쳐서 행해 졌고, 동독의 경우는 약 650 km에 걸쳐서 행해 졌다.

b) 생산요소의 결합 (Kombination der Produktionsfaktoren)

247. 공급구조와 능력데이터 (Leistungsdaten)를 동·서독 비교하는 일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부록에 언급하는 방법론적 참고 사항을 볼것) 서독의 총국내 생산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과 동독에서 생산을 해내는 경제부문의 순수 생산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에서 6%인데, 이는 동·서 양독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말해 주고 있으며, 여러가지 원인 중에서도 개인 교통과 작업교통이 크게 진출하고 있는데서 오는 결과다 전체 투자면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도 아주

이와 유사하다. 주 1 -도로와 수로 건설은 제외하고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씩이다. 국민경제의 시설능력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시 도로 건설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약 17%가 된다. 1960년과 1968년 사이의 성장률도 동·서독이 약간의 차이 밖에 없다.

248. 시설능력은 서독의 경우 1,130억 서독 마르크에서 1,590억 서독 마르크는 늘어났으며, 동독의 경우 330억 동독 마르크에서 430억 동독 마르크는 늘어났으니, 그 비율은 각각 30%씩이나 된다. 지속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서독에 있어서의 투자는 63억 서독 마르크에서 89억 서독 마르크도 늘어났으니, 그 비율은 약 40%가 되며, 동독의 경우는 16억 동독 마르크에서 24억 동독마르크는 늘어났으니 약 5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49. 노동력 투입은 동·서독 공히 60년대 초기에 최고수준을 보였었는데 그후에는 줄곧 특히 서독에서 노동력 투입은 감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서독에 있어서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립 취업자와 협력하는 가족식구들의 비율이 또한 줄어 들어가고 있다.

현재 서독에서는 약 135만명의 인원이 교통과 통신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자립경영자와 협력하는 가족의 식구들의 수는 약 9만명이다. 동독에서는 전부 54만명의 인원이 이 두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3,000명이 자립 경영자와 협력하는 가정의 식구들이다.

(Leistungskennziffern)

250. 국민경제에 관계되는 수자를 비교하는 것이 상당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므로써 관찰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규모를 질서있게 정돈함에 있어서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생산성(즉 자본투입과 관련시켜 볼 때에 얻어지는 소득)은 동·서 양독에서 거의 비슷하다. 철도가 교통부문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영향을 입고 있다. 변화 경향에 대한 언급은 그러나 각개 부문의 발전도 고려해서 다루는 분석을 할 때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 노동력당 행해지는 자본 투입은 -자본 집중도- 그렇지만 서독의 경우가 노동 인력을 자본으로 대체시키는 일이 이미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동독에 비하여 거의 배나 높다. 매 노동력(인)당 자본투입은 1960년이래 서독의 경우 78,000 서독 마르크에서 117,000 서독 마르크는 늘어 났으니 약 배가 되었고, 동독에서는 60,000 동독 마르크에서 8,000 동독 마르크도 늘어 났으니 그 비율은 약 삼쯤 늘어 났다. 노동력 생산성도 서독의 경우가 역시 동독보다 거의 50%가량 높다. 그러나 증가비율은 지난 10년간에 거의 비슷했다. 이와 같은 높은 비율의 자본 투입은 노동력과 관계되는 투자액과 투자강도의 경우에도 표현되어 진다. 물론 이 수직에 대해서 불평도 수준의 차이가 성장차이 보다 훨씬 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당(Investitonsquote) 즉 투자와 수입과의 관계(동·서독이

각 20% 정도씩)은 이와는 반대로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 부문에 극세적으로 전형적인 수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실제량을 단위로 하여 매 취업인구당의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운송 부문에서는 Personenkilometer ()와 Tonnenkilometer 의 합계로서 표시된다.) 결과를 확인해 두고 있으며, 제 2차 대전후의 전후기간에 동·서 양쪽에서 생산성이 배가되었다.

C) 교통업무에 대한 수요 (Die Nachfrage nach Verkehrsl-eistung)

● 철도와 도로 ● (Schiene und Straße)

251. 동·서 양쪽에서 교통이 차지하고 있는 업적을 비교할 때에는 우선 공급구조에 나타나 있는 제 차이점들을 고찰하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쪽에 있어서는 - 거의 모든 코메콘(동구 경제 상호 원조회의) 회원국가들에서와 같이 - 철도운송이 으뜸가는 운송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철도망이 많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 전쟁때문에 파괴되고 시설이 해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리고 이것을 고찰의 기초로 삼을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동쪽에서 자동차 기계화가 아주 천천히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동쪽에서는 화물 자동차 운송(LKW-Verkehr) 때문에 승용 자동차 교통(Pkw Verkehr)이 계획적으로 뒷전에 밀려졌다. 자동차 이

용도가 높아지면 동시에 도로망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텐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동독으로서는 이 계획을 실현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몇년간에 컨테이너(Container)의 도움을 받아 유기적 운송체제가 발전하여 화물운송면에 새로운 역점이 생겨나고 또 생리수준이 향상되어 개인들이 사유자동차등을 갖일수 있게 된뒤 부터서는 동독에서도 철도와 도로간의 관계는 변화되어 있다.

● 화물 운송 (Güterverkehr)

252. 도표 A 66 과 A 67 은 화물운송과 여객운수에 있어서의 교통이 다하는 업적의 발전과 현재의 구조에 관한 개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화물운송의 경우 독일의 교통수단으로 행해지는 업적과 독일의 도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업적을 구분해야 한다. 주² 서독의 경우 이 점에 있어서 내륙수로를 통한 운송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화물운송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외국의 화물자동차를 통한 화물운송이 국경을 넘어서 많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바 있다. 계속 자유화를 추진해 나간 결과로 라인강 어귀에 있는 항구들은 오늘날 루르 공업지대에 대하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라인강을 이용하는 통과운송(Transitverkehr)이 크게 늘어났다. 해운부문의 경우 독일 함대가 이루는 업적은 독일 해항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의 발전과는 다르다.

253. 철도운송면에서 볼것 같으면 서독과 동독은 거의 같은 비율의 높은 운송량을 보여 주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 교통운송이 다하는 업적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운송능력을 할당함으로써 철도운송과 도로운송간의 경쟁을 조정하려고 협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서독에서는 동독의 경우보다 원거리 운송에 화물자동차가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은 동독에 있어서도 화물운송에 있어서의 계획적인 노동력 분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더욱 단호하게 행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동독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은 모든 경우에 일일히 허가를 맡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 교통수단으로 행해지는 업적을 측정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킬로메타 당 톤으로 계산한다면, 동독의 경우 독일 국영철도 (Reichsbahn) 를 통하여 행해지는 운송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체 화물운송의 $\frac{3}{4}$ 이나 된다. 몇년전 까지만 해도 동독의 국영철도가 해낸 화물운송 업적은 약 80%나 되었던 것인데 그후부터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 서독의 경우 서독 국영철도와 이밖의 연방국가에 속하지 않는 철도 전체를 통해서 행해지는 철도(화물, 여객)운송이 전체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되지 않는다. 철도가 차지하는 운송비율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간만 하여라도 전체 운송에서 60%나 차지했던 것이다.

254. 내륙 수로 운송은 동독의 경우 전체운송에서 4%밖에 되지 않는데 서독에서는 전체 운송의 약 20%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55. 1일평균 발송 범위가 서독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자동차 화물운송면을 살펴 볼때 동독의 경우 근거리 운송이 원거리 운송보다 약 배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2%대 6%) 서독의 경우는 근거리 운송이 20%가 되니까 원거리 운송비율과 같다.
256. 재래식 교통수단으로 행해지던 증유수송은 서독에서는 파이프선으로 대체된지가 벌써 10년도 넘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식의 운송체제가 오늘날 서독에서는 모든 운송업적의 8%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일은 동독에서는 1968년부터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257. 해상 교통에 있어서의 업적 비교는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지리 및 경제적 조건들이 서독의 경우 동독과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지금의 서독 지역에는 쓸만한 항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선대도 제대로 있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상당한 능률 업적 상승을 동독이 이룩한 뒤에는 약 700 만톤의 해로 운송량과 약 1,000 만톤의 항구에서의 화물 옮겨 싣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1967년 뒤 부터인데, 이때부터는 이 능력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게 되었다

제 4 장

그런데 선대의 화물운송 능력(업적)면에서만은 향해 지역의 화중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258. (해상 운송을 제외함) 화물 운송면의 전체 업적을 국민(인구)의 수와 관련시켜 고찰해 볼것 같으면 지역의 크기가 차이 나고 경제구조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이면에 있어서의 배타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 (서로) (매 인구당 약 3,000 t km) 발전 경향도 동·서독이 비슷하게 되어 나가고 있다.

■ 여객 운수 (Personenverkehr)

259. 여객 운수면을 고찰해 보면 현재로서는 동·서독의 업적(능력)구조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느정도의 정도를 예상케 해 주는 몇가지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의 여객 운수의 발전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특징은 50년대 말 부터 시작한 개인들의 자동차 기계화라 하겠는데, 이로 말미암아 공공 교통수단들이 크게 내치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현재는 - 매 킬로메타당 수송 인구를 기준하여 보면 - 서독 지역에서의 개인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교통업적에서 거의 $\frac{3}{4}$ 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10% 밖에 되지 않는다. (도표 A66 과 A67 을 참고할 것) 동독의 경우는 상당한 낙후성은 있기는 하지만 이와 비슷한 발전 경향을 엿볼수가 있다. 동독에서는 개인 교통수단이 전체 교통 업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서독의 경우와는 반대로 개인 교통수단에는 서독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며 오토바이와 모페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바 있으며, 서독에서 이들 두종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비중을 헤아릴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 점에서 동·서독이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동독에서는 개인 승용차를 살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뿐만 아니라 그 유지비 또한 아주 비싸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서독과는 반대로- 개인 승용차(자가용)는 직장 출퇴근 교통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주말 휴양 여행이나 휴가 여행에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공공 직장 출퇴근 교통에는 보조금이 지불되는 것 때문에도 더욱 장려되고 있으며, 출퇴근에 드는 돈은 서독에서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비의 낭비에 안된다. 동독에서 철도가 여객운송에서 차지하는 업적은 한때 $\frac{2}{3}$ 를 점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 비율이 20%로 줄어 들었다.

260. 인구수를 감안하여 볼 때 서독에 있어서의 공공교통수단이 차지하는 업적은 현재 동독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약 5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개인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넣어서 고찰하면 동·서독의 교통비율은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 서독에 있어서는 매 인구당 행해지는 교통업적은 이제는 벌써 어느정도까지의 포화상태가 일어나고 있는것 같다. 제 2

제 4 장

차 세계대전후의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3 배가량의 교통업적에 필요했던 것이며 등록에 있어서는 오늘날도 높은 교통업적의 성장율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승용차(자가용)의 비율을 동·서독을 비교해 보면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약 4 배정도나 된다.

d) 인프라 스트럭처를 확충함에 있어서 세워지는 계획목표와 우선순위 (Planungsziele und Prioritäten im Ausbau der Infrastruktur)

261. 교통의 증가에서 생겨나는 구조의 변천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청들은 고도의 산업화된 선진제국들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교통이라는 전체 문제를 하나의 통일적인 관철에 입각하여 계획 조정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국가는 교통상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위하여 높은 비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교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구획(대지)의 설정 거주지 구조, 경제구조등을 고려하는 이외에도 일반적인 주위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 또한 생겨난다.

● 전체 교통 계획의 수립 ● (GesamtverkehrsPlanungen)

262. 서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어서도 현재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모든 경제 분야와 생활분야의 발전에 유관시켜서 교통체제와 교통의 종류를 조정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로가 비슷한 발전단계를 보이고 있다.

각 지방 부락의 교통 계획의 수립에서 출발하여, 읍, 군과 주 교통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넘어서 오늘에 와서는 전체 경제 전망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에까지 이르는 단계적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계획의 규모면에서는 동·서 양쪽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각개 교통 종류의 발전 경향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동시에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의 계획 수립을 넘어서서 이에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보이는 그 규모면에서의 차이가 있다.

화물운송면에서는 철도와 일반도로 당국간에 조정이 행해지고 여객(개인)운송의 경우에는 개인교통과 공공교통수단간에 조정이 행해지는 일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 동·서 양쪽에 있어서 유기적 관계가 있는 연합 교통(Kombinierte Verkehr)이 장려되고 철도 철도교통망은 앞으로 제한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교통이용도가 약한 철도를 폐기시키는 일이 서독에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계획되고 있다. 동독의 국영철도중에서 약 3,500 km의 철도가 폐기될 전망이다. 서독의 연방 철도(국영)당국은 6,000 km의 철도망을 여객운송시설도는 폐기시키고자 하며 이중에서 일부는 화물운송면에서도 폐기시킬 계획이다.

서독의 경우에는 1970년의 연방원거리 도로 계획을 통하여

1985년 까지 완성할 확충계획을 위하여 종합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자동차 기계화에 직면하여 적어도 장거리 교통의 경우만이라도 이에 대처해야 하도록 할 종합계획이다.

동독의 도로망을 볼 것 같으면 제 2차 세계대전 이래 아무런 변함이 없이 그냥 머물러 있던 390 km의 아우트반(高速道路) 도로망을 당장에 490 km쯤 확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원거리 교통망이 4차선으로, 완공되어야 할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간선도로망은 약 7,000 km에 달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서 양쪽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동차 기계화 구조는 앞으로 차이 가 나게 될 것이다. 서독에 있어서 개인 자동차 기계화는 여전히 거의 전적으로 승용자동차(자가용)에 한한 것인데 반하여 그리고 이들 자가용의 수는 1985년 까지는 약 2천만대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데 반하여 동독에서는 개인 자동차의 기계화 충족치를 승용자동차(자가용) 3백만대, 오토바이 120만대, 모페트 160만대로 잡고 있다.

동독의 수로교통망에 대한 확충계획으로서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런데 서독의 경우는 앞으로 남·북 운하와 라인강 마인강 도나우강을 연결하고 있는 운하가 크게 그 망을 확충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다 특히 높은 성장율을 동·서 양측에서 항공교통이 보일 것

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휴가 여행 교통이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에너지 경제 (산업) (Energiewirtschaft)

263. 독일 연방 공화국과 동독에 있어서의 에너지 경제산업은 제 2차 세계대전후의 시기에 서로 상이한 경제정책적인 조건하에 놓여 있었다.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에너지 정책적인 조치는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 특히 기본 에너지 원료가 당시 저장돼 있던 것을 이용하는 점에서 - 동·서 양독을 에너지 재료가 생산되는 것을 주로 이용하였다.

에너지 경제와 이의 소비가 지니고 있는 비용의 측면과 기술은 서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구라파 국가들에 있어서도 에너지 경제상의 독점지배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본원료 사용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계속하여 줄어들어 가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독은 자체로서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의 자체재고량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크게 빠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갈탄이 동독에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 연료로 쓰였으며, 가격으로 보더라도 제일 값싼 연료였다.

a) 연료의 공급 (Das Angebot von Energieträgern)

● 광 유 ● (Mineralöl)

264. 서독에서는 1966년 이래로 광유가 가장 중요한 연료로 쓰

이고 있다. 그렇지만 광유가 서독에서 직접 채굴되는 양은 아주 적다. -약 7백만톤이 매년 채굴되는데, 이것은 서독이 일년에 사용하는 광유의 7%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서독이 일년에 필요한 광유종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되어야 한다. 서독이 가지고 있는 이 광유의 저장량도 제한되어 있고 광유의 채굴 조건들도 비교적 불리하며, 중유(Rohol)의 질이 좋지 않다. (낮다)

서독이 사용하는 이 중유의 시장공급은 75%가 국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집중되어 있고 많은 경우에는 서 구라파에 주재하고 있는 회사(상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수입되는 중유의 가격은 - 발열량(燃燒價)을 기준으로 하여 - 현재 서독에서는 석탄 채굴에 드는 비용의 1/2이 가 격이다.

동독에서 채굴되는 중유의 량 아주 적다. 그러므로 동독이 필요한 중유의 수입량은 전체 수요량의 98%나 된다. 동독이 사용하는 중유는 지금까지는 주로 소련에서 수입해 왔다. 최근에는 중유로 아랍제 제국가들로 부터도 공급을 받고 있다.

265. 서독의 정유공장 (성능)은 제 2차 세계대전 이래 크게 증가했다. 이 능력이 1958년에 1억 3천 3백만톤을 약간 넘었다. 원래는 서독의 경우 정유공장은 주로 북쪽에 집중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정유공장 신속과 확장을 통해서 서독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

동독의 경우에는 주로 두개의 정유공장 소재지가 있다. 할레(Halle) 지역의 슈베트/오더강가(Schwedt/Oder)와 토이

나 (Leuna)가 이 2개 정유공장 소재지다. 이 동독의 정유공장능력(성능)은 1969년/1970년에 1천2백만톤이 겨우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서독에서는 석탄의 수소화가 중지되어 졌는데 동독에서는 비교적 광범한 원갈탄 수소화가 행해지고 있다. (전 광유생산의 16%가 수소화공장에서 공급된다.)

● 천연 가스 (Erdgas)

266. 서독에 있어서 천연가스는 지난 몇해 동안에 점점 더 중요한 연료로 되어가고 있다. 이 천연가스의 저장량이 상당히 증가되었다. 왜냐하면 이 천연가스에 노출되는 곳의 구경 (Aufschlubböhrungen)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부해 졌기 때문이다. 서독이 약 3천억 Cbm의 확실한 천연가스 저장량을 가지고 있는것 이외에도 폴란드와 독일 국경선 근처인 슐토프테른 (Scelocert eren) (폴란드의 토닝겐 근처)에서도 2조3천억 Cbm 가량의 천연가스가 채굴되고 있으니, 이는 독일이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다. 채굴비용이 아주 적게 드므로 천연가스는 안전하고 가격이 유리한 값있는 연료다. 그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는 그 양을 점점 늘여서도 소련에서 수입할 수가 있다. 동독의 경우 천연가스를 비교적 얼마 채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천연가스 저장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별로 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최근에는 동독이 천연가스 탐색을 위하여 더 그 조사를 강화하고 노출지를 찾아 내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인다. 이밖에

제 4장

도 계획되었던 파이프선이 부설된 뒤에는 쓰련으로 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쓸수 있게 되었다.

■ 갈 탄 ■ (Brankohle)

267. 서독에서 갈탄이 나는 곳은 무엇보다도 (주표) 라인강 좌편 구역, 헬름스테트 (Helmstedt) 구역과 그리고 헷센주와 바이에른 주다.

동독에서는 갈탄이 가장 중요한 연료다. 동독의 갈탄 저장지역은 다음의 3개 지역들이다.

- ☒ 뱃사우, 할레, 메르제 부르크, 알벤 부르크, 보르나, 라이프치히, 토트가우 사이에 있는 ■ 중부 독일 지역 ■
- ☒ 쾨프벤 베르크-코트부스 지역의 ■ 라이지츠 (Lausitz) 지역 ■
피를리츠와 치타우 근처에 비교적 자그만한 갈탄저장지가 있다. 그리고
- ☒ 뤼르스벤 베르크, 뤼켄헤르드-푸란크푸르트지역의 별 중요하지 않은 오더강 지역

채광 될 갈탄 저장량은 약 240억톤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90억톤 중부 독일지역에 있고, 약 150억톤은 라우지츠의 지역에 있다. 갈탄의 연소가 (발열량)은 약

2,000 Kcal/kg인데, 여기에서 부터는 점차 발열량이 줄어 든다. 처음 언급한 2개 지역이 유리한 점은 탄이 주로 광대한 들 (평야)에 2억톤을 저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비용면에서 유리한 예노 천체굴 (Grobtagebaue)이 행해 질수 있다. 3,000 MW까지의 성능 (능력)을 갖춘 신축내지 건축중에 있는 발전소들이 이들

갈탄 노천 채굴장소의 근처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로써 앞으로는 수송비용을 상당히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석 탄 (Steinkohle)

268. 석탄은 서독의 경우 루르지역, 자르지역과 그리고 이벤뷔렌 (Ibbenbüren) (低地 작센주)에서 채굴된다. 이밖에도 상부 바이에른에서 역청탄 (유연 석탄)이 생산된다. 루르 지방의 강도속에 있는 석탄의 저장량을 10억만톤은 넘을 것으로 추측되며, 자르계지역에 약 10억만톤이 저장되어 있다. 아이헨 지역에 또한 10억만톤의 석탄 저장량이 있다. 그런데 저지 작센 지방의 석탄저장량은 2억만톤정도다. 이렇게 볼때 서독의 석탄채굴 가능량은 굉장하다. 석탄채굴 비용은 채굴 지역마다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부분적으로는 같은 지역안에서도 수갱구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이유는 석탄저장지(所)의 지리적 조건과 그리고 이와 더불어 채광을 하는데 세워진 기계화의 차이에 비하여 따르는 것이다.
- 서독에 있는 석탄광산(업) 지난 12년 동안에 위기시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원래 비싸던 연료들이 크게 값싸게 되면서 비롯했다. 이리하여 대치프로세스가 생기게 되어 이는 석탄 판매가 점차로 후퇴되는 결과를 낳았다.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줄어든 석탄사용량은 약 3천만톤이었으며, 이는 많은 탄광으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문닫게 하고 말았다.

다른 한편 계속 남아 있는 광산들의 경우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로 인하여 채광 능력이 늘어 났으므로 위에 언급한 기간동안에 서독 석탄의 공급과 판매 가능성 사이에 어느정도까지는 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동독은 츠비카우, 루가우 월스니츠와 프라이달, 뒤엘렌에 비교적 소규모의 석탄광 지역을 가지고 있다.

저장량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재고량을 1천만에 1,500만톤은 넘지 않는 채굴 가능한량의 석탄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채굴 형편이 유리하지 못하여 비싼 경영비가 든다. 여기에 더하여 석탄의 질이 「야금」에 쓸수 있는 해탄(骸炭 = Koks)을 생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동독에 있어서도 석탄의 채굴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광유 가스」 (Erdöl gas)

269. 다른 연료들과 더불어 여기에 광유가스를 언급하는데, 이 광유가스는 중유(Rohöl)를 채굴한 뒤에 분리되는 것이다. 이 광유가스는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쓰인다. 현재 서독에서 채굴하는 이 광유가스 7억만 Cbm에 달한다. 동독의 경우는 중유의 채광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연료의 채굴은 아무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양독에서는 이밖에도 나무(木)와 이탄(泥炭)을 생산한다. 이탄의 생산은 서독의 경우 대부분 저지 작센주와 쉘레스 뷔히-볼슈타인에서 생산되며, 동독의 경우는 루토메렌 부르크에서 난다.

* 전 기 * (Elektrizität)

270. 하나의 중요한 제 2 차 연료는 동·서 양독에서 전기다.

서독은 1968 년도에 47,000 메가와트 (Megawatt) 주 3 의 시공 용량의 전기 (출력) 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로 2 천 3 억만 시간당 키로와트 (kWh) 의 전력을 서독이 생산해 냈다. 발전소 사용시간 (h/a) 의 평균수는 1968 년도에 4320 이다.

석탄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된 9 백 1 억만 kWh 의 전력중에서 18 억만 kWh 만이 (Verstromung) 주 4 · 법칙에 의하여 보조되었다. 이를 의하여 투입된 발전소들은 1968 년도에 평균 다른 석탄을 사용해서 가동하는 발전소를 보다 높은 사용시간수를 가지고 있다. 최고 사용시간 수를 달한 것은 천연가스 (鉍油가스를 포함) 와 갈탄을 사용하여 가동하는 발전소들의 경우와 최대용량이 1968 년도에 6,000 시용시간 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발전소로서는 주로 기본 (Grundlastbereich) 만을 충당해 졌다. 전류와 수력을 생산해 낼때에는 여기에 (Pumpspeicherstrom) 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umpspeicherkraftwerk () 는 동독에서는 1968 년에 11,600 MW 이 생산되었고 발전소들은 632 억만 kWh 를 생산해 냈다. 이 출력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갈탄을 사용하며 생산해 낸 것이다. EngPableistung () 에 기준을 두어 측정해 보면 - 동독에서는 최대능력 - 년간 평균 사용시간 수가 5,900 h/a 가 된다. Pumpspeicherkraftwerke 의 능력을 여기에 함께 포함시키

계 4상

지 않으면 최대 능력은 6,100 사용시간이 된다.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갈탄 노천채굴이 크게 날씨 조건의
 여하에 따라서 영향을 입으므로 전기 생산도 역시 이의
 영향을 받는다.

도 표 31

1968 년도에 시공된 업적 (MW로 표시) 과 총 전기생산
 (단위 = 10 억만 kWh)

연 료	건설된 업적(능력) (단위=MW)		생산량 (단위=10억만 kWh)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수 력	4,700	710 ^{주①}	16.8	1.2
핵 에너지	900	70	1.8	주②
갈 탄	8,400	10,100	50.6	53.4
열유 (Heizöl)	5,300	300	24.1	1.4
천 연 가스	1,000		6.4	.
석탄과기타연료	26,700	420	109.6	7.2
합 계	47,000	11,600	203.3	63.2

주 - 1. 이 중에서 Pumpspeicher 가 610 MW.

주 - 2. 석탄과 기타 연료 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b) 에너지 소비(사용) 발전 경향 (Die Entwicklung des Energieverbrauchs)

271. 기초 연료의 사용(소비)은 기초 연료의 최종 에너지 소비
 와 전환 부문에 있어서의 기초 연료 사용(소비)과를 합쳐

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최종 에너지 소비 (Endenergieverbrauch)라 볼수 있고. 이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 소비자 군에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한편 전기 부문 (Umwandlungsbereich)은 에너지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은 연료를 획득하던가 (즉 탄광의 경우), 아니면 (그리고) 연료를 전이시킨다. (전기 산업경제와 광유산업 경제), 에너지 산업은 전기경제 (산업), 광유가공 (업), 가스경제 (산업), 탄광 (업) 광유와 천연가스를 산업과 그리고 (벽돌 모양으로 압착한) 연탄 생산으로 이루어 진다.

기본 에너지 연료들이 제각기 매 용량당 서로 다른 열량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교할 수 있는 치를 달하기 위하여 환산인수 (Umrechnungsfaktor)가 필요하다. 석탄 단위의 경우에 이 환산인수를 t SKE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표 A 75에 이와 같은 통계를 뱀에 있어서 그 바탕으로 삼았던 환산인수가 예시되어 있다.

● 에너지 소비량 (Menge des Energieverbrauches)

272. 기본 에너지 소비가 -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 서 양독에서 늘어났다. 서독의 산업부문에서 늘어나고 있는 소비량의 증가는 산업성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다. 매 산업 단위당의 절제 소비, 즉 매 특종마다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 산업부문의 평균으로 보아 낮아져 가고 있으며, 그러나 동독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서독보다 20% 내

지 30% 정도가 높은 소비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⑤
(예를 들어 SM-강철 생산에서는 30%에서 35%까지 높고, 전기 생산에서는 10%에서 15%정도까지 판유리의 경우는 12%, 시멘트생산부문에서는 20% 높은 소비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다. 부분적으로 이와 같이 많은 연료 소비가 있게 되는 것은 시설이 노후한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낙후된 기술을 쓰고 있는 때문에도 이러한 연료소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밖에도 1964년도에 있던 에너지 가격 인상은 예상했던 만큼의 연료소비 절약을 기하지 못했고, 따라서 1971년에는 연료가격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정생계와 소규모 연료소비 ▮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생활수준이 계속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표시다.

기본에너지 소비량의 평균 증가율은 서독의 경우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매년 4.5%였다. 동독에 있어서의 이 기본 에너지 소비가 이와 동일한 기간사이에 역시 늘어났다. 연간 증가율이 2.5%였다. 그렇지만 1969년도에 동독의 주민 1인당 연료 소비량은 약 5.5t SKE로서 5.3t SKE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서독에 대하여 근소한 차이로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32

동·서독간의 석탄소비량
(100 만톤 단위)

년	도	서 독 ¹	동 독
1950		126.9	49.5
1955		173.1	69.5
1960		216.4	75.7
1965		270.9	88.3
1968		294.0	89.0
1969		320.7	94.1

●에너지 소비 구조 ● (Struktur des Energieverbrauchs
273. 기본 에너지 소비 구조는 동·서양독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서독의 경우 연료(에너지) 소비는 주로 광유와 천연가스로 충당되는데 - 1969년도 이들 두 종류의 연료가 기본 연료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였으며, 1960년에는 22%였다. 동독에서는 이들 연료의 사용이 지금까지는 극히 적다. (1969년도 13%밖에 되지 않았다.) 소비량이 갈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에너지 경제가 어느 정도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왜냐하면 갈탄은 흑탄이 심하면 수분함수량 때문에 얼어 붙을수 있기 때문이다.

서독에 있어서는 갈탄이 에너지 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나갔다. 1909년에서 서독의 기본 에너지 소비량의 10%가 겨우 되는 비율이 갈탄으로 충당되었다.

(t SKB로 통계되어 있음) 이와는 달리 동독에 있어서는 갈탄이 차지하는 소비량의 비율이 늘어났다. 동독에서는 1969년도에 사용된 기밀 에너지 소비량의 $\frac{3}{4}$ 이상이 갈탄으로 충당되었다. 그렇지만 동독의 전력(電力) 경제(산업)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율의 갈탄 투입은 이와 같은 불리한 작용도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다. (비교적 높은 특수 소비로)

274 석탄의 소비량(석탄_{석탄}과 무연탄을 포함)은 서독에서 감소되었다. 아무튼 그렇지만 1969년도에도 기본 에너지 소비량중에서 31%가 석탄으로 충당되었다.

동독에서는 석탄소비가 질적으로 보아, 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69년도의 동독의 기본 에너지 소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미달했다.

275 에너지 소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는 전기산업(경제)이다. 전기 사용량이 동·서독에서와 같이 늘어났다. 그런데 1960년에서 1969년까지의 전기사용 증가율이 서독의 경우-기본 에너지 사용의 경우와 비슷하다.

동독의 사용 증가율보다 높았다. (동독의 증가율이 5.7%였는데 대하여 서독에서의 증가율은 7.8%였다.)

동독에 있어서의 산·공업에 쓰인 전기 소비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최종 소비를 하는 工·産業과 에너지 산업을 뜻한다.) 비교적 얼마 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은 1968년과 1969년에 동독에 있어서 서독의 경우보다 약간 높으나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들었다.

c) 에너지 산업 (경제)의 발전 경향

(Energie-wirtschaftliche Entwicklungstendenzen)

276.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기본 에너지의 소비 수요량은 앞으로 몇해 동안에 크게 증가될 것이다. 개량된 연료(전기, 광유 생산, 동독에서는 가스 및 갈탄도 포함)와 천연가스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발전은 점점 특종의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가 천천히 되어가는 특징을 보일 것이나, 동독의 경우는 이들 에너지 소비량이 감퇴될 가능성이 더욱 크며, 그렇게 이용될 것이다. 동독에서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절약에 대하여는 산업과 가정생계비가 증가해 가고 있는 현상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두 독일 국가에 있어서 기본 연료 소비의 증가는 광유와 천연가스를 점점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갈탄의 사용은 약간 늘고 이에 대하여 석탄소비는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핵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제 4 장

3. 주 택 건 축 (Wohnungsbau)

a) 주 택 건 축 업 적 (Wohnungsbauleistungen)

● 건축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주택건축의 위치
(Wohnungsbau innerhalb der gesamten Bautätigkeit)

277. 제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오늘날에 서독지역의 국민 1인당 주택의 비율이 오늘날의 동독지역보다 적었다는 1939년에는 오늘날의 서독영토에 있어서의 주거밀도(Wohndichte)가 매 주택당 3.7인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동독 영토에 있어서의 주거밀도는 매 주택당 3.35인이었다. 주⑥

그뿐만 아니라 동독지역은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오늘날 서독 영토지역보다는 훨씬 적게 주택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동·서독의 주택에 관한 주거밀도 차이는 더욱 심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1950년대에 많은 이주민들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넘어왔다. 그러므로 1950년도의 서독에 있어서의 주거밀도는 매 주택당 4.9인이었으며, 동독의 경우는 3.6인이었다.

(도표 A 82 참고)

·8. 그러나 주거(주택의)면적을 함께 고려한다면, 양적인 주택수급사정에 따른 동·서독의 차이가 줄어든다. 1950년에 동독에 있어서의 주택의 평균 크기가 서독보다 20%가 적었다. 아무튼 될수 있는대로 많은 가정을 독립 주택에

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택의 크기 같은 문제는 별로 상관치 않았다. 그리하여 동·서독의 주택정책이 그 출발전부터가 서로 차이가 났다.

279. 주택 건축의 규모가 전체건축 활동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발전은 1950년에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주택건축 활동이 지녔던 서로 상이한 비중과 의의를 특징지워 준다. 서독에 있어서는 건축사업 규모의 50% 이상이 주택건축에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독에는 동일한 기간에 건축사업 규모의 약 35% 내지 40%만이 주택건축에 쓰였으며, 50년대 초에는 그 비율이 더욱 낮았다. (도표 A 78 참고)

1969년까지는 서독에서 주택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로까지 줄어 들었으며, 동독의 경우 이와는 달리 꽤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현재는 약 24%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280. 건축 경제 (Bauwirtschaft)가 이룩해 내는 생산업적을 인구와 관련시켜 볼것 같으면,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건축활동의 수준차이는 더욱 분명해 진다.

50년대 중반에 서독에 있어서의 인구 매 1인당 건축업적 생산이 총합하여 약 800(서독)마르크가 되므로서 동독의 경우에 비교하면 약 2배가 되었던 데 반하여, 동독의 매 1인당 주택건축 규모는 매년 약 150(동독)마르크였으므로 서독수준의 농이 겨우 잘 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주택건축 상황은 60년대에 와서 동독에 대하여는 약간 유리하게 발전되어 나갔다. 매 인구당 건축업적 생산을 합하면, 동독에서는 1969년에 1034(동독)

마르크였으니 560 마르크던 1960년과 비하면 거의 배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에 동독의 서독에 대한 비율이 겨우 60%가 되던 것도 약 80%로 개선되어 나갔다. 매 인구당 주택 건축 생산도 변화되었다. 서독의 매 인구당 생산수준과 비교해 보면 40%에 해당되던 것이 47%로 늘어났다.

이미 50년대에 건축활동의 수준차이는 주택이외의 건축분야에서 주택 건축분야 보다는 훨씬 적어졌다. 60년대에 동독에서는 건축활동이 비교적 강력히 추진되어 나갔던 결과 오늘날은 매 인구당 주택이외의 건축생산은 서독과 동독이 거의 동일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주택 건축 활동의 구조적 특징

(Strukturmerkmale der Wohnungsbautätigkeit)

281. 1962년에서의 1969년까지 사이에 서독에서는 440만호의 주택이 건립되었으며, 이 수자는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서독 주택 전체의 22%를 넘는 수다. 동일한 기간에 동독에서는 약 60만호의 주택이 새로 건립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동독 주택수의 약 10%에 해당된다.

동독에서는 주택건축 생산에 조립식 건축 방법이 많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1969년=73%), 서독의 건축 비용이하로 동독의 건축비용을 내리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

1967년에 동독에 있어서의 매 q㎡당 주택면적의 건축비용은 서독의 주택 건축 비용보다 약 10%가 싸다. 그러나 이를 주택은 평균적으로 그 규모가 적었다. 이와 같은 건

제 4 장

축 비용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동독의 주택시설이 서독의 주택시설에 비하여 차이가 난다는 점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조립식 건축방법을 사용하므로서 이룩된 기술적인 우위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함은 분명한 일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즉 - 아무튼 서독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 비용이 유리한 조립식 건축방법을 사용하므로서 이에 대한 각개 건축 첨부 계약 규모가 일반적으로 아직도 너무나 적게 책정되었다는 사실

282. 1962년도의 서독에서 새로 건립된 주택의 평균면적^{주 7}은 약 77qm였으며, 1969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약 84qm가 되었다. 동독에서 건립된 주택들의 평균규모는 1962년에서 1969년까지 사이에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단지 1960년대 중간에 평균주택의 면적이 약 52qm로서 1969년보다 약 4qm가 적었다. 매년 새로 건립되는 주택의 면적을 인구수에 건주어 곱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숫자가 산출된다. 즉 매 100인의 주민당 70qm에서 10qm까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보면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약 3배내지 4배정도 높다.

(도표 A 81을 참고할 것)

b) 주택의 수급 (Wohnungsversorgung)

※ 량적인 주택수급 (Quantitative Wohnungsversorgung)

283. 1950년에 동독에는 약 510호의 주택이 있었다. 동독의

인구 약 1천 8백 4십만명이 이 주택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인구 매 1,000명당 276채의 주택이 배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서독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25%가 유리한 비율이다.

동·서독의 주택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1950년에서 1961년사이의 동독의 경우에 눈에 띄이는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주택이 순수하게 늘어난 수가 51만호에 달하는데, 1950년도에 비하여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은 약 8백만 qm밖에는 늘지 않았다. 동일한 기간안에 새로 건립되었거나 확충된 주택의 수가 63만호에, 그 주택의 면적이 약 3천 6백만 qm가 되니 (1956년도 동독의 통계연보를 참고할 것), 이 기간동안 줄어든 (없어진) 12만호 주택의 평균 면적은 믿을수 없으리만큼 높다.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동독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들이 개조하거나 혹은 확충되어, 이들 주택이 1950년대에 2중으로 통계에 집계되었다는 사실로 일부분 이기는 하지만, 설명되어진다고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1950년도에 대한 주택의 면적통계 속에는 그 이후의 몇해 동안에 주택확충 공사를 할때에 다시 사용된 주택부분들에 대한 계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1950년도의 동독주택 전체수에 대한 면적수치는 그러므로 2억 8천 6백만 qm를 비교할 목적으로 2억 7천만 qm로 줄였다.

(도표 A 82 참고 할것) 그러니까 매 주거인구 1인당 주택 면적은 1950년에 동독과 서독에서 다같이 약 15qm 정도였다.

284. 이미 1961년에 주택의 수급에서 나타났던 차이는 명확히 줄어들었다. 주택의 주거밀도를 볼것 같으면 서독의 경우 매 주택당 3.4인이 해당되며, 동독의 경우는 3.1인이 해당된다. 주택면적에 따라서 고찰해 보면 서독의 주택사정은 20qm가까우니까 그 지위가 동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동독은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보면 매 주거인당 17qm가 해당된다. 서독에 있어서의 6백3십3만당의 순수 주택증가(1950년도의 현황에 비하면 63%)는 동독에 있어서의 51만%의 주택 순수증가에 해당한다.
(1950년도 현황의 10%)

이와 같은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주택 현황의 연령구조다. 1961년도에 동독주택 전체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립된 주택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서독의 경우는 이와는 달라서 2차대전후에 건립된 주택이 전체주택의 37%가 된다.

주택의 수를 살펴보면 - 1968년도에도 동독의 주택수급상황이 서독보다 유리하다. 주택 거주밀도를 보면 동독이 매 주택당 2.8명이 해당되고, 서독의 경우 3.1명이다. 동·서독의 차이는 그러니까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매 인구당 주택의 면적은 계속 그 차이가 늘어났다. 서독의 경우는 이제는 매 인구당 주택 거주면적이 23qm이고, 동독의 경우는 겨우 19qm가 된다. 1968년에 서독에 현존하고 있던 주택들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건축작업을 하여 지은 것이 절반이나 된다.

동독에서 그 비율이 늘어나서 20%로 되어 있다.

● 질적인 면에서 본 주택의 수급 ●

(Die qualitative Wohnungsversorgung)

285. 동·서독의 주택을 건축 년도(연령)와 갖춘 장비형태(1960년 1961년도)를 비교하므로써 질적 구조에 대한 고찰을 할수가 있다. (도표 A 83을 참고할 것) 질적인 면으로 볼때 주택의 건축(연도)연령 구조면에서 뿐만 아니라 난방시설과 기타 위생시설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에서도 동·서독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에로 들자면 서독의 경우 1900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들의 40%가 주택내에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22%가 목욕탕을 갖추고 있었다. 동독의 경우는 1900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중에서 실내화장실을 갖춘 주택은 12%밖에 없었으며, 목욕탕을 가진 주택은 8%밖에 안된다. 그런데 동독의 현존하는 주택의 거의 년수가 1900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들이다.

건립된지 얼마 되지 않는 주택들의 경우는 동·서독이 시설면으로 비교적 비슷하다. 그 예로 서독의 경우 1945년 이후에 건립된 주택의 91%가 실내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동독의 경우는 70%), 이들 주택의 79%가 목욕탕을 갖추고 있다. (동독=66%), 그런데 스팀장치를 갖춘 주택들의 경우는 동·서독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동·서독의 주택 수 전체에 대한 통계를 보면 이것이 나타나 있다=서독의 경우는 전체주택의 12%가 스팀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동독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3%밖에 안된다. 주 8

질적 차이중에서 물론 파소평가할 수 없으리만큼 상당한 부분, 특히 좀 오래된 주택들의 경우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는 것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독의 경우는 시대가 흘러 감에 따라서 비교적 상당히 많은 옛날 집(주택)들이 현대화 되고, 수리되어 갔다. (동독의 경우보다는 훨씬 많 이) 주택단지 구조상의 차이점들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다 즉 시골 방면에 있는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들보다 좋지 않게 위생시설을 갖추었다.

1961년도 이후에 건립한 주택들의 경우를 보면 동·서독의 주택의 질적 차이는 훨씬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간접 증거의 하나가 비교적 급속도로 동독에 스팀장치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매년 건축되는 주택들중에서 서독의 경우 1962년에는 37%가 스팀장치를 갖추었던 것인데, 1966년에는 75%로 늘어났다. 이와 동일한 기간에 동독에서는 즉 1962년에는 새로 건축되는 주택중에서 20%가 스팀장치를 갖추었고, 1966년에는 46%로 그 비율이 늘어났다.

● 집세의 발전 ● (Entwicklung der Mieten)

286. 집세의 발전에 관하여는 동독에 대한 자료가 정말얼마 없다 동독의 집세에 관한 문제는 동독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가계 예산에 대한 경제통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룬다.

서독에 대한 비교할 만한 통계는 4인의 노동자 가정에 대한 통계만이 주어져 있다. 검산 결과가 밝혀 주는 바와

바와 같이 이들 가계군의 수입은 전체 노동자와 사무원 가정의 수입보다 1950년에는 약 15%, 1962년과 1968년에는 약 20%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 5 장, 2 항을 참고할 것) 사회 각층에 따른 집세 부담금 율에 대한 연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수입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평균 집세 부담 비율의 차이는 얼마밖에 없었다. 약 0.5%에서 1.0% 정도다. 소득(수입) 통계와 집세 부담을 이에 상응하게 수정하면은 도표 A 84에 표시한 서독 노동자와 사무원들 가정이 부담하는 집세 지출액이 산출된다.

1960년 이전의 동독에 있어서의 가정들이 지출한 집세 부담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계도 주어져 있지 않다. 주택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비교적 적은 주택들의 경우 주택 면적 단위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더 비싸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1950년도의 동독에서의 노동자 가정이 매월 부담한 집세 지출은 약 30(동독)마르크였을 것이다

이렇하므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규모의 등급이 나타난다. 즉 이밖의 다른 집세에 관한 정책적인 배려와 그리고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의 주택 신축활동상의 서로 상이한 비품들이 집세 지출면에서 어떠한 차이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는가를 보여주는 동독에 있어서는 1968년에 노동자가정의 집세 지출부담은 서독에서 이와 비교될만한 가정이 부담하는 집세 지출의 약 1/3 밖에 없었다.

만약에 주택의 크기에 따른 차이들을 고려해서 고찰한다

면 이 차이는 약간 줄어든다. 평균 전체 주택 면적 (동독 = 53qm, 서독 = 71qm)을 가진 노동자 가정의 주택 크기정편이 동·서독이 일치한다는 가능한 전체를 세워 놓고 보면, 동독의 노동자 가정이 지불하는 집세 부담은 서독의 집세 부담의 약 40%에 해당한다.

4. 부 록

방법론적 유의점 (Methodische Hinweise)

1. 교통에 관하여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교통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구조와 업적 잠재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화폐단위로 표시하여 경제분야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가능하며, 그렇지만 기타의 교통부문 하나 하나의 경우에는 가능하지가 않다. 각 교통부문의 경우 동독에는 아무런 재정적 기본 데이터가 수입, 자본투입도 혹은 투자에 관하여 주어지지 않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실제량을 단위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말미암아 가치에 대한 서로 상이한 평가를 내리는등에 관한 문제는 그 의의를 잃고 만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의의를 비교가 가질수 있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전제다. 즉 통신을 포함하는 교통이라도 경제분야가 동·서독에 있어서 동일하게 구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전체 경제범위내에서 차지하는 교통 각 부문의 업적구조와 의의가 아무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

제 4 장

지 않다는 전체 그런데 이전 전체가 여기에 주어져 있다.

공급구조의 주 데이터와 금전적인 업적에 관한 데이터들은 국민경제 전체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도표 A 65에 종합 집계되어 있다. 여기에서 동·서독의 자료를 통일적인 가격기초로 환산하는 것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교통 부문에서 시설 능력이 지니는 특정한 의의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오류의 범위까지 발전해 나갈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 제 3장의 산업체제 비교의 경우와는 반대로 여기에서는 생산구조에 대한 국민경제학적 계수가 지니고 있는 의미내용을 감안하여 제 3장의 비교를 참고할 것 -

그러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동·서독이 서로 상이한 물가가치말고도 국민의 현황과 영토현황이 또한 고려되어야 하니 더욱 그러하다.

3. 주택 건축 (에 대하여)

주택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표시를 양적인 것에만 제한하지 않고도 비교할 수 있기 위하여, 응용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가치 단위들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동독의 경우에는 1967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일적으로 조절된 숫자가 주어져 있다. 이 숫자에는 이미 산업개혁의 결과들이 고려되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는 서독의 총계로 1967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 산출해 냈다. 이로서 가격 발전상의 차이들은 고려되었지만 - 이것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 그러나 기준 년도

인 1967 년도의 가격 수준상의 차이들은 참작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67 년도에 있어서의 건축 부문의 일반 가격수준 차이로 동·서독이 비교적 적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69% (동독) 내지 60% (서독)의 전체 건축 규모를 생산해 내고 있는 서독의 건축주업에 종사하고 있는 매 비독립된 취업자들의 총 생산 (31,900 DM) 과 동독의 건축산업에 종사하는 매 비독립 취업자들의 총 생산 (31,100 M, 동독 마르크)에 대한 수치가 거의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분야는 그 구분이 서로가 차이 난다=서독의 경우 주 건축업 (Bauhauptgewerbe)에는 수공업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완성작업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동독의 건축 산업 (Bauindustrie)은 꽤 되는 부분만큼 완성 (확충)업제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니고 있는 생산업적 비율이 크므로 이들을 전체 건축 경제의 생산조건에 대한 대표치로 간주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서독의 건축 산업 (Bauindustrie)을 동독의 건축산업과 비교하기에 별로 적합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 ☐ 서독의 건축 산업은 그 생산구조가 노동집중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저지 건조 (Tiefbau)에 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동독의 건축 산업 이과는 달리 노동적 집중도가 강하

고 그러나 노동력 생산성을 주리는 확충건축 부문(약 20%)에 참여하는 도가 서독의 경우보다 비교적 그 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 ☐ 서독의 경우와 비교하여(24%), 동독에 있어서의 전체 건축규모에 대하여 건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69%)은 전반적으로 보아 거의 3위에 달하기에 이 분야가 하나의 다른 구분을 채택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음기 때문이다.

부 록 도 표 N. 1

1967 년도의 건축경제(산업)의 생산업적과 비용 구조

	단 위	서독에 있어서의 주건축업(Bauhauegewerke)	동독에 있어서의 건축산업
총 생산 ^{주1}	백만마르크 (동·서독 마르크)	43.060	10.019
건축전체에서 차지하는 %에 의 한 비율		60	69
이 중 에 서 주 택 건 축	%	37	19
경 제 건 축	%	20	36

	단 위	서독에 있어 서의 주건축 업 (BaubauP- tgeweke)	동독에 있어 서의 건축 산업
공공 고층 건물 (벨딩)	%	10	14 주 2
저지 건축 비독립적인 주 취업자	% 1,000 명	33 1,351	31 주 3 322
비독립적 취업자 매 인당 총 생산	DM/M	31,900	31,100

주 1. 동독에 있어서의 비주택 건축면에 대한 수리(修理)는 신축 건축활동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건축분야 별로 나누어 놓았다.

주 2. 사회 건축(물)
(Gesellschaftliche Bauten)

주 3. 물 경제(Wasserwirtschaft), 교통, 체신 및 장거리 통신망

주 4. 견습공을 포함하지 않은 노동자와 사무원; 서독에 대한 통계중에는 숫적으로 보아 별 의미가 없는 상업과 공업부문 직업을 택하는 견습공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의 출처 :

서독 : 백림 소재의 DIW 통계에 의한 주건축업에 대한
총체적 수치인상에 근거하여

동독 : 1970년대 , 동독의 통계 연보, 페이지 73,
143, 149-150

이와는 반대로 전체 주건축업 (Bauhauptgewerbe)에
대해서는 서독에 있어서의 지상건축 (Hohbauten) 과
저지건축 (Tiefbau) 에 대한 생산업적 분포가 동독에
있어서의 건축산업 비율에 꼭 일치해 들어간다.

역자주 : 「본 통계에서 서독의 경우 건축부문을 대체로 주
건축업 (Bauhauptgewerbe) 부문과 건축산업 (Bau-
industrie)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동·
서독의 건축 부문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서독의
건축산업과 동독의 건축산업이 비교되는 것이 아
니고, 서독에서 주건축업이라고 불리우는 부문과
동독에서 건축산업이라 부르는 두 부문을 비교하
고, 서독의 소위 건축 산업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음. 」

동·서독에 있어서의 지상 건축부문이 차지하고 있
는 비율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독의 경제계획의 진로는 주택건축 보다는 비
교적 적은 건축 능력을 주로 경제의 확충을 기
하는 방면에 투입코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 분명하다.

지상건축 부분의 매 인구 1인당 생산으로 말할것 같으면, 주택건축 생산면에서 서독이 가지고 있는 공학상의 결함은 아마도 경제 건축에 있어서의 Effizienzvorsprung 과 상쇄되는 것 같다. - 서독에서는 주택 건축중에서 6%만 조립식 방법으로 건축되는데 반하여 동독의 경우는 주택건축의 약 75%가 조립식으로 건립된다. - 이것이 아마도 서독에 있어서의 주택건축업 부분의 인구 매 1인당 생산과 동독의 건축산업과 일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한 이유라고 볼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도 주로 재래식 생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서독의 노동집중도가 강한 주택건축이 그렇게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수준이 동·서독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으로 1967년도에 있어서의 매 qm 주택의 거주면적당 가격의 비율이 말해주고 있다. (동독 = 544 M, 서독 = 601 M) 이에 해당하는 통계 수치는 도표 A 80에 종합 집계되어 있다. 동독에서 건립되는 것 같은 비교적 차그만한 주택들의 qm당 가격이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 비하여 비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qm당 가격 규모가 크므로서 얻어지는 효과면의 유리한 차이를 가리어서 보면 이는 곧 1967년에 건립된 서독의 주택들이 동독의 주택들 보다 질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 4 장에 대한 주석

1. 교통관계 Infrastruktur 부문에 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서독의 경우만 그 량을 계산해 낼수가 있다. 동독의 교통 관계에 대하여는 이와 비교할만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50년에서 1968년 사이에 서독이 도로건설을 위하여 투입한 투자액은 700억만 마르크(서독화폐)에 달하고, 수로의 건설에 투입된 것이 약 50억 마르크, 해항에 약 30억 마르크, 내륙항구의 건설에 투자한 것이 약 13억 마르크, 비행장(공항)에 약 20억 마르크 그리고 파이프망의 건설에 지금까지 약 6억 마르크를 각각 투자했다. 여기에 더하여 도로망과 철도의 전철화에 투입된 투자액이 또한 약 170억만 마르크가 된다. 그러므로 서독은 1968년까지 다 합쳐서 약 1천억만 마르크의 돈을 교통의 Infrastruktur에 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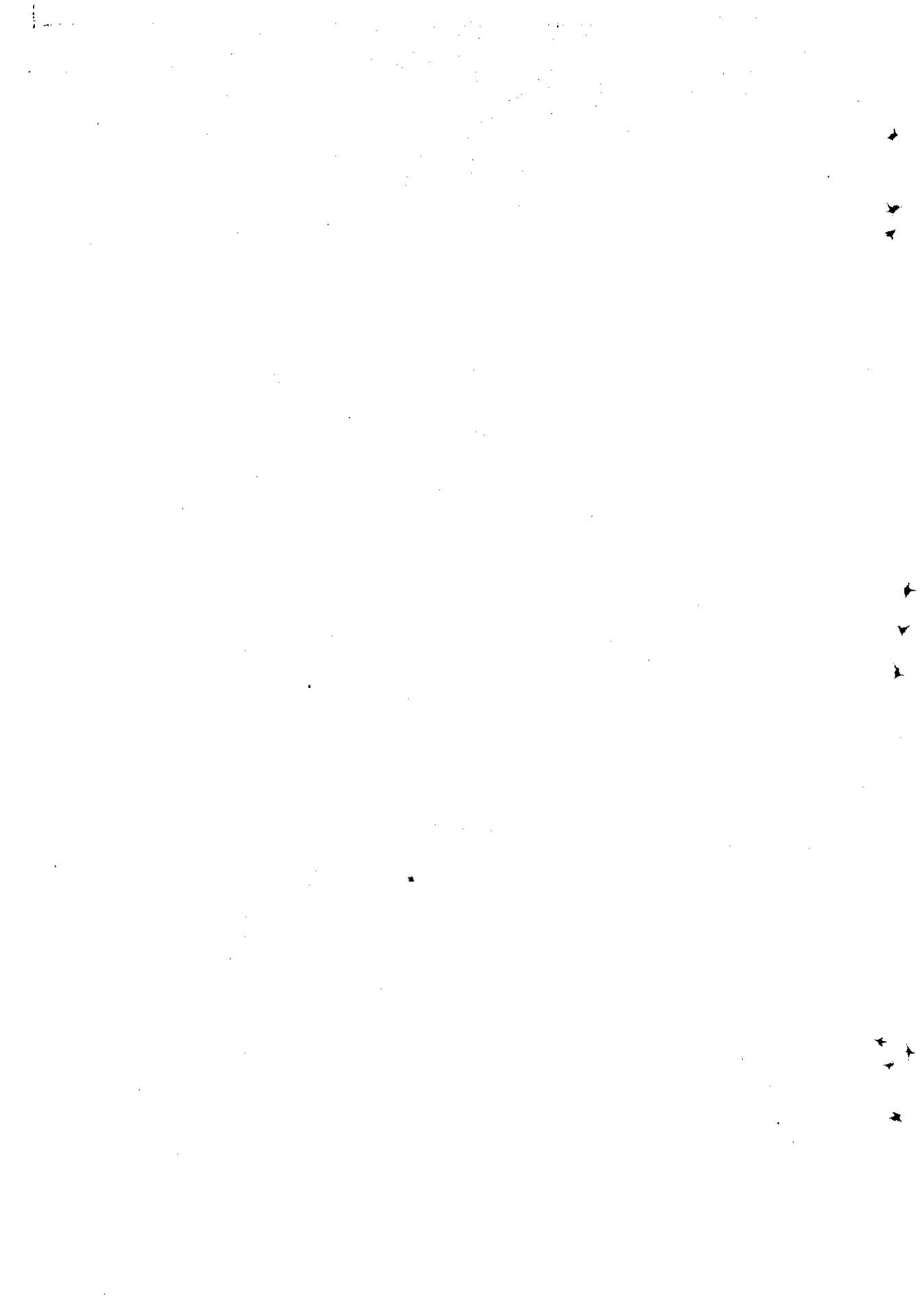
(자료 출처: 백림소재의 DIW 통계)

2. 서독에 관한 통계의 경우 주로 교통 도로망내지 항구의 업적에 관한 점이 취급되어 지고, 동독의 경우는 주로 교통수단이 취급되었으므로, 이 두가지 점을 고려할 하나의 통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3. (연방철도를 포함하) 공적 및 사업상의 교통 경제
(Kraftwirtschaft)

4. 1965년 8월 12일에 제정된 발전소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장려법과 1966년 7월 1일에 제정된 석탄판매 확보(보장)를 위한 법률

5. 잡지 『경제』 1970년 9월 24일자인 39호, 14페이지 참고
할 것
노동과 노동법 (Arbeit und Arbeitsrecht), 1970년 15호,
460페이지 참고
6. K. Arndt : 소련 점령지역에 있어서의 거주사정 (동독)과 주
택의 부족 (Wohnverhältnisse und Wohnungsbedarf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DIW의 특집호, 제 50호,
백림 1960년이행
7. 동·서독 다 같이 작은 방들을 다 포함한 주택전체의 면적
을 다루었음. 그러나 지하실, 다락방과 층계들은 함께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숫자들은 서로 비교될 수 있다.
8. 이 비교에서 그러나 동독에 대한 통계 속에는 층계별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따로 참작할 수가 없었다.



제 5 장 수입, 소비, 생활표준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제 5 장 수입, 소비, 생활표준

(Einkommen, Verbrauch, Lebenshaltung)

- 1960년에서 1969년 까지 서독에 있어서의 개인 소비와 저축의 성장은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컸다. 동서 양독의 생활수준차이는 계속 늘어났다.
(287 - 291)
- 서독에는 국가가 추구하는 포괄적인 소득 정책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동독에서는 국가의 기획당국들이 국민소득의 분배와 사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92 - 296)
- (액면상의) 개인소득을 지난 십년동안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훨씬 많은 증가를 보였다. 1960년에 동독 노동자의 평균 수입(소득)이 서독 노동자의 평균 수입보다 극히 적은 차이로 얼마 적었는데 1969년에는 동독 노동자의 평균 수입이 서독 노동자의 평균 수입에서 날썹 떨어지고 있다. 동독의 자주 취업자들의 총(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수입(동독에서는 이속에 조합회원들도 포함시키고 있다)은 1965년에 서독의 자주 취업자들

의 수입의 $\frac{2}{3}$ 정도가 되었다.

동.서 양독에서 자주 취업자들의 평균수입이 노동자들의 평균수입 보다 배나 높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1965년에 동독에서는 연금 생활자가 평균적으로 보아서 서독 연금자가 받는 소득의 $\frac{1}{3}$ 밖에 받지 못했다 (297 - 304)

- 노동자들의 총 수입에서 공제되는 공제액은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많다.

사회보장에 필요한 부담금액과 부담금부과 최저선 경제가 서독에서는 여러차례 높아졌는데 동독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그냥 유지되어 나갔다.

서독의 근로소득세 세율이 또한 동독의 근로소득세 세율보다 높은 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동독에는 서독에서 같으면 정상적인 세금부담을 가하는 경우들에 여러가지 세금부담 삭감규칙이 있다.

(305 - 310)

- 가계 수입의 차이도 또한 커졌다. 그러므로 1969년에는 동독의 모든 가정들이 갖는 액면상의 순수 수입이 서독 가정에 산수입의 약 $\frac{2}{3}$ 에 달했다. (1960년에는 이것이 85%였음) 그런데 동독의 노동자

가정의 예산에서 액면상의 순수 수입은 서독의 경우와 비교하여 1960년에는 90%였던 것이 1969년에 와서는 60%로 까지 후퇴되고 말았다(311~315)

- ④ 노동자 수입의 분배는 동독에 비하여 보면 덜 규칙적이다(316-319)
- ⑤ 서독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상품가격은 공무수행과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간단한 물품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독의 경우보다 높다. 그리고 아무리(하더라도) 최고로 보더라도 기껏하여 동독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가격이 높은 물건들의 가격은 특히 장기간 살수 있는 소비품들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눈에 띄일 정도로 값이 싸다.
- ⑥ 지난 10년 동안에 서독의 물가가 부분적으로 꽤 올랐는데 동독의 물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므로 노동자 가정의 가계 평균 소비를 기준으로 보자면 M(동독 마르크)가 1960년에는 DM(서독 마르크)의 약 76% 밖에 안되는 구매력을 가졌는데 1969년에 와서는 이것이 86%로 향상되었다. 값지고 비교적 비싼 도구들에 관해서켜 보면 볼수록 그만큼(동

록) 마르크의 구매력은 (서독) 마르크 (DM)에 비하여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29 - 341)

- 동독의 마르크화의 구매력이 좀 향상은 되었지만 그것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들어가는 서독의 액면상의 순수 수입 성장(증가)을 상쇄시킬 수는 없었다. 동독의 노동자 가정의 예산상 실제수입은 서독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1960년에는 차이가 약 32%던 것이 1969년에 와서는 약 45%로 그 차이가 늘어났다. (343)

- 동독의 수입이 서독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독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식료품 매연구당 소비량은 양적으로 서독의 수준만큼 되었다. 기름기가 있는 식료품과 그리고 밀가루와 감자같은 탄수화물 식료품은 동독에서 서독에서 보다 비교적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기호품(식품)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동독 수준이 1960년의 서독수준에 대략 달해 있다고 하겠다 (346 , 347)

- 장기 수명을 가진 공.산업 소비품목의

가정 설비현황을 살펴보면 서독과 동독이 차이진다. 텔레비존과 라디오 등의 시설은 동.서독이 비슷하게 높은데 개인승용차(자가용)차의 경우 서독이 훨씬 동독보다 유리하다.

몇가지 기계류의 경우에 - 예를 들어 모페트와 사진기 - 동독이 서독의 경우보다 높은 시설 비율을 가지고 있다.

(349 - 351)

- 저축비율이. 1960년 이래 서독은 오늘까지 그 당시 보다 $\frac{1}{3}$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동독에 있어서의 이 비율은 그후 거의 아무런 변화없이 그냥 머물러 있다. 자본의 투자형식과 액수도 동.서독이 차이가 난다. 1969년도에 서독에 있어서의 개인 급전자본형성이 매 인구 1인당 6500 마르크(DM)가 넘으므로써 이는 동독의 2배도 더 되는 액수다.

(356 - 358)

- 서독과 동독 국민의 생활수준상의 차이도 동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여 가고 있지 않다.

만약에 양적인 요소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동독에는 소비

품(예비)준비고 부족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사회적으로 쓰일 도구나 시설을 위하여 국가가 지불하는 지출액은 매 인구당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동독이 서독보다 약간 낮고 총 사회소득에 비추어 비율을 내면 동독이 서독보다 얼마 안되지만 약간 높다.

그렇지만 학문과 교육을 위하여 지불하는 국가지출의 비율을 보면 동독의 경우가 서독에 비하여 적어도 $\frac{1}{4}$ 은 높다(344)

1. 사회 생산품 사용

(Verwendung des Sozialprodukts)

287. 개인 가정의 가계 소비를 비교해 보면(도표 A85, A86과 A87을 참고할 것)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생활수준을 말해주는 최초의 암시를 얻게 된다. 여기에서 개인소비는 전체 사회 생산품(제3장을 비교)과 연관시켜서 고찰해야 한다. 첫째로 전체 경제에서 연유하는 생산품이나 업적들만이 장기적으로 볼때 소비되어 질수 있는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인 수요면의 구조변화가 개별 생산부문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며 그리하여 경제업적범위와 발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상이한 가격체제

(Unterschiedliches preisgefü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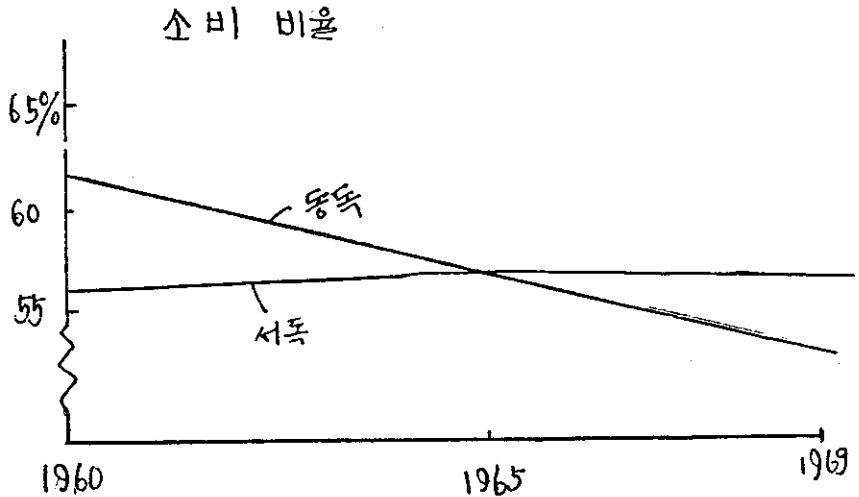
사회생산고와 사회생산품 사용구조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다는 것은 동·서독이 가격체제와 가격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가능하지가 않다 (주 1)

여러까지 통계들에 의하면 1950년대 말에 있어서의 개
인 소비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생산면에서도 매 인구당 서
독과 동독의 실제 차이는 25%에서 35%까지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 2)

그라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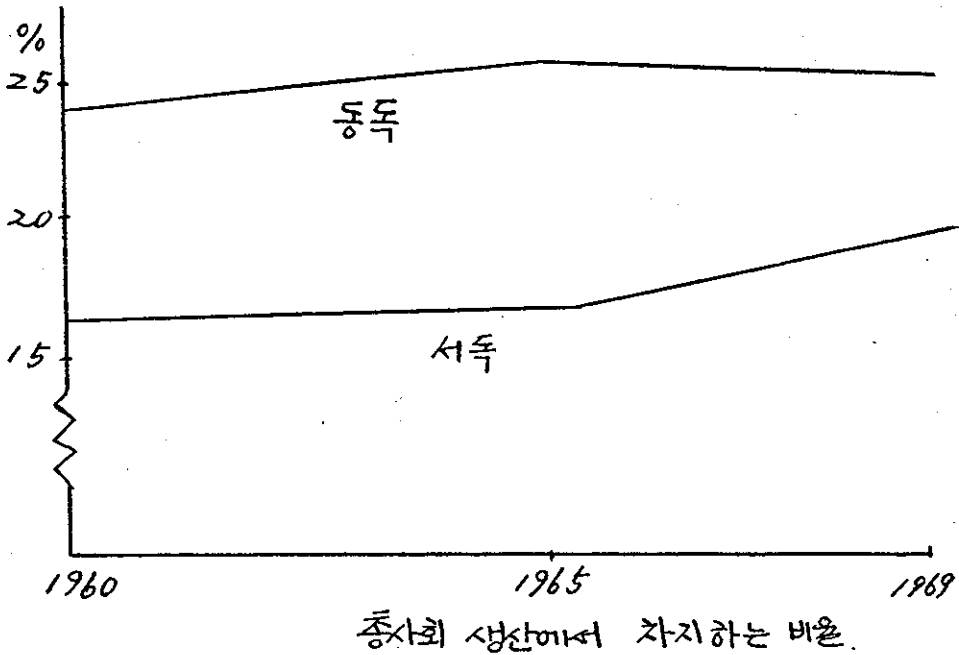
(Schaubild 4)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소매배당과 투자액의 발전



x 중사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투자 비율



총 사회 생산 (품)
(BruttozialProdukt)

288. 1960 년에서 1969 년까지 총 사회생산 (품) 을 (도표 A 85 와 A 86 을 참고할것) 동 . 서 양독에서 크게 상승해 올라갔다. 서독의 경우는 52 % 가 증가되었고 동독의 경우는 48 % 가 증가되었다. 동시에 서독은 인구가 10 % 늘어나고 그러나 동독은 인구가 1 % 줄어 들었으므로 매 인구 당 50 % 의 총사회 생산의 성장템포를 보이는 동독이 서독보다 그 성장속도가 꽤 더 큰 것으로 산출된다. 이와같은 동 . 서독의 차이나는 업적성장을 설명하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의 하나는 동일한 기간에 전체 국민중에서 생업종사자의 비율(생업비율)이 서독에서는 3.4%가 줄어서 전체 취업비율이 44%로 감소되었는데 반하여 동독의 경우는 1.3%가 늘어서 전체 취업자의 비율이 50.9%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하나의 길이 될수 있겠다.

도 표 33

1967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동,서독 각국의 화폐로 산출)본 사회생산과 개인의 소매

	1960	1963	1965	1967	1969
	서 독				
총사회생산	6,806	7,432	8,167	8,260	9,409
개인소비	3,773	4,211	4,616	4,746	5,249
	동 독				
총사회생산	5,382	5,899	6,551	7,229	8,069
개인소비	3,248	3,398	3,678	3,881	4,334

투 자 비 율

(Investitionsquote)

289. 동시에 동독에서는 일관성 있는 투자장려의 결과로 개별품목의 사용구조가 변하였다. 이리하여 총 시설투자가 총사

회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투자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경제개혁(1964년)을 시작한 뒤의 몇년동안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동독은 1969년 22.7%의 투자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도 서독의 국제적으로 높은 비율에는 달하지 못했다. 서독의 지난 10년간의 평균투자 비율이 24.5%였다.

개 인 소 비
(privater Verbrauch)

290. 동독이 투자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간 결과는 소비품의 비율이 아주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총 사회 생산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비 비율) = 소비품 비율이 1960년에 62%였는데 1969년에도 54%로 줄어 들었다.

이렇게 되므로써 동독의 소비품 비율은 이와 동일한 기간에 별로 변하지 않은 56%를 보이고 있는 서독의 소비품 비율보다 낮아졌다.

서독에 있어서의 개인 소비가(1967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성장면에서 전체 경제성장(전체+53%, 인구 1인당+39%)과 일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에 있어서는 가변 소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생산과 비교하여 보면 매 인구당의 성장 약 30% 가량으로 평균이 하다.

291. 지난 10년 동안에 있어서의 동독의 전체경제와 개인소비가

전체적으로 적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것은 주로 60년대 초에 동독이 겪은 경제성장위기에 기인한다.

이 경제위기가 극복된 뒤에는 동, 서 양독의 인구 매인당 소비량이 비슷한 비율로 늘어났다. 매 인구당 소비량이 1963년과 비교해 보면 서독의 경우가 25% 상승하고 동독의 경우가 28% 늘어났다 (가격은 1967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표 A 87을 참고할것)

2. 수 입 (소득) (Einkommen)

292. 직접적인 국가의 수입정책이 행해지지 않는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동독에 있어서는 수입의 형성과 이의 이용은 대부분 국가의 계획과 조성하는 바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 "구매자본금" (Kaufkraft)의 발전은 생산을 통하여 실현된 계획된 "상품자본금" (Warengeld)을 고려할 뿐만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도 또한 첨가적으로 다하고 있는 수입 (소득) 정책을 그 특색으로 가지고 있다 (도표 A 88 과 89를 참고할것)

a) 노임정책과 임금, 노동협약체제 (Lohnpolitik und Tarifvertragssystem)

293. 노동조합들이 동, 서독에서의 임금, 노동협약체제의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임금정책면에서의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러나 그 도에 상당하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지배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에서 동, 서

독에 서로 다른데서 이와같은 차이가 생긴다.

“ 서독에 있어서의 임금자율제도 ”

(Tarifautonomie in der Bundesrepublik)

서독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임금자율제로 인하여 수입(소득)액 (Einkommensfindung)을 임금계약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들의 자율적 수입액 결정에 대한 관심(이해)은 간접적인 국가의 영향이 미치는 효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들어 소위 “ 집중적인 행동 ”면의 임금자율제는 서독에서 경제영역이나 부문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이나 개별 기업에 따라서 서로 다른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는 임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수입)요구를 꼭 필요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스트라이크라는 수단을 써서 관철하려고 노력할수도 있다.

동독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

“ 동독에 있어서의 임금정책 ”

(Lohnpolitik in der DDR)

동독에 있어서는 전체 국민경제와 경제영역을 경영체와 그리고 기타 제도들에 대한 계획들 속에 확정되어 있는 소위 “ 임금 자본금 ” (Lohnfonds)을 성장 정책상의 목적에 일치시키도록 하는것은 임금정책이 해야 할 과제(임무)다. 독일 통일사회당(동독 공산당)과 독일 민주

주의 인민공화국(DDR)의 정부는 FDGB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노동업적과 근로자의 이익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는 경제법칙에 부합되는 임금정책을 실현시킨다.

임금정책의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적인 업적계획과 임금발전이 지니는 불가분의 유대 관계를 실현시킨다.

임금의 인상은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상승과 원가의 가격하락 등으로 이에 상응하는 전제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에 알맞는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

2. 사회주의적인 의식을 발전시키고 생업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목적

3. 다변화 및 연차 국민경제계획속에 확정되어져있는 구체적인 과업(임무)을 완성시키는 목적(주3)

동독에 있어서는 임금과 노임협약체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들은 동독정부당국에 의하여(FDGB의 의견조정 합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임금정책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이 뚜렷하다. 이와같은 기초에 입각하여 경제를 주도하는 제 기구는 당해 노동조합 조직들과의 의견일치하여 그들의 책임영역의 임금조정을 종합적인 연쇄조약으로 맺어 규제한다.

개인기업체들에 있어서의 임금은 - 국가 소유부문의 임금을 참작하여 - 노동조합과 산업 및 상공회의소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약(협정)을 통해 확정되어지며 국가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임금의 형성” (Lohngestaltung)

294. 동, 서 양독에서 임금정책말고도 임금의 형성(조성)도 서로가 차이진다.

계약임금이 실제임금에 대하여 갖는 관계는 서로가 다르다. 서독에서는 Triflohn은 최저임금으로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Lohndrift) (계약임금과 실제임금과의 차이)는 그때 그때마다의 경기상황에 입각하여 -임금규약을 초월하는 추가 지불금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혹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와는 반대로 동독에서는 실제 지불한 임금이 원래의 계약임금과 차이날 때에는 서독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임금이 계획수행도에 대하여 갖는 의존도에서 찾아진다. 그렇지만 그 범위는 대부분 노동조합 조직과 이 업체지도층 간에 체결되는 기업체 집단조약과 기업체협정에 이에 해당하는 규범적 대수지표로 확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독의 임금체제는 -지난 몇년동안의 많은 공사를 거친 뒤 -지금은 주로 능률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능률임금은 현금 수입의 50%에서 70%까지는 원래의 규약임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능률업적과 관련되는 임금부분(초과능률 임금 내지 초과임금보수)에 의하여 보완된다. 그리고 이 능률과 관계되는 임금부분은 특정한 대수지표를 완수하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주 4) 여기에 이제 보통 직업적인 노동조건과는 차이가

날때 증액금이 부여된다 (주 5)

“ 임금계약체제 ” (Tarifvertragssystem)

295. 동, 서독의 임금계약체제는 그 외적 특징들로 보아서 서로가 비슷하다. 이 체제는 취업군과 경제분야에 따라서 구분되고 활동부문에 따라서 그 액수가 서로 다른 임금율 (Tarifsatz) 을 포함하고 있는 임금표 (Tariftablelle) 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임금체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각각의 자격을 고려 참작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아무튼 임금과 봉급은 이 밖에도 다른 임무를 띄고 있다. 임금계약체제 “ 오늘날 까지도 당해 경제분야와 기업들이 사회의 재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에 따라서 노동임금을 ” 차별하여 구분하고 있다. 경제부문 내지 기업사이의 경제 [학] 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임금관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임금을 초월하여 노동력을 지도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경제분야와 기업체로 유도하는 일이 지원되어질 것이다. 국민 경제적인 기준에 따른 임금의 차별 구분화는 국민경제중에서 특정한 분야가 학문과 방학상의 발전 (진보) 을 수행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차지하는 특별한 의의를 정당히 평가하기 위하여 취해진다. . 사회적 노동의 이용효과가 급속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대한 사회의 관심에 알맞게 (주 6)

경제부문에 따른 임금군간의 차이가 주어져 있는 자료에 입각하여 고찰해 볼 것 같으면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는 적다.

서독에서는 자격갯춤이 상승됨에 따라 -특히 사무원 직업분야에서 -고정된 임금군 대신에 자유임금(보상)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능률이 높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상승하는 차이를 결과적으로 낳고 있다.

서독의 경우는 생산과정이 점점 자동화되어감에 따라서 분야마다 특수하던 자격요구들이 비슷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그러므로 노동의 기동력뿐만 아니라 각 부문간의 임금차이를 평준화시키는 일을 장려하고 있다.

“ 프 레 미 엄 ”
(prämiem)

296. 하위 한계선이 월 최저 순수임금(Mindestbruttolohn) 300(동독) 마르크로 되어있는 (1967년 7월 1일부터) 계약임금과 능률임금(Mehrleistungslöhne) 마르크도 동독에는 프래미엄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래미엄은 임금준비료에서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체의 프래미엄 준비료에서 지불되며 노동(력)수입에 가산된다. 이 준비금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부문에서 연(年)임금액 전체의 약 4% - 원래는 보통 범위를 넘어서는 업적에 대하여 프래미엄이 지불되었다.

1965년, 66년 부터는 생산계획과 수익계획 그리고 기타의 다른 질적인 대수의 지표가 충족되었을 때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경영체에 적어도 일년을 근무한 노동자면은

주의 인민공화국(DDR)의 정부는 FDGB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노동업적과 근로자의 이익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는 경제법칙에 부합되는 임금정책을 실현시킨다.

임금정책의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적인 업적계획과 임금발전이 지니는 불가분의 유대 관계를 실현시킨다.

임금의 인상은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상승과 원가의 가격하락 등으로 이에 상응하는 전제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알맞는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

2. 사회주의적인 의식을 발전시키고 생업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목적

3. 다변화 및 연차 국민경제계획속에 확정되어져있는 구체적인 파업(임무)을 완성시키는 목적(주 3)

동독에 있어서는 임금과 노임협약체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들은 동독정부당국에 의하여(FDGB의 의견조정 합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임금정책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이 뚜렷하다. 이와같은 기초에 입각하여 경제를 주도하는 제 기구는 당해 노동조합 조직들과의 의견일치하여 그들의 책임영역의 임금조정을 종합적인 연쇄조약으로 맺어 규제한다.

개인기업체들에 있어서의 임금은 - 국가 소유부문의 임금을 참작하여 - 노동조합과 산업 및 상공회의소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약(협정)을 중 확정되어지며 국가의 승인을

언은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임금의 형성” (Lohngestaltung)

294. 동, 서 양독에서 임금정책말고도 임금의 형성(조성)도 서로가 차이진다.

계약임금이 실제임금에 대하여 갖는 관계는 서로가 다르다. 서독에서는 Triflohn은 최저임금으로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Lohndrift) (계약임금과 실제임금과의 차이)는 그때 그때마다의 경기상황에 입각하여 -임금규약을 초월하는 추가 지불금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혹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와는 반대로 동독에서는 실제 지불한 임금이 원래의 계약임금과 차이날 때에는 서독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임금이 계획수행도에 대하여 갖는 의존도에서 찾아진다. 그렇지만 그 범위는 대부분 노동조합 조직과 이 업체지도층 간에 체결되는 기업체집단조약과 기업체협정에 이에 해당하는 규범적 대수지표로 확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독의 임금체제는 -지난 몇년동안의 많은 공사를 거친 뒤 -지금은 주로 능률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능률임금은 현금 수입의 50%에서 70%까지는 원래의 규약임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능률업적과 관련된 임금부분(초과능률 임금 내지 초과임금보수)에 의하여 보완된다. 그리고 이 능률과 관계되는 임금부분은 특정한 대수지표를 완수하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주 4) 여기에 이제 보통 직업적인 노동조건과는 차이가

날때 증액금이 부여된다 (주 5)

“ 임금계약체제 ” (Tarifvertragssystem)

295. 동, 서독의 임금계약체제는 그 외적 특징들로 보아서는 서로가 비슷하다. 이 체제는 취업군과 경제분야에 따라서 구분되고 활동부문에 따라서 그 액수가 서로 다른 임금율 (Tarifsatz) 을 포함하고 있는 임금표 (Tariftablelle) 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임금체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각자의 자격을 고려 참작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아무튼 임금과 봉급은 이 밖에도 다른 임무를 띄고 있다. 임금계약체제 “ 오늘날 까지도 당해 경제분야와 기업들이 사회의 재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에 따라서 노동임금을 ” 차별하여 구분하고 있다. 경제부문 내지 기업사이의 경제 [학] 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임금관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임금을 초월하여 노동력을 지도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경제분야와 기업체로 유도하는 일이 지원되어질 것이다. 국민 경제적인 기준에 따른 임금의 차별 구분화는 국민경제중에서 특정한 분야가 학문과 공학상의 발전 (진보) 을 수행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차지하는 특별한 의의를 정량히 평가하기 위하여 취해진다. 사회적인 노동의 이용효과가 급속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대한 사회의 관심에 알맞게 (주 6)

경제부문에 따른 임금군간의 차이가 주어져 있는 자료에 입각하여 고찰해 볼 것 같으면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는 적다.

서독에서는 자격갖춤이 상승됨에 따라 -특히 사무원 직업분야에서 -고정된 임금군 대신에 자유임금(보상)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능률이 높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상승하는 차이를 결과적으로 낮고 있다.

서독의 경우는 생산과정이 점점 자동화되어감에 따라서 분야마다 특수하던 자격요구들이 비슷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그러므로 노동의 기동력뿐만 아니라 각 부문간의 임금차이를 평준화시키는 일을 장려하고 있다.

“ 프 레 미 엄 ”
(Prämien)

296. 하위 한계선이 월 최저 순수임금(Mindestbruttolohn) 300 (동독) 마르크로 되어있는 (1967년 7월 1일부터) 계약임금과 능률임금(Mehrleistungslöhne) 마르크도 동독에는 프래미엄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래미엄은 임금준비료에서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체의 프래미엄 준비료에서 지불되며 노동(력)수입에 가산된다. 이 준비금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부문에서 연(年)임금액 전체의 약 4% - 원래는 보통 범위를 넘어서는 업적에 대하여 프래미엄이 지불되었다.

1965년, 66년 부터는 생산계획과 수익계획 그리고 기타의 다른 질적인 대수의 지표가 충족되었을 때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경영체에 적어도 일년을 근무한 노동자면은

누구나 청구권을 가진 연차프리미엄(Jahres-prämien)이
경영체들에 전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적어도 월 수입의 $\frac{1}{3}$, 최고로 많아도 월수입의 2 배를
넘을 수 없다(주 7) 동독의 연차 프리미엄에 대하여

서독에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에 의해서 지불되는 그리고
동독의 월 프리미엄의 액수만큼 높은 크리스마스 가봉(We-
ihnachtsgratifikation)과 다른 증여금들이 있다.

동독에서는 크리스마스 가봉은 별 비중이 크지 않다.

성탄절 가봉은 기혼자에게 35(동독)마르크가 지불되며 미
혼자에게는 25(동)마르크, 견습공에게는 10(동)마르크
가 지불되며 그리고 또한 이 성탄절 가봉은 월 수입이
500(동)마르크 이하되는 노동자들에게 지불된다.

b) 개인소득(수입)

(persönliche Einkommen)

297. 국민의 전체수입을 사회경제적 그룹에 따라서 행하는 구분
은 충분한 재료의 부족때문에 개인의 소득(수입)분포와
횡단면을 종잡는데 꼬칠 수 밖에 없다(주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 양독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
음을 이미 말해주고 있다. 서독에 있어 뿐만아니라 동독
에서도 추가로 받는 수입이 어느정도의 역할(비중)을 물론
차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메어지는 공제액 구조와 비율도
동,서독이 비슷하다. 동,서 양독의 각각의 화폐로 표시된
일반적인 순수 수입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취급한 사회, 경제

군에 대하여 볼것 같으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

“ 평균 소득 ” (수입)

(Durchschnittseinkommen)

298. 그렇지만 (수입자의 동, 서독 수를 감안하여) 전체소득 (수입) 을 매일 평균 소득으로 옮겨 계산한 후에 라야 비로소 동, 서 양독의 수입 (소득) 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동독의 매일 명목상의 순수수입은 평균하여 1965년에 521 (동독) 마르크였다. 이것은 서독에 있어서의 경우 보다 약 30% 낮은 액수다. 이 보다 더욱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평균 연금자 수입의 차이이다. 동독에 있어서의 연금자도 서독에 있어서 연금자가 받는 순수 연금수입의 35%밖에 받지 못한다. 전체 평균을 볼것 같으면 이에 대하여 노동자와 자주 취업자들의 경우를 산출해 본 수입은 서독 수치의 78% 내지 63% 정도가 된다. 아무튼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동독에 있어서의 조합 회원들의 지위가 - 동독의 통계에서 자주취업자군으로 나타난 구름은 주로 이를 조합 회원이 그 다수를 점하고 있다. - 서독에 있어서의 자주취업자들의 지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독의 조합 회원은 역시 노동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동독에 있어서 자주 취업자들과 조합 회원들이 1965년에 노동자들의 평균수입의 2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도 표 34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 매 수입자의 월 평균 수입(소득)(DM 내지 M로 표시)

	총 수입 공 제							순수입 수입 (소득)
	노동수입 (근로)	사회수입	기타수입	합 계	세 금	사회보장 부담금	합 계	
서 독								
② 노동자	③ 777	57	18	852	70	72	142	710
자주취업자	1,810	51	206	2,067	398	8	406	1,661
연금자	-	456	18	474	-	-	-	474
합 계	677	157	35	869	83	48	131	738
동 독								
② 노동자	③ 570	44	15	629	39	39	78	551
자주취업자 및 조합회원	833	81	276	1,190	100	50	150	1,040
연금자	-	164	-	164	-	-	-	164
합 계	470	76	44	590	38	31	69	521

주 1 : 연금, 병원비, 가정비 (Hausgeld), 주말비, 사망비, 아동비
출산 (出産) 보조비, 남편보조비, 사회보장지원, 사회 보장에
관한 기타현금 지원 (불)

주 2 : 견습공과 취업증인 연금자 포함.

주 3 : 기업체들에 의해서 병난 노동자들에게 지불된 금액 포함.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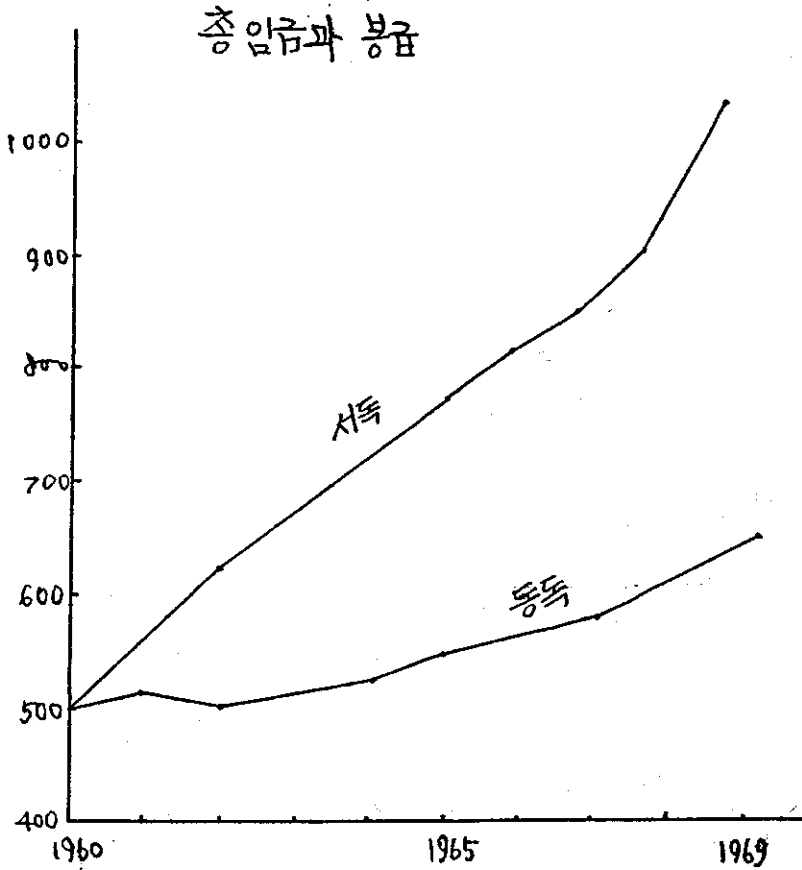
• 노동자 수입 • (소득)
(Arbeitnehmereinkommen)

299. 액변상의 노동자 수입의 발전을 (동, 서독) 비교해 보면 동, 서독의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하여 커져갔다는 사실을 보게된다. (통계산출에 대해서는 부록에 수록된 방법론적 참고사항을 비교해 볼것) 1960년도에 있어서의 동독의 평균 개인수입은 매 취업노동자당 (전습공들을 포함한) 동독의 경우 매월 498DM였으니 서독의 경우 매월=510DM)보다 단지 약간만 낮다. 그렇지만 1965년도에 있어서 이미 동독의 평균 총노동자 수입이 서독보다 30%가 낮았고 1969년에는 벌써 그 차이가 35%나 달했다 (서독에 있어서의 평균수입은 1007DM였으며 동독의 평균수입은 650M였다) 그렇지만 동독의 경우 이미 1960년에 벌써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등의 공제액이 서독보다 낮았다. (동독=총 수입의 13.5% 서독=15.7%) 서독에 있어서 공제금의+쪽으로 증가해 가고(서독-1969년도=20.8%) 동독에 있어서는 공제금이 계속해서 그 비율을 유지해 왔으므로 전체 기간동안에 있어서 총,순(전체)성과(der Brutto-Netto-Effekt)는 동독 노동자들의 가용 순수수입쪽이 유리하도록 변하여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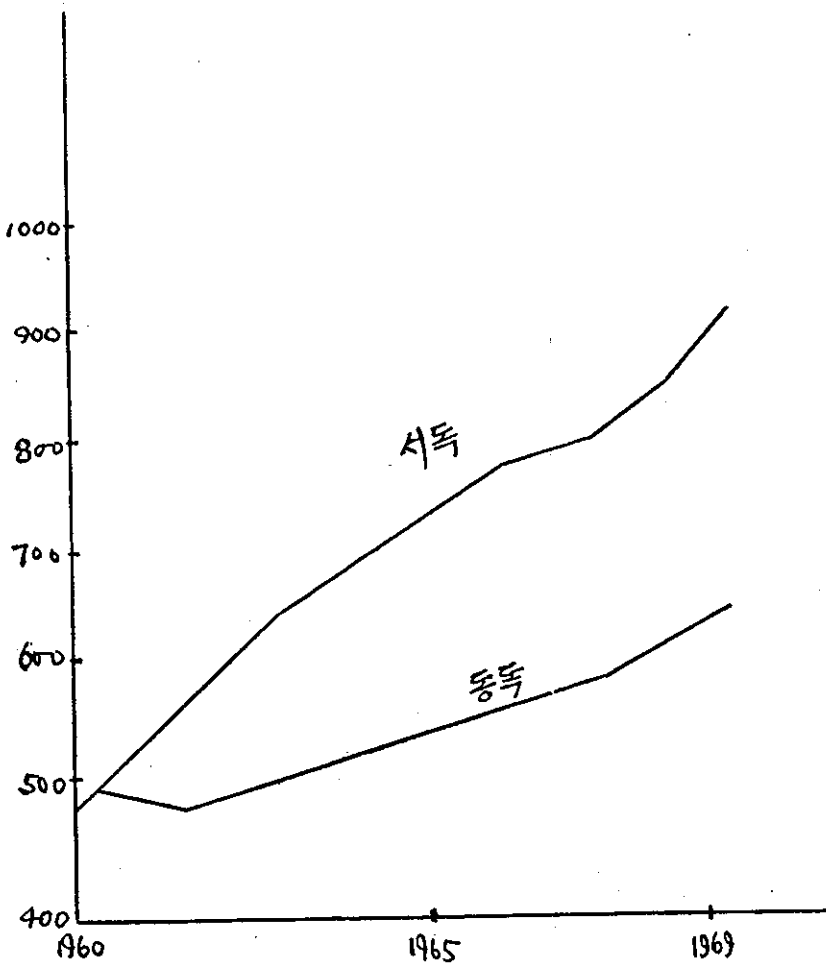
그래프 5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매월 노동자 수입의 발전
(단위 = DM 내지 M으로 표시)

(Entwicklung des monatlichen Arbeitnehmereinkommens i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in DM bzw. M)



“가용 순수 수입”



* 기 타 수 입 *

(Sonstige Einkünfte)

300. 노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이밖의 수입(소득)들은 전체 순수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위에 비교관찰한 모든 해(年)들에 있어서 동, 서독이 특기 할만하며 한결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기타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비율을 보임으로써 가용금전의 약 $\frac{1}{10}$ 을 점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에 취급한 모든 해들에 있어서 동, 서독에 있어서 적어도 기타 수입의 $\frac{2}{3}$ 가 공적인 수입액에서 개인 가정(의 가계)(연금, 질병보험의 이병 보조금 - Kraukegeld)에 전입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해 두고자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서독에서의 사회수입말고도 획득되기전 기타 수입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산수익(Vermögensertrag)이며 그러나 동독에서는 서독 같으면 수입(소득)통계에 포함시키지않은 수입들도(장학금, 보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수입, 복권등)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301. 추가 수입과 공제금 같은 것은 per Saldo ()로 서독의 총 통계와 비교하여 동독에서 노동자들의 평균 전체 순수수입이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1960년에는 동독의 전체 순수수입이 서독의 전체 순수수입보다도 약간이지만은 높았다. 1969년에 와서는 동독의 순수수입은 이와는 반대로 서독에서 가용한 노동자들의 평균 순

수 수입의 71%밖에 달하지 못했다. 1960년에서 1969년 까지 사이에 서독에 있어서의 액면상의 총 (Brutto) 평균 노동자 수입이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순수증가는 $\frac{9}{10}$ 쯤 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독에 있어서의 총 수입과 순수 수입은 $\frac{1}{3}$ 이 좀 모자라는 정도의 비율만 증가하였다 (31% 내지 30%)

“ 경제 분야별로 본 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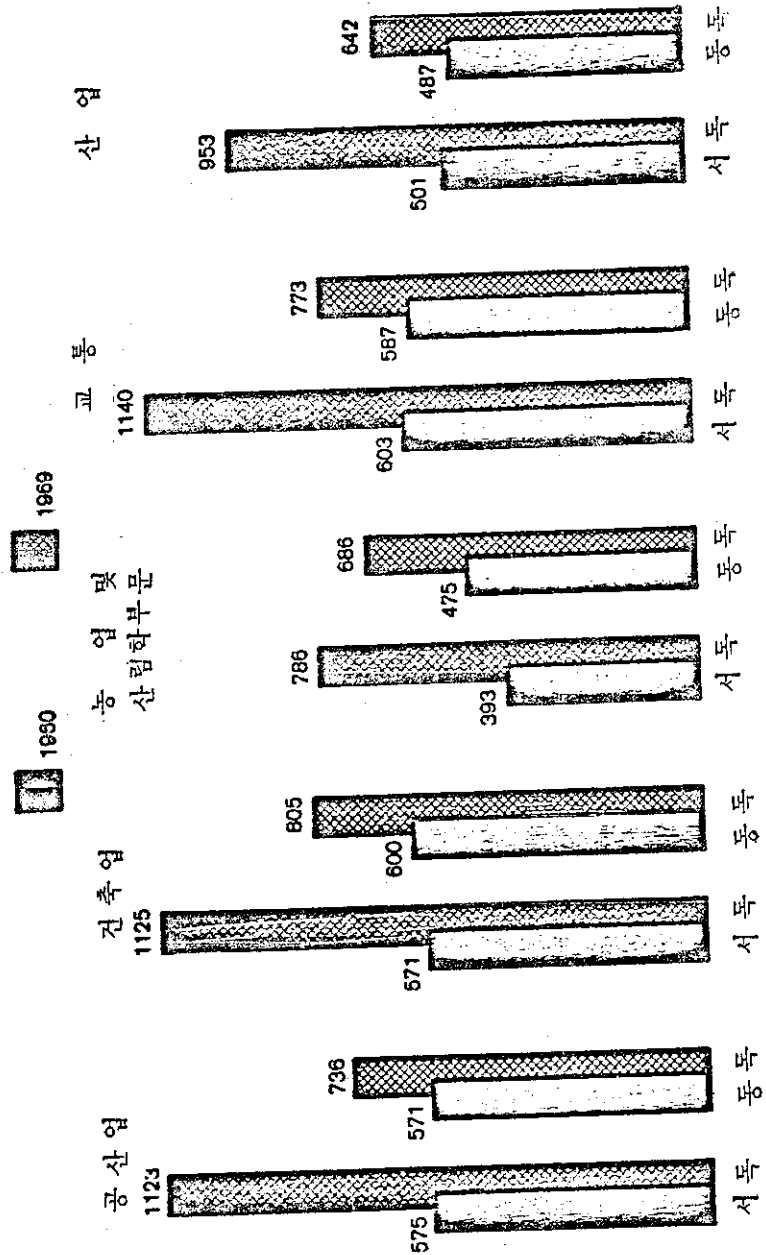
(Einkommen nach Wirtschaftsbereichen)

302. 경제분야별 노동자 수입 (소득) 발전을 살펴보면 1960년도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각 분야마다 특수한 총 수입 평균이 서독과 동독에서 거의 비슷하게 별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산출, 통계, 방법에 관하여는 부록에 수록된 방법론적 참고사항을 비교해 볼 것) = 그 산업, 교통과 상업 (무역포함) 부문에서 서독의 경우가 동독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건축과 농업과 그리고 산림부문에서는 서독의 경우가 동독의 경우 보다 낮았다. 그렇지만 농업과 산림학 분야는 기후조건에 따라서 그 수입이 바로 영향을 입는 분야이며 노동력 투입도 경영체 (기업) 들에서 보통있는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행해지므로 이의 영향도 또한 받는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 있어서의 동, 서독의 차이는 동독의 통계 (완전 취업자 별) 에 나타난 실제수입을 초과해서 올려놓은 보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경제부문 사이에 나타난 수입 (소득) 의 차이

는 서독과 동독에서 그 현상이 비슷하다. 상업과 농업 및 산림학 부문의 평균 수입이 생산부문의 평균수입 보다 상당히 낮다. 이에 대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서독에서 걸로 보기에 비교적 나쁜 수입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다음과 같은데 그 이유가 있다. 즉 이 노동수입(소득)속에는 공공수입 전입금으로 통하는 건축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나쁜 일기로 인한 보조금지불(Schlechtwettergeldzahlung)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일기 보조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그 차이는 명확히 달라진다(주 9)

그라프 6

1960년과 1969년도에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몇개 선정된 경제분야별 매월 총 평균 수입 비교(서독 - DM, 동독 M를 표시)



도 표 35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경제분야별
 평균 월 총수입의 발전 (기준 = 1960 년도 = 100)

	산 업		건 축 업		농 업 및 산 립 업 분 야		주 ② 교 통		상 업 (무역)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19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63	129	107	127	107	136	107	124	107	130	104
1964	138	111	148	109	146	112	132	111	133	106
1965	152	115	101	114	103	121	146	114	150	110
1966	163	117	172	117	172	127	154	117	159	112
1967	166	119	170	121	176	132	162	121	167	118
1968	177	124	179	128	183	143	169	126	175	124
1969	195	129	197	134	200	144	189	132	190	132

주 ① 서독의 경우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주 ② 서독의 경우는 우체(체신)부문을 포함시키고 있고 동독
 의 경우는 이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제출 : 산업과 건축업에 종사하는 서독-노동자 : 연방(서독)

통계국 : 산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사무원들
 의 업무 전문분야 M 계열 15

이밖의 다른 분야에 대한 모든 사무원들과 노동자에
 관해서는 백림소재의 DIW통계를 볼것.

동독 : 사회주의적인 경제에 종사하는 완전취업자들

제 5 장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수입성장속도가 아주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장에서 비교한 경제분야에 있어서 1960년에서 1969년까지의 해들에 액면상의 수입을 비교해 보면 동, 서양독의 수입발전에는 주목할만한 평행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불수 있다. 농업과 산림업의 비교적 낮은 수입만을 평균보다 약간 더 봉산되어 있다.

도 표 36.

1969년도의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공, 산업별 평균 총매달수입의 비교 (DM 내지 M로 표시)

	노동자와 사무원		노동자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에너지 및 연료산업	1,133	810	1,066	795
화학산업	1,129	763	1,031	734
야 금	1,162	836	1,138	819
건축자료산업	1,127	746	1,103	753
기계제작 및 자동차제작	1,135	765	1,091	754
전자공학 전자이론, 도구산업	984	740	898	690
경공업 (산업)	934	646	890	633
섬유산업	871	594	815	577
식품산업	994	677	927	671
(총) 합 계	1,055	734	997	713

모든 분야의 기준 = 100

	노동자 및 사무원		노동자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에너지 및 연료산업	107	110	107	112
화학 산업	107	104	103	103
야 금	110	114	114	115
건축 자 료 산 업	107	102	111	106
기계 및 자동차 제작 (업)	108	104	109	106
전자 공 학	93	101	90	97
전자 이 료 , 도 구 산 업	86	88	89	89
경 공 업	83	81	82	81
섬 유 (주 물) 산 업	94	92	93	94
합 계	100	100	100	100

자료출처 : 서득 : 연방 (서득) 통계국

공, 산업과 상업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사무원이
수입, 전문분야 M, 계열 15,
동독의 부문별 구분에 맞추어 고쳐서 계속 산출
했음.

동독 : 1970 년도의 동독의 통계연보

서독에 있어서는 주로 시장영향에 동독에 있어서는 그리나 국가의 계획수립에 영향을 입고 있는 임금소득이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서독의 각 분야마다의 임금 발전을 살펴보면 거의 평행적으로 진행되어 나갔다.

“ 각개 공, 산업분야의 비교 ”

(Vergleicheneinzelnier Industriebereiche)

303. 각개 공,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평균수입을 비교해 보면 수입차이면에 대한 개관을 또한 얻을 수 있다. 이 비교는 1969 년도에 대한 것으로 완전취업자들의 경우를 대상으로 삼은것인데 동독의 공, 산업 분야체제에 맞추어 산출해 냈다. 장려 되도록 되어있는 특정한 부문에 대한 임금정책에 관하여 동독의 (경제) 계획당국이 발표한 기본원칙들을 살펴 보면 동독에 있어서는 각 분야마다의 수입차이가 서독과는 다른 양상회 임금구조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모든 (경제) 분야수입의 동, 서독 평균을 이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서 고찰해 보면 분야마다의 차이가 있는데서도 상당한 유사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것은 수입규모에 따라 나눈 순위의 경우에 이미 적용되어질수 있는것인데 이 순위는 동, 서독의 경우 거의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야금과 에너지 및 연료산업이 첨단을 걷고 경공업과 섬유 (직물) 산업이 제일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이나는 분포범위를 함께 넘어 고찰하더라도 일치되는 현상이나 점들이 얼마 약화되지는 않는다.

즉 평균에서 차이나는 점들은 동, 서 양쪽에서 다 같이 밑으로 겨우 20%가 되며 최고로 나은 경우라 할지라도 1/10 쯤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라 프 7

1969년도의 -동독의 분야 구분에 기준하여 본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공, 산업 부문에 따른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평균 총 매달 수입의 비교

DM (서독화폐)로 표시한 서독 분야	금 표시한 동독
기계 제작 및 자동차 제작	836
에너지 및 연료 산업	765
화학 (공) 산업	810
건축 자재 산업	763
식품 산업	746
전자 공학, 정자이로, 도구 산업	677
경 (공) 산업	740
섬유 (직물)	646
	594

제 5 장

304. 이 밖의 다른 분야들에 있어서의 평균 수입에 관하여는 동독의 경우 아무런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와같은 현실은 개인 산업 및 반국가경영체의 경우뿐만아니라 공공 직무수행부문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이전과는 달리 개인 기업체들과 국가가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들과 그리고(공동)조합등에서 약간 높은 평균 수입이 지금은 달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국영기업체들로 부터 노동력이 다른 분야로 전직하여 가는 일이 1969년 12월 까지만해도 여전히 동독 경제 지도층에 의하여 신랄히 비판되어 졌다. 이에 대하여 동독에서 공적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특혜는 아직도 여전히 생산부문의 수입보다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의 수입도 서독에 있어서의 수입보다 부분적으로는 훨씬 낮다 (주 10)

- c) 법적으로 규정된 공제액으로 말미암은 수입의 부담
(Die Belastung der Einkommen mit gesetzlichen Abgaben)

305. 세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동서 양독에서 이미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실시되던 법적구조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져 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실시된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 개혁들은 수입(소득)에 대한 세금부과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다하는 부담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던 법적근거를 변화시켰다.

서독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아주 높은 임금부과세율의 누진성이 여러차례 경감되어졌다. 이와는 달리 사회보장에 대하여 책임지는 부담금(경)제선같은 부담액은 그 기준이 몇배나 높아졌다. 동독에서는 그러나 1953년 이래 수입세 부과금의 아무런 변화를 이르지 않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금법에 있어서도 옛날 법칙들이 여전히 그냥 적용되고 있다.

“ 근로 소득세 ”

(Lohnsteuer)

306. 그렇지만 근로소득세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비율에 의하여 고찰해 보면 거의 모든 서독의 세금 부과층에 있어서 그 세율이 동독의 경우보다 낮다. 수입이 비교적 많아지기 시작하는 층에 이르러서 부터는 (2000 DM 이상부터) 세금부과율이 꽤 높아지기 시작한다. 서독에서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면 이에 따라서 세금부과율이 낮아지는데 이 범위가 꽤 큰바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다른 차이가 있다. 그뿐만아니라 동독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입의 경우에는 (매월 700 M에 34%의 한계세율) 누진세율은 끝나고 20%에 달하는 비율과세가 이에 접합되는데 (미혼자의 경우에는 1260 M부터 이 규칙이 적용된다 (도표 A 95를 참고할것))

307. 아무튼 총, 서 양독에 있어서의 실 수입 세금부과율은 도표 A 96에서 A 98까지에 기술된 임금 구조와는 완전히

제 5 장

다르게 나타나 있다. 우선 여기에 언급해 둘 일은 서독에 있어서의 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어서도 선전비용과 특별비용의 지불이 법적으로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하여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지고있는 수입(소득)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독에 있어서의 특수비용의 지불(Sonderausgaben) 목록을 볼것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세금부과액 인하가 서독에서 같으면 정상적으로 세금부과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들에 대하여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초과시간 노동에서 얻어지는 추가금과 특정한 프리미엄 창증금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그것도 일요일 대상과 휴일대상에 대하여만 제한되어 있다. 계획을 초과 달성하여 얻게되는 임금은 특별고려되어 세율이 낮게(5%) 부과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자세한 자료는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았다. 동독에 있어서의 노동(노조) 수입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면제되거나 혹은 특별고려되어 세금부과를 받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는 부모가 다 직장에 취업하고 있을 때는 그중의 한쪽만이 아동특별 면세청구를 할수 있다는것은 또한 원칙으로 통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동독에서는 부모가 다 같이 생업에 취업하고 있더라도 부모 양쪽다가 아동특별 면세청구를 할수 있다(주 11)

“ 점점증하는 세금부담 ”

(Steigende Steuerbelastung)

308. 수입(소득)이 점점 늘어남과 더불어 서독에 있어서의 근로소득세율이 1960년에서 1964년 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여 6.3%에서 8.5%가 되었다.

세금환인을 약 10%쯤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한 1965년도의 세계개혁을 통하여 세금부담비율의 상승은 우선 멈춰졌다. 그렇지만 그후 몇년동안 1969년에 이르기까지는 이 비율이 다시 올라서 10.3%까지 올랐었다.

동독에 있어서는 수입(소득)의 증가가 비교적 약하게 진척되어 나갔는데 도로소득세 비율의 발전은 서독의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늘어나 나갔으나 그 증가비율은 단지 6.0%로 늘어났것 뿐이다.

그러니까 세금부담율이 비교적 높은 자주(독립) 취업자들의 수입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연금자들의 수입이 함께 포괄되어 취급된 전체 총 수입의 직접 세금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위에서 비교해서 통계를 번바있는 1960년, 1964년, 1967년의 경우 이미 여기 언급한바 있는 경향과 일치한다. 즉 서독에서는 세금부과율이 8.1%에서 9.8%로 올라갔고 동독에서는 6.2%던 것이 7.0%로 그 비율이 늘어났다

“ 사회보장 ”
(Sozialversicherung)

309. 만약에 세율의 변함이 없는데 수입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세율의 누진 현상으로 그 부담이 계속하여 늘어난다면 사회보장을 피한 부담을 통해서 이에 상응하는 관계가 일어난다고 말할수는 없겠다.

서독에서 뿐만아니라 동독에서는 사회보장법에 비율 부담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보통 사회보장 부담금 측정 한계선을 통하여 법에 확정되어져 있다.

비교적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면은 이 한계선을 넘게 되는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부담을 채납된다.

서독의 경우는 이밖에도 사회보장제도의 담당참여인들의 차이에 따라서 (연금자 사회보장, 건강보험과 실업자(失業者) 보험) 그 부담액과 부담하게된 측정이 서로 다르다.

또 하나의 다른 차이가 서독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지위로 인한 점인데 이것은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에 해당된다. 즉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험금을 내야하는 강제 의무에서 면제되어 있다. 동독의 경우는 이와비슷한 규칙이 존재하고 있지않다.

서독의 경우는 1960년 이래 각개 보험 부문마다의 부담(비)율이나 한계측정경계가 여러가지로 변하여졌으므로(失業者 보험에 지불하는 부담금 등은 제외하고) 60년대에 있어서의 실제 부담비율의 변천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일적인 모습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매일마다 약간의 동요현상은 있

기는 하였으나 1965년까지는 비율이 거의 얼마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후 부터는 줄곧 상승일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69년에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 11.9%) 동독의 경우는 거의 이와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즉 최고 600 M의 경우(부담금 추정한계점) 10%의 변화하지 않는 부담금 비율에서 부담액은(오히려) 점차 줄어들었다. 동독의 경우 1960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사이에 전체노동자(피고용자)수입에 대하여 부과된 부담금이 7.5%에서 6.3%로 줄어들어갔다.

310. 지금까지 여기에 분리하여 수입(소득)으로 부터 공제되는 액수의 비율을 서술해 보았는데 이와같은 고찰에서 우리는 서독에 있어서 근로소득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으로 인하여 수입에서 공제되는 전체부담액도 동독에서 공제되는 전체액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65년도의 세계개혁을 제외하고는 1960년에서(공무원을 포함하여 15.7%) 1969년 까지(20.8%), 사이의 전체 부담금비율은 꽤 많 올랐다. 이에 대하여 동독에서는 우리가 고찰해 본 전년도들에서 이 비율의 거의 일정하게 13.5%로 머물러 있었다(제 6장을 참고할것)

d) 개인 가정(가계)의 수입(소득)

(Einkommen der privaten Haushalte)

311. 국민의 복지수준과 구매력을 살펴 보는데는 개인적인 수입자별로 사후 개별 수입보다는 가계수입(Haushaltseink-

제 5 장

ommen)을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길이다.
소비성향같은 수입의 사용은 가계예산에서 세워진 결정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가계의 주인 딸고도 다른 가족들의 취업소득이나 수입을 함께 넣어서 계산하면 개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분배의 경우와는 그 수입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도표 A 88 과 A 89 를 참고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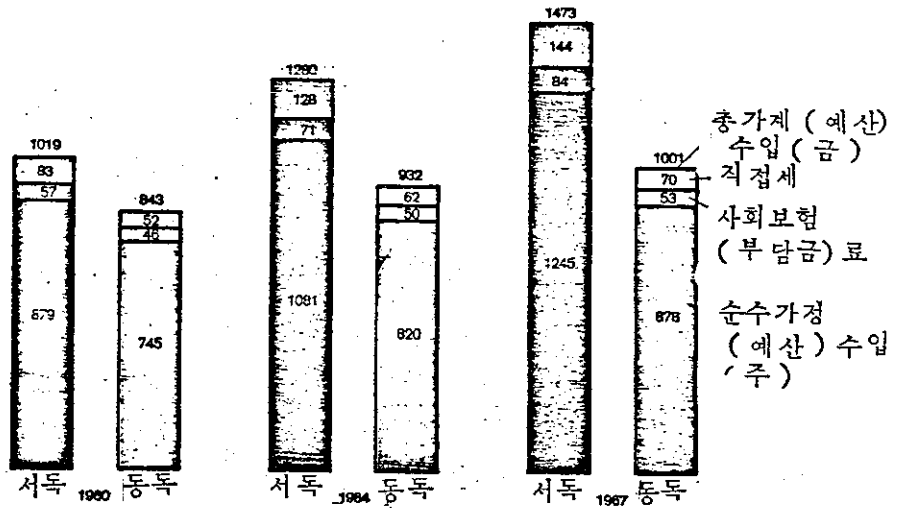
“ 평균 가계 수입 ”

(Durchschnittliche Haushaltseinkommen)

312. 1960년에서 1967년 까지의 매월 평균 가계수입의 발전을 살펴보면 가계의 월 평균수입이 서독에서 뿐만아니라 동독에서는 여기에 고찰된 모든 연도들에서 개인의 수입상황을 약 절반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구의 가정(가계에서 주인딸고도 다른 가구들이 취업하여 수입을 올리는데서 찾을 수 있다. 만약에 식구 한사람인 가정(가계)를 여러가구(식구)로 이루어진 가계와는 분리시켜 고찰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 라 프 8

선정한 연도에 있어서의 서독과 동독의 평균 매월가계 수입의 발전 (DM와 M로 표시)



313. 1945년에 대한 순수통제적 비교와는 달리 1960년에서 1967년 사이의 발전에 대한 연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액면상의 수입의 차이가 상당히 커졌다는 사실 이것은 총 수입의 경우 뿐만 아니라 순수 수입의 경우는 마찬가지다. 아무튼 여기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연도들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서독에 있어서의 공제액들

제 5 장

특히 직접 세가 더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독의
액면수입의 순수관계(비율)이 비교적 약간 유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도 서독에 있어서의 순수가계(예
산)수입은 서독의 71%밖에 달하지 못했다(1960년 85%)

“ 피노동자가정(가계) 예산에 있어서의 순수수입 ”
(Nettoeinkommen in Arbeitnehmerhaushalten)

314. 피고용자 가정(가계)의 평균 순수 수입을 비교해 보면 여
기에서 고찰한 연도들에 있어서의 팽창(증가)비율의 차이
와 관련시켜볼때 대체로 이미 개인별 수입(소득)부문에 제
시된 경향이 그냥 추인되고 있다. 아무튼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미 1960년도에 있어서의 서독의 평균가
정(가계)수입이(매월 852DM) 동독의 이에 해당하는 수입
수준(매월: 758M)보다 명확히 높았다는 사실이다.

1967년도에 와서는 그 차 1307DM 대 899M로
늘어났다.

1969년도의 경우 서독의 매월 평균 순수가정(가계)수입
이 1450DM였고 동독의 경우는 이것이 960M밖에 되지않
았다. 피고용자들의 가정(가계)에 있어서의 평균수입은 이
통계에 의하면 동일한 이 연도에 있어서 서독이 약 1520
DM였고 동독의 것이 약 970M였다. 차이는(액면상으로)
이리하여 더욱 커져나갔다(주 12)

“ 수입과 가정(가계) 예산의 규모
(Einkommen und Haushaltsgröße)

315. 가계(예산) 규모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또한 이 밖의 배
이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가구주 이외의 다른 가구식구들이 차지하는 취업
소득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확한 비례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가계(예산) 규모에 따
른 평균 수입구조가 여기에서 다른 모든 연도들에서 동, 서
독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서독에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수입 비율은 가구주 이외의 다른 가구 식구들
에 의하여도 가계(정) 예산으로 삼입되어 진다는 추측을
갖게 한다. 1인 가정이 5인가정과 그리고 그 이상 식
구를 가진 가정들의 평균수입에 대하여 갖는 범위는 각개
가정의 수입을 2배로 한것보다 약간 더 많다. 가정(가
계) 예산규모가 점증하므로써 이루어지는 수입의 구분은
동, 서 양독이 아주 균등하게 발전되어 나갔다.

그라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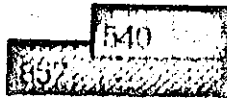
가정(가계) 예산 규모별로 나누어본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월 평균 가계 순수수입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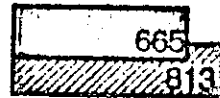
 1967

독은 DM로 표시 하고 동독은 M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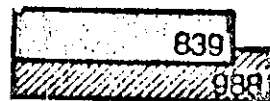
1인가정의가계 (예산)



2인가정의가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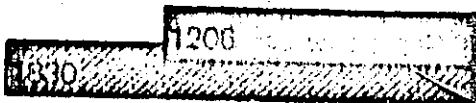
3인가정의가계 예산)



4인가정의가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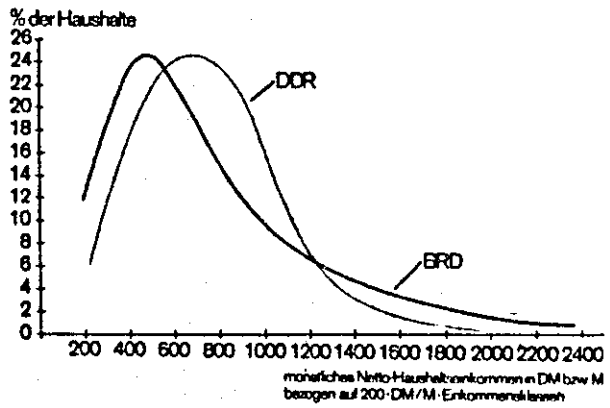


5인파그이상식구가정의가계 (예산)



그래프 10

1960년도의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수입수준에 따른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가계(예산)의 분포



“ 수입 계 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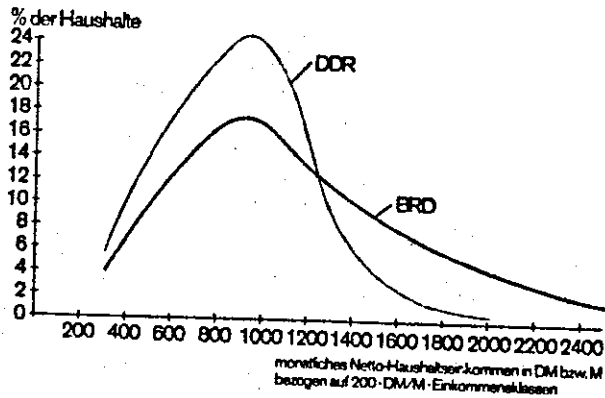
(Einkommensklassen)

316. 수입계층별 차이(도표 A 101을 참고해 볼것)는 1960년도에 모든 가정(가계)의 수입층별로 볼때 평균하여 약 850 DM 내지 760M를 매월 갖는 수입층의 경우 서독과 동독에서 하류 수입층과 중류 수입층에 있어서 비슷한 분포가 나타나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준다.

1960년도에 서독에는 400 DM에서 600 DM에 이르는 수입 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동독에서는 600M에서 800M를 받는 수입계층이 제일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200 DM/M 이상의 수입층에 이르러서만 비로서 이를 가정(가계)이 차지하는 동, 서독의 비율을 살펴 볼때 서독이 더 우위에 선다. (서독 : 18.8% 동독 : 8.8%였다) 상대적 분포는 저수입층과 비교적 고수입수준층으로 나눈 가계예산 규모에 따른 구분을 함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하게 서독의 가정들과 동독의 가정(계)들에서 다르다.

그래프 10

1967년도의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수입계층에 따른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가정(가계)분포



317. 1960년도 이래로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들 계층에 있어서의 서독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고 동독에 있어서는 비교적 완만한 수입의 증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수입의 분포에 따른 구분상에 나타나는 차이들이 이렇게 하므로서 1967년에 더욱 분명해 졌다. 물론 1967년에 있어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수입계층은 동,서 양국이 동일한 급에서 나타났다 (800에서 1000 DM/M사이) 급속한 수입의 팽창

이 가지고 온 주목할만한 특징은 그러나 상부층의 비중이 점점 커간다는데 있다. 서독의 경우 가정(가계)들의 거의 절반이 1200DM 넘는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동독의 경우는 이급이 겨우남이 된다. 1500 DM 이상의 가계수입을 올리고 있는 비율은 서독에서는 모든 가정(가계)의 30%를 넘는다(동독에서는 약 5%가 된다) 실 분포를 기술해 내는것 이외에도 절대적인 수입수준은 제외하고라도 동, 서독에는 어느 정도까지 비교적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분포와 비교적 비슷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포가 주어져 있는가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루어진 상호관계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것 또한 있어야 할 일이겠다. 그렇지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피고용자 가계에 관해서만 여기에서 취급되어 해당되어 질수가 있겠다. 이 피고용자 가계의 현황을 비교고찰을 한다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의 차이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수입현황을 어느정도 까지밖에 알아낼 수가 없다(주 13)

“ 수입의 수준화 ”

(Einkommensnivellierung)

318. 여기에서 조사된 3개년 전부터 동독의 경우가 하위 4개 계층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율이 서독에 있어서 이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 혹은 이말을 달리 표현하면 서독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은 제일 높은 Qu-

intil ()에서 뿐이다. (1967년 = 38.2% 대 30.4%)그러니까 동독에 있어서의 피고용자들의 수입을 전형있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이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서독에 있어서의 사무원들의 봉급이 동독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달했으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차이는 점들이 훨씬 크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도 표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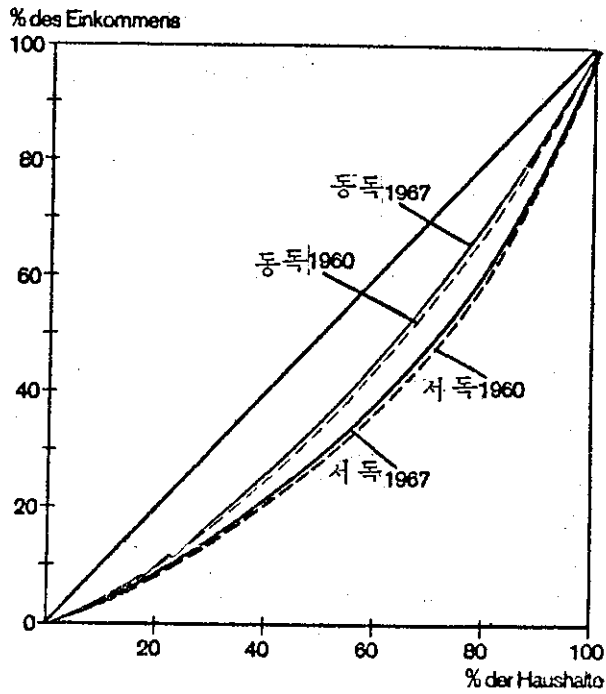
Quintil 별로 본 사무원들과 노동자가계의 가용 순수수입의 상대적 분포에 대한 비교 (%로 표시)

가계 Quintil	1960		1964		1967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 Quintil	8.4	9.8	8.6	10.4	8.7	10.5
2.	12.6	15.5	12.9	15.4	13.0	15.8
3.	16.4	19.3	17.0	19.5	17.1	19.7
4.	22.8	23.4	22.9	23.5	23.0	23.6
5.	39.8	32.0	38.6	31.2	38.2	30.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의 출처 : 백련소재의 DIW의 통계 (자료) 사용

그라프 12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사무원과 노동자가계의 가용 순수 수입의 상대적 분포비교



319. 수입(소득) 수준화의 과정은 동, 서독에서 다같이 1960년과 1967년 사이에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어 나갔다.

그래프에 나타나 곡선분포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언급한바 있는 지출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동독의 경우가 그 분포에 있어서 균일하게 되어 나가고 있는데 동, 서 양독에서 계속하여 수준화 경향이 뚜렷하다.

서독과 동독의 수입분포곡선은 1960년 이래 완전히 같은 수준의 수입을 말해주는 대각선을 보이고 있다.

“ 연금자 가계 (예산) ”

(Rentner-Haushalte)

320. 피고용자 가정(가계)에 있어서의 가계 수입 액수와 분포를 분석하는 것 이외에도 동독에 있어서의 연금자 가정(계수입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통계를 내어보는 시도를 해 보았다. 자료가 부족하므로 모델을 세워 통계를 산출하는 일·단지 이에 상응하는 추산을 통해서만 산출될 수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는 비율이 높은 2인 가족의 연금과 가계를 정하였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동, 서 양독의 경우에 다같이 이 2인가정의 가계예산의 전체수입이다. 연금수입은 그러니까 적당한 생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입이나 기타 이밖의 수입등으로 보충되어 진다. 개인마다 받는 원금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반하여 여기에서 다루는 연금자 가정에 가계수입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다.

아두든 그러나 이 가계유형에 속하는 연금자의 수입이 1968년에도 서독에 있어서도 동독의 경우보다 2배가 넘는 다.

도 표 38

2인 가족의 연금자 가계(예산) 월 평균 순수 수입(DM 내지 M로 표시)

	서 독	동 독
1965 년	695	324
1968 년	805	356

자료출처 : 부록에 첨가된 방법론적 유의사항 참고할것

3. 가격과 구매력

(preise und Kaufkraft)

a) 가 격 (preise)

321. 액면상의 수입발전을 비교 고찰하여 기술해 내는 일로서는 아직 생활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에는 달할 수가 없다. 이와같은 고찰은 수입(액)의 구매력을 산출해내는 작업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이 구매력이란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을 통하여 그리고 가계지출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복무작업(Dienstleistung)을 통하

여 규정되어 있다.

“ 소비자 물가 (가격) ”

(Verbraucherpreise)

322. 서독의 경우는 달리 동독에 있어서의 소비자 물가는 행정적으로 결정되어 정해진다.

1964 년도에 있는 물가 (가격) 개혁 이래 경제 (상의) 변화에 보다 쉽게 적응토록 하기 위하여 아무튼 가격구성이 이전보다 약간 융통성이 있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몇개의 상품들의 경우 더 이상 일정하게 고정된 가격이나 일정한 최고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격의 결정도 동시적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 중앙 집권적인 현상이 있다. 가격의 은익 (隱匿) 상승 (verdeckte preissteigerung) (즉 표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격상승 (역주)) 이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질수가 있다. 즉 가치가 적은 상품들이 소매 물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가격은 그냥 유지되고는 있으나 질이 낮아지고 공급조건이 나빠지므로 인하여 물가는 사실상 올라간 것이 된다. 이밖에도 높은 가치를 지닌 소비상품들의 공급이 늘어나므로 인하여 소비품목들의 물가 (가격) 수준이 유동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는 개별 소비품목들의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있다.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생활에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물건 (상품) 과 그 가치 (효용 가치) 가 지니고 있는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

의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질적차이는 고려되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식료품과 기호품 ”

(Nahrungs- und Genussmittel)

323. 동독에서 생산되는 식료품가격 구조(도표 A 102를 참조할 것)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 생식품과 동물성 식료품 사이에 나타난 가격차이가 평균적으로 서독에서 보다 크다는 사실 여러가지 상이한 상품군을 놓고 볼때 그렇지만 서독에 있어서의 가격범위가 상품종류가 풍부하게 공급되므로 인하여 크게 열려져 있다.

필요한 식료품들의 소매물가를 비교해 보면 감자, 채소(주 14)(특히 짧은 채소) 빵 종류 비스켓트 종류 및 식료품(식량) 등의 동독에 있어서의 가격들이 서독에 있어서의 이들 물품 가격 보다 싸다는 것이 나타난다. 식육류(食肉類)와 우유 같은 것은 동, 서독이 거의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동물성 굳기름 뿐만아니라 식물성 굳기름의 가격과 설탕 제란 등의 동독에 있어서의 가격이 서독의 물가보다 상당히 더 비싸다는 것이 나타난다.

동독에 있어서 과일류는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공급되고 국내 추수에 크게 의존하는 공급때문에 그리고 서독에 비하여 수입품으로 보충 충당되는 양도적이므로 이의 가격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동독의 통계에 나타난 중간급의 국내에서 생산된 식후용 사

과 (Tafelapfel) 이 평균값이 이 중간급 (품질) 사과가격을 사과 (과일) 류의 대표치로 볼수 있겠다. 서독에 있어서의 동양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과의 평균가격 보다 100% 이상이나 더 높다 (비싸다) 동, 서 양독이 수입해 드리는 남국산 과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레몬을 들겠음 - 은 동독에서는 그 가격이 서독의 무려 3배가 된다. 이와 비슷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 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격차이들이 많은 다른 수입품 상품들과 이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상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오렌지 쥬스, 코코아 분말, 초코렛, 콩알같이 생긴 커피 (Bohnenkaffee) 등이 겠는데 이들 식료품의 동독에 있어서의 차이는 서독의 270%에서 480%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것은 주로 소련에서 수입되고 있는 차 (茶) 가 동독의 경우 서독보다 싸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기호품가격이다. 이미 언급한 차 (茶) 와 맥주 (121%) 를 제외하고 다른 물가들은 배 (倍) 나 그 이상이 된다.

지난 몇년동안에 지금까지 언급된 비율들이 일반적으로 동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 왜냐하면 동독에서는 물가가 계속 그냥 머물러있는데 대하여 서독에서는 많은 식료품과 기호품 물가들이 올랐기 때문이다.

밀가루, 설탕 그리고 계란같은 몇가지 중요한 생필품들의 경우 동, 서독의 비율이 변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변하는 경우에는 동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여가고 있으며 이

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서독에서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기름기류와 돼지 북부살등의) 식료품이나 혹은 높은 가격압력을 받고 있는 (초코레트류와 알맹이 커피같은 상품들에서 특히 그러하다.

“ 기타 소비품들 ”

(Sonstige Konsumgüter)

324. 식료품과 기호품목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비품 그룹 (주 15)에서도 서독의 DM화폐에 견주어본 동독의 M(마르크)화의 구매력을 통계에서 다루어진 인상 용품들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다. DM가격에 관련시켜보면 이에 해당되는 M가격의 비율은 59%에서 415%의 간격을 두고 유동하고 있다. 가격표를 우선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여도 식료품과 기호품의 경우와는 달리 서독의 물가가 대부분의 경우 동독의 물가에 비하여 증가되고 있으며(즉 동독 물가가 서독 물가보다 더 비싸며—역주) 각개 물품(상품)군에 있어서의 가격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다.

325. 고상한 취미수요를 만족시켜주거나 혹은 새로운 원료를 써 (예:인조-합성섬유)만든 제품들이 동독에 있어서는 서독에 있어서 보다 그리고 기본수요에 충당되거나 혹은 단순한 품질로 만들어지는 상품들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 공, 사 부문 ”

(Dienstleistungen)

326. 소비자 가격의 제 3 군인 공, 사 부문부문의 수준은 이와는 달리 동독의 경우가 서독보다 훨씬 낮다(도표 A 104 를 비교할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독에서 50 년대 말엽 이래 거의 변화를 겪지 않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 우편 요금등인데 이들 요금은 서독에서는 여기에 관찰된 기간동안에 부분적으로는 크게 올랐다. 그러므로 1969 년 중반기에 동독에 있어서의 근거리 교통비용은 서독에 비해 보면 $\frac{1}{3}$ 쯤 밖에 되지 않으며 전기요금은 서독의 $\frac{1}{2}$ 이 잘되는 정도였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수공업부문 활동에 대한 보수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부문은 서독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에 특히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상당한 인상조치가 취해졌는데 동독에서는 가격변경이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노동자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원료가격이(공산품가격 개혁의 결과로)오름에 따른 원가상승은 소비품의 가격을 변화시키지않고 그냥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불로 상쇄되어 갔다. 동독의 통계는 1967 년도의 물가계수에서 도리어 1.5%가 줄었다는 종합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서독의 물가와 비교하여 보면 1969 년도에 동독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27%(서독의)밖에 안되었으며 구두장붙이 는데는 73%가 해당된다.

영화,극장 그리고 이 밖의 다른 교육적인 시설들에 의해

서 이루어지는 업적군들이 하나의 특별 그룹을 구성하며 이 부문들이 서독에서 보다 강력히 보조되어지고 있다. 완전한 가격비교란 것은 여기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 (주택) 칩세 ”

(Wohnungsmieten)

327. 국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인 칩세는 옛날 업무 건물일 경우 아무런 가격변화를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신축건물이던가 수리개조된 건물들의 경우만은 공, 산품 물가개혁 때문에 비싸졌으며 평균가격은 오른 칩세보다 약간 더 비싸다. 서독일에 있어서의 크게 오른 칩세와, 관련시켜 보면 때문에 동독에서는 서독의 주택과 비교될만한 주택을 빌릴 때에는 서독의 약 절반쯤이나 때로는 $\frac{1}{3}$ 정도 밖에 주지않고 되기도 한다 (제 4 장 참고할것)

“ 물 가 비 교 ”

(Preisvergleich)

328. 전체적으로 보아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 비교될만한 상품과 업적들은 가격면에서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이루어 가격이 서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활에 중요한 복무 부문인 칩세, 전기, 가스와 생계에 필수적인 식료품과 그리고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이의 소비 내지 사용이 특별히 장려되어야 할 공업상품들 (예 : 인쇄물, 운동기구등) 의 물가가 서독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싸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기껏해야 서독의 물가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값어치가 있는 식료품과 기호품 그리고 대부분의 공, 산품들 특히 장기용 소비품들은 서독의 물가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비싸며) 부분적으로는 DM로 표시되는 가격의 몇배에 해당되는 때도 있다.

b) 소 비

(Verbrauch)

329. 지금까지 취급한 가격비율은 동, 서 양독에 존재하고 있는 생계유지비의 현황을 규정하여 주고 있다. 소비현상을 어떻게 합쳐서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품과 부문업무에 대한 수요는 가용할 수 있는 수입의 여하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 구조는 특정한 생활상의 필요가 필요하게 나타나거나 하면 이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상품과 업무수행의 공급과 그 가격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다. 1966년 이래로 수입이 증가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보다 향상된 물품공급이 있게 됨에 따라서 서독에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어서도 소비구조가 명확히 변화되었다.

“ 소 비 구 조 ”

(Verbrauchsstruktur)

330. 소비구조의 발전에 관하여는 동, 서 양쪽에서 규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계예산 제출에 대한 경제통계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 6)

이들 통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생활상의 변영(복지)이 향상되면 될수록 식료품과 기호품에 대하여 지출되는 액수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어든다는 일반적인 경험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의 소비구조의 발전과는 달리 동독에 있어서는 기호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

331. 공 산 품 상 품 과 복 무 부 문 에 대 한 지 출 이 전 체 지 출 에 서 차 지 하 는 비 율 이 동 , 서 독 에 서 의 다 같 이 늘 어 났 으 며 이 와 는 반 대 로 식 료 품 에 대 한 지 출 은 그 비 율 이 줄 어 들 었 다. 서 독 의 경 우 무 엇 보 다 늘 어 난 것 은 (사 회) 복 무 부 문 이 다. 이 와 같 은 발 전 이 있 는 데 도 주 로 집 세 가 평 균 상 승 율 을 띄 어 넘 어 서 올 라 간 데 있 다 고 하 겠 다. 이 와 는 달 리 동 독 의 경 우 는 - 집 세 문 제 를 제 외 해 놓 으 면 - 복 무 부 문 에 대 한 지 출 이 늘 어 나 는 것 은 모 든 사 회 업 무 부 문 에 해 당 되 는 현 상 이 다.

도 표 39

4인 가족의 피고용자(가정의) 가계예산의 지출구조

	서 동		동 독	
	1960	1968	1960	1968
소 비 지 출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상 품 (물품)	75.2	69.5	86.4	84.7
식료품 및 기호품	45.3	37.6	52.8	47.7
식 료 품	38.5	31.8	43.1	36.7
기 호 품	6.8	5.8	9.7	11.0
공 산 품	29.9	31.9	33.6	37.0
구두(신발) 구두부속품	2.3	2.1	2.4	2.5
섬유(적물) 의류	10.9	9.6	12.5	13.8
건축필수품, 주거필수품	3.8	3.8	5.0	4.0
전 기 제 품	2.7	1.5	3.8	3.3
기 타 공 산 품	10.2	14.9	9.7	13.4
업적부문과 수리(선)	24.8	30.5	13.6	15.3
집 세	10.5	15.2	5.2	3.9
전기, 가스, 난방(종합적인)	4.6	4.9	1.6	1.9
교 통 업 적 (부담)	2.9	3.5	1.7	2.3
문 화 휴 양	3.7	3.8		2.9
기 타 (부담) 업 적 과			5.1	
수 리 (선) 부 문	3.1	3.1		4.3

자료의 출처 : 부기제원에 의하여 기록된 가계기록에서 얻은 결과
(경제통계)

서독 : 연방통계국, 가격, 임금, 경제통계, 전문총서 M,

제열 13,

동독 : 1962 년도와 1970 년도의 동독의 통계연보

332. 동, 서독에서 비슷한 발전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개 부문의 지출비율은 1968 년도의 경우에도 아직도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동독에 있어서의 피고용자 가계의 소비구조에 특징적인 것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에의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서독의 가계에서 지출되는 가계비는 부분적으로 동독의 배가 되며 이 부문에 대한 지출은 더 많다.

333. 동독의 가정(가계)에서 식료품과 기호품부문에서 식료품과 기호품 부문에서 지출하는 예산비율이 여전히 서독의 경우 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한 중요한 이유로는 값어치가 있는 식료품과 기호품가격이 비교적 높인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빵과 감자같은 기밀 식료품가격이 비교적 낮는데, 그렇다고 이로 인하여 가계비 지출이 본질적으로 균형이 잡히지는 않는다.

334. 동독의 가계예산에서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이 적는데 반하여 산, 공산품에 대한 지출은 배도 넘는다. 그리고 산, 공산품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독의 경우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서독의 소비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를들면 가계의 소비품목 구비현황에 나타나는 동, 서독간의 차이에서도 그 실례를 볼수가 있다(도표 A 105 를 참고할것)

도 표 40

2인 가족의 연금가계 지출구조

	서		동	
	1964①	1968	1964①	1968
소비지출전체	100.0	100.0	100.0	100.0
상 품 (물품)	69.6	63.8	83.1	82.9
식료품 및 기호품	51.1	46.3	61.6	59.2
식 료 품	43.3	38.5	49.0	45.8
기 호 품	7.8	7.8	12.6	13.4
공 , 산 품	18.5	17.5	21.5	23.7
구두(신발) 구두부속품	1.0	1.0	1.2	1.2
섬유(직물) 의류	7.2	6.3	8.2	8.1
건축필수품, 주거필수품	2.1	2.0	1.2	1.7
전 기 제 품	1.6	0.8	1.4	2.8
기 타 공 산 품	6.6	7.4	9.5	9.9
업적부문과 수선(수리)	30.4	36.2	16.9	17.1
집	14.7	19.4	7.3	6.2
전기, 가스, 난방(종합적)	7.5	7.8	2.2	2.4
교 통 업 적 (부담)	2.7	3.2	2.0	2.5
문 화 , 휴 양	2.4	2.5	1.0	1.6
기타(부담) 업적 과 수리(선) 부문	3.1	3.3	4.4	4.4

주 ① 1964년도 이전의 결과는 등독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자료의 출처 : 부가 제원에 의하여 기록된 가계기록에서 얻은

결과 (경제, 통계)

서독 : 연방통계국, 가격, 임금, 경제통계, 전문총서 M,

계열 13,

동독 : 1966 년과 1970 년도의 동독의 통계연보

c) 생계비 - 구매력 비교

(Kosten der Lebenshaltung - Kaufkraftvergleich)

335. 동, 서독 화폐 통용지역에서의 생계비는 상품 (Warenkorbvergleich) 을 도움으로 삼아서 서로 비교할 수가 있다. 동독의 M (마르크) 화폐가 서독의 DM 화폐에 대하여 갖는 구매력 사이에 소비자에게 존재하고 있는 상관관계에 관하여 현실적인 단위실정을 얻기 위하여 아무튼 지난 10 여년 동안에 소비상품공급과 소비현황의 집결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점이 여기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상대적인 구매력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동독에 있어서의 수입 (소득) 을 서독의 경우와 실제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된다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몇해동안의 매 임의 선정연도 (Stichjahre) 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통계를 산출해 냈다.

여기에서는 동독으로 부터 입수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가정들에 대한 경제 전반 데이터를 산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이를 산출해내는 대신에 평균 소비구조를 가진 (4인가정의) 피고용자 가계 (예산) 와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만 소비하는 (2인식구를 가진 연

금자 가정의 가계) 피고용자 가계를 예로 삼아서 동, 서독에 대한 통계를 산출해 냈다. (Warenkorbe의 산출에 관하여는 부록에 수록된 방법론적 주의사항을 참고할것) 이와같은 통계들은 여러가지로 선뜻 받아들일수 없는 요소들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러나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구매력 상관관계의 단위설정 차이점들과 그리고 발전경향들에 관하여 값있는 여러가지 관찰을 해 볼수 있도록 해 준다.

본 조사보고가 지니는 가치평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이한 국민경제간의 가격비교를 할 때에 생겨나는 유보점(留保点)에 관하여 이미 가격에 관한 문제를 다른 절에서 언급한 바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기 바란다(품질, 공급상의 난점등)

▪ 피고용자 가정의 가계(예산)
(Arbeitnehmerhaushalte)

336. 동독에 있어서의 소비상황에 따라서 집계한 피고용자 가정의 가계에서 사용된 물품단위는 1960년도 중간 1966년도 초와 1969년도 말의 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었다.

1960년초 : 649 M

1966년초 : 879 M

1969년중간 : 905 M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품과 업무수행소비를 할때 서독의 가정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DM지출을 했을 것이다.

1960년중간 : 499 DM

1966 년 초 : 740 DM

1969 년 중간 : 802 DM

즉 이 말은 M (마르크) 화폐를 사용할 때에는 서독의 DM 화폐보다 위에 언급한 각연도의 수치에서 보는바 30% , 19% 13%에 해당하는 마르크 (M) 를 더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므로 동독의 마르크 (M) 가 서독의 마르크 (DM) 에 대하여 갖는 구매력은 다음과 같다.

1960 년도중간 : 77 %

1966 년도 초 : 84 %

1969 년도중간 : 89 %

이렇게 볼때 동독의 M (마르크) 화폐가 지니는 상대적 구매력이 1960 년에서 1969 년에 이르는 사이에 꽤 늘어났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서독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물가상승이 크게 일어난데서 오는 결과라 하겠다.

337. 개별 품목별 지출에서 볼때 상대적 구매력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물가상관관계가 1969 년도에 있어서도 각개 물품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 3 절 a 를 참고할것)
가격고찰에서 확인한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동독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부문 (집세 , 전기 , 가스) 에 대하여 제출된 비용은 서독의 경우보다 낮다. 이 차이는 1966 년 이래 서독의 물가가 상승하므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커져나갔다.
이와 비슷한 발전경향을 보이는 것이 " 교육과 "

“ (Bildung und Unterhaltung) ” 부문이다.

동독에서는 국가가 보조하는 문화사업과 출판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독에서는 증가되고 있는 개인적인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M)화 지출이 현저히 낮다. “ 청소와 몸화장 ” (Reingung und Körperpflege) 부문에 대한 지출은 동서 양독에서 1960년 이래 거의 같은 액수의 제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문은 이발요금이 값싸기는 하지만 화장품들이 비싼데 동독의 수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의 수요가 동독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업 생산도구 품목들이 동독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쓸 비교적 가격이 비싼 값진 물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므로 인하여 이 부문에서는 동독 마르크(M)의 상대적 구매력이 나빠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도 표 41

4인의 피고용자 가정(가계)을 기준으로 본 (동독) 마르크의 상대적 구매력(%로 표시)

제5장

품 목	소 비 구 조 에 따 른 구 조				
	서 독 의 경 우		동 독 의 경 우		
	1960년중간	1969년중간	1960년중간	1967년초	1969년중간
식 량	75	82	76	89	89
기 호 품	47	49	49	49	50
주 택 (거)	133	227	133	189	227
난 방 및 조 명	135	189	137	159	189
가 구	66	61	67	55	55
의 류	51	65	52	64	67
청 소 , 물 화 장	101	83	100	98	100
교 육 과	96	79	105	102	115
교 통	103	66	105	91	95
소 비 지 출 전 체	75	83	77	84	89

주 ① 본 통계에 사용된 물품단위 (Warenkorbe) 는 동 , 서독에
 서 행해지고 있는 지속적인 경계통계와 국가의 공식 가
 격지수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물품단위와 소비구조 및
 동독에 있어서의 물품과 업적상황에 관한 소비통계에 나
 타나있는 자료에 입각하여 (바탕을 두어) 산출되었다.

점차적으로 증가해 가고있는 개인의 자동차 동력화에 따
 라서 “ 교통 ” 부문은 동 , 서독이 비슷한 발전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그렇지만 이 교통부문이 지금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으므로 우선 무엇보다도 공립 교통 및 통신수단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분야의) 상대적 구매력을 결정짓고

있다. 의류와 기호품 구입에서도 (동독의) 마르크화는 서독의 DM화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한 구매력상황을 보이고 있다.

기호품류가 1960년 이래 거의 아무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반면에 동독에 있어서 중간점의 가격 의류와 직물상품의 공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부분적으로는 가격이 인하되므로 동, 서독 마르크화의 비율은 동독에 유리한 쪽으로 개선되었다 - 예를 들어 인조섬유 제품들 -

식료품 부문에 있어서의 동독 마르크화의 상대적 구매력이 강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서독에 있어서의 물가상승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338. 여러가지 상품들과 업적부문에 나타나고있는 구매력 평가상의 이와같은 차이는 값진 상품소비의 경우에 이러한 소비는 주로 덜 중요한 생필품에 해당되는 것인데 - 동독마르크의 평균 구매력이 서독 DM화의 구매력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만약에 이 통계계산에 동독의 물품단위를 적용하는 대신에 서독의 물품단위를 그 바탕으로 적용할것 같으면 이와 동일한 이유로 동독 마르크화의 구매력 악화현상이 일어난다. 서독에서는 상품선택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상품의 양적인 면에서도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소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동독의 마르크화가 차지하고 있는 평균 구매력을 1969년도를 기준하여 볼것 같으면 서독의 DM화의 83%밖에 되지 않는다 (1960년 = 75%)

“ 연금자 가정의 가계 (예산) ”

(Rentnerhaushalte)

339. 여기에 논술된 계 경향은 대부분의 경우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용하는 가정의 가계통제를 내어 보더라도 확인된다. 가격고찰에서 보아온 것처럼 이와같은 생필품들은 동독에서는 비교적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 1966년초와 1969년 중간기를 기준으로 하여 2인 연금자 가정의 가계에 대하여 산출해 낸 통계에 의하면 2인가족의 연금자가계의 얼마안되는 물품단위 범위내에서는 -서독의 마르크화 (DM)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 동독의 마르크화 (M) 구매력은 거의 모든 필수품에서 피고용자 가계의 경우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것은 기호품과 의류뿐인데 기호품의 경우는 서독에서 보다 아주많이 비싼 커피값이 그 원인을 이루고 있으며 의류의 경우는 그 비율이 얼마 안되는 값진 의류품을 제외하고는 연금자들에게는 값진 의류를 또한 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튼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동독의 경우 아직도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여전히 서독보다 약간 비싸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보아 비교적 “비싼” 식료품 단 과자류, 우유제품과 지방질식품이 비교적 “싼” 감자, 채소 그리고 비스케트같은 것에 비하면 그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전체 평균을 내어보면 생활수준이 낮고 374M(마르크)에 해당하는 소비밖에 하지않는 가계의 경우, 동독에 있어서의 마르크 (M)의 구매력은 1969년 중간에는 대략 서독에 있

어서의 DM의 구매력만큼 컸다. 품목을 더욱 줄여서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만을 서로 비교할것 같으면 동독 마르크(M)의 구매력은 오히려 DM의 구매력보다는 높으며 그러니까 11%가량이나 높다. 1966년에 비하면 그러므로 이 상관관계는 서로 상이한 물가발전때문에 상당히 동독에 유리한 쪽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 연금자 가계의 측에서 나타난 동독에 있어서의 마르크(M)화의 구매력은 다음과 같다.

서독의 소비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볼때

1966년 초 88%

1966년중간 99%

동독의 소비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볼때

1966년 초 97%

1966년중간 111%

서독에 있어서의 DM의 구매력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비율의 구매력을 보이고 있었다.

도 표 42

2인 연금자 가계를 기준으로 산출해 본 M(마르크-동)화의(주1) 상대적 구매력

주 ① 서독에 있어서의 DM구매력에 비추어 본 M의 구매력

제5장

필 수 품	1966 년 초	1969 년 중간
서독의 소비구조에	비주어 불때 (주 2)	
식 량	89	92
기 호 품	44	44
주 택 (주거)	208	333
난방 및 조명	159	204
가 구	57	61
의 류	58	61
청소 및 몸치장	104	106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139	152
교 통	135	154
소비지출 전체	88	99
동독에 있어서의 소비구조에	비주어 불때 (주 2)	
식 량	92	94
기 호 품	65	63
직물 (섬유)와 신발 (구두 등)	56	62
기 타 상 품	91	98
업적분야및수선(수리)	167	227
이중에서 집 세	208	333
소비 지출 전체	97	111

주② 이 통계에서 사용된 상품단위는 동독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통계와 국가의 공식 가격지수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물품단위와 소비구조 및 동독에 있어서의 물품과 업적상황에 관한 소비통계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입각하여 (바탕을 두어) 산출되었다.

“ 순 수 수 입 ”

(Realeinkommen)

340. 개인 소비면에서 차지하는 동독의 대 화폐단위의 상대적 구매력이 1960년 이래로 높아졌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341. 평균적으로 서독의 소비구조와 동독의 소비구조에서 이 통계에 의하면 동독 마르크(M)의 DM에 대한 백분율로 본 구매력은 피고용자 가계에서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76에서 86으로 올랐으며 연금자 가계의 경우는 (1966년에서 1969년 까지) 93에서 105(%)로 늘어났다.
342. 낮은 수입 (300 DM/M에서 375 DM/M까지) 과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만을 소비하는 연금자 가계의 경우 동독의 구매력 비율은 크게 개선되어 M(동독 마르크)화의 DM의 가치보다 약간 높다. 1969년도에 서독에 있어서의 연금자가정의 평균수입이 그렇지만 실지는 매달 800 DM를 초과했으므로 동독에 있어서의 2인 연금자 가계의 “ 실제 수입 ” 은 오늘날 서독에 있어서의 연금자 수입의 약 $\frac{1}{3}$ 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343. 동독의 피고용자 가계에서 구매력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이것 역시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성장해 가는 서독의 액면수입과 보조를 맞추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즉 동독의 피고용자 가계의 “실제수입”이 서독의 경우와 비교하여 갖는 차이는 그러므로 약 32% (1960년)에서 약 45% (1969년)로 더 늘어났다.

4. 생활표준의 지표

(Indikatoren der Lebenshaltung)

344. 가계가 갖는 장기용 산업소비품의 설비 선발된 생산품들에 대한 매 인구당 소비, 관광범위와 저축 이 모든 것이 수입의 사용(이용) 수입의 구매력 소비구조와 그리고 끝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는 수입 잔여액들을 반영시켜주는 지표들이다.

“ 생활 수준 ”

(Lebensstandard)

한나라의 국민의 생활수준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와같은 생활표준 특징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밖의 여러가지들 중에서 수요가 있는 물품들을 그 종류나 질적인 면에서 만족할만하고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고 그 나라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형성되는 것이다. 이들 제 요소를 또 평가해 보

면은 생활표준비교의 결과가 계속해서 동독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동독국민의 여러면에 있어서의 급양이 상당한 부족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도의 공, 산업의 발달을 이룩한 나라로서 어떻게 하여 이와같은 부족현상을 이르기려 하는것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하겠으며 그래도 설명한다면 이는 체제상으로 오는 내재적 약점이라고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여기에 확인해 둘수 있다. 즉

- ◎ 동독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생산품목에서 식료품의 개인 구당 소비(량)가 서독의 경우와 일치되며 동독에 있어서의 기호품은 현재 1960년의 서독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공, 산 소비품가격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 ◎ (텔레비죤과 라디오같은) 장기용 공, 산품 개별 품목들의 가계시설은 동, 서독이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 ◎ 동, 서 양독에서 관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의미)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동독의 경우는 국내여행이 85%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서독에서는 국내여행과 해외(외국)여행의 비중이 대충 비슷하다는 점.
- ◎ 저축(절약)이 동, 서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저축

제 5 장

액수, 재산비축이 등, 서독이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 공적 부문부문 ”

(Öffentliche Leistungen)

345. 그러나 생활수준을 정하는것은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되는것은 아니고 개인가정의 가계가 요구할 수 있는 공적 업적의 종류와 그 범위와 그리고 그 질에 의하여도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 동독에 있어서처럼 만약에 집단적인 소비의 의의가 점증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까지 끌어 올려지면 여기에는 이와같은 사회적인 소비에 관하여 공식 통계에도 세분화된 자료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볼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화, 학문 및 사회적 목적을 위한 국가지출에 대한 통계보고가 서독의 재정 통계보다 훨씬 뒤져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자료에 질적인 차이가 있고 방법론적인 면에서 많은 의심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적인 업적이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제 4 장, 6 장 그리고 7 장을 참고할것)을 적어도 비슷하게 만이라도 규정해 내려고 시도를 해 봤다(이 점에 관하여는 부록에 수록되는 방법상의 참고사항을 볼것)

좁은 의미의 사회(적) 소비(문화, 학문 그리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국가의 지출)은 이에 의하면 지금까지 추측되었던것과는 달리 동독에 있어서 매 인구당(M 내지 DM로 계산하여) 서독보다 약간 낮으며 총 사회생산의 비율로 보

면 거의 조금도 높지가 않은 형편이다. 그리고 동독의 "구매력"이 서독에 있어서의 사회소비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동독의 수입이 확실히 낮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이것이 동독의 생활표준에 대하여 지니는 의미는 서독의 경우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 소비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는 확실히 다음과 같은 추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즉 동독에 있어서 학문과 교육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지출이(全體) 총 사회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의 경우보다 적어도 이 비교는 $\frac{1}{5}$ 쯤은 더 높을 것이다. 집단소비의 질적 차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다.

4) 선택된 물품들의 매 인구당 소비

(Pro-Kopf-Verbrauch ausgewählter Güter)

“ 식 료 품 ”

(Nahrungsmittel)

346. 동, 서 양독에서 벌써 몇년전부터 값진 소비품을 구입하는 명확한 경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 경향은 동독에서는 서독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식료품 소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일이다. 그런데 동독에서도 여전히 탄수화물과 지방질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표 A 105를 비교할것) - 1968년도의 경우 동독의 매 인구당 지방질(28.2kg) 밀가루(91.8

kg) 그리고 감자 (150 kg)의 소비는 서독에 있어서보다 훨씬 높다 (서독: 지방질 - 25.5 kg, 밀가루 - 65.4 kg, 감자 - 110 kg) - 예를 들어 빵 1 (완두, 콩 따위의) 꼬투리가 달린 열매와 감자들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그 줄어드는 속도가 서독의 경우보다는 천천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리하여 점차로 생선, 계란과 우유와 같은 단백질이 많고 값비싼 식료품쪽이 유리한 비율로 등장하고 있다. 이밖의 대부분의 식료품들의 경우에는 매 인구당 식료품 소비가 거의 비슷하며 과일의 경우만은 서독의 소비가 동독의 경우보다 높다. 그런데 동독에 있어서의 생과일의 매 인구당 소비가 - 그때마다의 매년 국내수확에 따라서 - 번번히 크게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수입되는 과일이란 것은 대부분 열대산 과일이며 그것도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기 호 품 ”

(Genußmittel)

347. 매 인구당 기호품 소비는 동독에서도 최근 몇년 동안에 계속하여 늘어났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동독에서 소비되는 기호품은 대략 1960 년도의 서독에 있어서의 소비수준에 달해있다. 이 부분의 소비가 동독의 경우 이렇게 적은 것은 동독의 수입(소득)수준이 낮은데서 오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첫째로 동독에 있어서의 이 부분의 물가가 서독에 비하여 훨씬 비싸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러나 바로 최근 몇년 동안의 서독에 있어서의 기호품

소비가 특별히 강력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 공 . 산업품 ”

(Industrielle Güter)

348. 공 . 산업 물품의 소비와 사용면에서 동 . 서독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관찰해 볼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와같은 비교를 하는것은 바로 아직까지 이 부문에 존재하고 있는 질적인 차이때문에 어렵다.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제일 가능한 것은 장기용 소비품목이 동 . 서독의 가정에 어떻게 설비되어 있는가 하는것에 착안을 두어 비교하는 일이겠다.

b) 장기용 가정물품 현황

(Bestand an langlebigen Haushaltsgütern)

349. 비교를 해보면 동독의 가정(가계)이 갖추고 있는 공 . 산업 소비물품의 오늘날 현황이 1960년대 중간에 있어서의 서독의 수준에 달해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자동차 기계화부문은 오늘날마저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

동독의 경우 전체의 $\frac{4}{5}$ 가 오토바이와 모페트로 이루어져있고 그렇지만 서독의 경우는 전체의 반은 승용자동차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동독에 있어서도 지난 몇해 사이에 승용자동차의 대수는 4 배이상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 수입(소득)별로 본 시설의 갖추 ”

(Ausstattung nach Einkommen)

350. 수입(소득)군으로(주 17) 나누어 가계(정)의 시설면을 비교할 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눈에 띈다. 즉 동독에 있어서의 수입이 낮은 층은-서독의 경우와는 달리-거의 자동차나 자동차류를 소유하고 있지않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반대로 텔레비존과 라디오의 경우는 동.서독이 모든 수입(소득)층에서 비슷하게 많이 갖추고 있고 그러나 전축과 녹음기같은 부문은 그렇지 못한데 서독의 저소득층이 동독의 저소득층보다 전축과 녹음기도 훨씬 많이 갖추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카메라 등의 사진기의 경우에는 동.서독이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독에 있어서의 이 부문의 생산품가격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 부문(카메라등)의 물품의 연령구조를 살펴볼것 같으면 서독이 유리한 형편이다.

동독에서 이들 부문의 가구물자가 개별로 서독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동독의 상류층의 경우는 서독의 수준과 같다. 이에 대한 해명(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독의 경우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의 주부들이 취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비교적 많은 저축을 하지않을 수 없으며 또한 높은 수준의 기계화(기동성)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질 적 차 이 ”

(Qualitätsunterschiede)

351. 그러나 시설수준이 비슷하다고 하여 그것이 곧 질적 차이를

인식토록 해주지는 않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동독에서는 완전 자동식 세탁기라는 것은 극히 최근부터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서독에서는 벌써 여러해 전부터 점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차이는 그 특색이 덜 뚜렷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상품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이들 가구들의 수리(선) 필요성이 어느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확한 데이터가 제시되어있지 않다. 물론 1970년 봄에 동독의 경제지도층에 의하여 높은 비율의 컬러 텔레비존과 자동식 세탁기가 팔리지 않은 점이 비판되어졌기는 하지만 서독에 있어서도 이들 기계류가 고장나는율이 늘어나고 있는점은 확실히 간파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동독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불유쾌한 영향과 작용을 끼친다.

왜냐하면 동독에는 이들 기계류의 보충(대용)품이 부족되고 충분히 수리할만한 가능성이 주어져 있지않기 때문이다.

o) 관 광 업

(Tourismus)

352. 사회복지가 성장되어가고 점증적으로 자동차 기계화가 이루어짐과 더불어 동, 서독에 있어서의 국민의 여행열이 크게 일어났다. 서독과 동독에 대한 현재 주어져있는 통계수치는 대략적으로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여간 동, 서독에 같은 경향이 일어나고 있는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 5 장

그 예를 들어 보이자면 1968 년도에 서독 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어서도 전 국민의 $\frac{1}{3}$ 이상이 그들의 휴가중에 여행을 떠났다. 여행집중도 (Reiseintensität) (15세 이상의 휴가여행자가 전체 국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보면 1966 년도에 서독의 경우 39% (주 18)였으며 동독은 35%의 비율을 보였는데 1969 년도에는 동, 서독의 비율은 40%를 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 경계적인 측면에서 구분한 국민의 각 그룹들이 여행에 참여하는 비율을 살펴보아도 위와 비슷하다. 물론 동, 서독에 있어서의 국민의 사회층 귀속문제가 언제나 동일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비교될만한 것이다. 동독의 전체 휴가자들중에서 약 85%가 서독의 경우는 약 50% 국내에서 그들의 휴가를 보낸다. (주 19)

동독에서 여행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동해안과 취링겐 산림지대이며 서독에서 많이 여행자가 몰리는 곳은 (前部) 알프스지역, 슈바츠 발트지역과 북해안과 동해안이다.

도 표 43

각 부문별로 본 휴가 여행자들의 여행비율 (1966) (%로 표시)

서	독	동	독
기 술 공	37	기 술 공	38
노 동 자	33	기술교육받은 노동자	34
사무원, 공무원	67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	30
자유직업인과 독립직업인	48	사 무 원	50
농업 종사자	8	지 식 인	65
가 정 부 인	40	독립직업인	38
실업자, 연금생활자, 대학생	49	P G H 회원 주-1	51
		L P G 회원 주-2	18
		가 정 부 인	31
		연금생활자	18
		대 학 생	41

주-1 : P G H : 수공업생산공동체 회원

(Mitglieder vo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des Handwerks)

주-2 : L P G : 농업생산공동체 회원

(Mitglieder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자료의 출처 : D I V O

서독 국민의 휴가여행

(Urlaubsreisen der Westdeutschen Bevölkerung) 프랑크 푸르트(a. M., 서독) 1966년,

P. 100

“ 경제 ” (Die Wirtschaft. 1968 년, 제 13 호, 부록
여행에 대한 진단
(Prognosen über den Fremdenverkehr)

“ 외 국 여 행 ”
(Auslandsreisen)

353. 동독 주민이 외국 여행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여기에서 제외됨) 그런데 개인들이 조직 해서 한 여행이 1968 년도의 경우 DER 여행사가 조직 해서 한 여행보다 배 이상이나 되었다. 아무튼 그러나 개인 여행을 할 때에는 제한된 량의 외화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받은 외화로서는 (캠핑 여행같은) 아주 허술한 여행밖에는 하기에 충분치 않다.

동독에서 외국으로 여행나가는 사람들이 잘 가는 곳은 1967 년 까지는 체코슬로바키아 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다음 소련,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의 차례였다. 서독에서 외국으로 여행나가는 사람들이 잘 가는 곳은 1968 년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이태리로 약 1/4 쯤씩 각각 되었고 1/10 이 각각 베네룩스 3 국과 스페인으로 여행했다 (주 21)

“ 비행기 여행 ”
(Flugreisen)

354. 지난 몇해 동안에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로 행하는 단체 비행기 여행을 위한 기회의 제공이 눈에 띄일 정도로 많아졌다.

그렇지만 이들 여행은 아직도 너무나 비싸서 동독 시민으로 이 여행을 감히 할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뿐이다. (주 22) 서독에서 행해지고 있는것 같은 싼 가격으로 전세계로 비행기 단체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것이 특색인 대중관광(Massentourismus) 같은 것을 동독의 경우 아직. 가능하지가 않다.

“ 여 행 비 용 ”

(Reiseausgaben)

355. 동독이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이 늘어날것 같으면 앞으로 서독의 경우와 비슷한 발전을 해 나갈것이 예상된다.

1966년도에 동독의 여행자 매인당 평균 지출은 285마르크(東)였고 서독의 경우는 520마르크(西)로 계산되었다. 1969년에 서독 여행자들은 1인당 평균 530마르크(西)를 지출했는데 시장 연구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동독이 이 수준에 달하려면 빨라도 1980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지출로 얻어지는 여행상의 편리한 점은 어느정도이며 이 밖의 업적들은 어느 정도인가는 양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d) 절약과 재산육성

(Ersparnis und Vermögensbildung)

356. 국민의 절약은 동·서 양독에서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늘어났다. 그렇지만 서독에 있어서의 절약은 절대적으로 그 액수가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1969년도에는 매 인구당 747 마르크(西)가 되므로서 1960년도의 액수의 거의 3배나 되었을 뿐만아니라 순수 수입의 12%에 해당하므로 1960년도의 8.5%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비율인데 반하여 동독의 경우는 1969년도에도 1960년도나 마찬가지로 7%가 겨우 되는 비율의 액수가 절약(저축) 되어졌다.

이리하여 1969년도의 동독에 있어서의 매 인구당 절약(저축)액은 322 마르크(東)에 달하는데(1960년: 278 마르크) 이는 수입의 증가가 비교적 약하고 그런데다가 고성능 공업소비재를 가정에 갖추므로써 늘어나는 지출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발전의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의 해명은 다음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저축과 재산형성은 동독에 있어서도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높은 사람들 특히 자유직업을 가진 독립취업자들(동독의 경우 농업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농부들과 수공업자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예로서 1963년에 이루어진 저축중에서 노동자와 사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였었는데 1965년 까지는 전체 저축(절약)액을 늘였는데도 노동자와 사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으로 줄어 들었으며

1968년까지는 약간 늘어나서 40%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는 계산이 산출된다 (주 23)

이와 동일한 기간에 서독에서 이룩한 전체 저축에서 노동자와 사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서 57%로 늘어났다.

“저축 동기”

(Sparmotive)

357. 저축동기는 개별적으로 보아 경험적인 면에서 확실히 말하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동독의 경우는 계획 경제에 특징적인 몇가지 현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다

- ◎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된 소비성향에 따르는 상품 공급의 불충분한 현실이 잠재적인 구매력 초과현상을 불러 이르렀다.
- ◎ 상품 공급은 계획에 없이 이루어지는 수입의 증액으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수요에 충분히 빨리 적응할 수가 없다.
- ◎ 상품의 높은 가격은 그만큼 오랜 기간을 두고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을 필요로 한다.
- ◎ 높은 가격의 소비재의 공급이 불규칙적으로 행해질 때는 짧은 시간안에 공급할 수 있는 높은 비율의 재고품 저장을 요하게 한다.

국정에 있어서의 저축자들의 동기는 많은 경우에 (반수 이상) 저축을 하므로써 리싼 소비재를 구입하고 휴가 여행을

제 5 장

보다 좀 오래 할려는 소망이 겠으나 동독의 경우 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인생의 만년에 필요할 생활보장을 덧붙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장기적으로 금전채력과 물질의 부를 형성해 나가려는데도 또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겠다.

도 표 44

개인 가정의 저축

(Ersparnis der privaten Haushalte)

자료출처 : 도표 A 88 과 A 89 를 참고할것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서									
	독									
단위 10만 마르크 (서독화폐)	16.1	18.2	19.9	23.9	29.3	35.7	35.0	35.4	40.8	45.5
순수수입에 대한 % 비율	(8.5)	(8.8)	(8.8)	(9.9)	(11.1)	(12.1)	(11.2)	(11.1)	(11.9)	(12.0)
국민 1인당저축 (DM로표시)	290	323	349	415	502	604	586	591	677	747
1960년 : 100	(100)	(111)	(120)	(143)	(173)	(208)	(202)	(204)	(233)	(258)
1963년 : 100	(70)	(78)	(84)	(100)	(121)	(164)	(141)	(142)	(163)	(180)
	동									
	독									
단위 10만 마르크 (동독화폐)	4.1	2.9	2.1	2.7	4.1	4.8	4.5	4.6	5.2	5.5
순수수입에 대한 % 비율	(6.9)	(4.7)	(3.5)	(4.4)	(6.3)	(7.0)	(6.4)	(6.3)	(6.8)	(6.9)
국민 1인당저축 (동독마르크로)	238	169	123	157	241	282	264	269	304	322
1960년 : 100	(100)	(71)	(52)	(66)	(101)	(119)	(111)	(113)	(128)	(135)
1963년 : 100	(152)	(108)	(78)	(100)	(154)	(180)	(168)	(171)	(194)	(205)

“저축 형태”

(SParformen)

358.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저축형태는 서로 명확히 다르다.

1969년도 서독에 있어서의 저축의 약 60%가 저축은행의 예금(Spareilagen)으로 이루어진 것이며(이중에서 8%가 건축예금)·25%가 유가증권을 통한 것이고 15%가 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동독의 경우는 이와는 달라 약 10%가 보험으로 이루어지고 2%가 유가증권을 통해서 형성되고 88%가 저축 은행의 예금으로 되어있다. 건축예금은 약 3%가 되니까 별로 비중이 없다. 이것은 동독에는 금전재력을 물질재력(Sachvermögen)으로 (Geldvermögen) 옮겨 놓을 가능성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동독에 있어서의 1가족 전용주택 건립(Eigenheimbau)이라는 것도 서독과 비교해 보면 이와 비슷한 의의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제 4 장 참고할것)

재산의 축척(형성)은 이렇게 볼 때 동독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금전재력의 축척에 국한되어 있다. 국민 1인당 약 3200마르크(東)로서 1965년도의 동독은 서독의 약 절반에 달했다. 여기에서 또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부분적으로 비싼 소비재 구입을 위해서 예치해 놓은 저축(금액)의 구매력은 서독 마르크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이다.

도 표 45

1969년말 동, 서독의 사유(개인) 금전재력(주1)

주 - 1 :

서독 : 개인 (私人) 의 금전 투자

동독 : 신용거래재단에 대한 국민의 저축예금과 보험계약자
의 저축대변 (SParguthaben)

화폐유통상의 변화는 고려치 않았음.

투 자 형 식	서 독			동 독		
	단위: 10억 만마르크(서)	국민 1인 당마르크	% 율	단위: 10억 만마르크(서)	국민 1인당 마르크(동)	% 율
은행의 저축예금주②	240	3,945	60	48	2,810	88
유 가 증 권	100	1,645	25	1	60	2
보 험 대 변주④	60	985	15	6	335	10
합 계	400	6,575	100	55	3,205	100

주 - 2 :

서독 : 은행 저축예금, 건축저축예금, 기한부투자, 채권 등

동독 : 계정저축예금 (Kontenlinlagen), 건축저축예금 일람
저축예금 (Statistisches)

주 - 3 :

서독 : 생명보험과 연금금고에 대한 청구권

동독 : 보험계약자의 저축대변

자료의 출처 :

서독 : 독일은행

월예보 (Mona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1970년 8월, 페이지 31

제 5 장

동독 : 1970 년도 동독의 통계연보 페이지 332, 333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5. 부 록

(Anhang)

방법론적 참고사항

(Methodische Hinweise)

2b) 개인소득에 관하여

서독과 동독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일은 동독에서는 국민 소득에 관해서 공식 통계가 얼마 발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독의 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서독의 정의와 차이하기 때문에 완전히 비교할 수 없으므로 어려운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의 발전에 관한 단기적인 보고서같은 것도 발표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서 동독이 소득에 관한 통계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수입에 대한 통계에 치중하고 자립 취업자나 조합회원들의 생활수준같은 것은 공식 통계를 통해서 발표되지 않는다. 연금 생활자들의 수입(소득)에 관해서는 자세한 데이터가 사회보장 정책의 테두리안에서 취해지는 평균 연금으로 제시해 있다.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연금 생활자들의 전체 소득 구조와 발전에 관해서는 그러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공식자료가 발표되어 있지 않다.

서독의 경우에는 자세한 소득에 관한 통계가 발표되어 있는데 국민경제 전체통계의 부분자료에 입각되어 있는 것이며 이들 자료는 동독이 발표한 자료에 적용되도록 고쳐지고 필요한-경우에는-추정계산으로 보충하기로 했다.

1965년도에 있어서의 사회, 경제적 관점에 따라 구분한 그룹에 의해서 매월 평균 소득을 개관하는데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가 이 계산에 사용되었다.

	단위 : 1000 명	
	서 독	동 독
노동자 (취업하고 있는 연금생활자 포함)	21,780	7,045
자립취업자 (동독의 경우 조합회원 포함)	3080	1,330
연금생활자	8,355	2,535

동독의 통계는 모든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소득)에 관해서는 아무런 통계자료로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통계에 다루어지지 않은 취업자군에 관한 통계까지 합쳐서-추정되어지는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자료로 쓰기 바탕은 DIW가 행한 소득분포 계산에 대한 대 통계자료다.

이 통계자료는 1965년도에 대해서 발표된 사회, 경제 군으로 나눈 동독주민의 현금 수입구조와 동독의 전문 학술 문헌들에 산발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집계된 것이다. 그 결과는-1960년을 기준년도로 삼고 보면-그 이

전의 추정 평가에 의한 통계 산출의 경우 보다 약간 차이가 있다(약 5%)(다음 저서를 참고 해 볼것!

(Bruno Gleitze: 7개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동독의 공·산업 - Die Industrie der Sowjetzone unter dem gescheiterten.deBjahrPlan) 백림 1964년도간, 페이지 90 이하 참조)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나타나는 평균 노동자의 수입은 파트 타임 취업자들의 범위가 어느만 한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참고해 줄 필요가 있겠다. 서독에 있어서 파트 타임으로 취업하는 사람의 수는 동독의 경우보다 비교적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한 경제분야에 대한 평균 노동자들의 수입은 동독의 경우 완전 취업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수입통계로 대표된다.

이와같은 자료는 전체 노동범위를 완전 취업 노동자들이 경영체들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시간에 맞추어 환산하므로서 얻어진 것이다. 서독에서는 다른 어떤 부문에서 보다도 더 일정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다른 부문과는 다른 부분노동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는 완전 취업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이같은 환산통계는 자주 행해지지 않고 가끔 가다가만 행해 진다.

서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상의 전체수입을 동독의 완전 취업자 수입과 비교하는 것은 틀림없이 서독에는 불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동, 서독이 국민 소득이라는 말을 개념 정의할 때 바탕으로 삼은 개념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사한 일치점을 가능케 할 절충점이 적어도 발견되어야 겠다.

통계적으로 가능한 한도까지는 그러므로 서독에 있어서의 노동자 소득을 대표할 수 있는 높은 소득을 통계근거로 삼았는데 이것은 그 개념 규정으로 볼 때에 동독의 완전 취업률 하는 노동자들의 소득과 대부분 일치되는 산출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사무원들에 대해서는 동, 서독이 서로 다른 노동력 투입을 하고 있는것을 전연 고려치 않고 높은 실제소득을 통계의 바탕으로 사용했다.

이 분야별 비교에서 공, 사 부무부문과 개인 및 국가적인 사업부문의 수입은 제외되었으며 동독의 경우 이 부문에 관해서는 아무런 통계자료가 발간되어 있지 않다:

2 d) 개인 가정의 수입에 관하여

서독에 있어서의 가정의 수를 산출해 내는에는 연방 통계국의 통계수를 바탕으로 했다. 동독의 가정수를 산출해 내는에는 1964년의 국민인구조사와 직업조사를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여기에다가 민세혹저 조사통계자료들을 더 참고해서 추정 산출해낸 것이다.

가정의 수 (단위 : 1000)

	서 독	동 독
1960 년	17,875	6,690
1964 년	20,370	6,635
1965 년	21,385	6,890

동독의 수입에 관한 통계는 개인 가정의 순수수입에 관하여도 국민 전체계층에 관한 종합적인(광범위한)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가계 수입상황에 관하여는 꽤 분명한 통계를(전체적 합쳐서) 제시해 주고 있는 편이다. 노동자와 사무원들에 대해서는(1967년 까지) 수입층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은 평균 수입치(Einkommenswerte)에 대한 통계보다도 훨씬 더 잘 국민수입(소득) 분포의 특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사회 계층별로 구분된 수입통계는 가정의 규모 여하에 따라서 또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표준에 대한 표징들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 이로 인하여 쉬워진다.

서독에서 지금까지 발표(刊)된 결과들에 대하여는 DIW가 작성한 서독의 수입계층 구분이 맞 비교되어 대조되어 있다. 검사 통계결과에 의하면 이용가능한 자료의 형질을 바탕으로 하여 계층별로 구분된 수입군과의 수입비교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추출된다.

서독에 대한 통계 계산은 DIW에서 계속해서 실시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관하여는 경제문제 연구재단지에 보고서가 발표되어 있다.

1968년도의 동독에 있어서의 연금 생활자들의 가계비 수입 계산은 Mitzscherling의 방법에 따라서(동독에 있어서의 사회보장, 백림 1968년간, 페이지 86) 산출해 냈다.

이 통계를 해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그 바탕으

로 사용되었다.

사회수입자 (단위 : 1000 명)

남 자	1,150
여 자	2,300
계	3,450

취업하고 있는 연금자 (단위 : 1000 명)

남 자	310
여 자	390
계	700

취업하고 있는 연금자들의 평균 노동수입

(매월 : 동독마르크 (M) 로 표시) 265

결혼 고령연금자

(단위 : 1000) 760

독자수입을 갖지 않은 연금자 부인

(단위 : 1000) 230

수입이 있는 연금자 부인

(단위 : 1000) 530

독자수입을 가지고 있는 연금자부인들의 매월 평균 연금

(동독, 마르크 (M) 로 표시) 150

자료의 출처 : 동독의 통계연보 1970 년

DIW의 추정평가(서) 백립

3 C) 생활비 - 구매력 비교

구매력 비교에는 -소비상황의 변천세 맞추어서 - 당해

조사연도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상품을 비교의 바탕으로 삼

았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해 나감에 있어서 각개 상품의 가격을 서독의 물품가격으로 뿐만 아니라 동독의 물품가격으로도 평가되었다. 이 통계의 산출은 DIW에서 행해졌다. 이들 상품 품목의 내용은 이 계산을 해내기 위하여 서독의 소비 구조에 따라서 집계되어 졌다. 여기에서 중간 정도의 수입을 가진 4인의 노동자 가정과 2인의 연금자 가정생활에 대한 당해 경제 연도 통계결과와 4인 노동자 가정의 생계 지출비에 대한 당국의 공식 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를 수행했다.

1960년도에 대한 상품단위 조사를 위해서는 1958년도를 기준년도로 삼았으며 1966년의 경우는 1962년도를 그리고 1969년도의 경우는 1962년도를 그 기준년도로 삼았다. 그러나 1968년을 기준으로 하여 생겨나는 가격변동을 도움으로 하여 계속 산출해 낼 구조에 입각하여 이를 수행했다. 여기에서 각 단위의 지위수로 여러가지 서로 상이한 수요분야에 걸쳐서 얻을 수 있는 가격자료를 고려하여 약간 요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무튼 이렇게 얻어진 비교의 자료는 상당히 풍부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생활(생계)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상품들과 효용성이 고려되어질 수 있었으며 이들 각 그룹의 대표치로서 간주될 수 있을만 하다. 동독에 소비구조에 따른 계산을 산출해 내기에 필요한 자료는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며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비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는 각개 가정예산 형태에서 소요되는 전체 소비에 대해서 차지하는 몇개 안되

는 수요품목의 비율과 몇개의 소비품에 대한 매 인구당 전체 국민적 소비 비율뿐이다. 식구 4명의 노동자 가정과 2명의 연금자가정의 가계에 대한 동독의 통계연보에 발표된 소비 구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소비재 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밖의 정보들에 의해서 보충되고 그리고 서독의 경제 통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의 도움을 받아 동독의 소비구조에 따른 상품 통계를 산출해냈다.

1969년도의 경우는 서독의 소비구조가 약 285개조(positionen)로 산출되고 동독의 소비구조는 약 220개조로 산출되었다.

평가를 위해서 사용된 가격들은 될수 있는한 동, 서독의 공식가격 통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매스컴과 물품 카다로그에서도 정보를 수집했으며 서독과 동독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면의 가격교차 결과를 또한 참고하였다. 그렇지만 일련의 상품 개조들의 경우에는 비교가 불확실한 때도 있을테니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수자로 표시될 수 없는 공급상품과 효용성의 질과 사용가능성 덕분에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정확한 동, 서독의 가격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기 때문이다. 이런점으로 보다 은행과 보험회사, 숙박영업과 여행사와 그리고 건축업 부문의 수공업 영역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항목들은 본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제 5 장

도 표 부 록 V 1 1

1967 년도의 문화, 학술, 사회목적을 위한 국가지출의 비교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단위 : 백만 DM (서) 내지 M (동)		총 국내생산에 비추어본 비율(%)	
사회보장 주① (보건 및 사회면)	주② 30,309	주③ 7,040	6.1	5.7
일반교육을 위한 학교	주④ 10,427	주⑤ 2,762	2.1	2.3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 전문학교	8,067	⑦ 2,736	1.6	2.2
대학, 학문(학술)	주⑨ 1,577	주⑩ 743	0.4	0.6
체육 (운동)	466	151	0.1	0.1
합 계	50,846	13,432	10.3	10.9
(국민 1인당 DM(서) 내지 M(동)로 표시	(849)	(786)		

주 - 1 : 사회보장속에는 사회보장, 사회원조, 청소년 원조, 공적인 보건의업무, 전쟁화생자 보상, LAG, 실업자 보험등이 포함 되어 있다.

제 6 장과 도표를 참고할것

주 - 2 : 순수지출 (93 997) : 부담금 수익 (47,675 : 연금과 공직에 있어서의 아동 보조금 절반 (12,560) + 공무원의 양로보조를 위한 국가의 임의 지출(액) (1350) : 자산소득과 기타 금액 (4803) = 사회보장을 위한 공금 (자료) (30,309)

주 - 3 : 순수지출 (15,121) : 부담금 수익 (8,181) + 투자 (100)
= 사회보장을 위한 공금 (자금) (7,040)

주 - 4 : 이 속에는 학교운영비와 기타 수업부문도 포함되어 있음.

주 - 5 : 이 속에는 기숙사, 연구소, 교사 보습교육을 위한 카비니트와 시설, 기타 학교목적용 위한 시설, 학교식당, 아동식당요금, 개척단 기숙사, 개척단 체류소, 기타 개척단 야영, 휴가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주 - 6 : 학문의 목적을 위해서 지출되는 이 밖의 지출비를 포함하고 있음.

주 - 7 : 이 속에는 보건의료의 학술적인 육성과 보습교육, 경영단체들에 있어서의 직업교육비중에서 50% 포함.

주 - 8 : 국민학교 포함

주 - 9 : 교회관계가 포함되어 있음.

주 - 10 : 영화관, 영화업, 텔레비존, 라디오 방송국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구들의 비용을 제외한 대중문화사업 (700)

자료의 출처 :

서독 : 연방 통계국 (Statistisches Bundesamt, 재정과 세무 (Finanzen und Steuernk) I/II 계열 (Reihe) 용적인 재정경제, 1967

동독 : 동독의 통계연보, 1970년도 (판)

제 5 장

4) 생계 표준 표시

(Indikatoren der Lebenshaltung)

협회의 "사회 소비"를 뜻하는 문화, 경제, 사회의 제 목적을 위하여 지출되는 동, 서독의 국가 지출의 비교는 제도상의 차이점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상이점들을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했다. 이와는 반대로 원칙적인 개념상의 차이점들은 일부분만 제거될 수 있었다(사회보장에 관한 금액을 동독에서 보건부순 소관 예산에 전입 시켜주는 일 제 6장을 참고할 것) 동독의 예산속에는 총예산이 내포되고 서독의 예산속에는 순수예산만 포함되기 때문에 동독의 예산지출을 그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우리만큼 과대평가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재정부담이 경영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만 취급했다.

(도표 A 110로 참고할 것)

공적 자원으로 부담되는 서독의 관리 보상금중에서 그러므로 사무원의 연금 보장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지불하는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서독에 있어서의 공적 업무수행상 지불되는 아동 보조금중에서 50%가 여기에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포함) 연방정부의 아동 보조금법에 따라서 산출된 대상자들의 범위에 어느정도 근사하게 접근토록 하기 위하여

각 직장에서 행하는 직업 육성교육 비(용)는 1967년 서독의 경우 국가가 부담한 것은 적은 액수다(1억만 마르크

DM이하) 동독에서는 직장 직업학교(Betriebsberufsschulen)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서독에서는 이와는 달리 국고가 재정부담을 직업학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동독에서 직장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생겨나는 지출의 절반인 3억 2,500만(동독) 마르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동독의 국가 예산에서 "문화목적을 위한 기타 지출(액)"이란 항목 속에는 서독같은 경우 국가가 그 재정부담을 하지 않는 부문(영화관, 영화 촬영소, 회사임대, 통신업무소, 텔레비죤, 라디오 방송국등)들에 대한 지출이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7억 6,200만(동독) 마르크 중에서 정말의미의 "기타 문화 목적"에 사용된 예산은 6,200만(동독) 마르크뿐이다(종교단체 등에 대한 활동액 등)

1967년도간 동독 통계연보 413페이지에 의하면 1964년과 1965년도 국가 지출에는 투자액도 포함되었다고 밝혀졌다. 1967년 이후에 간행된 통계 연보들에는 투자액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지적되어 있다.

문화, 사회 부문에 있어서의 투자에 관한 이 밖의 다른 모순점들이 투자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1967년에 행해진 것으로된 투자액은 3억 9,100만(동독) 마르크(동독 경제 연보, 1969년 페이지 44)로 언급되기도 다른 한번에는 9억 7,500만 동독 마르크라고도 언급되었다. (동독의 1970년도간 통계연보, 44페이지)

서독의 국가예산 속에는 투자를 위한 지출로 포함되어 있

제 5 장

으므로 동독의 경우에 대하여 투자액을 10 억만 (동독) 마르크로 추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포시켜 보았다. 사회보장 : 1 억만 (동독) 마르크, 일반교육을 위한 학교와 기타 학교를 (학문도 포함) : 3 억 5,000 만 (동독) 마르크, 예술, 문화에 1 억 5,000 만 (東) 마르크, 체육 (스포츠) 에 5,000 만 (東) 마르크씩 분배

4 b) 장기용 가구현황

(Bestand an Langlebigen Haushaltsgütern)

조사시기 : 서독 : 1969 년 1 월

동독 : 1969 년 8 월

서독의 경우 가구 시설정도를 매 100 가정당 조사하였다. 가구 시설현황이 아니라 정도를 조사했으므로 한 가정에 같은 도구가 여러 겹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로 조사 처리했음 비교될만한 수를 얻기 위하여 몇개의 가구들의 경우는 시설도를 계수를 써서 높여 놓았다. (동일한 가구시설을 갖춘 가정이 5% 이상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므로서 같은 가구를 여러겹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통계숫자에 나타나도록 여기에 사용된 계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 평가되었다.

	합 계	수 입 군 별		
		하 위	중 위	상 위
승용자동차 (PKW)	1.07	1.00	1.07	1.15
자 전 거	1.50	1.50	1.60	1.50
라 디 오	1.10	1.05	1.10	1.15
사 진 기	1.10	1.00	1.10	1.15

수입군별은 동독의 경우 가계 순수수입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렇지만 이들 세수입군의 수입한계선은 밝혀지지 않았다. 서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계 순수 수입에 따라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수입군으로 분류했다.

하위군 : 800마르크(西) 이하 (41.3%)

중위군 : 800마르크에서 1,200마르크까지 (29.6%)

상위군 : 1,200마르크 이상 (29.1%)

매 100 가구당의 동독가정이 갖춘 가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군에 따라서 한 구분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첫째의 경우는 매년의 국내 소비층에서 누적적으로 산출해 왔는데 따라서 여기에는 쓸모없는 가구나 혹은 이미 폐기된 가구들로 포함되어 있다. (예외 : 자동차, 라디오, 텔레비존) 이에 대하여 수입군에 따라서 행한 가구 시설도의 경우는 대표적인 가계여론 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것이다.

제 5 장

제 5 장에 대한 주석

1. 동독의 마르크 화폐는 일종의 국내화폐로서 그 구매력은 중앙 경제관리기구(Wirtschaftsverwaltung)에 의하여 확정되어지며 이 화폐에 대한 환시세(환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상품가격들도 고정되어 있으며 세계시장 가격과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전체 경제업적인 사회생산(품)은 동독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에 따라서 평가되며 대부분 소비상품에 제기되는 간접세가 나타내어 있는 일정하지 않은(효율) 작용이 사회생산의 소비측면에서 볼때 가격구조를 이그러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2. 여기에 관하여는 특히 H.Seidler : " 동독경제의 현재 기본경향 " in : Vierteljahrshäfte zur Wirtschaftsforschung 1965, Heft 2, S.231 을 참고할것. 그리고 P.Mitscherling : 신 경제체제의 점증하는 감독주의나 아니면 확충인가? in : Vierteljahrshäfte zur Wirtschaftsforschung, 1969년, Heft 2, s 227 (페이지)
3. 경제학 사전, 백림(東) S,506 에 " 사회주의 "를 찾아 참고할것.
4. 초과 달성 임금은 사전에 명시된 ^(정) 규범에 대하여 지불된다. 이 규범에 명시된 양을 다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초과 달성 보수는 주어진 규정을 이행함으로써 이미 지불된 것과는 다르다. 규정을 미 달성함에 있어 규칙적으로 100의

성과에 있어서 계획된 초과 달성 보수의 "감액"은 초과 달성의 증가보다 훨씬 높다.

1966년 동부 독일의 준공업 기계설비에서 계획규정에 따라 지불된 특별 수당은 3% 미달 성과일 경우 초과 달성 수당보다 매시간 당 0.45 마르크의 감액을 보았고 약 7%의 과도 성과일 경우 0.14 마르크의 증가를 보였다. (예 노동과 노동법, 백림(동독) 1966, 6 Heft 129 S)

5. 성과는 결부된 급료의 일부는 변경된 규정에 따른 결과도 임금과도 자꾸만 거리가 멀어짐으로 무엇보다 임금에 따라 설정된 보상과 급료는 근무의 영역에 있게 된다. 동부의 독일의 임금 계약체제는 그 까닭에 현재로는 임금 급료와 이제까지의 초과보수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성립하는 기본보수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서 규정시간외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들은 생산 노동자를 위한 보상 집단내에서 자동화, 기계화 그리고 생산 조직의 기준에 따라 구별된다.
- 예,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와 동부 독일에 있어서 그것의 적용, 백림(동부) 1959, 815 S

6. 예, 노동 경제, 백림(동부), 1968, 578 S

7. 1969년에서 70년으로 바뀔 무렵 중앙에서 지도하는 VEB에서의 1.7만의 노동자와 피고용인들은 평균적으로 월급의 $\frac{2}{3}$ 정도의 일년 특별 수당을 받았다.

생활수준을 보다 잘 나타내는 가정수입의 설정은 이에서 사회경제 구조에 따른 이제까지의 임시 수입(상여)과 첨가

제 5 장

하여 지불되는 사회 수입을 포함하여 개인 수입에 의해 탐색된다.

9. 약천후의 현금 지불을 포함하여 1960년 동안 건축업에 있어 평균적인 노동취업자의 수입으로서 577 마르크의 총액이 계산된다.

10. 고등학교 교사에게 지불된 사례금은 서부 독일이나 동부 독일에서나 법을 통해 다시 말하면 법령을 통해 규정화되었다. 1970년 동부 백림의 훔볼트 대학의 정상생활하는 교수(결혼해서 두 자녀를 가진 한 세대)가 총 3,700 마르크의 월급을 받고 있는 반면 서부백림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매달 받는 1,000 마르크의 강의로 총액을 첨가하여 3,600 마르크의 보상금을 받는다.

새로 임명된 연구 조교는 동부에서 800 마르크 서부에서는 1,700 마르크를 받는다. 실력있는 학자를 위한 특별급료는 양 국가에서 선출된 결정권있는 장관 예하면 Senator의 동의에 의해 보증된다.

이들은 1970년 동부 독일에서 최소한 4,000 마르크, 서부 독일에는 매달 6,500 마르크에 이르렀다.

동부 독일 고등학교 여선생이 측면 보수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남편 부조로 해서 향상을 약화시키는 부조부담을 아마도 서부 독일에서는 "미세한 절차"를 통해 이룬다.

12. DIW의 계산 백림

13. 모든 가정의 $\frac{1}{5} - 5$ 단계에 따라 주어진 개관은 총수입에 그 때 그 때마다 부가된 배당에 대한 구조를 지적해 준다. 수입배당이 보다 동등해지면 해질수록 생계비와 수입 부분이 서로 잘 일치한다. 말하자면 전람회 그림에서 대각선의 로렌즈 곡선이 보다 가까워진다는 말이다.

(예, 전람회 그림)

14. 감자, 야채, 과일류에서는 평균값이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15. 이러한 무리는 식료품과 기호품 아닌 모든 상품, 즉 각가지의 필수품 카테고리의 산업제품의 모든것을 총망라했다. 그들의 질은 비교 영역간에서 비교되나 가격비교는 어렵게 한다.

예하면 이것은 직조물과 옷감에 있어 모양 내구성 견고성에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무늬 장식과 세공에 적용된다.

가정 세목과 그밖의 기계제품에 있어서 여러가지 삽입물과 여러가지 원료의 가공 외에도 여러 변칙이 기계설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예를 들면 사진기, 방송기, 전기 소품에 있어서는 비슷한 상품을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전기 대형 품목에서는 비슷한 전문적인 테이타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예, 목록.A103)

제5장

16. 동부 독일의 통계학에서는 여러가지 가정 유형을 위해 구성된 몇개의 필수품 군에 따라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 그 4명의 노동취득자 가정의 테이타가 재현되었다. 이 테이타는 어떤 경우도 총 주민에 대한 평균치를 대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노동 취업자의 평균적인 필요판계에 가까웠을 뿐이다.
17. 동부 독일의 공적인 통계학에 의해 발표된 가정 설비정도는 매 100 가정의 유지상태의 비교가 수입군에 따라 구성된 가정과 함께 인식되듯이 다만 유보상태에서만 유용하다. 텔레비와 라디오의 기재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모순은 하급 수입군이 넓은 수입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반면 대개 상급의 수입 한계선이 훨씬 위쪽으로 쪽 올라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으로서는 이 상호 불일치는 밝혀질 수 없다. 이 불일치성은 여러가지 조사절차가 두개 상태의 증거문에 기초를 두고 있는 까닭이다.
18. 서부 독일 : 문헌대학의 외국 무역을 위해 독일경제기구통
동부 독일 : 경제 , 1968, 13 Hefte, Beilage
19. 이러한 여행의 절반이상이 개별적으로 조직화되었는 바 10%는 여행사 DER에서 주선되고 15%는 FDGB의 약 $\frac{1}{4}$ 과 고용자에 의해 주선되었다. 이로서 약 7만 중에 약 1.1만이 매해 유치된다.
FDGB 회원은 제조업자의 여행수당의 혜택을 입는다.

자기가 취업하는 고향과 FDGB 집에 매해 한국 내지 이주 동안의 거주에 대한 값은 30에서 110 마르크의 수입정도와 취직자리 질을 유지한다. 1968년 한해 동안 평균값은 80 마르크로 산정되었다. (1970, 동부 독일의 통계학 연감 S 410과 S 495)

20. 독일 국내의 여행 교통은 독자적인 위치를 취한다.

1968년 1.3만의 서부독일의 시민들이 (전적으로 동부 백림) 동부 독일에 체류허가를 통고한 후에 불과 몇일을 여행할 수 있는 반면 동부 독일의 거주자 일만명 이상이 적어도 4주동안 서부 독일에 있는 그들 친척을 방문했다. 이러한 금리 생활자의 여행은 분명히 개관하여 43 회르 파 악되는 여행에서는 고려해 넣지 않고 있다.

21. 1969년 오스트리아 (27%) 이태리 (25%)가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스페인/볼루갈 (15%) 스위스 (7%) 프랑스 (5%) 와 유고 (4%)가 그 뒤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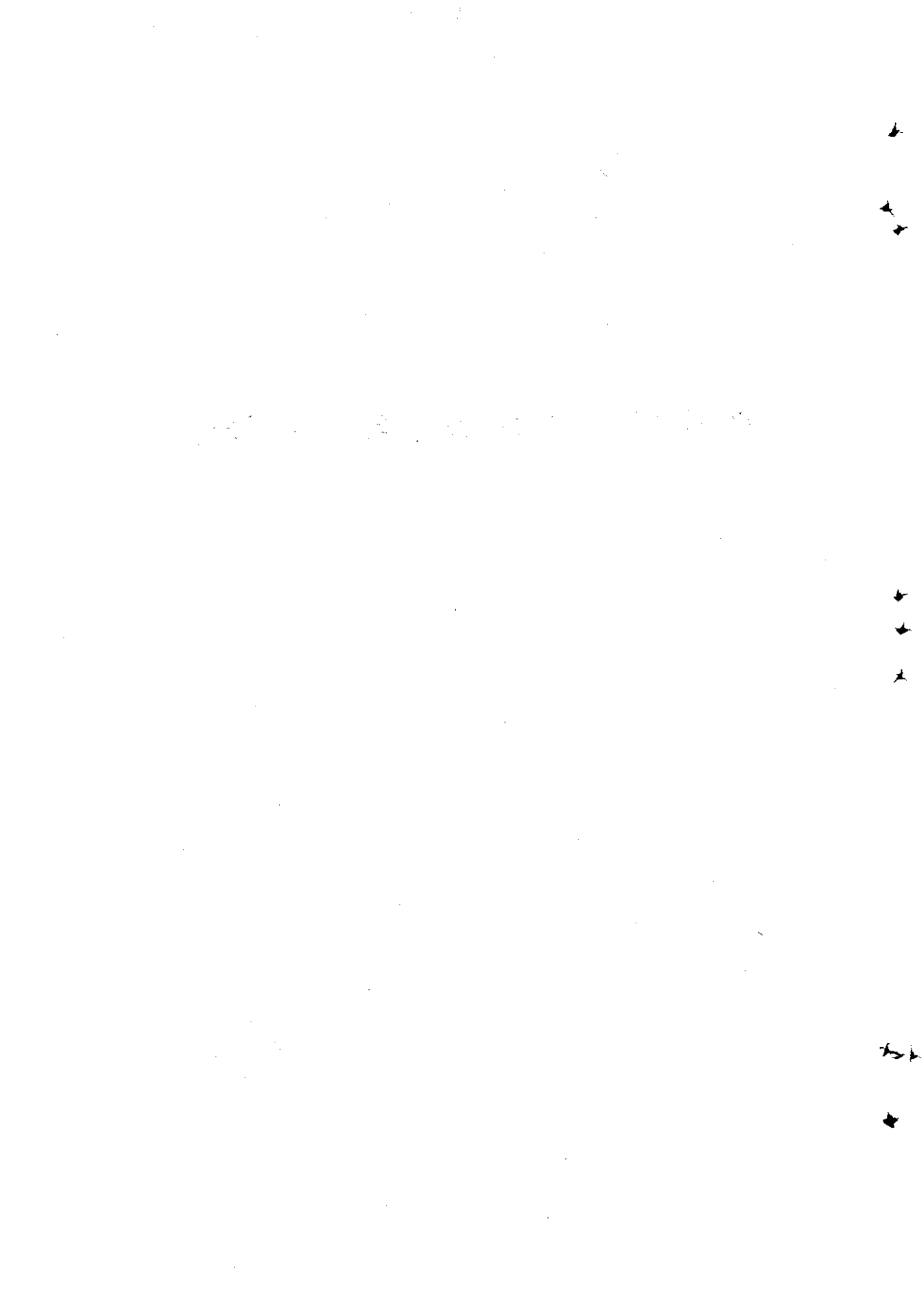
22. 예를 들어 8회 운행하는 모스크바는 제닌그라드 향발 비행기 여행은 동부독일 시민에게는 650 마르크, 서부 독일(백림: 여행카테고리)에는 589 마르크, BZ에는 717 마르크가 먹힌다. 태양의 해변 불가리아 (백림 출발: 호화-카테고리) 발 21회 운행 비행기 여행은 동부 독일 시민에게는 1,350 마르크, 서부 독일 (BZ, HS) 시민에게는 875 마르크가 먹힌다.

제 5 장

(예 , 1970 , 백림 (동부) 동부 독일 여행 예상 , 서부독일의 여행소 목록)

23 . 예 , 동부 독일의 통계연감 , 1970 , S 363 , 통계실무 .
1966 , 8 Hefte S 337 .

제 6 장 사회 보장의 기본측면



제 6 장 사회 보장의 기본측면

(Hauptaspekte der Sozialen Sicherung)

☒ 서독에 있어서의 사회 보장 체계는 제도상으로 아주 많이 분화되어 있는 반면, 동독의 체계는 크게 중앙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독에서는 기업(경영)체들이 서독의 경우 보다는 훨씬 도가 강하게 사회 보장체제에 입각되어 있다.

사회 보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동독의 경우가 서독 보다 훨씬 높다.

(360-368)

☒ 서독에 있어서는 사회보장 예산과 지방 법 인체 (Gebietskörperschaft) 예산을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동독에서는 사회보장 예산은 독립 부문으로서 국가예산에 삽입되어 있다. 서독에 있어서는 사회 보장의 순수 수익에서 공공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5년에는 43%였는데 1969년에는 40%로 줄어들었다. 동독에서는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이것이 45.5%에서 50%로 어 났다.

(365-379)

☒ 동·서 양독에서 기업체나 경영체들은 재정 지원을 행하는데 특히 병난 노동자들을

추가적으로 보험에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다한다.

(363)

- ☒ 사회 지출이 점점 늘어 나고 있는데 서독에서는 이것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의 인상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액의 인상으로 충당된다. 동독에서는 이와는 달리 보험 부담금이 줄곧 20%로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내려 왔으며, 몇년동안 부담금(추정) 최저선이 600 마르크(동) 계속되어 내려오고 있다. 재정균형(보험등의 경우)은 거의 전적으로 국가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370-373)

- ☒ 서독에는 업적면에서나 조달면에서나 다 같이 수입의 발전에 따라서 변하는 유동적인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에서는 드물게 올려지고 있는 업적면이 거의 아무런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371.372.392)

- ☒ 사회보장을 위하여 투입되는 현금지출은 동서 양독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 총 사회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의 경우 1965년에서 1969년 까지 평균하여 13.4%였는데, 동독의 경우는 1967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총사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예산의 약 70%가 동·서독에서 연로자 연금, 상이자와 그리고 유족들에게 지불되는 연금으로 쓰인다.

(380-385)

- ☒ 총사회 생산에서 물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이의 구조는 동·서 양독의 사회 보장 체계에서 매우 비슷하다.

(376)

- ☒ 순수 사회보장 지출(현금지출, 물품지출, 관리행정비)은 서독의 경우 1965년에서 1969년까지 사이의 평균이 총사회생산의 18.0%였으며, 동독의 경우는 연금이 서독의 경우보다 적은 액수를 투입하기 때문에 12.4%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연금의 평균 지급액이 적고 누적 가능성이 적은데에 그 원인이 있다.

(377)

- ☒ 동·서 양독에서 병이나서 취업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진 노동수입을 메우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는다.

이 상해 보조금은 동·서 양독에서 보험주축, 기업 및 경영체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서독에서는 병의 종류에 따라서 매년 병난
취업자들에 대하여 6주동안 그 월급을 계
속하여 지불하며, 동독에서는 이와는 달리
일년에 한번만 병이났을때 6주동안 월급을
지불해 준다. 병이나서 취업을 못하는 기
간동안 7개월째 부터는 동·서 양독다 같
이 자식의 수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금액
이 지불된다. 서독의 경우가 그 규정이
동독의 경우 보다 유리하다.

(380.381)

- ☒ 사고가 났거나 직업으로 인하여 병이 났을
때에 지불되는 단기 현금 지출은 병이 났
을 때의 경우와 대동 소이하다. 노동(노
무)사고의 가용 회수가 서독의 경우 동독
의 경우 보다 2 배에 달한다.

(383)

- ☒ 임신중인 여자와 산욕에 있는 산모들의
경우에 대하여 동·서 양독에는 같은 기간
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입의 균형을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일치되는 규정을 가
지고 있다. 동독에서는 이밖에도 어린아기
하나 마다에 세금 등급별에 따라서 한차례
국가 보조금이 지불되는데 이 금액이 서독
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더 높다.

(382)

☒ 건강 보험에서 행해지는 물품지급은 서독의 경우 개인 기기와 공적 보건소에서 행해지며, 동독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국가의 보건기구에 의해서 행해진다.

(386)

☒ 매 인구당 해당되는 병원 침대수는 동·서양독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체류기간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동·서독에 공히 이 체류 기간이 들어 들고 있다. 인구수에 대한 의사의 비교수도 동서독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치과외사의 경우는 동독의 형편이 서독에 비하여 훨씬 나쁘다.

(387)

☒ 서독에서는 동독의 경우와는 반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당국에 대하여 지급 요구를 할 때에 비용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388)

☒ 양노보험 제도에서 동·서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서독과는 반대로 동독에는 연금이 일반 수입 발전에 매년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독의 연금자들은 취업하고 있는 국민이 받고 있는 복지의 향상에 뒤떨어져 있다.

(390-392)

- ☒ (기준의) 산출요소들은 동·서독의 체제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기준산출과 콤비네이션은 동·서독의 계산방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1970년에 서독의 경우 이론적으로 피고용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계액은(광부 보험은 포함되지 않았음) 1300 DM가 넘는데 동독의 경우 이 한도액이 363 마르크로 산출된다. 사회적으로 가능한 양노연금과 실제로 지급되는 양노연금의 분포는 서독의 경우가 동독의 경우보다 그 범위가 크다. 동독에 있어서도 1968년도에 있는 연금법 개정으로 자발적으로 추가 양노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393-394)

- ☒ 근무 불능자의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지출에 적용되는 산출 방법은 양노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산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402-405)

- ☒ 서독에 있어서의 취업 불능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사고 연금이 아닌 이상 동독의 경우에 비하여 연금자에게 지불되는 액수보다 적다.

(403-404)

- ☒ 회복대책은 서독의 경우 사회 보장 체제가

분권적으로 (비중앙집중적) 이루어져 있으므로 서로 상이한 보험당국자들에 의하여 계기되어 지고 있다. 동독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사회보험당국에 있다. 동독의 경우에 서독보다 많은 비중이 병난 취업자들을 케유케 하여 빨리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는데 경주되고 있다.

(407)

- ☒ 가정에 대한 보상은 동독의 경우 서독에서와는 달리 상당히 노동력시장 정책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루어 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자(부인)들이 직업에 들어서고 직업에 종사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 지도록 조치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피고용자들의 유족에 대한 보상(대우)은 서독의 경우가 동독의 경우 보다 훨씬 좋다.

(408-414)

- ☒ 생업위기에 대한 피고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서독에만 독자적이고 완전히 이루어진 조치와 보상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이 체제는 우선 옛날에 피해 결과를 보상해 주던 식 대신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기업인 협회와의 사이에 맺어지는 임금계약과 기업경영 협의회 (Betriebsrat) 와 기업경영진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영협정 (Betriebsvereinbarung)은 서독에 있어서 피고용자들이 공학 및 기구상의 변천 때문에 생겨나는 불리한 결과들에 대하여 더욱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415-420)

- ☒ 동독에는 관청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실업자가 없다고 한다. 노동력 조절이라는 의미의 노동(력)시장 정책은 경제 계획수립의 중요한 일부로서 수립체제를 경제와 연결시켜 준다. 실업자 보조금 지불은 동독의 경우 오늘날 까지도 1947년에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421.422)

- ☒ 사회원조 내지 사회보장 시설들은 동·서 양독에서 광범위한 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곤경에 빠져 있다던가 그리고 잠깐동안이나 혹은 장기 계속적으로 자력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충적인 원조를 해 주고 있다. 완전하기 위해서는 이 비교는 자유(사설) 조직(기구)과 협회, 반(半)관영 및 완전 국가 조직과 협회들로 다름이 원칙이겠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제시해 놓으면 서독에 있어서의 보상(원조)이 동독 보다 높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다.

(426)

☒ 서독에 있는 것같은 공무원 보호법은 동독에는 없다.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는 지식인들을 위한 것으로서 보통 연로(年老) 조치를 넘어서는 추가 보호법이 있다.

전쟁 피해(보상)자들이 서독에 있어서 동독의 경우보다 낫은 대우를 받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 나치 정권과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들이 입은 직접적인 결과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는 다각적인 보상조치에 비교될 만한 것으로 동독에는 반 나치 운동자 명예 연금이라는 것이 있다.

(427)

359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사회정책 비교는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에 국한 되어질 것이다. 사회 보장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들과 조치들을 들수 있겠는데, 이들 시설과 조치는 법적인 규칙이나 기타 다른 국가가 제정한 규범에 따라서 특히 병, 사고, 취업 불능, 실업, 어머니신분, 가정의 규모 사망등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같은 경우에

제 6 장

쓰이도록 되어 있다.

◎ 근로 수입이 없어질 경우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현금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혹은)

◎ 이와 같은 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되도록 줄이기 위하여 직무수행을 앞선 한다면가 물질 보상이나 현금 보상을 해 주는 일 내지

◎ 위에 언급한 피해 상황이 될수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데 이들 시설이나 조치가 쓰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노동법, 기업 및 경제 체 운영법과 그리고 노동쟁이(소송, 재판)권 및 사회재판권 등이다. 이들이 사회 보장(제도)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는 한.

1. 사회 보장제도의 조직 (Organisation der Systeme der Sozialen Sicherung)

a) 보장제도의 기능적 구분 (Die funktionale Gliederung der Sicherungssysteme)

360 사회 보장에 관한 동·서 양국의 제도가 공통적인 역사적 출발점을 지니고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동·서독에 있어서의 활발한 사회정책적인 법률제정으로 인하여 그 구조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는 결과를 초래 했다. - 과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되는 인적 범위면에서도 그러하다. - 동·서 양독에 크게 나누면 각각 세(3)개의 사회 보장 주동체

가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을 들어 보면 공공기관 사회보험, 그리고 기업이나 경업체 들인데 그런데 이들 제기관들에 주어져 있는 과제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 (Versicherungsträger)

서독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적으로, 기능상으로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인적 범위등으로 보아 분화된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하여 동독에는 아주 강력하게 중앙 집중적으로 된 제도가 있으며 보험 주식의 수가 얼마되지 않으며 복합적인 과제 범위를 가지고있는 소수의 보험 회사들이 있다.

서독에는 1969년에 약 1850개의 질병 보험 (Krankenkasse) 이 있었고, 22개의 노동자와 사무원의 연료보장 기구가 있었고 9개의 각국지부를 가진 하나의 연방 노동 위원회가 있었으며, 사고 보험 회사는 94개였고 19개의 농업 부분의 양로보험과 그리고 이밖에도 각국 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많은 보험 기구들과 급양기구들이 실직, 병에걸림, 취업 능력상실, 연로, 사망 및 직업상의 사고등이 났을때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자유직업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주어져 있었다. 동독의 경우는 이들 업무 (과제) 두개의 사회 보장 기구 즉, 노동자 및 사무원 사회보장과 동독의 국가 보험에 의하여 수행되며 (주 1), 독일인민경찰 (Volkspolizei), NVA, 세 관 (관세) 업무, 독일국영 (동독) 철도 근무자와 독일 우체 (체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 급양 시설이 있고 그리고 - 직업 안내나 직업 카운셀링에 관한 경우에는 당해 구역과 지역의 평의회에 있는 노동 및 직업 카운

제 6 장

셀링 담당 직원들에 의하여 이 과업이 수행된다.

FDGB에 의하여 운영되어 지는 노동자와 사무원의 사회 보장(보험) 제도와 동독의 국가 보험(장)은 그러니까 각각 - 통일 보험으로서 - 서독에서 같으면 분할되어 행해지는 제 반 과제를 대부분 포괄하여 가지고 있다. 즉, 서독에서 같으면 기능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혹은) 보험가입자의 그룹 여하에 따라서 분리되어 법률적으로 규정된 의료보험,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무원의 연금보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고보험의 시설(기구)에 의하여 그리고 연방 노동국(실업자 보험의 경우만)과 특정한 직업군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일체의 과제(임무)가 동독에서는 이들 두개의 보험기구에 의하여 통괄되고 있다.

- 361 동·서 양독에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아동보조금은 서독에서는 사회보험 기관인 연방 노동 위원회에 의하여 지불되며 동독의 경우에는 기업체들을 통하여 지불된다. 어머니의 신분울 갖게 되는데에 따른 보조금 지불은 동·서 양독에서 다 같이 사회 보험제도를 통하여 행하여 진다. 이밖에도 노동자와 사무원의 사회보장(보험)과 동독의 국가 보험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이전의 공무원(주2), 옛 인민경찰(관), 제 2차 대전 불구자, 제 2차대전 유족들의 보장(보험)문제를 담당처리할 의무가 또한 주어져 있다. 동독의 사회 보험(기구)은 서독같은 국가 급양기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급양 시설 (Versorgungseinrichtungen)

동독에서는 직접 국가 기관 (시설) 에서 나치의 박해를 받은 자, 반나치 운동자와 그리고 공로가 많은 국가 시민에 대하여는 소위 「 명예 연금 」 이라는 보장을 해 준다. 서독에 있어서 처럼 사회원조 (보조) 내지 사회 보장은 각 시, 읍면의 관할 사항이다.

서독의 공무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한 보조 (추가) 사회 보장과 비슷한 조치로서는 동독이 학문, 예술 교육 및 의학 기구들에 종사하는 지식층들의 추가 연금보험 제도가 있다. 이 조치는 이들 기구들이 동독의 국가 보험 기구와 맺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행하여 진다. 이와 비슷한 조치가 국유 기업체와 이와 동일한 기업체들에 종사하는 공학계통 지식들에게 취해지고 있으며, 기업체들의 부담으로 재정이 충당된다.

국민 보건 (Gesundheitswesen)

362 구가와 사회보험 (기구) 는 동독에서 건강보호분야에서 긴밀히 협동하고 있다. 병원 침대의 90% 이상이 국립 병원들에 의하여 제공되어 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래환자 진료소들, 앰블란스들과 약방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 및 치과의사의 실무진들이 공공 국민 보건기구에 속하고 있다.

1969년에 동독에는 444개의 외래환자 진료소 (Polikliniken) 가 있었으며, 이중에서 62개 소가 「 독립 」 병원으로 통계에 나있으나 이들 병원의 시설 재산형태에 관하여는

제 6 장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앰블란스는 전부 819 개가 있는데 이들 앰블란스의 시설 재산 형태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들중의 대부분이(606)이 주나 기업체의 진료소로서 확실히 국가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약방은 전부 1458 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73 개소가 개인 재산 소유다.

이와 같은 짙막한 개관에서 조직면에서도 이미 동독의 경우 급양(Versorgung)과 사회 보장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이 서독에 비하여 그 범위가 굉장히 큰데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급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국가(행정)기관과 사회보험기구의 기관과의 사이에 밀접한 기능적 위태가 모든 행정(관리)부면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다. 각 정부 부처와 FDGB의 중앙 임원회 내지 동독 국가 보험 중앙 기구에서 부터 시작하여 시, 읍, 면과 기업체들에 이르기 까지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동독에 있어서의 사회 보험의 전체 체계가 긴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현황은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그리고 서독 보다는 훨씬 긴밀하게 기업체들도 이 체제속에 합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더욱 강조된다.

기업(경영체)들의 임무

(Aufgaben der Betriebe)

- 363 기업이 행하는 사회 보조를 논의로 한다면 서독에 있어서의 기업이 사회 보험 부분에서 차지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당해 피고용인이 노동 불능이 된 때 부터 처음 6주간 임금과

봉급을 계속하여 지불하고, 동업자 조합의 사고 예방조치에 참여 하는데 국한한다고 볼수 있다. 동독의 상황과 비슷한 기업과 보건(건강)보험 제도 사이에 있는 밀접한 관계가 서독의 경우에는 경영 질병 금고(Betriebskrankenkasse)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독에서는 단기 현금지출은 국영 기업체와 행정당국에서는 물론 반(半)국가 기업체나 관리 당국에서도 담당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기업들은 자체 의뢰 환자 진료소와 앰블란스를 갖추어 가지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진료소와 앰블란스들은 시민의 건강 예방과 사고예방면에서 서독에 있어서 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 체제와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는 조직적으로는 노조대표와 위원회와 그리고 각 기업체들에 있는 사회보험의 전권 대표자들을 통하여 실천에 옮겨 진다.

b) 사회보장기구와 보장 의무면에서 본 회원 구조

(Mitgliederstruktur der Sicherungseinrichtungen und Versicherungspflicht)

364 서로 상이한 신분군을 제 사회 보장(보험)기구에 지속시키는 일은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동독에서는 한편으로는 피고용자 보험을 분리시키고(FDGB의 사회보험 다른 한편으로는 이밖의 기타 생업종사자들의 보험(동독의 국가 보험당국에 하는 사회보험)으로 나누어 행하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처방이 완전히 실천에 옮겨지고

제 6 장

있지 않음은 물론이나 이것이 그러나 사회보험 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FDGB의 사회보험 (Sozialversicherung des FDGB)

FDGB의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모든 피고용자와 사무원, 의사, 치과의사, 수의과 의사와 대학생, 초급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 청소년 작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피교육중에 있는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독의 국가보험 (Staatliche Versicherung der DDR)

동독의 국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수공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 취업자 5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독립 (자주) 취업자 (사업가), 농업과 그 밖의 생산공동체와 변호인단 (변호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과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가정의 식구들이다. 이 국가가 담당하는 의무적인 보험은 병이났을 때, 취업 불능상태에 빠져 들었을 때 사고가 나고, 실업자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신분 이 될 때, 나이가 많아 졌을 때, 그리고 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등의 경우에 행해져야 하는 보호 (초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인민경찰과 인민군과 그리고 세관원들의 가족일 경우와 국영 철도와 체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은 특별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행하면은 특정한 최소근무연한이 되면은 그후 부터는 사회 보험에 대신하게 된다.

서독의 보험제도 (Versich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 365 이와 같은 동독의 경우와는 달리 서독에 있어서의 사회 보험체제는 보험의무와 자유의사에 의한 2중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가능성여부와 같은 문제에 관련시켜 볼때 각개 보험분야간에 상당히 많은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모든 사회 보험 영역에서 지니고 있는 원칙적인 보험가입의무말고도 (이에 대하여), 수입 (소득) 경제선과 특별규정을 통하여 수정되어진 사무원의 보험가입의무같은 것이 또한 있는데 특히 건강 보험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런데 극히 체계성을 띄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자립 취업자의 보험가입 의무에 대한 규칙이다. 이규칙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자립 취업자는 「피고용자와 비슷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는 노동자와 사무원 연금 보험에 가입할 의무와 보장을 받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수공업자로서는 제한된 보험의무기간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연금 보험의 의무회원이 되어 있고 농민으로서는 아무런 위에 언급된것과 같은 수입 (소득) 의 제한 없이 특수한 농민의 노령 연금 금고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각 주 마다의 법에 따라서 보험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의무의 종류와 범위가 각 주마다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수

(Anzahl der Versicherten)

366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수와 이 수가 국민 전체에 비교해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하여는 동독의 경우 아무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사회보장과 특수제도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 사람이 전체 국민수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추산하여 97%에서 99%에 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의무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종사하는 남편들의 경우 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수입이 낮은 사람들도 성직자와 교회 종사자 및 5명 이상의 인원을 가진 모든 독립 취업자들이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수공업자들과 그리고 국가가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서독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 보험에 대하여만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인적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함께 보험된 가족들을 포함한 보험가입자)

1968 년도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수가 전체 국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86.8%였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고 보험의 경우는 1967년에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생업 종사자들의 96%를 차지했다. 1969년 10월에 연방 노동자에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의 수는 1,862만 명이였다. 보험 부담료 면제를 받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수는 115만 5천명이였다.

1969년도 연 평균 생업종사자 수에 비교해 볼것 같으면, 이것은 약 74%에 해당된다. (공무원을 제외한) 피고용자들의 경우는 거의 100%가까운 비율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통계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독에 있어서의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범위가 보험의무를 통해서 서독의 경우보다 클 뿐만 아니라 서독의 보험체제는 자유의사에 의한 보증 보험 같은것을 포함해서 계산하더라도 동독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인적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해 둘수 있다. 그런데 서독에서는 공무원들이 병이 났을때에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는다. 이 밖에 사회보장 고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보험에 가입하므로써 사회적인 위기로 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o) 사회보험경영의 조직 (Die Organisation der Sozialversicherungsträger)

367 서독에 있어서의 사회보험 기관과 연방 노동 위원회 (Bundesanstalt für Arbeit)는 국가의 감독법에 의하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법상의 법인체다. 법의 규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부담금액을 정하고 걸어드리고 그리고 법에 정하여져 있는 의무한계를 초과하는 조치를 승인하는 일이 이를 법인체가 해야할 의무이며 권리다.

동독에 있어서도 두개의 사회 보험 기구인 FDGB의 보험과 그리고 동독의 국가 보험이 다같이 법인체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보험기관의 예산은 그렇지만 동독의 국가예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들 보험기관에는 보험 부담 금액과 변상조치등에 관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동독의 보험기관들에 있어서는 보험기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변상 조치 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재량면의 활동의 여지가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제한 되어 있다.

자치기관 (Selbstverwaltungsorgane)

368 서독의 사회 보험 기관들은 자치조직으로서 중역진과 하나의 대표자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표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에 따라서- 고용주와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중에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중역진 (Vorstand) 은 대표자 회의에 의하여 선출되며, 보험기관을 법률상으로는 비법률상으로 대표한다. 대표자회의 (Vertreterversammlung) 는 보험기관의 정관과 예산을 의결하고, 중역진을 임명하고 또 중역진의 업무집행을 승인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험부담금과 변상조치금을 확정 의결한다. 연방 노동 위원회의 자치는 이와 다르다. 연방 위원회의 조직들은 각주의 노동국과 (일반) 노동국의 의장이며, 관리자료 위원 (Verwaltungsrat) 이며 동시에 관리 위원회 (Verwaltungsausschüsse) 이다.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피고용자, 고용주와 그리고 공공 법인체에서 각각 1/3 씩을 대표를 내어 구성한다. 이들 대표자들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고용주 연합체, 그리고 연방공화국과 각주와 그리고 그 이하의 하급지방 단체들에 의하여 임명되어 진다.

동독에 있어서는 FDGB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보험기관의

자치는 FDGB의 회원에 의하여서만 행해지고 있다. 고용주들과 그리고 FDGB에 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회 보험의 관리를(행정을) 경영과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는 경영조직이나 지역 위원회의 선거에서 제외된다. 동독의 국가 보험은 일반 인구 보험과 물질 보험 이외에도 위에 언급한 인구층을 위하여 사회 보험을 실시한다. 이 인구층을 위하여는 사회 보험의 경우 자본금(Fonds)이 형성되며 이 자본금의 관리를 위하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각개 전문 연합체(수공업자 상공회의소)에 의하여 그 인원이 총원된다. (그러나) 선거는 행해지지 않는다.

2. 사회 보장(보험)의 자금조달(Finanzierung der Sozialen Sicherung)

a) 자금 조달 체제(Das Finanzierungssystem)

서독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 체제(Das Finanzierungssystem in der Bundesrepublik)

369 서독에 있어서는 사회 보장제도가 크게 국가의 재정체제에 합류되어 있는 동독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 보험기관의 예산은 공공예산과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사회보험기관에 연방공화국의 보조가 행해지는 경우에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방공화국 예산중에서 이것만이 지출 부문에 나타난다.

서독에 있어서의 사회 보험상의 재정자금 관리는 사회보험의 조직 범위(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이 관리는 보험금 수납

에서 자금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면을 포괄한다.

그리고 사회 보험의 개별 보험체는 법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는 변상조치 범위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연금자 보험기관을 예외로 하고는- 보험 부담금액까지로 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보험기구를 통하여 재정지원이 되는 업적 부문 이외에도 동·서독의 두 체제에서 다 같이 법에 정하여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사회 비용 (Sozialaufwendung)이 직접 기업이나 경영체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즉 그예로 들자면 서독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없을 정도로 병이나 있는 환자들에게는 임금지불과 일금지불을 직접 이들 사회 보험 기관이 담당할 수 있으며 동독에서는 질병보험의 이병 보조금으로 지불되는 추가 보조금을 이들 보험기관이 담당하여 행하고 있다.

동독의 국가예산에 세워지는 기초

(Verankerung im Staatshaushalt der DDR)

FDGB의 사회 보험과 동독의 국가 보험의 재정 자금염출의 주(主)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과 기업이 내는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국가와 사회 보험(기구)은 조직면과 재정 정책면에서 밀접하게 상호 연결(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여간 사회보험(기구)의 예산계획이 독립적인 요소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1951년 부터는 동독의 경우 국가예산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 있다. 보험료 수납도 역시 국가의 재정관리 기관을 통하여 행해지

며 그 규모에 있어서는 기업(경영)체에서 수납되는 액수가 기업체에 의하여 지출되는 단기용 현금지출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재정관리기관을 통하여 수납된 보험 회비들은 1967년말까지는 재무부를 통하여 FDGB의 사회 보험부나 혹은 동독의 국가보험당국에 전하여져 갔고 그곳에서 중앙기관으로 관리되어 갔다. 1968년초에 사회 보험의 재정 관리를 비중앙 집진제로(즉 지방 분진제) 옮겨 놓기 시작했으며, 하위 행정기관과 FDGB의 지방간부진에 보험 자본 사용에 대한 지금 보다는 큰 행정적 권한을 이관하기 시작하였다.

사회 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독자적인 부문말고도 동독의 국가예산의 지출면에는 **국민보건(위생, 후생시설등)**과 **사회사업**이라는 부문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의(정착되어 있는 의료 시설과 앰블란스 식으로 이동하고 의료시설을 포함) 의료시설비용, 위생교육과 보건교육비용, 의료교육과 사회사업 기숙사 등에 대한 비용, 육아탁아소에 대한 비용, 남·여 보조 비용과 그리고 이밖의 많은 다른 업적(지출)들을 위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보장과 국민 보건 및 사회사업이라는 이 두 부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복이 된다고 하겠다. 즉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하여 지원되는 업적 부문에 대한 지출은 국가 기구에 의하여 특히 국민보건당국에 의하여 지불되는 지출로서 **사회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과 사회사업**이라는 명목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2중으로 계산되어 지는 때문이다. (이점에 관하여는 부록에 수록되는 방

제6장

법논상의 유의점을 참고할것)

b) 재정(자금)조달 방법

(Finanzierungsverfahren)

370 사회 부담(사업)에 대한 재정조달은 동·서 양독에서 다 같이 원칙적으로 활당방법(Umlageverfahren) 즉 한 시기의 지출이 그 시기에 동시적으로 받아드리는 수입에 의하여 충당되는 방법에 따라서 행하여 진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지출에 대한 자본충당이라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유 의사에 따라서 행한 보충 보험은 여기에서 예외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국가의 부담(조치)일 경우에는 옛날부터 적용되었던 것이나 이와는 반대로 사회보험, 특히 서독의 연금자 보험에 있어서는 이제 비로소 서서히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 재정(자금)조달상의 차이 ▮

(Unterschiede in der Finanzierung)

사회 보험의 재정(자금)조달에 있어서 서독과 동독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 ◎ 서독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액이 증가되고 있음과 동시에 일관적으로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부담금의 액수를 올리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의 경우에는 보험(부담)금과 사회 보험의 부담금 설정한계가 계속 그 양 유지 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수지 균형은 국가에

산을 통하여 행하여 졌다.

- ◎ 서독에 있어서의 보험회사(당국)들이 재정적인 독립을 기하기 위하여서는(채권등의) 유동성 적립금을 뚫으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행하여 주는(재정) 충당보증은 특수한 경우에만 교제되어 지는 것이 때문이다. 동독에서는 이와같은 예비적립금(Reservefonds)(제도)가 없다. 그렇지만 사회 보험 각 개별부문에 대한 계획된 보다 큰 재정 책임과 사회 보험 지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예비적립금을 마련하는 것이 고려되어 지고 있다.

● 보험 부담을 통한 재정 조달과 국가의 재정조달 ●
(Beitrags- und Staatsfinanzierung)

- 371 사회 보장 체계를 위한 재정자력을 조달함에 있어서 동·서독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일치점이 나타난다. 즉 급여양 일부와 보호 부문의 경우 공공 예산의 자금으로 재정 지원이 된다.

서독에 있어서는=전쟁 희생자 구호사업, 부담 조정(특히 전 시중에 받은) 배상, 부양 보장, 사회 원조, 청·소년 원조.

동독에 있어서는=전쟁 희생자 연금, 나치에게 박해를 받은 사람과 나치에 대항하여 투쟁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명예연금, 사회 구호사업, 청·소년 원조등이 그것이다. 공무원 보호에 관한 규칙은 동·서독의 경우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않지만 그 규정이 비슷하다. 동독에 직업 공무

제 6 장

원이 더 이상 존재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체부문과 철도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가
실시하는 연로 보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의 이동 보조금 (Kindergeld) 과 아동 추가
보조금 등의 가정에 관한 조치와 그리고 동독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이에 대하여 지불하는 국가의 지원들은 공공예산
의 자금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재정 조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점들이 나타
나 있는데 아무튼 이 재정 조달은 보험가입자들의 부담금과
국가가 담당하는 추가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들
보험 부담금들은 일반적으로 피고용자와 기업이나 혹은 경영
체에 의하여 동일한 비용씩 부담되어 지는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수입 (소득) 에 비추어 비례적으로 일정한 수입 상한
선까지 올려진다. 사고 보험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
하여 기업체 (경영) 측으로 부터 특별한 위험관계 부담금이
징수되어진다.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동·
서 양독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전체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용자가 담당할 부담금액의 비율은 전체 부담금
의 1/3로 제한되고 있는 법이 통용되고 있다.

(서독=광부의 연금보험에 대한 기여 (부담) 금,
동독=사회 보험에 대한 부담금 전체를 포함함)

● 사회 보험의 재정 조달 ●

(Finanzierung der Sozialversicherung)

372 특히 사회 보험의 재정 조달면에서 동·서독간에 많은 차이

점들이 나타난다.

즉 서독에 있어서는 보험 분야간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하여진 건강(질병) 보험의 경우에도 그리고 같은 종류의 보험이라 하더라도 각개 기금 출납소에 따라서 까지도 부담 금액수가 차이 난다. 동독에 있어서는 사고 보험만을 제외 해 놓고 모든 보험에 대한 전체 부담 금액을 받아 드린다. 이와는 반대로 서독에서는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연금 보험 (1971년도=매월 1900DM)과 광부의 연금 보험(2300DM)과 건강보험(1425DM)간의 부담금 추정한계)(경제)가 서로 차이 난다. (괄호속에 기입한 액수가 부담금 추정 경제액수-역주) 연방 노동국에 대한 부담금 추정 경제선 (1900DM)은 1970년 1월 1일 부터는 노동자 연금 보험 및 피고용자 연금 보험의 경우와 같다. 이밖에도 부담금 추정 한계(경제)은 자동적으로 혹은 그때 그때 마다 법률로 개별 규칙을 정하여 수입(소득)의 발전에 적응토록 조치된다. 이와는 반대로 동독에서는 이제 20년이 넘는 동안 모든 보험 가입자들에게 월수입 600M 혹은 년수입 7200M라는 통일적인 부담금 추정 경제선이 적용되고 있다. 동·서 양독에서 종국적으로도(역시) 국가가 사회 보험의 재정적 기능능력을 보증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특수한(변상)조치등을 위하여 지불하며 그리고 국가가 보조금을(혹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적인 보조금도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독에서는 지출과 수입간의 사이에 생기는 수입·지출의 부족(차액)액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주는데

제8장

여기에서 이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 아무런 법적인 재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와같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동독에서는 보험 부담금액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계속하여 늘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일정하게 머물수 있는 결과를 낳을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20%를 포함하여 노동자와 사무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부담금이 20년 이상동안 계속 동일한 액수로 머물렀다) 그러나 서독에서도 점점해 가고 있는 비용이 연금자 및 건강(질병) 보험에서 보험부담금을 올리므로써도(국가의 부분 부담은 물론이지만 보험자도 보다 많은 보험 부담금을 내므로써-역주) 재정 중당이 된다. (주 13)

1969년에 노동자와 사무원의 연금 보험에서(노동자와 사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보험 부담금은 16%였으며, 연방 노동 직업소의 경우는 1.3%였으며 사무원들이 건강(질병) 보험을 위하여 부담하는 평균 부담금은 8.5%, 임금 계속 지불 요구권을 갖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는 10.5%였다. 수입이 건강 보험의 (낮은) 부담금 측정한제내에 있는 사무원들에 대한(보험) 부담금비율은 전체적으로 25.8%에 달했으며 현금 계속 지불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27.8%였다. 이 두 그룹의 1970년도(보험)부담금 비율은(합하여-평균하여) 약 26.8%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특수 직업군 (Besondere Berufsgruppen)

373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서독의 수공업자 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독의 국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직업별 가입자들에게는 서로 상이한 보험 부담금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사회 보험 규칙과는 차이난다.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다른 측정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이나 혹은 제한되어 있는 부담은 요구권(예를들어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들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등에 근거하여 생겨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특정한 직업군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설정에 따라서도 생겨난다. 나중에 언급한 것은(후자), 그들의 현금 및 자연 수입과 관련시켜 볼때 아무런(변상-보상) 조치 제한을 받지 않고 9%의 보험 부담금 비율이 적용되고, LPG 부담금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농업 생산 협동조합(Produktionsgenossenschaft)의 회원들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수가 있겠다. 자립(취업) 생업 종사자들과 기업인들의 경우는 다른 고용원을 쓰지 않을 경우에 사회 보험(그것도 질병 치료금 요구권을 갖지 않는)에 대하여 감당해야 하는 보험 부담금이 14%이며, 다른 고용 노동력을 사용할때에는 17%에 달한다. 동독의 국가 보험에 있어서 사회 보험에 대하여 지출되는 국가보조금이 FDGB의 사회 보험에 대해서 보다 전체수입(소득)을 비교할 때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보험부담금의 차이 뿐만 아니라 보험 부담금을 지불하는 가입자의 수가 줄어 들어 가고 있는 보험 가입자 군에 대하여 별개의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데서 오는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c) 사회 보장을 위한 비용과 이의 재정(자금) 조달
(Die Aufwendungen für die Soziale Sicherung und ihre Finanzierung)

374 사회 보장(보험)을 위해서 쓰이는 전체 비용과 보험 부담금과 국가가 담당하는 보조금을 통한 재정조달에 관하여는 동독에 대하여 쉽게 그 전모를 산출해 낼수가 있다. 그러므로 각개 비용의 종류와 보험 부담금 지물을 차액으로 추산하여 국가가 담당하는 재정부담액을 확증해 볼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

비 용 (Aufwendungen)

사회 보장(보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체 비용을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분하고자 한다. 즉 국가와 공공법인체의 현금지불(수입이월)과 현물지불(관리비용도 포함)로 나눈다. 자유의사에 의한 지불과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직접 기업체 내지 경영체에서 지급되는 지불(업적)은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국가나 혹은 사회 보험(기구)의 위임을 받아 기업(경영)체에 지불된 지출(업적)은 이와는 달리 여기에서 취급키로 한다.

서독에 있어서의 현금 지불

(Barleistungen in der Bundesrepublik)

375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사회예산에서 모든 업적지출의 3/4 이상이 현금 지출이다. 이 현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몇해 동안 계속하여 줄어들고 현물 지출이 늘어 났는 데 그러나 그 속도는 천천히 행하여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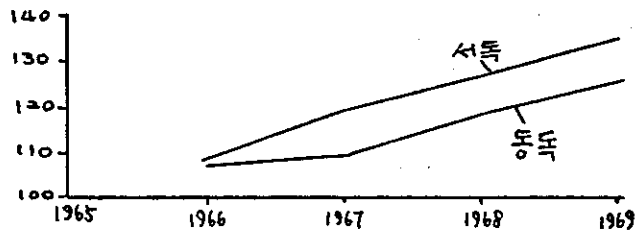
그래프 13

현금 지출 전체

1965년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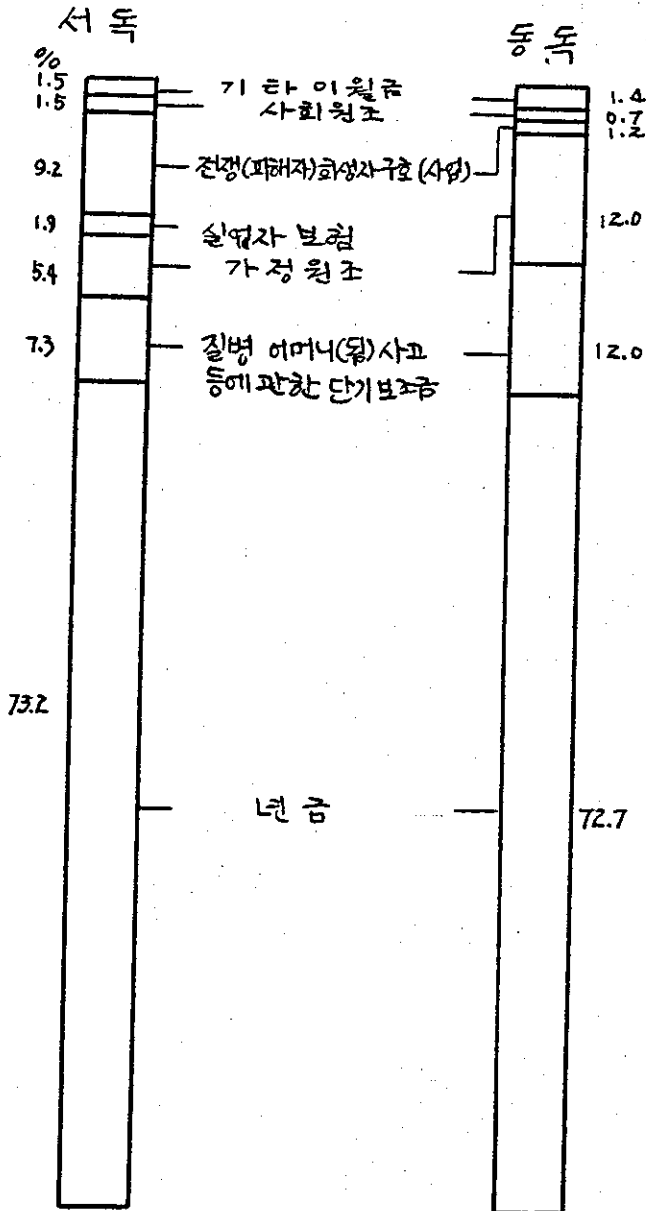
(Barleistungen insgesamt

1965 = 100)



그래프 14

현금지출이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 1969



현금 지출의 70% 이상이 그 내역을 살펴 보면 양노 연금, 근로 불능자 연금, 사고 연금 및 공무원 보조비, 공무원의 추가 보조비와 농민에 대한 양노비에서 지출되는 기타 보조금이다. 위에서 끝으로 언급된 기타 보조금을 예외로 하고는 이를 연금(Renten)과 은급(Pension)은 그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무원의 수입(소득)의 발전이나 공무원의 수입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현금 지출중에서 나머지 약 30%는 많은 분야에 걸쳐서 분산되어 지출된다. 즉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 가계보조금, 부상자 보조금, 아동 보조금, 실업자 보조금, 전쟁희생자 연금, 사회원조와 그리고 기타 지출금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 보장(보험등의)에 쓰이는 현금 지출이 총 사회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에 있어서 1965년에서 1969년 까지 평균(그때 그때의 가격을 따져서) 13.4%가 된다. (부록에 수록된 방법론상의 참고사항을 볼것)

동독에 있어서의 현금지출

(Barleistungen in der DDR)

이에 대하여 동독에 있어서의 현금지출의 전체 사회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5년에서 1969년 사이의 동일한 기간에 연평균(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놓고 산출해 본 결과) 8.6% 밖에 되지 않는다. (제 3장을 참고할것) 동독의 경우 전체 인구중에서 연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경우 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은 상당한 부분이 비교적 낮은

연로자 연금, 취업 불능자 연금과 전쟁 희생자 연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이밖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독에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책임(예=실업자)에 대하여는 거의 사회 보조금이 할당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서독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모험) 책임(예=비싼 집세 부담등)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정책적인 보장(主)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필요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또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조면으로 볼때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현금지불은 양독에서 고령자, 취업불능자와 유가족들에게 지불하는 연금이 1965년에서 1969년 까지 사이에 평균하여 현금 지출의 약 70%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 비율은 동독에서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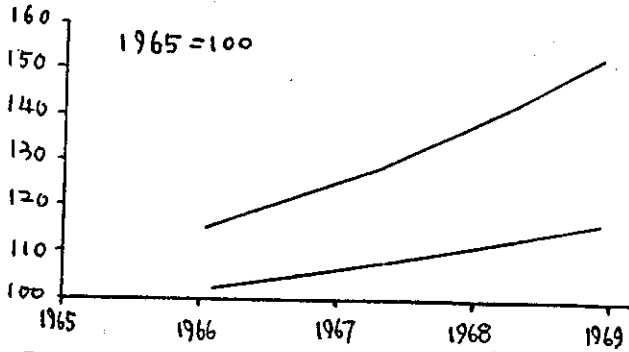
그와는 달리 현금지불(출)의 법적인 비교 상황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동독에서는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 가정 보조금(Hausgeld), 용돈(Taschengeld), (1968년도 부터는 가정 보조금으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사회 보험이 부담하는 지출과 그리고 모·자녀를 위한 국가의 지원등이 각각 12% 내지 13%로서 중점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서독의 경우는 법적인 현금 지출의 약 1/3이 전쟁 희생자 구호와(특히 전시중에 받을) 부담 조정으로 쓰인다. 총사회생산을 고려하여 고찰해 보면 질병과 어머니가 되고(Mutterschaft) 그리고 사고의 경우에

지불되는 단기 현금 지불의 경우에는 동·서독 양국이 다 같은 비율(1%)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나 가정 보즈금 비율은 서독의 경우 지난 5년동안에 1%에서 0.7%로 줄어들므로써 동독의 1.1%에서 점차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차이가 늘어나고 있다. (제 3 절 a 항을 참고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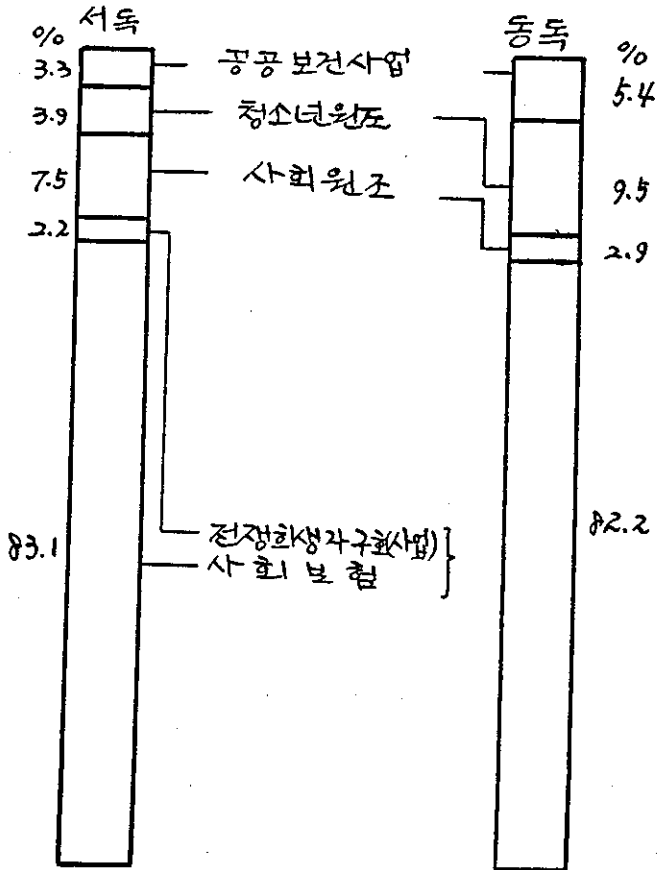
● 현물지출 (Sachleistungen)

- 376 현물지출을 비교해 보면 구조와 상대적 수준면에서 상당히 폭 넓은 일치점을 보여 주고 있다. 현물지출(서독의 경우 = 관리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동독의 경우는 약간 사회보험의 관리·행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동·서독의 총 사회생산(서독의 경우 = 그해 나라의 현시세; 동독의 경우 = 1967년도의 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고찰)에 관련시켜 고찰해 보면 1965년에서 1969년 사이의 평균이 서독의 경우 3.8%의 비율을 보이며 동독의 경우는 3.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총 사회 생산에 대한 관계에서 현물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독의 경우 약간 늘어났고, 동독의 경우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 동·서 양독에서 현물 지출의 80%이 사회 보험에 관한 제반 시설과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동·서독을 비교하기 위하여 서독의 경우에 전쟁 희생자 구호(사업)을 사회 보험의 현물지출속에 넣어서 고찰한다고 할것같으면 서독의 경우는 이 부문이 전체 현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가 되며, 동독의 경우는 약 81%가 된다.
- 법적인 현물지불의 구조를 비교해 볼것같으면 서독의 사회

그라프 15
현물 지출전체



그라프 16
1969년도의 지출규모의 분포



원조 (Sozialhilfe) 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독의 사회제도 상의 기숙사 (Heime des Sozialwesens) 가 차지하는 지위에 비하여 비교적 우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서 국가가 지불하는 지출만을 포함시키고, 동독의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유지를 함께 포함시키지 않을것 같으면 서독의 사회원조가 차지하는 상대적 유리한 입장은 더욱 커진다. 이와는 달리 탁아소 (Kinderkrippen) 와 아동거주소 (Kinderheime) 를 포함한 청·소년 원조 분야와 (상설 및 앰블란스적인 의료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은) 공공 보건분야에서 동독은 서독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점은 개별 내역이 맞추고 있는 제한된 비교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377 현금지불과 현물지출과 그리고 관리 (행정) 비용을 다 합쳐서 고찰해 볼것 같으면 1965년에서 1969년까지 사이의 연평균 사회 (사업) 보장 지출비율은 (총 사회 생산에 비추어 본 사회 보장의 백분율에 비교해 본 순수 지출) 서독의 경우 18.0%에 해당되며 동독의 경우 12.4%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수준의 차이는 주로 서로 차이가 나는 상이한 현금지출에 따라서 결정되어 진다. 동·서 양 독에서 이 평균치는 여기에 비교한 5개년 간의 서로 상이한 발전에서 산출된 것이다. 서독의 경우 사회원조 비율은 1967년에 최고수준에 달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수입단위 (Bezugsgröße) 인 총 사회생산이 정체에 빠져 있었고 또 다른 한 이유는 그러나 사회원조액이 상당히 증가한데서 찾을 수 있다. 사회 원조 비율은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제6장

고기압적인 (Antizyklisch)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동독의 경우는 이 1967년에는 최하위선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연금개혁을 통하여 배당되는 노령자 연금의 인상액은 1968 년에서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d) 사회 보장의 수입

(Die Einnahmen der Sozialen Sicherung)

378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과 동독에 있어서의 보험 (보장) 자 부담금과 국가의 재정 부담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상과 같은 제 차이들은 통계자료를 비교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부록에 언급되는 방법론상의 유의점을 참고해 볼것)

연금 개혁 (Rentenreform)

서독에 있어서는 전체 순수수입중에서 공공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5년에는 43%가 되었고 1969년에는 40%가 되므로써 줄어 들었는데 동독에 있어서는 이와 동일한 기간동안에 재정지출에서 공공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5%에서 50%로 늘어났다. 이와같이 동독에 있어서의 공공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연금개혁에 있는 것이며 이 개혁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 부담금액이 일정하게 머므르므로써 보험당국이 부담하는 지출액이 늘어나고, 그러므로써 국가가 담당하는 재정지원상의 지출액 초과

현상을 이르기 때문이다.

재정지원면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구조 변화는 1965년에서 1969년까지 사이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부담금과 공공 지원액의 성장율을 동·서독 비교해 보면 이 변화가 끼치는 영향이 더욱 분명하게 명확해 진다. 동독의 경우 이기간동안에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이 약 10%가 상승하고 공공 재원에서 지출되는 금액의 상승율이 30%가 넘어 늘어났는데 반하여 서독의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44%가 늘어나고 공공 재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에 대하여 22%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보험료 부담금액의 상승

(Beitragssteigerung)

동독에 있어서 이 같이 적은 비율의 보험료 부담금액의 상승은 그 이유가 일부분의 경우에만 수입의 발전이 비교적 늦은때에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부담금액과 보험료 측정 기준(경제)이 계속하여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때서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서독에서 보험 가입자가 담당하는 보험부담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금 측정 기준이 늘어난때서 찾을 수 있으며 건강 보험과 사무원 보험등에서 보험가입의무의 범위가 확대된때서 오는 이유는 얼마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이전에 자유의사에 의한 건강 보험과 사무원보험을

위한 보험료가 지불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2대(재정)재원인 보험료(부담금-보험가입자의)와 공공재원을 사회생산(SozialProdukt)과 연관시켜서 고찰해 보면 1965년과 1969년 사이에 동·서 양독에서 취해진 공공재원의 비율은 서로가 비슷해 졌는데 이것은 서독에 있어서의 비율이 줄어들고 동독에서는 그 비율이 늘어나므로써 동서독의 공공재원 비율이 비슷해 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보험 가입자가 담당하는 보험 부담금은 위의 경우와는 정반 방향으로 그 경향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 있다.

동독에 있어서의 추가 연료보험

(Zusatzrentenversicherung in der DDR)

- 379 1968년도에 행해진 연료개혁과 관련하여 동독에 있어서는 사회 보험의 범위내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추가연금 보험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추가 연금 보험은 순전히 보험가입의 보험료로 부담되어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제도를 택하게 된 데에 가장 중요한 의도는 국가가 국가 예산에 추가로 짐을 지지않고도 연금 보험의 수준을 높이려는 데에 있으며 그러나 동시에 고정된 사회보험 부담금(보험가입자)을 유지하고 현존하는 보험 부담금 측정 기준(한계)을 계속유지해 나가려는 데에 또한 이와 같은 보험제도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 부담과 보험 부담금 측정 기준을 높여 놓을 것 같으면 이에 따라서 다른 현금지출도 붙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겠기 때문이다. 추가 보험에 의하여 이미 이용된

범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다.

3. 사회 보장 제도의 업적(부담)

(Leistungen der Systeme der sozialen Sicherung)

a) 질병, 어머니됨 그리고 사고

(Krankheit, Mutterschaft und Unfall)

380 동·서독 양쪽에서는 질병에 걸리거나 여자들의 경우 산모가 되거나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당해 사건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상이한 지출(부담)이 행해지고 있다. (주 4)

질병의 경우에 행해지는 현금지출

(Barleistungen bei Krankheit)

의사에 의하여 노동 불능이라는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서독에서는 12개월(즉 1년) 이내에 그리고 별개의 병(질환)에 걸렸을 때에는 그때마다 매 6주간 계속하여 노동 보수를 지급 받으므로써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경제적 안정은 보장되어 있다.

질병 보험의 이병(權病) 보조금(Krankengeld)

간약에 월급 내지 임금을 계속하여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계약에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보험자는 외래 진료를 받을 때에는 아무런 시간적인 제한 없이

제 6 장

(무제한으로)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경우 최고 78주에 한하여 이 질병 이병 보조금을 받는다. 처음 6주 동안에는 이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은 가정 상황의 여하에 따라서 노동 불능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규칙적인 노동보수(정규 임금)의 65%에서 75%까지에 해당되고, 1971년 1월 1일 이래는(부터는) 고려의 대상이 되는 정규임금의 최고한계(上限액)는 매월 1425DM로 되어 있다. 질병 보험의 이병보조금의 액수는 가정 상황에 따라서 등급별로 정하여 진다. 노동 불능이 된 제 7주째 부터는 정규임금의 75%에서 85%에 달하는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을 받으며 이 경우에 받을수 있는 매월의 보조금액은 순수 임금(Nettolohn 세금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금)의 100%를 초과할수는 없다.

동독에 있어서는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은 노동 불능이 된 첫째날 부터 지급되거나(SV/FDGB의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의 경우) 아니면, 노동 불능이 된 네째날 부터 지급을 받는다. (동독의 국가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의 경우)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은 보험 부담금 의무를 지니고 있는 총 평균수입(Bruttodurchschnittsverdienst)의 50%를 지급 받으며 매 노동일에 대하여 지급을 받는다. 노동자와 사무원의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밖에도 노동 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일년에 6주까지는 사회보험의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과 그리고 (세금등을 제하고 남은) 순수 평균 수입(Nettodur-

chschnittsverdienst)의 90%와 비교하여서 생기는 차액을 메꾸기 위한 보조금을 기업(이나 경제체)에서 받는다. 노동 불능이 된 제 7주에서 13주에 이르기까지는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두사람 내지 그이상의 아이(자식)를 가진 경우에는 1967년 7월 1일 이래는(부터는) 액수가 높아진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Krankengeld)을 지급 받는다. (세금등을 제하고 남은 순수 평균 수입의 65%에서 90%까지) 노동 불능이 된 때부터 (14주에서 26주까지는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평균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불되며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은 노동 불능이 된지 39주에 이르기까지 같은 액수의 이병 보조금이 지불된다. 즉 이 39주 내에 노동 능력이 다시 생겨 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이병 보조금은 지불될 수 있다.

도표 46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 (Krankengeld)

서		독
기간	부양가족의 수	독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당국자측의 지출과 가족을 가진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당국자의 지출
1주에서 6주까지 사이		임금과 월급이 계속 지불되는 비율 = 노동임금의 100%가 지불됨 동일한 병이 아니고 다른 병에 또 걸리게 될 때는 12개월 이내 매 6주동안 계속 월급 내지 임금이 지불된다. 이와같은 요구조건이 계약 (보험)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로 질병보험의 이병 보조금이 지불된다.
	1명	65 %
	2명	69 %
	3명 과그이상	72 %
	3명 과그이상	75 %
7주에서 78주까지	-	75 %
	1명	79 %
	2명	82 %
	3명 과 혹은 그이상	85 %

정규 월급의

정규 월급의

동		특												
기 간	부양가족의 수	독신 보험가입자와 가족을 가진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 당국자의 지불(업적)												
1주에서 6주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액수에 달한 평균수입의 50%와 그리고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과 (세금등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 평균수입의 90%와 비교하여 생기는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기업이나 경영체의 상채 보조금(Ausgleichszahlung) 지불이 포함됨.												
7주에서 13주까지	-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과그이상	<table style="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수입의 평균</td> <td style="border: none;">50 %</td> </tr> <tr> <td style="border: none;">수입에서</td> <td style="border: none;">50 %</td> </tr> <tr> <td style="border: none;">(세금등을 제외하고 남</td> <td style="border: none;">65 %</td> </tr> <tr> <td style="border: none;">은 순수 평균 수입의</td> <td style="border: none;">75 %</td> </tr> <tr> <td style="border: none;">(매년)</td> <td style="border: none;">80 %</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90 %</td> </tr> </table>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수입의 평균	50 %	수입에서	50 %	(세금등을 제외하고 남	65 %	은 순수 평균 수입의	75 %	(매년)	80 %		90 %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수입의 평균	50 %													
수입에서	50 %													
(세금등을 제외하고 남	65 %													
은 순수 평균 수입의	75 %													
(매년)	80 %													
	90 %													
14주에서 26주까지 27주에서 39주까지		<p>보험료를 별 의무가 있는(수입의) 평균 수입의 50 %</p> <p>27주에서 39주 사이에 노동능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별 의무가 있는(수입의) 평균 수입의 50%가 지불된다.</p>												

제 6 장

381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입원요양, 요양원(입원) 체류, 휴양소 체류, 치료 요양소(Kurheim) 체류등) 서독에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Krankengeld) 대신에 집용돈(Hausgeld)이 지불된다. 1971년 1월 1일부터는 집용돈(Hausgeld)이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만큼 액수가 지불되고 있다.

동독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52주까지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의 80%에 해당하는 집(용)돈(Hausgeld)이 지불된다. 즉 이 기간동안 당해 보험 가입자의 병이 나아서 노동능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노동하는 동안에 사고가 났을 때, 직업으로 인하여 병이 났을 때, 결핵관계 병이 났을 때, 먼지로 인하여 폐병이 났기 때문에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반 나치(운동)투쟁자와 나치에 의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집(용)돈 대신에 완전히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이 지불된다. 이 규칙은 노동자와 사무원과 그리고 조합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수공업자나 자립 취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두 취업군은 동독의 국가 보험에 추가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서 양독에 다 같이 질병에 걸렸을 때 행해지는 현금 지출 체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노동 불능이 된지 6주가 지나면 재정 보장이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겠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동·서 양독에 있어서 무엇 보다도 수입이 높은 사람들은 추가로 개인적인 사전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않된다.

도표 47

산모에 대한 지출(업적) (Mutterschaftsleistungen)

인적(人的)범위	서	특	동	특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부인)들	6주	출산하기 전에 받는 임신 휴가		6주
	8주	출산(해산)후에 받는 임신 휴가		8주
	계속하여 3.50DM에서 25DM까지의 산모보조금 (Mutterschaftsgeld)		평균(세금을 제하고 남는) 순수 수입에 해당하는 임산부 보조금 내지 주거 보조금	
	+고용자 보조금=(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 노동 수입에 대하여 생기는 차액에 해당함			
기타 보험가입자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산모보조금이 지불됨		해산 6주전(까지)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수입의 평균수입의 75%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불됨. 해산후 8주(까지)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수입의 평균수입에서 50%가 지불됨.	

제 6 장

인적(人的)범위	서	동	독
계속하여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가정 보험에 들어 있는 보험가입자들	일회에 한해서 지불되는 산모 보조금 150 DM 35 DM		
모든 보험가입자	해산을 계기로 하여 지불되는 전체(종합평균)액수 = 50 DM에서 100 DM까지	아이 수에 따라서 지불되는 한번 있는 국가 보조금= 아이 1명 500 M 2명 600 M 3명 700 M 4명 850 M 5명과 각각 그이상 1,000 M씩	
			젖먹이는 어머니는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월 10 M씩 보조금을 받는다.

산모의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출

(Barleistungen bei Mutterschaft)

382 동·서 양육에서 다 같이 산모휴가(분만하기전 6주동안)와 산후휴가(Wochenurlaub - 해산후 8주동안)가 실시 되고

있다. 이 휴가 기간동안에 받게 되는 재정상의 보호로는 각기 경우에 원래부터 받던(세금등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 노동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서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모 보조금이 지불된다 = 즉 계속적인(지불)업적으로서,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에 상당하는 액수. 그리고 한번에 한해서 지불되는 지출(업적) 산모 보호법에 따른 보호 기간이 시작될 때에(분만전 6주 동안) 노동하고 있었거나 혹은 취업 상황에 있거나 혹은 산모 잉태 기간 동안에 노동 조건하는 것이 그 조건으로 보아 허락되는 경우의 여자 보험가입자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건강 보험의 자원에서 산모 보조금(Mutterschaftsgeld)을 받는다.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공제액을 제외 한만큼의 평균 매일의 노동 임금(Arbeitsentgelt)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적어도 3.50DM라야 하며, 최고로는 매일 25DM을 초과할 수가 없다. 만약에(세금등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 수입이 매일당 25DM을 초과할 때에는 고용주는 여기에 생기는 차액을 실제 순수수입액에 달하리 만큼 산모의 보조금에 대한 추가 보조금으로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노동 불능이 될 때에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다른 보험 가입자들은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Krankengeld)에 해당하는 산모 보조금(Mutterschaftsgeld)을 지급 받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모 보조금은 150DM에 해당되는 단 한번만의 보조금으로 지불된다(가족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35DM가 지불

된다)

이밖에도 보험당국자는 분만과 연관시켜 적어도 50DM, 최고는 100DM (이전에 지불되던 보험의 일종인 포육료(Stillgeld) 대신에)의 한몫돈을 지불한다.

동독에 있어서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원칙적으로 출산 이전에 6주간, 출산후에 8주간 동안, 각자가 올린 평균(세금을 제하고 남는) 순수 수입에 해당하는 산모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자유(자립)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분만전 6주동안 보험의무가 있는 평균 수입(금)의 75%를 지급받고, 해산후 8주동안은 산육기 보조(Wochenhilfe)로 이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지출을 받게 된다.

동독에 있어서의 국가의 원조

(Staatliche Beihilfen in der DDR)

이밖에도 산모들은 첫 아기를 배고 나올때에 500M의 일회에 한한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두째 아이때는 600 M, 세째 아이때는 700M, 네째 아이때는 850M 그리고 그이상의 차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하나씩 볼때마다 1000M를 분만전과 분만후로 나누어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다. 그렇지만 만약에 임신부나 산모가 출산 이전에 적어도 두(2)번, 출산후에 4번 임신부 상의소(Schwangerenberatungsstelle) 혹은 산모 협의소(Mutterberatungsstelle)에 나타나서 협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조금은 삭감된다. 1968년의 경우 임신부의 89%가 임신 4개월까지, 임신부의 10%가

임신 7개월까지 임신부 안내(협의)소에 나타났고, 유아의 약 95%가 출생한지 첫 7주안에 적어도 한번은 산모 협의소에 와서 진찰을 받았다는 결과는 역시 위에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은 재정 규칙이 결과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동독에 있어서 임신부 예비 진단 조치와 산모협의조치에 이 같이 높은 비율의 참여도가 바로 동독에 있어서의 산후 첫 몇달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낮은 비율의 유아 사망율에 대한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산모사망율의 경우는 서독과 동독을 비교해 보면 아무런 눈에 띄일만한 차이가 없다. (임신중에 부작용을 이르기거나, 분만시에 그리고 산욕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사망율을 태생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동·서 양독에서 산모 사망율은 1965년 이래 상당히 줄어 들었으며, 1968년의 경우는 동·서 양독이 거의 비슷한 같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48

산모 사망율 (Müttersterblichkeit)

년 (해)	매 10 만명의 태생아에 대한 사망자 (비율) ^{주1}	
	서 독	동 독
1955 년	157	137
1960 년	106	98
1965 년	69	63
1966 년	65	58
1967 년	58	63
1968 년	52	51

주 1 임신중과 분만시 그리고 산욕에 있을때 합병증을 이르쳐서 사망하는 경우

자료의 출처 = 1970 년도의 서독의 통계 연보
1970 년도의 동독의 통계 연보

포육 (哺育) 기간에 있는 산모들은 동독에 있어서는 산후 6 개월 동안 매달 10M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사고나 혹은 직업병에 걸렸을 때에 지급되는 현금 지출 (Barleistungen bei Unfall oder Berufskrankheit)

383 서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에 있어서도 사회 위험 (Sozialen Risiken)인 노동 사고, 교통사고와 직업병 등은 별도로 규제되어 있으며 재정 부담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출 (부담) 분야면에서도 그러하다.

도표 49

보고 의무가 있는 노동사고(교통사고를 포함하지 않음)
(Meldepflichtige Arbeitsunfälle(ohne Wegeunfälle))

해	생업종사하는 사람의 백분율 (%)에 비추어본	직업종사하는 사람의 백분율에 (%)에 비추어본
	서 독	동 독
1964 년	99.9	45.5
1965 년	97.8	45.2
1966 년	93.9	43.1
1967 년	83.0	41.2
1968 년	88.0	41.2

자료의 출처 = 1970 년도의 서독의 통계 연보

1970 년도의 동독의 통계 연보

노동사고의 빈도수를 볼때 동·서 양독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공식(관청의) 통계에 의하면 동독에 있어서 보고된 노동 사고의 수는 취업자수에 관련시켜서 고찰해보면 동독의 경우는 서독의 경우에 비하면 약 반쯤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동·서독간의 차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만은 설명되어 질수가 없다. 왜냐하면 동독에 있어서의 매 1000명의 취업자중에서 생기는 사고연금(자)과 서독에 있어서의 질병과 사고 피해자(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도 약 1 : 1.7쯤 되기 때문이다. 동독에서 사고가 덜 일어나는 것은(즉 동독의 낮은 사고율은 -역주) 대부분의

제6장

경우 아마도 서독에 있어서 보다 노동 보호 체제를 잘 구사하고 보다 집중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보건 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의 경영협의회 (Betriebsrate) 와 노동조합의 노동 보호 감독청들은 감독과 협의와 그리고 집단적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호조치가 잘 취해진 일자리와 노동수단을 마련함에 있어서 함께 작용하고 있다. 기업체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동 보호에 관한 지시사항들과 연결되어 있는 광범위한 일련의 일반적인 노동 보호 지시 규정들과 각 기업체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건(사항) 조치, 사고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FDGB가 행하고 있는 강력한 감독역할과 협찬역할들은 서독에 현존하고 있는 제도 보다 보호 작용 면에서 우세(월)한 체제를 동독에 마련할수 있도록 해준 결과를 낳았다.

사고나 직업병등으로 인하여 노동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단기 현금지출(Geldleistung)에 관한 규정은 동·서 양독에서 병이 났을 때 취해지는 보호 조치 규정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서독에서 노동 불능이 된 부상자는 첫 6주 동안에는 임금과 봉급을 계속하여 지불 받으며 그후에는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과 집(용)돈(Hausgeld)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부상자 보조금(Verletztengeld)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불추정 경제(기준)으로서 건강 보험에 규정되어 있는 매월 1425DM 대신에 연 36000DM가 적용된다. 부상자(보조)금은 노동 불능의 상황이 끝나는 때 까지거나 혹은 사고 연금이 정하

는 때까지 지급 된다.

동독의 경우에는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하여 노동 불능이 된 사람에게는 노동 불능된 때 부터 노동능력이 다시 생기는 때 까지거나 혹은 사고 연금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과 임금 (보수) 의 상쇄액 (Lohnausgleich) 즉 (세금등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 수입의 90%를 지급 받는다.

보조금 (Beihilfen)

- 384 서독의 공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자기자신과 연금지불을 받을 권리를 가진 가족들과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하여 외래 뿐만 아니라 입원을 하여 받는 의사의 치료나 치과의사의 치료시와 그리고 분만 (출산) 시에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공무분야에 근무하는 사무원과 노동자들도 보조금을 받는다.

아이들이 병났을 때의 치료 및 간호

(Pflege Kranker Kinder)

- 385 동독에서는 혼자 있는 취업자가 그들의 아이가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간호하기 위하여 노동면제를 받을수 있다. 이러한 취업자는 사회 보험에서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게되며 기업체들로 부터는 이 재정지원과 (세금등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 수입의 90%와의 사이에 생겨나는 차액금을 2일동안 받는다. 그런데 이 2일이 초과되지 않으면 압될 경우 예를 들어서 만 간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 보험(당국)은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원을 한다. 그런데 이 지원 기간의 최대 기간은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나 한 아이일때는 최고로 4주간 두아이 일때에는 6주간, 세아이일때에는 8주간, 4아이일때에는 10주간 이며 그리고 다섯이나 그 이상 일때에는 최고로 13주간의 재정 지원을 받을수 있다.

서독의 보건(사업)

(Gesundheitswesen der Bundesrepublik)

386 질병 치료와 건강예방을 위하여는 서독의 경우 개인 병원 기관들 뿐만 아니라 광범위 한 공립 보건 사업이 갖추어져 있다. 병원 내지 요양소(Heilstatten)들은 공립 기관(지방 자치단체, 각주, 사회 보험기관등)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개인체(자유로운 공익단체나 교회단체, 개인시설등)에 의하여도 경영 유지되어 가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 시나 지방(하급 자치 단체구역)에 있는 공립 보건소들은 다음과 같은 과업을 담당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보건 경찰의 임무, 학교 보건 사업, 산모에 대한 협의, 유아 및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보호, 결핵성 질환에 대한 보호, 중독증의 병에 대한 퇴치사업, 전염성 질환의 만연 을 막기위한 보호(예방) 주사 실시, 소위 국민병(Volkskrankheit) 퇴치 사업, 전체 국민에 대한 보건 진찰 실시 성병환자 통계 및 이의 퇴치 사업등을 벌리는 것이 공립 보건소가 할 임무에 속한다. 소경(盲啞), 잘 듣지 못하는

아이들 잘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육체의 사지가 잘 못되어 태어난 아이들과 그리고 육체와 정신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는 공·사립의 특수학교들과 특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 가정 및 보건 담당 연방공화국 (서독) 부 (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 와 연방공화국 내무부 및 이에 해당하는 각 주의 부들은 공기의 정화, 소음퇴치, 음료수의 정화, 음료수 위생, (공장등의) 폐수 위생, 이온화 시키는 광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 보호 및 의료품과 식료품 사용에 있어서 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일등을 수행할 과제 (임무) 를 띄고 있다. 연방공화국 보건국 (Bundesgesundheitsamt) 은 공공 보건분야에 대한 연구활동과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동독의 보건 (사업) 제도

(Gesundheitswesen der DDR)

동독에 있어서는 또한 보건기구 (Gesundheitswesen) 가 대부분의 경우 과업을 맡고 있다. 극히 소속의 개인 시설 (기관) 을 제외하고는 동독에서는 아무튼 의학상의 보호는 국가의 보건 기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입원 환자 치료는 서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그리고 특수 기구들에서 행하여진다. 외래 환자의 (의료) 치료를 위하여는 국립 및 사립 의료원과 치과 병원들, 특수협의회, 외래 환자 취급소와 대중 외래 환자 취급소가 있다. 시·군들을 의료 시설 (보호) 조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나누는

구분제도가 있다. 특히 중점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 의료활동을 감안하여 『디스펜서리 원칙』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하여 행해지는 일은 의학상의 협의를 행할때 그리고 치료를 행할때 사용되는 방법이 포함되며 예방 의학적인 계몽을 진단과 치료와를 결합시키는 일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방편으로 하여 환자들을 특정한 질환이나 그리고 질병의 위험에 빠져 있는 특정한(전형적인) 국민군으로 환자를 구분하고 그들의 치료를 해 주고 나아가서 그들의 건강 발전을 계속 감독해 나가고 있다.

각 기업(경영)체들의 임무(과제)

(Aufgaben der Betriebe)

기업체의 보건 기구(Betriebsgesundheitswesen)에 의뢰 환자 치료와 예방 의무, 노동 위생, 그리고 노동 보호등의 임무가 주어져 있다. 기업(경영)체의 규모 여하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각 기업체는 갖출 의무를 지닌다. 즉

- ◎ 200명 까지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는=
(의료) 보건실(동독적십자사의 후원자를 통해서 행해지는 명예직책상의 봉사)
- ◎ 200명에서 500명까지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의 경우에는=
간호원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Schwesternsanitaststelle)(위생 시설 통괄은 국가시험을 걸친 간호원

을 통하여 실시됨)

- ◎ 500명에서 2000명 까지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의 경우는=

의사가 있는 위생시설(Arzt-sanitätsstelle)을 갖추어야 한다. (통관은 검직을 하고 있는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동시에 간호원들이 충원되어 있어야 한다)

- ◎ 2000명에서 4000명 까지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경영)체들의 경우는=

기업체의 외래환자 진료소(Betriebsambulatorium)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진료소의 통관-원장-은 주임 무로 직업에 종사하는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이에 더하여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밖의 시설과 그리고 수요와 가능성에 따라서 치료(진료)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4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로 부터는= (독립적인) 직장 외래환자 병원(BetriebsPoliklinik)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968년말 현재 2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수는 183개가 있었다.

농촌과 산간 벽지 국민들의 의료 보전은 대부분의 경우 농촌 외래 진료소(Landambulatorien)와 이동 병원차(Ambulanzen)와 그리고 지역(지방) 간호원 의료 기구(Schwesternstation)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보건 시설(기구)의 수용 능력

(Kapazität des Gesundheitswesens)

387 동·서독에 있어서의 보건 기구(시설)를 양적인 면에서 보는 수용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병원(입원)침대, 의사와 치과 의사등과 같은 것을 표준으로 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이들 기구(시설)들이 지니고 있는 효용능력을 알수는 없다. 서독의 경우는 병원의 수가 1960년 이래 약 3600개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들 병원의 평균 침대수는 계속하여 늘어났다. (도표 A 112를 참고해 볼것) 이렇게 되므로써 또한 매 10만명의 주민에 대한 침대수가 약간 늘어난 결과가 되며 1968년의 경우에는 인구 10만명에 대하여 침대가 1101개가 해당되었다. 동독의 경우는 1968년에 인구 10명에 대하여 1140개의 병원 침대가 해당되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평균 기간을 볼 것 같으면 서독의 경우 보다 동독의 경우 훨씬 짧아 졌다. 1960년 까지만 하더라도 동독에 있어서의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서독 보다 길었는데 1968년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서독이 평균 25.9일인데 동독은 24.3일로서 동독의 경우가 짧다.

주민대 의사의 비율을 따져 볼것 같으면 동독은 1960년에 서독 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도표 A 113을 참고 해 볼것) 1968년 까지는 동독은 서독에 대하여 지고 있는 이 불리한 입장을 회복하는 일에 성공했다. (그러나) 치과 의사의 경우는 동독이 그냥 의사의 경우 보다

덜 유리한 입장에 있다. 1968 년의 경우 서독에는 인구 10 만명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52 명이 해당되었는데 동독에 있어서의 이 비율은 39 명에 지나지 않았다.

서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건강(질병)보험은 현금 지불뿐만 아니라 현물지불로 행한다. 가령 그예를 들자면 의사와 치과의사의 치료와 의약품과 약 및 보조약(Hilfsmittel), (사회 보험 제도에 의한) 자택요양, 병원입원 가료와 그리고 요양등이 그것이다. 현물 봉사는 보험에 가입된 사람과 그의 가족(식구)에 대하여 보통의 경우는 아무런 시간적인 제한이 없이(무제한) 행하여지고 있다.

외래 진료(Ambulante Behandlung)

388 동·서 양독의 체제에서 외래 환자 치료와 치과 외래 환자 치료는 협의, 왕진(진료), 수술과 그리고 이밖의 의학상의 업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상의 업적은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보아 병을 고치거나 혹은 병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에 합목적이고도 충분한 것이다.

서독의 경우는 외래 환자의 치료와 치과 환자의 치료에는 보험당국이 지정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에 의한 치료가 포함되는데 보험 가입자는 이들 의사와 치과 의사들 중에서 자유로히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이밖에도 다른 의사들(전문의사, 병원의사등)에게 갚는 송금 이송과 치료약과 의약품등의 처방도 포함된다. 의약품과 봉대와 그리고 약을 인수할때에는 비용의 20%, 그리고 최고로

장

처방하나를 끊을 때 마다 때 처방에 대하여 최고 2.500 M를 보험가입자가 손수 갚아야 한다. 이 비용을 내는데서 면제를 받는 사람은 연금자와 중 부상자와 그리고 집은, 부상자(보조)금 혹은 과도기 보조금(Übergangsgeld) 등의 혜택을 받는 보험 가입자들이다.

소액의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작으만한 치료약을 받을수는 없다. 제법 다량의 치료약과 보조약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 회사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지출 부분이 아니고 보험 당국자의 재량에 따라서 처리하는 일에 속한다. 많은 상이한 보험 기구들의 정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제약품의 구입에 필요한 돈은 질병(건강)보험과 연금 보험당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 자신에 의해서도 부담되어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사로 부터 진료를 받으려면 특별한 (질병 보험에의)진단서 용지(Krankenschein)를 제출해야 된다. 의사로 부터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을 때에는 매 1/4년에 10DM, 그러나 최고로 일년에 30DM까지의 금액이 도로 반송 지불된다. 동독에 있어서도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립 보건기구의 의뢰 및 입원 치료소나 혹은 개인 의사나 치과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을 자유로히 선택할수 있는 제도가 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할때에는 노동과 사회 보험의 증명서(보험가입자의 경우)를 제시하므로써 혹은 보험 증명서(보험가입자의 가족들)를 제시하므로써 보험당국이 부담하는 의사의 치료들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

의약품과 치료약과 보조치료약등을 마련하는데 드는 돈은 완

전혀(전액) 사회 보험(당국)에 의하여 부담이 된다. 그러나 정형의과적인 구두류(Orthöpädischem Schuhwerk)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만은 약간의 보조금만 지불된다. 시력의 보조(총)수단을 마련하고 의치등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체의 노동조합 간부진(Betriebsgewerkschaftsleitung) 내지 기업체내에 있는 사회 보험 자문 기관의 승인을 말아야 한다. (팔·다리등의) 인공포장등의 비교적 큰 보조수단의 경우는 지방 위원회의 사회보험관리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원 가료(치료) (Stationäre Behandlung)

- 389 서독에 있어서는 병원입원치료(Krankenhauspflege)는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병이 날 때에는 3년 이내에 최고 78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독에서는 당해 병이 나올 수 있고 차도가 있게 좋아지고 그 도가 경하여져 갈 수가 있다고 예상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 보험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체 기간동안의 병원치료를 제한없이(전부) 부담한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 보험의 관리가 FDGB의 지방 간부회의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더 부담하기 위하여 가족들도 이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 보험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급성 병환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한다. 동독의 국가 보험에 가입한 많은 서로 상이한 보험가입자들(특히 자립 취업자들)의 경우는 보험당국이 지는 병원 치료비부담은

일반적으로 26주동안에만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담은 52주 동안으로 연장되어 질수가 있다. 만약에 당해환자가 52주 이내에 다시 노동 능력을 회복할수 있겠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사회보험과 계약관계에 있는 여러 국립 보건 기관들 중에서도 개인 병원이나 혹은 종교계에서 경영하는 병원들중에서 자유로히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수가 있다.

입원 가료(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기는 하나 특수한 여건때문에 당장에 입원가료를 받을수 없게 될때에는 서독에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 서로 충분한 훈련과 숙련을 쌓은 사람을 통하여 가정 치료를 받을수가 있다. 서독에 있어서의 건강 보험당국의 정관은 이와같은 가정치료를 한데 대하여 질병 보험의 이병 보조금중에서 1/4을 공제할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 동독의 경우 가정 치료를 받는데 대한 비용부담(보험당국의)은 26주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요양은 동·서 양독의 사회 보험 당국에 의하여 예방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회복 조치로서도 취해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근무불능」 항목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질 것이다.

b) 양로금(제) (Altersversorgung)

390 국민의 양로금(제)에 관한 경우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사회 보험제도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서독에 언급함바 있는 보험에 가입한 인원 범위에 나타난 차이와 여러가지 차이뿐만 아니고, 연로금 제의 종류

와 이의 계산기초와 그액수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서독에서는 양노(보장)은 양노 보험당국이 지출하는 연노 연금과 광부 조합이 지출하는 연노연금,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무원들이 하는 추가 보험이 지불하는 추가 연금, 공무원 보호기구가 지급하는 연금과 그리고 농민의 연노 원조에서 지급되는 양노금등으로 행하여 진다.

동독에서는 양노 보장(Alterssicherung)은 사회 보험에서 지급되는 양노금(제)과 동독 국영철도와 동독 우체국에 근무한 사람들이 지급 받는 양노금, 동독의 무장 기관들과 세관 당국의 연노연금, 국가에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명예연금과 그리고 지식층에게 지급되는 추가 연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의 관리들에 대한 양노(금)제도는 사회 보험을 통하여 그리고 이의 원칙에 따라서 행하여 진다.

나치에 대항하여 싸운 투사들과 나치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명예 연금(Ehrenpension)도 양노(안정)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금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것은 「기타 지출(업적)」 항목에서 다루어 진다.

연금(자) 연령(Rentenalter)

- 391 서독의 경우는 정년퇴직(연금을 받는)연령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남·여 다 함께 65세로 되어 있기는 하나(특수한 공무원군의 경우는 이 규칙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연금 보험에 보편은 여자(부인)들의 경우 60세부터는 앞당겨서 연금신청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이 당해(여

제 6장

자) 보험가입자가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 보험 가입 의무를 띠고 직장에 종사했고 이밖의 다른 생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위와 같이 된다.

동독에 있어서는 명예 연금 취득자(60세와 55세)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65세, 여자가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연금 취득 연한)이 된다.

연금의 적용(RentenanPassung)

392 양노 보장에 관한 동·서 양국의 체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이 되는 차이는 연금이 일반적인 복지의 증진에 적용하는 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서 생겨나는 것이다. 서독의 경우는 연노 연금은 1957년 이래 매년 수입(소득)의 발전에ダイナ믹하게 적용되어 나갔다. 동독의 경우는 1968년에 있는 개혁이래로 대부분의 연금은 생업 소득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일반적인 수입의 발전에 비례하여 유동화 되어 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므로서 동독에 있어서 생활(유지)비의 상대적인 고정(균일)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런 점진적인 구매력 손실은 보지 않지만 아무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 복지 발전(발달)에는 점점 더 많이 뒤떨어져 처지는 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

동독에 있어서 이 연금개혁은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결과적으로 불러 이르켰다. 즉 1968년도 이후에 새로히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액이 이전시기에 확정되어진 연금자의 연금에 비하여 명확히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상

을 초래했다.

사회 보험의 양노 연금

(Die Altersrenten der Sozialversicherung)

393 서독에 있어서의 노동자 연금보험과 사무원 보험이 지급하는 양노 연금과 동독의 사회보험당국이 지급하는 양노 연금은 비슷한 전제 조건하에 이루어졌다. 즉 특정한 연령에 달해야 한다는 사항과 180개월 내지 15년 이자는 최소 보험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들. 이와 같은 것을 산출해 내는 데는 다음과 같은 동·서독이 서로 비슷한 요소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

- ◎ 계산 가능한 보험기간, 이것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 부담금 불입기간과 이밖의 다른 계산 가능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 증가 비율
- ◎ 연금 신청자 개인의 보험가입의무를 지닌 수입이 또한 위의 계산을 산출하는 밑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서독의 경우 -특수규정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업생활 동안에, 동독의 경우는 보험가입 의무를 지니고 하는 최후의 활동이 끝나기 마지막 20년 동안에

동·서독에서 지급하는 연금 액수에 상당한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위에 언급된 계 요소를 어떻게 측정하며 계산 형상에서 어떻게 이들 요소를 결합(연결)시키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들이다.

보장 시기 (Versicherungszeiten)

394 많은 차이나는 부분 규정을 제외 하더라도 계산 가능한 보험 기간을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동독에서는 부인들은 추가 기간으로 일년간을 그들의 연금 연함이 시작하기 전에 출생한 혹은 자기 애기 대신에 (양자로) 받아드린 아이가 만 세살이 되기 전에는 각 아이에 대하여 갖게 된다. 이밖에도 아이가 없는 부인들도 적어도 20년 동안 보험의무를 지니는 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1년에 5년이라는 보험 년수를 보험에 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활동의 기간 여하에 따라서 가산해서 받게 된다. 이 가산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가능 보험기간이 최대 한으로 5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않된다) 이 가산 기간은 여성들의 생업 종사비율이 크게 성장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산모가 되므로써 받는 보험기간 동안의 여러가지 불리한 점,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훌륭하지 못한 직업 교육을 받고 승진할 기회가 얼마 없는 것등의 제 불리한 점들을 상쇄하는 데도 또한 공헌을 다 하고 있다.

증가 (상승)율 (Steigerungssatz)

395 상승율 (Steigerungssatz)은 서독의 경우 연료 연금의 경우에 노동자 연금 보호와 사무원 보험에서 1.5%, 광부 조합의 연금 보험에서 2%에 달한다. 동독에서는 1946년 1월 1일 부터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니는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의 상승 비율은 1%이며 그 이전 시기에 대하여는 0.7%, 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있어서의 광부(양노) 연금은 2% 내지 1.4%에 달한다. 이와같은 낮은 상승율은 보험의 가산연한 평가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부담금 측정한계 (Beitragsbemessungsgrenze)

396 보험 의무를 지니는 수입(소득)금액의 경우 서독과 동독 사이의 연금비교를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서독에서는 연금 보험에 대한 부담금 측정 한계가 1952년 이래로 동독의 경우 보다 높으며 그후 계속하여 높아졌다는 사실이며 이와는 반대로 동독에 있어서는 이 한계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제정된 수준으로서 600M를 고수하고 있다.

새 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결정적인 차이가 보험 가입자의 수입(소득) 평가에서 생겨 난다. 동독에서는 이를 산출해 낼 때에 보험 의무를 가지는 실제의 지난 20년간의 수입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서독에서는 이와는 달리 현실화된 수입(소득)치 (ein aktualisierter Einkommenswert) 를 산출해 내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하므로써 한편으로는 연금 해당이 시작되기 직전 까지의 일반적인 수입(소득)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가입자가 전체 보험가입자의 수입총별로 볼 때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전의 수입을 이와같이 실제 수입(소득) 수준에 맞추어 환산하므로써 평균수입의 유동적 발전에 제하여 이전수입을 과소 평가하는 일이 피해 질수가 있다.

이와 같이 동독에 있어서의 유리하지 못한 제산기초는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하여 상쇄 되어진다. 즉 이와같이 하여 산출된 연금에다가 매월 110M 라는 기본연금을 더 지급하는 일을 통하여 1970 년의 경우 동·서독에서 통용되고 있는 연금(지불, 제산) 방식에 따르면 노동자와 사무원(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이 서독에서 받을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연금(Maximalrenten)은 1300DM가 되고, 동독의 경우는 363M가 된다. 동·서 양독의 경우 보다 높거나 혹은 추가로 취하는 가능한 보험같은것은 이 최대 연금 제산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연금 액수 (Rentenhöhe)

397 최소 연금 (Mindestrenten) 제도를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서독의 연금 보험과는 달리 동독에는 150M를 하한선으로 하는 최소 연금 제한이 있다.

동·서독의 연금제도에 대한 이와같은 비교는 동독의 경우는 1968년 7월 1일 이후에 받게되는 연금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 비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가 있다. 즉 서독에 있어서는 가능한 연금액수가 상당히 폭이 넓다는 사실과 동독에서는 밑으로는 최소 연금을 통하여 위로는 최고 연금을 통하여 아주 제한되어 있는 사회 보험의 양노 연금이 크게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수가 있다. 동독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양노 연금도 즉 1968년 7월 1일 이전에 처음으로 지급받은 바 있는 연금들은 연료개혁과 관련하여 개선되었다. 이렇게 하므로써

비교적 낮은 연금이 꽤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1967년과 1969년 사이에 (매년 12월) FDGB의 사회보장 연료 연금은 매월 평균이 전체적으로 보아 12%가 올라가므로써 175M가 196M가 되었으며 동독의 국가 보험은 약 17%가량 올라갔다. 평균(양노) 연금이 1969년의 경우 176M였다. (1967년도=151M) 동독의 국가 보험이 크게 올라간 것은 주로 최소연금(액)이 올라간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부양 양노 부양

(Beamtenversorgung - Altersorgung)

- 398 서독에 존재하고 있는 공무원 부양(양노처우등)에 대응될 만한 제도가 동독에는 없다. 그렇지만 동독의 국영철도와 동독의 우체국에 근무한 사람들의 양노처우의 경우는 서독에 있어서의 공무원(양노)처우와 비슷한 처우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두가지 관점에서 정하여 진다. 즉 정년 퇴직이 시작되기까지 연금으로 쓰일 수 있는 봉급수당(Dienstbezüge)이 얼마였는가에 따라서와 그리고 계산 가능한 복무기간이후에 있어서의 이 봉급수당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 연금은 적어도 연금으로 쓰일 수 있는 근무 월급(수당)의 35%는 되어야 한다. (연방의 경우는 적어도 10이라는 대기 기간을 이행한 후) 그리고 직장근무 25년째 되는 때까지는 매년 2%씩 계속하여 오르고 그후 부터는 매년 계속하여 1%씩 올라서

연금으로 쓰일 수 있는 근무 월급의 최고 75%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 연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서 올라간다. 동독의 국영 철도에 종사한 사람들은 사회 보험의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적어도 10년간 동독의 국영 철도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했으면 최종 근무 5년간에 받던 매월 기본 봉급의 20%에 해당하는 양노 보상조치를 받게 된다. 이 백분을 비율은 근무기간이 늘어마다 근무 25년까지는 매년 2%씩 올라가고, 그후 부터는 매 일년이 늘어날 때마다 1%씩 올라가서 최고로 매월 지급받던 기본 봉급의 70%나 혹은 매월 최고로 800M를 지급 받는다. (추가 보조금을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규칙이 동독의 우체 관계 취업자들에게 적용된다.

추가 부양 (제도) (Zusatzversorgung)

399 동·서 양독에 공히 공무 부문에 대하여 추가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서독에서는 공공 부문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이것이 해당되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명을 띄고 있다 즉, 보험가입 (부담) 금에서 재정지원이 되는 보험당국의 지출부담을 추가하므로써 그리고 부양 조치를 취하므로써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사회 보험 연금이 공무원 부양조치에 해당하는 수준에 달하도록 향상 시키는데 그 사명이 있다.

동독에서는 「동독의 학술, 예술, 교육과 그리고 의학 (료) 기관에 근무하는 지식층」에 대하여 주어지는 추가 양노 보험 (부양) 과 직무수행 불능자 부양 (보험)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이 양노(부양)(보조)조치는 보호조치를 받을 경우가 생기는 그 한해전에 받은 평균 매월(세금 등을 제하기 전의) 총 봉급의 60%에서 80%까지 되는데 그러나 최고 800M를 매월 넘을 수는 없다. 아무튼 다른 연금 수령액들과 합쳐서 양노 부양 조치는 최고로 지금까지 받은(세금등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 근로 수입의 90%를 초과할 수가 없다.

국영 기업체나 이에 준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공학 제종의 지식층도 위에 언급한 경우와 거의 비슷한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업체가 재정부담을 하는 추가 양노 부양조치를 받는다. 이 연금은 다른 연금들과 결합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최고 금액의 제한도 없다.

동독의 가장 중요한 국영 기업체들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무원들에 대해서 기업체가 지급하는 추가 연금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은 아무튼 서독에 있어서의 기업이 행하는 사회보조(원조)와 비교될만한 것인데 이 추가 보험에 관하여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본 서술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다. 매월 지급되는 추가 연금은 연료자와 노동 불능자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5년간의 매월(세금등을 제하고 남은) 순수 평균 수입(소득)의 5%이며 그러나 적어도 매월 10M는 되어야 한다.

고액 보험 - 추가 보험(보장)

(Hoherversicherung - Zusatzversicherung)

400 동독의 추가 보험(보장)도 서독의 법으로 정해진 연금 보

제6장

함께 있는 고액 보험과 비슷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동독의 경우는 남·녀 보험가입자들을 구분하는 제도가 없으며 하나의 계약밖에 없다.

동독에서 행해진 연금개혁과 더불어 사회 보험에서 행해지는 추가 연금 (Zusatzrente) 에 대하여 자유 의사로 (추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추가 보험은 순전히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 당국에 보험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기금의 예금은 5%의 이자가 붙는다. 보험가입자가 담당할 보험 부담금과 보험당국자가 담당할 지출 부문에 대한 측정은 보험 수학적 기본원칙 (Versicherungsmathematische Grundsätze) 에 따라서 행해진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보험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계약 A = 추가 양노 연금, 추가 노동불능자연금, 추가유가족 연금등에 대한 자유의사에 의한 보험

계약 B = 추가 양노 연금과 추가 노동 불능(자) 연금에 대한 자유의사에 의한 보험

보험 가입자의 매월 보험 부담금은 적어도 10M에 달하거나 혹은 최고액이 200M인데 이에 추가하여 5M를 더 내거나 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가입자는 자기가 내야 할 보험 부담금의 액수를 손수 확정할수 있으며, 새해가 시작하는때에 이 액수를 변경할수도 있고 60개월간의 이 보험 부담금을 불입한 후에는 보험 부담금 불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던가 혹은 완전히 중단해 버릴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지금까지 획득한 연금 요구권함은 불변하고 계속하여 전액 그냥 남게 된다.

이 연금 지불(보험당국자의)의 액수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5) 요소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

계약의 선택

보험 부담금의 액수

보험 부담금 불입 기간(동안)

보험 부담금을 불입하기 시작한 때의 나이(연령)

보험 가입자의 성별

서독에 있어서의 고액 보험(Höherversicherung)과 동독에 있어서의 추가 보험(Zusatzversicherung)은 이렇게 볼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즉 연금이 유동적으로 수입(소득)의 발전이나 혹은 물가의 발전에 적용되어 지지 않고 따라서 보험당국이 연금 지불을 하는 동안에 실제로는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생활)의 발전에 비하여 연금의(구매력등)가치는 줄어 든다는 불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연금의 중복 취득(Mehrfachbezug von Renten)

401 연금의 이중(중복) 취득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해 보면 동서 양독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동·서 양독에는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몇가지 특별히 중요한 것만을 본보기로 열거해 둔다.

◎ 서독에서는 과부 연금(Witwenrente)이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 연금(Versichertenrente) (즉 양노 보험

이나 노동 불능 연금) 이외에 또 사회보험으로 부터도 무제한 지불되는 것인데 동독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여자는 이 두 연금중에서 많은 어느한쪽 연금만 전액을 받게 되고 다른 한쪽 연금으로 부터는 단지 25%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추가 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서독에 있어서 법적인 연금 보험의 보험가입자 연금이 사고연금과 합쳐 질때에는 보험 가입자 연금(Versichertenrente)은 사고 연금과 합쳐서 연 근로수입의 85%와 이의 계산에 중요한 측정기준(바탕)이 되었던 것의 85%를 초과 한다는 점에서 (그효력이) 중지되는 것이다.

동독에서 사고연금이 제 2 연금과 합쳐질때에는 액수가 높은 연금이 전액 지불되고, 제 2 연금은 절반 지급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액수가 낮은 연금이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연유된 노동 불능 연금일 경우에는 이 규칙은 통하지(적용되지)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연금중에서 액수가 높은 연금만 지불된다.

- ◎ 전쟁희생자 연금은 서독에 있어서는 다른 연금과 함께 (나란히) 무제한으로 지불되며 (기본 연금 Grundrenten), 특정한 전제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는(즉 조정연금 - Ausgleichsrenten) 삭감될수가 있다. (액수가 줄어들수 있다-역주)

동독에서는 그러나 이와는 달리 동시에 전쟁 희생자 연금과 양노연금 혹은 노동 불능 연금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연금 중에서 액수가 높은 연금만 지불되고 두째 연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c) 근무불능(노후등) (Invaliditat)

402 기능적인 구분의 의미로 이하에 장기 혹은 지속적인 병에 신고한다던가 허낙(Gebrechen)현상에 허덕인다던가 혹은 이밖의 다른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던가 하는데 대하여 지불되는 현물 지불이나 혹은 현금지불등의 형태로 행해지는 여러가지 지불(보험당국자의 보상조치)을 종합해 보았다. 이와 같이 종합을 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특히 현금 지출(Geldleistungen)이 동·서 양독에서 원인 여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노동사고나 혹은 직업병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줄어들 때에는 소모병 질환(Oernhleipkrankheiten)이나 혹은 개인적인 사고로 인한 결과로 생활 중사 활동이 줄어들 때는 받는 보험의 혜택 보다는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된다. 더군다나 사고 보험에서 지불되는 혜택에 대하여 노동 불능 보험에서도 혜택이 -삭감(줄어들은)된 액수이기는 하지만- 주어지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점에 있어서는 동·서 양독의 보험 체계가 다 같이 아직도 (노동)사고와 직업병에 대한 기업의 위험 책임(보증)이라는 기본 정신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 언급한(구분된) 별도별 재정 지원현상도 설명되어 질수가 있겠다.

노동 불능의 경우에 지불되는 현금 지불로서 서독의 경우

제6장

다음과 같은 것이 파악될 수 있겠다 =

노동 연금 보험과 사무원 보험과 그리고 광부들의 연금
보험에서 직업 내지 생업종사 불능 연금
법률로 정해진 사고보험의 사고연금
전쟁 희생자 보험의 기본 연금과 조정연금(Ausgleichsrenten)

농민에 대한 양노보조금(Altershilfe)

동독의 경우 = FDGB의 사회보험과 동독의 국가 보험에 있어
서의 노동 불능 연금, 사고연금과 그리고 전쟁
부상자 연금

서독에 있어서의 직업 수행 불능과 생업종사 불능연금과 동
독에 있어서의 노동 불능 연금은 각기 양노 연금에 적용되
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 산출된다. 연금의 수준 차이와 연
금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수준 발전에 유동적
으로 적어져야 하는데서 생겨나는 문제에 관해서 위에서 이
미 언급한 얘기들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계산 가능한 보험 기간

(Anrechenbare Versicherungszeiten)

- 403 동·서 양독에서 연금액수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계산가
능한 보험기간을 산출해 내는 일이 양노 연금(Altersren-
ten)에 대한 규정과는 차이가 난다. 법에 정해진 정년
퇴직 연한 보다 일찍이 노동 불능 조건으로 인하여 생업
종사 활동이 줄어들때에 실질적으로 행하여진 직업종사 연
한을 참작하게 되면 그 결과로 부족한 연금산출로 규결될

것이므로 동·서 양쪽에서는 의실적인 보험기간 (fiktive Versicherungszeiten)을 이에 첨가 계산한다. (첨가 계산기간 - Zurechnungszeiten)

서쪽에서는 55세 이전에 노동 불능 상태가 일어 날때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정규적으로 계산 했을때 시작되는 연금 연한과 55세 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첨가 계산 기간으로 완전히 인정하는데 광부연금 보험에서는 그러나 그 규정이 달라서 2/3만 인정된다. 동쪽에서는 노동 불능 경우 (Invaliditätsfall)와 남 (65세) 여 (60세)의 정년 사이에 생기는 기간을 70% 인정하여 첨가 계산 기간으로 추가해 준다.

노동 불능 정도 (Invaliditätsgrad)

- 404 연금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는 노동 불능 정도에 관하여 볼 때 동·서쪽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서쪽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생업활동 능력이 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보험 가입자의 생업활동 능력에 비하여 반정도 못 되게 그 이하로 내려갈때에는 직업 종사 불능 연금 (Berufsunfähigkeitsrente)이 지불 된다. 한 보험 가입자가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자기의 생업 종사 활동을 더 이상 정규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없거나 혹은 아주 적은 액수의 수입밖에 얻을수 없을때, 생업 종사 불능 연금을 받는다. 동쪽의 경우는 위에 언급한 이 두가지 종류의 연금 종류에 비교될 만한 것으로 노동 불능 연금 (Invalidenrente)이 있는데 이 연금은 한 보험가입자의 노동능력과

제6장

수입(소득)이 적어도 $2/3$ 가 줄어들었거나 혹은 매월의 수입액이 150M를 넘지 않을때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된다. 계산 가능한 보험기간과 이 계산에 바탕으로 삼은 수입에 관하여 동일한 전제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는 서독에 있어서의 생업 종사 불능 연금(Erwerbsunfähigkeitsrente)과 동독에 있어서의 노동불능 연금(Invalidenrente)은 그 액수면으로 보아서 동·서 양독에 존재하는 양노 연금(Altersruhegeld)과 동일하다. 서독에 있어서의 직업(수행) 불능 연금(Berufsunfähigkeitsrente)은 - 동일한 전제조건이 주어졌을 때 - 생업(종사) 불능 연금(Erwerbsunfähigkeitsrente) 내지 양노 연금(Altersrente)의 $2/3$ 에 달한다. 양노 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는 최소 노동 불능 연금(Mindestinvalidenrente)과 최소 사고 연금(Mindestunfallrente)은 매달 150M에 달한다.

사고 연금(Unfallrente)

- 405 사고 연금의 경우는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계산 방법이 매우 비슷하다.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년도에 이룩한 수입(소득)인데 동·서독이 다 마찬가지이다. 연금 액수면에서 커다란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에 생겨난다. 즉 서독에서는 연 노동(근로) 수입(소득)이 법률로 정하여 있는 추정 한계선인 3600DM까지 고려되며(사고 보험 당국자가 정관을 통하여 보다 높은 액수의 한계선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동독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고려되어 질수 있는 월 최고 수입액이 600M로 정해져 있으며 이것을 연 근로(노동) 수입(소득)으로 계산한다면 7200M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어 생기는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수준의 차이 특히 교역의 수입자에게서 생기는 이같은 수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조치로서도 상쇄되어 지지 않는다. 즉 동독에서 수입에 직결되어 있는 연료 지불 액수에 참가하여 적어도 $66^{2/3}$ %의 생업활동 수축 현상이 일어 날때에 80M라는 고정 금액을 받게 되고 50 %에서 $66^{2/3}$ % 사이의 생업활동 수축 현상이 일어날때에는 20M의 고정액을 추가로 지불받는 조치로서도 상쇄되어 지지 않는다. 약간한 생업활동 지장을 받을 때 100 %의 부분 연금이 동·서 양독에 있어서의 완전 연금(Vollrente)에 비추어 본 노동 불능도에 따라서 적어도 20 %의 피해를 보았을 때 지급된다.

서독에 있어서는 사고 연금이 연금 보험의 연금들과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수입(소득)의 발전에 적응되어 진다. 이에 대하여는 평균(세금등을 제외하기 이전의) 총 임금액과 총 월금액의 변화가 기초로서 쓰인다. 이에 해당되는 연금유동화 현상은 동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 피해자 보험(보장)

(Kriegsopferversorgung)

406 서독에 있어서의 전쟁피해자 보험의 연금과 동독에 있어서의 전쟁 부상자 연금(Kriegsbeschädigtenrenten)은 노동 불능의 경우에 행하여지는 금전상의 보장의 또 다른 하나의

제 6 장

요소를 이루고 있다. 서독에 있어서는 적어도 25%의 생업 종사 능력 감소를 입고 있는 전쟁 부상자는 1970년에 부상의 도에 따라서 61DM에서 313DM까지에 달하는 기본연금(Grundrente)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적어도 50%의 생업종사 능력 감소를 입고 있는) 부상자는 역시 피해의 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139DM에서 313DM까지 달하는 조정 연금(Ausgleichsrente)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입(소득)과 기타 다른 수입들도 여기에 함께 계산되어 질수도 있다. 1971년 부터는 전쟁회생자 연금도 역시 유효화 되어진다. 동독에서는 적어도 66^{2/3}%에 달하는 전쟁으로 인한 육체의 부상을 입었을 때에 비로소 150M의 전쟁 부상자 연금이 지급되며 특정한 규정에 따라서 생업에 종사 하므로써 얻어지는 수입(소득)이나 혹은 기타 수입들도 여기에 함께 계산되어 질수도 있다. 당해 전쟁 부상자가 사회 보험에 규정되어 있는 정년(연령한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어도(최소한도로) 연료의 30%는 지급된다.

현물 지불(Sachleistungen)

- 407 현물 지불(Sachleistungen)로는 이미 「질병, 어머니 됨, 사고」 항목에서 그 규칙에 관하여 다룬바 있는 보조 수단 이외에도 동·서 양독에서 건강과 능률을 낼수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방조치와 (건강)회복 조치가 취해진다.

서독에 있어서의 사회 보험의 다양한 구분에 맞추어서 건강 보험회사, 연금 보험회사, 사고 보험회사, 연방(공화국)노동국 전쟁회생자 보험 사회 원조 및 공공 복리를 위한 기관등의 어느것이 될것인가는 건강 피해의 원인여하에 따라서 (즉 예를 들자면 사고), 보험가입자의 그룹 여하에 따라서 (노동자, 사무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혹은 보험 회사측으로서 취해야할 필요한 조치의 종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동독에 있어서의 (건강) 회복 조치같은 것은 대부분 사회 보험의 임무 영역에 속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 보건소와 직장(기업체등의) 보건소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려고 시도되고 있다.

치료조치를 취하는때에 대한 결정은 FDGB의 사회 보험의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요양위원회(Kurkommission)가 내리고 동독의 국립(가) 보험과 사회 보험의 경우에는 이 보험에 속해 있는 고문 의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요양 위원회는 (하급행정관할인 군·면등에 해당하는) 지역 내지 기업(경영)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그 구성은 노동 조합의 회원들과 의사들로 형성된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요양을 받아야 할 사람의 선정과 요양치료를 받기위한 준비를 갖추고, 요양시설에 대한 임명(지시)등을 하고, 그리고 사후 배려(Nachsorge)를 준비하고 콘트롤 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규폐병(珪肺病 - Silikose), 당뇨병(Diabetes), 종양(癌) 질환(Geschwulsterkrankungen), 피부병, 결핵성 질환 등의 경우에 행해지는 요양 치료와 임신부를 위한 요양에 대

제 6 장

하여는 분배 원칙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특정한 협의구역이 정하여 진다.

조직에 관계되는 아이들을 도의시(제외해 놓는다면)한다면, 동·서 양독에서의 회복(Rehabilitation)은 의학과 직업적인 영역에서는 그 취해지는 조치가 비슷하다. 그렇지만 동독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안에 생업 종사 생활에 다시 편입시키는 일이 강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 불능에 대한 예방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는 "벌써 일을 할 수 있음"(Schonarbeit)이라는 결정이 의사들에 의하여 행하여 질수가 있으며 이것은 회복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자기가 지녔던 이전의 노동 능력을 다시 얻을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가능케 하고자 함에 있다. "벌써 일을 함"이라는 의사로 부터의 지시를 받아 일에 착수하는 기간의 보수는 적어도 최종 12개월의 평균수입(소득)이 기업체(경영체)에 의하여 계속 지불 되어야 한다. "이미 일 함"이라는 것과 비교될만한 회복조치 같은 제도는 서독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d) 가정 (Familie)

408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가정에 일어나는 경제적 가중 부담은 동·서 양독에서 다 같이 직접, 간접의(주5) 가정 보조 (Familienleistungen)를 통하여 순응 래쳐되어 진다.

아동금과 아동 보조비

(Kindergeld, Kinderzuschlag)

409 서독에서는 둘째 아이와 그 이후에 낳는 때 아이들에 대하여 이 아이들이 18세가 될때 까지 아동금(Kindergeld)이 지불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에 있는 자식들의 경우는 25세가 될때까지의 아동금이 지불된다. 아이들 둘 이상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째 아이를 위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들 부부의 연간 수입이 13200 DM가 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시행된다. 이밖의 경우는 아동금은 수입(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1955년 아동금은 몇배로 올랐다. (행정)관리비를 포함한 아동금에 대한 재정(소비)은 연방공화국이 부담한다.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동금(Kindergeld) 대신에 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e)을 받는다.

어느 한 보험 가입자가 직업 불능과 생업(종사) 불능 때문에 받는 (근로자 보험에 의한) 퇴직연금과 (일반)연금은 매 아이 하나씩마다 아동 보조금(Kinderzuschu)만큼 그 액수가 늘어 난다. 즉 아이들이 18세가 될때까지 지불되고, 교육(수련)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25세까지 지급 받는 보조금만큼 그 액수가 늘어 난다. 아이 보조금의 금액은 연금액수와 연금이유등과도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모든 연금 수령자에게는 통일적으로 연금 계산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일반적인 측정 기초의 1/10에 달한다. 이것은 1970년도에 시작 되고 있는 보험의 경우에 대하여는 매월 86DM가 된다. (일반적인 측정의 기초 = 10,318DM)

제6장

도표 50

아동금/아동 보조금

(Kindergeld/Kinderzuschläge)

매 아이에 대하여	서독의 경우 매월 액수를 DM로 표시	동독의 경우 매월 액수를 DM로 표시
1.	-	20
2.	25 주①	20
3.	60	50
4.	60	60
5명과 그이상	70	70

주①=두째 아이에 대한 아동금은 부모들의 연수입이 13만 DM를 초과하지 않을 때나 혹은 부모가 3사람 혹은 그이상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때 지급된다.

자료의 출처 =

서독 = 1964년의 연방(공화국) 아동금 법률 최적으로 개정된 것이 1970년에 있었던 연방공화국 아동금 법률을 고치고(변경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2법률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법률이 변경되었다.

동독 = 1958년 5월 28일에 있었던 국가가 부담하는 아동 보조금의 지불에 관한 VO. (GBI.1958년, 437페이지
GBI. II. 1967년, 248페이지,
GBI. II. 1969년, 485페이지)

동독에서는 노동자와 사무원들과 생산 공동체의 회원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15세 내지 18세가 될때까지 매 아이에 대하여 매달 20M의 아동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수공업자, 자립취업자와 자유직업인들은 매 아이들에 대하여 15M를 매달 보조 받는다.

아이 배명과 그이상의 아이들을 가진 가정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아동금을 지불한다. 세째 아이에 대하여는 매달 50M가 되며, 네째 아이의 경우는 60M, 다섯째와 그이상의 아이들에 관하여는 매월 70M가 지급된다. 이 금액속에는 국가가 담당하는 지원액과 그리고 국가의 아동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지불 수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배우자 증액금 (Ehegattenzuschlag)

- 410 배우자가 독자적인 수입이 없는 때에는 (세금을 제하기 전의) 총 수입(소득)이 800M까지 되는 노동자, 사무원과 그리고 생산 협동조합(Produktionsgenossenschaft)의 회원들은 동독에서 매월 5M의 배우자 증액금(Ehegattenzuschlag)을 받는다. 학생의 신분을 가진 배우자와 월 수입이 600M 이하인 사회수입자는 매월 9M의 배우자 증액금을 지급받는다. 배우자 증액금은 아이들의 증액금의 경우와 같이 식료품 배급제도가 없어진뒤에 1958년에 실시된 제도다. 그런데 식료품 배급제도가 없어지므로써 많은 생활 소비품목들의 가격이 오른 결과가 나타났다. 양로 연금과 노동 불능 연금에 대하여도 특정한 전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는 배우자 증액금과 아이(들) 증액금이 지불된다. 배우자가 아무런 독자적인 연금 신청 권한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연금 연령에 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제 6 장

노동 불능 현상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연금자는 매월 40 M의 증액금을 지불 받는다. 자식을 3사람 내지 2사람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 그중의 하나가 아직 8세 미만일 때에도 배우자 증액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40M의 아동 증액금은 16세 내지 18세 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더하여 동·서 양독에서 지급되고 있는 산모에 대한 한차례의 분만 보조비가 첨가 계산되어 제안한다. (서독에서는 종합금(Pauschalbetrag)으로 되어 있고 동독에서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3절 a항을 참고 할 것).

주택금 (Wohngeld)

- 411 서독에서는 가정의 연 수입(소득)이 9600DM미만일 때에는 주택금(Wohngeld)도 지불된다. (가정의 식구가 한 사람이 늘어 날때 마다 이 한계 수입 금액은 2400DM씩 늘어 난다).

지원금 지불(Unterstützungsleistung)

- 412 독신 취업자는 병난 자식을 간호하기 위하여 동독에서는 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유가족 연금(Hinterbliebenenrente)

- 413 가족의 부양자가 세상을 떠날때에는 서독과 동독에서는 유가족 연금을 지불한다.

서독에서는 유가족 연금은 과부 연금과 홀아비 연금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이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고아 연금을 뜻한다. 미망인(홀아비) 연금은

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연경과 생업 능력과 생업활동에 관계없이 지급 된다. 그렇지만 홀아비 연금 (Witwerrente) 은 별세한 보험에 가입한 아내가 주로 생활을 유지하는 수입을 벌어들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처음 3 개월은 미망인 (홀아비) 연금은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까지 주어졌던 (아동 증액금을 포함하지 않은) 연금의 전액이 지불되며 그 이후는 보통의 경우 당해 보험가입자가 별세하는 순간 (까지) 에 (아동 증가금을 포함하지 않은) 양노 연금이나 생업 불능 연금으로 제공되어 있던 연금의 60 %를 지급 받게 된다. 미망인의 나이가 45 세를 초과하지 아니했고 직업이나 생업 종사 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고 고아 연금을 할 수 있는 자식도 갖고 있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미망인 연금은 만약에 별세한 보험에 가입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직업 (수행) 불능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지급 받게 될 연금의 60 %만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사망하는 때에 이미 60 개월간의 보험가입기간을 증빙해 낼수 있으면 이것으로 대기 기간 (Wartezeit) 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미망인으로서 부양 자식을 갖고 있지 않는 45 세 미만의 경우에는 미망인 연금 (Hinterbliebenenrente) 은 1/3 이 삭감된다. 고아 연금 (Waisenrente) 은 아동 증가금의 경우와 동일한 전체 하에서 지급된다. 반 고아 (Halbwaisen) 는 생업 (종사) 불능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받는 연금의 1/10 을 지급 받고 완전 고아 (Vollwaisen) 는 이의 1/5 를 지급받는다.

제6장

여기에 더하여 아동 증액금이 전액 지급된다 (1970 년도 = 매월 86DM) 이밖에도 독일 연방공화국 아동금 법에 따라서 아동금이 지불된다.

동독에서도 미망인(홀아비)연금은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연금에서 부터 산출 되어 진다. 그렇지만 아무튼 동독에서는 미망인(부인)인 경우는 60세가 지난후라야 비로소 미망인 연금을 탈 권리를 갖게되며, 홀아비(남편)의 경우는 65세가 지난 뒤에 라야 이 홀아비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것도 노동 불능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지는 미망인이 세살(3세) 이하의 아이나 혹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때에 미망인(홀아비)연금은 사망자의 연금의 60%에 해당되며 적어도 매월 150M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동독에 있어서의 미망인(홀아비등)(홀로남은 사람 총체)들의 형편은 서독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나쁘다.

교아 연금의 지불은 아동 증액금의 지불에 대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몇가지 같은 전제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행하여 진다. 교아 연금은 반 교아일 경우 사망한 보험 가입자의 매월 연금의 30%(적어도 55M)가 되고, 완전 교아인 경우에는 매월 40%다(적어도 80M) 자유의사에 따라서 추가 연금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도 이와 비슷한 규칙들이 적용 된다.

“유족에게 지불되는 매장료(사회 보험의)“(Sterbegeld)

414. 보험 가입자나 혹은 보험가입자의 가족이 죽었을 때에는 서독과 동독에서는 그 액수가 서로 차이나는(사회 보험의)매장료(Sterbegeld)가 지불된다.

e) 생업위험(Erwerbsrisiken)

“생업 위험에 대처할 안전(보장)강구책”

(Konzeption der Sicherung gegen Erwerbsrisiken)

415. 서독에서는 지난 몇년 사이에 피고용자를 일자리의 상실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와 제도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행해졌다. 직업안내와 실업자 보험에 관한 법률(AVAVG)이 일차적으로 노동의 가능성이 상실되므로 인하여 생업(활동)이 줄어들어 가는 것을 막고 지원 보조금을 지불하므로써 이를 또한 상쇄하려는데 이 법률의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면 새로운 법률제정과 실제로는 생업(종사)위험을 사전에 예방(방지)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노동(력) 시장정책의 고전적 도구들은 점점 더 많이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옮겨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력)정책의 범위 내에서 일반 교육과 직업 영역에 커다란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동독에는 사회보장(험)체제의 독자적인 부분 영역으로서의 생업(종사)위험을 방지하고 상쇄하기 위한 제도가 없다.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동독에는 실업자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독에도 구조 변천에 따른 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점증해가고 있는 모든국민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알
력적인 그리고 방황변이적인 실업(失業)형태로(in Form
friktionaler und Fluktuationsarbeitslosigkeit)역시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력)시장 정책. 특히 노동력 조종의 형태로의 정책이
광범위한 경제 기획수립 체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노동력 시장 정책은 교육제도(제 8 장. 제 2 절을 참고
할것)와 경제와의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동. 서독에 있어서의 생업(종사)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조
치와 이에대한 보험(기업체)당국의 업적을 비교하는 일은
동독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우며 부분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비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독에는 개념상 생업(종사)위험과 실업자(상태)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관한 통계 자료는(주 6)전연
없다.

〃노동 장려법(률)〃(Arbeitsforderungsgesetz)

416. 서독에 있어서는 1969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
동장려법(률)(AEG)은 일련의 안정(보장)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를 제거하는일〃(Folgenbeseitigung)
에서 노동(력)시장의 적극적인 형성에도 완전히 넘어갔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업자 보험과 이 보험이 행해주는
혜택에 대하여는 예방조치와 비교해볼때 보조적인 성격밖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다른 어떠한 모든 조치에 앞서서 우선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노동안내 (Arbeitsvermittlung) (작업)이라고 하겠는데 즉, 구직자들에게 우선 알맞는 직장을 알선해 준다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행하여지고 있다.

두번째 위치에 속하는 것이 직업상담 (Berufsberatung) 인데 이것은 직업교육과 장려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끝으로 언급한 두가지 조치들은 노동(구주)시장정책의 중점을 이루고 있다. 이 조치들은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Fortbildung) 과 그리고 (직업따위의) 재 교육 (Umschulung) 을 포괄한다. 이외에도 노동장려법 (AFG) 에 따라서 직업 취득이 장려되어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피고용자의 직업상 및 지역적인 기능성 (Mobilitat) 을 선제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수입 (소득) 이 단축노동 해고나 혹은 일가의 영향으로 인하여 - 여기에서 실질적인 조치로서 전면에서 등장하는 것은 생산적인 통제 건축장려 (Winterbauförderung) 다. - 줄어드는 피고용자들의 재정 지원은 노동장려법 (AFG) 을 통하여 보장되어 있다.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417. 1969년 8월 14일자의 직업교육법은 1969년 6월 19일자의 개인 교육의 장려에 관한 제 1법 (das Erste Gesetz) 과 마찬가지로 생업 (종사) 위험에 대한 (안전) 보장조치와 관련시켜서 여기에 언급되어 저야할 것이다. 이 두가지 법은 다 같이 피고용자 특히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질과 기동성을 향상시키는데에 그 목표가 있다.

(제 7 장 참조할 것) 노동 (력) 시장의 필요에 관련시켜서 노동장려법 (AFG) 과 위에 언급한 두가지 교육법에 따라서 취해지는 조치들이 서로 깊은 위기적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관청들에 의하여 강조 지적되고 있다.

“노동법의 정화법” (Arbeitsrechtsbereinigungsgesetz)

418. 1965년 9월 1일 까지의 제 - 노동법 정화법 (Das Erste Arbeitsrechtsbereinigungsgesetz) 은 벌써 오래전 부터 사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과 어느정도 비슷한 해고 (해약) 통고 보호 (법) 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자에게 대해서 행하는 해약 통고 예고 기간을 변경하 하는데 대한 기준은 기업체 (경영체) 에 귀속되어 있는 (즉,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는가 라는 것이다. 기업주 (Arbeitnehmer) 에 의하여 사회 (고용자) 적으로 부당하게 해고 통고를 받을때에는 이에대한 배상금 (Abfindungen) 측 정에는 이와같이 했고 통고를 받은 노동자의 나이가 몇살인 가 하는것이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합리화 보호협정” (Rationalisierungsschutzabkommen)

419. 공학과 기구상의 변천이 미치는 사회적인 필연 결과에 대하여 피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고용주 (기업가) 협회들 (Arbeitnehmerneine) 과 내지는 자주적인 보수 계약 당사자로서의 각개 기업들간에 소위 합리화 보호협정 (Rationalisierungsschutzabkommen) 이 일급 노동협약 (Tarifvertragen) 의 형태로 체결되는 일이 점점해 가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노동자와 사무원들에 대한 해고 통고예고 기간을 연장할는 일과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해고가 행해질때에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기업체 내에서 자리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업활동의 위축을 보호하는 일들이 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업체에 종사한 기간과 당사자의 나이는 여기에서도 보호조치와 혜택을 받는데 대한 범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쓰인다. (통한다)

「사회계획」 (Sozialpläne)

420. 끝으로 여기에 언급되어야 할것은 경영 협의회 (Betriebsrat) 와 기업경영 (Unternehmensleitungen) 측 사이에 경영협약의 형식으로 고정체결되는 사회계획 (Sozialpläne) 이다. 이 협약 역시 기업체 자체의 전향조치 (betrieblichen Umstellungsmaßnahmen) 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는 피고용자 들에게 어느정도의 직업보장과 수입보장을 해 주려는데 그 목적 (소득) 이 있다. 이와같은 사회계획을 실행에 옮겨나감에 있어서 노동관리당국 (Arbeitsverwaltung) 의 지역사무소들과 긴밀한 협동이 행해지고 있음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나이가 (비교적) 많은 피고용자에게 관한 것일 때에는 이협약은 연료 보험 당국자들과 체결된다.

「실업 (상태) 에 대비한 의무적보험 (가압) 」

(Pflichtversicherung gegen Arbeitslosigkeit)

421. 동독에서는 직장을 상실하므로써 생기는 생업 (생계) 재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서 1947년 1월 28일로

제정된 실업(상태)에 대비한 의무적인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에는 1947년 3월 28일과 1947년 12월 27일에 각각 제정된 두개의 시행령(Durchführungsverordnungen)과 그리고 1959년 6월 22일에 제정된 조령이 첨가되어 있으며 이를 조령들은 어휘(술어)가 변천하는 언어 용법에 적응토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일 우선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직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직장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부당하게가 아니게 잃었을 때에는 사회보험으로 부터 지원(재정)이 지급된다(SVO의 § 27에서 § 46(조)까지와 GBA 102조를 참고할것) 이 지원은 FDGB의 지역위원회(임원단)장 이나 사회보험당국에 의하여 지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지니는 실제적 의의는 "유기적 관련이 없지 않는"(nicht nahtlosen)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노동환경에 바뀌므로써 생기는 공백기간동안 피고용자에게 물질적 보장을 해 줄려는데에 있다.

근로수입(소득)이 위협을 받거나 없어질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하여 피고용자를 보장(主)하는 일은 노동력 조정 조치에 비할때는 후자가 우선한다.

422. 동독에서는 "노동요소"는 사회주의 경제 전체 기획수립의 부분체제로서 계획되는 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 경제계획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노동력 계획은 우선 노동(력)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노동력 수급과 경제에 노동력을 정상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기획의 방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열거되고 있다.

직업교육 전문학교출신 간부 및 대학출신 간부의 양성 (Ausbildung von Fach und Hochschulkadern) 직업에 종사하고 싶지 않는 국민층으로부터 (무엇보다도 주부층으로부터) 새로운 노동력을 동원하고 경제 참여토록 하는일 공학상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소위 "합리화" 당하므로써 잃고만 피고용자들을 다른 자리에 옮기게 하는일 (置換) 들이다. 기획체제 (Planungssystem) 에는 경영체 (기업체) 의 임금 및 프래미엄 기금 (Lohn- und Prämienfonds) 의 형성이 포함되며 그리고 이밖의 다른 "물길적인 (재정적인 것을 포함한) 관심사" 의 형태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끝으로 (보험 당국등이 부담하는) 보장조치와 수입 (소득) 을 최대한도로 상호 조절하려는 노력까지도 이에 포함된다.

“노동국과 직업상담국” (Ämter für Arbeit und Berufsberatung)

노동 및 직업상담국은 서로 상이한 행정 관리차원에서 “노동 능력” (Arbeitsvermögens) 의 발전을 예시 직관적으로 계획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능력의 총화

노동 및 직업지도 기관

노동과 직업지도를 관장하는 기관은 각개 서로 다른 관리분야에서 “노동자원 (Arbeitsvermögens) 의 발전에 관한

예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레야만 여기서 전체 국민경제 속의 노동력이 지닌 능력 정도와 숙련성과 활동력의 총화가 이해 된다.

이들 노동 및 직업지도 기관은 자기들이 처한 각개의 영역단체의 관점에서 여러 기업체에서 그들 책임하에 수립된 노동력양성 수급계획의 완성과 실현을 지원한다. 물론 여기엔 공장실습 교육에 관한 합리적인 계획들이 포함된다.

이들 노동 및 직업지도 기관들은 자유로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적절히 배치 한다.

이들 관청 : 주요 임무는 협의회에 소속된 국민교육분과들과 기업경영과 직업상황설명 직업계몽 청소년의 직업준비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종합 등을 관장한다.

노동 및 직업지도 기관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국민을 대변하여 업무를 실천하고 종결하는 기관으로서의 「노동 및 직업지도 집행위원회」 하는 기관이 있다.

이 위원회는 협의회 회원과 광범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원들로서 조직되어 있다.

동 위원회의 본질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노동력발전 및 수급계획의 지도
- ◎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배치의 조정
- ◎ 노동력연결조치의 예비 및 발전
- ◎ 노동자들의 동요억지
- ◎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응용의 개선
- ◎ 다방면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능력 및 교육장소 수용능력
의 촉진 발전

일반직업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정책조치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동분야와 교육영역간의 제도적이고도 내용적인 연결조화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로서 실현되고 있다 (Ⅶ장 참조)

단기노동 보상금

서독에서는 일시적으로 또는 노동계약 기간중 부분적으로 노동을 쉬고 휴업하는 경우에 노동보호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최고 6개월간의 단기노동 보상금이 인정되고 있다.

이 임금의 많고 적음은 노동이 있었을 경우에 주어질 노동대가에 의하여 또는 법률로 규정된 노동임금일람표에 맞는 실제 노동시간에 대한 잠재적인 노동대가 수준 여하에 따라서 측정되고 있다.

휴직시간당) 가족 1인에 대한 수당은 0.30DM로 계산된다.

악(惡) 천후 보상금

건축분야에 일년간 종사한 경우의 수입에 관해서 말한다면 일기의 악화가 노동의 중단을 강요한 경우에는 매년 1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사이에는 당해 건축노동자에게 악천후임금이 보장된다.

이로써 악천후기간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해고란 불가능하다.

일기가 좋아지면 노동자는 잠깐동안이나마 자기들의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악천후 보상금은 단기노동규정에 따라 작업중단일수에 의해

제 6 장

서 계산된다.

시간급 보수의 5%가 더 승인된다. 일주일간에 최고 60시간의 노동시간을 갖고 시간당 노동대가가 2.05DM일 경우에는 단기노동임금과 약천 후임금 보장은 1.07DM 내지 1.43DM에 달한다.

시간급의 경우에는 6.06DM로 올라가고 일주간 40시간 노동의 경우에는 9.69DM로 올라간다.

겨울철공사 수입

1월과 2월 공사에서 생겨난 비용초과에 대한 보조금은 건축부업자에 대해서 겨울철 공사 추진 장려금으로 계산 지급된다.

그 밖에도 연방노동조합 재산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이 건축노동자의 건축투자와 교통비와 부양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실업(失業) 보상금

최소한 26주간(6개월)동안 직업을 갖고 활동하던 사람이 실직했을 경우 그 실직자는 78일 내지 312일 동안 실업보상금을 실업보험으로 부터 받는다.

총액은 12.49DM의 주당노동넷가를 받던 사람의 경우 주당 최고 7.80DM를 받고 390DM이상의 임금을 받던 사람의 경우 최고 242.40DM를 받는등 여러 단계로 되어 있다. 어른(바깥남자)과 어린이에 대한 가족수당보조금은 주당 12DM이다.

실업(失業) 구제

실업보상금의 요구가 만족되지 않았거나 최소한도 일년간 직업없이 지낸 빈곤한 실업자들은 실업구제 요청권을 갖는다. 그 총액은 주당 7.80DM에서 134.40DM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많다.

가족 수당 보조금 실업보상금 수령자의 경우와 같다.

장기적 폭파작업에 대한 보조금

장기적인 폭파작업활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환경변화로 놀라게 되는 대가로 지불되어야 할 보조금이 연방조합 재산에서 지급된다.

기업인은 고령노동자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임금을 줄때 임금세율 50%정도를 보조금으로 추가해서 지급 한다.

노동보호법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개인보호에 큰 역점을 두고있다. 직업교육은 일반교육 보습성인교육 재교육의 형태로 구분된다.

임금계약과 업무협정의 기초위에서 행해지는 행위의 엄청난 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활동범위에 대한 「데이타」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별은 불가능 하다.

실업자 보조금

424. 동독에서는 실업자 보조금이 1947년에 제정된 실업 강제보험 규정예 따라 자기 스스로 1년 6개월간 보험료를 지급

제 6 장

하는 경우에만 승인되고 있다.

실업자 보조금은 일당 1.20M 내지 2.00M이다. 가족 1인당 하루 0.35M가 승인된다. 이에 부가해서 월임대료보조금이 18M씩 지급된다.

실업자보조금이 사회적구제원칙에서 승인된 액수의 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기금의 지출을 통한 조정이 승인된다. 직업상의 능력에 의한 개인 수입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보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몇 개의 명백한 척도와 기준을 세워서 실업의 개념적인 혼란과 충돌을 예방해야 할 것이며 또는 적어도 실업자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도로라도 뒷받침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의 기준과 척도에 대해서는 VIII장에서 다룰 것이다.

급여의 범위

425. 서독에서는 연방노동조합의 세출이 노동보호법에 의해 할당된 과제에 대한 재정시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노동시장 정책이 손해보상주의에서 손해예방주의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교육시행조치와 유동성촉진 조치에 대한 세출이 단계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것만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들 교육시행조치와 유동성촉진조치에 소요된 세출액이 노동관리를 위한 전체 세출액에 대한 갖는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갔다.

연방노동 조합세출 일람표

년 세출종류	1967		1968		1969	
	도 백만 DM	%	백만 DM	%	백만 DM	%
세출총계	3,139	100	2,954	100	2,853	100
이중에서						
교육시행조치	154	4.9	237	8.0	450	15.8
생산적 조치	432	13.8	704	23.9	912	32.1
휴업임금보상	1,959	62.4	1,379	46.6	760	26.6

동독의 경우에는 서독과 비교를 해주는 숫자상의 보고가 통계연감에도 없고 전문적인 서적 속에도 없다.

그러나 서독에도 실업자 여부를 따지는 자격평가의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현재 연구중에 있다.

1) 사회구제 - 사회보장

426. 사회구제 또는 사회보장은 그토록 많은 여러분야의 사회보장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궁핍속에 떨어져서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자신의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등, 서독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서독에서는 사회구제는 "특수한 생활상태에 대한 도움"으로 인정되고 있다.

도움받는 이로 하여금 인간값에 가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사회구제의 임무다.

사회구제의 요청권은 자기의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적이다.

제 6 장

노동자 생 제비에 대한 연방노동조합에 의하지 않는 기타 기관의 구제는 규정된 원칙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

이 경우의 구제는 연령과 생제구조의 성격과 장소의 제약 등에 따라서 자기 등급이 매겨져 있다. 고령과 생제무능력자 취업불능자 임신부 및 임대차기한 만료라든가 일시적인 특수 수요를 만족시키는 일과 같은 경우들에 대한 사회구제의 수요는 항상 과잉된다.

연방 평균수치에 의할것 같으면 1970년 8월 1일 현재 가장에 대한 월 구제금은 대략 155DM이고 18세 이상된 가족에 대해서는 120DM이다.

연방노동조합의 구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비 외에 적절한 양의 용돈까지도 별도로 승인되고 있다.

서독에서의 생제비에 대한 구제는 동독의 경우의 일반 사회보험의 급부에 해당된다.

동독에서는 1968년 7월 1일 이후로 주(主)보조금은 월 110M이고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보조금은 50M이며 어린이나 임대료보조금 등은 40 M이다. 임대료보조금과 할증보조금을 제외한 최고액수의 보조금을 월 260M이다.

서독에서는 "특수한 생활상태에 대한 도움"으로서 건축 보조 기본생제비보조 교육보조 건강약화방지보조 질병치료보조 임신부보조 장애 제거보조 결핵치료보조 장님보조 부양보조 가제비과다지출보충보조 명예 회손방지보조 고령보조 등이 제도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이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이나 부양의 무자는 이 도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기의 보조금 수입을 전액 생제를 위해

서 투입하지 않고 결핵치료면 결핵치료라고 하는 이미 약속되고 기대된 그 분야에 대해 써야 한다.

이런 보조금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노동조합에서도 지급된다. 서독에서 운용되는 몇몇 보조금제도는 동독에서는 존재의의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동독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가 서독에서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최저생활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질병치료보조금은 사회보험가입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으며 부양을 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의하지 않고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부양금이 보장되고 있다.

결핵과 종창(부스럼)과 당뇨병 등의 경우엔 누구나 막론하고 치료보조금이 보장되고 있다.

병고로 고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조건없는 용돈도 지급하며 장년보조금과 자녀양육비는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고령자와 부양을 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보험회사)이 국립부양원이나 국립휴양소에 자리를 마련해 주며 사설휴양소이나 사설부양원에서의 고령자 및 부양을 요하는 자들의 관리도 지원한다.

휴양소나 부양원에 입주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수입(급여등)과 재산을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한에 있어서는 그들은 생계비에 대해 출자하게 된다.

그들의 재산이 다 없어졌을 경우에 그들은 보조를 요하는 자에게 38M를 두고 금리생활자에게 48M를 주는 매달의 용돈을 받게 된다.

제 6 장

1964년 이래 휴양소의 수용력이 급속도로 부족해서 달리는 동안에 장님부양원을 포함한 부양원 숫자와 그 부양원의 자리는 계속 증가되었다.

사회구제 분야에서 제거되어야 할 노골적인 저항요소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기로 한다면 그 저항과 부작용의 원인은 한편 서독에서는 자유로운 민간단체 레벨의 사회구호연맹들이 각자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면 동독에서는 "민족공동연대책임"이라는 기치를 내건 큰 조직체의 활동이 사회의 구석 구석을 속속들이 다 잘 보살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도 표 51

노동을 위한 연방사회 보장협회의 지출

지 출 별	1967		1968		1969	
	100 만 마르크	%	100 만 마르크	%	100 만 마르크	%
총 지 출	3,139	100	2,954	100	2,853	100
그 중에서						
교육관계대책	153	4.9	237	8.0	450	15.8
생산적대책	432	13.8	704	23.9	912	32.1
실업에의한임금결손	1,959	62.4	1,379	46.6	760	26.6

g) 기타의 급여

427. 지금까지 본 바와같이 특정 사회적 상태에 처해있을때 주어지는 급여외에도 동.서 양독에는 전쟁피해라든가 국가가 준

과거의 피해 등을 보상하여야 하는 일련의 국가적 조치들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조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어떤 문제점도 던져주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갖고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그의 불완전한 부분이 아니고 완전한 부분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서독에서는 망명객 전시재산피해자 포로의 몸이 되었다가 늦게 돌아온 귀향병 동독에서 탈출해온자 또는 인종이나 신앙 또는 세제관의 차이등 때문에 이차대전 전에 국가사회주의당 치하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손해 배상을 지급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손해배상은 평균된 액면으로 환산지급 되지 않고 각계 경우를 참작한다.

동독에서는 「파시즘」과 대항해서 싸운 투사 「파시즘」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명예은급(名譽恩給)을 받고있다.

이 명예은급은 만 55세 이상의 여성과 만 60세 이상의 남성 및 사회보장법의 정신상 구제해야할 활동력을 상실한 병사들에게 지급 인정된다.

「파스즘」에 대항하다 죽은 사람의 미망인을 포함한 30,000명 정도의 사람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 30,000명속에는 명예은급을 받는 상당수의 유공국가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명예은급은 「파시즘」에 대항해서 싸운 애국투사의 경우 월 800M에 달하고 「파시즘」에 박해받은 사람에겐 월 600M를 준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탈출해간 사람들에게는 탈출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제 6. 장

동. 서독에서의 이러한 두개의 급여제도는 피차 대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왜냐하면 서독의 급여제도는 명백한 손해배상이기만하면 그들 모두에게 급여금을 지급하는데 반해서 동독의 급여제도에는 명예연금의 선전에 있어서 과거에 발생된 정치적인 피해라는 조건과 동시에 연령 및 활동력을 상실한 병사의 등급이라는 조건등 까다로운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4. 부 록

자료출처

본장(Ⅶ章)의 원문부분에서는 사회입법과 정치입법에 관한 언급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된 동. 서 양독의 사회보장제도들은 법령과 규칙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그 사회보장제도들과 관계되는 자료출처를 언급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리라 생각한다.

아래에는 자료출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골라서 소개한다.

(동독과 서독을 나눠서 서술 하겠음)

서 독

Reichsversicherungsordnung von 19. Juli 1911 (RGBI., S.509), in der Fassung vom 15. Dezember 1924 (RGBI., I, S. 779)

(BGBI., II, S. 820-1)

- 1911년 7월 19일 제정된 국가보험령 (공화국법령집 509)

1924년 12월 15일 제정된 법률문서 (공화국 법령집 I권 779)

(연방법령집 III 820-1)

Angestelltenversicherungsgesetz(AVG) vom 20. Dezember 1911(RGBl., S. 989), in der Fassung vom 28. Mai 1924 (RGBl., I, S. 563)

(BGBI., III, S. 821-1)

- 1911년 12월 20일 제정된 근로자보험법 (AVG:Angestelltenversicherungsgesetz) (공화국법령집 989) 1924년 5월 28일 제정된 법률문서 (공화국법령집 I 563)

(연방법령집 III, 821-1)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Arbeiterrentenversicherungs-Neuregelungsgesetz) vom 23. Februar 1957 (BGBI., I, S. 45)

(BGBI., III, S. 823 2-4)

- 1957년 2월 23일 제정된 노동자 수입보험권 신규정법령 (연방법령집 I 45)

(연방법령집 III 823 2-4)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der 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 (Angestelltenversicherung-Neuregelungsgesetz) vom 23. Februar 1957(BGBI., I, S. 533)

(BGBI., III, S. 821-2)

- 1957년 2월 23일 제정된 종업원수입보험권 신규정법령 (연방법령집 I, 88)

(연방법령집 III 821-2)

Reichsknappschaftsgesetz vom 23. Juni 1923 (RGBl., I, S. 431), in der Fassung vom 1. Juli 1926 (RGBl., I, S.

제 6 장

822-1)

- 1923년 7월 23일 제정된 국영기업체종원법 (공화국 법령집 I 431)

1926년 7월 1일 제정된 법률문서 (공화국법령집 I 369)
(연방법령집 III 822-1)

Gesetz zur Neuregelung der Knappschaftlichen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srentenversicherungs-Neuregelungsgesetz) vom 21. Mai 1957 (BGBl., I, S. 533)

(BGBl., III, S. 822-8)

- 1957년 5월 21일 제정된 국영기업체종업원 수입보험 신규
정법령 (연방법령집 I 533)

(연방법령집 III 822-8)

Gesetz zur Änderung der Vorschrifte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en und über die Zwölfte Anpassung der Renten aus den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en sowie über die Anpassung der Geldleistungen aus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3. Rentenversicherungs-änderungsgesetz) vom 28. Juli 1969 (BGBl., I, 956)

- 1969년 7월 28일 제정된 3차 수입보험 개정법령 (연방법령
집 I 956)

Bundesbeamtengesetz (BBG) vom 14. Juli 1953 (BGBl., I, 551) in der Fassung vom 22. Oktober 1965 (BGBl., I, S. 1776)

- 1953년 7월 14일 제정된 서독(연방)공무원법 (연방법령집 I 551) 1965년 10월 22일 제정된 법률문서 (연방법령집 I

1776)

Gesetz über eine Altershilfe für Landwirte vom 27 Juli 1957 (BGBl., I, S. 1063) in der Fassung vom 14. September 1965 (BGBl., I, S. 1448)

- 1957년 7월 27일 제정된 고령 농부 보호법 (연방법령집, I, § 1063) 1965년 9월 14일 제정된 법률문서 (연방법령집 I, 1448)

Gesetz über eine Rentenversicherung der Handwerker (Handwerkerversicherungsgesetz) vom 8. September 1960 (BGBl., I, S. 737)

(BGBl., III, S. 8250-1)

- 1960년 9월 8일 제정된 수공업노동자 수입보험법 (연방법령집 I 737)

(연방법령집 III 8250-1)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Unfallversicherungs-Neuregelungsgesetz) von 30. April 1963 (BGBl., I, S. 241)

- 1963년 4월 30일 제정된 재해 보험 신규정법령 (연방법령집 I 241)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atigen Mutter (Mutterschutzgesetz) vom 24. Januar 1952 (BGBl., I, S. 69) in der Fassung vom 18. April 1968 (BGBl., I, S. 315)

- 1952년 1월 24일 제정된 모성보호법 (연방법령집, I, 69)
1968년 4월 18일 제정된 법률문서 (연방법령집 I, 315)

Bundeskindergeldgesetz (BKGG) vom 14. April 1964 (BGBl.,

제 6 장

I. S. 265)

- 1964년 4월 14일 제정된 서독(연방)소년기금법(연방법령집 I 265)

Gesetz über den Lastenausgleich(Lastenausgleichsgesetz) vom 14. August 1952(BGBl., I, S. 446) in der Fassung vom 1. Oktober 1969 (BGBl., I, S. 1909)

- 1952년 8월 14일 제정된 부채(負債)조정법(연방법령법 I 446) 1969년 10월 1일 제정된 법률문서(연방법령집 I, 1909)

Gesetz über die Versorgung der Opfer des Krieges (Bundesversorgungsgesetz) vom 20. Dezember 1950 (BGBl., S. 791) in der Fassung vom 20. Januar 1967(BGBl., I, S. 141,ber S. 180)

- 1950년 12월 20일 제정된 전쟁희생자 부양법령(연방법령집 791) 1967년 1월 20일 제정된 법률문서(연방법령집 I 141 내지 180)

Gesetz über die Versorgung für die ehemaligen Soldaten der Bundeswehr und ihre Hinterbliebenen (Soldatenversorgungsgesetz-SVG) vom 26. Juli 1957 (BGBl., I, S. 785)

1957년 7월 26일 제정된 전일의 참전군인부양법령(연방법령집 I 785)

in der Fassung vom 20. Februar 1967(BGBl., I, S. 201)

- 1967년 2월 20일 제정된 법률문서(연방법령집 I 201)

Bundessozialhilfegesetz (BSHG) vom 30. Juni 1961 (BGBl., S. 2170-1), zuletzt geändert durch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sozialhilfegesetzes vom 14. August

1969(BGBI., I, S. 1153)

- 1961년 6월 30일 제정된 서독(연방)사회구제법령(연방법령집 II, 2170-1) - 이것은 1969년 8월 14일 서독(연방)사회구제법령 개정을 위한 두번째 법령에 의해 다시 개정되었음
(연령법령집 I 1153)

Gesetz über die Fortzahlung des Arbeitsentgelts im Krankheitsfalle und über Änderungen des Rechts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Lohnfortzahlungsgesetz) vom 27. Juli 1969 (BGBI., I, S. 946)

- 1969년 7월 27일 제정된 질병중인 노동자 임금지급에 관한 법령(연방법령집, I, 946)

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s Rechts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Zweites Krankenversicherungsänderungsgesetz-2) vom 4. November 1970 (Drucksachen W/726 W/1130, W/1297)

- 질병보험권의 확대를 위한 법령(1970년 11월 4일 제정된 2차 질병보험 개정법률) 정부간행물 W/726, W/1130, W/1297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wirtschaftlichen Lage der Arbeiter im Krankheitsfalle vom 12. Juli 1961(BGBI., I, S. 913)

1961년 7월 12일에 제정된 - 질병중의 노동자 경제상태 개선법에 대한 보충 개정법률(연방법령집 I 913)

Wohngeldgesetz vom 29. Juli 1963(BGBI., I, S. 508)

in der Fassung vom 1. April 1965(BGBI., I, S. 177)

- 1963년 7월 29일 제정된 주택기금법(연방법령집 I 508)

제 6 장

1965년 4월 1일 제정된 법률문서 (연방법령집 I 177)

Entwurf eines zweiten Wohngeldgesetzes, Bundestagsdrucksache M/1310

- 제정 주택기금법초안 (연방의회 간행물 M/1310)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vom 25. Juni 1969 (BGBl., I, S. 582)

- 1969년 6월 25일 제정된 노동임금법 (연방법령집 I 582)

Berufsbildungsgesetz vom 14. August 1969 (BGBl., I, S. 112)

- 1969년 8월 14일 제정된 직업교육법령 (연방법령집 I 1112)

Erstes 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Ausbildungsförderungsgesetz) vom 19. September 1969 (BGBl., I, S. 1719)

- 1969년 9월 19일 제정된 교육촉진법 (연방법령집 I 1719)

동 독

VO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SVO- vom 21. Dezember 1961 (GBL., II, S. 533; Ber GBl., II, 1962, S. 4)

- 1961년 12월 21일 제정된 노동자 및 고용인의 사회보장 법령 (SVO) (법령집 II 533 내지 법령집 II-1962-4)

VO vom 15. März 1962 (GBL., II, S. 625) - 1962. 5. 15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26)

1. DB vom 10. September 1962 (GBL., III, 625) - 1962. 9. 10에 공포된 1차 시행령 (법령집 III 625)

VO vom 5. September 1963 (GBI., II, S. 636)

- 1963년 9월 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636)

2. DB vom 5. September 1963 (GBI., II, S. 639)

- 1963년 9월 5일 공포된 2차 시행령 (법령집 II 639)

VO vom 5. Dezember 1963, (GBI., II, 1964, S. 14)

- 1963년 12월 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1964-14)

Änd. VO vom 4. Februar 1967 (GBI., II, S. 91)

- 1967년 2월 4일에 제정된 개정 법령 (법령집 II 91)

VO vom 3. Mai 1967 (GBI., II, S. 248)

- 1967년 5월 3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248)

4. DB vom 27. Juli 1967 (GBI., II, S. 525)

- 1967년 7월 27일 공포된 4차 시행령 (법령집 II 525)

2. VO vom 25. Juni 1968 (GBI., II, S. 537)

- 1968년 6월 25일 제정된 2차 법령 (법령집 II 537)

Gesetzbuch der Arbeit der DDR vom 12. April 1961 (GBI., I, S. 27)

- 1961년 4월 12일 제정된 동독 노동법전 (법령집, I, 27)

VO vom 24. Januar 1962 (GBI., II, S. 49)

- 1962년 1월 24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49)

VO vom 22. September 1962 (GBI., I, S. 703)

- 1962년 9월 22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703)

Änd Gesetz. vom 17. April 1963 (GBI., I, S. 63)

- 1963년 4월 17일에 제정된 개정법률 (법령집 I 63)

RL Nr. 21 vom 28. September 1966 (GBI., II, S. 707)

- 1966년 9월 28일에 제정된 법령 제 21호 (법령집 II 707)

제 6 장

2. Änd Ges. vom 23. November 1966 (GB1., I, S. 111)
- 1966년 11월 23일에 제정된 2차개정법률(법령집 I 111)
Bkm. vom 23. November 1966 (GB1., I, S. 125)

Ges. vom 26. Mai 1967 (GB1., I, S. 89)
- 1967년 5월 26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 89)

VO vom 25. August 1967 (GB1., II, S. 577)
- 1967년 8월 25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577)

VO vom 25. August 1967 (GB1., II, S. 579)
- 1967년 8월 25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579)

Einf Ges. vom 12. Januar 1968 (GB1., I, S. 97)
- 1968년 1월 12일에 제정된 시행법령 (법령집 I 97)

Ges. vom 11. Juni 1968 (GB1., I, S. 229)
- 1968년 6월 11일에 제정된 법률 (법령집 I 229)

VO vom 6. November 1968 (GB1., II, S. 997)
Ber. (GB1., I, S. 1055)
- 1968년 11월 6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997 or
1055)

AO über die Beiträge zur Sozialversicherung bei der
Deutschen Versicherungsanstalt vom 7. März 1956 (GB1.,
I, S. 259)

- 1956년 3월 7일에 제정된 독일(동독) 보험협회에 있어서
의 사회보장을 위한 출자에 관한 규정 (법령집 I 259)

AO vom 27. März 1957. (GB1., I, S. 157)

- 1957년 3월 27일에 공포된 규정 (법령집 II 157)

VO über die Bildung und Verwendung des Pramien-Kultur- und Sozialfonds in den staatlichen Einrichtungen des Gesundheits- und Sozialwesens vom 25. März 1968 (GBI., I, S. 233)

- 1968년 3월 25일에 제정된 보건사회부의 특별수당기금 문화기금 사회기금의 설립과 이용에 관한 법령 (법령집 II 233)

VO über das Statut der Staatlichen Versicherung der DDR vom 19. November 1968 (GBI., I, S. 941)

- 1968년 11월 19일에 제정된 동독 국가보험 조례에 관한 법령 (법령집 II 941)

Statut der Zentralstelle für Spezialheime der Jugendhilfe zur Anordnung über die Spezialheime der Jugendhilfe vom 22. April 1965 (GBI., I, S. 368)

- 1965년 4월 22일에 제정된 청소년특별 구제소에 관한 명령에 대한 청소년특별구제소 중앙관청 조례 (법령집 II 368)

VO über die Pflichtversicherung der in eigener Praxis tätigen Ärzte, Zahnärzte und Tierärzte bei der Sozial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vom 15. März 1962 (GBI., I, S. 125)

- 1962년 3월 15일에 제정된 노동자 및 치과의사, 수의사 등의 강제보험에 관한 법령 (법령집 II 125)

VO über die Pflichtversicherung der Studenten und Aspiranten bei der Sozial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vom 15. März 1962 (GBI., I, S. 125)

- 1962년 3월 15일에 제정된 노동자 및 고용인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대학생 및 후보자의 강제보험에 관한 법령 (법령집 II 125)

VO vom 5. September 1963 (GBI., II, S. 636)

- 1963년 9월 5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636)

VO vom 5. Dezember 1963 (GBI., II, -1964- S. 14)

- 1963년 12월 5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1964-14)

VO über die Erhöhung der Renten der Sozial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und der Renten für Mitglieder sozialistischer Produktionsgenossenschaften und Mitglieder der Kollegien der Rechtsanwälte vom 9. April 1957 (GBI., I, S. 313)

- 1959년 4월 9일에 제정된 노동자 및 고용인의 사회보험금 및 생산조합회원과 변호사협회원의 사회보험금을 늘리는데 관한 법령 (법령집 I 313)

1. DB vom 9. April 1959 (GBI., I, S. 314)

- 1959년 4월 9일에 제정된 1차 시행령 (법령집 I 314)

VO vom 8. Juli 1959 (GBI., I, S. 618)

- 1959년 7월 8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 618)

V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35)

- 1968년 3월 15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35)

VO zur Übertragung der Sozialversicherung für Bauern Handwerker, selbständige Erwerbstätige und Unternehmer sowie freiberuflich Tätige auf die Deutsche Versicherungsanstalt vom 2. März 1956 (GBI., I, S. 257)

- 1956년 3월 2일에 제정 독일 (동독) 보험협회에 가입한 건축업자 수공업자 독립경영자 기업인 및 자유직업활동자 등의

사회보험권 양도에 관한 법령 (법령집 I 257)

1. DB vom 7. März 1956 (GBL., I, S. 258)

- 1956년 3월 7일에 공포된 1차시행령 (법령집 I 258)

AO vom 7. März 1956 (GBL., I, S. 259)

- 1956년 3월 7일 제정된 규정 (법령집 I 259)

2. DB vom 19. Juni 1956 (GBL., I, S. 530)

- 1956년 6월 19일 공포된 2차시행령 (법령집 I 530)

AO vom 27. März 1957 (GBL., II, S. 157)

- 1957년 3월 27일 공포된 규정 (법령집 II 157)

VO vom 5. Dezember 1963 (GBL., II, 1964, S. 14)

- 1963년 12월 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964, 14)

VO vom 6. Januar 1966 (GBL., II, S. 33)

- 1966년 1월 6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33)

2. VO vom 25. Juni 1968 (GBL., II, S. 537)

- 1968년 6월 25일 제정된 2차법령 (법령집 II 537)

VO über die Altersversorgung der Intelligenz an wissenschaftlichen, Künstlerischen, Padagogischen und medizinischen Einrichtungen der DDR vom 12. Juli 1951 (GBL., S. 675)

- 1951년 7월 12일 제정, 학문, 예술, 교육 및 의학분야의 지식인 고령자보험에 관한 법령 (법령집 675)

VO vom 28. Juni 1952, (GBL., S. 510 Ber. GBL., 1953, S. 67)

- 1952년 7월 28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510 및 법령집 - 1953- 67)

제 6 장

VO vom 13. Mai 1959 (GBL., I, S. 521)

- 1959년 5월 13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 521)

VO vom 1. März 1962 (GBL., II, S. 116)

- 1962년 3월 1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16)

VO über die zusätzliche Altersversorgung der technischen Intelligenz in den volkseigenen und ihnen gleichgestellten Intelligenz in den volkseigenen und ihnen gleichgestellten Betrieben vom 17. August 1950 (GBL., S. 844)

- 1950년 8월 17일 제정 국영공장에 종사하는 교령의 지식층 기술자들의 추가보험에 관한 법령 (법령집 844)

2. DB vom 24. Mai 1951 (GBL., S. 487)

- 1951년 5월 24일 공포된 2차시행령 (법령집 487)

VO vom 1. März 1962 (GBL., II, S. 116)

- 1962년 3월 1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16)

VO über die Sozialpflichtversicherung der in Betrieben mit staatlicher Beteiligung tätigen Persönlich haftender Gesellschafter vom 22. September 1966 (GBL., S. 779)

- 국가출자공장 (국영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적인 친목조합의 사회강제보험에 관한 법령 1966년 9월 22일 제정)
(법령집 II 779)

VO über Ehrenpensionen für Kämpfer gegen den Faschismus und für Verfolgte des Faschismus sowie für deren Hinterbliebene vom 8. April 1965 (GBL., II, S. 293)

- 1965년 4월 8일 제정 「파시즘」에 대항한 투사와 「파시즘」에 박해받은 사람들 및 그의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연금에

관한 법령 (법령집 II 293)

1. DB vom 8. April 1965 (GBI., I, S. 295)

- 1965년 4월 8일 공포된 1차 시행령 (법령집 II 295)

2. DB vom 1. November 1965 (GBI., II, S. 779)

- 1965년 11월 1일 공포된 2차 시행령 (법령집 II 779)

2. VO vom 21. Oktober 1966 (GBI., II, S. 1253)

- 1966년 10월 21일 제정된 2차 법령 (법령집 II 1253)

V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35)

- 1968년 3월 15일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35)

VO über die Fortsetzung bestehender freiwilliger Versicherungsverhältnisse auf Alters- und Invalidenrente der Sozialversicherung vom 15. März 1968 (GBI., II, S. 166)

- 1968년 3월 15일 제정 고령자와 근무활동불능자의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현재의 자발적인 보험가입상태 계속에 관한 법령
(법령집 II 166)

VO über die freiwillige Versicherung auf Zusatzrente bei der Sozialversicherung vom 15. März 1968 (GBI., II, S. 165)

- 1968년 3월 15일 제정 사회보장에 있어서 추가연금에 대한
자발적인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 (법령집 II 165)

V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65)

- 1968년 3월 1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65)

1. DB vom 15. März 1968 (GBI., II, S. 161)

- 1968년 3월 15일 공포된 1차 시행령 (법령집 II 165)

V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62)

제 6 장

- 1968년 3월 15일 제정된 법률 (법령집 II 162)

VO über die Umrechnung und Erhöhung der Renten der Sozial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und der Sozialversicherung bei der Deutschen Versicherungsanstalt vom 15. März 1968 (GBI., II, S. 166)

- 1968년 3월 15일 제정 노동자 및 고용인의 사회보험 연금 인상과 환전 및 독일 (동독) 보험협회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 (법령집 II 166)

Erllass des Staatsrates der DDR über die Weiterentwicklung des Rentenrechts und zur Verbesserung der materiellen Lage der Rentner sowie zur Verbesserung der Leistungen der Sozialfürsorge vom 15. März 1968 (GBI., I, S. 187)

- 1968년 3월 15일 결의 연금법의 확대적용과 연금생활자의 물질적 상태 개선 및 사회보장제도운영 개선에 관한 추밀원 (樞密院) 결의 (법령집 I 187)

V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35)

- 1968년 3월 1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35)

V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54, S. 162, 166)

- 1968년 3월 1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54, 162, 166)

V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67)

- 1968년 3월 1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67)

V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78)

- 1968년 3월 1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78)

V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79)

- 1968년 3월 1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79)

4. VO über die Verbesserung der Leistungen der Sozialversicherung vom 6. Dezember 1968 (GBL., II, S. 1083)

- 1968년 12월 6일에 제정된 사회보장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4차 개정법령 (법령집 II 1083)

VO über die Erweiterung des Versicherungsschutzes bei Unfällen vom 15. März 1962 (GBL., I, S. 123)

- 1962년 3월 15일 제정된 재해보험 보호범위 확대에 관한 법령 (법령집 II 123)

AO Nr. 1 vom 21. Dezember 1962 (GBL., II, 1963, S. 2)

- 1963년 12월 21일에 제정된 규정 제 1호
(법령집 II-1963-2)

VO vom 5. Dezember 1963 (GBL., I, 1964, S. 14)

- 1963년 12월 5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964- 14)

AO Nr. 2 vom 16. Juni 1965, (GBL., II, S. 494)

- 1965년 6월 16일 제정된 규정 제 2호 (법령집 II 494)

VO vom 22. Dezember 1965 (GBL., I, 1966, S. 5)

- 1965년 12월 22일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966- 5)

AO Nr. 3 vom 27. Dezember 1965 (GBL., II, 1966, S. 10)

- 1965년 12월 27일에 제정된 규정 제 3호 (법령집 II-1966-10)

AO vom 29. Mai 1968 (GBL., II, S. 357)

- 1968년 5월 29일 제정된 규정 (법령집 II 357)

2. VO vom 25. Juni 1968 (GBL., I, S. 537)

- 1968년 6월 25일 제정된 2차개정법률 (법령집 II 537)

AO vom 26. Juni 1968, (GBL., II, S. 669)

- 1968년 6월 26일 제정된 규정 (법령집 II 669)

제 6 장

VO zur Erhaltung und Förderung der Gesundheit der Werk-
tätigen im Betrieb -Arbeitsschutz-Verordnung- vom 22.
September 1962 (GBL., I, S. 703; Ber. S. 721)

-공장노동자 보건유지와 건강촉진에 관한 법령 (노동보호 법령)
1962년 9월 22일 제정 (법령집 I 703 & 721)

1. DB vom 4. Februar 1963, (GBL., I, S. 95)

- 1963. 2. 4 1차 시행령 (법령집 I 95)

2. VO vom 5. Dezember 1963, (GBL., I, 1964, S. 15)

- 1963. 12. 5 2차 개정법령 (법령집 I -1964- 15)

2. DB vom 23. Juli 1964, (GBL., I, S. 698)

- 1964. 7. 23 2차 시행령 (법령집 I 698)

3. DB vom 14. Dezember 1964, (GBL., I, 1965, S. 17)

- 1964. 12. 14 3차 시행령 (법령집 I -1965- 17)

VO vom 13. Juni 1968, (GBL., I, S. 363)

- 1968. 6. 13 법령 (법령집 I 363)

VO über die Melde- und Entschädigungspflicht bei Beru-
fskrankheiten vom 14. November 1957 (GBL., I, 1958, S. 1)

- 1957. 11. 14 제정 직업병 제출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법
령 (법령집 I -1958- 1)

VO über die weitere Erhöhung des staatlichen Kinderges-
lides vom 27. August 1969 (GBL., I, S. 485)

- 1969년 8월 27일에 제정된 국고소년기금 증설에 관한 법
령 (법령집 I 485)

VO über die Zahlung eines staatlichen Kinderzuschlages
vom 28. Mai 1958 (GBL., I, S. 437)

- 1958년 5월 28일에 제정된 국고소년할증금 지불에 관한
법령 (법령집 I 437)

1. DB vom 28. Mai 1958 (GBL., I, S. 439)

- 1968. 5. 28 1차시행령 (법령집 I 439)

2. DB vom 29. Oktober 1958 (GBL., I, S. 842)

- 1958. 10. 29 2차시행령 (법령집 I 842)

3. DB vom 12. Mai 1959 (GBL., I, S. 557)

- 1959. 5. 12 3차시행령 (법령집 I 557)

4. DB vom 14. Juni 1962, (GBL., II, S. 392)

- 1962. 6. 14 4차시행령 (법령집 II 392)

5. DB vom 5. Mai 1964 (GBL., II, S. 392)

- 1964. 5. 5 5차시행령 (법령집 II 481)

6. DB vom 30. Dezember 1965, (GBL., II, 1966, S. 36)

- 1965. 12. 30 6차시행령 (법령집 II -1966- 36)

VO vom 3. Mai 1967 (GBL., II, S. 248)

- 1967. 5. 3에 제정된법령 (법령집 II 248)

AO vom 5. Juni 1967 (GBL., II, S. 349)

- 1967. 6. 5에 제정된규정 (법령집 II 349)

1. DB vom 10. Juni 1967 (GBL., II, S. 345)

- 1967. 6. 10 1차시행령 (법령집 II 345)

2. DB vom 7. August 1967 (GBL., II, S. 567)

- 1967. 8. 7 2차시행령 (법령집 II 567)

VO vom 15. März 1968 (GBL., II, S. 167)

- 1968. 3. 15에 제정된법령 (법령집 II 167)

AO vom 1. Juli 1968 (GBL., I, S. 532 & GBL., II-1969-

제6장

S. 485)

- 1968. 7. 1에 제정된 규정 (법령집 II 532 & 법령집 II -1969- 485)

VO über die Zahlung eines Ehegattenzuschlags vom 28. Mai 1958 (GBL., I, S. 441)

- 1958. 5. 28에 제정된 남편 (家長) 할증금지급에 관한 법령 (법령집 I 441)

1. DB vom 28. Mai 1958 (GBL., I, S. 442)

- 1958. 5. 28 1차시행령 (법령집 I 442)

AO vom 5. Juni 1967 (GBL., II, S. 349)

- 1967. 6. 5에 제정된 규정 (법령집 II 349)

VO vom 15. März 1968 (GBL., II, S. 135)

- 1968. 3. 15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35)

Familiengesetzbuch der DDR vom 20. Dezember 1965 (GBL., I, 1966, S. 1)

- 1965. 12. 20 제정된 동독가족법전 (법령집 I -1966- 1)

VO vom 17. Februar 1966 (GBL., II, S. 171)

- 1966. 2. 17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171)

1. DB vom 17. Februar 1966 (GBL., II, S. 180)

- 1966. 2. 17 1차시행령 (법령집 II 180)

VO vom 3. März 1966 (GBL., II, S. 215)

- 1966. 3. 3에 제정된 법령 (법령집 II 215)

Gesetz über den Mutter-und Kinderschutz und die Rechte der Frau vom 27. September 1950 (GBL., S. 1037)

- 1950. 9. 27에 제정된 모자보호 및 여권 (女權)에 관한 법률

(법령집 1037)

- DB vom 20. Januar 1951 (GBL., S. 37; Ber. S. 234)
- 1951. 1. 20에 공포된 시행령 (법령집 37 & 234)
DB vom 31. Januar 1952, (GBL., S. 118)
- 1952. 1. 31에 공포된 시행령 (법령집 118)
And vom 16. September 1952 (GBL., S. 872)
- 1952. 9. 16에 개정된 개정시행령 (법령집 872)
1. DB vom 10. Februar 1953 (GBL., S. 390)
- 1953. 2. 10에 공포된 1차시행령 (법령집 390)
DB vom 3. Juni 1953 (GBL., S. 818)
- 1953. 6. 3에 공포된 시행령 (법령집 818)
2. DB vom 1. März 1954 (GBL., S. 233)
- 1954. 3. 1에 공포된 2차시행령 (법령집 233)
AO vom 12. Juli 1956 (GBL., I, S. 257)
- 1956. 7. 12에 제정된 규정 (법령집 I 257)
ÄndAO vom 24. Mai 1957 (GBL., I, S. 194)
- 1957. 4. 24에 제정된 개정법령 (법령집 I 257)
Ges. vom 28. Mai 1958 (GBL., I, S. 416)
- 1958. 5. 28에 제정된 법률 (법령집 I 416)
6. DB vom 28. Mai 1958 (GBL., I, S. 446)
- 1958. 5. 28에 공포된 6차시행령 (법령집 I 446)
AO Nr. 2 vom 8. April 1960 (GBL., I, S. 251)
- 1960. 4. 8에 제정된 규정 제 2호 (법령집 I 251)
Einf Ges. z. GBA vom 12. April 1961 (GBL., I, S. 49)
- 1961. 4. 12에 제정된 시행법률 (법령집 I 49)

제 6 장

VO vom 5. September 1963 (GBI., I, S. 636)

- 1963. 9. 5에 제정된 규정 (법령집 I 636)

VO vom 3. Mai 1967 (GBI., I, S. 248)

- 1967. 5. 3에 제정된 규정 (법령집 I 248)

VO über die Verbesserung der Leistungen der Sozialversicherung für Arbeiter und Angestellte mit 2 und mehr Kindern vom 3. Mai 1967 (GBI., I, S. 248)

- 1967. 5. 3에 제정 자녀 둘 이상을 가진 노동자 및 고용인의 사회보장제도운영 개선에 관한 법령 (법령집 I 248)

1. DB vom 9. Juni 1967 (GBI., I, S. 343)

- 1967. 6. 9에 공포된 1차시행령 (법령집 I 343)

2. VO vom 25. Juni 1968 (GBI., I, S. 537)

- 1968. 6. 25에 제정된 2차법령 (법령집 I 537)

VO über die Pflichtversicherung gegen Arbeitslosigkeit vom 28. Januar 1947 in: Arbeit und Sozialfürsorge Berlin (Ost), S. 103

- 1947. 1. 28에 제정된 실업에 대비한 강제보험에 관한 법령 ("동부 [베르린]의 노동과 사회보장" 103 참조)

VO zur Verbesserung der Arbeitskräfteleitung und Berufsberatung vom 24. August 1961 (GBI., I, S. 347)

- 1961. 8. 24에 제정된 노동력조정과 직업보도의 개선에 관한 법령 (법령집 I 347)

1. DB vom 4. Juli 1962 (GBI., I, S. 432)

- 1962. 7. 4에 공포된 1차시행령 (법령집 I 432)

2. DB vom 15. Oktober 1962 (GBI., I, S. 732)

- 1962. 10. 15에 공포된 2차시행령(법령집 II 732)

VO über die Verbesserung der Fürsorge in den staatlichen Feierabend- und Pflegeheimen vom 15. März 1968 (GBI., I, S. 178)

- 1968. 3. 15에 제정국립휴양소 및 부양원의 보호업무 개선에 관한법령(법령집 II 178)

VO über die Verbesserung der staatlichen Leistungen der Sozialfürsorge für hilfsbedürftige Bewohner nichtstaatlicher Einrichtungen vom 15. März 1968 (GBI., II, S. 179)

- 구제를 요청하는 시설부양업소입주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관리업무 개선에관한 법령(법령집 II 179)

VO über die allgemeine Sozialfürsorge vom 15. März 1968 (GBI., II, S. 167)

- 1968. 3. 15에 제정된 일반사회 보장에 관한 법령(법령집 II 167)

1. DB vom 15. März 1968 (GBI., II, S. 172)

- 1968. 3. 15에 공포된 1차 시행령(법령집 II 172)

AO vom 15. März 1968 (GBI., II, S. 175)

- 1968. 3. 15에 제정된 법령(법령집 II 175)

기 타 자 료

Büro des Ministerrates der DDR (Hrsg) Das geltende Recht-Chronologischer und systematischer Teil Ausgabe 1969, Berlin(Ost)

- 동독각의의 업무(편집인) 현행법(연대학적 내지 체제적분류)

제 6 장

1969 동 「베르린」 세출예산

Adomeit Heinz Gesetzes-Generalregister-Ausgabe 1959

1. Chronologischer Teil

2. Alphabetischer Teil Berlin (Ost) 1959

- 1959년 「아도마이트 「하인츠」가 작성한 법률일반업무세출예산

1. 연대순에 따른 구분

2. 「알바벨」순에 따른 구분

(동부 「베르린」 1959년)

Staatliches Amt für Arbeit und Löhne beim Ministeriat
(Hrsg.), Gesetzbuch der Arbeit und andere ausgewählte rechtliche Bestimmungen Berlin (Ost) 1969

- 각의에서의 노동과 임금에 관한 국가업무 (편집인) 노동법전 및 기타 특정 법률판례 시행령 (1969 동부 「베르린」)

Hartuick, Kurt, und Otfried Schmack, Das Recht der Sozial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Berlin(Ost) 1969

- 「하르트니크」 「쿠르트」 「오프리트. 쉬마크」 공저 1969년 동부 「베르린」 노동자 및 고용인의 사회보험법

Richer, Hans, und Heinz Reichert, Sozialfürsorgerecht
2. Die materiellen staatlichen Leistungen der Sozialfürsorge der DDR, Berlin (Ost) 1970

- 「리허터」 「한즈」 「하인츠. 라이케르트」 공저, 2차 사회 보장법

동독정부의 사회보장업무 실태 (동부 「베르린」 1970)

Bundesvorstand des FDGB, Verwaltung der Sozialversich-

erung (Hrsg.), Handbuch des Bevollmächtigten für Sozialversicherung, Berlin (Ost) 1970

- 자유독일 노동조합연맹 간부진이낸 사회보험관리 (편집인)
사회보험 전권수임자 (헤드 . 목) (1970 동부 「베르린」)

Weser, Horst.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Deutschlands Stand vom 1. 1. 1964 (Schriftenreihe der Bunde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 28), Berlin 1965

- 「베제르」 「호르스트」 공저

독일영토내 「소비에트」 점령지구에서의 법정 금리보험 1964.
1. 1 현재 (이 책은 「고용인을 위한 연방보험협회」가 저작한
28번째의 것이다)

Luber Franz (Hrsg.), Deutsche Sozialgesetze Sammlung des gesamten Arbeits- und Sozialrechts der Bundesrepublik 2. Aufl., München 1970

- 「루버」 및 「프란츠」 (편집인) 공저 독일의 사회입법
서독의 전체 사회입법 및 노동입법총람 (뮌헨 1970)

제 6 장

제 6 장의 주해

1. 1969 년 까지 : 독일보험협회 (DVA)
2. 사용인보험제도는 없다.
당시 「소비에트」 점령지구내의 사용인의 신분은 1945 년에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3. 즉각적인 현금지급요청권을 가진 질병보험대상자에 대한 1970 년 임금지급법에 의해 생기는 특별대우는 제외되었음
4. 여기엔 단기간의 건강석약의 경우에 정해진 급여문제가 설명되어 있다. 장기적 또는 지속적 수입저하의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는 "활동무능력자" 를 다루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5. 사회보험문제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간접적인" 가족수당의 지급은 임금지원 내지 수입지원의 형식으로서 가족(가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동시보험시켜 주고 어린이의 숫자를 고려해 주는 등, 서독에서 공히 인정되는 사회급여(사회보장제도상의 급여)이다.
6. 설명방식에 관해서 말한다면 주요노동시장의 실태에 대한 설명이 전체보고서 안의 여러개의 장을 빌려서 다양한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인원화된 보고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가령 교육정책과 노동시장정책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 줄로 퍼 치밀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7. 연금보험에 있어서는 : 생계능력의 유지, 생계능력의 증진, 생계능력의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연금생활자에게 주는 질병보험료

납부를 돕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보조금지급 등이 있다.

질병보험에 있어서는 : 일반의료비, 치과의료비, 질병가계비, 의약품의치 (치아대용품), 주간보조금 등의 지급이 있다.

재해보험에 있어서는 : 전쟁희생보험, 전쟁희생원호, 건강회복치료, 직업구제가 있다.

사회구제에 있어서는 : 협회에서의 생계비보조, 건강악화에 방조처 질병구조 난파의 조정해결조처 협회의부양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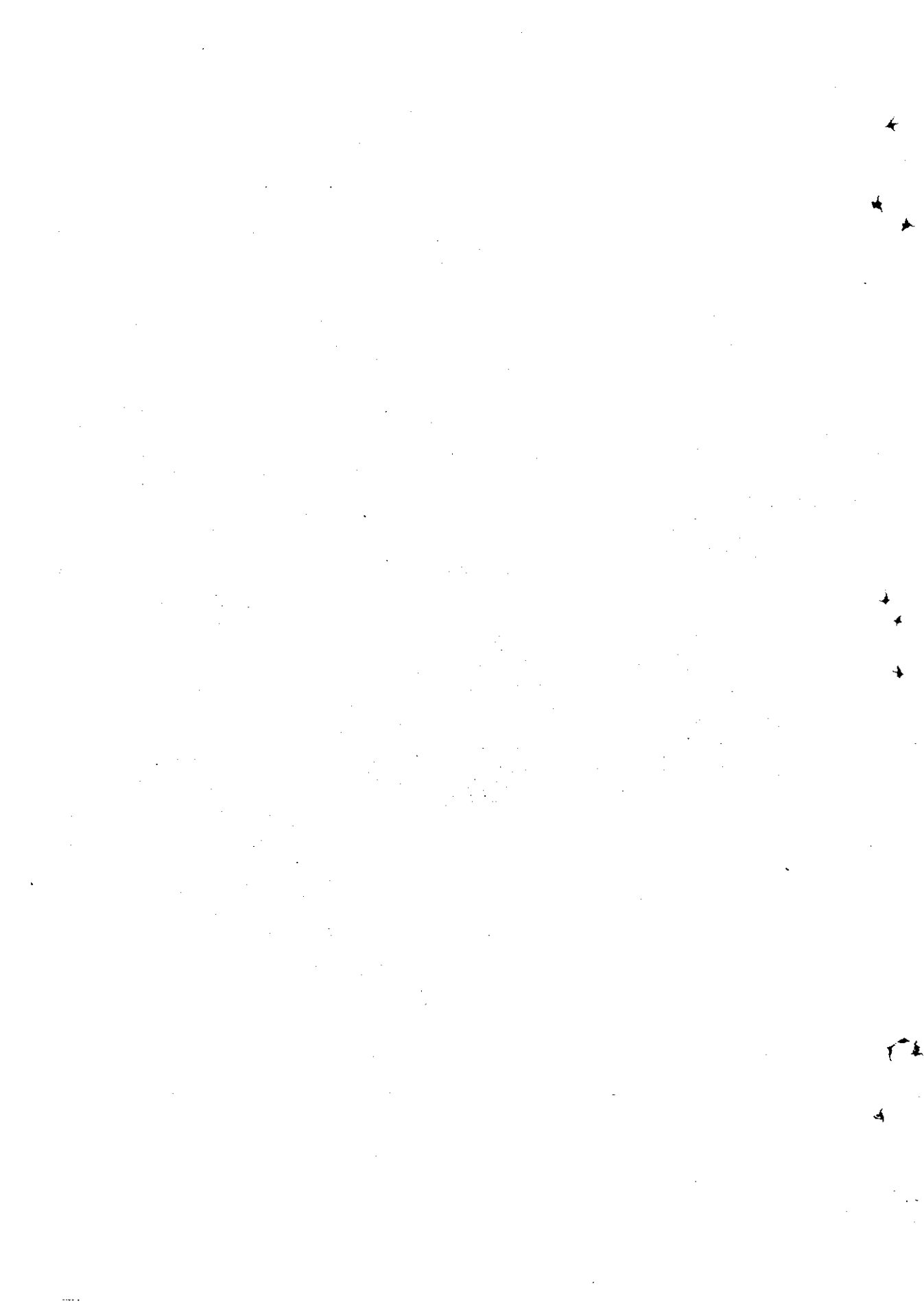
청소년구제에 있어서는 : 소년회의소에의 참여조처 및 청소년부양원, 입원조처, 일반인의 자발적인 교육보조, 국고후생교육 등이 있다.

공공의료보건의업무에 있어서는 : 치료행위와 질병예방조처의 성격을 띤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지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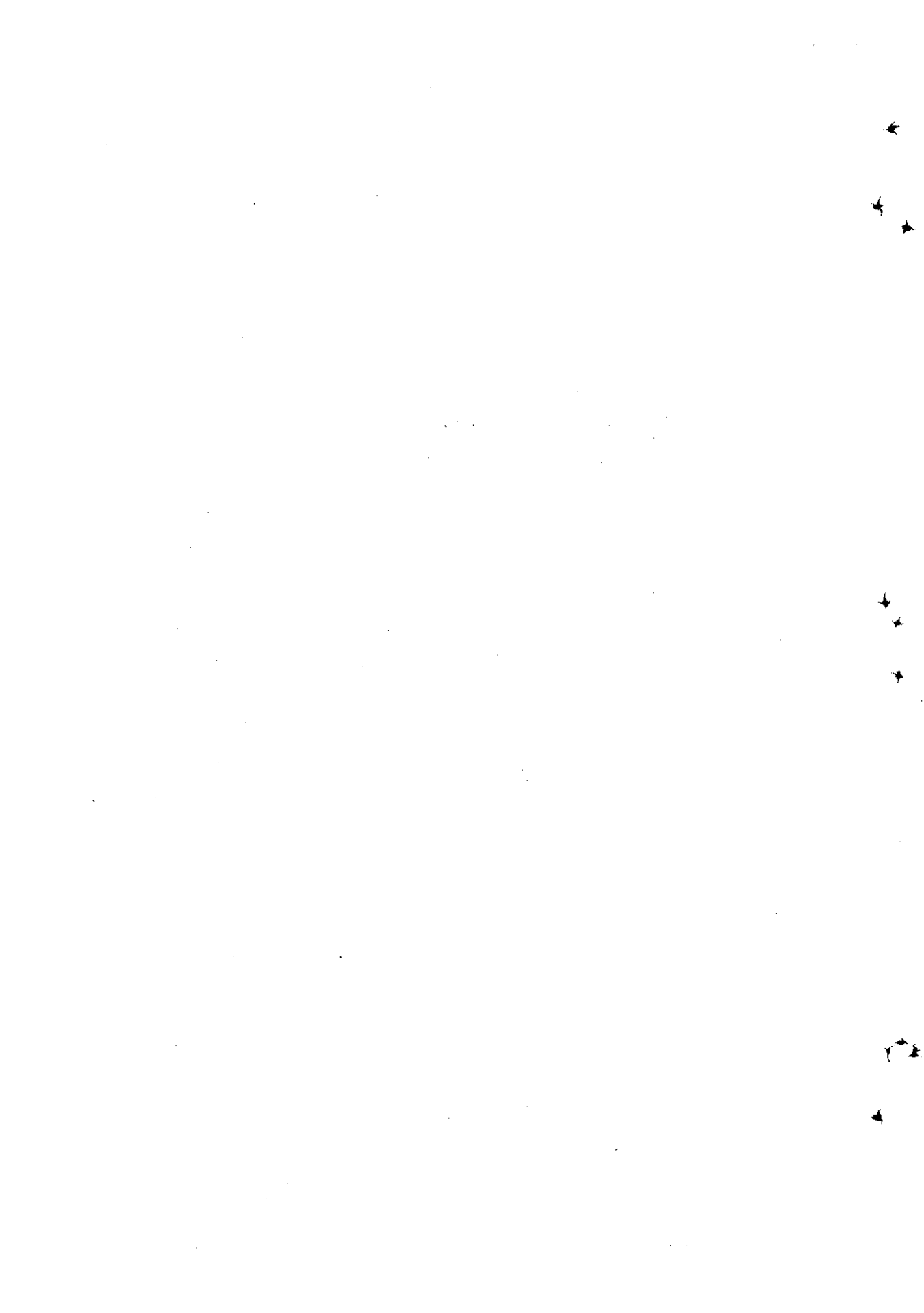
8. 재해(상해)보험에 있어서는 : 가해자에 대한 재산몰수, 강제징수, 파세부과 책임부과조처 등이 있다.

실업보험에 있어서는 : 교육비부담, 복직, 직장알선, 외국인정리, 광업보조 등이 있다.

기타의 사회보험분야에 있어서는 미미한 조처와 대책이 있을 뿐이다.



제 7 장 교 육 과 훈 련



제 7 장 교육과 훈련

- ☒ 서독에서는 오즈음 직업교육의 조정과 지휘라는 문제가 사용인조합에서든 고용인조합에서든 어디서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직업교육문제가 국가의 기본정책에 의해서 진지하게 다루지고 있다. 동독에서는 기업체와 직업전문위원회가 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법률 곧 협동법을 갖고 있다.

(435)

- ☒ 동독과 서독에서는 신입생들의 교직에 대한 편향적인 집중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체 교직의 숫자는 딸리고 있는 실정이다.

(432)

- ☒ 동독과 서독에서는 신입생들이 비슷하고도 동질성이 있는 어떤 특정의 직업분야로 집중지원(集中志願)하는 경향이 있다.

(437)

- ☒ 서독에서는 수공업분야를 지망하는 신입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많으며 공업분야의 신입생들 숫자는 동독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두드러지게 적게 나타나고 있다.

(436)

- ☒ 서독에서는 혁신교육제도인 단계적 교육에 투입된 직업초보자 숫자가 동독에서의 기본적-직책(동독의 혁신교육제도)에 투입된 직업초보자 숫자보다 훨씬 적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인정(찬사)을 받아온 서독의 단계

교육체제는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업분야에 대해서 동독의 기본정책체제가 해은
것만큼 두드러지게 집중적인 공헌을 하지 못하
고 있다.

(448-450)

- ☒ 서독에는 2원적(二元的)체제가 광범하게 통
용되고 있다. 반면 동독에는 2원적 체제의
철저한 분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430, 439, 441, 442)

- ☒ 서독의 경우 직업교육에서 학교교육기간이 차
지하는 부분이 동독의 경우의 약 반정도에 머
므른다.

(439)

- ☒ 서독에서는 종전(終戰)이래 직업조직방법의
40%가 바뀌어졌고 동독에서는 직업교육수단이
종전 이후 완전히 교체되었다.

(443)

- ☒ 서독에서는 교육기간이 동독의 경우보다 길다.

(445)

- ☒ 서독에서는 교육종결시험에서의 낙제비율이
대략 동독의 경우의 낙제비율보다 절반정도
더 높다.

(446)

- ☒ 서독에서는 전문학교가 동독의 전문학교보다

덜 전문화 되어 있다.

1968년 서독의 경우 공업분야대학생의 전공
과목별 집중배치 순위는 기계공학·전기공학·
건축공학 순이었다. 동독의 경우엔 기계공학·
공업경제·전기공학·건축공학 순이었다.

- ☒ 서독에서는 18세에서 45세에 이르는 사람
들의 1%가 전문학교에 나가고, 동독에서는 거
의 약 2배 반 정도인 2.4%가 나간다.

전문학생 총 숫자에서 여성전문학생이 차지하
는 비율은 서독의 경우가 동독의 경우보다 더
낮다.

- ☒ 서독에서는 의학 및 약학분야의 대학에서만
전공과정이 확립되어 있다.

동독에서는 간혹 몇몇 전문분야에서 전공현상
이 보인다.

서독에서는 모든 학문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
재조정까지 재평가되고 있다.

동독에서는 자연과학 내지 공학분야에서만 새
로운 체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466)

- ☒ 1968년의 경우 서독에서는 대학교학생의 인
기있는 학과순위가 교육학원론 약학 및 농학
철학사·국가학 법학순으로 나타났고.

동독에서는 교육학원론·공학·경제학 순으로 나타났다.

(467)

- ☒ 서독에서는 18세에서 45세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학을 찾는 숫자가 동독의 경우보다 비교적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학교(Fachschule)의 경우에서처럼 대학(Hochschule)의 경우에도, 전체대학생중의 여자대 학생 숫자의 비율이 서독의 경우가 동독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465)

- ☒ 서독에는 객관적으로 승인되는 자격을 수여하지 못하는 사실 통신교육기관이 아직도 있다
동독에서는 통신교육은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일반대학과 동등한 대우의 졸업을 시켜주는 충분히 완전한 요소를 지닌 교육제도로 통하고 있다.

(470)

428. 서독정부는 1970년 1월 11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국가정세보고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말한바 있다. (서독정부는 자신을 연방정부로 칭하고 있다.)

즉 1969년 8월 4일과 1969년 9월 8일에 대연립 서독정부에 의해 제출된 보고(정부간행물 V/4608, V/4631)속에, 동·서 양독의 교육의 발전상황과 학문 및 연

구 등 제반분야에 관한 동·서 양국의 국력비교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후(보고서를 제출한 1969년 8월 4일 또는 동년 9월 8일 이후) 동독에서는 원칙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럭저럭 필요한 결정과 조치(주 1)가 이루어지고 등한시된 까닭에 기존 교육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교육제도가 지닌 영역과 분야만으로 변화하고 늘어가는 욕망과 필요를 만족시켜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독정부는 1970년 6월 8일에 교육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보고서는 적어도 1980년까지를 내다본 장기적 전망을 자체내에 지니고 있다.

서독정부는 자기자신의 동독에 대한 주도적 권능의 기초 위에서 동·서 양국간의 광범위한 협조를 제안한 바 있다.(주 2)

1970년 7월에는 교육대책의 통일적인 수립을 위한 동·서독 합동위원회(「연방과 지역국가간의 합동위원회」라고 서독정부는 표현하고 있다.)를 창설하였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서독의 교육정책과 동독의 문화(학문)정책을 횡적으로 유기성 있게 수립하며 1971년 5월까지 동·서독을 망라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종합적인 전체 교육예산을 편성·수립하는 일이다.

동독을 실현하겠다는 서독의 이같은 목표설정과 목적실현을 위한 더욱 더 폭넓은 계획과 전진대책이 있는데 그것은

제 7 장

바로 1970년 12월 3일에 구체화된 대학의학법규 수립을 위한 정부의 계획인 것이다.

(의학법규 - Rahmengesetz oder Mantelgesetz - 높은 차원의 원칙과 뼈대만을 정하는 법규)

현재 이미 서독정부는 동·서 양독에 현존하고 있는 교육제도 학문제도 또는 연구제도 등에 관해서 새롭고 균형 잡힌 합리적인 내용의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동독과의 비교를 세부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화되도록 포괄적으로 잘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독의 교육제도는 지극히 광범위하게 여러가지 복잡한 전문분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도식 17 참조) 또한 서독은 동독에 대해 연방정부적 견능(소위 唯一合法性)을 스스로 주장하는 입장이어서 동독과의 관계에서는 현안문제타결의 출발점에서 부터 약간의 이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전혀 교육제도(Bildungssystem)와 실습제도(Ausbildungssystem)의 두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 학교직업 교육(Schulische Berufsausbildung)과 공장직업교육(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및 전문학교교육(Fachschulausbildung)과 대학교육(Hochschulausbildung)을 나눠서 다루고자 한다. 주 3

1. 학교 및 공장에서의 직업교육

a) 직업교육정책의 출발점 (기초)

429. 동독과 서독에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동독과 서독의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에 관한 동·서독정부의 목표설정 자체가 서로 상위된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동독과 서독은 반면에 그들 자신이 공통한 역사 전통과 사회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일치되는 출발점을 어느정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2원적 제도

430. 동·서 양국의 직업교육정책간의 중심되는 공통한 출발점은 소위 「2원적 제도」라는 점이다.

이것(2원적 제도)은 동독이나 서독에서 공히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직업교육정책상의 공통한 특징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

직업교육의 2원적 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교육을 제도의 면에서 학교교육과 공장교육으로 분리시켜 운용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 교육제도와는 구별된다.

또한 2원적인 직업교육제도에서는 주로 공장에서 수행되는 실습직업교육이 의무교육제도를 통해서 뚜렷해진 이론적 직업교육을 뒷받침해주어 실습과 이론이 피차 조화되도록 되

어 있다.

더우기, 직업교육이 국가에서 인정받는 교직제도를 통해 교수수업계약의 기초위에서 수행된다는 점이 동·서독 직업교육제도간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교 직 제 도

431. 교직제도는 특히 ■상·공업 분야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제도 (Reichsinstitut für Berufsausbildung in Handel und Gewerbe) ■속에서 다수를 위한 소위 직업교육 통제 방법 (sog Ordnungsmittel für die Berufsausbildung) -직업형태·직업교육계획·시험 및 직업적성요전등에 관한- 이 창안되고 일부 고도로 특수·전문화된 교직제도가 처음 실시되던 1930년대 내지 1940년대에서 부터 시작된 동·서 양독에 공통한 전통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에 생겨난 대부분의 많은 교직제도는 바로 위에 말한 것에 연유하고 있다.

1949년 서독의 교직과목의 수는 719였고, 1957년의 경우 동독의 교직과목 수는 972였다.

432. 1950년대 이래로 전쟁피해 복구작업이 끝난 후에는 교직의 숫자가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현상과 경향은 동독에서나 서독에서나 마찬가지로 발견되었다. (일람표 A 116참조)

한편 초급자들의 교직에 대한 집중현상은 반대로 늘어났다. 서독의 경우 1965년 총 535개 분야의 교직에서 상업·

공업·수공업 분야의 전체 초급자중 약 70%가 34개교직으로 몰렸다.

동독에서는 1966년 총 655개분야의 교직에서 초급자중 75%가 65개 교직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62년에서 1967년 사이에 초급자들의 교직으로서의 집중현상이 동·서 양독에서 공히 누그러졌던 것은 역시 특기할만한 공통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람표 A 117참조)

교직과목의 감소와 초급자들의 교직에 대한 집중현상은 초급자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초급자들의 중요직업유형에 대한 집중배치가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직업교육의 과도한 분산을 막기 위해서 동·서 양독에서 채용된 새로운 정책적 조치를 위한 제반 근본대책중의 하나이리라고 본다.

서독에서는 대다수의 이익집단 (Interessen-gruppen) 들이 직업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영향을 끼쳐보려고 경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직업교육제도가 확고하고도 통일적인 규범-제급의식과 숙련노동자의 입장 및 자세에 대한 규범등-의 기초위에서 조직적으로 계몽되고 있다.

교육정책상의 목표설정

433. 단순한 교육정책상의 목표설정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동·서독간에는 잘 합치되는 동질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최소한 지적수행능력 평생동안의 수련 민첩한 대처력과 자유재량능력 등 오늘날 소위 모든 산업사회에 공통한 교육목적의 부분에 있어서 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사회정책상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는 동·서독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직업교육법령의 초안과 내용해석에 관해 제출한 노동위원회의 서면보고에 의하면, 서독에서의 직업교육은 가난한 고도의 합리적 살림살이를 위해 기술적 내지 경제적인 제약과 악조건하에서 모든 사회적인 기회와 직업상의 「찬스」가 포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 5)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을 (den arbeitenden Menschen) 특정신분이 보장되는 어떤 계급속에 넣어주자고 한다. 그리하면, 일생을 두고 직업능력을 수련하는 과정으로서 직업교육은 잘 확립될 것이라고 동 위원회의 서면보고는 주장한다.

동독에서는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무릇 직업교육은, 지적수행에 있어서 높이 평가할만한 노련한 노동을 제공하고 기술혁명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주 6) 유능하고도 주도면밀한 자격있는 사회주의 숙련노동자들을 양성하는 임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요소로서의 사회주의 직업교육의 발전에 관한 원칙」에서는 한결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문노동자는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교양과 확고한

정치적인 이해력 및 직업상의 포괄적인 인식과 능력과 숙달되고 완전한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노동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서 항상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b) 직업교육제도의

법률적인 윤곽

434. 서독 헌법과의 차이점을 말하기로 한다면, 1968년에 개정된 동독의 헌법은 제 25조 제 4항에서 모든 청소년들은 하나의 직업을 배울 권리와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직업교육사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다. 서독에서는 이런 규정을 헌법에서도 지방(주)헌법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서독에서는 공장실습직업교육은 1969년 8월 14일에 제정된 직업교육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 직업교육법령이 제정되기까지는 직업교육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법을 구성하는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법이란 공업규정·상업법전, 수공업 규정등을 의미한다.

직업교육법령의 의결·통과되기까지는 법제정기능이 실제에 있어 상·공회의소와 수공업조합에 있었다.

이 상공회의소와 수공업조합은 현재에도 모든 경제 산업분야의 초급자들중 90%정도를 자체내에 끌어안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의 경우 직업교육법령이 의결된 후로는 학교에서의 이론적 직업교육(공장실습 직업교육과 구별됨)은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물론 이같은 사실은 - 동독의 경우와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국민의 의무교육법령속에 규정되어 있다.

동독에서는 학교에서의 이론적인 직업교육과 공장실습직업교육이 모두(둘 다) 1965년 2월 25일에 제정된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 Bildungssystem)」속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1968년 6월 11일에 제정된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직업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제반원칙」과 1970년 6월 19일에 제정된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제도에서 통일적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본질적 요소로 되는 직업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제반원칙」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 직업교육의 사회정책상의 분류

435. 서독에는 지금까지 국가가 직접 수립한 직업교육 계획이 없었다. 직업교육의 조직과 조정과 통제가 모두 혼히는 독자적인 경영관리 임무로 취급된채 각종 업계의 회의소측에 맡겨져 있었다.

각 회의소들은 오늘날과는 달리 직업형태·직업교육계획·시험 및 직업적성요건등을 다루는 직업교육 조직방법까지도 스스로 제정·수행해야만 했으며 이의 승인은 연방경제성장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상·공회의소는 교육지원노력을 공장실습직업교육을 위한 노동청 (ABB: Arbeitsstelle für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에 부탁했고, 수공업회의소는 그것(교육지원노력)을 수공업분야 직업보도 협회 (I B H: Institut für Berufserziehung in Handwerker)에 부탁하였다.

공장실습 직업교육에 관한 당해 회의소의 권한은 1969년 8월 14일에 제정된 직업교육법령에 의해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등 직업교육법은 종래 회의소만이 갖고 있던 권능을 당해 분야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인정하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직업교육과 직업교육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있어 회의소와의 협동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직업교육과 직업교육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있어 새로운 권한과 새로운 기관을 다시 창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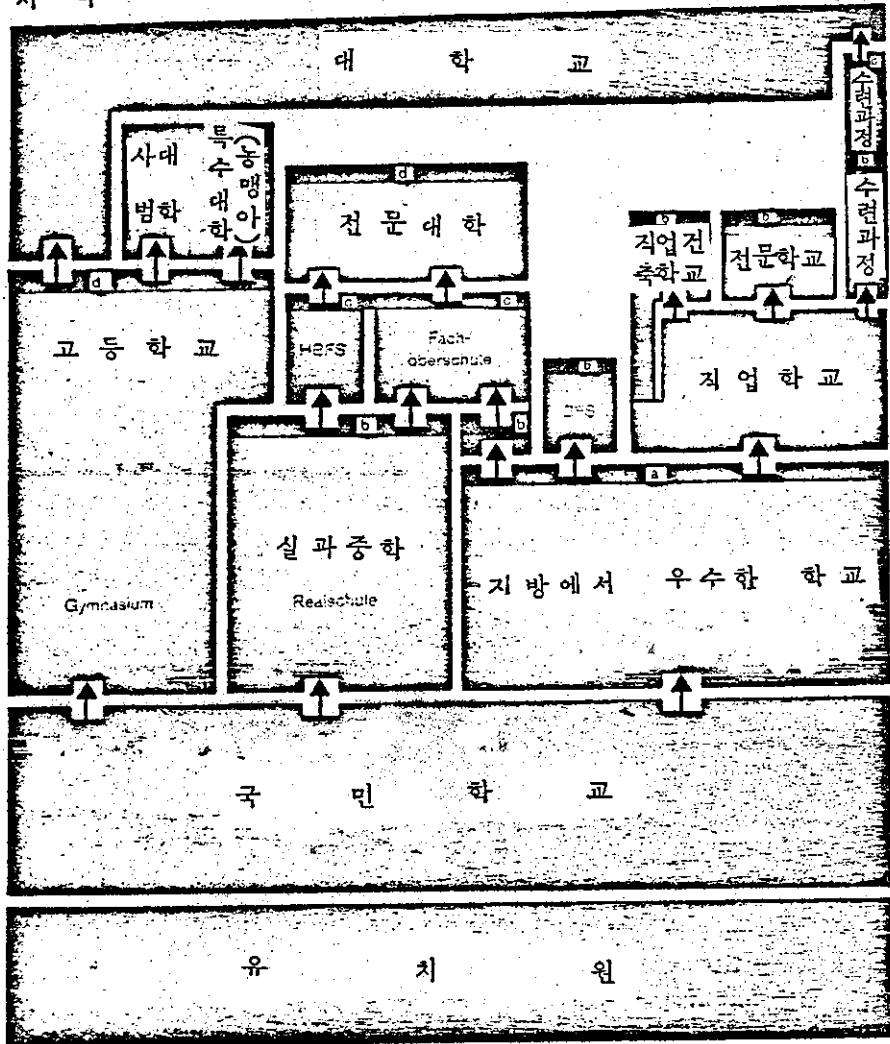
그 기관이 바로 연방 직업교육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협회다. 나아가 직업교육 조직방법은 그 후로 연방 경제성 장관과 연방 노동성 장관의 일치된 협력에 의해 법 제정으로써 새로히 선포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경제분야의 직업교육계획과 독일연방내 다른 지역들간에 현존하는 국가교육정책에 관한 조항들 사이에 아무런 일치점과 어떤 조화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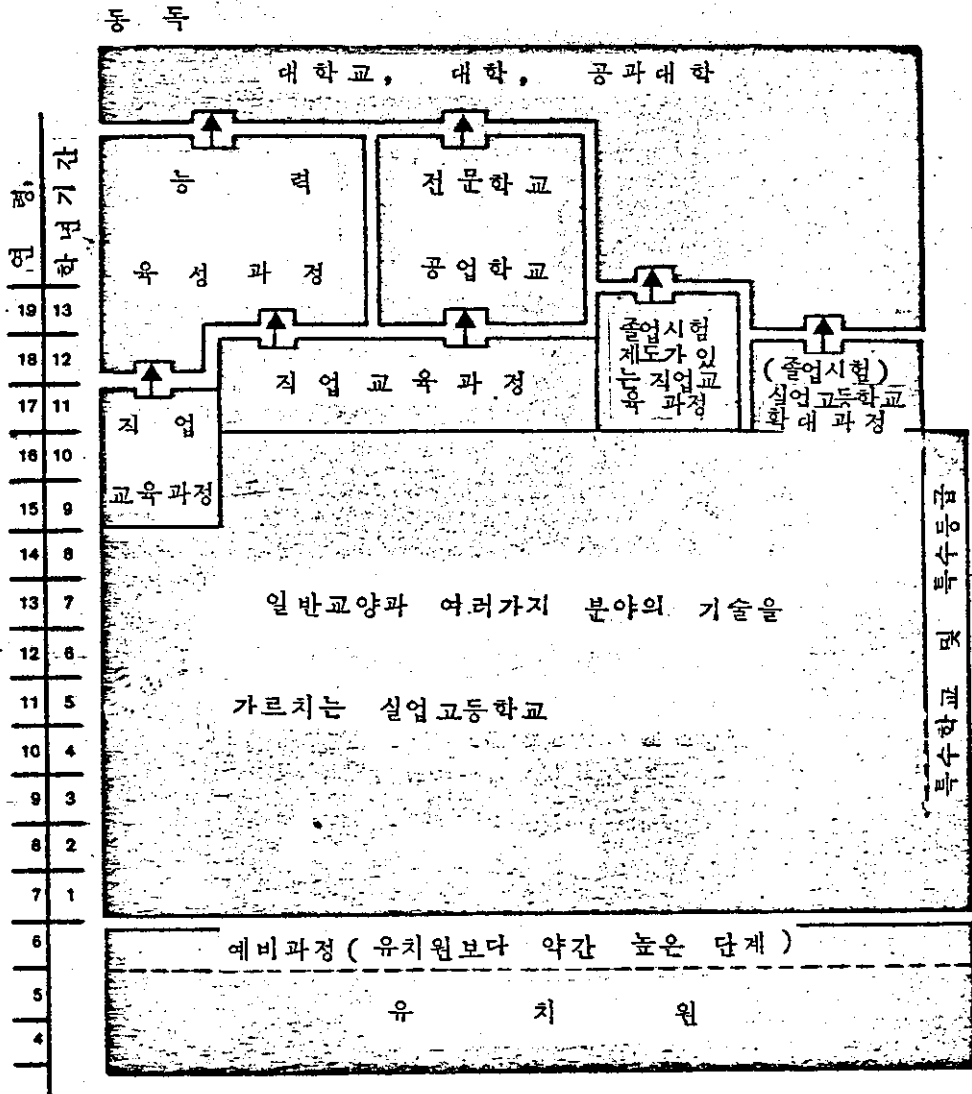
그러나 앞에 말한 직업교육법령이 의결됨에 따라, 직업교육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모든 직업교육제도가 사용인조합이나 고용인조합 그 어느 곳에서도

도식 17 교육제도의 분류

서 독



- a : 지방우수학교 졸업
- b : 중학교 졸업
- c : 전문고등학교 준비
- d : 대학 준비



공히 뚜렷하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일반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을 나란히 세워서 동시에 다뤄보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주 7) 직업교육법령에 의해서 자신 (정부)에게 주어지는 권능과 가능성에 힘입어 실습교육의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독의 직업교육 계획

동독에서는 직업교육을 위한 제반원칙이 국가경제계획과 노동력계획의 목표에 의해서 확정된다.

기업체들은 직업교육을 위한 장기계획과 년도계획-학교졸업생들을 직업교육제도 속으로 신규채용, 충원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계획을 또한 국가기관 및 경제기관과 일치시켜야 한다.

노동 및 직업심의회에 관한 지방관청이 있는데, 이들은 직업심의회 (職業審議)의 범위내에서 각 기업체가 세워놓은 이 계획들을 학교졸업생들의 직업희망현황과 맞나 안맞나에 대해 시험·검토하여 계획과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관청들은 기업체에서 완료된 수업계약을 여러모로 결산해 보며, 이 결산 검토과정에서 직업교육의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1963년 독일통일사회당 (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동독의 정당)의 Ⅷ차 전당대회에서 국가경제 운용과 계획을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수

립이라는 문제가 거론, 공포된 일이 있다.

그 후로 동독의 직업교육제도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 직업교육실시에 관한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여 각 기업체에서 수립된 직책승계 후계자 육성계획을 앞세워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초급자들의 특정분야 직업유형에로의 집중적배치를 위한 중앙의 계획을 완화하여 이 역시 각 기업체에서 수립된 직책승계 후계자 육성계획을 앞세워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동독의 각의는 기업체와 그 집행기관들로 하여금 직업전문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주 9) 그들 (기업체 및 집행기관)에게 새로운 교직 (직업분석·직업교육자·교수계획·교수방법 등)을 발전시키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관청 - 직업교육청 -

기업체와 그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직업전문위원회는 노동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가전체의 종합경제적 입장에서 세워진 직업교육계획에 입각해야만 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직업교육청에 의해서 발전시켜진, '사회주의 직업교육의 교직 내용결정에 관한 원칙'을 1968년 이후로는 실제의 업무지침 및 지도원리로서 받아드려야만 한다.

교직제도를 실제로 운용함에 있어서는 교직제도 발전의 지방분권화 보장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청에 의한 중앙의 지도

제 7 장

와 직업교육청의 동시 참여는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청은 이미, 문서화된 직업분석·직업교육자·교수계획·교수시간표 등에 대한 참조사항과 시행실례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참조사항과 시행실례들은 직업교육이, 지방에서 작성되었으나 국가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명시되는 원칙적인 교육지원 대책의 기초위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436 개관 52

산업분야별 초급자 수 비율 개관 (%)

산 업 분 야	서		동	
	1965	1969	1965	1969
공 업	24.7	25.2	43.0	43.5
수 공 업	16.0	15.3	7.8	6.1
건 축 업	9.8	9.6	11.9	16.7
능 림 업	1.6	1.5	13.1	6.9
운 수 업	4.0	3.9	5.8	6.2
상 업	28.1	27.8	9.7	9.5
써 비 스 업	15.8	16.7	8.7	11.1
총 계	100.0	100.0	100.0	100.0

직업유형별 초급자 수

437. 동독에서나 서독에서나 1962년에서 1967년까지는 교육을 받는 전체 초급자중의 80%~90%가 당시의 새로운 직업 유형으로 집중되었다. (일람표 A 117, A 119 및 A 120 참조)

당시, 동·서양독에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직업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업

금속제조업 및 금속가공업

전기기술 직업

건축업

보건 의료원

식품 및 유통음식제조업

직물제조 및 직물 가공업

서독에서는 조합요원직·관리직·사무직 및 특수기술직 등이 으뜸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독에서는 농부·동물사육자·정원사 및 제도(制圖)업 등이 - 1962년 이래 - 늘어나고 있다.

구조비율을 볼 것 같으면, 상업·건축업·직물제조 및 가공업등의 분야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반해, 금속제조 및 세공업·전기업·보건의료업 및 식품제조업·유통음식제조업 등의 분야에서는 1967년의 경우 구조비율에서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 초급자에 대하여는 표장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c) 2원체제 (2원적 제도)의 발전

학교에서의 이론적 직업교육

438. 동·서독 어디서나 법률적인 직업교육 의무가 있다.

서독에서는 전기간 (全期間) 교육의 무-국민학교까지의 교육과정-를 마친 후에 지방학교나 특수학교를 다니지 않고서 최소한도 24주간의 교육기간을 가진 한 단계 더 높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 (초급자·학습자·친족보조원·영리활동능력 미달자. 청소년노동자 및 청소년종업원) 들은 일반적으로 직업학교 (Berufsschule)에 3년간 다녀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모든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직업교육의무를 지고 있다. 초급자들은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직업학교에 다녀야만 한다.

동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수업훈련이 끝날 때까지 교육의무가 연장된다. 일반교양과 여러가지 종류의 기술을 배우는 10등급실업고등학교 (7세에서 16세까지 10년간의 교육과정)를 졸업하고 다른 교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교육의무를 벗게 된다.

실업고등학교 (7세~16세)의 8등급과정 (7세~14세)을 종결하고, 교육계약을 맺지 않은 청소년은 2년간의 직업교육의무를 더 지게 된다. 그러나 실업고등학교의 8등급과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교육계약을 더이상 체결하지 않은 청소년은 직업교육 의무를 벗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년들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동독의 의무교육 규정의 정신에 맞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그에 적합한 자격인정수련제약을 체결한다. 이들은 흔히 정규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결할 경우에 속한다.

서독에는 공립직업학교외에 공장이나 기업체 소유, 하는 사립대용학교로서의 실습작업직업학교라 하는 것이 있다. 동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직업학교와 의료기관에서 세운 직업학교 및 공장이나 기업이 설립한 직업학교 등이 있다. 동독에서는 대기업체속에 설립된 공장직업학교들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직업학교의 날 교원부족

439. 서독에는 현재 직업학교에 다닐 의무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씩은 직업학교에 출석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직업학교에서 교육받는 시간의 길이와 2원체제의 테두리속에서의 전체 교육시간의 길이간의 비율은 20:80이다.

서독에서는 오늘날 15,000명의 직업학교 교사가 두드러지게 부족한 실정이다. 결원부족된 자리가 전체의 39%에 달한다.

1964년에서 1967년에 이르는 사이에 직업학교의 형편은 더욱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서독에는 동독과는 달리 실제적인 직업교육과 이론적인 직업교육을 적절히 동시에 조화시켜서 수행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특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직업전문학교들은 1년 내지 3년간 자발적으로 입학해

서 다닐수 있는 학교다.

이 학교는 실습직 교육을 앞서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고, 실습직업교육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보충해 주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다.

이 학교는 실습교육을 준비하는데 봉사하기도 하고 수업기간에 계산될 수도 있으며 수업을 보충해줄 수도 있다.

1964년 서독에서는 약 154,000명의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1,300,000명의 초급자와 학습생을 맡아서 지도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직업전문학교 학생 한 사람이 초급자와 학습생 12명을 맡았던 셈이다.

1966년의 경우 직업전문학교 학생숫자(176,000)와 초급자 및 학습생 숫자(1,300,000)의 비율은 1:9였다.

전체 직업학교에 다닐 의무를 가진 청소년중의 88%가 초급자였고, 나머지 12%정도가 직업전문학교 학생이었다.

동독에서는 직업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이 1년 과정에 약 거의 반인 6개월정도이고 2년과정과 3년과정에는 당해 교육기간의 약 3/4 정도이다.

서독에서는 주당 교육일 수는 1일이고, 동독에서는 1학년 과정이 주당 3일 2년과정 및 3년과정은 2일이다.

직업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의 길이가 전체 교육기간의 길이에 대해 갖는 비율은 동독이 약 40%이고, 서독은 그의 반정도이다.

동독은 직업교육에 있어 기본사항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의 조화실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오랜 시일을 두고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직업수행에서의

능력구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독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독처럼 주당 2일의 직업 학교 등교(이론교육을 받기 위한)에 대한 요구가 올라가게 되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된다고 볼 수 있다.

연방(서독)정부는 교육정책에 관한 보고과정을 통하여 직업의 유동성과 직업의 기회균등 및 직업의 이론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초급자 교육에 있어서의 이론적이고도 다양성 있는 유효한 지도 방법의 철저한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동독은 서둘러서 이런 점(초급자 교육에서 이론적 지도를 강화한다는 점)을 개선·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독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업실습교육에 강점을 뒀은 종래의 전형적인 이원체제교육제도의 이론 교육중심으로의 재편성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학 급 숫 자

440. 서독의 경우 1968년 직업학교에서의 학생과 선생관계가 70:1이었고, 동독에서는 약 31:1이었다.

이에 반해 교실숫자는 별 차이가 없다.

1968년 학생대 교실의 관계는 서독이 약 20:1이고 동독은 약 22:1이었다.

공장실습 직업학교

441.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동독의 경우 대기업에서 설립된

경되는 공장실습 직업학교에서는 현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직업학교제도가 검토시행되고 있다.

서독의 경우 공장실습 직업학교의 수는 23개이고 전체 직업학교 수는 1783개이다. 공장실습직업학교의 전체 직업학교에 대한 비율은 겨우 1.3%이다.

동독은 1967년의 경우 위의 숫자가 684:1172였고 그 비율은 무려 58.4%나 되었다.

서독에서는 공장실습직업학생 수와 일반 직업학생수의 구조비율이 0.4% : 99.6%이다. 동독의 경우엔 위 수의 구조비율이 48.4% : 51.6%이다.

(이상은 1967년의 경우)

동독에서는 기업운영자가 공장실습직업학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실습과 이론의 2원적 직업교육 제도는 최소한도 조직운동의 면에서는 전체 공장실습직업학교 학생의 거의 반정도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파 다른 바가 없다. 왜냐하면 저러한 공장실습직업학교는 그들 스스로 학술적이고도 실습적인 직업교육의 동시적인 시행을 위해 실재에 있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의 전문잡지의 비관은 학술교육과 실습교육의 통합은 반드시 실현되지도 않고 즉시 실현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를 종합해서 이런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동독의 경우 2원적 제도의 분리가 서독에서처럼 광범하게 추진되고 있는듯 하다.

이제, 서독에서 공장규모가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직업교육조직방법에 의해 세워진 교육의 무를 소속된 초급자들

에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기업인축이나 기업체 자체의 입장에서 점점 더 성숙되고 있다는 사실이 철저하게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실습위주의 이같은 보충교육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서독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교육시행장소(공장에서 교육을 받는 초급자 및 학습자들의 수(118,640)가 공업분야에서 시행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 초급자 및 학습자의 단계를 넘어 선 학생들 포함 - 의 수(258,239)에 대해 갖는 비율은 46%다.

수공업의 경우 이 분야의 비율은 약 16%다. (66,000 : 430,840)

서독에서는 공업분야와 수공업분야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전체 - 초급자(Lehrlinge), 학습자(Anlernlinge), 학생(Schuler) 등 포함 - 의 숫자에 대해 교육시행장소(공장)에서 교육받는 초급자 및 학습자 - 학생(Schuler) 제외 - 의 수가 갖는 비율은 약 26%이다.

d) 공장실습직업교육과 교육질서

442. 동·서 양독에서의 공장실습직업교육은 그들 각자의 양(量)적인 대수지표에 관해서 정확하게 비교되어야 한다.

공장실습직업교육에 있어 동판적인 교직에 의해 조정·수행된 교육내용에 관한 자세한 질(質)적인 비교는 현재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다.

공장실습교육은 우선 무엇보다도 직업교육의 중핵(中核)적

인 요소를 결정하는 직업교육의 조직방법에 크게 좌우된다.

직업교육조직방법 (Ordnungsmittel für Berufsausbildung)은 다시 말해서 직업형태, 직업교육계획, 직업적성요건 및 교육목적과 내용등을 검토·지도하는 교육질서 (ausbildung-sordnung)라고도 할 수 있다.

443. 직업교육을 현재의 조건이나 미래의 요구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전술의 소위 『교육질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새로운 손질과 교정이 필요하다.

서독에서는 교직에 대한 새로운 손질과 교정이 되고 있는데, 항목별로는 1949년에서 1969년 사이에 상공업분야에서 43%정도, 수공업분야에서 42%정도뿐이다.

1967년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전체 초급자들의 82%를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40개 교직에 관하여 상·공업분야에서는 교직의 농정도가 다듬어지고 수공업분야에서는 교직의 약 절반(상)정도가 다듬어졌다.

동독의 경우, 종래 시행되어 온 『기본적 직책』을 포함한 전체 직책에 대해 50년대부터 점차 새롭게 조정된 교육지원책이 1968년 이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되고 있다.

이제는, 1970년 5월 7일에 제정된 『교직제도에 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Systematik der Ausbildungsberufe)』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1971년에서 1975년까지의 장기계획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교직제도가 모색되고 있다.

<교육시행 장소>

444. 공장실습훈련의 성과는 명령수단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교육자의 능력과 교육실시 장소의 정돈상태 여하에 따라 더 많이 좌우된다.

그러나 교육자의 교육내용이나 성과를 동·서독으로 갈라서 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동독의 경우와는 달리 서독에서는 종래 당해분야의 회의소에서 파견된 교육자들이 그들의 능력의 총화나 자격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록에 있는, 『방법론상의 지시』를 참조할 것

공장에서 실습되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은 노동장소에서 수행되는 사실상 폐쇄된 훈련의 경우보다는 교육시행 공장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더 잘 향상될 수가 있다.

서독에서는 공업분야에서 실시된 최근의 ABB의 교육시행 공장 개선에 따라 1963년에는 105,229개의 훈련소와 9,050명의 교육자 및 총 2,069개에 달하는 단독기업의 교육시행 공장이 있었다. 그 이후의 새로운 통계 숫자는 나와 있지 않다.

집작하전대 1967년의 경우 공업분야에서의 단독기업의 교육시행 공장 숫자는 대략 2,300개쯤에 달했으리라고 믿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 해(1967)에는 공업분야에 38개에 달하는 비영리적인 교육시행 공장들이 있었다.

수공업의 경우 1966년에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100,000여명의 초심자와 실습생들이 보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비영

리적인 교육시행 공장과 수업장소들이 대략 1,400여개가 있었다.

동독에서는 1967년의 경우 교육시행 공장의 숫자가 2,650개였다. 교육시행공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초심자들의 숫자와 이들이 전체 피교육자들 숫자에 대해 갖는 비율을 동독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훈 령 기 간>

445. 서독에서는 훈련기간이 일반적으로 교직을 얻으려는 경우엔 3년내지 3년 6개월이 주어지고 실습을 받으려는 경우엔 2년내지 2년미만이 주어진다.

새로 제정된 직업훈련 법령에 따르면, 훈련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한정돼 있다.

동독에서는 훈련이 2년내지 2년 6개월정도 계속된다. 이처럼 동독에서 서독보다 평균적인 단기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동독이 서독의 경우보다 더 긴 장기간동안 행해지는 일반 의무교육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 동독이 여러가지 종류의 기술을 가르치는 예비 직업훈련을 일반 의무교육제도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

<나 제 비 율>

446. 서독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상공업 분야에서의 나제 비율이 1967년의 경우 15%였다. 이 나제 비율(15%)

은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비교적 일정하게 지속되고 있다.

수공업 회의소가 발표한 수공업 분야의 낙제 비율은 1967년의 경우 약 18%였다. 동독에서는 같은 해(1967)의 수공업 분야의 낙제 비율이 4.3%에 불과했다. (부록에 있는, 「방법론상의 지시」를 참조할 것)

서독에서는 이 낙제 비율의 재검사 내용과 변동상황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만일 검사에 응했다가 낙제했던 모든 사람들중의 3분의 2정도가 다시 검사를 받고 또 다시 이 중에서 3분의 2정도가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 상상한다면, 서독에서는 상공회의소와 수공업 회의소 분야의 새로 나타날 낙제 비율이 6.3% 정도로 낮아질 수 있으리라고 전망된다.

서독에서의 이 낙제 비율 6.3%는 -농업분야와 서비스 영업분야의 경우를 제외하면- 동독의 낙제 비율인 4.3%보다 약 반(2%)정도쯤만 더 높은 셈이 된다.

447. 동·서 양독 어디서나 오늘날 노동생활 전반에서 요청되는 가동성과 자유재량으로 신축자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광의성의 필요한 범위등을 감안할 때 의무교육인 실업보습학교 학생들 숫자에 비해 거기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제발 교육하는 일도 일반 교육제도의 고려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1967년 서독에서는 청소년노동자 청소년종업원 친족보조원등 직업학교에 나갈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훈련계약의 체결도 없이 실제 노동에 입한 청소년들의 숫자는 직업학교에 나가는 학생들 총 숫자 1,780,205명에 대해

제 7 장

262,823명으로서 14%에 달했으므로, 직업학교에 나간 학생들의 실제 숫자는 나가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총 숫자의 86%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동독에서는 직업학교에 나간 직업학교 학생들의 실제 숫자는 전체 청소년 총 숫자에 대해 1962년에는 87.9%이던 것이 1967년에는 98.2%로 상승하였고, 따라서 동독에서는 훈련계약 체결없이 실제 노동에 임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는 직업학교 학생 총 숫자의 3%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다.

결국 서독에서 직업학교에 다닐 의무를 전체 훈련계약의 체결도 없이 노동에 임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는 비율로 따져서 동독의 경우보다 실로 5배정도나 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독에서는 청소년에게 하나의 직업을 배울 의무를 법률로서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e) 개혁조항:

■ 단계적 교육과 ■ 기본적 직책 ■

448. 사회·경제적 발전은 오늘날 동·서독으로 하여금 그들 동·서 양국의 그때 그때의 직업교육 제도를 현대 산업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개선·적응시키며, 또 동시에 그것(동·서 양국의 그때 그때의 직업교육 제도)을 장래의 직업교육 시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술과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점점 더 심각하게 - 동·서 양국에 대해 - 강요하고 있다. 그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의 개혁노력이 진행중에 있고 또한 개혁조항이 시험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서독의 경우에는 특히 「단계적 교육 (Stufenausbildung)」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되고 있으며 동독의 경우에는 「기본적 직책 (Grundberuf)」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되고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개혁노력과 시도를 관철함에 있어서는 개혁시행 「범포」에 대한 비교·조절이 동원된 여러가지의 국가조직과 분할된 권한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449. 단계적 교육의 개념은 서독에서는 전혀 6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광범위하게 공식적으로 토의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그것도 특히 F.F. KruPP의 금속공을 위한 단계적 교육 기초계획(1962)과 전공을 위한 단계적교육 기초계획(1964) 및 선반공 절단공 대패수등 금속세공직을 위한 단계적 교육 기초계획(1965)등에 토대하여 -그 「단계적 교육」의 개념이 -토의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기초계획들은 「이개 (IG)」금속공업주식회사의 계획과도 같은 성격의 계획이며, 또한 이것은 1965년 4월 1일 이래 금속공업과 관련된 5개 종류의 직책들을 묶어서 한번에 여러지역 회의소에서 선발한 850명씩의 신입생들을 동원하여 실험했던 ABB의 기초적인 단계계획과도 유사한 계획이었다.

단계적 훈련을 위한 계획

< 단 계 계 획 >

서독에서는 오늘날 다음의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단계 계획의 출발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훈련되고 있는 여러가지 직책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갖은 기본사항들과 그에 대한 이해력이 피차 조화·조정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단계계획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계들이 정해진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숫자의 직책에 대해 공통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초교육은 하나의 기초단계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몇몇 직책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어느정도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본교육은 전문단계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특정된 단일 직책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특수교육은 고급단계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음 사항들은 단계계획들에 대해 공통하게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여러 단계의 직업교육은 완성된 단계에서는 해체된다.

둘째, 어떤 단계에서든지 직업교육의 종결은 청소년들의 서로 다른 재질과 성격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직책숙달이 결실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셋째, 특정단계의 교육을 완전 이수했는지의 여부를 알아

내는 단계완성시험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아래 단계의 교육을 완전 이수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은 항상 피교육자가 지닌 적응성 여하에 따라서는 시간을 연장해가면서 수행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단계계획 간에 오차와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여러가지 부분적인 「교육」을 비교·조화시킴에 있어서 정책들을 조직·형성하는 전체적인 모습이 약간씩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소위 그러한 「간격」 때문이며,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각개 정책의 양상에 대한 평면적인 주의집중과 훈련의 자격수준을 통한 수직적인 등급분류를 실제로 하든 안하든 간에, 직업교육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제반 단계계획들이 지닌 근본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450. 1967년 동독에서는 베개의 기본적 정책이 선정되었다. 여기서, 건축숙련공, 장선숙련공, 가공야금공 등이 베가지 정책이 문제되었다.

기본적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상의 이해력과 정책이론 및 정책수행상의 제반교육 내용 그리고(기본교육과 정책의 전문화에 대한) 기초교육 및 정책확대과정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교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교육내용을 새로이 설정하려는데서 발생한다. 교육내용의 이 같은 새로운 설정과정에서는 정책의 기본적인 교육이 가장

중시된다.

직책의 기본적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 첫째의 요소는 교육내용을 지배한다. 비중에 큰 교직은 모두가 다 이 교육내용을 지닌다.

그 둘째의 요소는 직책의 내용을 지배한다. 많은 교직들이 이 점에서 공통하다. 그 기본적 교육을 결정하는 세개의 요소는 그때 그때의 기본적 직책의 특수성격을 설명해주고 혼히는 특수성격의 명칭까지도 말해 준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직책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직책의 기본교육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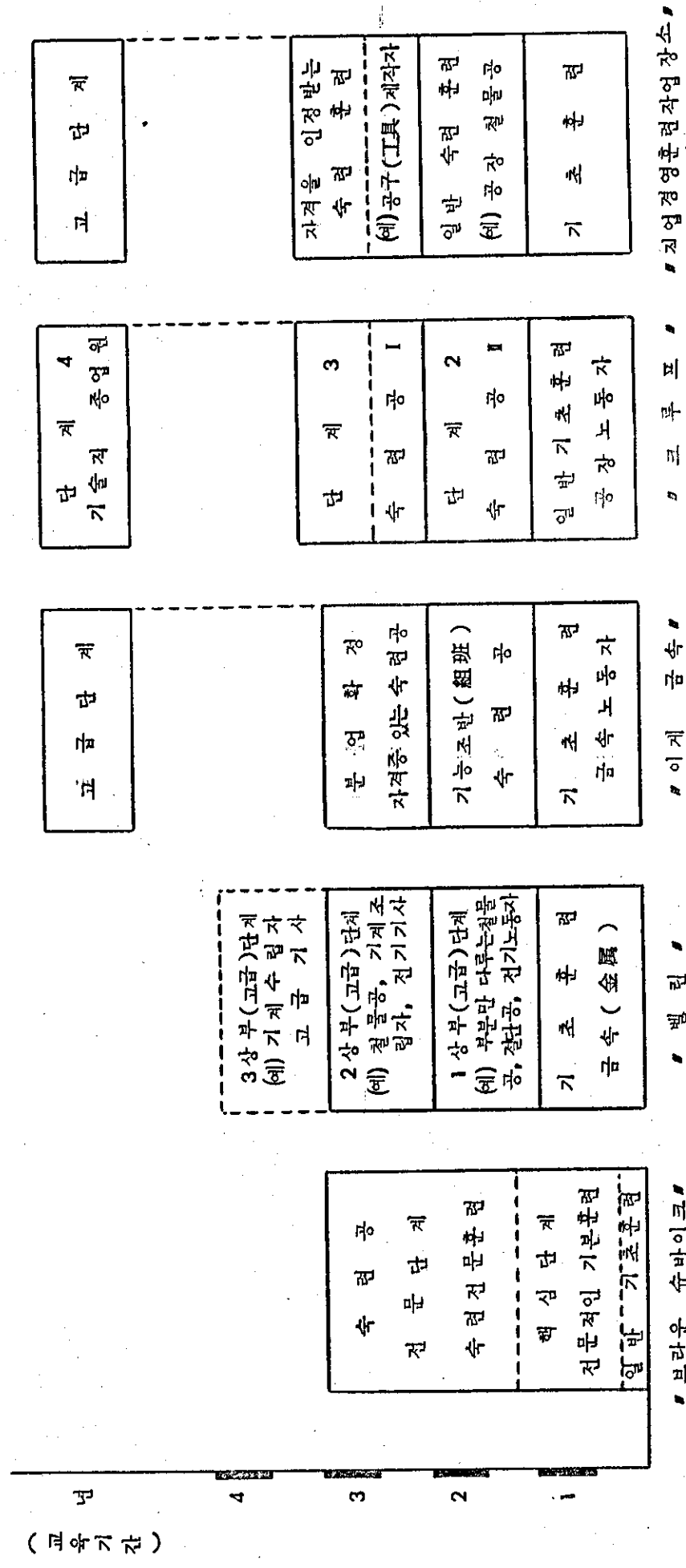
기본적 직책속에서 최소한 한가지 직책의 전문화가 이뤄진다. 물론 이것은, 직업교육의 충돌없는 자연스런 발전이 그 직책속에 보장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위에서 말한 「단계적 교육」과 「기본적 직책」이라는 두가지 개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독에서는 「기본적 직책」의 시행에 따라 서독에서의 저 「단계적 교육」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실제로 생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독에서 말하는 「단계적 교육」과의 차이점을 말하기로 한다면, 동독에서는 「기본적 직책」을 차츰 발전시킴에 있어서 장기적인 예정계획이 주된 역할을 한다. 이 장기적인 예정계획에 의해서, 단기적인 노동력 수요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반대로 서독의 경우 공장실습활동 단계인 1단계(기초단

Ⅷ장 도식 18 단계적 훈련을 위한 계획



브라운 슈바이크

벨린

이계 금속

크루프

자료출처: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tag, Berufsausbildung 1964, Schriftenreihe H.96, Bonn 1965.

THE UNIVERSITY OF CHICAGO

계)나 전문실습활동 단계인 2단계(전문단계)의 종결을 위해서 혹시 너무 빠른 시기에 성급하게 단계훈련 종결을 하는 것이나 아닌지 신경을 써야만 하는 「단계적 교육」에 있어서는, 실업고등학교에서의 10등급 교육과 기본적인 직책을 다루는 2년간의 실습과정을 끝마친 다음에야 비로써 영리활동은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직책을 익히는 사람에게는 실업고등학교에서의 10등급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이 전제조건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즉 실업고등학교에서 10등급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직책을 다루는 2년간의 실습과정마저 끝마치지 않고서는 영리행위(반대급부 있는 노동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독에서는, 실업고등학교의 8등급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8등급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나 학교 밖에서 실습만으로 터득해 올라온 전문노동자 정도로서만 취급되어 실습 직책의 부분적인 분야에 관해서만 더 교육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서독의 지방 중요학교나 특수(농·맹·아)학교를 나온, 나이가 많거나 활동이 기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단계적 훈련과정에서 얻는 앞의 두 단계(기초단계·전문단계 등, 고급단계를 제외한 단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단계적이라는 서독의 교육제도와의 차이점을 말하기로 한다면 동독이 채용하는 제도인 「기본적 직책」에 있어

서는, 단계가 인정되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격완성 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기엔 오히려 동독의 「기본적 직책」이란 제도는 직능의 확대 발전을 위한 직책간의 횡적인 연결과 결합을 전제로 한다. 또한, 「기본적 직책」의 이같은 횡적인 확대 발전은 숙련공시험을 받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노동법령집」의 규정내용에 따라 체결되는 공장활동의 자격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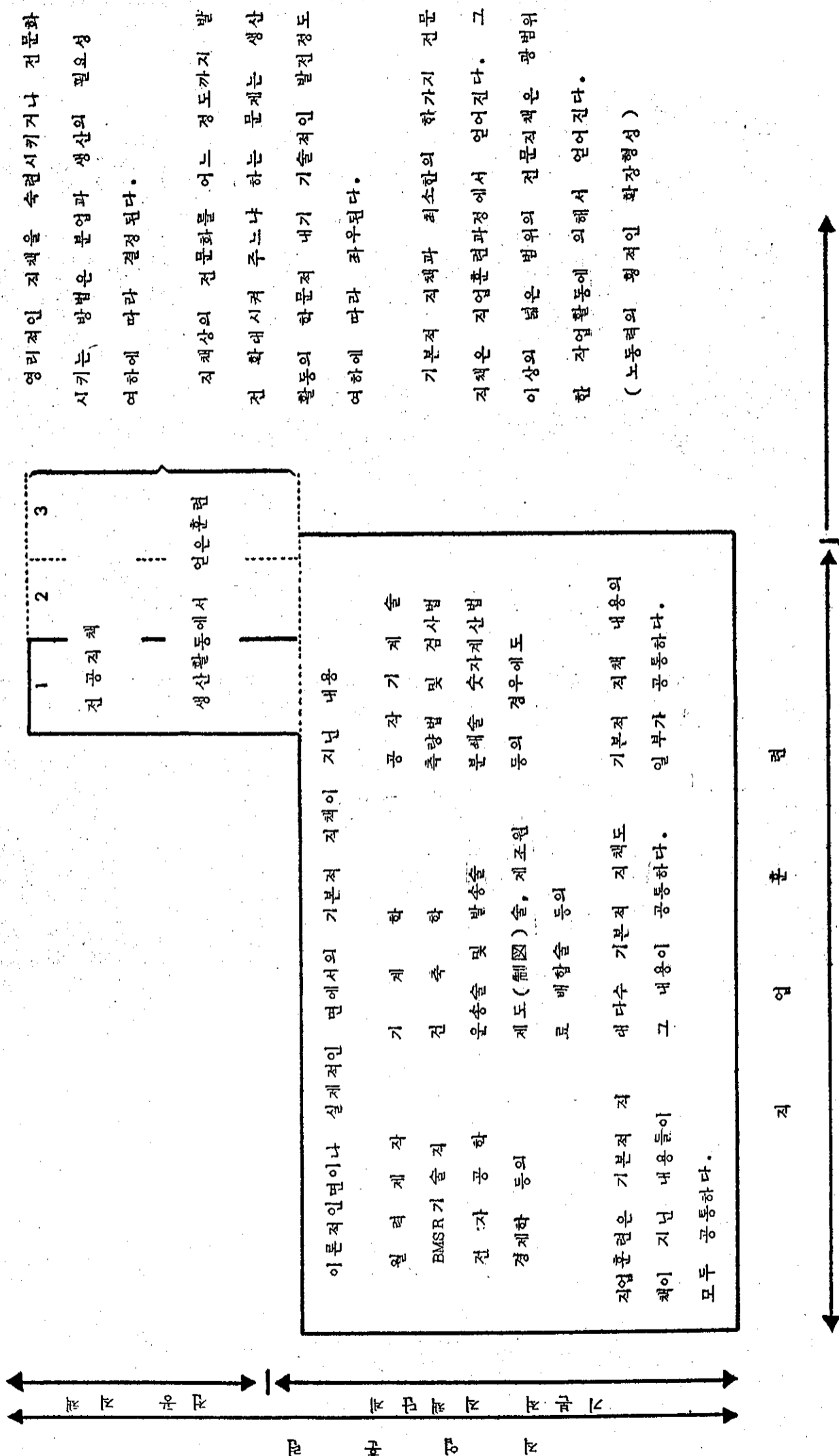
더우기 동독에서는 단계적·계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직업훈련에서만 제한되어 적용되고 있다

451. 동·서 양독에서 이같은 기본적 직책과 단계적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새로운 두가지 개념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단계적 훈련이라는 개념 등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일련의 근본적인 의문과 특히 기업경영상의 노동력 수요와 국가전체를 통한 종합경제적인 노동력 수요를 조절하는 문제가 서독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설명될 것이 요청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1969년에 제정된 직업교육 법령속에 수록된 「단계적 훈련」의 개념에 대한 법률해석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에서는 아직까지도 단계적 훈련의 의미가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구속력 있는 개념으로써 밝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직업교육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나 하는 개선 가능성에

도식 19 기본적 정책의 구조 도해



영리적인 정책을 숙련시키거나 전문화시키는 방법은 분업과 생산의 필요성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정책상의 전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발전 화해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 활동의 학문적 내기 기술적인 발전정도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

기본적 정책과 최소한의 학가지 전문 직책은 직업훈련과정에서 얻어진다. 그 이상의 넓은 범위의 전문직책은 광범위한 작업활동에 의해서 얻어진다. (노동력의 횡적인 확장형성)

자료출처: 직업훈련 특히 사회주의 직업훈련을 위한 국가의 기능-원래의 직업훈련 Berlin 1968. S. 26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단계적 교육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규정에 관한 문제가 앞서서 관심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동독은 1960년대 중반 이래로 직업교육제도 개설과 동독직업교육의 장기적인 예정계획에 대한 구속력(권위)있는 개념으로써 그들의 소위 「기본적 직책」의 의미를 명백히 설명해 왔다. 1969년에는 직업교육자의 지도하에 수행되는 21개 종류의 기본적 직책과 교육계획서가 마련되었다.

동독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기본적 직책을 교육받는 청소년들중의 9%가 이미 교육을 마쳤고 1970년 말까지는 이 부분(9%)이 35%로 늘어나야 하고 또 장기적 예정계획기간에 있는 1980년까지는 75%로 상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교육 제도>

서독에는 오늘날 「직물정제공」만이 단계교육 제도로서 실재하고 있는데, 이것 이것(직물정제공)은 1969년 7월에 공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단계교육 제도로서 국가의 승인을 받은바 있다.

국가의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업교육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단계적 교육이 서독의 몇몇 대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시험되거나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계로 해서 - 전술한 ABB의 실험에 동원된 850명의 초급생들 경우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단

계적 훈련에 관해서는 적절한 보고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단계적 훈련에 동원된 직업교육과정 초급생들의 저 숫자 850명이라는 것은 현재 서독의 직업교육의 전체상황으로 볼때 극히 미미한 숫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숫자가 더욱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일련의 단계교육 조직들이 곧 실시되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서 양독에서는 오늘날 그 「기본적 직책」 또는 「단계적 교육」이라는 개혁조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다. 종래에 없던 새로운 직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것이 공장일 경우에는 훌륭한 시설환경이 요청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는 필수적인 문제로 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교육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필요에 부합하는 잘 정리된 실습시행장소와 교육시행공장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상세한 시간 및 자료계획 내지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빈틈없는 시간배정 등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현대화된 교육방법등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훌륭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만, 단계적 교육의 검토나 기본적 직책의 시행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 타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전문학교 및 대학교육

a) 전문학교 교육

교육제도속에서 전문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452. 서독에서는 전문학교는 실업보습학교 교육의무를 마친자로서 만 18세가 넘은 다음에 입학되어 6개월내지 3년간의 「플 코스」교육을 받게 되는 학교들 또는 최소한 600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단기학교나 공업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등을 지칭한다. (1970년 서독 통계연감 S. 70 참조)

동독에서는 최소한 2년간의 일관된 「플 코스」교육기간을 갖는 학교는 모두 전문학교로 간주된다. (1966년 동독 통계연감 S. 458 참조)

서독에서는 -기술학교 경우의 예외는 있지만- 전문학교에 입학하려면 중학교 졸업후에 2년간의 직책실습활동까지를 마쳐두었을 것이 요청된다.

동독에서는 여러가지 기술을 10년간 광범하게 가르치는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숙련공 시험을 거쳐 1년간의 현장실습활동까지를 마쳐 둘 것이 요청된다. 물론 이것은 동독의 전문학교 입학자격 조건이다.

서독에서는 학생들이 저런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전문학교에 입학하지만 동독에서는 이처럼 어느정도 나이도 들고 일정수준의 상당한(?) 자격까지를 갖춘 후에서야 전문학교에 진학한다. 아 물론 한가지 공통한 점이 있다면 동·서양독 어느쪽에서도 전문학교는-약간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정도의 직능을 지녔다는 자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시행한다는 이 점이다.

전문학교까지를 졸업한 사람들은 경영직에서나 관리직에서나 중간 간부정도의 직위를 맡게 된다. 자격 수준의 인정은 동·서 양독에서 공히 연구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좌우된다.

서독에서는 3년간의 전문학교과정을 마친 다음에 그것을 결산하는 실습시험 성적에 따라서 전문학교(대학)졸업이 인정된다. 동독에서는 이러한 연구과정을 끝냄과 동시에 여러가지 과목에 걸친 일반적인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의 졸업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물론 이같은 대학은 사실상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문학교 교육의 요점>

453. 동·서 양독에서 공히 공학과 교육학·사회교육학·농림경제학·일반경제학 등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전문학교들이 수많은 학생들을 갖고 있으며, 이들 전문분야의 학생 숫자 분포상황은 위에 열거한 각 학과의 열거 순위대로다.

1968년의 경우 그에 대해 적절한 조정이 이뤄져야 할 공학분야의 학생숫자는 서독이 전체 전문학생의 39.2%였고 동독은 전체 전문학생의 41%였다. (위의 공학속에 공업경제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54. 서독에는 1968년에 3170개의 전문학교가 있었다. 학생숫자와 관련시켜서 말할 때 전문학교의 숫자는 1960년에서 1968년에 이르기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학교는 농민층 자치단체 종교단체 조합 사설수화물운반인 등에 의해 유지된다. 이같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많은 숫자의 전문학교가 새로이 창설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1968년 동독에는 189개의 전문학교가 있었으나 1960년에는 256개가 있었으므로 그 숫자가 계속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숫자는 1964년 이후 점점 증가하였다.

양독간의 전문학교 숫자상에 나타난 큰 차이는 학교의 크기 곧 학교가 지닌 평균학생 숫자에서 잘 나타난다.

1968년 서독의 전문학교 평균 학생숫자는 중점적 기술 교육을 하지 않는 일반 전문학교의 경우에는 51명이었고,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207명이었다. 동독에서는 같은 해 (1968)의 전문학교 평균학생 숫자가 461명이었다. (주26)

<전문학교 학생>

455. 서독에서는 전문학생 숫자가 1960년과 1968년 사이에 20.3% 상승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학교 학생이 이미 그것을 거치나온 소위 성인그룹(18~30세)도 전문학교에 상당수 입학하였다. 그러나 이들 성인그룹의 같은 기간(1960~1968)의 숫자 상승률은 0.8%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부분의 교육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교육기간이 장기화하고 교육수준이 고도화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1964년과 1968년사이의 상승율만을 끊어서 말한다면 전문학교 학생숫자 상승율은 11.8%였다.

동독에서는 1960년에서 1968년 사이에 전문학생 숫자가

11.6% 증가 되었다.

동독에서는 전문학교 제도의 확장이 1965년에 일어났다. 1964년에서 1969년 사이에 전문학생 숫자가 19.8%나 늘어났다.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동독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기술을 가르치는 실업고등학교의 높은 등급 지도교사들도 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다. 1968년의 경우 8616명의 훈련을 받았다.

동독에서는 1968년의 경우 서독에 비해 댓가(代価)가 너무 적어서 2년과정의 전문학생 숫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서독에서는 모든 훈련참가자들이 6개월 내지 1년간에 완성되는 교육과정을 거친다.

개관일람 (概觀一覽)

전문학생 (주 28)

	1960	1964	1968	1969
	서독의 경우			
전문학생 총수	183,018	197,144	220,132	.
여성전문학생	65,444	49,415	86,673	.
백분비율	35.7	35.2	39.4	.
	동독의 경우			
전문학생 총수	126,000	110,900	140,600	151,000
여성전문학생	36,000	31,900	53,400	67,800
백분비율	28.6	28.8	41.7	44.9

개 관 일 램 54

주민(住民)에 대한 전문학생의 비율

	1960	1968
14 ~ 45세까지의 주민 전문학생 총수 백분비율	서독의 경우 19,926,000 183,018 0.9	22,232,400 220,132 1.0
14 ~ 45세까지의 주민 전문학생 총수 백분비율	동독의 경우 5,753,411 126,000 2.2	5,856,113 140,600 2.4

456. 여성의 전문학교 진출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1964년에서 1969년 사이에는 서독여성의 전문학교 진출보다는 동독여성의 전문학교 진출이 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동독에서는 남성들이 상류계급사람들에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동독에서 전문학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실업고등학교 저학년담당 지도교사들이 지위가 높은 유력한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교육>

457. 서독에서는 일반적으로 장관이나 상원의원이 독일인의 교육과 문화를 위하여 전문학교 교육상황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동독에서는 전문학교들이 그들의 전문교육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제도와 기관에 소속된다.

농업전문학교는 지방 농업협의회에 소속되고 상업전문학교는 상업·후생성(商業·厚生省)이나 또는 대외경제성(對外經濟省)에 소속되며, 고등기술학교는 고등전문학교성에 소속된다.

서독과 동독에서는 하나의 전문학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몇몇 전문교육을 전공시킨다. 동독에서는 특히 서독의 경우에서 보다는 전문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래서 동독에는 농업학교내에 금융경제과 식물보호과 원예과 종자배양과 상품식물과 농업기술과 개량과 등을 위한 전공과정이 있다.

동독의 경우 각종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학교에는 캐스취급기술자 고무 취급기술자 프라스틱 취급기술자 기본 화학기술자와 기계 취급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전문학교들이 있다. 동시에 서독에서 처럼 기계조립과 전자공학기술을 다루는 전문학교들이 많이 있다.

이같은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들은 그 학교의 교육내용이 지향하는 각개 특정분야의 산업부문이 높이 발전되어 있는 특수지역들을 자체내에 소속시키고 있다.

459. 동서 양독에서 시행되는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실태를 상세히 나타내주는 대비교량표(對比較量表)를 볼 것 같으면 현재 그들 동서 양독의 전문학교 학생들은 특정한 전문분야교육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독에는, 1966년 현재, 대부분이 서로 같은 고등기술학교에서 19개 종류에 달하는 특정한 분야의 약간씩 서로 다른 전공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독의 경우는 어떠한고 하면, 1968년 현재 동독에는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학교에서 35개 종류이나 되는 전문분야의 기술교육을 시행하였다.

단지 동서독에서 이런 점이 서로 다른 데가 있다면, 그것은 동독에서는 특정 전문교육 내용간의 차이가 서독의 경우에서 보다 더 크다는 바로 이 점일 것이다.

1968년의 경우 동서 양독에서는 각종 분야의 모든 전문학생들의 반(半)수 이상이 기계조립기술전문교육과 전자공학기술전문교육(도식 A 121참조) 그리고 건축양식기술전문교육등을 받았다.

이 분야 전문교육의 양상과 경향은 동독에서 보다 서독에서 더 두드러진 바 있다.

동독에서는 위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1964년 이래로 동독의 공업경제를 대폭 발전시켰고, 그 결과 이 분야의 전문교육이 1968년에는 모든 전문교육 분야에서 제 2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같은 성장의 원인을 우리는 1963년에 도입한 NÖS의 도입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실제사회에서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졸업하기 전에 전문학교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특정한 전문교육을 받던 때에 있어서의 전공분야별 전문학생 숫자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도식 A 122)

이러한 경향은 동독에서나 서독에서나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460. 서독에서는 제반 연구과정에 대한 표현 곧 각개 연구과정의 명칭이 피차 동일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각 연구과정마다 서로 다른 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미용(美容)교습생들도 3년간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인정하는 실습년한을 마치기만 하면 전문학교 학생내지 일반 사회노동자들의 경우와 똑같이 취급된다. 3년교육과정에서는 어디서나 연구내용이 교육기간의 시초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여러가지 내용을 다루고 교육기간이 끝날때 쯤 가서는 중점적인 교육을 받도록 공통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어나 문학 또는 외국어와 사회생활과목 등 일반적으로 광범하게 교육되는 전문분야들과 경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적인 전문분야들은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 중간시험을 마칩으로써 종결된다.

동독에서는 전문학교 교육기간이 혼히는 3년간 계속된다.

동독의 교육제도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기본적인 훈련과 사람에 따라 달리 부여되는 선택된 전문교육으로서의 특수교육. 이 두개의 교육을 동시에 지낸다.

기본적 교육을 위한 교육계획은 전문학교 및 대학교육성 장관에 의해서 수립된다. 이것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결정권 있는 전문적인 국가기관에 의하여 세워지는 단계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 교육과목으로는 수학 자연과학 경제학 「맑스」 「레닌」주의 독일어 「스포츠」등이 있다.

실습훈련은 특수교육에 속한다.

실습훈련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실습훈련의 시행이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의 시행은 마지막 연구단계의 종결속에서 끝내 이뤄지고 완성되어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공업경제를 교육하는 모든 전문학교들에 대해 이미 구속력을 갖고 있다. 자연 과학 분야와 공학 분야를 다루는 7개의 전문학교에서는 현재 선정된 공장에서 6개월간의 실습으로 연구를 끝맺게 하는 제도가 시험되고 있다.

공장에서 30주간(6개월) 활동하는 동안에 기술제공계약 체결에 의한 노동이 완료된다. 다른 전문교육 분야 예컨대 교육학이나 농업경제 등의 전문 교육분야의 연구과정은 그에 적합한 실습제도를 갖는다.

서독의 경우 자연과학 공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는 연구과정이 연구과정에서의 실습부족 때문에 동독의 경우와 같지 않다.

461. 교육주 무당국이 확보한 교원과 전문학교 학생간의 숫자상 비율은 1960년 현재 서독이 1 : 19.2이고 동독이 1 : 24.9였다.

동독의 경우에는 전문학생의 3분의 1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교원 또는 대학강사의 채용조건 및 훈련경력 요건 등은 동·서 양독이 다 같다. 서독에서는 교원(Lehrer Dozenten)은 자기 전공과목의 직업교육과정과 그 후에 따르는 당해 분야의 실습과정을 마쳤어야 함은 물론이요 완전한 전문적인 대학과정 및 대학 또는 종합대학교 교원이 되기 위한 8학기연구과정내지 1~2년간의 조수과정마저를 완전히 필했어야만 한다.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의 교육학적인 훈련에 대해서 보다는 그들 교원 각자가 지니는 전문지식의 수련과 자격수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두어진다.

동독에서는 전문학교 교원은 자기 전공분야의 완전한 연구와 자기가 교육에 임할 전공분야에서의 1년내지 2년간의 실제 교육실습(助手)과정과 대학교원자격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충분한 교육훈련 과정을 거처온 완전한 교수능력을 지닌 교원은 동·서 양독 어디서나 부족한 실정이다.

<변화 발전 경향>

462. 서독에서는 전문학교제도가 3년제 교육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상이한 성격을 지니는 전문학교제도를 자체내에 포함한다.

대학교육제도의 테두리속에 어떤 변형된 전문학교가 약간 상이한 성격을 띄고 나타난다. 흔히 전문학교제도는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기능이란 점에서는 일반대학제도와 비슷한

점을 갖고 있지마는 실제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경우에는 이들 전문학교 제도는 일반 대학제도에 비해 약간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볼수가 있다. (北 「라인」강 지대와 「베스트팔렌」지역의 대학교육 법령 참조)

이와는 달리 「베르린」의 전문대학(Fachhochschule) 법령과 대학(Hochschule) 총체계획에 의하면, 「바덴 뷔르템베르크」지방에서는 전문대학(Fachhochschule)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문학교(Fachschule)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교입학을 위해서 계획되는 것과는 마찬가지로 그에 입학하는 지망자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입학조건으로 단기 6개학기의 연구과정을 제공한다.

중점적으로 높은 수준에까지 교육되는 이 전문대학 제도는 궁극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대학제도 일반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동독에서는 전자장치에 의한 제산작업과 화학공업 기계조립 및 건축기재학 등을 전공한 사람의 숫자와 능력이 해마다 점점 더 부족해져서, 그 결과 1969년 9월에는 이 분야 기술자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이 10개나 설립되었다.

이 새로운 연구과정은 자격획득을 위하여 일반대학 졸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흔히 보는 보통의 전문공과대학과는 다른 부류의 것이 된다. (2절 b 참조).

동독에서는 연구과정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변경을 위한 두가지 주안점이 있다.

6개월의 실습과제를 갖은 후에 7개의 전문학교에서 시행

되는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년만에 끝나는 연구과정으로서의 특수전공교육이 선정된 공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기본되는 이론적 이해력을 얻은 후 실습활동을 하게 되는 해에는, 미리 예정되고 준비되었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활동이 공장에서 곧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자가 지닌 숙달된 노동활동은 교육받은 한가지 문제의 직능만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동독에서는 이 기본적 연구가 끝나면 이어서 대화 기술 보고기술 지형재단술 수리통계학 등에 관해 계속해서 연구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되어 있다.

b) 대학 교육

b) 대학 입학요건

463. 동독과 서독에서는 공히 대학의 입학요건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여러가지 제도를 다 거쳐서 「마스타」 할 것을 사전에 서약하는 것이다.

즉 대학 입학생에 대해서는 중도에 자퇴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대학입학의 전제조건은 서독에서는 「컴내지움」(8-9년제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일 것을 요청하며 동독에서는 EOS를 졸업한 사람일 것을 요구한다.

464. 서독에는 대학으로서 종합대학교 공과대학 철학과 및 종교학과 단과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등이 있다. 서독의 경우 1960년에서 1968년까지의 대학 총 숫자는 전공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1960	1968
종합대학교와 공과대학	31	39
철학과 및 종교과 단과대학 ²	17	16
사범학교 ³	77	113
예술대학·체육대학 ⁴	25	28

1. 『독일의 대학일람』

Bonn 1960/1961 S. 53ff

2. 『서독 통계연감』 1961. S. 1061

1969. S. 80r

3. 『사범대학교 교육제도』 『서독 통계연감』

1962. S. 109:1970. S. 70f

4. 『서독 통계연감』 1961. S. 106

1969. S. 81

이 기간(1960 ~ 1969)에는 대학생 숫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대학교육과정에 전문교육 과목이 차고 넘칠 정도였다.

동독에서는 1960년에서 1968년 사이에 대학이 신설된 일이 없다. 이때의 단과대학 숫자는 44개였다.

1969년에는 10개가 늘어나 54개로 되었다.

증설된 대학 10개는 전술한 바 처럼 대학수준의 기술 연구과정이 부여되는 공과대학이었다.

465.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의 외국인유학생을 제외한 대학생 숫자의 증가율은 서독이 49.3%이고 동독이 20.7%였다. (도식 A 123 참조)

서독에서의 대학생 숫자의 증가는 매학년도마다 증가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 증가 결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반면 여기에는 동독에선 비교적 적게 요청되는 연구기간의 연장의 결과라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1968년에는 동서 양독에서 대학과정 여성학생 숫자가 공히 처음으로 전체 대학생 숫자의 30% 이상으로 되었다. 이 숫자(30%) 속에는 서독의 경우 초급학교 여선생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독의 경우 초급학교 여선생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독에서는 대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숫자가 점차 어느정도 광범하게 늘어나고 있다. (도식 A 123 참조) 여성 부분의 이 발전은 대학교육과정을 관리하는 당국의 제반 원칙과 조처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서독에서는 1968년에서 1969년 사이에 대학교육을 받는 여성의 숫자가 전전도 퇴보도 없었다.

18세에서 45세에 이르는 성년주민 1,000명중의 대학생 숫자는 1960년에서 1968년까지 다음과 같

이 증가되었다. 서독에서는 11명이 14명으로 증가되었고 동독에서는 18명이 17명으로 감소되었다.

동독의 대학생층을 형성하는 이 성인계층(18 ~ 45세)을 통한 대학제도의 성장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대학에의 입학상태가 서독에서 보다는 동독에서 더 양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이나 14보다는 18이나 17이란 숫자가 보편적 다수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 문 교 육>

466. 서독의 경우에는 일반대학 교육과정의 전문화현상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새로 설립된 「하노퍼」의과대학교와 「뤼베크」의과대학교만은 중점적인 전공노력을 하고 있다.

「빌레펠트」 「보쿰」 「콘스탄츠」 및 「레겐스부르크」등지에 신설된 학교들은 여러가지 방향의 전공훈련을 한다.

지금까지 소수의 몇몇 전공훈련단을 제한해서 수행해 온 「기센」이나 「민하임」같은 단과대학들은 사회현실상 필요한 전공교육 과목들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그들은 오늘날 종합대학교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동독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된 공과대학에 있어서나 종래의 일반 단과대학에 있어서 단과대학 교육의 전문화가 계속 발전 또는 구체화되고 있다. 전공과목 설치 여부는 당해 단과대학의 현실적인 입장과 상태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동독의 대학교제도개선을 위한 「모델케이스」단과대학이었던 「예나」대학교에서는 1968년에 화학 물리 수학 등의 학과

가 교육되었다. 모든 연구과정의 4분의 3정도가 기계제작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법학 및 농학 등의 분과(分科)는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옮겨져 있다.

「막테부르크」공과대학에서는 1968년이래 주무(主務)전문교육성의 결정에 따라 중기계제조와 건축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일에만 집중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VVB와 협동쌍무제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속에는 작업중인 「막테부르크」공과대학과 광범하게 일반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평상의 실업고등학교간의 교육실적관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연구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었다.

「막테부르크」공과대학의 교육능력은 중기계제작과 건축공업 분야의 후진양성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오늘날 「막테부르크」는 이 분야 공업활동의 중심지로 되어 있다.

<대학교육과정의 연구의 주요점>

467. 서독의 경우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따져보면 교육학 의학 농학내지 역사철학 국가학 법학등이 우대를 받고 있다. (도식 A 124참조)공학분야의 연구는 1960년 13.4%이던 것이 1968년에는 9.8%로 떨어졌다. (도식 A 124참조)

동독에서는 공학분야의 연구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 1960년에는 23.3%였고 1969년에는 29.7%였다.
(전체 대학생숫자 비)

동독의 경우 우대받는 전문분야는 공학 교육학 경제학 내지 의학 농학 순이다. (도식 A 125참조)

대학생들에 대해서 미래의 초급단계지도교원 희망 숫자를 따져보면, 전체 대학생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교육학 연구에 몰려있다. (서독은 1968년에 32.4% 동독은 32.8%)

<대학 정원관계>

468. 서독에서는 대학생들이 각 전공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 대체로 대학생들 자신의 연구희망 분야와 합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정원제가 실시되는 자연과학내지 의학 분야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연구과정 도중에 탈락되는 일이 약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독에서는 각 전공분야의 대학 정원의 숫자가 장기적인 계획과 이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수립된 노동력 수요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

동독에서는 연구분야 선택의 자유가 거의 제한되어 있다.

1967년 서독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한 대학졸업생들 숫자가 전체 대학 졸업생들 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도식 A 125 참조)

의학 농학 및 경제학 분야의 졸업생들 숫자는 서독의 전체 대학졸업자중 두번째 또는 세번째로 많은 부분임이 나타났다.

1967년의 경우 동독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이 역시 서독에서처럼 전체 대학졸업생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이렀다. 의학, 농학, 공학등의 분야를 전공한 졸업자들은 2위 또는 3위로 되었다.

동독에서 대학졸업생들에게 장차 실업고등학교 저급학년 지도교사가 될 희망을 지닌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교육학을 맡겠다는 부분이 펍 높고 또 이같은 경향은 어느정도 서독의 경우와 합치하고 있다. (1967년 서독은 41.9%, 동독은 43.4%)

동·서 양독간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공학분야 대학졸업생 숫자에 관한 차이인 것이다.

공학 분야에서는 동·서 양독간에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서독에서는 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 숫자가 1962년에는 전체 졸업자중에 10.5%였었는데 그 후 5년이 지난 1967년에는 9.3%로 감소되었다. 이에 반해 동독에서는 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 숫자가 1962년에는 전체 졸업자중에 14.9%였었는데 1967년에는 20.4%로 대폭 증가했던 것이다. (도식 A 125 참조)

<변화 발전 경향>

469. 서독의 경우 대학교육제도의 개선은 수용능력의 현저한 확대·증가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61년이래 일반대학들이 계속 신설되어 왔다.

전문학교(Fachschule)를 보다 높은 수준의 까다로운 입학조건을 갖는 전문대학(FachHochschule)로 발전시키는 일들이 장차 또는 이미 법률적으로 보장될 예정이거나 또는 보장되어 있다.

대학교육 제도의 새로운 체계를 광범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의 단과대학들을 결합시키는 종합대학교의 제도가 있으며 이것은 또한 연방정부(서독정부)의 공공연한 목표로 되어 있다.

서독의 경우 일반 단과대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핵심되는 방법은 연구과정과 훈련과정을 새로이 개편 구성하는 일이다. 개편된 연구과정과 훈련과정은 모든 분야의 단과대학 제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각 단과대학의 종합대학교에로의 합성작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의 연구과정은 연구분야별로 분류되고 연구분야별로 각각의 모습을 지니는 종합대학교로 발전됨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각 분야별 연구과정을 종합대학교로 승격통합 발전시키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최초로 단과대학 제도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통일적인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적당한 연구기간(연구기간 단축)과 높은 결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학제도의 내부구조에 관해서 말한다면, 대학 조직속에 참여한 모든 대학 소속인들의 조직기능적이고 질서정연한 협조가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치될 수 있는 조직형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단은 동등에서처럼 해체되어 비슷한 학과별로 형성되는 전문분야에 따라 재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훌륭하고 조직적인 연구와 훌륭한 교원과 대학 능률의 향상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의 대학제도 개선>

동독에서는 대학으로 하여금 많은 연구를 하고 훌륭한 교원을 수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기관의 관장하에 있다. 이런 문제는 정확히 말해서 1975년에 끝나는 대학제도개선 3차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몇몇 두드러진 공업분야에 대한 집중적 훈련과 연구는 대학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되는 점이다.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가 관심의 대상으로 된다. 대학생(수준)기술자의 연구과정을 실시하므로써 공업학교를 공과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린 「예나」대학과 「막테부르크」대학 같은 동독의 「모델케이스」대학들이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대학생(수준)기술자는 특정 공장에서 6개월간 실습하게 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약 3년 6개월정도의 연구기간을 갖는 셈이다. (졸업후 정식 기사로 인정되는 공학사로 되려면 졸업후의 1년 6개월의 실습기간을 합해 5년의 연구기간이 소요된다.) 완성 검사는 공과대학이 주관한다.

대학생(수준)기술자는 공장에서 자기 활동분야의 노동을 하는 1년 6개월간의 실습활동까지를 마친 다음에서야 비로서 정식 공학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학생(수준)기술자들의 능력 성향에 대한 대학 당국으로 부터의 추천·소개 그들 대학생(수준)기술자들에게 위임되는 연구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응용을 가능케 한다.

대학교육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더욱 더 중시해야 할

점은 면밀하게 수립된 새로운 기본연구계획과 전문연구계획 및 조직적인 계획자료 필름 테리비존 등 새로운 매개체의 동원을 통해서 종래의 훈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바로 이 점이다.

이에 한가지를 더 첨가해 말한다면 연구에 입하는 대학생들은 자기들이 배운 학문적인 이해력을 적절하게 잘 실천에 옮길 수 있기 위해서, 부과되는 제반 실습과제를 더 많이 숙달하고 더 잘 완수해야 할 것이다.

대학 조직의 개선과 변경은 더 광범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제도를 잘 정리하는 문제는 위에 말한 문제점들에도 좌우되지만 사실상 밀접하게 상호관련된 학문들의 훈련을 종합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신설학과들에 대해서 집약적인 훈련을 시키는 일 등에도 좌우된다.

c) 통신교육과 통신과정

470. 서독에서는 100개이상의 통신학교에서 통신교육이 허가 실시된다.

통신학생의 숫자는 200,000명에서 300,000명정도로 추산되며 이중에서 13%내지 14%가 여성 통신학생이다.

(주 37)

통신학생들은 자신의 직능상의 자격을 높이려 하거나 (그들의 80%가 이에 해당된다.) 더 높은 상급학교의 졸업 자격을 획득하고자 한다. (그들의 4%가 이에 해당된다.)

(주 38)

직업교육을 하는 통신교육에서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상업전문교육과 기술전문교육 분야의 교과가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따라서 통신교육에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다.

서독에서는 1967년 이래로 통신교육의 가치와 의의가 더욱 크게 인정되었다. 서독정부는 통신학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보장해 주며 졸업증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

통신교육은 통신교육본부와 직업교육실태 조사연구기구 및 노동청등에 의해서 촉진·발전되고 있다.

서독의 경우「大学」수준의 교육기관에서는 (도) 처음으로 통신교육수단을 통하여 특별히 광범하게 보충교육시키는 지도준비를 하려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는 곧 중앙조합에서 광범하게 계획되는 통신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동독의 경우 통신교육 또는 통신연구과정이라는 것은 오늘날 직접 연구과정 및 야간연구과정과 함께, 대학 및 전문학교의 경우와 같은 자격이 인정되는 세가지 형태의 연구과정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같은 통신교육이 1950년에는 대학에서 수행되었고 1951년에는 전문학교에서 수행되었다.

통신과정 대학생 숫자는 전체 대학생의 25%에 달한다. 통신과정 여학생 숫자는 16.4%인데 이것은 야간연구과정의 경우보다는 높고 직접연구과정의 경우보다는 낮다.

통신과정 대학생으로서 경제학 철학 역사학 국가학 법학 문화사 예술·문학 체육학 교육학기본연구 등에 전공하는 대학생 숫자가 다른 학문 분야에 전공하는 대학생 숫자보다

비교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다. 교육학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통신과정 대학생으로서 위에 말한 학문분야를 공부하는 숫자가 직접연구과정 대학生の 경우보다 높다.

1969년에는 통신과정 대학생들이 전체 대학졸업생의 21.9%에 달했다.

전문학교에서의 통신과정 대학생들의 숫자가 일반대학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1969년의 경우 전문학교 통신대학생 숫자는 59,400 명으로서 전체 전문학생의 39.3%였다. 이 중에서 42.8%가 통신과정 여학생이었다.

전문학교에서의 통신과정 대학생들의 이 숫자는 역시 야간연구과정의 경우보다는 많고 직접연구과정의 경우보다는 낮다. 문화사, 체육학, 의학, 농학, 경제학, 내지, 문헌학, 도서관학 등의 분야에서는 통신연구과정 대학생 숫자가 당해분야의 직접연구과정 대학생 숫자를 능가한다.

동독은 서독에 비해 통신연구과정 분야에서는 그 계획과 실천이 20년이나 앞서 있다. 동독은 이 통신과정을 통해 서 높은 수준의 부수적인 전문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3. 부 록

자료출처(原典)

위에서 지금까지 인용된 상당량의 「메이타」와 숫자들은 그것이 동·서독에서 내어놓은 각개 경우의 통계연감과 1966 ~ 1968년 동독교육제도에 관한 통계연감에 기초한 것이 아닌것들인 경우에는, 그것이 모두 다음에 열거하는 원전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

(Arbeitsstelle für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1964)와 공업분야의 교육시행장소(Die industriellen Lehrwerkstätten 1964)

(Anwertung einer Lehrwerkstattenerhebung im Bereich der Industrie-und Handelskammern des Bundesgebietes und West-Berlins Bielefeld 1966)

(Arbeitsstelle für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Neustrukturierung der berufliche bildung, Berlin-Köln -Frankfurt 1969)

(Battelle-Institut, Untersuchung zur Klärung der methodischen Möglichkeit einer quantitativen und qualitativen Vorausschau auf dem Arbeitsmarkt in der Bundesrepublik),

(Bericht für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rankfurt a.M. 1968 und 1969)

(Berufliche Ausbildung wissenschaftlich leiten in: Die Wirtschaft, 1970, Heft 23)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Lehrlinge und Anlernling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68, in: Arbeits- und sozialstatistische Mitteilungen, Beilage zu Heft 11, 1969)

(Deutscher Bildungsrat, Statistiken zur Information der Mitglieder der Bildungskommission des Deutschen Bildungsrates, Stand: September 1969)

(Deutscher Bildungsrat, Empfehlungen der Bildungskommission, Strukturplan für das Bildungswesen, 1970)

(Deutscher Bundestag, 5. Wahlperiode, Drucksache V/1422 Bonn 1967)

(Deutscher Bundestag, 5. Wahlperiode, Drucksache V/4609 Bonn 1969)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tag, Berufsausbildung 1968/1969, Schriftenreihe, Heft 117, Bonn 1969)

(H. Fenger, Betriebsberufs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Jahrbuch für Wirtschafts- und Sozialpädagogik, Bd. 6 (1969)

(H. Holfeld, Die Erfahrungen aus der Einführung der ersten Grundberufe im neuen Lehrjahr nutzen, in: Berufsbildung, 23. Jahrgang, 1969, Heft 7/8)

(A. Knauer, Bildungsökonomische Probleme der Berufsbildung, in: A. Knauer, H. Maier, W. Wolter, Bildungsökonomie, Berlin 1967)

(A. Knauer, Die Dynamik des Inhalts der Ausbildungsberufe der sozialistischen Berufsausbildung, in: Beru-

rsbildung, 23. Jg., 1969, Heft 7/8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Kulturpolitik der Länder, 1967 bis 1968, Bonn 1969)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A, Reihe 10, Be-
rufsbildende Schulen, Stuttgart und Mainz 1966)

(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 Die Beruf-
sausbildung im Handwerk, Schriftenreihe, Heft 9, Bonn
1969)

방법론상의 언급 (부분적인 참조) <교육자의 자격>에 대하여

서독에서는 중앙교원양성소와 교원지망자의 수업년한 및 양성
과정 그리고 중앙교원양성소에서의 입학과 졸업등에 관한 세부
적인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동독은 1960년에서 1967년까지의 경우에
대하여 또는 1967년 그 해 한해의 경우에 대하여 실습
직업교육의 교원능력과 이론직업교육의 교수능력을 각개경우
의 자격에 따라서 명시한다. 즉 이처럼 동독은 교수능력
을 일정하게 규정하지 않고, 편의상 기간별로 자격에 따라
다양성있게 규정한다. 자격수준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교육학파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교육학파를 졸업한 경우

교원자격이 없이 교원채용 국가시험을 치른 경우

2회의 교원시험을 거친 경우와 사범대학을 졸업한 경우
등으로 나뉘어 진다.

<낙제 비율>에 대하여

학업종결단계에서 보는 졸업시험은 평상의 학교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낙제비율이란 문제는 공장에서의 지능적 직업교육과 더불어 고려될 성질의 문제이다.

동·서 양독에서의 낙제 비율의 비교는 둘 다 정확한 계수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학업종결시험에 나타난 성격상태의 숫자적 표현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가 동·서 양독 어디에서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교육의 시험조건에 대한 정확한 성질 분석이 아직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독이 발표한 낙제 비율은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전체적인 비율인 것이다.

서독이 발표한 낙제 비율은 주로 상업 공업 수공업 분야에 관한 것이다. 농업분야와 기타의 분야(서비스분야등)에서의 낙제 비율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고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분야(농업 서비스분야 등)의 초급생들의 숫자는 전체 교육관계의 모든 다른 분야 초급생 숫자에 비해 극히 소수에 불과한고로 이 분야의 낙제 비율은 서독의 모든 분야의 전체 낙제 비율의 높고 낮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서독의 낙제 비율의 형성요인에 관해서는 어느 분야에서도 명확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국 독일 상공 회의제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 전체가

제 7 장

심사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우린다. 심사결과는 우량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척도로서 자주 인정되고 직능적인 훈련의 결과를 평가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당하다. 더우기 특히 심사결과가 여러가지의 수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1967 ~ 1968의 직업교육, 1968년 정기간행물 111호 기재 51페이지 이하 참조)

또한 독일 상공업중앙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래의 장인자격취득시험에 나타나는 성적비율이 점차 악화되는 데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합위원들이 출제하는 시험내용과 조건이 점차 높은 수준으로 까다롭게 발전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시험출제 영역이 광범하게 확대되고 깊게 심화한다는 사실도 성적비율을 악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학교실력의 계속적인 감퇴가 이와 함께 작용했는지 안했는지 또는 작용된 경우 어느 정도로까지 작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수공업 분야의 직업교육, 1969년 정기간행물 9호 소재 39페이지 이하 참조)

Ⅶ장에 대한 주해

① 대학교 인문과대학; 대학의 성격 및 학문의 방향에 대한 법령 1970.2.25 (법 II 1970. P189 이하) 참조

동독 사회주의의 발전 사회체제하에서의 대학을 완전히 개혁하기 위한 동독의회의 결정 1970. 3. 12 법 I P 19 이하

연구에 관한 지시 1970.6.1 법 II P410 ~ P414

② 1969년 5월이후 교육제도에 관한 연방과 주 간의 관계가 변경되었다. 1헌법 91조 b, 91조 a, 75조)

③ Ⅷ장에 있어서 양적 비교는 자료에 의거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동등-통계학을 원용하게 되었으며 서독의 날자와 같은 날자의 것을 고려하였다.

④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필수요건으로서의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원칙: 인민의회와 당해위원회 활동, 5. 선거(1968)

Note 10.72 이하 참조

⑤ 연방의회보 V/4260 P2

⑥ 사회주의 교육제도 원칙 1965.2.25. §2. 4편

⑦ 사회보 1970. 연방의회보 VI/643. P 20 참조

⑧ 교육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연방의회보·VI/925 1970 P40

⑨ 직업전문위원회는 당해 부의 기관 VVB의 기관 또는 복합적인 기관이다.

⑩ 직업교육에 대한 학문적 고찰사항은 경제 1970 Note 23 P.2 참조

⑪ 경제에 있어서 교육의 한계 B Tolkkötler 공업과 상업에 있어서의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 Weinheir 1966.P12 참조

⑫ 이 문제는 특히 / 브라운슈바이거 프랜 / (1948) 베르린 단계적 프랜 (1961) ABB의 직업 단계적 프랜 (1963. 1965 등을 참고할 것

- ⑬ A. Knauer 사회주의 직업교육의 교육내용 ; 직업교육 23. JG/1969. Note 7/8. P352 이하 참조
- ⑭ 연방의회 보고 : 분단 독일의 교육본질의 비교 연방의회보 V/4609 1969. P32
- ⑮ 연방노동성 경제성의 직업교육에 관한 대의원의 문제, 연방의회보 V/1422 1967 P7
- ⑯ 서독에 있어서는 단계적 교육에 의한 또 동독에 있어서는 기본적 직책에서 고찰된 청소년들의 양적 비교인 데 이는 1961.9.1 발효된 직업교육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교육직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1969.8.14의 직업교육법률(§108.1)의 시행규칙에도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다.
- 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직책이 중요하다. 세공전문노동자 건축가 토목전문기술자 금속공전기공 BMSR 기술 전문가 자동생산체계전문기술자 건설건설기술전문가 전자전문가, 제조기계등의 전문기술자.
- ⑱ 1970년 9월부터 전자, BMSR 기술 및 전자세공등의 기본교육에 대한 교육은 10학년의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끝마치게 된다.
- ⑲ 경제부 직업교육과의 통계에 의하면 「섬유방직교육」의 교육직책부분의 초심자수가 1969년 기준 약 1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독의 총 360,000여명의 직업교육피교육자중 약 0.03%가 단계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이 숫자에는 소규모상업의 약 45,000여명의 초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직업교육을 단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969년 단계교육에 참가한 초심자의 수는 12%가 증가한 것이다.

- ⑳ 노동 및 사회질서 연방부의 직업교육과 통계에 의하면 다음의 단계교육조직도 이에 포함된다. 세공상품생산공업, 의복류공업등의 단계교육조직 전자공업분야의 모든 직업을 위한 단계교육조직이 해체직전에 있다. 1971년에는 다음의 직업이 단계교육조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공업 도구제조업 및 오목렌즈 공업
- ㉑ 독일 상공회의소 직업교육 1965 저서 Note 99, Bonn 1966 P.56 참조
- ㉒ 이에 대해서는 직업교육개념에 관한 논문 - 기업관리자의 관리계획: 예측, 관리 직업교육소개 직업교육원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결과 경험과 문제 동베르린 1969 P17 이하 참조
- ㉓ 동독의 경우 1968년까지 토목에나지 야금(冶金)기계 전자 교통관계 건설관계 전력산업 공업경제학등이 전문직으로 판별되고 있다. 서독의 경우는 상술의 것중 공업경제학은 전문직에서 제외된다.
- ㉔ 1964년을 기준으로 하여보면 모든 전문학교중 37%가 사립학교이다.
- ㉕ 동독에서는 전문대학은 전문학교와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문적전문학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만 전문학교교육을 취급하고 있다.
- ㉖ 서독통계연보 1970 동독통계연보 1969의 낱자 기준

- ⑳ 서독 주거차중 18 ~ 30 세의 거주자수, 1960 :
10,010,000 1968: 10,093,900
- ㉑ 동독의 전문학교학생수는 통계연감 1960/61에서는
171,362 통계연감 1965년에는 128,700 으로 나타나
있어 통계연감 1970에 나타난 숫자보다 훨씬 많다.
이는 1970년에 2년제 전문학교학생수는 포함되었으나
대학원 및 의학대학학생이 제외되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 ㉒ Dresden 공과대학 기타 Humboldt 대학교 및 Karl-
Marx 시(市) 기술대학
- ㉓ 이러한 공과대학은 전문학교와 대학으로 이중 계산되었
다.
- ㉔ 서독 인문대학 기술대학 및 체육대학의 학생(함부르그
와 바이에른은 인문대학생수에 포함되었으므로 제외)
- ㉕ 동독:주간통신 및 야간 대학생수 학업형태로서의 "Co-
mbined Study"는 1969년 숫자는 의미가 없다.
- ㉖ 동독의 통신학교에의 입학은 45세까지 허용하므로 비정
상적인 단체로 계산하여야 한다.
- ㉗ 인문대학의 변형에 대한 과학회의 명령(1970년까지)
Tubingen 1967.P 35이하
- ㉘ 전문분야의 분류는 동독통계연감 970에서 사용된 분류
표준에 의거
- ㉙ 근년에 와서 통신강의 및 텔레비강의등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 ㉚ H.G.Haagmann 독일의 통신학교 Stuttgart.1968.P146
이하 Haagman은 단지 31개 통신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 ㉛ K Sommer 통신강의 Koln 1965.P 40이하

제 8 장 청소년의 위치에 대하여



제 8 장 청소년의 위치에 대하여

- ☑ 청소년은 서독에서는 21세, 동독에서는 18세부터 성년이 된다.
- ☑ 선거권은 동·서독 모두 18세부터 행사한다. 서독 시민은 21세부터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베르린 함부르크 북부·라인베스트팔렌 및 자르란트주 시민은 23세부터 피선거권을 가진다. 동독에서는 인민의회 피선거권은 21세부터 주의회 피선거권은 18세부터 가진다.
- ☑ 서독은 국가적 청소년문제 정책의 일환으로 예컨대 연구회 교회 직공조합등 여러가지 사회적 집단을 존립시켜 이를 통하여 고유한 청소년문제 목표설정을 추구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청소년문제정책이 SED의 사회적 목표설정으로부터 설정된다 이는 청소년문제정책의 구속적 제한인데 예컨대 초중급학교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특히 FDJ등 사회적집단과 기관이 이들 실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476. 477)
- ☑ 서독에서는 국가적 청소년문제정책이 사회

적 집단활동에 대하여 국가의 법적규정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청소년의 보를 기도하고 있으나 동독에서는 국가적 청소년문제 정책이 사회집단으로서의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간섭하고 모든 사회적 영역에 있어 특히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 있다.

(474 ~ 476)

- ☒ 서독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청소년기구에서 정치 사회적 목표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나 동독에서는 SED에 의하여 조종되는 단 하나의 기구가 청소년들이 SED에 의하여 설정되고 모든 사회영역에 있어 구속력 정치사회 및 이념적 목표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요구한다.
- ☒ 서독의 청소년기구는 청소년의 20% ~ 25%가 구성원이나 동독에서는 14세 ~ 25세의 청소년 60%가 FDJ에 가입되어 있다. (481 ~ 482)
- ☒ 서독의 청소년기구 구성원들은 사회적발전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고있지 않으나 동독에서는 적어도 초중등 학교와 대학에서 FDJ 구성원들이 사회발전의 확실한 전초이다. (482)
- ☒ 동 서독 모두 직장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규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486)

- ☒ 직장에서의 청소년의 법적으로 규제된 발언권은 서독이 동독의 경우보다 적다.
- ☒ 서독과 동독에는 모두 청소년들에게 성적에 의한 경쟁이 있다. 이는 서독의 경우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다는도 청년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의 취업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나 직업적 출세에 직접적인 작용만을 하고있는데 반하여 동독에서는 동료간에도 경쟁의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는 직장의 작업절차의 일부를 접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 서독에서는 21 세 ~ 40 세층의 의회에의 참여가 적다. 동독에서는 PDJ가 국민의회와 지방의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젊은세대가 서독에서 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 (491)
- ☒ 서독과 동독 모두 청소년들의 다른나라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동.서유럽 국가와의 교환계획을 수립하여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동독에서는 무엇보다도 타공산국가와 제 3 세계의 청소년기후를 지원하고 있는 소비에트 청소년단체인 KO-

MSOMOL과 의 접촉을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499)

☒ 양국 모두 젊은이들 중 남성 쪽이 여성 쪽보다 정치적인 관심이 더 강하다. 그러나 양쪽 모두 직업적인 능력과 함께 정치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501·502)

☒ 서독과 동독은 청소년들에 대한 자유시간의 활용상태는 거의 같으나 사회경제적인 활동과 부직(副職)을 위하여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정도에 있어 무엇보다도 차이가 있다. (504 ~ 508)

471 서독과 동독의 청소년기구에 대한 후술(後述)의 비교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정된 관점(예컨대 관계에 있어서의 방법의 참조등)에 국한하고 있다. 양국의 사회제도 및 기구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정치적개념 및 목적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목표는 사회제도 및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 및 자유에 있어서의 제한 및 금지는 비슷하다.

법 적 규 계

472 동독 및 서독에 있어 특히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게 무엇이며 청소년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게 무엇인가를 고찰키로 한다. 서독에서는 청소년들은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시점에서 성인권을 갖게 된다.

- 시민권 및 그에 따른 제한없는 취업능력을 21 가지게 된다.
- 결혼년령은 남자가 21 세 여자가 16 세이다.
- 근자의 헌법개정에 의하여 연방의회, 주의회, 시의회 의원 선거권은 18 세부터 가지며 연방의회 및 대부분의 주의회, 시의회 의원 피선거권은 21 세부터 가지며 단, 베르린, 함부르크, 노르트하하인-베스트팔렌 및 자르지방에서는 주의회 및 시의회 피선거권을 23 세부터 갖는다.
 동독의 청소년들은 25 세까지 “청소년법률”^{주1}의 규제를 받지만 시민 및 정치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은 서독보다 대체적으로 낮다.
- 시민권은 18 세에 취득하며,
- 결혼년령은 남녀 모두 18 세이며,
- 선거권은 18 세에 가지며 피선거년령은 21 세이나 지방의회 피선거권은 18 세에 가진다.

성 년 층

다음의 예는 주기(註記)가 없는한 14 세~25 세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포 55 와 같이 동일한 연령으로 두개의 사회집단으로 분류된다.

청소년 주거자(1968년 말 기준)

년 령	서 독		동 독	
	단위 1 천	총거주자에 대한 %	단위 1 천	총거주자에 대한 %
14 ~ 16 세	1,580	2.6	526	3.1
16 ~ 18 세	1,574	2.6	521	3.1
18 ~ 21 세	2,422	2.6	657	3.8
21 ~ 25 세	2,876	4.8	690	4.0
총 계	8,452	14.0	2,394	14.0

자료: 서독~서독년감 1970 35 P.

(년령별 거주자비율은 1968 기준으로 함)

동독~동독년감 1969 433 P. 440 P.

1. 청소년과 사회

a) 청소년정책,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문제의 입법

청소년정책 개념

473 서독과 동독 모두 그 표준, 사업 및 입법등이 청소년 개념 하에 총괄되어 있다. 이 표준은 청소년 보호 및 사회전체에 기여하고 있다.

서독과 동독의 청소년 정책의 개념 및 경향의 비교를 양 사회체제하의 청소년정책에 있어 구체적으로 상이(相異)한

사례를 들어 설명코자 한다.

서독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있어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국가적 청소년 정책은 차한(此限)에 존재하며 그에 따른 청소년 정책 사업은 여러 사회집단 예컨대 교회, 단체, 직장, 청소년 기구 및 고용자에 의해 수행한다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단체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며 사회에서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준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이러한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교차적인 관점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가의 주도 및 지시에 추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법치국가 개념에 맞도록 그 의미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 단체의 정책 수행에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독에서는 청소년 정책이 전체 정책의 총체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 청소년 정책은 전체 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문제의식에 맞추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전체 사회의 목적 설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젊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 라는 구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의 과제는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한계 내에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데 있다. 일반적인 정책적 목적은 청소년의 정책적 선도에 있는 것이며 그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제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 고 (草 稿)

474 서독과 동독 모두 청소년법률과 청소년의 정책적 규제는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을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의 사회에 있어서의 순결을 위하여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서독의 청소년법률은 비슷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개념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독에 있어서의 청소년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활동으로 나타나며 청소년 개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만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독의 청소년 법률은 청소년 보호를 규제하고 있다. 청소년을 악영향으로부터 방지한다는 개념의 비중은 그들을 보호한다는 데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독의 청소년 법률의 목적은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제한을 가하는데 있고 이를 통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영역(학교, 공장, 학문, 문화)에 있어서 청소년의 활동을 규제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독의 청소년 법률의 규정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의 명문화된 의무를 서술하고 있다.

475 양사회 모두 청소년 보호와 방어를 위하여 개인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서독과 동독의 청소년 정책의 개념은 모든 청소년 또는 청소년집단에 요구되는 정책 실행의 방법에 있어 상이한 점이 있다.

서독에 있어서는 청소년 집단이 사회적 집단(교회 정치적

및 문화적 형태)의 구체적 목표를 위하여 요구되고 있다. 국가적 활동은 청소년의 활동을 보호하고 선택된 목적 설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청소년 집단 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집단의 노력을 제한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당과 국가가 개인적인 보호보다도 청소년을 사회적 집단으로 직접적이고도 포괄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내용적인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독의 청소년 정책은 초보적이고 준비적 단계인 청소년들의 보호와 방어를 위한 규제를 통하여 그들을 안전케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독에서는 초보 및 준비 폐쇄적 단계에서는 그들보다 좀더 나이 많은 아이들부터 또 순결을 요하는 다음 단계에서는 정치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어린시절에 이러한 차별 특히 초보단계의 연장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한다.

동독의 기초 및 준비 교육단계와 생산 및 정치적문제에 대한 참여권이 있는 단계에 있어서의 아동(兒童)과 청소년과의 차등은 서독에 비하여 그 폭이 좁다. 생산에의 참여와 정치 사회적인 절차에의 참여는 기초교육단계에서 갖게 된다.

476 이와같은 상이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념은 양사회제도에 있어서의 청소년 위치의 상이성을 결판하고 있다.

서독의 청소년들은 넓은 영역에서 기회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대를 할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계몽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비교적 넓은 문이 열려져 있지만 이러한 상태로 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순결성과 조화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동독의 청소년들은 규제되고 일반적으로 구속된 정치적 목적의 범위에서 내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회전체적인 전체에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은지도자이며 추종자가 아니다” 또는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이다” 등의 구호하에 행동하여야 한다.

여기에 정치 이데오르기적 목적은 뒤따르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사회주의 모랄의 실현과 마르크시스트적 계급의식의 발전과 “사회주의 고향”의 변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생산력 제고라는 목표에서 본 관점은 이와는 다르다. 교육에 있어서나 직업에 있어서 부여받은 과제의 개인적 및 집단적 완수를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의무로 규제하고 있다.

기구의 형태

477 청소년정책의 활동은 동.서독이 서로 다른 기구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서독에서는 연방 구조 및 주, 시의 행정권에 의하여 연방 정부의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입법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학교와 학교외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권한은 연방의 주가 우선적으로 갖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 주에서 다르게 실현되고 주에서의 청소년 정책활동의 중점이 다르게되는 결과를 가져오

고 있다. (주5)

연방은 헌법 74 조 7항에 의거 입법 및 제한된 행정력 범위내에서 청소년정책 활동을 실현하고 있다. 연방의 요구권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1967. 7. 18. 판결)에 따라서 초지역적 성격의 문제에 한해서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은 정치교육과 청소년들에게 독일분할 및 국제교섭의 문제를 설명하는 원시적(遠視的) 계획등의 초지역적 범위를 관할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부(部) 수준에서 권한위임이 이루어 졌는데 서독에서는 1957년 이래 청소년을 위한 연방부가 존립하고 있다(1957년까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내무부가 관할하였고 1969까지는 가정 및 청소년, 1969년부터 청소년 가정 및 보건부가 생겼다)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기타 권한은 부간에 분할되었다(예컨대 법무부가 청소년문제에 관한 입법을, 경제부 및 노동, 사회부가 직업교육문제와 청소년노동보호문제를 관할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모든 청소년정책 문제가 중앙집권적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실천되며, 통제되고 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입법이 없으며 SED 이외에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목적설정을 취급하는 기관이 없다.

동독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조, 통제기능을 청소년문제 담당 참사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알맞게끔 담당관은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법의 완성 및 발전과 청소년 기구, 국가의 중앙 및 지방 기구를 통한 청소년문제 실현에 대한 통제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청소년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담당관은

SED 중앙 위원회를 통하여 또 FDJ 와 협조하여 청소년문제에 대한 입법과정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문제 담당관은 청소년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이는 중앙의 문교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청소년구제 청문위원회와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지역기관에 대하여 자문권한을 갖는다.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청소년정책 문제에 대한 권한은 비슷하다. 서독과 다른 것은 경영관리자가 청소년정책 목표의 실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물론 중앙의 국가청소년정책이 경영활동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독에 있어서는 국가청소년정책이 주-연방관계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수 단 (Instrument)

478 청소년정책 수단 역시 서로 다른 청소년정책 및 사회정책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서독의 청소년 보호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구 및 사회단체가 보조를 받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국가활동 및 보호의 간접적인 형태도 중요하다. 국가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기구 및 사회단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자기의 책임하에 또한 자기가 선정한 목표밑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이 보조를 받는 단체 및 기구가 “기본법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 따라서 보조금 사용의 통제는 가계법(家計法)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이러한 기반위에서 청소년보호계획이 연방, 주, 지역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모든 기구는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청소년보호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시간이 감에 따라 연방 및 주기구에 두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시(戰時) 등의 긴급사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청소년 안전 구축에 중점을 두는 “사회계획”에서 학교의 영역에서 교육연구를 필요로 하는 교육계획이 발전되었다. 그래서 제 21 연방청소년계획(1970)은 정치교육과 국제교섭의 촉진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청소년기구의 노동보호, 직업보조 및 사회봉사를 위한 기증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소년교육 및 교계 장소와 학생의 안전장소 구축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동독의 청소년 정책 수단은 청소년보호계획이다. (주11)

1970. 8. 19. 의 청소년법률에 대한 실시국정 6도에 따라서 청소년 지방기구의장파 직장 즉 조합의 장(長)들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보호계획이 수립되고 기구를 통하여 또 수단을 통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있다.

동독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에 맞는 규범을 만들고 있다. 실시규정 6 조는 지역기구의 의장과 직장 즉 조합의 장들에게 청소년의 정치교육 및 국가와 경제기구의 지도 및 실행절차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하여 표준을 세울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계획은 국민경제적 문제를 청소년의 협조를 얻어 풀어나가도록하게 하고있다. 이러한 협조는 유아 및 청소년스포츠와 유아 및 청소년휴양(休養) 등 청소년의 정신적 문화적 생활을 조직화하는 청소년의 이데오르기적 및 실질적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FDJ에 의하여 수행되고 지역기구에서 실시되는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계획은 행정구역 도시 도시구역 및 조합의 장 수준에서 협조되며 매년의 계획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들은 국가예산 및 직장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주12)

양 독일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체제의 결정적 상이점은 동독의 청소년보호계획이 직업의 수준에서 조직화되는 다시 말하면 직업집단계약의 일부이며 청소년들의 결합이 노동단체에서 규제된다는 점에 있다.

발 전 경 향

79 서독에서는 과거 수년 동안의 학생 데모와 청소년의 쫓기의 결과는 말할것도 없고 여러가지 예에서 청소년이 사회변혁과 개선을 해결하고 요인으로서 작용하며 점차 이러한 것들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정치적집단 대학학교와 청소년기구등이 다른 관점에서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과 사회간의 관계에 있어 여러가지 층들이 사회작용의 규합필요성을 불러일으켰고 청소년에게 부담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연방정부의 강력한 청소년 정책활동이 나오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의 개혁과 개선은 청소년과 이러한 문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구 및 집단과의 대화를 통하여 준비되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오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목표(1969. 10. 28. 정부성명)가 나오게 된 것이다.

○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실질적보호

○ 그들에게 관계된 모든 해결에 있어 청소년의 보다 강력한 참여

교육의 실질적인 축진은 연방정부의 다음과 같은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입법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촉진법규와 직업교육법규의 발전, 연방청소년계획에 있어서의 실질적이고 목적적인 정책계획, 가정교육의 결여에 대한 유아 및 청소년교육의 법률적요구를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구축하는 합목적적인 청소년안전법규의 개혁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청소년의 협의권과 결정력 및 성인의 남녀동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새로운 직업기본법의 범위내에서 청소년대변자의 위치를 직장내에서 강화시키려는 시도가 강구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선거권을 21세로 부터 18세로 하는 것과 성인년령을 강하(降下)시키는 문제와 청소년보호법규를 현대화시키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동독에서는 “신경제체제”(1963)의 실시와 함께 청소년 정책의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다. 청소년은 가능한한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전체사회적 문제의 해결에서 구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67년 이래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면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동독국가를 위한 청소년의 성

제 8 장

격형성은 SED가 책임을 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SED의 독일정책 개념과 “사회주의조국으로서의 동독등과 같은 것이 자명(自明)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년이래의 동독의 청소년 정책의 발전경향은 다음과 같다.

- 전체사회적인 계획에서 주어지는 요구에 합당한 실질적 교육에 관한 전제조건외 개선
- 넓은 의미의 정치-이데올로기적 교육의 강화 또는 개선
- 국가와 사회에 있어 책임적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의 확장

b) 청소년의 통합과 협력

480 서독과 동독에 있어서의 청소년세대 및 청소년정책 개념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모든것 중에서도 청소년기구의 사회적 지위와 문제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또한 작업절차와 정치절차와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협조의 제도적으로 규제된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13)

청소년기구

구성원의 수

481 서독에는 정치적, 종교적 및 문화적 형태의 청소년단체가 약 80여개가 있다. 그들은 목적, 기구형태, 크기등이 모두 다르다.

독일 기독교 청소년봉사회 (AGEJD)와 독일 카톨릭청년회

(BDKJ)는 동일한 제 회하에 1백4십만과 1백1십만의 청소년을 각각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 기타 단체의 구성원 수는 수백에서 60만에 이르고 있다. 연방청소년회 및 정치적 청소년회까지 합산한다면 그 구성원의 수는 3백4십만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주15)

동독에서는 자유독일청소년회(die Freie Deutsche Jugend FDJ)와 FDJ의 지도를 받고 6세~14세의 어린이를 위한 "진실한 벨만"회(Ernst Thälmann)가 그들 기구의 전부이다. 양기구 모두 SED에 기구적으로나 정치-이데올로기적으로 밀착되어 있다. 기타 사회적기구나 단체(예컨대 FDGB나 교회)는 청소년기구가 아니다.

이 진위기구는 1969년에 1백8십만 이상의 회원을 가졌었다. 6세~14세의 어린이를 위한 이 기구는 FDJ의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하여 8개학년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구의 성격을 완전히 알 수 있다. FDJ는 1969년말 회원이 1백67만명이었고 14세~25세 청소년의 65%가 이에 가입되어 있다.

구성원의 구조

482 서독에서는 청소년단체의 구성원들이 교육단체 즉 사회적계층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구조를 알기가 힘들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보조기구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소년단체에의 참여는 서독에서는 대개가 청소년의 특별한

필요와 관심 및 단체의 호혜적(互惠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단체는 정치적활동까지도 자유방임상태에 놓아둔다. 이러한 참여는 교육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사회적 승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당해 성년기구 즉, 교학 직장, 단체의 경력이 청소년기구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있다.

동독 자유독일청년회의 유일한 교육단체는 그 구성원이 다양하다. 학생, 교습생, 점습생, 관리 국가인민군(NVA)의 군인이 약 80%인데 그 중 학습과정을 거의 마친 젊은 노동자들이 50%, 비숙련노동자가 약 40%, 국가농장(VEG)의 젊은 농부 및 노동자가 약 20%가 된다. (주17)

동독의 청소년들은 교육기간에 전위기구 또는 FDJ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조직의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직업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FDJ보다 FDGB(사회기구)에 구성되는게 보통이다.

명예욕(승진욕)이 적은 청년들은 승진을 위한 기구보다도 FDJ에 그 수가 적은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유를 원하는 FDJ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및 직업적 승진의 진초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적 지위

- 483 서독의 청소년단체는 자립 독립적인 기구로 이해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목표와 영역을 스스로 규제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영역은 종교, 정치, 문화 및 가타분야에 있어 그들에게 대응되는 성인기구의 사회적지위 및 그들의 일반적

목적설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청소년단체는 국가 또는 여러 성인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하여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유능한 성인을 얻기 위하여 청소년에게서 단체특유의 가치와 이념을 펴고 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설정의 내용에 따라 정치적, 직업적 교회-신앙적 및 문화적 청소년단체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한계는 아직도 유동적이다. 근년에 와서 정치, 교육 및 정치 활동을 보다 강력히 주입시킨다는 의미에서 청소년단체의 정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서독의 청소년기구는 특히 가장 큰 기구인 독일연방청년회가 그렇지만 기타 지방청년회도 정치, 입법 및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이익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 두드러진 활동이 없다.

서독의 청소년단체의 목표 및 활동은 전체사회적인 기대에 비하여 비교적 협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단체가 한편으로는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무력화될지도 모른다는 위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FDJ의 사회적지위가 SED에의 존속성 및 청소년의 유일한 기구로서의 역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FDJ 및 기타 전위기구는 전체 청소년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전체 밑에서 교육, 실천 및 통제기능이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자주독립에 의하여 그들 또는 그들을 통한 SED는 청소년의 사회단체화한 기구이며

다시 말하면 동독의 청소년들은 총체화된 힘인 것이다.

활 동

484 서독의 청소년단체의 상대적 독립성은 성인단체와 사회층의 무계획성과 정확한 기대의 결여에서 파생한 것으로 이러한 독립성(비구속성)은 서독의 청소년단체가 단체교유의 형태 또는 구성원의 자유로운 이념적 목적설정하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과거 청소년활동의 전형적 형태였던 상기(上記)의 것 및 기타 요인의 영향으로 청소년단체의 개념은 청소년의 그들 사회환경에의 적응이라는 실험 분야로 퇴색해가고 있다. 근년에 와서는 청소년단체가 지방, 주 및 연방에 대하여 정치적 활동, 정치적 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이익대표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단체는 성인단체의 목적과 계획에 적응하면서 정치적으로 계몽된 단체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새로운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충돌 또는 반대행동이 유발되기도하나 단체 교회 및 직장에서 변혁이 생겨나고 있다. 서독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역할이 변혁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독에서는 자유독일청년단체(FDJ)와 전위기구의 활동이 특히 국민학교와 고등학교학생들의 지도를 밑받침하고 있다. FDJ 활동의 중점은 이데오르기적 지도에 있다. 고로 FDJ는 청소년들의 준비과정 즉 청소년시간에도 참여하고 있고

FDJ 가입전에 7~8학년 학생들이 준비하는 지도과정도 설치하고 있다. 청소년사회주의단체와 함께 이데오르기적 지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들에 대한 무한한 교육의 필요성에 발마추어 FDJ의 활동범위는 전문적인 교육에까지도 뻗쳐가고 있다. 6~10학년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및 교외 활동단체가 조직되고 있으며 이 단체를 통하여 자연과학, 수학 및 기술적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다.

FDJ는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이데오르기 및 직업적자질을 위하여 조직되고 있다.

FDJ는 또한 GST와 함께 교육과정 및 생활영역에 있어 청소년의 준군사적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의 원하는 바가 특별히 고려되고 있는 문화적활동, 자유활동 및 단체생활의 기타 형태에 대한 자유의 추구를 FDJ는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 비구성원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FDJ는 자유활동에 있어서의 청소년들의 원하는 바를 많이 고려하고 있다.

FDJ는 여러가지 형태로 이를 위하여 사회적 및 정치적결정, 기구 및 통제절차에 간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도기구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표하고 있다. 지역인민의회 및 인민의회에서 그들은 일당파로 통하여 그들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FDJ 통제자는 노동자 농민 감독기구(ABI)에 참여하고 있으며 FDJ 지도단체는 사회통제의 여러기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

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

- 485 서독과 동독 모두 직장에서의 청소년 안전보호를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다. 양독일에 있어 직장에서의 청소년의 협력을 규제하는 제도가 발전되고 있다. 양체제에는 서로다른 청소년 특유의 경쟁형태가 있는바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보호되고 고무를 받아 좋은성적을 내고 있다.

노동의 법적 규제

- 486 직장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는 서독에서는 청소년노동보호법률에 의하여 동독에서는 노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주21)

1960년 서독의 청소년노동보호법률은 최소(最小)규정으로 노동시간의 제한, 청부노동 및 위험한 노동의 금지, 청소년의 휴가 및 휴식, 사고방지과 건강보호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서독에서 청소년법률 준수정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주22) 이에 의하면 노동보호규제는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동조사에 따르면 직업학교수학(修学) 및 휴가에 대한 규정이 준수되는 것이 가장좋은 상태이며 건강진단 및 휴식처시설에 대한 규정만을 고려하고 있는 나쁜상태도 있었다.

청소년노동보호법률의 준수상태는 직장에 있어서 청소년능력이 커지고 성인들의 능력으로 부터 분리됨에 따라 더욱 나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법률의 규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더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장 좋다고하는 상태가 휴가 노동시간 휴식에 대한 규제뿐인 것으로 알고있다. 청소년들은 직장에 있어서의 그들 권리를 인식못하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동독의 노동법은 한편으로는 “직장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보호”를 규제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능력이 있는 청소년의 특별보호”를 규제하고 있다.

보호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린이노동의 금지, 어려운 노동및 건강에 유해(有害)한 노동의 금지와 노동시간의 규제, 휴가, 치료와 건강진단등이 있다.

이 규정은 서독의 규정과 내용적으로는 다르나 노동법에서 달성코자하는 청소년보호범위가 서독의 노동법적규정에서는 준수되고 있지 않는게 있는바 동독의 보호규정에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다.

- 직업교육에 대한 규제
-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맞는 노동을 시키게 하는 직장장에 대하는 규제 (청소년보호계획 제출, 청소년의 작업목표등)
- 특히 FDJ와 함께 직장장이 함께 일할것을 의무화하는 규제.

동독의 청소년들은 노동법의 테두리안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노동법적인 지위는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독에서보다 강력하다. 예컨대 성인특유의 해고같은 것이 없다.

직장에서의 협력

487 서독에서는 직장에서의 청소년의 협력이 청소년 대표기구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이는 직장기본법 또는 개인대표법에서 시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청소년대표자는 고용주에 대하여 또 직장회의에서 직장기본법 또는 개인대표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청소년들의 이익을 변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혁시도는 청소년대표의 지위강화를 출현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대표자들이 직장회의(경영자회의)의 합법한 구성원이 되었다. 동독의 경제에서는 청소년들의 협력이 특히 경제기구의 관리 및 협의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들은 다음의 두가지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 FDJ, 생산협의기구의 구성원, VVB에서 파견되고 독자의 관리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회협의체와 직장관리체제를 가지고 있는 FDJ 관리자에 의하여
- 또 FDGB에 의하여(특히 직장에서 청소년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직업적 경쟁(서독)

488 서독에서나 동독에서나 청소년들은 모두 직업적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서독의 청소년들은 사회질서의 기본을 인식하고 수입, 특전 승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직업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요구되고 평가되며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개인적인 성과에 의하여 수입 특전 승진기회를 얻게된다.

서독의 청소년들은 이를 위하여 직장 및 직업단체에 의하여 주최되고 일반적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직업적 승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성적경쟁에 참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주 23) 경쟁시험은 지역단위로 규칙적으로 시행되며 합격자는 지방 또는 연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독일노동조합(DAG: Deutscher Angestellten-Gewerkschaft)의 교육부는 1949년 이래 매년 수련공과 젊은직공들을 위하여 경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시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극을 받게 되고 그들의 전문지식 교양 및 정치적인 지식등을 테스트 받고 더 깊이 알게 된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승진기회를 보호받게 된다. 이 경쟁시험에 의하여 직업협의체 교육계획 및 유럽교섭체등이 연결되고 있다. 1970년에는 약 25,000명의 청소년들이 이에 참가하였었다. 경쟁시험을 여타 서유럽국가와 통합하여 실시하려는 시도가 진행중에 있다. 독일상공노동단체는 상업 및 행정직의 수련자들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매년 경쟁시험을 실시하고 젊은 상인(商人)들을 위해서 1~3년에 한번씩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대개 매년 22,0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 외에 건축, 석공, 토목등의 공업노동조합은 수련자와 청소년노동자를 위하여 매년 직업숙련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의 계획에 의하여 매년 약 20,000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있다.

직업 경쟁(동독)

동독의 청소년들은 "사회주의 청소년집단체"에 의하여 경쟁

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쟁은 청소년보호의 주요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청소년집단체는 여타 직업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쟁을 특징지우는 포상 및 우대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집단체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 법적문제는 청소년법을 § 3과 노동법 § 134에 규정되어 있다. 양 규정 모두 사적기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VEB, LPG 및 국영기업체 경영자들의 청소년집단체 교육에 대한 의무를 특히 규제하고 있다. 범위나 의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집단체의 형태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 목적단체이다.

청소년단체는 생산, 생산준비단체 또는 근로성적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산절차부분에 책임을 지고있는 청소년들의 집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의 목적단체에는 시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획, 작업수행 또는 생산계획 또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단체등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더 넓은 분야 부분 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25) 청소년집단체구성원 50%가 26세 미만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는 아직 정확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

청소년단체 및 목적단체는 공업분야뿐 아니라 농업분야에도 있다. 그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69년에는 10,000개의 청소년단체와 15,000~20,000 청소년목적단체가 있었다. 구성원의 수는 청소년단체가 120,000~150,000명 청소년목적단체가 150,000~200,000명이다. 청소년집단체에서 능력자의 수가 25세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에 이중으로 계산된 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목적단체에 있어 능력있는 자의 수는 그리 높지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총일백일십만의 청소년노동자, 기술자, 조합농부 및 수련자중 청소년집단체의 점유비는 10%미만일 것이다.

청소년집단체는 우선 생산의 증가와 생산성에 공헌하고 있다. 그들은 완전히 진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지 서독청소년단체노동이 특징지우는 불투명한 실험요소가 아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개인의 집단적 교육장소가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집단노동의 가치와 명제를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집단체는 비교적 독립된 단체로서 확실한 목적설정과 경영과 FDJ에 대한 다양한 관계에 의하여 사회에 연결되어 있으며 교육기구의 사회주의화 작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집단체내에서의 노동이 책임의 부담을 의미하며 이 범위내에서 시험, 보호 및 직업적 승진의 기여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체의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그들 구성원들은 생산절차에 있어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집단체는 청소년들에게 특전획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동등사회가치와 관련이 있는 목적과 농화(同化)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의 또다른 형태는 FDJ에 의하여 조직되고 있는 “미래의 주인에 대한 축제(MMM : Messe der Meister von Morgen)”이라는 젊은이들의 운동인데 매년 성황을 이루고 있다. 1969년에는 지역, 단체 직장, 학교의 젊은이들과 관계인사 600,000명이 젊은이들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주27) 26세미만의 청소년들의

수는 1967년에 약 90,000명이었으나 1961년 이후 증가일로에 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가는 수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쟁제도의 비교

489 서독 청소년특유의 성적경쟁제도를 동독 “사회주의적 집단경쟁제의 청소년특유의 형태와 비교하여 보면 청소년역활의 규제 및 동서독 청소년정책 개념에 있어 근본적인 상이점을 들어내고 있다.

○ 서독에서 청소년이 개인으로서 요구되고 있어 성적도 개인적으로 고려되고 “상(賞)”도 개인적으로 받게되나 동독에서는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청소년집단체의 성적은 공동적으로 고려되며 특전과 상도 역시 집단전체에 귀속하게 된다.

○ 서독에서는 경쟁제도가 개인 또는 반관적인 기구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반하여 동독에서는 경쟁제도가 당과 국가의 기구로서 경영자 FDJ FDGB의 기타 기구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원을 받는다.

○ 서독에서는 경쟁이 노동시간의 또는 직장외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청소년의 직업노동내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적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뿐이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경쟁제도가 청소년단체와 청소년목적단체의 형태로 나타나 매일의 직업노동의 특별한 기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생산을 위한 청소년들의 유동성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적 및 사회적승진을

의 직접적인 기회로서 작용한다.

- 서독에서는 경쟁제도가 명백한 정치적 목적설정과 관련이 없으나 동독에서는 청소년집단체가 정치적 목적설정하에서 활동할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 당의 판별에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이데올로기적 태도 및 그들의 결실성 등이 노동결과 성적과 특전 또는 포상에 의하여 정치제도와 강력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과 정치

- 490 청소년정치개념의 상이점은 정치결정과정에서 젊은세대의 협력이 어떻게 규제되어 있는가에 있다.

정치에 있어서의 협력

- 491 서독에서는 선거년령을 하향(下向)시켜 제도적으로 규제된 정치절차에의 참여가능성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사회단체로서 정치영역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는 없다.

이에 반하여 동독에서는 청소년이 사회단체로서 사회주의의 건설 및 정치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체이므로 특수한 지위를 접하고 있다. SED의 청소년정책은 국가, 행정, 노동, 경제 등 국가적 지도과정에서의 참여를 명문화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각종의 관리권, 협력권, 대표권 등이 FDJ에 의하여 청소년의 사회주의적인 총체기구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들은 국가전위기구의 구성원으로 인민회의 및 동독인민대표회의의 일부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제 8 장

다음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민회의 및 지방회의에의 청소년의 참여는 서독연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에의 청소년 참여보다 그 수가 훨씬 많다.

표 56

·청소년 의원

	숫 자	%
서 독		
연방의회의의원총수(주1)	518	100
25~30세 의원	2	0.4
31~40세 의원	60	11.7
지방의회의의원총수(주2)	1,356	100
25~30세 의원	27	2
31~40세 의원	245	18.2
동 독		
인민회의의원총수(주3)	500	100
21~25세 의원	33	6.6
26~30세 의원	33	6.6
31~40세 의원	164	32.8
지방회의의원총수(주4)	2,838	100
21~25세 의원	81	2.9
26~30세 의원	339	12
31~40세 의원	713	25

주 1 : 기준일 1969년 제 VI 차 회기기준 1970 독일연방 연감
P. 258 참조.

주 2 : 기준일 최근 회기기준 헤센의 1970년 10월 선거 및
바이에른 1970년 11월 선거 불고려.

주 3 : 기준일 1967년 제 5 선거기준 : 동독통제연감 (1970)
P. 487 참조.

주 4 : 기준일 1970년 3월 31일 동독통제연감 (1970) P. 488
참조.

21 ~ 40 세의 의원수를 살펴보면 인민회의 및 지방회의 또
는 연방의회 및 지방의회별 프로테이지는 다음과 같다.

연방의회	12.1 %
지방의회	20.2 %
인민회의	46.0 %
지방회의	39.9 %

정치 대표자의 연령구조가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후보
선발, 후보배열의 상이 및 선거형태의 상이점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2 서독에서는 여러기구의 청소년을 위한 결정과정에서의 협의,
협력권이 있어서 연방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구의 최고단체
로서 역할을 하며 청소년정치 결정을 준비하며 학생단체는
VDS 협의권에 의하여 대학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당파
노동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단체에 있어서의
그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또 부분적으로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세대의 청소년들은 그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정치문제에 참여하려 하는게 일반적이다.

동독에서는 정치기구에 의하여 FDJ의 지도자 및 구성원들이 국가기구의 회의에 참여하여 청소년정책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지방인민대표자회의의 상임위원회 및 국가기구내의 중앙또는 지방단체의 청소년노동단체가 이에 속한다. 동독의 사회기구내에서의 청소년의 활동은 첫째 경영 및 노동조합기능에서의 협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29)

정 치 교 육

- 493 청소년의 통합 및 유동화(流動化)를 위해서는 전술의 기구와 정책이 의미를 가지며 “정치교육” 또는 “사회주의 인식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에 의한 정치질서 그들가치와 제도에 맞는 인식을 형성하고 주입시키고 안전하게 하고 강화하려 하고 있다.

목적파 기구

서독의 정치교육은 교육제도에서 특수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인식교육을 수단으로 하는 학교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기관은 청소년기구와 사회단체 즉 교회 노동조합 단체등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러 청소년기구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교육활동의 일반적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시민”으로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인식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치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정치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사회문제와 쟁점에 대한 인식등을 주입시키고 있다. 지방의 학교기관과 학교의 기구등 교육기관은 이러한 일반적인 목표내에서 서로 다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정치적 관심과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독사회를 특징지우는 점이기도 하다.

동독의 청소년 정치교육은 모든 교육절차의 중심적 기본요건이다. 이는 모든 청소년 기구의 파업이다. (주30)

특히 국가시민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기관 및 사회 총체 기구는 먼저 FDJ와 전위기구를 들 수 있다.

동독의 정치교육목표는 청소년에 대한 확고한 계급인식의 수단이다. 이는 모든 사고(思考), 감정, 의욕 및 행동의 본질적 요건이며 사회주의 시민의 기본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31)

정치교육의 계획이 다음문제의 가정하에서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의에 조국을 인식하고 사회주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즉 동구부력내에서의 동독의 위치를 인식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방어한다는 사상적 주입교육이 있다.

기본가치에 대하여

494 서독에서는 교육기관을 연방체제로 구성하여 특히 보충기관

으로서 여러 청소년 자유활동단체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을 정치교육에 있어서 서독의 다종다양한한 정치관점과 이데올로기를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외에 정치활동가치로서 관용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정치질서의 기구 및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고 여타 생활영역-직업 자유활동, 가정등에 의하여 견고하게 되는 특수사회 및 생활영역을 위한 교육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독의 정치교육은 세계 및 생활관의 지배를 요구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무한한 이데올로기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는 중앙의 교육목표로서의 비보편성을 시현(示顯)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이데올로기개념에 있어서 획일적인 위치설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경향에 발마추어 모든 사회 및 생활영역을 이데올로기화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은 청소년의 총체화를 기도하고 있다.

사회인식 교육

495 양독일 학교제도에서는 사회인식교육이 총교육시간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주 학교의 정치교육이 아주 다른 형태로 조직되어있기 때문에 동서독의 정확한 비교는 힘들다.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과 동독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8년후에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은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에서는 1년에 총 8주간 동독에서는 1년에 총 9주간의 사회인식교육을 받는다. (주33) 국민학교 또는

실업학교에 이르러 청소년들은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에서 15시간의 사회인식교육을 받는데 비하여 동독에서는 10학년의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16시간의 당해교육을 받는다. 졸업할 때까지 동교육을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에서는 23시간 동독에서는 22시간을 받게 된다.

학교의 정치교육

- 496 서독에서는 교외교육분야에서 청소년정치단체 및 독일연방청년회의 구성원들이 정치교육을 그들 활동의 목표로서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민주주의 질서의 실현자”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35) 총계획에 있어서의 정치교육의 비중은 단체에 따라서 다르다. 그들 교유의 과제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연방청년단체는 특히 노동조합청년화(DGB: Gewerkschaftsjugend), 600,000~133,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독일직공노동조합(DAG: Deutschen-Angestellten-Gewerkschaft) 기타 110,000명의 회원이 있는 사회주의 독일청년회등이 있다. 여타 단체의 정치교육절차는 대단히 다르다. 특히 자유활동분야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있어서는 정치교육보다 기타 활동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FDJ 및 전위기구가 학교내외에서 정치교육의 목적과 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수단으로서는 “FDJ-학년”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데오르기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FDJ 중앙회의의 결의 및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획된 “청소년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된다.

집단교육의 내용이 확정되어 그들은 먼저 공산당선언, 독일 노동운동역사, SED의 계획과 레닌과 울브리히트교서(敎書)까지 공부하게 된다. 청소년 사회주의자단체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수는 근년에 점차 증가되고 있다. (주37) 이외에도 FDJ말고도 청소년들이 주관하는 정치-이데오르기교육의 간접적 형태도 있다.

효 과

497 서독정치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학생들에 대한 정치교육에 의하여 학생들의 정치적관심이 높아지고 발전된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무관심이 극복된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정치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민주역량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정치교육에 있어서 제도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되고 동교육의 수단이 학생개개인의 위치와 수시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쟁점과 관련이 없다는데서 오는 결과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독의 정치교육결과에 대한 연구가 없으나 정치교육의 효과가 없지는 않으나 아직도 동독의 청소년들에게는 양자택일적인 정보에 대한 판별가능성과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정치제도와외 동일성결여에 대한 탄식은 정치교육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추측케하고 있다.

예 측

498 서독 청소년교육의 위치는 개혁을 시도하려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겠고 청소년학생의 개혁운동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교회기구 및 학교등이 서로다른 형태로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도에 관한 학습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치절차만을 단지 관찰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 있었던 사회적쟁점을 보다 많이 테마로 하고 청소년의 구체적인 사회적위치, 그들의 요구와 관심등을 학습절차에 도입한다면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까지의 정치교육에서 나타난 정치활동과 정치학습의 분리는 정치활동을 정치교육에 보다 강력히 주입시키므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는 정치교육의 의도와 기능의 차이가 동.서독간에 있다.

서독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치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내 위치를 식별하고 그러한 위치를 정치활동을 통하여 개혁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사회관계에 대하여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청소년 정치교육이 확정된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선도자"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청소년의 국제적 접촉

499 서독과 동독에는 타국 청소년들과 국제적 교류를 하려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촉진계획이 있다. 양 독일 모두가 계획은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독의 국제교류의 목표는 국제간 이해(理解)와 협조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있어(주40)교환계획이 상호 문화교류 또는 포괄적인 정치조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독일, 프랑스 청소년들은 독일, 프랑스 우호조약의 필수요건을 이루고 있다.)

이는 공적 및 사적기구, 청소년활동기구, 청소년관광협회에 의하여 주선되며 연방, 주, 지방단체, 국제기구(유럽회의, 유럽사회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1967년에는 약 3800 회의 교류가 있었는데 약 115,000 명의 독일 및 외국청소년들이 참가하였었고 1969년에는 5,000여 회의 또는 운동에 약 150,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었다.

이러한 운동의 빈도(頻度)는 독일청소년들이 외국에 참가한 수를 기준으로하여 보면 프랑스가 제일 많고 영국, 이태리,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순이다.

1958년에 설립된 독일, 프랑스청년회(DFJW:Deutsch-Französische Jugend Werk)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67년의 개최비용은 독일과 볼란서가 반반씩 분담하였으나 약 4천만 DM이 들었다. DFJW는 청소년단체(34%), 고등학생 및 대학생(13%), 운동선수(13%)

직업교육(11%), 장기연구 및 기술교육, 어학교육 및 도시 조합의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1967년에는 7,700여회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가자 수는 약 270,000명이었고 그중 반이 독일 청소년들이었다. 1969년에는 참가자 수가 350,000명으로 증가되었으나, 1970년에는 270,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약 7,000여회의 프로그램에)

1969년의 연방정부 정책교서(敎書)에서 오랫동안 유럽회의에서 논의되던 유럽청년회의 창설이 청소년정책목표로 천명되었고 모든 유럽국가 특히 동유럽 및 동남유럽국가간의 국제청소년활동기구의 창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FDJ의 국제활동범위내에서 국제청소년교류가 실시되고 있다. 동독 대외정책 및 정치교육목적과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소련청소년단체 Komsomol과 약간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주42) 초기에는 생산성적의 비교 및 FDJ와 소련 Komsomol 단체간의 교환을 실시할 목적으로 단체교류가 강화되었었다. 기타 사회주의국가 청소년단체 및 서구 공산당 청소년단체와의 유대관계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제3세계 국가 청소년기구와의 국제활동도 고려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FDJ는 예나 지금이나 -SDAJ 및 SPa-rtakus-AMS와의 접촉에 대하여 -서독의 청소년단체, 노동조합청년회, 사회주의 청소년회와 청소년사회주의자와의 제휴에 관심을 두고 있다.

FDJ는 1948년에 민주주의 청소년세계단체의 구성원이 되었고 1949년에 국제학생연맹에 가입하였다. 그들은 1967년부터 100여국의 공적계획에 의하여 500개이상의 청

제 8 장

소년, 학생, 아동기구와 친선관계를 맺었다. 1969년에는 44개국으로 부터 202명의 회원을 받아들였고 24개국에 121명의 회원을 파견시켰다. (주44)

FDJ 간부회원은 교섭 및 교류에 참가하는 특권을 가지는 계 규칙으로 되어 있다. 동독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서방세계 또는 제3세계의 여행에는 단지 간접적으로 참가하기는 하지만 국부적인 문제 준비 또는 단체대표자의 국제교섭의 사후처리에 봉사하는 활동에 참가하여 FDJ의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청소년의 태도와 자세

500 다음 양편(偏)은 사회과학적-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를 둔 것이다. 청소년의 태도 및 자세에 대한 비교는 본연구의 근거위에서 정립한다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청소년의 실질적인 태도 및 자세에 대한 절대적으로 맞는 규납적추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교연구는 서독과 동독의 정치적으로 중대한 현실의 일부를 표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45)

a) 정치적 영역

501 양독일 모두 청소년의 정치적교시(敎示) 및 정치적자세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동독에서 보다는 서독에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대상으로 한 사회학적 연구 및 의견교환이 더 활발하다.

근년 서독에서는 여러기구 및 박사과정 준비자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46)

동 연구의 목적체는 전체 청소년 또는 학생, 졸업생, 대학생, 청소년노동자 및 지방청소년 등 특수단체들이다. 동 연구는 이들 단체를 대표적인 것으로 선정하여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의 독일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제도, 당 또는 근래의 테모등과 같은 특수한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문답식으로 다루고 있다.

동독에서는 60년대 중반부터 여러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연구를 위한 중앙기구에 의하여 “인생관”에 대한 질문을 서식에 의하여 대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 청소년중 적어도 10%가 정치적관심과 정치적태도를 대상으로 한 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경향분석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 질문에서 본 결과는 여러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주48)

정치적 관심

502 정치적관심 및 정치적 교시(敎示)에 관한한 서독 및 동독의 전술의 연구를 근거로 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양독일에 있어 정치적교시와 정치사회적 활동과 정치조직에의 참여등과 같은 정치적 관심이 여성쪽보다는 남성쪽이 비교적 강하다. 이는 또한 학생의 편이 더 강하다.
- 양독일 모두 정치적관심, 정치적교시와 정치활동의 형태와 범위가 교육기간이 길음에 따라 또 그 질에 따라 더

커지고 넓어지고 있다.

- 양독일 모두 부모의 사회적지위와 정치적관심간에는 함수관계가 있다. 부모의 사회적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치적관심은 더 높다.
- 양독일 모두 정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情報源)이 신문, 텔레비, 라디오 등이다. 또한 양독일 모두 정치학 강의의 빈도와 정치적관심의 정도에는 함수관계가 있다.

양독일에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핵심단체가 있고 중간단체로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제공받고 계몽되는 또 하나의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정치적관심단체와 무관심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는 단체가 동독에서 보다 적으며 서독 청소년의 대부분이 중립적위치에서 관심을 가지는 단체 또 무관심단체에 속하여 있다.

양독일에서 정치적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한 단체에는 사회계층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다.

정치적 자세

- 503 동·서독 비교의 본질적인 관건은 강력한 정치적 관심과 포용력간에 존재하는 상이성이 나타날 때에 발견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서독의 경우 정치적관심이 한편으로는 정치적활동 또 진취적이고 제도비판적이고 기본법적 규범과 가치의 실현을 주장하고 또한 반대하고 제도에 반대하는

억제(억압) 콤플렉스사이에는 함수관계 또는 역함수관계가 있다.

동독의 경우 내면적으로 사회주의 억제를 의식하는 측과 사회주의 실현과 건설을 주장하는 측 둘이 있다는게 확인되었다.

D) 자유시간

504 모든 산업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자유시간 활용태도가 당면한 관심사로 등장한다.

서독에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부와 청소년에게 자유시간을 제공하는 청소년의 자유시간제도에 대하여 부심하고 있다.

국가권력은 소위 단체활동의 보호를 통하여 합당한 자유시간의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만들 것을 제한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청소년자유시간정책이 국가청소년정책의 기본요건이다. 그들은 특히 사회정책면에 있어 자유시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연수교육 스포츠등으로 사기를 교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505 동·서독 청소년의 자유시간의 요구 및 자유시간의 활용태도에 대한 비교는 전술의 연구가 상이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구나 동독에는 대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 고로 다음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문제의 제기를 통하여 확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양독일사회의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유시간의 증가

506 자유시간증가의 결과는 동.서독 모두 소녀또는 부인들은 청소년 또는 남성보다 자유시간이 평균적으로 적은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직업단체에의 존속성은 동.서독에서 모두 자유시간의 범위에 커다란 영향을주고 있다. 서독의 경우 14~25세의 청소년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1964년의 휴식시간에 대한 다음의 추정이다.

	자유시간
일반학생 및 대학생	5 시간 30 분
노동자, 농부, 수공노동자	5 시간 10 분
직공, 관리, 관청직공	4 시간 50 분
수공업, 상업, 공업, 수련자	4 시간 30 분
지주	3 시간 50 분

동독의 경우 청소년자유시간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독 가정에서는 1965년이래 비공식적으로 자유시간이 증가되었는데 “인텔리”들의 가정이 가장 많은 자유시간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이 노동자, 직공, 수공노동자, 농부의 가정 순이다. 서독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

자유시간의 요구

507 동.서독 모두 청소년들은 그들이 “가장좋아하는” 자유시간에 대하여 연구에서 묻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들

은 사실적인 자유시간의 억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청소년들의 의식속에 내재하는 특수한 기호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다. 이는 자유시간의 요구에 있어서 동일점이기도 하고 상이점이기도 하다. 스포츠, 독서, 수공예, 기타 취미 등이 동서독 대부분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자유시간이다. 스포츠 및 기타 취미는 특히 남성쪽에서 독서 및 수공예는 여성쪽에서 요구하고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자유시간의 선용(善用)은 동독에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동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실시되는 연수교육은 요구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및 교회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설문이 자유시간을 배려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자유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소년 소녀의 교제와 같은 활동은 선정되지 않았다.

자유시간의 활용

508 동서독의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유시간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일련의 동일성을 말해주고 있다.

○ 소녀들은 동.서독 모두 청소년에 비하여 자유시간을 적게 활용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노동시간외의 연수교육도 적다는 사실이 일치한다. 그들은 독서도 별로 하지않고 스포츠도 별로 하지않으며 극장도 덜가고 원족도 덜가며 포켓마니도 적다.

○ 전술의 조사는 동.서독의 청소년노동자들이 그들 자유시간을 사교(社交), 극장구경, 원족에 대부분 소비하고 있

음을 알려주고 있다. 일반학생 및 대학생들은 이에 비하여 그들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강연, 교양, 스포츠 및 단체활동에 소비하고 있다.

- 농촌의 청소년 특히 젊은 지주들은 동.서독 모두 도시청년에 비하여 원숙에 그들 시간을 활애하고 있다. 그들은 독서도 별로 많고 극장에도 별로 가지 않으며 자유시간에 단체내에서 사회정치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동.서독의 비슷한 연령의 청소년들의 자유시간활용상태에 비슷한 변혁이 일어나 스포츠활동 및 교회활동이 점차 감소되고 교양교육에 더 열심이고 사회정치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극장, 연주회, 무도회, 향연장소 등에 더 많이 가고 있다.

자유시간의 활용태도에는 특히 두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단체내활동 및 사회정치적활동의 증가에서, 또 하나는 교외의 교양교육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전술의 조사는 서독의 청소년들이 동독청년에 비하여 단체, 청소년기구, 당 등의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적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서독청소년단체의 수는 동독의 그것보다 적다. 동독에서는 청소년노동자들이 일반학생 및 대학생들보다 사회정치적 활동을 덜하고 있다.

- 동.서독의 청소년들은 교양교육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비슷한 정도로 높은 언어 교육을 원하고 있다. 서독

의 청소년들이 동독의 청소년들보다 교양교육에 시간을 덜 소비하는 것은 사실이다.

- 동독에서는 18 세 이상의 청소년 도시거주자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자와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의 청소년들이 환경청소년, 농부, 노동자들보다 교양교육에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3. 추 록

방법에 대한 주해(註解)

동.서독의 자료가 같지않기 때문에 양독일의 청소년지위에 대한 비교는 좁은 관점에 국한하였다.

그래서 청소년의 직업 및 노동에의 억제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특수한 문제는 다루지를 못했다. 또한 동.서독의 청소년범죄의 비교도 단념하였다. 동.서독의 처벌규정 및 제몽규정의 상이점 및 양사회제도에 있어서의 범죄증가의 불명료성 등으로 인하여 비교를 단념치 않을 수 없었다.

사회화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좁은 의미의 청소년보조의 기관과 개념도 비교하지를 못했다. 1971년 연방정부의 제3 청소년문제 보고에서는 이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독 청소년보조기구에 대한 설명도 있다.

또한 군사적인 복합문제 - 동독의 경우는 순군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청소년정책개념 및 전략들 편에서는 동.서독 모두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 - 사회과학적 분석이 없으므로

비교하기가 곤란하였다.

본장에 대한 연구는 현존하는 제도적분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재료의 대부분이 이번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분석을 위해 범주(카테고리)의 확정이 필요하였다.

서독에서는 청소년기구의 수등은 제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교외영역에 있어서의 청소년기구와 청소년보호기구에 대하여 서독의 경우 통계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정확한 통계적파악의 준비가 처음을 시작되었다.

동독의 경우 본고(稿)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정확하다. 표준적 기구등이 중앙기구의 규제를 받고 여러분야의 기구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그들 관계가 통일되어 있어 기구에 대한 보다 정확히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복잡한 기구에 대한 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FDJ에 대해서는 적당한 표현과 관찰을 할 수가 없었다.

청소년의 억제와 태도를 다룬 편에서는 그 비교가 더욱 곤란하였다.

이것들은 불충분한 자료에 그 원인이 있다. 동독의 경우 청소년조사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나마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좀 자세하다. 전술의 결과는 실질적인 경향이 과생되어 나온 날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특수한 예측에 의하여 취급하였다. 이는 특히 청소년의문제-정책, 이데오르기, 국가에 대한 인식-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동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연구의 방법적 표준과 논술과정 및 이들 관계가 동·서독

의 서적 모두가 비슷하게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비교문제에 대한 자료는 서로 다른 구조형태의 설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특히 설문에 근거를 둔 연구의 “자세”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원용된 질문에 있어서 사회과학적인 목적성, 정확성, 신빙성이 확실하고 태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논술에 있어서는 먼저 연구대상이 대중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규정된 범위도 충분히 의식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설문 및 이와 비슷한 연구에서는 빈도수(頻度數)와 퍼센테이지에 기초를 두어 연구결과를 단일문제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논술가치는 비교적 적은 것이며 이들이 원용된 문제와 관계가 없을 때 또는 설문에 나타난 접담간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그외에 질문을 받은 청소년들이 거짓대답을 했을 때에는 설문의 효과는 절감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연구 및 설문을 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연구방법 및 통계적평가방법은 동독이 아직도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 뒤떨어진 것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서독 모두 비슷하다.

동.서독의 연구자료에는 아직까지 총체적인 표준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측에 관한 표준상을 고려하여 확실히 규정된 주류(主流)를 이루는 경향을 논술할 수가 없다.

이와같은 여건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자세와 태도를 다른

양론은 전술의 연구를 조심스럽게 분석하여 확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개관(概觀)한
것이다.

Ⅷ 장에 대한 주해 (註解)

1. 주 3 참조

2. 동등청소법 1970.1.23. 제 10 동등각료회의 “ Presse-Information ” 부록

3. 다음 세목 참조

서독의 경우

청소년복지법률 - 1961.8.11. (민법 I 1193 항)

청소년보호법률 (민법 I. 1058 항) 1967.7.27.

청소년노동보호법률 1960.8.9. (민법 I. 665 항)

청소년국제법률 1953.8.4. (민법 I. 36 항) 및 청소년복지
법률개정 1961.8.11. (민법 I. 1193 항)

교육보호법률 1969.9.19. (민법 I. 1719 항)

동독의 경우

사회주의의 포괄적인 건설을 위한 투쟁에의 청소년참여
및 국민경제, 국가의 선도와 직업, 학교, 문화, 스포츠분야에
있어서의 청소년주도의 다면적인 보호촉진에 대한 법률 -
동독 청소년법률 (법 I. 75 항)

미래의 주인에 대한 축제 1965.3.26. (법 I. 301 항)

청소년과 스포츠인 주간 1965.5.17. (법 II. 381 항)

학생과 생도들의 자유시간활용상태 1967.6.15. (법 I.
500 항)

사회주의청소년정책 실현문제에 대한 계획 1970.8.19.
(법 II. 519 항)

동독노동법 1966.11.23. (법 I. 127 항 §§ 134 - 141)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법령 (법Ⅱ. 219 항)

청소년보조기관의 파업 및 활동형태에 대한 법령 1966.3.

3. (법Ⅱ. 215 항)

독일민주공화국 국가회의 결의 “ 청소년과 사회주의 ” 1967.

3.31. (법Ⅰ. 31 항)

4. 교육 및 보습(補習)의 개인적 보호표준에 대한 보고(동독의 보호표준과 비교된다) - 연방의회록 V/1580 1967.3. 20.
5. 이는 연방 각주(州)의 청소년보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자유도시 함부르크 청소년단체에 발간된 “ 청소년노동에 관한 연방 각주의 보호계획에 대한 고찰 ” (함부르크 1969) 참조.
6. 1962. 5.17. (법Ⅱ. 367)
7. 문교부 청소년보조위원회에 대한 입문서 베르린 1968.
8. 청소년보조법률을 비교함.
1971년 여름에 있었던 연방정부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제 3차 보고는 동문제를 다루었고, 동독의 청소년문제 입법과 청소년보조 지방기구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9. 청소년 복지법률 § 9 (1961.8.11.)
참조: 연방청소년계획 개관 1970. 7.
10. 연방청소년계획의 발전, 특히 보호의 중점에 대한 고찰은 Willy Busch 20 개년 연방청소년계획 참조.
11. 청소년보호계획은 청소년법률 § 39 와 노동법 § 135 에 법 지근거를 두고있다. (주 3 참조)
12. 청소년 보호계획에 있어서의 재정적지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13. “청소년의 통합 및 협력”문제는 다음 편에서 취급.
14. 독일청소년노동 핸드북 H. Westphal - 대부분의 청소년단체가 정치단체내에 청소년기구를 가지고 있다 - 그 수가 4백1십만에 달하는 독일청소년 스포츠인은 특수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들은 1969년부터 연방청년회에서 제외되었다.
15. 숫자는 1970년 기준 청소년기구는 연령에 차가 있는 단체이므로 예측에 의하여 판단하였음. 개개단체는 구성원으로서로 다르게 정의됨. 가족회의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자기단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여러단체의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 1965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관찰하면 14~25세의 청소년들중 26%가 1개 또는 2이상의 청소년기구에 참가하고 있다. (EMNID 청소년교육 지류 시간 1966 참조)
16. 전위기구의 수는 다음에 의함.
 동독통제년보 1970.495 항. FDJ는 젊은세계 1969.12.30. 6항의 우리들의 결산 참조. 그의 청소년들이 다른 대중기구 즉 GST FDGB 또는 DTSSB)에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대중기구내에는 특별한 청소년기구가 없다.
17. 독일 기타부분에 있어서의 청소년 R. Maerker, 문헌 1969. 젊은세대 1967. Note 12 항 참조)
18. 생산교습소의 변천, 직장에서의 고등기술 및 전문기술의 재실시 군사복무의 완수(젊은세대 1967. Note 12, 12항~13항

제 8 장

참조)

19. 1967년 초부터 FDJ 구성원중 18세미만이 56.7%가 됨.
(젊은세대 Note 6. 43항 참조)
20. FDGB의 청소년은 1969년에 약 1백만이 됨. (통계보 1967. Note 6. 328~329항, 젊은세대 1969. Note 8 80항 참조) 사회주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FDJB의 15~25세의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연구 1969. Note 11. 46항 참조)
21. 주 3 참조.
22. B.Lutz, B.O.Seyfarth 청소년노동보호상태에 대한 보고. 연구보고(독일 청소년기구, 문헌) No02/1969.
23. "Stern"지에서 "청소년연구"라는 표제하에 발표된 경쟁은 다른분야에도 있다. 취학치 못한 21세미만의 청소년들은 지역, 주, 연방기관에 의한 자연과학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참가자의 수는 1966년 150명에서 1969년 600명으로 증가되었다.
24. 기타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경쟁이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실시를 시도하고 있다.
25. 젊은세대 1967. Note 12 20항.
26.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목적단체의 수가 종합되어 있음.
젊은세대 1969. Note 4 81항 사회주의 민주주의 1969. 9.26. 부록7항 및 9항 Der Neuerer (A) 1969. Note 10. 333항. Einheit.1970. Note 6 835항.
27. 젊은세대 1969. Note 11. 23항.

28. H.Ebert 청소년 - 사회주의적 보조 및 창조 베르린 1969.
P.119 - 청소년 연구 1969. Note 11 P.46.
29. FDGB의 청소년구성원의 거의 1/4 이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있다. (통계보 1969. Note 6 P.328 - 329: New germany 1970.9.19. P.2 참조)
30. 사회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법률 1965.2.25. (법 I. 83)
§ 5, § 7 참조.
31. 동독 학생교육발전에 대한 FDJ 중앙회의 및 문교부의 Plan 1969.4.9. Neuer Weg(New Way) 1969. Note 12. 부록참조.
32. 청소년연구 1970. Note 13. P.23 - 27 중 H.Müller 청소년의 사회주의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참조.
33. "사회인식" 부분은 Nordrhein - Westfalen의 경우를 예로 함. 사회인식, 정치교육 및 역사참조, 동독의 경우는 국가서민인식과 역사 참조.
34. 분단독일의 교육본질 비교: 연방의회보 V/4609 1969.8.4.- 동비교에 있어서 동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을 정치-이베오르기문제로 다룬데 그치고 있다.
35. H.Westphal 독일 청소년활동핸드북 뮌헨 1968.
36. 특별한 교육절차에서 일어나는 단체활동교육은 구성원의 집단교육과는 다르다.
37. FDJ 학습년도 사회주의청소년회 참가자수 (New Way 1970. No 13, 3)
- | | |
|---------|---------|
| 1966/67 | 423,653 |
| 1967/68 | 531,183 |
| 1968/69 | 742,810 |

1969/70

885,429

38. E.Becker, S.Herkommer, J.Bergmann, 적응을 위한 교육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Frankfurt a.M.1967. M.Teschner,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와 사회 Frankfurt a.M. 1968.
39. 청소년의 외국에의 휴가여행, 방학여행의 증가에 대해서는 동서독 모두 정확한 계획이 없다. 서부독일의 청소년중 얼마가 자력으로 또는 여러 상업적 여행사를 통하여 외국에 여행하였는지는 알려져있지 않다. 그러나 서독의 청소년들이 동독의 청소년들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그들의 휴가를 외국에서 보냈다는 것을 미루어 알수있다.
- 1969년에 동독 여행사의 청소년여행부가 창설되어 약 65,000 명의 청소년들이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 여행하였다. (젊은세대 1969. Note 8. p.27-28) 사적으로 여행한 청소년의 수는 알 수가 없다.
40. 현 청소년계획에 대한 개관 및 실행규정이 자료로 사용되었다. 독일, 프랑스청소년활동 10년보고(1958-1968) 청소년정치적 봉사, Adenau, H.Ott, 국제청소년활동핸드북 Koln 1968.
41. 1969년 연방은 연방청소년계획에 1천2백만 DM을 필요로하였다. (독일-프랑스 청소년활동비용제외) 그중 국제교류 및 청소년교환이 42%, 국제 청소년사회봉사가 45%를 점하고 있다.
42. 특히 FDJ발행 기관지 "젊은세계" 및 "젊은세대"가 자료로 사용되었다.

43. 젊은세대 1967. Note 5, p.45 - 젊은세대 1967. Note 6. p. 43 이하
44. 젊은세계 1969. 12. 30. p.5
45. 추록 방법에 대한 주해 참조
46. K.L.Baker 정치적 문화 Köln, EMNID II, 젊은 지식층 1968/69 H.Hartman, 서독 졸업반 학생들의 세계관 München 1969, W.Jaide 청소년과 민주주의 München 1970. R.Klockhaus, 시민으로서의 젊은 노동자 Nürnberg 1968. H.M.Stimpel, 학생 선생 대학생과 정치 Göttingen 1970. R.Wildenmann, M.Kaase 불안한 세대 Mannheim 1968. D. H.Wissler 정치와 서독 지방청소년과의 관계 Hohenheim 1969.
47. 항상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연구 1968. Note 5. p.59에 수록되어 있다.
48. W.Friedrich 오늘의 청소년 제2판 Berlin 1967. p. 128 - 131. p.Forster, W.Hennig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적 프로필의 특징은 무엇인가? 젊은세대 1968. Note 7 846~49 소개, W.gerth, 젊은 세대의 정치 - 이데오르기적 인식: 직업교육 1968 Note 7 - 8 p.367 ~ 371 소개 W.gerth. 젊은세대의 태도와 자세: 청소년연구 1968. Note 8, p.27 ~ 46 소개. Gerth. 청소년노동자의 역할....., 청소년연구 1969 Note 11 p.59 - 76. K.Starke.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요일 1970.12. 15. p. 3 ~ 5 소개 기타 동문제에 대한 것: R.Johne 등 대학생의 제급관점의 발전에 대하여: 청소년연구 1969. Note 10. p.5 ~ 24 소개.

H.Muller 청소년과 민주주의 : 청소년연구 1969. Note 11. P.45 ~ 58 소재 : 젊은세대 (Jungere Neuerer.) : 당신의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 Der Neuerer 1968. Note 6. P.192 ~ 194. D.Spiegel 청소년 사상교육에 있어서의 부인(婦人)의 직업활동 : 노동과 노동권 1969. Note 11. P.337 ~ 340.

49. 동독의 정치적관심의 형태와 증가에 관한 결과에 대한 논술은 정치적관심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에 대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관심의 테스트가 이용된 연구에 있어서는 다른문제에 비하여 정치가 주요관심사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청소년연구 1968.Note 5. P.19 ~ 33 소재 청소년의 관심형태 W.Hennig 참조, 젊은세대 1968.Note 4. P.26 ~ 27 소재. 자유시간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단체 참조) 서독에서는 이와같은 연구가 아직 없다. 동독에서 나온 결과가 서독의 그것과 다를것이라는 논거는 아직 없다.

50. 자유시간 편(編)은 Jürgen Micksch (에어랑엔-뉴른벨그 대학의 사회학 및 사회인류학 인스티튜트)의 논문에 의거하였다.

51. 자유시간 개념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음의 것에 의거하였다. 자유시간할당연구에서는 자유시간을 다음과 같은 경우 인간에게 남을 수 있는 시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① 직업의 활동시간
- ② 활동과 관련된 시간

③ 정신적 필요에 의한 자유시간의 소비

④ 가정일과 기타 일일노동으로 부터 해방된 시간

“자유시간”은 집무로 부터 해방되거나 부분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52. 서독의 경우

V.Graf 대 Blucher 논쟁 천진난만한 세대 Düsseldorf
1966. EMMID 청소년, 교육과 자유시간 1966.

동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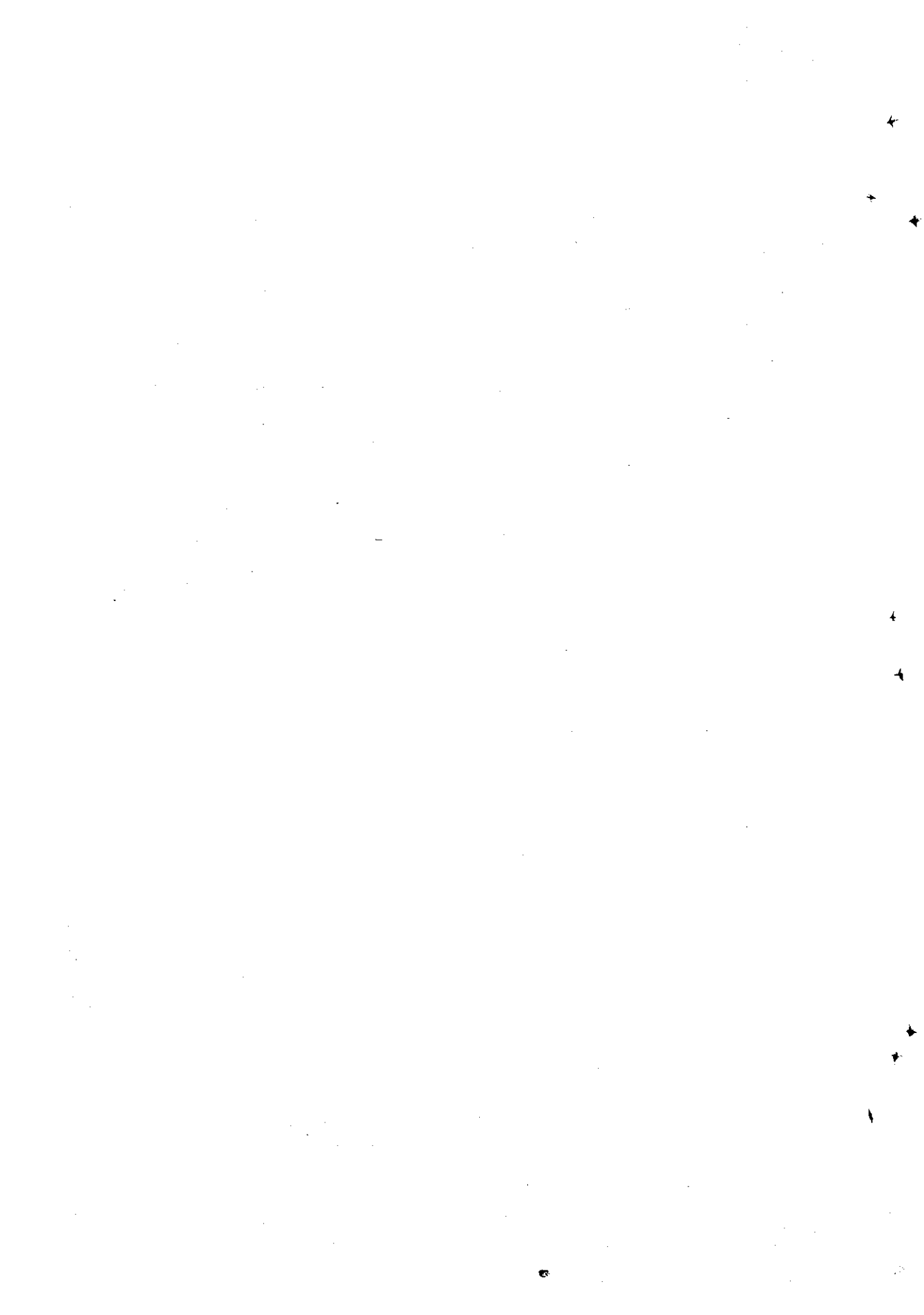
W.Friedrich 오늘의 청소년 제 2 판 Berlin 1967. : 청소년과 자유시간: 젊은세대 1968. Note 2. p.47 ~ 52 소재.

G.Lippold 민중의 시간할당의 구조적분석: 경제 1967. No 6 .

p.14 ~ 15 소재: W.Otto 청소년과 영화의 관계: 청소년연구 1967. Note 3 ~ 4 소재. G.Röblitz 청소년의 자유생활의

문제: 등

53. 주 52 참조.



약 자 기 초 설 명

ABB	Arbeitsstelle für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경영체가 운영하는 직업교육용 작업장
AK	Arbeitskraft 노동력
AMS	Assoziation Marxistischer Studenten 맑스주의 학생연맹
BAV	Brutto-Anlagevermögen 총 투자력
BfE	Bundesstelle für Entwicklungshilfe 후진국원조를 위한 연합회
BGBI	Bundesgesetzblatt 연방법률공보 (일종의 판보)
BMSR-Technik	Betriebs-, Meß-, Steuerungs-, Regel-Technik
BMWi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서독 경제성
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서독 경제협동성
BRD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CERN	Conseil Europé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TS	Conference Européenne pour Telecommunication par Satellites
CSSR	Ceskoslovenska socialisticka republika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

DA G	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독일 고용인 노동조합
DB	Durchführungsbestimmung 시행규칙
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민주공화국(동독)
DED	Deutscher Entwicklungsdienst 독일 후진국 원조처
DGB	Deutscher Gewerkschaftsbund 독일 노동조합 연맹
DIW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Berlin 독일 경제연구소, 백림소재
DTSB	Deutscher Turn- und Sportbund 독일 체육연맹
DV	Deutschland- Vertrag 독일조약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구라파 경제위원회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구라파 자유무역협회
EGKS	Europäische Gemeinschaft für Kohle und Stahl 구라파 석탄 강철 공동체
ELDO	European Launcher Development Organization
EOS	Erweiterte Oberschule
ESRO	Europe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구라과 대기권 연구 기구
Euratom	European Atomic Community 구라과 원자력 공동관리회
EWG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구주 경제 공동체
FDGB	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자유독일 노동조합연맹
FDJ	Freie Deutsche Jugend 자유독일 청년단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무역에 관한 협동협약
GAWI	Deutsche Förderungsgesellschaft für Entwicklungsländer 후진국을 위한 독일 촉진협회
GBI	Gesetzblatt der DDR 동독 법률공보
GE	Getreideeinheit 곡물단위
GST	Gesellschaft für Sport und Technik 운동과 기술협회
GV	Großvieheinheit 대가축 단위
HWWA	Hamburgisches Welt-Wirtschafts-Archiv 함부르크 세계경제 문고
IGH	Internationaler Gerichtshof 국제재판소
KPdST	Kommunistische Partei der Sowjetunion 소련공산당

K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재건을 위한 신용대부기관
kWh	Kilowattstunde 킬로와트 촌(전력단위)
LN	Landwirtschaftliche Nutzfläche 가용 농경지
LPG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농업생산조합
m	männlich 남성의
MW	Megawatt 메가와트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MP	Nahrungsmittelproduktion 식료품 생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구라과 경제협동기구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ation
RGW	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경제상호원조이사회
SDAJ	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jugend 사회주의 독일 노동청년단
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SKE	Steinkohleneinheit 석탄단위
UdSS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소련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역 및 개발회의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연합공업발전기구
VAR	Vereinigte Arabische Republik 아랍연방공화국
VDS	Verband Deutscher Studentenschaften 독일 학생동맹
VEB	Volkseigener Betriebe 인민이 소유하는 사업(동독 국영기업)
VEG	Volkseigenes Gut 동독국영농장
VVB	Vereinigung Volkseigener Betriebe 동독국영기업연합회
W	weiblich 여성의

WEU

Westeuropäische Union

서구연맹

ZK

Zentralkomitee

중앙위원회

일 람 표

五

六

七

A1 ~ A25

부호설명 - 없음

- O 최소단위의 반 이하수치
통계보고 자료가 없는 경우
- X 보고가 무가치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경우

일람표 A 1

서독의 경우 1960년에서 1969년까지의 국내상업발전상황일람¹
(D.M=독일마르크)

구분 年度	단 위 100万 DM ²				対前年度 변동비율(%) ³		
	서독의수요 ⁴	서독의공급 ⁴	거래실적	결 산	수 요	공 급	거래실적
1960	1,123	960	2,082	-163	•	•	•
1961	941	873	1,814	-68	-16	-9	-13
1962	914	853	1,767	-61	-3	-2	-3
1963	1,022	860	1,882	-162	12	1	7
1964	1,027	1,151	2,178	124	0	34	16
1965	1,260	1,206	2,466	-54	23	5	13
1966	1,345	1,625	2,971	280	7	35	20
1967	1,264	1,483	2,747	219	-6	-9	-8
1968	1,440	1,432	2,872	-8	14	-3	5
1969	1,565	2,272	3,837	707	9	59	34

1. 상품거래 (서비스 제외)

2. 계산단위=독일 마르크(서부독일 화폐단위)

3. 소수점 이하를 생략한 略數의 기초 위에서 조사 산출된 數值

4. 서부「베르린」포함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F, Reihe 6, Wären-
verkehr Zwischen den Währungs gebieten der DM-West
und DM-Ost, Mehrere Jahrgänge.

일람표 A 2

서독의 경우 1955년에서 1969년까지의 국내상업의 수요 (제산단위 백만)

구분 (생산)	년	도	1955	1960	1961
광업 및 생산재			166.2	266.7	209.7
원료 및 생산재			166.2	353.5	325.5
원료 및 생산재 중에서, 석유 생산 ²			58.7	212.9	189.4
원료 및 생산재 중에서, 화학품 생산 ²			71.9	77.4	67.5
투자재 중에서, 기계 제작 생산재			69.9	106.4	98.5
투자재 중에서, 기계 제작 생산재			58.0	74.6	64.8
소비재 중에서, 섬유 및 피복			121.6	212.9	196.0
소비재 중에서, 섬유 및 피복			90.4	147.2	137.1
농업 및 식량 산업 생산 ³			56.6	180.3	108.5
농업 및 식량 산업 중에서, 곡물			9.6	72.6	9.2
농업 및 식량 산업 중에서, 돼지고기				48.4	36.1
기타의 생산재			0.2	2.8	2.7
총계			580.7	1,122.5	940.9
이 중에서, 서부베르린에서의 수요 ⁴			126.2	184.3	165.4
비율구조 (%)					
광업 및 생산재			28.6	23.8	22.3
원료 및 생산재			28.6	31.5	34.6
이 중에서, 석유 생산			10.1	19.0	20.1
이 중에서, 화학품 생산			12.4	6.9	7.2
투자재 중에서, 기계 제작 생산재			12.0	9.5	10.5
투자재 중에서, 기계 제작 생산재			10.0	6.6	6.9
소비재 중에서, 섬유 및 피복			20.9	19.0	20.8
소비재 중에서, 섬유 및 피복			15.6	13.1	14.6
농업 및 식량 산업 생산			9.7	16.1	11.5
이 중에서, 곡물			1.7	6.5	1.0
이 중에서, 돼지고기				4.3	3.8
기타의 생산재			0.2	0.1	0.3
총계			100.0	100.0	100.0
이 중에서, 서부베르린 수요			21.7	16.4	17.6

1. 서부「베르린」포함
2. 고무 및 석면 등의 합성수지 생산을 포함한다.
3. 유흥음식으로 쓰이는 입산물 수렴산물 어로산물등 포함
4. 철도무역제의 직접 현지에서 행해진 수요, 공급만 취급
5. 연방정부의 평균지불금 제외 (7천5백만 VM)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F, Reihe 6, DM-Ost.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240.5	255.9	252.4	213.9	171.0	122.5	113.7	101.1
306.5	341.8	211.9	274.8	275.2	247.3	322.1	334.0
202.3	215.8	65.6 ⁵	69.3	67.5	20.7	18.4	36.5
51.7	58.8	75.6	101.4	83.6	105.4	124.9	135.5
84.4	83.3	122.1	152.0	150.4	133.3	184.5	227.2
58.5	50.0	61.6	71.1	70.9	56.8	68.1	105.5
162.9	197.9	260.2	326.9	369.0	356.8	460.1	509.1
103.1	129.1	180.7	221.5	244.4	230.1	289.1	314.3
117.7	140.5	177.2	288.6	375.7	397.5	351.1	390.6
33.9	59.1	61.5	95.0	149.6	148.7	101.1	72.3
25.2	21.7	44.2	83.7	89.8	81.2	48.3	5.0
2.5	2.9	3.6	4.2	4.1	6.5	8.0	3.3
914.5	1,022.3	1,027.4	1,260.4	1,345.4	1,263.9	1,439.5	1,565.3
165.9	197.2	224.6	278.4	312.9	287.7	310.3	346.2
비율구조 (%)							
26.3	25.0	24.6	17.0	12.7	9.7	7.9	6.5
33.5	33.4	20.6	21.8	20.5	19.6	22.4	21.3
22.1	21.1	6.4	5.5	5.0	1.6	1.3	2.3
5.7	5.8	7.4	8.0	6.2	8.3	8.7	8.7
9.2	8.1	11.9	12.1	11.2	10.5	12.8	14.5
6.4	4.9	6.0	5.6	5.3	4.5	4.7	6.7
17.8	19.4	25.3	25.9	27.1	28.2	32.0	32.5
11.3	12.6	17.6	17.6	18.2	18.2	20.1	20.1
12.9	13.7	17.2	22.9	27.9	31.5	24.4	25.0
3.7	5.8	6.0	7.5	11.1	11.8	7.0	4.6
2.8	2.1	4.3	6.6	6.7	6.4	3.4	4.3
0.3	0.4	0.4	0.3	0.3	0.5	0.5	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8.1	19.3	21.9	22.1	23.3	22.8	21.6	22.1

Warenverkehr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일람표 A 3
서독의 경우 1955년에서 1969년까지의 국내산업의 공급 I (계산단위 백만)

구분 (생산)	년 도	1955	1960	1961
광업 생산		26.7	34.2	39.8
원료 및 생산재		170.5	465.6	490.4
이중에서 철과강철 2		70.5	271.9	335.5
이중에서 화학제품 생산 3		81.0	136.3	112.3
투자재		136.8	251.3	199.4
이중에서 기계제작 생산		33.1	139.4	112.4
소비재		46.8	87.7	69.5
농업 및 곡물 산업 생산		140.3	115.9	70.9
기타의 생산		-	4.8	2.9
총계		521.1	959.5	872.9
이중에서 서부「베르린」에서의 공급 ⁵		42.9	74.3	64.6
		비율 (%)		구조
광업 생산		5.1	3.6	4.6
원료 및 생산재		32.7	48.5	56.2
이중에서 철과강철 2		13.5	28.3	38.4
이중에서 화학제품 생산 3		15.5	14.2	12.9
투자재		26.3	26.2	22.8
이중에서 기계제작 생산		6.4	14.5	12.9
소비재		9.0	9.1	8.0
농업 및 곡물 산업 생산		26.9	12.1	8.1
기타의 생산		-	0.5	0.3
총계		100.0	100.0	100.0
이중에서 서부「베르린」에서의 생산		8.2	7.7	7.4

1. 서부「베르린」포함
2. 주물생산 포함
3. 고무 및 석면등의 합성수지 생산을 포함한다.
4. 유흥음식으로 쓰이는 입업수렵 고기잡이 등에 의한 생산을 포함한다.
5. 철도무역제외. 한지의 직접적인 공급과 수요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F, Reihe 6.

DM-West und der DM-Ost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40.1	71.5	86.9	29.9	32.8	30.0	22.2	73.6
450.0	418.4	500.2	648.3	768.6	668.7	712.8	1,171.1
328.8	268.9	234.0	286.2	343.3	206.8	192.8	350.2
71.4	103.9	204.3	282.1	352.8	353.8	364.8	469.6
127.6	122.6	215.6	190.6	302.2	343.6	324.4	500.3
63.7	73.2	153.6	146.0	222.7	250.4	188.0	356.0
64.4	65.2	92.7	94.0	149.3	158.8	134.7	186.7
169.4	180.6	253.9	239.5	364.4	274.8	231.9	337.8
1.2	1.3	1.7	3.8	8.0	7.1	6.1	2.3
852.7	859.5	1,151.0	1,206.1	1,625.3	1,483.0	1,432.1	2,271.8
64.4	44.1	44.4	38.8	85.2	112.4	113.5	172.6
				비율 (%)		구조	
4.7	8.3	7.5	2.5	2.0	2.0	1.6	3.2
52.8	48.7	43.5	53.8	47.3	45.1	49.8	51.5
38.6	31.3	20.3	23.7	21.1	13.9	13.5	15.4
8.4	12.1	17.7	23.4	21.7	23.9	25.5	20.7
15.0	14.3	18.7	15.8	18.6	23.2	22.7	22.0
7.5	8.5	13.3	12.1	13.7	16.9	13.1	15.7
7.6	7.6	8.1	7.8	9.2	10.7	9.4	8.2
19.9	21.0	22.1	19.9	22.4	18.5	16.2	14.9
-	0.1	0.1	0.2	0.5	0.5	0.3	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6	5.1	3.9	3.2	5.2	7.6	7.9	7.6

Warenverkehr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일람표 A 4

서독의 경우 1958, 1968, 1969 3년간 상품유형별 지역별 수출실적 일람

지역구분 상품별	년 도	총수출고	E W G (구주공동시장)				
			총 계	프 랑 스	이 태 리	네델란드	벨 지 음 룩셈블그
총수출고	1958	36,998.1	9,465.4	2,164.3	1,853.4	2,994.8	2,452.9
	1968	99,551.4	37,367.7	12,241.5	7,568.0	10,114.4	1,443.8
	1969	113,556.7	45,176.8	15,118.1	9,260.3	11,521.5	9,276.9
식품 및 유종음식	1958	881.7	322.8	64.2	74.4	94.8	59.4
	1968	2,784.6	1,683.4	386.1	704.3	389.6	203.4
	1969	3,656.6	2,130.8	529.1	879.6	476.4	245.7
공업생산	1958	35,998.3	9,132.3	2,091.7	1,772.2	2,884.7	2,383.7
	1968	96,098.3	35,471.0	11,785.3	6,834.3	9,658.9	7,192.5
	1969	109,308.2	42,750.0	14,491.4	8,338.7	10,954.9	8,965.1
원 료	1958	1,710.0	1,054.4	359.0	155.0	296.1	244.3
	1968	3,162.7	2,104.4	639.4	335.8	581.1	498.1
	1969	3,079.6	2,080.6	613.6	457.1	525.1	484.8
연 료	1958	1,072.8	822.9	326.5	114.1	198.6	183.7
	1968	1,409.6	1,187.2	461.6	165.2	289.3	271.0
	1969	1,217.1	1,058.6	430.0	165.4	205.6	257.6
광 석	1958	34.3	13.0	0.5	0.3	9.3	2.9
	1968	145.2	97.6	14.4	2.7	29.6	51.0
	1969	115.3	72.4	6.6	5.4	33.4	27.0
반 제 품	1958	3,890.3	1,464.6	511.0	231.6	256.9	465.1
	1968	8,562.5	3,785.7	1,105.0	877.4	931.5	871.9
	1969	8,900.4	4,334.9	1,311.9	956.1	1,008.7	1,058.2
섬 유 반 제 품	1958	305.8	44.8	4.4	7.4	25.7	7.3
	1968	1,346.9	514.1	125.3	101.6	173.8	113.5
	1969	1,748.2	728.7	200.7	142.8	240.7	144.5

(계산단위 : 백만 D.M.)

EFTA (구주 자유 무역 연합)				미 국	카나타	기 타 의 동 맹 지역국가	기 타 의 지 역 국 가
총 계	동맹체제 참여국가		기타국가				
	전독일블럭	기타국가					
10,194.6	1,460.1	2,559.2	6,175.3	2,642.4	437.5	744.6	13,513.6
22,662.4	4,027.9	4,656.9	13,977.6	10,835.3	1,106.4	1,698.3	25,881.3
25,674.3	4,591.1	5,285.1	15,798.1	10,633.0	1,259.3	1,796.5	29,016.3
292.6	76.4	55.3	160.9	82.7	7.2	4.3	172.1
604.5	97.3	108.3	398.9	184.8	18.7	9.4	483.8
632.4	107.7	112.9	412.8	147.7	22.8	34.8	660.1
9,859.8	1,383.8	2,498.7	5,987.3	2,545.7	429.4	739.2	13,093.9
21,919.5	3,889.7	4,534.7	13,495.1	10,606.1	1,085.1	1,687.0	25,329.6
24,882.0	4,433.9	5,155.0	15,293.1	10,405.6	1,233.6	1,758.9	28,278.1
330.0	36.8	48.0	245.2	73.7	2.2	9.0	240.7
574.5	90.4	75.8	403.3	134.0	2.8	33.9	313.2
559.8	49.5	82.5	427.8	86.7	3.1	36.3	313.1
157.7		10.6	147.1	0.0	-	1.3	90.9
205.4	43.9	4.3	157.2	7.0	-	0.3	16.7
133.0	0.0	1.5	131.5	-	-	0.0	25.5
12.2	0.3	0.5	11.4	1.7	-	0.0	7.4
27.8	8.6	1.3	17.9	10.7	-	0.0	9.1
36.1	10.5	0.1	25.5	1.9	-	0.0	4.9
1,004.8	117.2	291.4	596.2	124.3	9.3	55.0	1,232.3
1,950.7	385.5	350.2	1,215.0	712.9	32.7	105.8	1,974.7
2,086.3	423.6	353.5	1,309.2	377.1	37.7	109.7	1,254.7
109.5	4.1	24.1	81.3	17.2	1.7	4.9	127.7
343.0	46.7	77.1	219.2	95.9	5.0	31.1	357.8
399.6	54.6	79.0	266.1	119.2	14.6	27.5	458.5

지역구분 상품별	년 도	총수출고	E W G (구주공동시장)				벨 지 음 룩셈블그
			총 계	프 랑 스	이 태 리	네 벨란드	
금 속	1958	787.8	326.1	86.6	122.5	54.3	62.7
	1968	2,488.6	1,249.8	373.5	513.6	181.4	181.3
	1969	2,359.4	1,438.1	473.2	582.2	169.4	213.3
완 성 품	1958	30,398.0	6,613.5	1,221.8	1,385.6	2,331.8	1,674.3
	1968	84,373.1	29,580.8	10,040.9	5,571.2	8,146.3	5,822.5
	1969	97,328.2	36,334.4	12,565.9	6,925.4	9,421.0	7,422.0
심유및피복	1958	1,481.3	265.5	19.2	44.5	123.3	78.5
	1968	4,567.9	2,132.0	522.3	289.6	974.9	345.3
	1969	5,437.1	2,677.1	730.8	375.5	1,133.4	437.4
철 계 및금속상품	1958	5,754.9	1,175.7	166.6	186.3	599.3	223.5
	1968	12,481.5	4,888.2	1,743.9	663.8	1,682.7	797.8
	1969	14,504.6	6,145.1	2,218.0	881.4	1,961.4	1,084.2
기 계 류	1958	7,559.5	1,930.5	545.7	481.0	478.7	424.6
	1968	20,785.9	6,710.9	2,741.3	1,559.4	1,422.2	988.0
	1969	23,285.1	7,692.1	3,239.2	1,762.7	1,511.1	1,179.0
선 박	1958	5,919.4	915.8	152.7	63.5	336.1	363.5
	1968	16,183.6	4,609.9	1,457.5	670.4	858.9	1,523.1
	1969	18,802.9	5,940.8	1,858.0	916.8	976.0	2,190.0
전 기 공업생 산	1958	3,182.8	726.8	76.1	187.5	273.0	190.2
	1968	8,746.3	3,283.8	936.1	718.1	1,002.0	627.6
	1969	10,467.5	4,200.4	1,261.3	905.8	1,206.7	826.8
정밀기계및 광학기 계 생 산	1958	1,015.2	184.7	25.4	53.4	62.7	43.2
	1968	2,364.9	752.2	273.4	161.7	201.6	115.6
	1969	2,705.4	903.0	349.4	197.0	226.7	129.9
제 약 및 화 학제 품 생 산	1958	3,363.2	820.9	163.0	235.6	253.6	168.7
	1968	12,384.8	4,144.6	1,315.4	1,093.4	1,011.0	724.9
	1969	14,309.2	5,103.3	1,614.4	1,372.0	1,228.0	889.0

1. 농산물 및 공산품별
2. 소비국가

총 계	E F T A (구 주 자유 무역 연합)			미 국	카나다	기 타 의 동 맹 지역국가	기 타 의 지 역 국 가
	동맹체제참여국가						
	전독일분력	기타국가	기타국가				
131.2	26.7	21.1	83.4	47.6	1.3	22.2	259.4
371.8	139.9	37.6	194.3	494.1	15.0	10.4	347.5
397.5	103.1	42.0	252.4	164.6	10.2	11.2	337.8
8,525.0	1,219.8	2,159.3	5,145.9	2,347.7	417.9	675.2	11,818.7
19,394.2	3,413.8	4,108.6	11,871.8	9,759.1	1,049.6	1,247.2	23,342.2
22,236.0	3,960.8	4,719.0	13,556.2	9,941.8	1,192.8	1,613.0	26,010.2
644.2	72.9	160.2	411.1	105.0	27.4	20.7	418.5
1,226.7	124.0	210.6	892.1	256.8	50.5	46.4	855.5
1,289.9	118.1	233.2	938.6	330.3	44.2	61.4	1,034.2
1,161.5	94.7	312.6	754.2	372.1	61.7	148.2	2,835.7
2,584.0	320.0	658.3	1,605.7	1,515.2	142.8	155.5	3,195.8
3,126.9	315.9	809.0	2,002.0	1,251.0	152.2	184.6	3,644.8
1,832.6	385.9	343.1	1,103.6	334.0	65.3	186.5	3,211.1
4,421.3	1,212.3	807.6	2,401.4	1,645.5	253.4	490.1	7,264.7
4,769.0	1,180.4	886.1	2,702.5	1,794.4	320.8	481.4	8,227.4
1,989.7	181.5	734.0	1,024.2	838.5	132.5	113.7	1,929.7
3,398.2	536.5	890.7	1,971.0	4,339.4	251.3	273.0	3,311.8
4,152.7	1,000.4	1,014.4	2,137.0	4,351.2	264.2	294.9	3,799.1
965.3	103.8	193.5	668.0	123.4	31.2	88.1	1,248.0
2,370.9	283.3	519.4	1,568.2	433.1	91.1	215.8	2,351.6
2,812.2	322.8	609.3	1,880.1	472.7	97.8	218.5	2,665.9
285.7	56.2	59.1	170.4	173.7	29.8	8.3	333.0
531.7	105.0	113.0	313.7	366.2	49.5	28.1	537.2
637.0	111.3	129.3	396.4	434.1	54.9	26.7	649.7
943.0	202.1	196.4	544.5	146.7	30.0	76.8	1,345.8
2,896.7	580.5	563.1	1,753.1	594.3	133.3	236.4	4,374.5
3,357.7	648.5	654.5	2,054.7	657.7	163.3	246.7	4,780.5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 Der Aussen Handel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eil 3 : Bezugs- und Absatzgebiete nach Warengruppen und -untergruppen, 1958. Nr. 4 ; Aussenhandel, Reihe 3 : Spezialhandel nach Ländern und Warengruppen, 1968 und 1969.

일람표 A 5

서독의 경우 1958, 1968, 1969, 3년간의 상품별 및 지역별 수출구조

지 역 구 분 상 품 별	년 도	총수출고		E W G (구준공동시장)									
				총 계		프랑 스		이태 리		네델란드		벨 지 움 루셈블그	
		a	b	a	b	a	b	a	b	a	b	a	b
총수출고	1958	100	100.0	25.6	100.0	5.8	100.0	5.0	100.0	8.1	100.0	6.6	100.0
	1968	100	100.0	37.5	100.0	12.3	100.0	7.6	100.0	10.2	100.0	7.5	100.0
	1969	100	100.0	39.8	100.0	13.3	100.0	8.2	100.0	10.1	100.0	8.2	100.0
식 품 및 유 홍 음 식	1958	100	2.4	36.6	3.4	10.7	3.0	8.4	4.0	10.8	3.2	6.7	2.4
	1968	100	3.0	56.4	4.5	12.9	3.2	23.6	9.3	13.1	3.9	6.8	2.7
	1969	100	3.2	38.3	4.7	14.5	3.5	24.1	9.5	13.0	4.1	6.7	2.6
공 업 생 산	1958	100	97.3	25.4	96.5	5.8	96.6	4.9	95.6	8.0	96.3	6.6	97.2
	1968	100	96.5	36.9	94.9	12.3	96.3	7.1	90.3	10.1	95.5	7.5	96.6
	1969	100	96.3	39.1	94.6	13.3	95.9	7.6	90.0	10.0	95.1	8.2	96.6
원 료	1958	100	4.6	61.7	11.1	21.0	16.6	9.1	8.4	17.3	9.9	14.3	10.0
	1968	100	3.2	66.5	5.6	20.2	5.2	12.2	5.1	18.4	5.7	15.7	6.7
	1969	100	2.7	67.6	4.6	19.9	4.1	14.8	4.9	17.1	4.6	15.7	5.2
연 료	1958	100	2.9	76.7	8.7	30.4	15.1	10.6	6.2	18.5	6.6	17.1	7.5
	1968	100	1.4	84.2	3.2	32.7	3.8	11.7	2.2	20.5	2.9	19.2	3.6
	1969	100	1.1	87.0	2.3	35.3	2.8	13.6	1.8	16.9	1.8	21.2	2.8
광 석	1958	100	0.1	37.9	0.1	1.5	0.0	0.9	0.0	27.1	0.3	8.5	0.1
	1968	100	0.1	67.2	0.3	9.9	0.1	1.9	0.0	20.4	0.3	35.1	0.7
	1969	100	0.1	62.8	0.2	5.7	0.0	4.7	0.1	29.0	0.3	23.4	0.3
반 제 품	1958	100	10.5	37.6	15.5	13.1	23.6	6.0	12.5	6.6	8.6	12.0	19.0
	1968	100	8.6	44.2	10.1	12.9	9.0	10.2	11.6	10.9	9.2	10.2	11.7
	1969	100	7.8	48.7	9.6	14.7	8.7	10.7	10.3	11.3	8.8	11.9	11.4
섬 반 제 품	1958	100	0.8	14.7	0.5	1.4	0.2	2.4	0.4	8.4	0.9	2.4	0.3
	1968	100	1.4	38.2	1.4	9.3	1.0	7.5	1.3	12.9	0.7	8.4	1.5
	1969	100	1.5	41.7	1.6	11.5	1.3	8.2	1.5	13.8	2.1	8.3	1.6
금 속	1958	100	2.1	41.4	3.4	11.0	4.0	15.5	6.6	6.9	1.8	8.0	2.6
	1968	100	2.5	50.2	3.3	15.0	3.1	20.6	6.8	7.3	1.8	7.3	2.4
	1969	100	2.1	61.0	3.2	20.1	3.1	24.7	6.3	7.2	1.5	9.0	2.3

백분율 (%)

E F T A (구주자유 무역연합)								미 국		카 나 다		기 타 의 동 맹 지역 국가		기 타 의 지역 국가	
총 계		동맹제제참여국가				기타국가									
		全独逸블력		기타국가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27.6	100.0	3.9	100.0	6.9	100.0	16.7	100.0	7.1	100.0	1.2	100.0	2.0	100.0	36.5	100.0
22.8	100.0	4.0	100.0	4.7	100.0	14.0	100.0	10.9	100.0	1.1	100.0	1.7	100.0	26.0	100.0
22.6	100.0	4.0	100.0	4.7	100.0	13.9	100.0	9.4	100.0	1.1	100.0	1.6	100.0	25.6	100.0
33.2	2.9	8.7	5.2	6.3	2.2	18.2	2.6	9.4	3.1	0.8	1.6	0.5	0.6	19.5	1.3
20.3	2.7	3.3	2.4	3.6	2.2	13.4	2.9	6.2	1.7	0.6	1.7	0.3	0.6	16.2	1.9
17.3	2.5	2.9	2.3	3.1	2.1	11.3	2.6	4.0	1.4	0.6	1.8	1.0	1.9	18.1	2.3
27.4	96.7	3.8	94.1	6.9	97.6	16.6	97.0	7.1	96.3	1.2	98.1	2.6	99.3	36.4	96.9
22.8	96.7	4.0	96.6	4.7	97.4	14.0	96.5	11.0	97.9	1.1	98.1	1.8	99.3	26.4	97.9
22.8	96.9	4.1	96.6	4.7	97.5	14.0	96.8	9.5	97.9	1.1	98.0	1.6	97.9	25.9	97.5
19.3	3.2	2.2	2.5	2.8	1.9	14.3	4.0	4.3	2.8	0.1	0.5	0.5	1.2	14.1	1.8
18.2	2.5	2.9	2.2	2.4	1.6	12.9	2.9	4.2	1.2	0.1	0.3	1.1	2.0	9.9	1.2
18.2	2.2	1.6	1.1	2.7	1.6	13.9	2.7	2.8	0.8	0.1	0.2	1.2	2.0	10.2	1.1
14.7	1.5	-	-	1.0	0.4	13.7	2.4	0.0	0.0	-	-	0.1	0.2	8.5	0.7
14.6	0.9	3.1	1.1	0.3	0.1	11.2	1.1	0.0	0.0	-	-	0.0	0.0	1.2	0.1
10.9	0.5	0.0	0.0	0.1	0.0	10.8	0.8	-	-	-	-	0.0	0.0	2.1	0.1
35.6	0.1	0.9	0.0	1.5	0.0	33.2	0.2	5.0	0.1	-	-	0.0	0.0	21.6	0.1
19.1	0.1	5.9	0.2	0.9	0.0	12.3	0.1	7.4	0.1	-	-	0.0	0.0	6.3	0.0
31.3	0.1	9.1	0.2	0.1	0.0	22.1	0.2	1.6	0.1	-	-	0.0	0.0	4.2	0.0
25.8	9.9	3.0	8.0	7.5	11.4	15.3	10.0	3.2	4.7	0.2	2.1	1.4	7.4	31.7	9.1
22.8	8.6	4.5	9.6	4.1	7.5	14.2	8.7	8.3	6.6	0.4	3.0	1.2	6.2	23.1	7.6
23.4	8.1	4.8	9.2	4.0	6.7	14.7	8.3	4.2	3.5	0.4	3.0	1.2	6.1	22.0	6.7
35.8	1.1	1.3	0.3	7.9	0.9	26.6	1.3	5.6	0.7	0.6	0.4	1.6	0.7	41.8	0.9
25.5	1.5	3.5	1.2	5.7	1.7	16.3	1.6	7.1	0.9	0.4	0.5	2.3	1.8	26.6	1.4
22.9	1.6	3.1	1.2	4.5	1.5	15.2	1.7	6.8	1.1	0.8	1.2	1.6	1.5	26.2	1.6
16.7	1.3	3.4	1.8	2.7	0.8	10.6	1.4	6.0	1.8	0.2	0.3	2.8	3.0	32.9	1.9
14.9	1.6	5.6	3.5	1.5	0.8	7.8	1.4	19.9	4.6	0.6	1.4	0.4	0.6	14.0	1.3
16.8	1.5	4.4	2.2	1.8	0.8	10.7	1.6	7.0	1.5	0.4	0.8	0.5	0.6	14.3	1.2

지역구분 상품별	년도	BWG (구주공동시장)											
		총수출고		총 계		프랑스		이태리		베넬란드		벤 지 움 룩셈블그	
		a	b	a	b	a	b	a	b	a	b	a	b
완 제 품	1958	100	82.2	21.8	69.9	4.0	56.5	4.6	74.8	7.7	77.9	5.5	68.3
	1968	100	84.8	35.1	79.2	11.9	82.0	6.6	73.6	9.7	80.5	6.9	78.2
	1969	100	85.7	37.3	80.4	12.9	83.1	7.1	74.8	9.7	81.8	7.6	80.0
섬유 및 피복	1958	100	4.0	17.9	2.8	1.3	0.9	3.0	2.4	8.3	4.1	5.3	3.2
	1968	100	4.6	6.7	5.7	11.4	4.3	6.3	3.8	21.3	9.6	7.6	4.6
	1969	100	4.8	49.2	5.9	13.4	4.8	6.9	4.1	20.8	9.8	8.0	4.7
철제 및 금속품	1958	100	15.6	20.4	12.4	2.9	7.7	3.2	10.1	10.4	20.0	3.9	9.1
	1968	100	12.5	39.2	13.1	14.0	14.2	5.3	8.8	13.5	16.6	6.4	10.7
	1969	100	12.8	42.4	13.6	15.3	14.7	6.1	9.5	13.5	17.0	7.5	11.7
기 계 류	1958	100	20.4	25.5	20.4	7.2	25.2	6.4	26.0	6.3	16.0	5.6	17.3
	1968	100	20.9	32.3	18.0	13.2	22.4	7.5	20.6	6.8	14.1	4.8	13.3
	1969	100	20.5	33.0	17.0	13.9	21.4	7.6	19.0	6.5	13.1	5.1	12.7
선 박	1958	100	16.0	15.5	9.7	2.6	7.1	1.1	3.4	5.7	11.2	6.1	14.8
	1968	100	16.3	28.5	12.3	9.0	11.9	4.1	8.9	5.3	8.5	10.0	21.8
	1969	100	16.6	31.6	13.2	9.9	12.3	4.9	9.9	5.2	8.5	11.6	23.6
전자공업 생산	1958	100	8.6	22.8	7.7	2.4	3.5	5.9	10.1	8.6	9.1	6.0	7.8
	1968	100	8.8	37.5	8.8	10.7	7.6	8.2	9.5	11.5	9.9	7.2	8.4
	1969	100	9.2	40.1	9.3	12.0	8.3	8.7	9.8	11.5	10.5	7.9	8.9
정밀기계 및 광학기계	1958	100	2.7	18.2	2.0	2.5	1.1	5.3	2.9	6.2	2.1	4.3	1.8
	1968	100	2.4	31.8	2.0	11.6	2.2	6.8	2.1	8.5	2.0	4.9	1.6
	1969	100	2.4	33.4	2.0	12.9	2.3	7.3	2.1	8.4	2.0	4.8	1.4
제품 및 화학 제품생산	1958	100	9.1	24.4	8.7	4.8	7.5	7.0	12.7	7.5	8.5	5.0	6.9
	1968	100	12.4	33.5	11.1	10.6	10.7	8.8	14.4	8.2	10.0	5.9	9.7
	1969	100	12.6	35.7	11.3	11.3	10.7	9.6	14.8	8.6	10.7	6.2	9.6

1. 農産品 및 工産品別

2. 消費國家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r Aussenhandel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eil 3; Bezugs- und Absatzgebiete nach Warengruppen und -untergruppen, 1958, Nr. 4; Aussenhandel, Reihe 3; Spezialhandel nach Ländern und Waren Gruppen.

EFTA (구주자유무역연합)								미 국		카 나 다		기 타 의 동 맹 지역 국가		기 타 의 지역 국가	
총 계		동맹체참여국가				기타 국가									
		전독일블록 기타국가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28.0	83.6	4.0	83.5	7.1	84.4	16.9	83.3	7.7	88.8	1.4	95.5	2.2	90.7	38.9	97.5
23.0	85.6	4.0	84.8	4.9	88.2	14.1	84.9	11.6	90.1	1.2	94.9	1.5	73.4	27.7	90.2
22.8	86.6	4.1	86.3	4.8	89.3	13.9	85.8	10.2	93.5	1.2	94.7	1.7	89.8	26.7	89.6
43.5	6.3	4.9	5.0	10.8	6.3	27.8	6.6	7.1	4.0	1.8	6.3	1.4	2.8	28.3	3.1
26.9	5.4	2.7	3.1	4.6	4.5	19.5	6.4	5.6	2.4	1.1	4.6	1.0	2.7	18.7	3.3
23.7	5.0	2.2	2.6	4.3	4.4	17.3	5.9	6.1	3.1	0.8	3.5	1.1	3.4	19.0	3.6
20.2	11.4	1.6	6.5	5.4	12.2	13.1	12.2	6.5	14.1	1.1	14.1	2.6	19.9	49.3	21.0
20.7	11.4	2.6	7.9	5.3	14.1	12.9	11.5	12.1	14.0	1.1	12.9	1.2	9.2	25.6	12.3
21.6	12.2	2.2	6.9	5.6	15.3	13.8	12.7	8.6	11.8	1.0	12.1	1.3	10.3	25.1	12.6
24.2	18.0	5.1	26.4	4.5	13.4	14.6	17.9	4.4	12.6	0.9	14.9	2.5	25.0	42.5	23.8
21.3	19.5	5.8	30.1	3.9	17.3	11.6	17.2	7.9	15.2	1.2	22.9	2.4	28.9	35.0	28.1
20.5	18.6	5.1	25.7	3.8	16.8	11.6	17.1	7.7	16.9	1.4	25.5	2.1	26.8	35.3	28.4
33.6	19.5	3.1	12.4	13.2	30.6	17.3	16.6	14.2	31.7	2.2	30.3	1.9	15.3	32.6	14.3
21.0	15.0	3.3	3.3	5.5	19.1	12.2	14.1	26.8	40.0	1.6	22.7	1.7	16.1	20.5	12.8
22.1	16.2	5.3	1.8	5.4	19.2	11.4	13.5	23.1	40.9	1.4	21.0	1.6	16.4	20.2	13.1
30.3	9.5	3.3	7.1	6.1	7.6	21.0	10.8	3.9	4.7	1.0	7.1	2.8	11.8	39.2	9.2
27.1	10.5	3.2	7.0	5.9	11.2	17.9	11.2	5.0	4.0	1.0	8.2	2.5	12.7	26.9	99.1
26.9	11.0	3.1	7.0	5.8	11.5	18.0	11.9	4.5	4.4	0.9	7.8	2.1	12.2	25.5	99.2
28.1	2.8	5.5	3.8	5.8	2.3	16.8	2.8	17.1	6.6	2.9	6.8	0.8	1.1	32.8	2.5
22.5	2.3	4.4	2.6	4.8	2.4	13.3	2.2	15.5	3.4	2.1	4.1	1.2	1.7	22.7	2.1
23.5	2.5	4.1	2.4	4.8	2.4	14.7	2.5	16.0	4.1	2.0	4.4	1.0	1.5	24.0	2.2
28.0	9.2	6.0	13.8	5.8	7.7	16.2	8.8	4.4	5.6	0.9	6.9	2.2	10.3	40.0	10.0
23.4	12.8	4.7	14.4	4.5	12.1	14.2	12.5	4.8	5.5	1.1	12.5	1.9	13.9	35.3	16.9
23.5	13.1	4.5	14.1	4.6	12.4	14.4	13.0	4.6	6.2	1.1	13.0	1.7	13.7	33.4	16.5

일람표 A 6

서독의 경우 1958년 1968년 1969년 3년간의 상품별 및 지역별 수입현황 일람

지역구분 상품별	년도	총수입고	표WG (구주공동시장)				
			총계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벨지움 룩셈블그
총수입고	1958	31,133.1	7,202.7	1,595.1	1,697.5	2,500.2	1,409.9
	1968	81,179.2	33,452.9	9,778.0	8,066.2	8,810.3	6,798.5
	1969	97,972.4	42,430.7	12,697.3	9,490.7	11,255.9	8,986.9
식품및 유종음식	1958	9,408.5	2,245.5	291.0	750.7	1,099.8	104.0
	1968	17,083.1	7,044.6	2,011.3	1,461.3	2,969.8	602.2
	1969	19,331.2	8,759.4	2,843.1	1,644.8	3,561.4	710.1
공업생산	1958	21,477.6	4,870.1	1,285.2	944.8	1,360.1	1,280.0
	1968	63,035.2	26,012.5	7,625.3	6,541.6	5,721.4	6,124.2
	1969	77,403.8	33,156.5	9,661.0	7,779.3	7,516.5	8,199.6
원료	1958	7,685.3	558.0	199.3	69.1	123.5	166.1
	1968	13,643.7	1,221.1	430.6	154.7	362.7	273.2
	1969	14,487.4	1,292.6	481.2	144.2	330.1	337.0
연료	1958	2,258.7	49.6	29.9	0.0	12.8	6.9
	1968	6,119.5	212.2	39.4	20.2	130.4	22.1
	1969	8,063.5	101.1	26.6	-	46.3	28.2
광석	1958	1,447.8	96.6	47.4	15.9	16.1	17.2
	1968	2,383.7	175.9	91.8	15.2	45.2	23.6
	1969	1,478.9	215.9	104.0	13.5	65.2	33.2
반제품	1958	5,252.2	1,167.0	219.7	90.5	512.1	344.7
	1968	13,629.9	4,980.8	1,164.7	906.6	1,522.6	1,386.9
	1969	16,720.0	6,133.0	1,382.1	866.3	2,138.4	1,746.2
심유반제품	1958	562.6	325.0	119.2	45.1	68.0	92.7
	1968	1,391.7	1,012.0	288.6	222.3	229.1	272.0
	1969	1,578.3	1,178.5	310.5	257.6	296.2	314.2
금속	1958	1,918.2	403.9	49.2	12.1	187.3	155.3
	1968	5,665.2	1,614.4	409.3	103.1	392.4	709.6
	1969	7,408.9	1,872.8	519.3	79.8	467.2	806.5
완제품	1958	8,500.1	3,145.2	866.2	785.2	724.5	769.3
	1968	35,760.6	19,810.6	6,030.1	5,480.4	3,836.1	4,464.0
	1969	46,196.4	25,730.9	7,797.7	6,768.8	5,048.0	6,116.4

(계산단위 백만마르크)

총 계	E F T A (구자유무역연합)			미 국	카나다	기 타 의 동 맹 지역국가	기 타 의 지 역 국 가
	동맹제제참여국가						
	전독일블럭	기타국가	기타국가				
6,517.4	1,360.7	1,662.7	3,494.0	4,192.5	964.7	453.0	11,812.8
12,694.5	3,406.9	2,553.5	6,734.1	8,849.5	1,124.5	872.9	24,184.9
15,266.5	3,912.6	3,124.9	8,229.0	10,253.1	1,239.7	1,046.8	27,735.6
1,168.4	62.0	912.1	194.3	1,013.6	319.6	304.5	4,356.9
1,125.1	179.0	730.6	215.5	1,956.0	157.1	515.2	6,285.1
1,181.9	123.7	820.7	237.5	1,923.0	140.3	594.0	6,732.6
5,215.2	1,285.6	713.8	3,215.8	3,161.7	643.1	144.9	7,402.6
11,159.7	3,157.9	1,764.4	6,237.4	6,830.4	956.7	350.0	17,725.9
13,687.6	3,723.5	2,250.4	7,713.7	8,245.8	1,087.0	441.4	20,785.5
950.7	147.1	168.7	634.9	1,337.1	162.6	104.9	4,572.0
1,257.5	187.6	319.9	750.0	734.5	356.5	174.4	9,900.7
1,433.5	233.2	371.2	829.1	721.2	381.3	169.9	10,488.9
21.5	13.4	6.7	1.4	843.5	-	-	1,344.1
35.3	31.7	3.3	0.3	198.9	0.0	0.5	5,672.6
61.7	55.8	3.0	2.9	175.9	0.0	0.1	5,724.7
562.8	12.8	105.4	444.6	28.9	117.4	35.8	806.3
685.6	19.1	131.4	535.1	81.1	263.5	23.7	1,353.9
762.2	24.5	150.2	587.5	101.9	276.8	31.2	90.9
1,502.6	348.7	224.5	929.4	617.1	170.8	17.2	1,777.5
2,709.4	885.1	610.6	1,213.7	1,419.0	400.0	57.2	4,063.5
3,353.9	941.0	781.4	1,631.5	1,609.4	499.4	98.1	5,026.2
182.7	75.0	3.8	103.9	26.3	0.2	0.0	28.4
163.3	75.4	5.0	82.9	77.0	0.3	23.7	115.4
169.9	83.5	5.9	80.5	68.4	0.2	40.0	121.3
454.7	160.7	151.7	142.3	219.2	157.2	15.0	668.2
1,249.5	401.4	505.7	342.4	361.2	243.3	26.3	2,170.5
1,523.1	467.1	625.3	430.7	694.0	299.8	51.4	2,967.8
2,761.9	789.8	320.6	1,651.5	1,207.5	309.8	22.8	1,052.7
7,192.7	2,085.1	833.9	4,273.7	4,677.0	200.2	118.3	3,761.8
8,900.1	2,549.2	1,097.8	5,253.1	5,915.2	206.3	173.4	5,270.5

지역 상 품 별	구 분	년 도	총수입고	EWG (구주공동시장)				
				총 계	프랑스	이태리	베를린드	벨 지 움 룩셈블그
섬유및피복		1958	1,513.8	770.3	126.2	331.8	170.6	141.7
		1968	6,283.6	4,135.4	951.8	1,774.6	730.1	678.9
		1969	8,132.9	5,257.2	1,127.5	2,380.5	895.2	853.9
철계 및 금속상 품		1958	1,630.7	803.9	296.5	29.1	116.1	352.2
		1968	5,403.5	3,912.5	1,052.5	620.5	559.5	1,679.9
		1969	7,011.3	4,973.0	1,290.4	734.7	759.8	2,188.2
기 계 류		1958	1,211.4	278.4	68.8	81.2	79.1	49.3
		1968	5,013.6	2,071.8	834.8	684.2	336.6	216.2
		1969	6,557.3	2,700.2	1,096.3	808.7	477.6	317.6
선 박		1958	779.1	348.3	113.8	192.4	20.0	22.1
		1968	3,817.1	2,677.0	1,090.4	683.6	156.8	746.2
		1969	4,917.7	3,523.0	1,414.7	783.6	273.3	1,151.5
전 자 공 업 생 산		1958	475.1	209.9	53.1	15.2	120.0	21.6
		1968	3,114.3	1,540.9	380.1	536.2	465.2	139.5
		1969	4,261.0	2,077.2	538.3	690.6	616.4	231.9
정밀 기계 및 광학기계생산		1958	153.7	22.6	13.0	3.6	4.7	1.3
		1968	796.2	244.8	97.0	69.0	66.6	12.3
		1969	1,001.9	298.5	120.0	69.4	89.3	19.7
제 약 및 화 학 제 품 생 산		1958	983.0	279.8	74.4	57.3	94.0	54.1
		1968	4,727.3	2,601.1	837.3	436.7	854.4	472.7
		1969	6,083.5	3,453.7	1,124.1	538.2	1,129.1	662.2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r Aussenhandel
 Der Aussenhandel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eil 3; Bezugs- und Absatzgebiete nach Warengruppen
 und -untergruppen, 1958. Nr. 4;
 Aussenhandel, Reihe 3; Spezialhandel nach Ländern
 Warengruppen, 1968 und 1969.

E F T A (구주자유무역연합)				미 국	카나다	기 타 의 동 맹 지역 국가	기 타 의 지 역 국 가
총 계	동맹 체제참여국가		기 타 국가				
	전독일블럭	기타국가					
435.1	154.4	22.2	258.5	29.6	0.2	4.0	274.6
676.2	187.5	43.0	445.7	114.6	6.8	74.7	1,275.9
753.6	221.0	53.6	479.0	139.2	13.5	110.9	1,858.5
392.3	38.1	96.0	238.2	136.0	1.5	0.1	296.9
997.1	175.0	119.2	702.9	173.2	10.8	3.2	306.7
1,297.5	234.8	130.2	932.5	236.6	10.1	7.3	486.8
601.9	177.1	80.1	344.7	286.7	6.6	0.2	37.6
1,625.7	531.3	156.0	938.4	1,060.7	13.4	2.2	239.8
2,079.7	701.0	206.9	1,171.8	1,380.1	19.4	1.6	376.3
180.5	96.7	19.1	64.7	206.2	8.3	0.2	35.6
423.5	285.9	37.4	100.2	572.3	9.3	0.2	134.8
557.1	297.2	108.5	151.4	529.5	5.6	0.3	202.2
153.0	54.1	15.1	83.8	93.5	0.2	0.1	13.4
679.5	235.8	70.6	373.1	599.1	30.8	6.1	257.9
906.3	296.2	121.2	488.9	837.5	23.4	11.0	405.6
97.2	10.9	5.2	81.1	24.2	0.2	0.0	11.5
296.6	89.0	21.8	185.8	136.6	3.3	0.6	114.3
384.4	114.0	29.8	240.6	167.5	6.5	0.2	144.8
258.2	87.1	14.3	156.8	351.8	36.0	0.5	56.7
897.6	287.4	91.4	518.8	845.9	33.1	2.6	347.0
1,062.9	331.2	104.0	627.7	1,033.6	36.5	7.5	489.3

일람표 A 7

서독의 경우 1958년 1968년 1969년 3년간의 수입(輸入)구조 백분율(%)

지역 구분 상품별	년도	EWG (구주공동시장)											
		총수입고		총 계		프 랑 스		이 태 리		네 델 란 드		벨 지 음 룩셈블그	
		a	b	a	b	a	b	a	b	a	b	a	b
총 수 입 고	1958	100	100.0	23.1	100.0	5.1	100.0	5.5	100.0	8.0	100.0	4.5	100.0
	1968	100	100.0	41.2	100.0	12.0	100.0	9.9	100.0	10.9	100.0	8.4	100.0
	1969	100	100.0	43.3	100.0	13.0	100.0	9.7	100.0	11.5	100.0	9.2	100.0
식 품 및 유 흥 음 식	1958	100	30.2	23.9	31.2	3.1	18.2	8.0	44.2	11.7	44.0	1.1	7.4
	1968	100	21.0	41.2	21.1	11.8	20.6	8.6	18.1	17.4	33.7	3.5	8.9
	1969	100	19.7	45.3	20.6	14.7	22.4	8.5	17.3	18.4	31.6	3.7	7.9
광 업 생 산	1958	100	68.9	22.7	67.6	6.0	80.6	4.4	55.7	6.3	54.4	6.0	90.8
	1968	100	77.6	41.3	77.8	12.1	78.0	10.4	81.1	9.1	64.9	9.7	90.1
	1969	100	79.0	42.8	78.1	12.5	76.1	10.1	82.0	9.7	66.8	10.6	91.2
원 료	1958	100	24.7	7.3	7.7	2.6	12.5	0.9	4.1	1.6	4.9	2.2	11.8
	1968	100	16.8	8.9	3.7	3.2	4.4	1.1	1.9	2.7	4.1	2.0	4.0
	1969	100	14.8	8.9	3.0	3.3	3.8	1.0	1.5	2.3	2.9	2.3	3.7
연 료	1958	100	7.3	2.2	0.7	1.3	1.9	0.0	0.0	0.6	0.5	0.3	0.5
	1968	100	7.5	3.5	0.6	0.6	0.4	0.3	0.3	2.1	1.5	0.4	0.3
	1969	100	6.2	1.7	0.2	0.4	0.2	-	-	0.8	0.4	0.5	0.3
광 석	1958	100	5.3	5.9	1.3	2.9	3.0	1.0	0.9	1.0	0.6	1.0	1.2
	1968	100	3.2	6.8	0.5	3.6	0.9	0.6	0.2	1.7	0.5	0.9	0.3
	1969	100	1.5	14.6	0.5	7.0	0.8	0.9	0.1	4.4	0.6	2.2	0.4
반 제 품	1958	100	16.9	22.2	16.2	4.2	13.8	1.7	5.3	9.8	20.5	6.6	24.4
	1968	100	16.8	36.5	14.9	8.5	11.9	6.7	11.2	11.2	17.3	10.2	20.4
	1969	100	17.1	36.7	14.5	8.3	10.9	5.2	9.1	12.8	19.0	10.4	19.4
섬유 반제품	1958	100	1.8	57.8	4.0	21.2	7.5	8.0	2.7	12.1	2.7	16.5	6.6
	1968	100	1.7	72.7	3.0	20.7	3.0	16.0	2.8	16.5	9.2	19.5	4.0
	1969	100	1.6	74.7	2.8	19.7	2.4	16.3	2.7	18.8	2.5	19.9	3.5
금 속	1958	100	6.2	21.1	5.6	2.6	3.1	0.6	0.7	9.8	7.5	8.1	11.0
	1968	100	7.0	28.5	4.8	7.2	4.2	1.8	1.3	6.9	15.7	12.5	10.4
	1969	100	7.6	25.3	4.4	7.0	4.1	1.1	0.8	6.3	4.2	10.9	9.0

E F T A (구 주 자유 무역 연합)														기 타 의 동 맹 지역 국가		기 타 의 지역 국가	
총 계		동맹체제참여국가				기타국가		미 국		카 나 다		기 타 의 동 맹 지역 국가		기 타 의 지역 국가			
		전독일블록		기타국가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20.9	100.0	4.4	100.0	5.3	100.0	11.2	100.0	13.5	100.0	3.1	100.0	1.4	100.0	37.9	100.0		
15.6	100.0	4.2	100.0	3.1	100.0	8.3	100.0	10.9	100.0	1.4	100.0	1.1	100.0	29.8	100.0		
15.6	100.0	4.0	100.0	3.2	100.0	8.4	100.0	10.5	100.0	1.3	100.0	1.1	100.0	28.3	100.0		
12.4	17.9	0.7	4.6	9.7	54.9	2.1	5.6	10.8	24.2	3.4	33.1	3.2	67.2	46.3	36.9		
6.6	8.9	1.0	5.3	4.3	28.6	1.3	3.2	11.4	22.1	0.9	14.0	3.0	59.0	36.8	26.0		
6.1	7.7	0.6	3.2	4.2	26.3	1.2	2.9	9.9	18.8	0.7	11.3	3.1	56.7	34.8	24.3		
24.3	80.0	6.0	94.5	3.3	42.9	15.0	92.0	14.7	75.4	3.0	66.7	0.7	32.0	34.5	62.7		
17.7	87.9	5.0	92.7	2.8	69.1	9.9	92.6	10.8	77.2	1.5	85.1	0.6	40.1	28.1	73.3		
17.7	89.7	4.8	95.2	2.9	72.0	10.0	93.7	10.7	80.4	1.4	87.7	0.6	42.2	26.9	74.9		
12.4	14.6	1.9	10.8	2.2	10.1	8.3	18.2	17.4	31.9	2.1	16.9	1.4	23.2	59.5	38.7		
9.2	9.9	1.4	5.5	2.3	12.5	5.5	11.1	5.4	8.3	2.6	31.7	1.3	20.0	72.6	40.9		
9.9	9.4	1.6	6.0	2.6	11.9	5.7	10.1	5.0	7.0	2.6	30.8	1.2	16.2	72.4	37.8		
1.0	0.3	0.6	1.0	0.3	0.4	0.1	0.0	37.3	20.1	-	-	-	-	59.5	11.4		
0.6	0.3	0.5	0.9	0.1	0.1	0.0	0.0	3.3	2.2	0.0	0.0	0.0	0.1	92.7	23.5		
1.0	0.4	0.9	1.4	0.0	0.1	0.0	0.0	2.9	1.7	0.0	0.0	0.0	0.0	94.4	20.6		
34.2	8.6	0.8	0.9	6.4	6.3	27.0	12.7	1.8	0.7	7.1	12.2	2.2	7.9	48.9	6.8		
26.5	5.4	0.7	0.6	5.1	5.1	20.7	7.9	3.1	0.9	10.2	23.4	0.9	2.7	52.4	5.6		
31.5	5.0	1.7	0.6	10.2	4.8	39.7	7.1	6.9	1.0	18.7	22.3	2.1	3.0	66.1	0.3		
28.6	23.1	6.6	25.6	4.3	13.5	17.7	26.6	11.7	14.7	3.3	17.7	0.3	3.8	33.8	15.0		
19.9	21.3	6.5	26.0	4.5	23.9	8.9	18.0	10.4	16.0	2.9	35.6	0.4	6.6	29.8	16.8		
20.1	22.0	5.6	24.1	4.7	25.0	9.8	19.8	9.6	15.7	3.0	40.3	0.6	9.4	30.1	18.1		
32.5	2.8	13.3	5.5	0.7	0.2	18.5	3.0	4.7	0.6	0.0	0.0	0.0	0.0	5.0	0.2		
11.7	1.3	5.4	2.2	0.4	0.2	6.0	1.2	5.5	0.9	0.0	0.0	1.7	2.7	8.3	0.5		
10.8	1.1	5.3	2.1	0.4	0.2	5.1	1.0	4.3	0.7	0.0	0.0	2.5	3.8	7.7	0.4		
23.7	7.0	8.4	11.8	7.9	9.1	7.4	4.1	11.4	5.2	8.2	16.3	0.8	3.3	34.8	5.7		
22.1	9.8	7.1	11.8	8.9	19.8	6.0	5.1	6.4	4.1	4.3	21.6	0.5	3.0	38.3	9.0		
20.6	10.0	6.3	11.9	8.4	20.0	5.8	5.2	9.4	6.8	4.0	24.2	0.7	4.9	40.1	10.7		

지역구분 상품별	년도	FRG (구주공동시장)											
		총수입고		총계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벨지움 룩셈블그	
		a	b	a	b	a	b	a	b	a	b	a	b
완제품	1958	100	27.3	37.0	43.7	10.2	54.3	9.2	46.3	8.5	29.0	9.1	54.6
	1968	100	44.1	55.4	59.2	16.9	61.7	15.3	67.9	10.7	43.5	12.5	65.7
	1969	100	47.2	55.7	60.6	16.9	61.4	14.7	71.3	10.9	44.8	13.2	68.1
철·유 및 피복	1958	100	4.9	50.9	10.7	8.3	7.9	21.9	19.5	11.3	6.8	9.4	10.1
	1968	100	7.7	65.8	12.4	15.1	9.7	28.2	22.0	11.6	8.3	10.8	10.0
	1969	100	8.3	64.6	12.4	13.9	8.9	29.3	25.1	11.0	8.0	10.5	9.5
철제 및 금속상품	1958	100	5.2	49.3	11.2	18.2	18.6	1.8	1.7	7.1	4.6	22.2	25.7
	1968	100	6.7	72.4	11.7	19.5	10.8	11.5	7.7	10.4	6.4	31.1	24.7
	1969	100	7.2	70.9	11.7	18.4	10.2	10.5	7.7	10.8	6.8	31.2	24.3
기계류	1958	100	3.9	23.0	3.9	5.7	4.3	6.7	4.8	6.5	3.2	4.1	3.5
	1968	100	6.2	41.3	6.2	16.7	8.5	13.6	8.5	6.7	3.8	4.3	3.2
	1969	100	6.7	41.2	6.4	16.7	8.6	12.3	8.5	7.3	4.2	4.8	3.5
선박	1958	100	2.5	44.7	4.8	14.6	7.1	24.7	11.3	2.6	0.8	2.8	1.6
	1968	100	4.7	70.1	8.0	28.6	11.2	17.9	8.5	4.1	1.8	19.5	11.0
	1969	100	5.0	73.7	8.5	28.8	11.1	15.9	8.3	5.6	2.4	23.4	12.8
전자공업 생산	1958	100	1.5	44.2	2.9	11.2	3.3	3.2	0.9	25.3	4.8	4.5	1.5
	1968	100	3.8	49.5	4.6	12.2	3.9	17.9	6.9	14.9	5.3	4.5	2.1
	1969	100	4.3	48.7	4.9	12.6	4.2	16.2	7.3	14.5	5.5	5.4	2.6
정밀기계 및 광학기계 생산	1958	100	0.5	14.5	0.3	8.3	0.8	2.3	0.2	3.0	0.2	0.8	0.1
	1968	100	1.0	30.7	0.7	12.2	1.0	8.7	0.9	8.4	0.8	1.5	0.2
	1969	100	1.0	29.8	0.7	12.0	0.9	6.9	0.7	8.9	0.8	2.0	0.2
제약 및 화학 제품 생산	1958	100	3.2	28.5	3.9	7.6	4.7	5.8	3.4	9.6	3.8	5.5	3.8
	1968	100	5.8	55.0	7.8	17.7	8.6	9.2	5.4	18.1	9.7	10.0	7.0
	1969	100	6.2	56.8	8.1	18.5	8.9	8.8	5.7	18.6	10.0	10.9	7.4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Der Aussenhandel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eil 3: Bezugs- und Absatzgebiete nach Warengruppen
und untergruppen, 1958, Nr. 4;
Aussenhandel, Reihe 3; Spezial Handel nach Ländern
und Warengruppen 1968 und 1969

F T A (구주자유무역연합)												기 타 의 동 맹 지 역 국가		기 타 의 지 역 국가	
총 계		동맹체제참여국가				기 타 국가		미 국		카 나 다		기 타 의 동 맹 지 역 국가		기 타 의 지 역 국가	
		전독일블록		기타국가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32.5	42.4	9.3	58.0	3.8	19.3	19.3	47.3	14.2	28.8	3.6	32.1	0.3	5.0	12.4	8.9
20.1	56.7	5.8	61.2	2.3	32.7	12.0	63.5	13.1	52.9	0.6	17.8	0.3	13.6	10.5	15.6
19.3	58.3	5.5	65.2	2.4	35.1	11.4	63.8	12.8	57.7	0.4	16.6	0.4	16.6	11.4	19.0
28.7	6.7	10.2	11.3	1.5	1.3	17.1	7.4	2.0	0.7	0.0	0.0	0.3	0.9	18.1	2.3
10.8	3.0	3.0	5.5	0.7	1.7	7.1	6.6	1.8	1.3	0.1	0.6	1.2	8.6	20.3	5.3
9.3	4.9	2.7	5.6	0.7	1.7	5.9	5.9	1.7	1.4	0.2	1.9	1.4	10.6	22.9	6.7
24.1	6.0	3.6	4.3	5.9	5.8	14.6	6.8	8.3	3.2	0.1	0.2	0.0	0.0	18.2	2.5
18.5	7.9	3.2	5.1	2.2	4.7	13.0	10.4	3.2	2.0	0.2	1.0	0.1	0.4	5.7	1.3
18.5	8.5	3.3	6.0	1.9	4.2	13.3	11.3	3.4	2.3	0.1	0.8	0.1	0.7	6.9	1.8
49.7	9.2	14.6	13.0	6.6	4.8	28.5	9.9	23.7	6.8	0.5	0.7	0.0	0.0	3.1	0.3
32.4	12.8	10.6	15.6	3.1	6.1	18.7	13.9	21.2	12.0	0.3	1.2	0.0	0.3	4.8	1.0
31.7	13.6	10.7	17.9	3.2	6.6	17.9	14.2	21.0	13.5	0.3	1.6	0.0	0.2	5.7	1.4
23.2	2.8	12.4	7.1	2.5	1.1	8.3	1.9	26.5	4.9	1.1	0.9	0.0	0.0	4.6	0.3
11.1	3.3	7.5	8.4	1.0	1.5	2.6	1.5	15.0	6.5	0.2	0.8	0.0	0.0	3.5	0.6
11.3	3.6	6.0	7.6	2.2	3.5	3.1	1.8	10.8	5.2	0.1	0.5	0.0	0.0	4.1	0.7
32.2	2.3	11.4	4.0	3.2	0.9	17.6	2.4	19.7	2.2	0.0	0.0	0.0	0.0	3.9	0.2
21.8	5.4	7.6	6.9	2.3	2.8	12.0	5.5	19.2	11.8	1.0	2.7	0.2	0.7	8.3	1.1
21.3	5.9	7.0	7.6	2.8	3.9	11.5	5.9	19.7	8.2	0.5	1.9	0.3	1.1	9.5	1.5
62.4	1.5	7.0	0.8	3.3	0.3	32.1	2.3	15.5	0.6	0.1	0.0	0.0	0.0	7.4	0.1
37.3	2.3	11.2	2.6	2.7	0.9	23.3	2.8	17.2	1.5	0.4	0.3	0.0	0.1	14.4	0.5
38.4	2.5	11.4	2.9	3.0	1.0	24.0	2.9	16.7	1.6	0.6	0.5	0.0	0.0	14.5	0.5
26.3	4.0	8.9	6.4	1.5	0.9	16.0	4.5	35.8	8.4	3.7	3.7	0.1	0.1	5.8	0.5
19.0	7.1	6.1	8.4	1.9	3.6	11.0	7.7	17.9	9.6	0.7	2.9	0.1	0.3	7.3	1.4
17.5	7.0	5.4	8.5	1.7	3.3	10.3	7.6	17.0	10.1	0.6	2.9	0.1	0.7	8.0	1.8

일람표 A 8

1960년에서 1969년까지 동독의 지역별 및 국가별 해외무역 상황일람

지역국가	년 도	1960	1961	1962	1963
		전체거래액면			
총	계	10,487.4	19,034.6	20,098.6	21,182.9
RGW' (동구상호경제협력기구)		12,457.9	13,449.6	15,001.9	15,713.7
이	중	7,907.4	8,327.1	9,823.5	10,287.2
체	코	1,592.0	1,878.1	1,855.9	1,871.4
폴	란	1,229.6	1,304.3	1,433.8	1,506.0
헝	가	788.3	853.5	886.5	912.1
불	가	519.5	628.3	587.4	716.3
루	마	421.1	458.3	414.8	420.7
자 본 주 의 국 가 ²		3,897.3	3,842.4	3,497.1	3,823.3
		전체수출액면			
총	계	9,270.8	9,581.9	9,987.4	11,394.6
RGW' (동구상호경제협력기구)		6,351.6	6,683.3	7,453.7	8,564.1
이	중	3,883.6	3,830.2	4,389.7	5,361.4
체	코	806.8	962.2	912.4	964.3
폴	란	772.6	874.8	979.1	1,050.1
헝	가	395.8	417.5	472.6	511.8
불	가	289.9	351.6	267.9	410.9
루	마	202.9	247.0	232.0	265.6

(화폐단위: 「마르크」 백만)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전 체 거래액 면			
23,373.6	24,693.3	26,963.8	28,286.1	30,123.0	34,682.7
16,825.9	17,057.8	18,298.2	19,512.6	21,472.3	23,720.2
				6	
10,897.8	10,565.7	11,175.9	11,866.8	12,851.6	14,287.7
2,105.2	2,329.2	2,534.8	2,663.9	3,070.3	3,285.0
1,596.4	1,720.4	1,824.0	1,887.2	2,166.5	2,419.5
993.4	1,052.8	1,229.4	1,414.2	1,533.0	1,654.2
703.7	802.1	896.8	1,005.5	1,150.4	1,250.5
529.4	587.6	637.3	675.0	700.5	823.3
4,628.8	5,346.3	6,005.5	6,037.6	6,001.4	8,002.4
		전 체 수출액 면			
12,312.4	12,892.9	13,460.8	14,515.2	15,893.8	17,443.0
9,007.3	9,084.4	9,229.2	10,109.1	11,321.6	11,800.2
5,811.2	5,504.6	5,361.1	5,912.5	6,582.7	6,961.7
1,056.1	1,225.8	1,301.1	1,328.1	1,689.4	1,740.7
988.2	1,131.6	1,174.6	1,195.2	1,224.1	1,324.0
521.9	531.8	592.1	770.5	812.7	779.2
365.5	408.5	442.1	525.2	636.6	640.6
264.4	282.1	358.2	377.6	376.1	354.0

지역국가	1960	1961	1962	1963
자 본 주 의 국 가 ²	1,869.3	1,881.3	1,754.2	2,024.5
전 체 수 출 액 면				
총 계	9,216.6	9,452.7	10,111.2	9,788.3
RGW ¹ (동구상호경제협력기구)	6,106.3	6,766.3	7,548.2	7,149.6
이 중 에서 소 련	4,023.8	4,496.9	5,233.8	4,925.8
체 코 슬 로 바 키 아	785.2	915.9	943.5	907.1
폴 렌 드	457.0	429.5	454.7	455.9
헝 가 리 아	392.5	436.0	413.9	400.3
불 가 리 아	229.6	276.7	319.5	305.4
루 마 니 아	218.2	211.3	182.8	155.1
자 본 주 의 국 가	2,022.0	1,961.1	1,742.9	1,799.3

1. 알바니아 및 몽고는 제외되었음.

2. 유럽의 모든 자본주의산업국가와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등.

※ 1 Mark = 0.24 dollar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2,306.9	2,665.0	2,727.9	2,881.5	3,045.2	3,908.2
		전체 수출액면			
11,061.2	11,800.4	13,503.0	13,770.9	14,229.2	17,239.1
7,818.6	7,973.4	9,069.0	9,403.5	10,150.7	11,920.0
5,086.6	5,061.1	5,814.8	5,954.3	6,268.9	7,326.0
1,049.1	1,103.4	1,233.7	1,335.8	1,380.9	1,544.3
608.2	588.8	649.4	692.0	942.4	1,095.5
471.5	521.0	637.3	643.7	720.3	875.0
338.2	393.6	454.7	480.3	513.8	609.9
265.0	305.5	279.1	297.4	324.4	469.3
2,321.9	2,681.3	3,277.6	3,156.1	2,956.2	4,094.2

일람표 A 9

1960년에서 1969년까지 동독의 지역별 및 국가별 해외무역구조 백분율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전체 거래고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GW' (동구상호경제 협력기구)	67.4	70.7	74.6	74.2	72.0	69.1	67.9	69.0	71.3	68.4
이중에서 소련	42.8	43.7	48.9	48.6	46.6	42.8	41.4	42.0	42.7	41.2
체코슬로바키아	8.6	9.9	9.2	8.8	9.0	9.4	9.4	9.4	10.2	9.5
폴란드	6.7	6.9	7.1	7.1	6.8	7.0	6.8	6.7	7.2	7.0
헝가리아	4.3	4.5	4.4	4.3	4.3	4.3	4.6	5.0	5.1	4.8
불가리아	2.8	3.3	2.9	3.4	3.0	3.2	3.3	3.6	3.8	3.6
루마니아	2.3	2.4	2.1	2.0	2.3	2.4	2.4	2.4	2.3	2.4
자본주의국가 2	21.1	20.2	17.4	18.0	19.8	21.7	22.3	21.3	19.9	23.1
	전체 수출고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GW' (동구상호경제 협력기구)	68.5	69.7	74.6	75.2	73.2	70.5	68.6	69.6	71.2	67.7
이중에서 소련	41.9	40.0	46.0	47.1	47.2	42.7	39.8	40.7	41.4	39.9
체코슬로바키아	8.7	10.0	9.1	8.5	8.6	9.5	9.7	9.1	10.6	10.0
폴란드	8.3	9.1	9.8	9.2	8.0	8.8	8.7	8.2	7.7	7.6
헝가리아	4.3	4.4	4.7	4.5	4.2	4.1	4.4	5.3	5.1	4.5
불가리아	3.1	3.7	2.7	3.6	3.0	3.2	3.3	3.6	4.0	3.7
루마니아	2.2	2.6	2.3	2.3	2.1	2.2	2.7	2.6	2.4	2.0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자본주의국가 2	20.2	19.6	17.6	17.8	18.7	20.7	20.3	19.9	19.2	22.4
	전체 수입고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GW' (동구상호경제협력 기구)	66.3	71.6	74.7	73.0	70.7	67.6	67.2	68.3	71.3	69.1
이중에서 소련	43.7	47.6	51.8	50.3	46.0	42.9	43.1	43.2	44.1	42.5
체코슬로바키아	8.5	9.7	9.3	9.3	9.5	9.4	9.1	9.7	9.7	9.0
폴란드	5.0	4.5	4.5	4.7	5.5	5.0	4.8	5.0	6.6	6.4
헝가리아	4.3	4.6	4.1	4.1	4.3	4.4	4.7	4.7	5.1	5.1
불가리아	2.5	2.9	3.2	3.1	3.1	3.3	3.4	3.5	3.6	3.5
루마니아	2.4	2.2	1.8	1.6	2.4	2.6	2.1	2.2	2.3	2.7
자본주의국가 2	22.0	20.7	17.2	18.4	21.0	22.7	24.3	22.9	20.8	23.7

1. 알바니아 및 몽고는 제외되었음.

2. 유럽의 모든 자본주의 산업국가와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등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일람표 A 10

1955년에서 1969년까지 동·서독의 인구현황과 증가상황 일람 (단위:천)

구 년 도 분	서 독			동 독		
	현 황	절 대 증 가 수	증 가 율	현 황	절 대 증 가 수	증 가 율
1955	52,382	+		17,944		
1956	53,008	+ 626	+ 1.19	17,716	- 228	- 1.27
1957	53,656	+ 648	+ 1.22	17,517	- 199	- 1.12
1958	54,292	+ 636	+ 1.19	17,355	- 162	- 0.92
1959	54,876	+ 584	+ 1.08	17,298	- 57	- 0.33
1960	55,433	+ 557	+ 1.02	17,241	- 57	- 0.33
1961	56,175 ¹	+ 742	+ 1.34	17,125	- 116	- 0.67
1962	56,938	+ 763	+ 1.36	17,102	- 23	- 0.13
1963	57,587	+ 649	+ 1.14	17,155	+ 53	+ 0.31
1964	58,266	+ 679	+ 1.18	16,983 ²	- 172	- 1.00
1965	59,012	+ 746	+ 1.28	17,020	+ 37	+ 0.22
1966	59,638	+ 626	+ 1.06	17,058	+ 38	+ 0.22
1967	59,873	+ 235	+ 0.39	17,082	+ 24	+ 0.14
1968	60,184	+ 311	+ 0.52	17,084	+ 2	+ 0.01
1969	60,848	+ 664	+ 1.10	17,076	- 8	- 0.05

1. 1961년 6월 6일자 시행 인구센서스 결과

2. 1964년 12월 31일자 시행 인구센서스를 통한 변동상황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69 und 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일람표 A 11

1968년 12월 31일 현재 서독과 동독인구의 연령별 및 성별 분포상황

구 년 분 령 별	서 독						남성 1000명당 성 수 자 감 의 증
	1000단위 절대수			백 분 율			
	총 수	남 성	여 성	총 수	남 성	여 성	
0~5	5,012.1	2,566.8	2,445.4	8.3	8.9	7.7	953
5~10	4,877.2	2,497.5	2,379.7	8.1	8.7	7.5	953
10~15	4,182.4	2,143.5	2,038.9	6.9	7.5	6.4	951
15~20	3,986.6	2,041.2	1,945.3	6.6	7.1	6.1	953
20~25	3,664.2	1,876.7	1,787.5	6.1	6.5	5.6	952
25~30	4,768.7	2,492.8	2,275.9	7.9	8.7	7.2	913
30~35	4,629.0	2,408.9	2,220.1	7.7	8.4	7.0	922
35~40	3,795.0	1,965.8	1,829.2	6.3	6.8	5.8	931
40~45	3,866.5	1,828.1	2,038.4	6.4	6.4	6.4	1,115
45~50	3,760.7	1,583.5	2,177.2	6.2	5.5	6.9	1,375
50~55	2,625.1	1,096.0	1,529.2	4.3	3.8	4.8	1,395
55~60	3,858.9	1,632.9	2,226.0	6.4	5.7	7.0	1,363
60~65	3,686.0	1,592.3	2,093.8	6.1	5.5	6.6	1,315
65~70	3,080.8	1,307.7	1,773.1	5.1	4.6	5.6	1,356
70~75	2,185.4	807.3	1,378.1	3.6	2.8	4.3	1,707
75~80	1,394.6	488.6	906.0	2.3	1.7	2.9	1,854
80~85	738.9	262.8	476.2	1.2	0.9	1.5	1,812
85~90	275.5	98.2	177.3	0.5	0.3	0.6	1,805
90~	75.3	25.8	49.5	0.1	0.1	0.2	1,919
총 계	60,463.0	28,716.2	31,746.8	100	100	100	1,106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A, Reihe 1, II,

1968. S. 4f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9. S. 433.

동			동			남성 1000명당 여성 심 의 수 자 감
1000단위 절대수			백 분 율			
총 수	남 성	여 성	총 수	남 성	여 성	
1,306.8	670.5	636.2	7.6	8.5	6.9	949
1,426.7	730.5	696.2	8.3	9.3	7.5	953
1,297.1	665.1	632.0	7.6	8.5	6.8	950
1,255.8	644.5	611.3	7.3	8.2	6.6	948
876.4	444.0	432.4	5.1	5.7	4.7	974
1,301.7	654.7	647.0	7.6	8.3	7.0	988
1,252.9	631.0	621.9	7.3	8.8	6.7	986
1,021.7	509.7	512.0	6.0	6.5	5.5	1,005
932.1	400.1	532.1	5.5	5.1	5.8	1,330
918.4	349.5	568.9	5.4	4.5	6.2	1,628
637.5	239.2	398.2	3.7	3.1	4.3	1,665
1,098.2	426.3	671.9	6.4	5.4	7.3	1,576
1,141.6	474.9	666.7	6.7	6.1	7.2	1,404
1,009.9	421.5	588.4	5.9	5.4	6.4	1,396
744.0	275.2	468.8	4.4	3.5	5.1	1,703
487.4	171.7	315.7	2.9	2.2	3.4	1,839
263.9	94.3	169.7	1.5	1.2	1.8	1,800
91.7	32.7	59.0	0.5	0.4	0.6	1,804
23.5	8.0	15.4	0.1	0.1	0.2	1,925
17,087.3	7,843.4	9,243.8	100	100	100	1,179

일람표 A 12

신생아 및 사산아

동·서 양쪽에 있어서 각 연령별 여성인구 1000명을 단위로 삼아서 산출한 것임.
(1964년에서 1968년까지의 각 연령별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것임.)

연령별	1964		1965		1966		1967		1968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14세~15세	0.9	.	0.9	.	0.9	.	0.9	.	1.0	.
15~16	5.3	5.5	5.4	5.7	5.6	4.6	5.3	3.9	5.5	3.7
16~17	21.2	26.0	21.1	27.2	22.5	24.2	22.0	21.8	23.0	20.2
17~18	50.3	69.5	51.4	73.5	53.0	68.8	54.0	65.3	54.5	61.8
18~19	83.4	133.0	87.0	135.5	91.8	133.9	92.6	131.4	92.7	125.5
19~20	107.1	176.3	114.1	180.0	125.2	181.1	126.4	179.6	124.4	180.7
20~21	127.3	191.9	132.7	193.8	142.2	193.3	150.2	200.2	146.9	205.4
21~22	148.7	189.0	149.9	192.7	156.5	192.7	161.1	195.3	159.7	203.2
22~23	164.7	186.8	159.7	183.5	163.9	185.3	164.3	183.6	157.6	185.7
23~24	175.4	179.8	168.9	176.4	169.3	175.3	165.6	172.2	156.3	171.5
24~25	178.5	167.7	173.4	167.0	172.4	162.0	165.5	157.3	155.0	154.3
25~26	176.8	158.0	172.3	154.3	170.6	152.2	163.6	143.5	153.2	138.5
26~27	169.5	142.9	164.9	140.3	164.5	139.0	157.4	129.9	147.6	126.4
27~28	157.2	130.1	154.7	126.4	154.5	123.4	148.8	116.5	139.7	111.0
28~29	145.4	116.1	140.5	113.1	141.6	108.0	137.1	104.0	130.2	99.0
29~30	132.8	105.4	129.1	100.0	127.7	98.3	124.1	92.3	117.6	87.0
30~31	119.7	95.4	115.2	90.8	113.9	85.3	110.1	80.6	104.8	76.9
31~32	106.4	82.6	103.3	80.0	101.2	76.0	96.8	69.7	92.2	68.1
32~33	93.7	71.7	90.6	69.6	90.4	66.8	86.2	61.5	80.1	58.5
33~34	80.3	61.7	78.5	60.5	77.8	58.8	76.4	54.2	72.0	51.7
34~35	69.5	52.9	66.8	52.0	66.6	50.3	65.5	46.9	63.5	45.4
35~36	59.4	45.0	57.9	43.0	57.4	42.1	56.3	37.6	54.5	38.8
36~37	50.7	38.1	48.3	36.3	47.9	34.2	45.9	32.2	45.6	30.8

연령별	1964		1965		1966		1967		1968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37세~38세	42.1	31.4	40.3	29.9	39.6	28.3	38.2	26.3	37.0	24.8
38~39	33.3	25.4	32.6	24.1	31.8	21.4	30.6	20.2	30.0	20.1
39~40	26.9	19.5	25.7	19.2	24.5	16.7	24.1	13.8	23.4	13.0
40~41	20.5	14.7	19.9	14.0	18.3	10.8	17.7	9.8	17.4	7.9
41~42	14.5	10.6	13.7	9.5	13.5	7.2	12.0	5.9	12.1	5.4
42~43	9.6	7.0	9.1	6.4	8.8	4.4	8.4	4.1	8.0	3.4
43~44	5.4	4.3	5.4	3.6	5.4	2.6	5.2	2.2	5.0	2.0
44~45	.	2.4	.	2.0	.	1.3	.	1.3	.	1.1

1. 전체인구 숫자를 연령별로 나누는 것.

서독은 매년 6월 30일, 동독은 매년 1월 1일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66~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9~1970.

서독에서는 동독과는 달리 연령별 임신부 숫자가 신생아를 기준해서 계산된다.
즉 서독에서는 사산아를 낳은 여성은 임신부로 계산되지 않는다

서독간의 통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서독의 수치속에는 사산아의 숫자도 산입되어 있다.

계산방법 (연령별)

$$\frac{\text{신생아 및 사산아를 출산한 임신부의 숫자 (연령별)}}{\text{신생아 숫자}} = \frac{\text{신생아숫자} + \text{사산아숫자}}{\text{신생아 숫자}} \times \frac{\text{신생아를 출산한 임신부 숫자 (연령별)}}{\text{신생아 숫자}}$$

위의 일람표 A 12에서의 동·서 양국의 비교는, 연령별 여성 임신부 숫자가 서독에서는 매년 중간에 산출되고 동독에서는 매년초에 산출되기 때문에, 약간 제약을 받고 있다.

1964년에서 1969년까지의 동독과 서독의 출생, 사망, 인구증가분

구 분 년 도	서 독			동 독		
	출 생	사 망	인구증가분	출 생	사 망	인구증가분
		a)	절 대	숫 자		
1964	1,065,437	644,128	+421,309	291,867	226,191	+65,676
1965	1,044,328	677,628	+366,700	281,058	230,254	+50,804
1966	1,050,345	686,321	+364,024	267,958	225,663	+42,295
1967	1,019,459	687,349	+332,110	252,817	227,068	+25,749
1968	969,825	734,061	+235,764	245,143	242,473	+2,670
1969 ¹	903,458	744,360	+159,098	329,256	243,268	-4,112
		b)	인구천명당	비례수		
1964	18.3	11.1	7.2	17.2	13.3	3.9
1965	17.7	11.5	6.2	16.5	13.5	3.0
1966	17.6	11.5	6.1	15.7	13.2	2.5
1967	17.0	11.5	5.5	14.8	13.3	1.5
1968	16.1	12.2	3.9	14.4	14.2	0.2
1969 ¹	14.9	12.2	2.6	14.0	14.3	-0.2

1. 가장 적은 수치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69, S.44.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9, S. 463 f., S. 473; 1970, S. 442 f..

Bevölkerungstatistisches Jahrbuch.

일 략 표 A 14

1968년 현재 연령별 및 성별 동·서독 결혼실태

구 분 연 령 별	남 성				여 성			
	절대 숫자		백 분 률		절대 숫자		백 분 률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8 세 이 하	5	.	0.0	.	22,771	.	5.1	.
18 세 ~ 19 세	2,911	2,234	0.7	1.9	38,181	18,807	8.6	15.7
19 " ~ 20 "	11,390	5,036	2.6	4.2	52,197	17,773	11.8	14.9
20 " ~ 21 "	19,368	7,603	4.4	6.4	49,675	15,466	11.2	12.9
21 " ~ 22 "	47,284	10,898	10.6	9.1	50,082	11,614	11.3	9.7
22 " ~ 23 "	31,718	9,705	7.1	8.1	28,951	6,453	6.5	5.4
23 " ~ 24 "	37,177	12,570	8.4	10.5	27,749	6,746	6.2	5.6
24 " ~ 25 "	41,506	12,593	9.3	10.5	26,560	6,160	6.0	5.1
25 " ~ 26 "	36,685	9,596	8.3	8.0	20,986	4,494	4.7	3.8
26 " ~ 27 "	34,243	8,205	7.7	6.9	17,597	3,833	4.0	3.2
27 " ~ 28 "	30,832	6,607	6.9	5.5	15,156	3,229	3.4	2.7
28 " ~ 29 "	26,611	5,374	6.0	4.5	12,754	2,911	2.9	2.4
29 " ~ 30 "	19,897	3,949	4.5	3.3	10,071	2,303	2.3	1.9
30 " ~ 31 "	14,628	2,867	3.3	2.4	7,548	1,878	1.7	1.6
31 " ~ 32 "	11,144	2,202	2.5	1.8	6,174	1,540	1.4	1.3
32 " ~ 33 "	8,702	1,848	2.0	1.5	5,309	1,385	1.2	1.2
33 " ~ 34 "	7,277	1,535	1.6	1.3	4,675	1,328	1.1	1.1
34 " ~ 35 "	5,203	1,161	1.2	1.0	3,562	982	0.8	0.8
35 " ~ 40 "	16,891	4,072	3.8	3.4	12,860	3,420	2.9	2.9
40 " ~ 45 "	10,252	2,457	2.3	2.1	10,020	2,529	2.3	2.1
45 " ~ 50 "	7,101	1,778	1.6	1.5	8,403	2,524	1.9	2.1
50 " ~ 55 "	4,751	1,202	1.1	1.0	4,652	1,589	1.0	1.3
55 " ~ 60 "	6,144	1,951	1.4	1.6	4,038	1,455	0.9	1.2
60 세 이 상	12,430	4,233	2.8	3.5	4,179	1,257	0.9	1.1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70, S.47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S.452; S.453.

등·서독의 평균결혼연령(성별) 1960 1968

구 별 년 도	남 성		여 성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0	28.5	27.6	25.2	25.0
1961	28.4	27.9	25.2	25.3
1962	28.3	27.3	25.2	24.8
1963	28.4	27.6	25.3	25.2
1964	28.5	28.0	25.3	25.5
1965	28.5	28.1	25.4	25.5
1966	28.6	28.4	25.3	25.6
1967	28.6	28.3	25.3	25.4
1968	28.5	28.2	25.2	25.2

자료출처 : Bevölkerung und Kultur, Reihe 2, 1967, S. 53.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9, S. 457.

일 랫 표 A 16

동·서독의 평균 초혼연령(성별) 1960 ~ 1968

구 분 연 령 별	남 성		여 성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0	25.9	23.9	23.7	22.5
1961	25.9	24.3	23.7	23.0
1962	25.8	23.8	23.7	22.5
1963	25.9	23.9	23.7	22.7
1964	25.9	24.1	23.7	22.9
1965	26.0	24.2	23.7	22.9
1966	26.0	24.5	23.6	22.9
1967	26.0	24.5	23.5	22.6
1968	25.8	24.5	23.3	22.4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69, S.44; S.47,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9, S.444; 1970, S. 455.

일 랫 표 A 17

동·서독의 연령별 성별 가족신분별 인구상황 일람

구 분 연 령 별	미 폰				기	
	절대숫자 (f)		백 분 률		절대숫자 (f)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남 · 녀 합한 숫자					
15 세 이 하	13,683	4,070	100.0	100.0	-	-
15 세 ~ 20 세	3,834	1,057	98.1	96.4	73	39
20 " ~ 25 "	2,493	436	66.3	45.5	1,243	505
25 " ~ 30 "	1,424	211	28.1	15.4	3,575	1,108
30 " ~ 35 "	540	88	12.9	7.8	3,751	998
35 " ~ 40 "	343	66	8.6	6.4	3,507	919
40 " ~ 45 "	310	69	8.1	7.7	3,320	762
45 " ~ 50 "	235	49	7.5	6.4	2,598	624
50 " ~ 55 "	226	43	6.6	4.8	2,680	697
55 " ~ 60 "	264	55	6.7	4.8	2,935	870
60 " ~ 65 "	275	63	7.6	5.4	2,559	830
65 세 이 상	632	162	8.6	6.4	3,626	1,268
	남 성 숫자					
15 세 이 하	7,010	2,086	100.0	100.0	-	-
15 세 ~ 20 세	2,004	557	99.9	99.3	2	4
20 " ~ 25 "	1,581	292	81.7	60.6	350	185
25 " ~ 30 "	1,005	134	37.8	19.5	1,630	535
30 " ~ 35 "	340	40	15.6	7.0	1,806	514
35 " ~ 40 "	166	17	8.1	3.4	1,841	469
40 " ~ 45 "	92	9	5.5	2.5	1,562	337
45 " ~ 50 "	58	6	4.4	2.1	1,220	276
50 " ~ 55 "	61	7	4.2	2.1	1,330	322
55 " ~ 60 "	73	10	4.4	2.2	1,527	432
60 " ~ 65 "	73	13	4.6	2.6	1,414	455
65 세 이 상	109	22	3.8	2.3	2,146	746

연령별	구분	미혼				기	
		절대숫자 (人)		백분률		절대숫자 (人)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여성 숫자			
15세 이하		6,673	1,984	100.0	100.0	-	-
15세 ~ 20세		1,830	500	96.2	93.5	71	35
20 " ~ 25 "		912	144	50.0	30.3	893	321
25 " ~ 30 "		419	76	17.3	11.2	1,945	574
30 " ~ 35 "		200	48	10.0	8.6	1,733	484
35 " ~ 40 "		177	49	9.2	9.2	1,666	449
40 " ~ 45 "		218	60	10.3	11.1	1,758	425
45 " ~ 50 "		177	43	9.8	9.1	1,378	348
50 " ~ 55 "		165	36	8.4	6.5	1,350	375
55 " ~ 60 "		191	44	8.5	6.3	1,408	438
60 " ~ 65 "		202	51	10.0	7.7	1,145	375
65세 ~ 이상		523	140	11.6	8.9	1,480	522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68, S. 36; Bevölkerung und Kultur.

Reihe 1, Bevölkerungsstand und Entwicklung, 1966, S. 24.

Bevölkerung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9, S. 47 ff.

혼		사별또는 생이별로 인한 독신남녀				이 혼			
백분률		절대숫자 (件)		백분률		절대숫자 (件)		백분률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	-	-	-	-	-	-	-	-	-
3.7	6.5	26	8	0.3	0.4	102	59	1.3	2.6
49.0	67.4								
80.6	84.7								
87.0	86.3								
86.3	84.2	110	29	2.7	2.7	130	60	3.2	5.6
82.5	78.9								
76.5	73.9	538	150	14.3	14.6	160	75	4.2	7.3
68.7	67.6								
63.0	62.9	1,152	367	27.1	27.0	156	87	3.7	6.4
56.7	56.4								
32.8	33.3	2,397	851	53.2	54.2	107	56	2.4	3.6

동·서독의 사망자 수(1968년 인구 1,000명당 성별·연령별 사망자 수)

연령별	구분	남성		여성	
		서독	동독	서독	동독
1세 이하		25.7	22.5	19.6	17.3
1세 ~ 5세		1.1	1.1	0.9	0.9
5 " ~ 10 "		0.6	0.5	0.4	0.4
10 " ~ 15 "		0.5	0.5	0.3	0.3
15 " ~ 20 "		1.3	1.1	0.5	0.5
20 " ~ 25 "		1.6	1.6	0.6	0.6
25 " ~ 30 "		1.5	1.5	0.7	0.7
30 " ~ 35 "		1.7	1.6	0.9	1.0
35 " ~ 40 "		2.4	2.3	1.4	1.5
40 " ~ 45 "		3.5	3.2	2.2	2.3
45 " ~ 50 "		5.7	5.3	3.5	3.5
50 " ~ 55 "		9.6	9.2	5.4	5.4
55 " ~ 60 "		15.7	14.5	7.9	8.4
60 " ~ 65 "		27.2	25.8	13.1	13.4
65 " ~ 70 "		44.7	42.2	23.0	23.7
70 " ~ 75 "		68.7	67.7	41.3	43.5
75 " ~ 80 "		103.4	107.2	73.4	79.5
80 " ~ 85 "		161.1	168.5	129.5	141.5
85 " ~ 90 "		248.9	269.5	211.0	235.3
90세 이상		369.9	389.6	326.0	367.1
총계		13.0	14.7	11.4	13.8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일 램 표 A 19

1967년 현재 동·서독의 신생아 100,000명당 신생아 사망률 일람

구 분 생 일 수	남 자 아 이		여 자 아 이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생 후 1 개 월	2,020	1,587	1,543	1,204
" 2 "	104	164	78	102
" 3 "	80	151	58	89
" 4 "	58	129	48	90
" 5 "	56	82	48	77
" 6 "	55	61	39	44
" 7 "	49	48	34	52
" 8 "	39	41	32	50
" 9 "	34	37	31	46
" 10 "	30	45	26	37
" 11 "	26	38	23	23
" 12 "	26	31	20	24
1 년 생	2,564	2,411	1,972	1,830

자료출처 : Bevölkerung und Kultur, Reihe 2, 1967, S. 77.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S. 460.

일 랑 표 A 20

1964년에서 1969년까지 신생아 1,000명당 . 동 . 서독 신생아 사망률

년 도	구 분	서 독	동 독
1964		25.3	28.6
1965		23.8	24.8
1966		23.6	22.9
1967		22.8	21.4
1968		22.6	20.2
1969		23.1	20.0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일 램 표 A 21

1965년에서 1967년사이의 동·서독의 연령별 및 성별 생존자수

구 분 연령별 (滿)	남 자		여 자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0	67.55	67.96	73.58	73.08
1	68.34	68.53	74.07	73.38
2	67.46	67.73	73.18	72.57
5	64.64	64.91	70.33	69.72
10	59.84	60.07	65.47	64.86
15	54.98	55.20	60.56	59.95
20	50.32	50.49	55.71	55.09
25	45.71	45.87	50.87	50.26
30	41.04	41.20	46.04	45.42
35	36.37	36.51	41.24	40.64
40	31.79	31.93	36.52	35.92
45	27.30	27.38	31.90	31.31
50	23.01	23.06	27.41	26.82
55	18.96	18.97	23.06	22.47
60	15.29	15.19	18.88	18.30
65	12.10	11.90	14.98	14.38
70	9.45	9.12	11.46	10.85
75	7.19	6.80	8.45	7.87
80	5.28	4.91	6.05	5.50
85	3.84	3.44	4.33	3.80
90	2.77	2.48	3.16	2.64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70, S. 51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S. 470

일 랑 표 A 22

1962년에서 1968년사이의 서독인구의 연령별 이동상황(동독 및 구동부지역 제외) -단위 1,000명-

구 분 년 도	이사해온 사람			이사해간 사람			결 산(차이)		
	16세 이하	16세~ 65세	65세 이상	65세 이하	16세~ 65세	65세 이상	16세 이하	16세~ 65세	65세 이상
	남·녀 총 숫자								
1962 ¹	35.5	515.9	6.6	20.6	295.3	3.8	+14.9	+220.6	+2.8
1963 ¹	40.9	518.2	7.2	26.7	388.8	4.6	+14.2	+129.4	+2.6
1964	53.6	636.3	8.8	33.7	418.4	5.7	+19.9	+217.9	+3.1
1965	68.0	713.9	9.9	37.0	446.4	6.1	+31.0	+267.5	+3.8
1966	72.9	618.6	10.9	52.1	548.3	8.4	+20.8	+70.3	+2.5
1967	59.2	329.2	10.0	69.6	527.3	7.3	-10.4	-198.1	+2.7
1968	85.9	561.1	10.6	54.6	342.4	7.3	+31.3	+218.7	+3.3
	이중에서 남자 숫자								
1962 ¹	19.0	393.1	2.7	10.8	224.0	1.6	+8.2	+169.1	+1.1
1963 ¹	21.6	384.7	2.9	14.0	300.4	1.8	+7.6	+84.3	+1.1
1964	28.8	478.3	3.4	17.8	314.5	2.2	+11.0	+163.8	+1.2
1965	36.1	521.8	3.8	19.8	337.9	2.4	+16.3	+183.9	+1.4
1966	38.8	427.2	4.3	28.2	413.4	3.6	+10.6	+13.8	+0.7
1967	31.2	206.5	3.8	37.2	367.0	2.8	-6.0	-16.05	+1.0
1968 ²	45.8	372.5	4.0	29.4	229.2	2.8	+16.4	+14.3	+1.2

1. 「베르린」 제외

2. 「통계 연방행정」의 보고기록 내용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70, S. 57;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A, Reihe 3, II, 1962 ~ 1967

일 략 표 A 23

1960년에서 1968년까지의 서독과 동독간 및 서독과 구 동부지역간 인くい동
-단위 1,000명 -

	이주해 온 사람		이주해 간 사람		결 산	
	동독에서	동부지역에서	동독으로	동부지역으로	동 독	동부지역
		총		계		
1960 ¹	130.6	7.9	20.1	0.7	+110.5	+ 7.2
1961 ¹	124.7	7.7	14.6	0.1	+110.1	+ 7.6
1962 ²	15.3	8.1	6.9	0.1	+ 8.4	+ 8.0
1963 ²	35.0	9.2	4.1	0.1	+ 30.9	+ 9.1
1964 ²	29.5	12.1	4.4	0.3	+ 25.1	+11.8
1965	29.5	13.7	5.6	0.3	+ 23.9	+13.4
1966	24.3	16.7	4.3	0.4	+ 20.0	+16.3
1967	20.7	10.4	3.6	0.3	+ 17.1	+10.1
1968	18.6	8.0	2.9	0.2	+ 15.7	+ 7.8
		위 숫자중에서	남자	숫자		
1960 ¹	62.3	3.2	11.6	0.3	+ 50.7	+ 2.9
1961 ¹	61.0	3.2	8.4	0.1	+ 2.6	+ 3.1
1962 ²	7.1	3.5	4.3	0.0	+ 2.8	+ 3.5
1963 ²	12.1	3.9	2.5	0.0	+ 9.6	+ 3.9
1964 ²	10.6	5.2	2.5	0.1	+ 8.1	+ 5.1
1965	10.5	6.1	2.8	0.1	+ 7.7	+ 6.0
1966	8.5	7.4	2.1	0.1	+ 6.4	+ 7.3
1967	7.0	4.5	1.7	0.1	+ 5.3	+ 4.4
1968	6.3	3.5	1.3	0.0	+ 5.0	+ 3.5
		위 총계 숫자중에서	취업인구			
1961 ¹	68.2	3.2	8.5	0.1	+ 59.7	+ 3.1
1962	5.4	3.1	4.3	0.0	+ 1.1	+ 4.3
1963 ²	5.9	3.3	2.4	0.0	+ 3.5	+ 3.3
1964 ²	4.9	4.3	2.2	0.1	+ 2.7	+ 4.2
1965	5.0	5.0	2.2	0.1	+ 2.8	+ 4.9
1966	4.1	6.0	1.7	0.1	+ 2.4	+ 5.9
1967	3.4	3.8	1.3	0.1	+ 2.1	+ 3.7
1968	3.0	2.9	1.0	0.0	+ 2.0	+ 2.9

1. 동서베르린 제외

2. 서부베르린 제외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 Buch der BRD 1962 - 1969

1960년에서 1967년까지의 동서독의 경계선을 넘는 독일영토내 이주

년 도	구 분	서				독	
		경계선을 넘는 이주			주민 1000 명당		
		총 계	남 자	여 자	총 계	남 자	
1960 ¹		2,636,550	1,413,307	1,223,243	47.6	54.4	
1961 ¹		2,669,053	1,445,475	1,223,578	47.5	54.7	
1962 ¹		2,659,522	1,461,653	1,197,869	46.7	54.4	
1963 ¹		2,672,392	1,474,120	1,198,272	46.4	54.1	
1964 ¹		2,802,660	1,552,463	1,250,197	48.1	56.3	
1965		2,918,980	-	-	49.5	-	
1966		2,972,484	-	-	49.8	-	
1967		2,880,582	-	-	48.1	-	

1. 기부 베르린 제외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Kultur, Reihe 3, 1960 - 1966; 1967 It.

1969, S. 171.

이주숫자	동			독		
	경계선을 넘은 이주			주민 1,000명당 이주숫자		
	총 계	남 자	여 자	총 계	남 자	여 자
41.5	622,445	355,143	267,302	36.1	45.8	28.2
41.1	641,784	360,982	280,802	37.5	46.8	29.9
39.8	544,399	310,517	233,882	31.8	40.2	30.3
39.5	556,358	319,605	236,753	32.4	41.2	25.2
40.8	526,069	294,967	231,102	31.0	38.1	25.0
—	498,641	278,635	220,006	29.3	35.9	23.8
—	370,145	203,566	166,579	21.7	26.1	18.0
—	311,305	164,465	146,840	18.2	21.0	15.9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4년과 1968년의 생활집단 크기에 따른 동·서독의 인구비교

생활 집단크기 인구수	구분	서독		동독	
		1964 ¹	1968 ¹	1964 ²	1968 ³
		단위 1,000 명			
500 명 이하		3,046.6	2,912.6	1,386.8	1,294.3
500 명 ~ 1,000 명		4,134.5	4,035.7	1,667.3	1,654.0
1,000 명 ~ 2,000 명		5,259.2	5,356.4	1,602.1	1,617.3
2,000 " ~ 3,000 "		3,014.3	3,169.1	941.2	930.9
3,000 " ~ 5,000 "		3,993.0	4,199.0	1,096.0	1,076.0
5,000 " ~ 10,000 "		5,526.3	6,004.3	1,553.0	1,523.6
10,000 " ~ 20,000 "		4,513.4	5,163.3	1,575.6	1,591.8
20,000 " ~ 50,000 "		5,862.8	6,167.7	2,504.6	2,577.9
50,000 " ~ 100,000 "		3,536.2	3,819.4	1,010.6	1,085.5
100,000 명 이상		19,403.3	19,337.8	3,716.2	3,753.9
		58,289.8	60,165.1	17,003.6	17,087.2
		백분율 <총 = 100>			
500 이하		5.2	4.8	7.9	7.6
500 명 ~ 1,000 명		7.1	6.7	9.8	9.7
1,000 " ~ 2,000 "		9.0	8.9	9.4	9.5
2,000 " ~ 3,000 "		5.2	5.3	5.5	5.4
3,000 " ~ 5,000 "		6.9	7.0	6.4	6.3
5,000 " ~ 10,000 "		9.5	10.0	9.1	8.9
10,000 " ~ 20,000 "		7.7	8.6	9.3	9.3
20,000 " ~ 50,000 "		10.1	10.3	14.7	15.1
50,000 " ~ 100,000 "		6.1	6.3	5.9	6.4
100,000 명 이상		33.3	32.1	21.9	21.9

1. 당해년도 6월 30일 현재
2. 1964년 인구조사기일 현재
3. 1968년 말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65/1969.

Bevölkerung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9, S. 18f.

A26 ~ A29

1964년에서 1969년까지의 동·서독의 성별 취업인구의 발전상황

구 분 년 도	주 민 수						취 서	
	서 독			동 독			서	
	남 자	여 자	총 계	남 자	여 자	총 계	남 자	여 자
	단위 1,000명						단	
1964	27,595	30,671	58,267	7,748	9,256	17,004	17,269	9,879
1965	28,032	30,980	59,012	7,762	9,257	17,020	17,408	9,892
1966	28,368	31,270	59,638	7,795	9,263	17,058	17,408	9,835
1967	28,413	31,460	59,873	7,820	9,262	17,082	17,219	9,532
1968	28,558	31,626	60,184	7,835	9,249	17,084	17,192	9,473
1969	28,966	31,882	60,848	7,852	9,223	17,075	17,396	9,605
	1964년의 경우를							
196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65	101.6	101.0	101.3	100.2	100.0	100.1	100.8	101.1
1966	102.8	102.0	102.4	100.6	100.1	100.3	100.8	99.6
1967	103.0	102.6	102.8	100.9	100.1	100.5	99.7	96.5
1968	103.5	103.1	103.3	101.1	99.9	100.5	99.6	95.9
1969	105.0	104.0	104.4	101.3	99.6	100.4	100.7	97.2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Voller- und Berufszählung 1964; Statistisches

업 인 구				취 업 비 율					
등	동			서			동		
	남	여	총	남	여	총	남	여	총
계	자	자	계	자	자	계	자	자	계
위 1,000 명							%		
27,148	4,657	3,688	8,345	62.5	32.2	46.6	60.1	39.9	49.1
27,300	4,685	3,800	8,485	62.1	31.9	46.3	60.4	41.1	49.9
27,243	4,700	3,840	8,540	61.4	31.5	45.7	60.3	41.5	50.1
27,751	4,720	3,825	8,615	60.6	30.3	44.7	60.4	42.1	50.4
26,665	4,735	3,920	8,655	60.2	30.0	44.3	60.4	42.4	50.7
27,001	4,706	3,979	8,685	60.1	30.1	44.4	59.9	43.1	50.9
100 으로 분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6	100.6	103.0	101.7	99.4	99.1	99.4	100.5	103.0	101.6
100.4	100.9	104.1	102.3	98.2	97.8	98.1	100.3	104.0	102.0
98.5	101.4	105.6	103.2	97.0	94.1	95.9	100.5	105.5	102.7
98.2	101.7	106.3	103.7	96.3	93.2	95.1	100.5	106.3	103.3
99.5	101.1	107.9	104.1	96.2	93.5	95.3	99.7	108.0	103.7

Jahrbuch der DDR;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vorschung (DIW) • Berlin

일 램 표 A 27

1964년 동·서독의 연령별 및 성별 취업인구수

구 분 연령별	단 위 1,000 명					
	서 독			동 독		
	남 자	여 자	총 계	남 자	여 자	총 계
0 세 ~ 14 세	-	-	-	-	-	-
14 " ~ 17 "	467.6	441.2	908.8	104.1	84.6	188.7
17 " ~ 21 "	1,208.6	1,086.7	2,295.3	307.6	278.2	585.8
21 " ~ 25 "	1,678.4	1,244.7	2,923.1	458.3	364.4	822.7
25 " ~ 40 "	6,171.6	2,934.6	9,106.2	1,596.4	1,163.2	2,759.6
40 " ~ 50 "	2,684.0	1,734.7	4,418.7	576.0	690.1	1,266.1
50 " ~ 55 "	1,623.4	919.7	2,543.1	407.8	431.2	839.0
55 " ~ 60 "	1,589.5	760.5	2,350.0	471.3	383.0	854.3
60 " ~ 65 "	1,216.6	440.2	1,656.8	435.2	189.6	624.8
65 " ~ 70 "	395.5	199.7	595.2	197.2	73.7	270.9
70 " 이 상	233.8	117.0	350.8	102.9	30.2	133.1
14 " ~ 25 세	3,534.6	2,772.6	6,127.2	870.0	727.2	1,597.2
14 " ~ 65 "	16,639.7	9,562.3	26,202.0	4,356.7	3,584.3	7,941.0
25 " ~ 65 "	13,285.1	6,789.7	20,074.8	3,486.7	2,857.1	6,343.8
65 세 이 상	629.3	316.7	946.0	300.1	103.9	404.0
모든 연령층 합계	17,269.0	9,879.0	27,148.0	4,656.8	3,688.2	8,345.0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Völk- und Berufszählung 1964.

구 조 비 율								비 교		
연 령 별						여성구분		서독과대비된동독의수치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남 자	여 자	총 계
남 자	여 자	총 계	남 자	여 자	총 계					
-	-	-	-	-	-	-	-	-	-	-
2.7	4.5	3.3	2.2	2.3	2.3	48.5	44.8	22.3	19.2	20.8
7.0	11.0	8.5	6.6	7.5	7.0	47.3	47.5	22.5	25.6	22.5
9.7	12.6	10.8	9.8	9.9	9.9	42.6	44.3	27.3	29.3	28.1
35.7	29.7	33.5	34.3	31.5	33.1	32.2	42.2	25.9	39.6	30.3
15.5	17.6	16.3	12.4	18.7	15.2	39.3	54.5	21.5	39.8	28.7
9.4	9.3	9.3	8.8	11.7	10.1	36.2	51.4	25.1	46.9	33.0
9.2	7.7	8.7	10.1	10.4	10.2	32.4	44.8	29.7	50.4	36.4
7.1	4.5	6.1	9.4	5.1	7.5	26.6	30.4	35.8	43.1	37.7
2.3	2.0	2.2	4.2	2.0	3.2	33.6	27.2	49.9	36.9	45.5
1.4	1.2	1.3	2.2	0.8	1.6	33.4	22.7	44.0	25.8	37.9
19.4	28.1	22.6	18.7	19.7	19.2	45.3	45.5	25.9	26.2	26.1
96.3	96.8	96.5	93.6	97.2	95.2	36.5	45.1	26.2	37.5	30.3
76.9	68.7	73.9	74.9	77.5	76.0	33.8	45.0	26.2	42.1	31.6
3.7	3.2	3.5	6.4	2.8	4.8	33.5	25.7	47.7	32.8	4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4	44.2	27.0	37.3	30.7

일 램 표 A 28

1964년 현재 동. 서독의 연령별 및 성별 인구수 비교

구 분 연 령 별	단 위 1,000 명					
	서 독			동 독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0 세 ~ 14 세	6,284.6	5,972.6	12,257.2	1,945.4	1,849.4	3,794.8
14 " ~ 17 "	1,187.3	1,125.4	2,312.7	335.7	319.4	655.1
17 " ~ 21 "	1,444.6	1,369.2	2,813.8	349.3	341.7	691.0
21 " ~ 25 "	1,941.5	1,804.5	3,746.0	512.2	505.5	1,017.7
25 " ~ 40 "	6,314.8	6,104.7	12,419.5	1,626.1	1,709.7	3,335.8
40 " ~ 50 "	2,738.9	3,732.9	6,471.8	591.1	960.1	1,551.2
50 " ~ 55 "	1,708.6	2,273.6	3,982.3	424.9	673.0	1,097.9
55 " ~ 60 "	1,756.9	2,199.6	3,956.5	506.3	714.7	1,221.0
60 " ~ 65 "	1,564.4	1,929.4	3,493.8	508.9	663.1	1,172.0
65 " ~ 70 "	1,071.3	1,603.2	2,674.5	375.5	568.8	944.3
70 세 이 상	1,578.3	2,556.1	4,134.4	572.7	950.2	1,522.9
14 " ~ 25 "	4,577.4	4,299.1	8,876.5	1,197.2	1,166.6	2,363.8
14 " ~ 65 "	18,661.0	20,539.3	39,200.4	4,854.5	5,887.2	10,741.7
25 " ~ 65 "	14,083.6	16,240.2	30,323.9	3,657.3	4,720.6	8,377.9
65 세 이 상	2,649.6	4,159.3	6,808.9	948.2	1,519.0	2,467.2
모든 연령층 합계	27,595.2	30,671.2	58,266.4	7,748.1		

자료출처 : Statistischer Bundesamt, Volks- und Berufszählung 1964.

구 조 비 율						비 교				
연 령 별						여 성 부 분		서 득 과 동 득 의 대비 된 수 치		
서 득			동 득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서 득	동 득	남	녀	총 계
22.8	19.5	21.0	25.1	20.0	22.3	48.7	48.7	31.0	31.0	31.0
4.3	3.7	4.0	4.3	3.5	3.9	48.7	48.8	28.3	28.4	28.3
5.3	4.4	4.8	4.5	3.7	4.1	48.6	49.5	24.1	25.0	24.5
7.0	5.9	6.4	6.6	5.5	6.0	48.2	49.7	26.4	28.0	27.2
22.9	19.9	21.3	21.0	18.5	19.6	49.2	51.3	25.8	28.0	26.9
9.9	12.2	11.1	7.6	10.4	9.1	57.7	61.9	21.6	25.7	24.0
6.2	7.4	6.8	5.5	7.3	6.5	57.1	61.3	22.9	29.6	27.6
6.3	7.2	6.8	6.5	7.7	7.2	55.6	58.5	28.8	32.5	30.9
5.7	6.3	6.0	6.6	7.2	6.9	55.2	56.6	32.5	34.4	33.5
3.9	5.2	4.6	4.9	6.2	5.6	59.8	60.2	35.1	35.5	35.3
3.7	8.3	7.1	7.4	10.3	9.0	61.8	62.4	36.3	37.2	36.8
16.6	14.0	15.2	15.4	12.6	13.9	48.4	49.4	26.2	27.1	26.6
67.6	67.0	67.3	62.6	63.6	63.2	52.4	54.8	26.0	28.7	27.4
51.0	53.0	52.0	47.2	51.0	49.3	53.6	56.3	26.0	29.1	27.6
9.6	13.5	11.7	12.3	16.4	14.5	61.1	61.6	35.8	36.5	3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2.6	54.4	28.1	30.2	29.2

일 랫 표 A 29

1964년 현재 동·서독 주민중의 연령별 및 성별 취업인구수 - 동일연령층 취업
인구수가 주민총수에 대해 갖는 비율-

구 분 연령별	서 독			동 독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0 ~ 14	-	-	-	-	-	-
14 ~ 17	6.3	6.2	6.2	4.6	3.9	4.2
17 ~ 21	83.4	79.4	81.5	88.1	81.4	84.8
21 ~ 25	86.4	69.0	78.0	89.5	72.1	80.8
25 ~ 40	97.7	48.1	73.3	98.2	68.0	82.7
40 ~ 50	98.0	46.5	68.3	97.4	71.9	81.6
50 ~ 55	95.0	40.5	63.9	96.0	64.1	76.4
55 ~ 60	90.5	34.6	59.4	93.1	53.6	70.0
60 ~ 65	77.8	22.8	47.4	85.5	28.6	53.3
65 ~ 70	36.9	12.5	22.3	52.5	13.0	28.7
70 세 이 상	14.8	4.6	8.5	18.0	3.2	8.7
14 ~ 25	73.3	64.5	69.0	72.7	62.3	67.6
14 ~ 65	89.2	46.6	66.8	89.8	60.9	73.9
25 ~ 65	94.3	41.8	66.2	95.3	60.5	75.7
65 이 상	23.8	7.6	13.9	31.7	6.8	16.4
모든연령 총합계	62.6	32.2	46.6	60.1	39.9	49.1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Volks- und Berufszählung 1964.

A30 ~ A36

일 랫 포 A 30

1965년과 1968년에 있어서 동·서양국의 경제분야별 및 생활 취업인구

구 분 경 제 분 야 별	단 위 1,000 명						만 원		
	1965						1968		
	서 욱			동 욱			총 욱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농업과 임업	1,364	1,602	2,966	667	533	1,200	1,213	1,417	2,630
가공업 (加工業)	7,804	3,198	10,997	2,142	1,368	3,510	7,543	2,880	10,423
건축업	2,107	114	2,221	495	55	550	1,948	108	2,056
상품 생산업	9,911	3,310	13,218	2,637	1,423	4,050	9,491	2,938	12,429
상업	1,465	1,724	3,189	292	613	905	1,515	1,682	3,198
운수, 통신업	1,331	258	1,589	367	198	565	1,261	244	1,505
상업, 운수	2,796	1,982	4,778	659	811	1,470	2,777	1,926	4,703
공공근무	3,234	2,957	6,191	722	1,013	1,735	3,476	3,054	6,530
각 경제분야총계	17302	9,851	27,153	4,685	3,800	8,485	16,957	9,385	26,342

1. 광업과 「에베르기」 포함

자료출처 : Statistischer Bundesamt,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vorschung,
Berlin

일 랑 표 A 31

1965년과 1968년 등·서독의 경제분야별 및 성별 취업인구의 분포구조 및

구 분 경 제 분 야 별	분 포 구 조 비 율				1965년에서		
	여 성 부 분				1965년의 경우를		
	1965		1968		서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남	녀	총 계
농업과 임업	54.0	45.3	53.9	45.0	88.9	88.5	88.7
가공업 (加工業)	29.0	39.0	27.6	32.2	96.7	90.1	94.8
건축업	5.1	10.0	5.3	11.9	92.5	94.7	92.6
상품 생산업	25.0	35.0	23.9	35.2	95.8	90.3	94.4
상업	54.1	67.7	52.6	69.2	103.5	97.6	100.3
운수·통신업	16.2	35.0	16.2	36.6	94.7	94.6	94.7
상업·운수	41.5	55.2	41.0	56.7	99.3	97.2	98.4
공공근무	47.8	58.4	46.8	59.5	107.5	103.3	105.5
각 경제분야 총 계	36.3	44.8	35.6	45.3	98.0	95.3	97.0

1. 광업과 「에베르기」 포함

발전상황

1968년까지의 발전			비 교					
100으로 보면			서독과 대비된 동독의 수치					
동 독			1965			1968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93.6	92.4	93.0	48.9	34.5	41.1	51.4	36.1	43.2
102.1	102.9	102.4	27.5	42.8	31.9	29.0	48.9	34.5
109.5	132.7	111.8	23.5	48.2	24.8	27.8	67.6	29.9
103.5	104.1	103.7	26.6	43.0	30.7	28.8	49.6	33.7
95.6	102.1	100.0	19.9	35.6	28.4	18.4	37.2	28.3
96.7	103.5	99.1	27.6	76.7	5.6	28.2	84.0	37.2
96.2	102.5	99.7	23.6	40.9	30.8	22.8	43.1	31.2
103.6	108.3	106.3	22.3	34.3	28.0	21.5	35.9	28.3
101.1	103.2	102.0	27.1	38.6	31.2	27.9	41.8	32.9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vorschung Berlin.

일 랑 표 A 32

1964 년 현재 동. 서독의 산업분야별 및 성별 피고용자수¹

구 분 산 업 분 야 별	단 위 1,000명			
	서 독		동 독	
	총 계	여 성	총 계	여 성
원료산업 (에버리지제외)	2,144.8	322.9	665.4	185.1
광업	483.3	12.3	192.9	34.9
야금(冶金)	649.5	60.1	107.9	22.3
화학	754.5	232.5	275.6	108.4
건축자재업	257.5	17.6	89.1	19.5
금속가공업	3,286.9	812.1	1,023.4	316.3
전자공업	882.0	349.1	230.7	103.2
조선업	75.9	3.7	38.1	7.9
기계제작	1,163.4	164.2	382.2	85.3
선박운수업	498.3	75.5	140.6	33.7
금속수상	521.9	155.8	134.0	46.3
정밀기계 및 광학기계	145.4	63.8	97.8	39.9
경공업	1,957.0	991.6	766.3	471.4
목제품업 및 재배상품업	338.9	91.8	143.8	61.2
섬유제품업	539.8	310.7	290.0	200.0
피복	360.2	298.7	105.5	91.8
피혁, 구두, 모피제품업	164.8	88.8	65.3	42.7
양봉원료 및 제지업	195.8	78.2	59.7	30.3
등사(복사)업	187.1	60.8	35.8	16.2
윤리 및 도자기업	70.5	62.6	66.2	29.2
영양섭취 및 향락업	506.3	200.9	203.1	104.4
총 계	7,895.0	2,371.1	2,658	1,077.2

1. 건설초보자 제외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 Deutsches

분포구조비율						비교	
산업분야별				여성부분		서독과 대비된	
서독		동독		서독	동독	동독의 수적	
총계	여성	총계	여성			총계	여성
27.2	13.9	25.0	17.2	15.0	27.8	31.0	57.4
6.1	0.5	7.3	3.2	2.5	18.1	39.9	283.7
8.2	2.6	4.1	2.1	9.3	20.7	16.6	37.1
9.6	10.0	10.4	10.1	30.8	39.3	36.5	46.6
3.3	0.8	3.3	1.8	6.8	21.9	34.6	110.8
41.6	34.9	38.5	29.4	24.7	30.9	31.1	38.9
11.2	15.0	8.7	9.6	39.6	44.7	26.2	29.6
1.0	0.2	1.4	0.7	4.9	20.7	50.2	213.5
14.7	7.1	14.4	7.9	14.1	22.3	32.9	51.9
6.3	3.2	5.3	3.1	15.2	24.0	28.2	44.6
6.6	6.7	5.0	4.3	29.9	34.6	25.7	29.7
1.8	2.7	3.7	3.7	43.9	40.8	67.3	62.5
24.8	42.6	28.8	43.8	50.7	61.5	39.2	47.5
4.3	3.9	5.4	5.7	27.1	42.6	42.4	66.7
6.8	13.4	10.9	18.6	57.6	69.0	53.7	64.4
4.6	12.8	4.0	8.5	82.9	87.0	29.3	30.7
2.1	3.8	2.5	4.0	53.9	65.4	39.6	48.1
2.5	3.4	2.2	2.8	39.9	38.7	30.5	38.7
2.4	2.6	1.3	1.5	32.5	45.3	19.1	26.6
2.2	2.7	2.5	2.7	36.7	44.1	38.8	17.1
6.4	8.6	7.6	9.7	39.7	51.4	40.1	52.0
100.0	100.0	100.0	100.0	29.5	40.5	33.7	46.4

일 략 표 A 33

1964년 현재 동·서독의 직업별 및 성별 취업인구 분포상황¹

직업구별		단위 1,000명				
대수 지표	직업명칭	서독			동	
		남	녀	총계	남	녀
11	광 산 업	253.6	(0.7)	254.3	54.3	3.1
12	야 금 업	83.7	(1.4)	85.1	17.6	2.3
13	화 공 업	189.2	75.3	264.5	51.3	47.8
14	건 축 자 재 공 업	93.6	5.6	99.2	31.3	5.3
1	원 료 제 조 업	620.1	83.0	703.1	154.5	58.5
21	(금속세공업 및 금속가공업)	791.9	104.8	896.7	270.9	64.4
22	(금속세공업 및 금속가공업)	1,350.0	101.0	1451.0	379.6	24.4
23	전 기 공	374.7	107.3	482.0	147.9	43.6
24	정밀기계기술자	96.7	18.2	114.9	19.8	12.3
25	목재기술자, 악기제조자	423.2	28.8	452.0	134.4	38.3
27	양봉업자, 제지업자	36.2	5.8	42.0	9.9	22.6
28	인쇄업, 제도업	143.6	95.5	239.1	25.9	26.4
30	계직업자	113.7	146.0	259.7	40.5	139.0
31	계직업자	110.2	459.4	569.3	24.7	157.3

1. 초급전습생 제외 : 서독 ; 14세에서 65세까지의 취업인구 분포상황

2.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독	구 조 비 율 (%)						서독에 대비된 동독의 수적			대 수 지 표
	서 독			동 독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57.4	1.71	(0.01)	1.09	1.22	0.09	0.72	21.41	(442.86)	22.57	11
19.9	0.56	(0.02)	0.36	0.40	0.07	0.25	21.03	(164.29)	23.38	12
99.1	1.27	0.88	1.13	1.15	1.35	1.24	27.11	63.48	37.47	13
36.6	0.63	0.07	0.43	0.70	0.15	0.46	33.44	94.64	36.90	14
213.0	4.17	0.98	3.01	3.47	1.66	2.66	24.92	70.48	30.29	15
335.3	5.33	1.23	3.84	6.07	1.82	4.19	34.21	61.45	37.39	21
404.0	9.08	1.19	6.21	8.51	0.69	5.05	27.92	24.16	27.84	22
191.5	2.52	1.26	2.06	3.32	1.23	2.40	39.47	40.63	39.73	23
32.1	0.65	0.21	0.49	0.44	0.35	0.40	20.48	67.58	27.94	24
172.7	2.85	0.34	1.93	3.01	1.08	2.16	31.76	132.99	38.21	25
32.5	0.24	0.07	0.18	0.22	0.64	0.41	27.35	389.66	77.38	27
52.3	0.97	1.12	1.02	0.58	0.75	0.65	18.04	27.64	21.87	28
179.5	0.77	1.72	1.11	0.91	3.93	2.25	35.62	95.21	69.12	30
182.0	0.74	5.41	2.44	0.55	4.45	2.28	22.41	34.24	31.97	31

직업구별		단위 1,000명				
		서			동	
대수 지표	직업명칭	남	녀	총계	남	녀
		32	제혁업자 . 모피가공업자	117.1	83.6	200.7
33	초자제조업 . 도자기업	57.2	29.1	86.3	22.9	18.0
34	음식물 및 식품제조업	318.7	59.5	378.2	86.0	52.2
35+362	건축업 (+상물채색업)	1,602.2	20.2	1,622.4	409.4	9.7
36(-362)	원료가공보조활동직책	39.4	5.1	44.5	10.4	12.8
38	기관사 . 보조기관사	355.6	6.2	361.8	181.9	25.6
2/3	원료 가공업	5,930.4	1,270.5	7,200.9	1,804.2	685.5
41+42	교급기사 및 토목기술자	760.3	30.0	790.3	276.6	35.1
43	기타의 전문기술공	85.4	42.6	128.0	22.2	45.0
4	공예업	845.7	72.6	918.3	298.8	80.1
51+53 2	농부 . 정원사 동물사육자 . 식물채배자	1,178.1	1,376.1	2,554.2	499.9	460.5
52	염수어업자 및 업업자	69.1	12.1	81.2	24.1	11.9
53(-532)	수 의사 (식물채배업 제외)	7.2	(0.5)	7.7	4.0	2.2
5	농림업	1,254.4	1,388.7	2,643.4	528.0	473.6
61	운수업	1,256.5	125.9	1,382.4	505.7	135.1

2. 동독의 직업분류체계

자료출처 : Mikrozensus 1964; Arbeits- und sozialstatistische Mitteilungen des BMA.

Volks- und Berufszählung 1964.

종 재	구 조 배 율 (%)						서독에 대비된 동독의수직			대 수 지 표
	독			동 독			남	녀	총 계	
	밖	내	총 계	남	녀	총 계				
78.9	0.79	0.98	0.95	0.90	1.10	0.99	34.16	46.53	39.31	32
40.9	0.39	0.34	0.37	0.51	0.51	0.51	40.00	61.86	47.39	33
138.2	2.24	0.70	1.62	1.93	1.48	1.73	26.99	87.73	36.54	34
492.1	10.77	0.24	6.94	9.18	0.27	5.24	25.55	48.02	25.83	35+362
23.2	0.27	0.06	0.19	0.23	0.36	0.29	26.40	250.98	52.14	36(-362)
207.5	2.39	0.07	1.55	4.08	0.72	2.60	51.15	412.90	57.35	38
2,489.7	39.83	14.94	30.81	40.44	19.39	31.14	30.42	53.96	34.58	2/3
311.7	5.11	0.35	3.38	6.20	0.99	3.90	36.38	117.00	39.44	41+42
67.2	0.57	0.50	0.55	0.50	1.27	0.84	26.00	105.63	52.50	43
378.9	5.68	0.85	3.93	0.70	2.26	4.74	35.33	110.33	41.26	4
980.4	7.92	16.19	10.93	12.21	13.03	12.01	42.43	34.46	37.60	51+532
35.0	0.47	0.14	0.35	0.54	0.31	0.44	34.88	90.08	43.10	52
6.2	0.05	(0.01)	0.03	0.09	0.06	0.08	55.56	(440.00)	80.52	53(-532)
1,001.6	8.44	16.34	11.31	11.84	13.40	12.53	42.09	34.10	37.89	5
640.8	8.45	1.48	5.91	11.34	3.82	8.02	40.25	907.31	46.35	61

직업구별		단위 1,000명				
대수 지표	직업명칭	서독			동	
		남	녀	총계	남	녀
62	상업 및 요식업	1,458.4	1,809.0	3,267.4	242.6	614.5
6	통신업 정보업 무역업	2,714.9	1,934.9	4,649.8	748.3	749.6
71	그림 및 문파사업	289.0	266.2	555.	151.8	187.9
72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분야 전문종사자	36.2	(4.7)	40.9	10.5	2.4
73	건강의료업 및 사회보장업 무종사자	150.4	346.5	496.9	37.1	168.1
7	그림그리는 직업 등 문화예술사업	475.6	617.4	1,093.0	199.4	358.4
81	보츠 및 수위	154.2	37.9	192.1	89.5	15.1
82	체육계통 직업	76.8	82.7	159.5	15.0	32.7
83	증재업 . 임대업	18.2	10.0	28.2	1.4	3.8
85	세탁업	79.1	864.2	943.3	28.7	312.8
87	종교계통	47.5	42.7	90.2	10.7	7.6
8	서비스업 기타	375.8	1,037.5	1,413.3	145.3	372.0
91+92	경영관리 및 공장경영	2,205.1	1,785.9	3,991.0	354.3	629.0
94	법률사무	66.9	(3.5)	70.4	4.7	1.1
9	경영관리 및 법률관계 종사자	2,272.0	1,789.4	4,061.4	359.0	630.1
09	특정직책 없는 고용인	383.3	304.2	687.5	222.2	127.0
총계	전 직업별 종합 총계	14,872.2	8,498.2	23,370.4	4,459.7	3,534.8

2.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자료출처 : Mikrocensus 1964, Arbeits- und sozialstatistische Mitteilungen des B M A .

Volks- und Berufszählung 1964.

독	구 조 비 율 (%)						서독에 대비된 동등의수지			대 수 지 표
	서			동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남	녀	총 계				
총 계										
857.1	9.81	21.29	13.98	5.44	17.38	10.72	16.64	33.97	26.23	62
1,497.9	18.26	22.77	19.89	16.78	21.20	18.74	27.56	38.74	32.21	6
339.7	1.94	3.13	2.38	3.40	5.32	4.25	52.53	70.59	61.19	71
12.9	0.24	(0.06)	0.18	0.24	0.07	0.16	29.01	(51.06)	31.54	72
205.2	1.01	4.08	2.13	0.83	4.76	2.57	24.67	48.51	41.30	73
557.8	3.19	7.27	4.68	4.47	10.15	6.98	41.93	58.05	51.03	7
104.6	1.04	0.45	0.82	2.01	0.43	1.31	58.04	39.84	54.45	81
47.7	0.52	0.97	0.68	0.34	0.93	0.60	19.53	39.54	29.91	82
5.2	0.12	0.12	0.12	0.03	0.11	0.07	7.67	38.00	18.44	83
341.5	0.53	10.17	4.04	0.64	8.85	4.27	36.28	36.20	36.20	85
18.3	0.32	0.50	0.39	0.24	0.72	0.23	22.53	17.80	20.29	87
517.3	2.52	12.21	6.05	3.26	10.52	6.47	38.66	35.86	36.60	8
983.3	14.83	21.02	17.08	7.95	17.80	12.30	16.07	35.22	24.64	91+92
5.8	0.45	(0.04)	0.30	0.11	0.03	0.07	7.03	(31.43)	8.24	94
989.1	15.28	21.06	17.38	8.06	17.83	12.37	15.80	35.21	24.35	9
549.2	2.58	3.58	2.94	4.98	3.59	4.37	57.97	41.75	50.79	09
7,994.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9.99	41.60	34.21	총 계

일 략 포 A 34

동·서독의 직업종사자 숫자 등급별 취업인구 분포상황¹ 40대 직업등급별 표시
단위 1,000명, 전체취업인구 종사비율(%) -남·녀 포함-

서 독				순 위	동 독				
취업인구수		직업등급			표시	직업등급		취업인구수	
단 위 1,000	%	직업 표시	고 유 남바 ²			고 유 남바 ³	직업 표시	단 위 1,000	%
1,908.3	8.17	공산품 도매상 도매 상지배인 .사무원	7121	1	5111	농업분야 노동 자 .농업가	608.5	7.61	
1,243.5	5.52	일반도매상 .소매상 소매상 .물건구입자 판매인	5111	2	9111	도매상에서의 도매업자 대리인	322.7	4.04	
810.3	3.47	농업 경영자	1111	3	6211	도매상인 .대리인 판매원	317.0	3.97	
756.5	3.24	철 물 품	2641	4	8511	살림방청소부 집기청소부	244.7	3.06	
635.8	2.72	자동차 운전자	5216	5	6115	자동차 운전자	231.0	2.89	
564.9	2.42	잡무를 처리하는 보조직원	3919	6	6279	상품창고 노동자 상품발송 노동자	223.9	2.80	
440.0	1.88	미 장 이	2411	7	2219	건축공사장 철물 공 .일반 철물공	192.5	2.41	
423.5	1.81	건축공사장 .청소부 집기 청소부	6311	8	9122	부기(장부)직원	162.5	2.03	
346.8	1.48	청부업자 조합직원	7111	9	6151	운송 업자	137.7	1.72	
338.4	1.45	건축공사장 보조 원	3911	10	9151	국영기업체 종업 원	120.7	1.51	

1. 초급견습생 제외 .65세 이하의 취업인구만 취급했음.
2. 서독의 직업분류 체계
3.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일 랫 표 A 34

서 독				순 위	동 독				
취업인구수		직 업 등 급			포 시	직 업 등 급		취업인구수	
단 위 1,000	%	직 업 포 시	고유 남바2			고유 남바2	직 업 포 시	단 위 1,000	%
333.8	1.43	부기(장부)계원	7123	11	7331	간호원 및 환자 시종인	117.8	1.47	
314.0	1.34	건축장식사, 실내장 식사	3021	12	7121	보통학교 선생	117.1	1.46	
313.9	1.34	속기타이피스트, 속기 사, 일반타이피스트	7128	13	9141	속기타이피스트, 속 기사, 일반타이피스 트	114.1	1.43	
312.7	1.34	가 정 부	6215	14	3511	미 장 이	112.8	1.41	
297.3	1.27	관리직원(고급관리직 포함)	7115	15	5141	동물사육자, 동물 감독자	103.6	1.30	
290.9	1.25	전기 시설 기술자	2721	16	8111	야경군, 급사	101.6	1.27	
289.1	1.24	질장이	2478	17	5113	트럭타 운전사, 농기구 운전사	948.6	1.18	
278.9	1.19	기타 분야의 기술자 들	4161	18	6114	기차출발계, 관리계 조차계	90.5	1.13	
276.4	1.18	상품판매원, 상품 발송업무노동자	3816	19	6269	요리 기술자	87.8	1.10	
231.8	0.99	광 부	2111	20	9129	각종회계 업무 종사원	80.7	1.01	
198.2	0.85	성인학교교사, 특수 학교 교사	8223	21	3813	화부(火夫)	75.5	0.94	

2. 서독의 직업분류 체계

3.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서				동				
취업인구수		직업등급		순위	직업등급		취업인구수	
단위 1000	%	직업표시	고유 남바2		고유 남바3	직업표시	단위 1000	%
194.5	0.83	보조직공(창고업.발 송업)	3914	22	2151	선 반 공	71.8	0.90
180.7	0.77	톱질 기술자	3481	23	2211	기계 칠물공	70.4	0.88
180.4	0.77	간호원 환자.시종인	8153	24	2333	전기제품 조립공	69.0	0.86
180.2	0.77	창고 관리인	3817	25	6145	우편업무 전문 노동 자	68.3	0.85
179.7	0.77	선 반 공	2551	26	9143	보조 사무원	63.5	0.79
179.1	0.77	적물 재봉사	3489	27	1311	화공업 노동자(전문 노동자)	57.7	0.72
174.9	0.75	화공업노동자, 조수	2811	28	3119	적물 재봉사	57.3	0.72
160.2	0.69	건축기사, 건축공, 건축기술자	4141	29	3567	칠 장 이	51.5	0.64
155.5	0.67	우편 배달부	5255	30	3111	톱질 기술자	48.4	0.61
153.8	0.66	은행 전문 종업원	5121	31	2331	전기시설 시공기사	47.7	0.60
146.4	0.63	여관주인 호텔업자	6111	32	2161	용 접 공	46.0	0.58

2. 서독의 직업분류 체계

3.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일람표 A 34

서				동				
취업인구수		직업등급		순위	직업등급		취업인구수	
단위 1000	%	직업포시	고유 남바2		고유 남바3	직업포시	단위 1000	%
144.4	0.62	기관사	2671	33	7112	유치원보모	44.6	0.56
141.8	0.61	이발사	6511	34	2529	가구사	43.8	0.55
136.5	0.58	기사(기계·농기구등)	4121	35	7111	청소년지도원	43.2	0.54
135.2	0.58	상품감독원·상품분류원	3813	36	8211	이발사	42.5	0.53
127.8	0.55	기타수송업자	5262	37	4299	잡역기술자	41.5	0.52
126.8	0.54	방정리하는사람	2431	38	3531	방정리하는사람	41.4	0.52
120.4	0.52	경찰보조원	7311	39	5131	정원사	40.7	0.51
119.5	0.51	금속품제조·가공업자	2599	40	8541	세탁공·다리미질공	39.9	0.50
13542.6	5796		-	-	-		46465	5821
23365.	110000		-	-	-		79945	10000

2. 서독의 직업분류 체계

3.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자료출처 : Mikrozenava-1964.

Volks- und Berufszählung 1964.

일 랫 표 A 35

동·서독의 직업종사자 숫자 등급별 취업인구 분포상황¹ 40대 직업등급별 표시 단위 1,000명·전체취업인구 종사비율(%) -남자-

서 독				순 위	동 독			
취업인구수		직업등급			직업등급		취업인구	
단 위 1,000	%	직업 표시	교 유 남바2		표 시	교 유 남바3	직업 표시	단 위 1,000
887.4	5.97	공산품도매상, 도매 상지배인, 사무원	7121	1	5111	농업분야노동자, 농업가	273.1	6.12
749.8	5.04	철물공(철근건축 철물공 제외)	2641	2	6115	자동차 운전수	227.3	5.10
664.1	4.47	농업가(기업농)	1111	3	2219	철근철물공, 일반 철물공	185.4	4.16
629.1	4.23	자동차 운전수	5216	4	9111	상품판매 관리인	160.4	3.60
505.6	3.40	도매상, 소매상, 구매자, 판매자	5111	5	6151	운수업종사 노동 자	120.6	2.70
438.2	2.95	미 장 이	2411	6	3511	미 장 이	112.6	2.52
331.0	2.23	건축공사 막일꾼, 건축공사장 노동자	3911	7	6279	물품창고노동자, 상품발송인	109.2	2.45
319.5	2.15	특정활동없는 막일 꾼 조력자(잡무처 리하는 보조직원)	3919	8	5113	트럭타운전수, 경운기운전수	94.3	2.11
311.4	2.69	건축가구사, 실내장 식 가구사	3021	9	8111	야경원, 급사, 집 사	86.5	1.94

1. 초급 전습생 제외, 65세 이하의 취업 인구만 취급했음
2. 서독의 직업분류 체계
3.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일 랑 표 A 35

서				동				
취업인구수		직업등급		순 위	직업등급		취업인구수	
단 위 1,000	%	직업 표시	고 유 남바2		고 유 남바3	직업 표시	단 위 1,000	%
283.8	1.91	정부업자, 조합요원 지배인	7111	10	3853	화 부	73.2	1.65
280.8	1.89	화가, 채색공	2478	11	2211	기계철물공	69.5	1.56
267.9	1.86	전기시설시공자, 전 기시설조립공, 케이 블 조립공	2721	12	2151	선 반 공	65.0	1.46
267.3	1.86	기타고급기술자, 일 반기술자	4161	13	6114	기차출발계, 판 리계, 조사계	64.4	1.44
254.3	1.71	높은직위의 관리인	7115	14	9151	국영기업체 총 업원	63.2	1.42
231.2	1.55	광부(석탄, 광석, 소금)	2111	15	6211	판매인, 소매상	59.2	1.35
175.4	1.18	선 반 공	2551	16	2333	전기기계 조립 기차	54.4	1.22
157.9	1.06	건축가, 고등건축 기사, 건축기술자	4141	17	7121	국민학교 교사	52.2	1.17
152.5	1.03	창고 관리인	3817	18	5147	동물 사육자	50.4	1.13
149.2	1.00	보조노동자(창고업 무, 발송업무)	3914	19	3567	채색공, 회공	49.5	1.11

2. 서독의 직업분류 체계

3.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일 랫 표 A 35

서 독				순 위	동 독				
취업인구수		직 업 등 급			표 시	직 업 등 급		취업인구수	
단 위 1000	%	직 업 표 시	고 유 남바2			고 유 남바3	직 업 표 시	단 위 1000	%
136.2	0.92	고급기사(기계및 농기 구 제작	4121	20	9122	장부(경리)계	45.8	1.03	
135.2	0.91	장부(경리)계	7123	71	2331	전기시설 기술자	44.2	0.99	
134.4	0.90	화공업종사, 노동자조수	2811	22	2161	용 접 공	43.9	0.97	
127.6	0.86	기 계 공	2671	23	2529	가 구 사	42.3	0.95	
126.3	0.85	목 수	2431	24	3531	목 수	41.4	0.93	
119.2	0.80	경찰고용원, 국경수비 대 고용원	7311	25	3565	합 석 장 이	38.1	0.85	
118.7	0.80	용접공, 용광로감독자	2571	26	0995	특정직책없는 작업보조 원	35.3	0.79	
117.4	0.79	우편 배달원	5255	27	2244	철 물 공	34.8	0.78	
110.7	0.74	백 정	3751	28	4299	특정활동없는 다분야기 술공	34.2	0.77	
109.8	0.74	수공업 직공	2673	29	1311	화공전문 노동자	32.9	0.74	
107.8	0.72	전철수, 철도조차계	5214	30	6111	목장서자동차 운전수	32.5	0.73	
104.4	0.70	빵 제조업자	3721	31	1111	포도원 일군	31.3	0.70	
103.8	0.70	기타 운송업자	5262	32	3445	빵 제조업자	30.1	0.68	
102.7	0.69	상품포장인, 상품발송인	3816	33	3581	건축 보조노동자	29.8	0.67	

2. 서독의 직업분류 체계

3.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일 랑 표 A 35

서 독				순위	동 독			
취업인구수		직업등급			직업등급		취업인구수	
단 위 1000	%	직업표시	고유 남바2		표시	고유 남바3	직업표시	%
98.5	0.66	교원 (국민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8223	34	4141	건축가 고등건축기사	27.7	0.62
96.2	0.65	은행전문 종업원	5121	35	2181	기구(도구, 용구) 제조인	27.5	0.62
94.7	0.64	발동기 기관사	4311	36	3559	기타 지하공사노동자	26.0	0.58
94.0	0.63	원정 원예사	1151	37	4291	국영업체 지배인	26.0	0.58
85.4	0.57	여인숙주인, 호텔업자, 숙박업자	6111	38	5147	젖(우유, 양유등)짜 는 사람	25.6	0.57
78.9	0.53	기타 금속품제조자 금속 노동자	2599	39	3411	백 청	25.5	0.57
76.8	0.52	금속 연마공	2556	40	3851	기계 감독인	24.5	0.55
9344.1	6283	40개 직업분야 전체	-	-	-	40개 직업분야 전체	26690	5985
148712	10000	취업인구 총수	-	-	-	취업인구 총수	44597	10000

2. 서독의 직업분류 체계

3. 동독의 직업분류 체계

자료출처 : Mikrozensus 1964.

Volks- und Berufszahlung 1964.

일 랑 표 A 36

동·서독의 직업종사자 숫자 등급별 취업인구 분포상황

40대 직업등급별 표시

단위 1,000명· 전체 취업인구 종사비율(%) -여자-

서				순 위 표 시	동			
취업인구수		직업등급			직업등급		취업인구수	
단위1000	%	직업표시	고유 번호		고유 번호	직업표시	단위1000	%
1020.9	12.02	공산품판매인, 도매상 관리인, 사무원	7121	1	5111	농업분야노동력, 농장주	335.4	9.49
737.9	8.69	도매상, 소매상, 구입 자, 점원	5111	2	6211	도매상, 점원, 소매상	257.7	7.29
416.4	4.90	방청소부, 가구청소부	6311	3	8511	방청소부, 집청소부	241.8	6.84
309.5	3.64	속기 타이피스트, 타이 피스트	7128	4	9111	도매상관리인	162.3	4.59
296.4	3.49	가정부	6215	5	9122	장부(경리)계	116.7	3.30
245.4	2.89	특정활동없는 보조직원	3919	6	6279	창고노동자, 상품발송인	114.7	3.25
198.4	2.34	장부(경리)계	7123	7	9141	속기 타이피스트, 타이 피스트	113.2	3.20
173.7	2.05	상품포장인, 상품발송인	3816	8	7331	간호부, 환자시종인	106.9	3.02
172.4	2.03	기타 재봉사	3489	9	6269	기타 요리사	87.1	2.46
162.5	1.91	간호부, 환자시종인	8153	10	7121	보통학교선생	64.9	1.84
146.2	1.72	농장주	1111	11	9129	기타 회계업무종사자	64.5	1.83
114.0	1.34	여자재단사	3481	12	9151	국영관리업체종업원	57.5	1.63
99.7	1.17	여교사(국민학교, 중등 학교, 특수학교)	8223	13	3179	기타 재봉사	55.9	1.58
93.6	1.10	기타 요리사	3779	14	6261	여자요리원	53.8	1.52
90.5	1.07	세탁부, 다리미질공	6841	15	9143	사무보조원	53.4	1.51
78.8	0.93	상품검사원, 상품분류원	3813	16	5141	동물사육자 등	53.3	1.51
77.9	0.92	피복재봉사	3482	17	6145	우편업무종사전문공	51.8	1.47
76.3	0.90	술창고급사, 여객기급사 등	6121	18	7112	유치원 보조	44.5	1.26
70.7	0.83	여자이발사	6511	19	3112	피복재봉사	37.6	1.06

서				동					
취업인구수		직업등급		순위표시	분류	직업등급		취업인구수	
단위1000	%	직업표시	분류			분류	직업표시	단위1000	%
66.5	0.78	세탁소재단사, 세탁소 재봉사	3483	20	7111	청소년지도원	37.0	1.05	
63.0	0.74	청부업자, 협회요원	7111	21	8541	세탁부, 다리미질공	36.3	1.03	
61.0	0.72	숙박업자, 호텔업자	6111	22	3111	재단사	34.7	0.98	
57.6	0.68	은행여직원	5121	23	3011	방직공, 방직견습공	29.4	0.83	
57.0	0.67	유치원 보조	8211	24	8211	이발사	28.8	0.82	
54.7	0.64	면회시간안내조수	8157	25	6114	기차출발제, 기차차장	26.1	0.74	
53.6	0.63	가정부	6211	26	6271	상품포장원, 상품검사원	25.1	0.71	
48.3	0.57	기타 전기기계장치 조립자	2749	27	1311	화공품노동자, 화공전문노동자	24.8	0.70	
47.6	0.56	막별이꾼 노동자	1231	28	8591	집사(執事)	23.1	0.65	
45.3	0.53	보조원(상고, 발송)	3914	29	9112	은행전문종업원	22.1	0.63	
45.2	0.53	화공업 종사 노동자	2811	30	6251	급사, 보이	21.0	0.59	
43.0	0.51	관리직 고용원	7115	31	3113	세탁소재단사	20.6	0.58	
41.1	0.48	요리인	3771	32	3022	직공	20.6	0.58	
40.6	0.48	기타 금속품제조인, 금속가공인	2599	33	3015	실타래제조인, 실타래다루는 직책	20.6	0.58	
38.1	0.45	우편 배달부	5255	34	2721	계지직공	18.7	0.53	
36.7	0.43	수도원계통 종사자	8317	35	5139	기타 원예업종사자	17.8	0.50	
34.1	0.40	집배부, 사교적노동부	7711	36	6143	전화교환수	17.6	0.50	
33.3	0.39	실타래제조인, 실타래다루는 직책	3425	37	6153	수송업 종사자	17.0	0.48	
30.6	0.36	퍼렉제품제조사	3643	38	5131	원정(兩丁)	16.8	0.48	
29.3	0.35	전화교환수	5253	39	6241	숙박업자, 호텔업자	16.6	0.47	

서				순 위 포 시	동			
취업인구수		직업등급			직업등급		취업인구수	
단위1000	%	직업표시	고용2 남백		고용3 남백	직업표시	단위1000	%
28.8	0.34	방적공 (실직는사람)	3421	40	3232	편물제조인	16.5	0.47
5536.6	65.18	40개직업분야전체				40개직업분야전체	2564.2	72.54
8493.9	10000	취업인구총수				취업인구총수	3534.8	10000

1. 초급 견습생 제외
2. 서동의 직업분류 체계
3. 동동의 직업분류 체계

자료출처 ; Microcensus 1964

Volks - und Berufszahlung 1964.

A37 ~ A57

일 랑 표 A 37

1964년 경제분야별 및 직업분야별 내지 성별(性別) 동서독 취업인구 분포상황
백분율(총 100)

직업분야	2 대수지표	농업과 임업		에베르기산업과 광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남녀 합계					
원료산업에 속하는 직업	1	(0.1)	0.1	35.6	19.6
재료가공 및 세공업	2/3	0.2	4.1	3.0	4.8
기술직	4	(0.2)	2.1	5.4	6.8
농업과 임업에 속하는 직업	5	94.7	96.0	(0.2)	-
운수업, 통신정보업, 무역업	6	0.6	2.8	1.2	2.8
그림, 문화, 학문등 문예업	7	(0.1)	0.8	(0.3)	0.7
서비스업 기타	8	0.8	2.8	1.5	2.4
경영관리, 관리제도, 법률제 도에 속하는 직책	9	0.2	4.3	1.5	2.8
기타직업	09	(0.5)	8.1	1.5	0.3
이상 직업분야 전체		10.6	15.0	2.9	3.4
남성부분					
원료산업에 속하는 직업	1	(0.1)	0.1	40.1	24.9
재료가공 및 세공업	2/3	0.2	5.5	3.6	5.9
기술직	4	(0.2)	2.4	5.7	7.5
농업과 임업 분야의 직업	5	91.6	95.5	(0.3)	0.0
운수업, 통신정보업, 무역업	6	0.4	4.0	2.0	4.2
그림, 문화, 학문등 문예업	7	(0.1)	1.6	(0.5)	1.6
서비스업 기타	8	(0.4)	5.8	3.0	3.9
경영관리, 관리제도, 법률제 도에 속하는 직책	9	0.2	4.5	1.9	3.1
기타직업	09	(0.6)	1.3	2.7	0.4
이상 직업분야 전체		7.7	15.0	4.2	4.9

가공(세공)업		건축업		상업		운수 및 정보산업		공공업무와 개인업무		총계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61.3	72.9	1.4	1.6	(0.5)	0.5	(-)	0.1	1.0	5.3	100	100
65.6	67.4	22.2	12.9	2.5	1.7	3.0	4.9	3.5	4.3	100	100
54.4	59.2	7.4	6.7	2.1	1.2	7.1	6.0	23.3	18.0	100	100
1.2	0.4	(0.1)	0.1	0.6	0.5	(0.1)	-	3.2	3.0	100	100
25.3	24.0	2.2	2.6	38.0	36.6	16.5	22.2	16.1	9.1	100	100
5.1	4.9	(0.2)	0.8	2.3	1.0	(0.4)	0.7	91.7	91.1	100	100
13.2	18.5	0.9	2.2	3.9	10.2	2.2	3.6	77.6	60.4	100	100
27.1	32.9	2.5	3.7	13.3	16.2	8.0	5.7	47.3	34.3	100	100
76.4	14.7	5.0	0.8	3.9	6.0	1.8	0.7	10.9	69.4	100	100
37.7	36.5	8.5	5.6	11.4	10.5	6.2	7.0	22.9	22.0	100	100
57.3	65.4	1.5	2.0	(0.4)	0.5	(0.0)	0.1	(0.5)	6.9	100	100
60.4	58.7	26.6	17.6	2.3	1.6	3.6	6.2	3.4	4.6	100	100
54.3	58.2	7.9	8.1	2.0	1.2	7.4	6.6	22.5	16.1	100	100
1.8	0.4	(0.1)	0.2	0.6	0.5	(0.2)	0.0	5.4	3.4	100	100
26.0	26.5	3.1	4.6	30.1	24.8	25.7	28.7	12.6	7.3	100	100
8.2	9.4	(0.4)	2.1	2.4	1.6	(0.8)	1.4	87.7	82.3	100	100
18.2	26.2	1.3	2.8	1.9	6.8	2.3	3.9	73.0	50.9	100	100
23.1	35.5	2.2	4.2	9.8	14.0	9.5	5.7	53.3	33.0	100	100
70.2	4.0	8.7	0.5	4.1	1.7	2.9	0.4	10.9	91.8	100	100
41.0	39.0	12.7	9.1	6.3	6.5	8.1	8.4	18.1	17.4	100	100

작업분야	대수지표 ²	농업과 임업		에너지산업과 광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여성부분					
원료산업에 속하는 직업	1	(0.2)	-	(1.5)	5.6
재료가공 및 세공업	2/3	(0.1)	0.3	(0.1)	1.8
기술직	4	(0.1)	1.0	(2.6)	4.5
농업과 임업에 속하는 직업	5	97.5	96.6	(0.1)	-
운수업, 통신정보업, 무역업	6	0.9	1.6	(0.2)	1.4
그림, 문화, 학문등 분야업	7	(0.1)	0.3	(0.2)	0.1
서비스업 기타	8	0.9	1.6	1.0	1.9
경영관리, 관리제도, 법률제도에 속하는 직업	9	0.3	4.2	1.1	2.6
기타직업	09	(0.5)	19.9	0.1	0.2
이상 직업분야 전체		15.6	15.0	0.5	1.5

1. 초급 전습생 포함. 65세이하의 취업인구만 취급.

동독의 경우엔 초급자 제외

2. 동독의 직업분류체계

자료출처: Mikrozensus 1964, Arbeits- und sozialstatistische Mitteilungen des

BMA, Volks- und Berufszahlung 1964.

가공(세공)업		전 축 업		상 업		운수 및 정보산업		공공업무와 개인업무		총 계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91.7	92.5	(0.1)	0.3	(1.3)	0.5	-	-	5.2	1.0	100	100
91.5	90.3	0.4	0.7	3.4	2.0	(0.3)	1.6	4.1	3.4	100	100
55.5	62.9	(2.6)	1.4	(3.6)	1.3	(4.2)	3.9	31.3	25.0	100	100
0.6	0.3	(-)	-	0.6	0.5	-	-	1.2	2.5	100	100
24.5	21.6	1.1	0.5	48.4	48.3	4.2	15.6	20.8	11.0	100	100
2.7	2.4	(0.1)	0.1	2.2	0.7	(0.1)	0.4	94.7	96.0	100	100
11.4	15.5	0.7	1.9	4.5	11.5	2.2	3.5	79.2	64.0	100	100
32.0	31.4	2.9	3.5	17.6	17.6	6.2	5.8	39.9	35.0	100	100
84.2	33.5	(0.4)	1.3	3.6	13.5	0.5	1.4	10.8	30.1	100	100
32.1	33.8	1.1	1.2	16.8	15.6	2.7	5.2	31.3	27.7	100	100

일 략 표 A 38

1964년 동·서독의 대학졸업생 및 전문학교졸업생의 산업분야별 내지 성별 취업분포상황

산업 분야	1,000 명						구조 비율		
	서 독			동 독			산 업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 계
대 학 졸 업 자									
농업과 임업	5.3	(1.7)	7.0	6.3	0.6	6.9	0.8	(0.8)	0.8
가공 및 세공업 ²	120.6	10.3	130.9	25.9	2.7	28.6	17.4	4.6	14.2
건축업	13.0	(0.8)	13.8	2.3	0.1	2.4	1.9	(0.4)	1.5
상 업	31.5	17.5	49.0	3.6	1.1	4.7	4.5	7.8	5.3
운수업 및 통신정보업	8.8	(1.0)	9.8	2.9	0.3	3.2	1.3	(0.4)	1.1
서비스업	514.8	193.6	708.4	112.3	41.3	153.6	74.2	86.1	77.1
전 산업분야 총계	694.0	224.9	918.9	153.3	46.1	199.4	100.0	100.0	100.0
전 문 학 교 졸 업 자									
농업과 임업	135.6	30.6	166.2	25.1	3.4	28.5	16.0	13.6	15.5
가공 및 세공업 ²	321.9	50.3	372.2	101.9	10.1	112.0	38.1	22.4	34.8
건축업	60.8	(2.9)	63.7	15.0	0.6	15.6	7.2	(1.3)	6.0
상 업	49.6	35.0	84.6	8.0	3.0	11.0	5.9	15.6	7.9
운수업 및 통신정보업	66.0	8.7	74.7	13.3	1.4	14.7	7.8	3.9	7.0
서비스업	211.8	97.3	309.1	91.8	94.9	186.7	25.0	43.3	28.9
전 산업분야 총계	845.7	224.8	1070.5	255.1	113.4	368.5	100.0	100.0	100.0
대 학 및 전 문 학 교 졸 업 자 전 체									
농업과 임업	140.9	32.3	173.2	31.4	4.0	35.4	9.2	7.2	8.7
가공 및 세공업 ²	442.5	60.6	503.1	127.8	12.8	140.6	28.7	13.5	25.3
건축업	73.8	(3.7)	77.5	17.3	0.7	18.0	4.8	(0.8)	3.9
상 업	81.1	52.5	133.6	11.6	4.1	15.7	5.3	11.7	6.7
운수업 및 통신정보업	74.8	9.7	84.5	16.2	1.7	17.9	4.9	2.2	4.2
서비스업	726.6	290.9	1017.5	204.1	136.2	340.3	47.2	64.7	51.1
전 산업분야 총계	1539.7	449.7	1989.4	408.4	159.5	567.9	100.0	100.0	100.0

1. 65 세이하의 취업인구분포상황만을 표시했음.

2. 에베르기산업과 광업분야도 포함되었음.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Mikrozensus 1964.

Volke - und Berufszahlung 1964.

백 분 비 (%)											비 교		
분 야			여성구분		취업분포상황비율						서독에 대한 동독의 비율		
동 독			서독	동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4.1	1.3	3.5	(24.3)	8.7	0.4	(0.1)	0.2	0.9	0.1	0.5	118.9	(35.3)	98.6
16.9	5.9	14.3	7.9	9.4	1.6	0.3	1.2	1.2	0.2	0.8	21.5	26.2	21.8
1.5	0.2	1.2	(5.8)	4.2	0.6	(0.8)	0.6	0.5	0.2	0.5	17.7	(12.5)	17.4
2.3	2.4	2.4	35.7	23.4	2.1	1.0	1.5	1.2	0.2	0.5	11.4	6.3	9.6
1.9	0.7	1.6	(10.2)	9.4	0.7	(0.4)	0.6	0.8	0.2	0.6	33.0	(30.0)	32.7
73.3	89.6	77.0	27.3	26.9	16.2	6.6	11.6	15.5	4.2	9.0	21.8	21.3	21.7
100.0	100.0	100.0	24.5	23.1	4.1	2.3	3.4	3.3	1.2	2.3	22.1	20.5	21.7
9.8	3.0	7.7	18.4	11.9	9.5	1.9	5.4	3.6	0.5	2.1	18.5	11.1	17.1
39.9	8.9	30.4	13.5	9.0	4.2	1.6	3.4	4.8	0.8	3.2	31.7	20.1	30.1
5.9	0.5	4.2	(4.6)	3.8	2.9	(2.9)	2.9	3.1	1.2	3.0	24.7	(20.7)	24.5
3.1	2.6	3.0	41.4	27.3	3.4	2.0	2.7	2.7	0.5	1.2	16.1	8.6	13.0
5.2	1.2	4.0	11.6	9.5	5.0	3.5	4.8	3.5	0.7	2.6	20.2	16.1	19.7
36.0	83.7	50.7	31.5	50.8	6.7	3.3	5.1	12.7	9.6	10.9	43.3	97.5	60.4
100.0	100.0	100.0	21.0	30.8	4.9	2.3	4.0	5.4	3.0	4.3	30.2	50.4	34.4
7.7	2.5	6.2	18.6	11.3	9.8	2.0	5.6	4.5	0.6	2.7	22.3	12.4	20.4
31.3	8.0	24.8	12.0	9.1	5.8	1.9	4.6	6.0	1.0	4.0	28.9	2.11	27.9
4.2	0.4	3.2	(4.8)	3.9	3.5	(3.7)	3.5	3.6	1.4	3.4	23.4	(18.9)	23.2
2.8	2.6	2.8	39.3	26.1	5.5	3.0	4.2	3.9	0.7	1.8	14.3	7.8	11.8
4.0	1.1	3.2	11.5	9.5	5.7	3.9	5.4	4.3	0.9	3.1	21.7	17.5	21.2
50.0	85.4	59.9	28.6	40.0	22.9	9.9	16.6	28.2	13.8	19.9	28.1	46.8	33.4
100.0	100.0	100.0	22.6	28.1	9.0	4.6	7.4	8.7	4.2	6.7	26.5	35.5	28.5

일 램 표 A 39

1964년 동·서독 대학졸업생들의 전문분야별 및 성별취업분포상황

전 문 분 야	1,000 명					
	서 독			동 독		
	남 성	여 성	총 계	남 성	여 성	총 계
농업 및 임업분야 전공	17.9	(2.9)	20.8	11.0	1.3	12.3
예술분야 전공	30.9	14.3	45.2	6.4	2.4	8.8
산업분야 전공	(1.8)	(0.3)	(2.1)	0.2	-	0.2
기술분야 전공	91.2	(0.5)	91.7	22.3	0.5	22.8
이중에서 광업과 야금분야	6.5	-	6.5	2.6	-	2.6
기계제작분야	30.0	-	30.0	10.8	0.3	11.1
전기기술	23.6	-	23.6	4.2	0.1	4.3
자연과학분야 전공	39.9	5.0	44.9	12.2	2.1	14.3
이중에서 수학분야	5.1	(1.0)	6.1	1.4	0.2	1.6
물리학분야	8.2	(0.4)	8.6	3.1	0.2	3.3
화학분야	18.5	(1.8)	20.3	5.2	0.9	6.1
생물학분야	(2.2)	(0.4)	(2.6)	1.0	0.5	1.5
교육학, 심리학	216.0	143.3	359.3	49.0	24.4	73.4
이중에서 신학	44.0	(1.1)	45.1	5.3	0.3	5.6
교직, 철학, 역사학등	168.5	139.9	308.4	42.2	23.5	65.7
경영학, 관리학 전공	137.5	8.9	146.4	31.0	5.4	36.4
이중에서 법률학	75.7	(3.5)	79.2	11.4	2.1	13.5
보건위생관계전공	103.1	33.7	136.8	21.2	10.0	31.2
이중에서 일반의학	67.4	18.8	86.2	12.9	6.8	19.7
치과의학	17.0	(3.6)	20.6	4.2	1.5	5.7
수의과의학	8.7	(0.7)	9.4	2.6	0.3	2.9
약학	9.7	10.6	20.3	1.5	1.4	2.9
기타전공 ²	55.7	16.0	71.7	-	-	-
모든전문분야 총계	694.0	224.9	918.9	153.3	46.1	199.4

1. 65 세이하만 취급
2. 특정 전문분야 없는사람포함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Mikrozensus 1964, Volks- und Berufszahlung 1964.

구조비율 백분비 (%)										
전 문 분 야						여성부분		비 교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서득에대한 동득의비율		
남 성	여 성	총 계	남 성	여 성	총 계			남 성	여 성	총 계
2.6	(1.3)	2.3	7.2	2.8	6.2	(13.9)	10.6	61.5	(44.8)	59.1
4.5	6.4	4.9	4.2	5.2	4.4	31.6	27.3	20.7	16.8	19.5
(0.3)	(0.1)	(0.2)	0.1	-	0.1	(14.3)	-	(11.1)	(-)	(9.5)
13.1	(0.2)	10.0	14.5	1.1	11.4	(0.5)	2.2	24.5	(100.0)	24.9
0.9	-	0.7	1.7	-	1.3	-	-	40.0	-	40.0
4.3	-	3.3	7.0	0.7	5.6	-	2.7	36.0	-	37.0
3.4	-	2.6	2.7	0.2	2.2	-	2.3	17.8	-	18.2
5.7	2.2	4.9	8.0	4.6	7.2	11.1	14.7	30.6	42.0	31.8
0.7	(0.4)	0.7	0.9	0.4	0.8	(16.4)	12.5	27.5	(20.0)	26.2
1.2	(0.2)	0.9	2.0	0.4	1.7	(4.7)	6.1	37.8	(50.0)	33.4
2.7	(0.8)	2.2	3.4	2.0	3.1	(8.9)	14.8	28.1	(50.0)	30.0
(0.3)	(0.2)	(0.3)	0.7	1.1	0.8	(15.4)	33.3	(45.5)	(125.0)	(57.7)
31.1	63.7	39.1	32.0	52.9	36.8	39.9	33.2	22.7	17.0	20.4
6.3	(0.5)	4.9	3.5	0.7	2.8	(2.4)	5.4	12.0	(27.3)	12.4
24.3	62.2	33.6	27.5	51.0	33.0	45.4	35.8	25.0	16.8	21.3
19.8	4.0	15.9	20.2	11.7	18.3	6.1	14.8	22.6	60.8	24.9
10.9	(1.6)	8.6	7.4	4.6	6.8	(4.4)	15.6	15.1	(60.0)	17.1
14.9	15.0	14.9	13.8	21.7	15.7	24.6	32.1	20.6	29.7	22.8
9.7	8.4	9.4	8.4	14.8	9.9	21.8	34.5	19.1	36.2	22.9
2.4	(1.6)	2.2	2.7	3.3	2.9	(17.5)	26.3	24.7	(41.7)	27.7
1.3	(0.3)	1.0	1.7	0.7	1.5	(7.4)	10.3	29.9	(42.9)	30.9
1.4	4.7	2.2	1.0	3.0	1.5	52.2	48.3	15.5	13.2	14.3
8.0	7.1	7.8	-	-	-	22.3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5	23.1	22.1	20.5	21.7

일 랫 표 A 40

1964년 동·서독 전문학교졸업생들의 전공분야별 및 성별 취업분포상환

전 공 분 야	1,000 명					
	서 독			동 독		
	남 성	여 성	총 계	남 성	여 성	총 계
농업과 임업분야 전공	180.7	(0.4)	181.1	30.8	5.5	36.3
예술분야 전공	29.9	11.1	41.0	6.3	2.9	9.2
산업분야 전공	53.9	5.0	58.0	10.0	2.4	12.4
기술분야 전공	387.5	(2.8)	390.3	128.9	4.0	132.9
이중에서 광업 및 야금	22.8	-	22.8	12.5	0.3	12.8
기계제작	154.0	(0.9)	154.9	63.2	1.9	65.1
전기기술	73.0	(0.8)	73.8	21.0	0.7	21.7
자연과학분야 전공	14.2	9.8	24.0	6.0	5.0	11.0
이중에서 수학	-	-	-	-	-	-
물리학	(0.7)	(0.7)	(1.4)	-	-	-
화학	13.4	8.7	22.1	5.4	2.8	8.2
생물학	-	-	-	0.4	0.1	0.5
교육학, 심리학	11.8	82.8	94.6	39.7	83.9	123.6
이중에서 신학	(1.1)	(1.7)	(2.8)	-	-	-
교직, 철학, 역사학등	10.3	79.4	89.7	38.5	58.2	96.7
경영학, 관리학 전공	106.4	65.0	171.4	32.8	8.8	41.6
이중에서 법률학	-	-	-	-	-	-
보건위생분야 전공	6.2	(1.0)	7.2	0.4	0.8	1.2
이중에서 일반의학	-	-	-	-	-	-
치과의학	5.8	(1.0)	6.8	-	-	-
수의과의학	-	-	-	0.4	0.4	0.8
약학	-	-	-	-	0.4	0.4
기타전공분야 ²	55.1	46.9	102.0	0.2	0.1	0.3
모든전공분야 총계	845.7	224.8	1070.5	255.1	113.4	368.5

1. 65세이하만 취급

2. 특정전공분야없는 사람 포함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mikrozensus 1964. Volks- und Berufszahlung 1964.

비율구조 백분율 (%)								비 교		
전 공 분 야						여성부분				
서 독			등 독			서 독	등 독	서독에대한 등독의비율		
남 성	여 성	총 계	남 성	여 성	총 계	서 독	등 독	남 성	여 성	총 계
21.4	(0.2)	16.9	12.1	4.9	9.9	(0.2)	15.2	17.0	-	20.0
3.5	4.9	3.8	2.5	2.6	2.5	27.1	31.5	21.1	26.1	22.4
6.4	2.2	5.5	3.9	2.1	3.4	8.5	19.4	18.6	48.0	21.1
45.8	(1.2)	36.5	50.5	3.5	36.1	(0.7)	3.0	33.3	(142.9)	34.1
2.7	-	2.1	4.9	0.3	3.5	-	2.3	54.8	-	56.1
18.2	(0.4)	14.5	24.8	1.7	17.7	(0.6)	2.9	41.0	-	42.0
8.6	(0.4)	6.9	8.2	0.6	5.9	(1.1)	3.2	28.8	-	29.4
1.7	4.4	2.2	2.4	4.4	3.0	40.8	45.5	42.3	51.0	45.8
-	-	-	-	-	-	-	-	-	-	-
(0.1)	(0.3)	(0.1)	-	-	-	(50.0)	-	-	-	-
1.6	3.9	2.1	2.1	2.5	2.2	39.4	34.1	40.3	32.2	37.1
-	-	-	0.2	0.1	0.1	-	20.0	-	-	-
1.4	36.8	8.8	15.6	74.0	33.5	87.5	67.9	336.4	101.3	130.7
(0.1)	(0.8)	(0.3)	-	-	-	(60.7)	-	-	-	-
1.2	35.3	8.4	15.1	51.3	26.2	88.5	60.2	373.8	73.3	107.8
12.6	28.9	16.0	12.9	7.8	11.3	37.9	21.2	30.8	13.5	24.3
-	-	-	-	-	-	-	-	-	-	-
0.7	(0.4)	0.7	0.2	0.7	0.3	(13.9)	66.7	-	-	-
-	-	-	-	-	-	-	-	-	-	-
0.7	(0.4)	0.5	-	-	-	(14.7)	-	-	-	-
-	-	-	0.2	0.4	0.2	-	59.0	-	-	-
-	-	-	-	0.4	0.1	-	100.0	-	-	-
6.5	20.9	9.5	0.1	0.1	0.1	46.0	33.3	-	-	1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0	30.8	30.2	50.4	34.4

1964년 동·서독 전문학교 및 대학졸업생들의 전공분야별 및 성별 취업인구분포상황

전 공 분 야	1,000 명					
	서 독			동 독		
	남 성	여 성	총 계	남 성	여 성	총 계
농업과 임업분야 전공	198.6	(3.3)	201.9	41.8	6.8	48.6
예술분야 전공	60.8	25.4	86.2	12.7	5.3	18.0
산업분야 전공	55.7	5.3	61.0	10.2	2.4	12.6
기술분야 전공	478.7	(3.3)	482.0	151.2	4.5	155.7
이중에서 광업 및 야금분야	29.3	-	29.3	15.1	0.3	15.4
기계제작	184.0	(0.9)	184.9	74.0	2.2	76.2
전기기술	96.6	(0.8)	97.4	25.2	0.8	26.0
자연과학분야 전공	54.1	14.8	68.9	18.2	7.1	25.3
이중에서 수 학	5.1	(1.0)	6.1	1.4	0.2	1.6
물리학	8.9	(1.1)	10.0	3.1	0.2	3.3
화 학	31.9	10.5	42.4	10.6	3.7	14.3
생물학	2.2	(0.4)	(2.6)	1.4	0.6	2.0
교육학 및 실령학 전공	227.8	226.1	453.9	88.7	108.3	197.0
이중에서 심학	45.1	(2.8)	47.9	5.3	0.3	5.6
교직, 철학, 역사학등	178.8	219.3	398.1	80.7	81.7	162.4
경영학, 관리학 전공	243.9	73.9	317.8	63.8	14.2	78.0
이중에서 법률학	75.7	(3.5)	79.2	11.4	2.1	13.5
보건위생분야 전공	109.3	34.7	144.0	21.6	10.8	32.4
이중에서 일반의학	67.4	18.8	86.2	12.9	6.8	19.7
치과의학	22.8	(4.6)	27.4	4.2	1.5	5.7
수의과의학	8.7	(0.7)	9.4	3.0	0.7	3.7
약학	9.7	10.6	20.3	1.5	1.8	3.3
기타전공분야 ²⁾	110.8	62.9	173.7	0.2	0.1	0.3
전 전공분야 총계	1539.7	449.7	1989.4	408.4	159.5	567.9

1. 65세 이하만 취급

2. 특정전공분야없는 사람 포함.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Mikrozensus 1964, Volks- und Berufszahlung 1964.

비율구조 백분율 (%)								비 교			
전 공 분 야						여 성 부 분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독에대한		동독의비율	
남 성	여 성	총 계	남 성	여 성	총 계	서 독	동 독	남 성	여 성	총 계	
12.9	(0.7)	10.2	10.2	4.3	8.6	(1.6)	14.0	21.0	(206.1)	24.1	
3.9	5.6	4.3	3.1	3.3	3.2	29.5	29.4	20.9	20.9	20.9	
3.6	1.2	3.1	2.5	1.5	2.2	8.7	19.0	18.3	45.3	20.7	
31.1	(0.7)	24.2	37.0	2.8	27.4	(0.7)	2.9	31.6	136.4	32.3	
1.9	-	1.5	3.7	0.2	2.7	-	1.9	51.5	-	52.6	
12.0	(0.2)	9.3	18.1	1.4	13.4	(0.5)	2.9	40.2	-	41.2	
6.3	(0.2)	4.9	6.2	0.5	4.6	(0.8)	3.1	26.1	-	26.7	
3.5	3.3	3.5	4.5	4.5	4.5	21.5	28.1	33.6	48.0	36.7	
0.3	(0.2)	0.3	0.3	0.1	0.3	(16.4)	12.5	27.5	-	26.2	
0.6	(0.2)	0.5	0.8	0.1	0.6	(11.0)	6.1	34.8	-	33.0	
2.1	2.3	2.1	2.6	2.3	2.5	24.8	25.9	33.2	35.2	33.7	
0.1	(0.1)	0.1	0.3	0.4	0.3	(15.4)	30.0	63.6	-	(76.9)	
14.8	50.3	22.8	21.7	67.9	34.7	49.3	55.0	38.9	47.9	43.4	
2.9	(0.6)	2.4	1.3	0.2	1.0	(5.8)	5.4	11.8	-	11.7	
11.6	48.8	20.0	19.8	51.2	28.6	55.1	50.3	45.1	37.3	40.8	
15.8	16.4	16.0	15.6	8.9	13.7	23.3	18.2	26.2	19.2	24.5	
4.9	(0.8)	4.0	2.8	1.3	2.4	(4.4)	15.6	15.1	(60.0)	17.0	
7.1	7.7	7.2	5.3	6.8	5.7	24.1	33.3	19.8	31.1	22.5	
4.4	4.2	4.3	3.2	4.3	3.5	21.8	34.5	19.1	36.2	22.9	
1.5	(1.0)	1.4	1.0	0.9	1.0	(16.8)	26.3	18.4	(32.6)	20.8	
0.6	(0.2)	0.5	0.7	0.4	0.6	(7.4)	18.9	34.5	-	39.4	
0.6	2.4	1.0	0.4	1.1	0.6	52.2	54.5	15.5	17.0	16.3	
7.2	14.0	8.7	-	0.1	0.1	36.2	33.3	-	-	-	
100.0	100.0	100.0	100.0	100.1	100.0	22.6	28.1	26.5	35.5	28.5	

일 략 표 A 42

1964년 동·서독 대학졸업생의 직업유형별 및 성별 취업상황

직업유형		1,000명					
표시	대수 지표 ²	서독			동독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원료산업분야직업	1	(0.4)	(0.1)	(0.5)	0.1	-	0.1
재료가공및 세공업분야직업	2/3	5.9	(0.7)	6.6	0.8	0.1	0.9
기술직업이중에서	4	89.9	(2.6)	92.5	22.4	1.3	23.7
고급기사 및 일반기술자	41-42	88.9	(2.2)	91.1	21.6	1.1	22.7
기타전문기술노동력	43	(1.0)	(0.4)	(1.4)	0.8	0.2	1.0
농업 및 임업분야직업	5	17.1	(2.0)	19.1	7.9	0.9	8.8
농부, 정원사, 동물사육인, 식물재배자	51-532	7.4	(1.5)	8.9	4.7	0.5	5.2
수렵 및 임업에 속하는직업	52	(2.5)	-	(2.5)	0.7	0.1	0.8
수의(식물재배제외) 계통직업	53	7.2	(0.5)	7.7	2.5	0.3	2.8
운수, 정보통신, 무역계통직업	6	25.1	11.8	36.9	1.5	0.3	1.8
운수업	61	(0.9)	(0.1)	(1.0)	0.4	-	0.4
무역업 및 숙박업	62	24.2	11.7	35.9	1.1	0.3	1.4
그림, 문화, 학문 등 문예업	7	333.3	185.7	519.0	78.8	36.9	115.7
그림 및 문화분야	71	207.2	148.9	356.1	53.2	25.9	79.1
자연과학및사회과학분야	72	34.2	(3.6)	37.8	8.3	1.6	9.9
보건사회분야	73	91.9	33.2	125.1	17.3	9.4	26.7
서비스업 기타	8	42.4	(1.9)	44.3	5.7	0.4	6.1
종교상의 직책	87	41.0	(1.1)	42.1	5.4	0.4	5.8
경영관리, 법률분야	9	166.7	15.5	182.2	28.4	5.2	33.6
경영관리, 공장소유	91-92	118.0	12.8	130.8	25.2	4.3	29.5
법률업무	94	48.7	(2.7)	51.4	3.2	0.9	4.1
특정직책없는 경우	09	13.0	(4.6)	17.6	7.7	1.0	8.7
전체직업유형 총계	-	693.8	224.9	918.7	153.3	46.1	199.4

1. 초급자제외, 서독은 65세이하만 취급

2. 동독직업분류체계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Mikrozensus 1964, Arbeits- und Sozialstatistische mitteilungen des BMA, Volks- und Berufszahlung 1964.

비율구조 백분율 (%)										
직업 유형						여성부분				비교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취업분포비율		서독에대한 동독의비율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서독	동독	
(0.1)	(0.0)	(0.1)	0.1	-	0.1	(20.0)	-	(0.1)	0.1	(20.0)
0.9	(0.3)	0.7	0.5	0.2	0.5	(10.6)	11.1	0.1	0.0	13.6
13.0	(1.2)	10.1	14.6	2.8	11.9	(2.8)	5.5	10.1	6.3	25.6
12.8	(1.0)	9.9	14.1	2.4	11.4	(2.4)	4.6	11.5	7.3	24.9
(0.1)	(0.2)	(0.2)	0.5	0.4	0.5	(28.6)	20.0	(1.1)	1.5	(71.4)
2.5	(0.9)	2.1	5.2	2.0	4.4	(10.5)	10.2	0.7	0.9	46.1
1.1	(0.7)	1.0	3.1	1.1	2.6	(16.9)	9.6	0.4	0.5	58.4
(0.4)	-	(0.3)	0.5	0.2	0.4	-	12.5	(3.1)	2.3	(32.0)
1.0	(0.2)	0.8	1.6	0.7	1.4	(6.5)	10.7	100.0	45.2	36.4
3.6	5.3	4.0	1.0	0.7	0.9	32.0	16.7	0.8	0.1	4.9
(0.1)	(0.0)	(0.1)	0.3	-	0.2	(10.0)	-	(0.1)	0.1	(40.0)
33.5	5.2	3.9	0.7	0.7	0.7	32.6	21.4	1.1	0.2	3.9
48.0	82.6	56.5	51.4	80.0	58.0	35.8	31.9	47.5	20.7	22.3
29.9	66.2	38.8	34.7	56.2	39.7	41.8	32.7	64.1	23.3	22.2
4.9	(1.6)	4.1	5.4	3.5	5.0	(9.7)	16.2	92.4	76.7	26.2
13.3	14.8	13.6	11.3	20.4	13.4	26.5	35.2	25.2	13.0	21.3
6.1	(0.8)	4.8	3.7	0.87	3.1	(4.3)	6.6	3.1	1.2	13.8
5.9	(0.5)	4.6	3.5	0.87	2.9	(2.6)	6.9	46.7	31.7	13.8
24.0	6.9	19.8	18.5	11.3	16.9	8.5	15.5	4.5	3.4	18.4
17.0	5.7	14.2	16.4	9.3	14.8	9.8	14.6	3.3	3.0	22.6
7.0	(1.2)	5.6	2.1	2.0	2.1	(5.3)	22.0	73.0	70.7	8.0
1.9	(2.1)	1.9	5.0	2.2	4.4	(26.1)	11.5	2.6	2.5	4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5	23.1	3.9	2.5	21.7

일 랑 표 A 43

1960년에서 1969년까지의 동·서독 국가생산규모 비교표

1967년 현재의 화폐가격기준(단위 독일마르크 내지 마르크)

분 야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P
서 독										
국내생산근거명세										
서독국내총생산고	377.4	398.6	414.5	428.8	457.7	483.6	497.4	496.1	530.9	572.8
이 중에서										
가공업, 에베르키산업 광업	164.4	174.9	182.7	188.6	204.7	220.7	225.2	220.1	243.1	270.9
농업	18.2	18.4	17.8	18.7	20.2	17.9	18.4	20.2	21.1	21.6
상해 및 감가상각	30.8	33.6	36.7	39.8	43.1	46.7	50.4	53.8	57.2	61.1
서독국내순생산고	346.6	365.0	377.8	389.0	414.6	436.9	447.0	442.3	473.7	511.7
동 독										
국내생산근거명세										
동독국내총생산고	92.8	95.8	98.0	101.2	106.3	111.5	117.1	123.5	130.5	137.8
이 중에서										
가공업, 에베르키산업 광업	44.0	46.0	48.1	50.6	53.2	55.5	58.3	61.5	65.5	70.4
농업	12.2	12.5	11.9	11.4	11.4	12.1	12.7	13.4	13.2	12.3
상해 및 감가상각	-6.9	7.5	7.9	8.4	9.0	9.7	10.3	10.9	12.2	13.4
동독국내순생산고	85.9	88.3	90.1	92.8	97.3	101.8	106.8	112.6	118.3	124.4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Originalbasis 1962 Umbasiert.

Schatzung,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von H. Wilkens DIW.

일 랫 포 A 44

1960년에서 1969년까지의 동·서독의 국내생산규모 비교품

분 야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P
	비율구조백분율(%)									
서독										
서독국내총생산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43.5	43.9	44.1	44.0	44.7	45.6	45.3	44.3	45.8	47.4
농업	4.8	4.6	4.3	4.4	4.5	3.7	3.7	4.1	4.0	3.8
상해 및 감가상각	8.2	8.4	8.9	9.3	9.4	9.7	10.1	10.8	10.8	10.7
서독국내순생산고	91.8	91.6	91.1	90.7	90.6	90.3	89.9	89.2	89.2	89.3
동독										
동독국내총생산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47.4	48.0	49.1	50.0	50.0	49.8	49.8	49.8	50.2	51.1
농업	13.1	13.0	12.1	11.3	10.7	10.9	10.8	10.9	10.1	8.9
상해 및 감가상각	7.4	7.8	8.1	8.3	8.5	8.7	8.8	8.8	9.3	9.7
동독국내순생산고	92.6	92.2	91.9	91.7	91.5	91.3	91.2	91.2	90.7	90.3
	발전상황 ; 1960년의 경우를 100으로 보았을 때									
서독										
서독국내총생산고	100	106	110	114	121	128	132	131	141	152
가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100	106	111	115	125	134	137	134	148	165
농업	100	101	98	103	111	98	101	111	116	119
상해 및 감가상각	100	109	119	129	140	152	164	175	186	198
서독국내순생산고	100	105	109	112	120	126	129	128	137	148
동독										
동독국내총생산고	100	103	106	109	115	120	126	133	141	148
가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100	105	109	115	121	126	133	140	149	159
농업	100	102	98	93	93	99	104	110	108	101
상해 및 감가상각	100	109	114	122	130	141	149	158	177	194
동독국내순생산고	100	103	105	108	113	119	124	131	138	145

1. 일랫포 A 43에 기재된 숫자에 의거해서 환산된 수치이다.

일 랑 표 A·45

동·서독 산업분야별 노동생산력발전상황일람 (1967년 수치기초)

- 1960년의 경우를 100으로 볼때 -

분 야	1965	1966	1967	1968	1969P
서 독					
종합경제	124	127	131	140	148
공 업 ²	129	132	137	150	161
건축업	118	127	133	135	139
농 업	119	127	145	157	167
우편통신업	123	128	130	145	158
상 업	121	122	124	128	136
서비스업 ³	109	111	111	114	116
동 독					
종합경제	119	124	129	136	143
공 업 ²	125	131	136	145	155
건축업	126	133	139	143	145
농 업	109	117	127	131	127
우편통신업	123	127	131	146	147
상 업 ⁴	114	119	123	129	140
서비스업	108	111	115	119	123

주(註)

1. 고용자에 대한 국내총생산
2. 건축직업노동자를 제외한 광업, 에베르기산업, 생산수공업 등 포함
3. 서비스기업, 국가, 개인가정, 영리성없는 조식체 등
4. 숙박, 음식집영업을 포함한 국내상업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Institut für Arbeitsmarkt-und Berufsvorschung.

Schätzung,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H. Wilkens, DIW.

일 램 표 A 46

1960~1968의 서독 산업의 총생산액 일람

단위 백만 독일마르크(1962년 화폐가치로 환산)

산 업 분 야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원료산업	111,494	116,801	121,954	127,258	143,602	150,548	154,908	158,370	179,977
에베르기산업	1,5509	16,390	17,624	19,122	21,096	22,206	23,246	24,233	27,088
광업	15,754	15,952	16,003	16,222	16,504	15,965	15,146	14,024	14,356
야금	3,4819	3,4848	3,3716	3,2408	3,8182	3,8638	3,6946	3,7249	4,3081
화학업	36,429	39,867	44,190	48,772	55,690	61,453	67,054	71,015	82,936
건축자재	8,983	9,744	10,421	10,734	12,130	12,286	12,516	11,849	12,516
금속가공업	102,251	110,348	113,222	116,514	126,231	134,884	133,931	124,022	139,742
전기기술	22,547	25,007	25,622	26,134	28,748	32,053	31,592	30,875	36,230
조선업	2,790	2,735	2,600	2,405	2,616	2,811	2,938	2,964	3,167
기타금속가공업	7,6914	82,606	85,000	87,975	94,867	100,020	99,401	90,183	100,345
기계제작	36,465	40,012	40,442	39,554	42,166	44,998	44,293	40,820	42,405
차량제조	21,669	23,173	25,083	28,428	30,269	31,156	31,781	27,601	34,108
금속상품	15,690	16,259	16,344	16,828	18,791	19,999	19,466	18,074	19,633
정밀 및 광학기계	3,090	3,162	3,131	3,165	3,641	3,867	3,861	3,688	4,199
경공업	58,349	60,857	63,393	64,166	68,353	72,483	73,478	69,457	78,048
목재 상품 및 문예 상품	10,590	11,031	11,578	11,389	12,663	13,537	13,919	13,510	14,672
직물	17,349	17,883	18,398	18,656	19,355	20,201	20,201	18,784	21,765
피복, 재봉	9,054	9,809	10,347	10,450	11,071	12,096	12,344	11,051	12,323
구두 등 피혁제품	4,694	4,807	4,858	4,895	5,037	5,153	4,944	4,386	4,972
셀룰로우스 및 제지업	7,481	7,613	8,033	8,321	8,983	9,519	9,804	9,782	10,977
등사판, 복사기	5,276	5,662	5,941	6,137	6,517	6,927	7,177	7,159	7,919
유리 및 도자기	3,905	4,052	4,238	4,318	4,727	5,050	5,089	4,785	5,420
식품 및 유흥음식제조	41,188	43,065	45,503	47,376	50,110	52,393	53,415	54,763	57,527
총 계	313,282	331,071	344,072	355,314	388,296	410,308	415,732	406,612	455,294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Berechnung des DIW.

일 랑 표 A 47

1960년에서 1968년까지의 동독 공업총생산 일람
단위 백만 1962년 서독의 화폐로 환산한 독일 마르크

산 업 분 야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원료산업	27270	28930	30750	32130	34510	36250	38590	40860	43060
에베르기산업	4530	4790	5110	5370	5840	5950	6660	7090	7230
광업	6650	6950	7310	7590	7860	7890	7860	8190	8400
야금	4120	4220	4380	4430	4690	4930	5180	5420	5710
화학업분야	10100	10900	11740	12520	13570	14790	16080	17230	18630
건축자재	1970	2070	2210	2220	2550	2690	2810	2930	3090
금속가공업	15660	16890	18660	19920	21770	23340	25110	26990	29100
전기기술분야	4350	4680	5340	5680	6210	6750	7460	8020	8660
조선업	680	610	630	700	780	870	870	930	1030
기타금속가공업	10630	11600	12690	13540	14780	15720	16780	18040	19410
기계제작	6680	7350	8110	8500	9180	9760	10320	11010	11700
차량생산	1140	1200	1250	1430	1700	1750	1860	1990	2210
금속상품	2350	2570	2800	3030	3280	3490	3800	4160	4560
정밀기계및광학기계	460	480	530	580	620	720	800	880	940
경공업	15410	16220	17040	16850	17580	18420	19340	20580	21470
목재작품및문예작품	2820	3030	3270	3260	3440	3620	3840	4180	4570
직물	5070	5180	5340	5360	5480	5760	6080	6500	6600
피복 및 재봉	2590	2840	3080	2810	2910	3030	3180	3280	3370
구두 등 피혁제품	810	860	910	900	940	1000	1050	1100	1170
셀룰로우스및제지업	1950	2050	2130	2160	2280	2370	2440	2630	2740
등사판, 복사기공업	1390	1440	1440	1460	1540	1580	1640	1710	1790
유리 및 도자기	780	820	870	900	990	1060	1110	1180	1230
식품및유홍음식제조업	13700	14240	14240	14470	15580	16300	16940	17770	18880
산업분야합계	72040	76280	80690	83370	89440	94310	99980	106200	112510

자료출처 : Berechnungen des DIW unter Benutzung von Angaben im Statistischen

Jahrbuch der DDR.

일 램 표 A 48

1960 년에서 1968 년까지의 서독 산업종사자 숫자 일람
단위 천명

산 업 분 야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원료산업	2448.6	2482.9	2447.2	2401.5	2418.3	2445.4	2385.1	2232.7	2221.4
에네르기산업	191.0	193.0	195.0	196.0	199.0	201.0	203.0	201.0	202.0
광 업	616.3	585.8	549.5	517.4	496.7	474.2	435.5	377.9	387.4
야 금	685.3	707.2	692.2	671.1	674.1	689.2	660.6	616.1	615.9
화공품	697.5	734.2	747.0	757.8	782.8	814.8	827.6	803.4	835.9
건축자재	258.5	262.7	263.5	259.2	265.8	266.2	258.4	234.3	229.3
금속가공업분야	3231.7	3398.1	3461.6	3453.8	3507.7	3628.9	3617.3	3385.4	3466.4
전기기술	843.6	905.7	919.6	918.6	934.1	974.5	964.9	893.5	926.3
조선업	98.4	96.3	93.0	84.0	81.3	81.1	79.9	78.5	77.6
기타금속가공업	2289.7	2396.1	2449.0	2451.2	2492.3	2573.3	2572.6	2413.4	2462.4
기계제작	1186.4	1252.9	1284.4	1268.9	1270.0	1312.4	1314.0	1233.1	1243.9
차량생산	412.4	433.6	463.7	482.9	517.8	542.9	549.3	516.1	544.6
금속상품	537.1	550.9	546.9	547.0	549.3	562.2	554.9	513.7	521.3
정밀기계및광학기계	153.7	158.7	154.0	152.3	155.2	155.8	154.4	150.6	152.6
경공업	2085.5	2113.0	2101.5	2076.9	2052.5	2066.6	2063.9	1918.6	1908.3
목재작품및문예작품	365.3	371.3	367.0	359.3	354.9	358.6	356.2	334.0	337.0
직물공업	619.5	612.1	589.6	572.7	555.8	547.0	538.5	490.0	489.1
피복 및 재봉	355.5	370.0	384.2	388.1	387.8	398.2	406.4	370.7	366.5
구두 등 피혁제품	179.2	177.9	174.5	172.6	170.3	169.8	165.3	153.2	144.5
셀룰로우스및제지업	196.2	199.8	202.8	203.7	202.0	204.5	206.0	195.3	196.1
등사판및복사기공업	186.1	195.6	201.3	204.6	206.7	211.2	215.7	211.9	211.8
유리 및 도자기	183.5	186.4	182.1	175.9	174.9	177.3	175.8	163.6	163.3
식품및유축음식제조	506.2	514.4	524.0	527.9	521.7	520.4	521.5	507.0	505.2
전체산업분야총계	8271.9	8508.5	8534.2	8460.1	8500.2	8661.4	8587.8	8043.7	8101.3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Berechnungen des DIW.

일 랫 표 A 49

1960 년에서 1968 년까지의 동독 산업종사자 숫자 일람

단위 천명

산 업 분 야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원료산업	801.2	799.1	799.2	801.0	812.3	821.8	831.7	832.0	833.5
에베르기산업	67.4	68.3	69.1	71.0	72.6	73.0	74.0	73.3	72.5
광 업	197.2	196.8	197.8	199.2	201.5	199.6	200.4	194.3	193.5
야 금	160.7	161.0	159.5	158.3	159.5	165.2	168.7	171.6	172.5
화공업	260.9	279.5	281.5	282.9	287.8	294.3	298.0	302.4	304.0
건축자재	95.0	93.4	91.3	89.6	90.9	89.7	90.6	90.5	91.0
금속가공업	977.9	992.3	994.2	1013.7	1034.1	1051.8	1075.8	1104.6	1112.0
전기기술	222.5	224.5	230.9	235.6	243.0	245.7	251.8	259.0	261.0
조선업	41.4	39.0	37.6	39.5	40.3	40.9	40.9	41.9	42.0
기타금속가공업	713.9	728.8	725.7	738.6	750.8	765.2	783.1	803.7	809.0
기계제작	375.6	394.0	392.6	395.2	403.2	408.1	417.2	427.7	430.5
차량생산	148.5	146.5	143.5	151.1	151.8	155.6	160.0	162.4	164.0
금속상품	90.0	89.3	91.0	92.5	92.2	92.8	93.8	96.0	96.5
정밀기계및광학기계	99.8	99.1	98.6	99.9	103.6	108.8	112.0	117.6	118.0
경공업	862.2	846.5	833.2	809.4	796.4	783.2	775.8	773.3	770.0
목재작품및문예작품	154.7	155.2	154.0	150.7	146.6	144.5	144.2	144.7	144.0
직 물	340.8	331.2	321.0	312.5	304.4	296.0	289.6	286.4	283.0
피복 및 재봉	122.2	120.0	121.5	112.7	111.0	109.3	108.7	108.2	108.0
구두 등 피혁제품	71.4	69.6	68.5	66.9	67.6	68.2	68.4	68.7	69.0
셀룰로우스및제지업	63.2	63.4	62.5	61.7	60.9	60.0	60.1	59.2	59.0
등사판 및 복사기	41.0	39.6	38.9	37.7	37.4	36.7	36.4	36.5	36.5
유리 및 도자기	68.9	67.5	66.9	67.2	68.5	68.4	68.5	69.7	70.5
식품및유홍음식제조	215.4	215.4	210.6	209.7	207.8	205.5	206.1	209.4	209.5
총 계	2856.6	2853.3	2837.3	2833.7	2850.7	2862.3	2889.4	2919.3	2925.0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Mehrere Jahrgänge

일 략 표 A 50

1960 년에서 1968 년까지의 서독의 산업자금능력 총계
 단위 킬만 1962 년 현재 서독화폐로 환산한 독일 마르크

산 업 분 야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원료산업	130869	140203	150060	159838	169936	180878	191465	200838	209175
에베르기산업	42240	45290	48690	52590	56380	61630	66240	70700	74970
광업	25619	26467	27086	27342	27542	27735	27404	26658	25952
야금	23543	25343	27544	29661	31577	33270	34692	35760	36650
화학업	32732	35381	37966	40538	43290	46483	50352	54326	57798
건축자재	6735	7722	8774	9707	10647	11760	12777	13394	13805
금속가공업	49998	53937	62294	67993	73236	79117	85069	90144	94713
전기기술	11259	12565	14017	15381	16600	17827	19087	20236	21333
조선업	2249	2312	2370	2420	2488	2580	2660	2726	2792
기타금속가공업	36490	41060	45907	50192	54148	58710	63322	67182	70588
기계제작	17904	19709	21610	23252	24746	26443	28154	29531	30771
차량생산	10736	12593	14636	16374	17939	19856	21814	23476	24852
금속상품	6241	7005	7757	8501	9250	10046	10830	11494	12110
정밀기계및광학기계	1609	1753	1904	2065	2213	2365	2524	2681	2855
경공업	30699	33401	36047	38511	40838	43359	45956	48224	50324
목재 상품및문예작품	4861	5278	5719	6174	6610	7071	7554	7976	8333
직물	10998	11867	12616	13225	13816	14507	15209	15765	16251
피복 및 재봉	2254	2480	2696	2894	3094	3319	3547	3708	3819
구두 및 피혁제품	1728	1839	1935	2012	2092	2180	2253	2299	2334
셀룰로우스및제지업	4828	5305	5845	6372	6795	7209	7677	8196	8763
등사관 및 복사기	3629	4000	4337	4697	5043	5383	5720	6065	6400
유리 및 도자기	2371	2632	2899	3139	3338	3690	3996	4215	4424
식품및유축음식제조	20989	22580	24143	25764	27469	29194	30918	32723	34520
총 계	232525	252121	272544	292108	311479	332548	353408	371929	388732

자료출처 : Berechnung des DIW.

일 랑 표 A 51

1960 년에서 1968 년까지의 동독의 산업자금능력 총계

단위 배만 1962 년 현재 서독화폐로 환산된 독일 마르크

산 업 분 야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원료산업	39630	42080	45200	48540	52850	56510	60120	63470	66950
에베 르기산업	9930	10480	11500	12610	13590	14470	15460	16260	17140
광 업	9610	10620	11470	12370	13550	14800	15840	16690	17450
야 금	5160	5230	5540	5930	6410	6920	7420	7980	8570
화학업	12260	12790	13420	14100	15480	16370	17370	18380	19460
건축차재	2670	2960	3270	3530	3820	3950	4030	4160	4330
금속가공업분야	12670	13470	14300	15190	16410	17510	18690	19960	21300
전기기술	2160	2330	2530	2790	3080	3280	3550	3850	4150
조선업	670	700	720	790	820	850	850	890	930
기타금속가공업	9840	10440	11050	11610	12510	13380	14290	15220	16220
기계제작	5770	6160	6510	6770	7300	7670	8140	8620	9110
차량생산	2060	2180	2280	2410	2590	2880	3180	3460	3770
금속상품	1080	1140	1270	1370	1470	1550	1620	1690	1770
정밀기계및광학기계	930	960	990	1060	1150	1280	1350	1450	1570
경공업	11470	11910	12430	13070	13900	14460	14780	15370	15980
목재 상품및문예작품	1660	1730	1770	1870	2020	2180	2230	2330	2430
직 물	4980	5180	5360	5550	5840	6020	6090	6300	6530
피복 및 재봉	320	340	380	390	420	430	450	470	500
구두 등 피혁제품	900	920	970	980	1030	1010	1020	1060	1090
셀룰로우스및제지업	1930	1960	2120	2260	2390	2470	2500	2580	2650
등사판 및 복사기	540	580	580	640	660	690	730	750	790
유리 및 도자기	1140	1200	1250	1380	1540	1660	1760	1880	1990
식품및유축음식제조	6420	6600	6790	7130	7410	7380	7540	7800	8030
총 계	70190	74060	78720	83930	90570	95860	101130	106600	112260

자료출처 : Berechnung des DIW

일 랑 표 A 52

동·서독의 산업분야 생산구조

1960~1968

구조비율(%)

산 업 분 야	서 독		동 독		1960~1968년 사이의성장백분율		서독에 대한 동독의 비율	
	1960	1968	1960	1968	서 독	동 독	1960	1968
원료산업	35.6	39.5	37.9	38.3	61	58	24.5	23.9
에베르기산업	5.0	5.9	6.3	6.4	75	60	29.2	26.7
광업	5.0	3.2	9.2	7.5	-9	26	42.2	58.5
야금	11.1	9.5	5.6	5.1	24	42	11.5	13.3
화학업	11.6	18.2	14.1	16.6	128	85	27.7	22.5
건축자재	2.9	2.7	2.7	2.7	39	57	22.0	24.7
금속가공업	32.6	30.7	21.7	25.9	37	86	15.3	20.8
전기기술	7.2	8.0	6.0	7.7	61	99	19.3	23.9
조선업	0.9	0.7	0.9	0.9	14	52	24.4	32.5
기타금속가공업	24.5	22.0	14.8	17.3	31	83	13.8	19.3
기계제작	11.6	9.3	9.3	10.4	16	75	18.3	27.6
차량생산	6.0	7.5	1.6	2.0	57	94	5.3	6.5
금속상품	5.0	4.3	3.3	4.1	25	94	15.0	23.2
정밀기계및광학기계	1.0	0.9	0.6	0.8	36	104	14.9	22.4
경공업	18.6	17.2	21.4	19.1	34	39	26.4	27.5
목재상품및문예작품	3.4	3.3	3.9	4.1	39	62	26.6	31.1
직물	5.5	4.8	7.1	5.9	26	30	29.2	30.3
피복 및 재봉	2.9	2.7	3.6	3.0	36	30	28.6	27.3
구두 등 피혁제품	1.5	1.1	1.1	1.0	6	44	17.3	23.5
셀룰로우스및제지업	2.4	2.4	2.7	2.4	47	41	26.1	25.0
등사판 및 복사기	1.7	1.7	1.9	1.6	50	29	26.3	22.6
유리 및 도자기	1.2	1.2	1.1	1.1	39	58	20.0	22.7
식품및유용음식제조	13.2	12.6	19.0	16.8	40	38	33.3	32.8
총 계	100.0	100.0	100.0	100.0	45	56	23.0	24.7

자료출처 : Tabellen A 46 und A 47

일 램 표 A 53

동·서독의 산업분야별종사자수 구조일람

1960년에서 1968년까지의 경우

단위 백분율

산 업 분 야	1968년의 종사자 구조비율		1960~1968사이의 변동비율		서독에 대한 동독의 백분율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0	1968
원료산업	27.4	28.5	-9.3	4.0	32.7	37.5
에베르기산업	3.0	2.5	5.8	7.6	35.3	35.9
광업	4.2	6.6	-45.3	-1.9	32.0	57.4
야금	7.6	5.9	-10.1	7.3	23.4	26.0
화학업	10.3	10.4	20.0	8.2	40.3	36.3
건축자재	2.8	3.1	-11.3	-4.2	36.8	39.7
금속가공업	42.8	38.0	7.3	13.7	30.3	32.1
전기기술	11.4	8.9	9.8	17.3	26.4	28.2
조선업	1.0	1.4	-21.1	1.4	42.1	54.1
기타금속가공업	30.4	27.7	7.5	13.3	31.2	32.9
경공업	23.6	26.3	-8.5	-10.7	41.3	40.4
목재 상품및문예작품	4.2	4.9	-7.7	-6.9	42.3	42.7
직물	6.0	9.7	-21.0	-17.0	55.0	57.9
피복 및 채봉	4.5	3.7	3.1	-11.6	34.4	29.5
구두 등 피혁제품	1.8	2.4	-19.4	-3.4	39.8	47.8
셀룰로우스및제지업	2.4	2.0	-0.1	-6.6	32.2	30.1
등사판 및 복사기	2.6	1.2	13.8	-11.0	22.0	17.2
유리 및 도자기	2.0	2.4	-11.0	2.3	37.5	43.2
식품및유홍음식제조업	6.2	7.2	-0.2	-2.7	42.6	41.5
총 계	100.0	100.0	-2.1	2.4	34.5	36.1

일 랑 표 A 54

동·서독의 산업 총투입자본금 구조일람 1968년까지의 경우 백분율

산 업 분 야	총투입자본금구조		1960~1968		서독에 대한	
	1968		의 성장 백분율		동독의 백분율	
	서 독	동독	서 독	동독	1960	1968
원 료 산 업	53.8	59.6	60	69	30.3	32.0
에 너 지 산 업	19.3	15.3	78	73	23.5	22.9
광 업	6.7	15.5	1	82	37.5	67.2
약 금	9.4	7.6	56	66	21.9	23.4
화 공 업	14.9	17.3	77	59	37.4	33.7
진 축 자 재	3.6	3.9	105	62	39.7	31.4
금 속 가 공 업	24.4	19.0	89	68	25.4	22.5
진 기 기 술	5.5	3.7	90	92	19.2	19.4
조 선 업	0.7	0.8	24	38	29.8	33.2
기 타 금 속 가 공 업	18.2	14.5	93	65	27.0	23.0
경 공 업	12.9	14.7	64	39	37.4	31.8
목재상품 및 문예작품	2.1	2.2	71	46	34.2	29.2
직 물	4.2	5.8	48	31	45.3	40.2
피 부 · 재 봉	1.0	0.4	69	55	14.2	13.0
구두등 피혁제품	0.6	1.0	35	21	51.8	46.6
셀룰로우스 및 제지업	2.3	2.4	82	38	39.9	30.3
등사판 · 복사기	1.6	0.7	76	48	14.8	12.4
유리 및 도자기	1.1	1.8	87	75	47.9	45.0
식품 및 유축음식 제조업	8.9	7.2	65	25	30.6	23.3
총 계	100.0	100.0	67	60	30.2	28.9

자료출처 : Tabellen A 50 und A 51

동·서독의 산업분야별 자본금내역 구조일람 1960 ~ 1968

산 업 분 야	교용인당 1968년자 본금내역(독일마르크)		1960 ~ 1968 의 성장 백분율		서독에 대한 동독의 백분율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0	1968
원 로 산 업	94,160	80,330	62	76	92.6	85.3
에네르기 산업	372,140	236,470	61	68	66.6	63.7
광 업	76,920	90,170	85	85	117.2	117.2
야 금	59,500	49,670	55	73	93.4	83.4
화 공 업	69,060	64,020	47	47	93.0	92.7
건 축 자 재	60,200	47,560	69	131	108.0	79.0
금속 가공업	27,320	19,150	48	77	88.8	70.1
전 기 기 술	23,030	15,910	64	73	72.7	69.1
조 신 업	35,980	22,100	36	57	71.0	61.4
기타 금속가공업	28,670	20,050	45	80	86.5	69.9
경 공 업	26,371	20,760	56	79	90.3	78.7
목재 및 문예작품	24,730	16,890	57	86	80.9	68.3
직 물	33,230	23,060	58	87	82.4	69.4
피복·재봉	10,420	4,590	76	64	41.3	44.1
구두등 피혁제품	16,150	15,770	26	68	130.2	97.6
셀룰로우스 및 제지업	44,890	45,020	48	82	123.9	100.7
등사판 및 복사기	30,220	21,700	66	55	67.0	71.8
유리 및 도자기	27,090	28,260	71	110	127.6	104.3
식품및 유흥음식 제조업	68,330	38,340	29	65	71.9	56.1
총 계	47,980	38,380	56	71	87.4	80.0

자료출처 : Tabellen A 50 und A 48 (BRD)

Tabellen A 51 und A 49 (DDR)

일 램 표 A 56

동·서독의 산업분야별 노동생산력 구조일람 1960 ~ 1968

산 업 분 야	1968년 노동생산력 DM(독일마르크)		1960 ~ 1968까지의 성장 백분율		서독에 대한 동독의 백분율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0	1968
원 료 산 업	81,020	51,660	77.9	51.8	74.8	63.8
에베르기 산업	134,100	99,720	65.1	48.4	82.8	74.4
광 업	42,550	43,410	66.5	28.7	131.9	102.0
야 금	69,950	33,100	37.7	32.3	49.2	47.3
화 공 업	99,100	61,280	89.7	70.4	68.8	61.8
전 축 자 재	54,580	33,960	57.1	63.7	59.7	62.2
금 속 가 공 업	40,310	26,170	27.4	63.5	50.6	64.9
전 기 기 술	39,110	33,180	46.3	69.7	73.1	84.8
조 선 업	40,810	24,520	44.0	49.2	58.0	60.1
기타 금속가공업	40,750	23,990	21.3	61.1	44.3	58.9
경 공 업	40,900	27,880	46.2	56.0	63.9	68.2
목재 및 문예작품	43,540	31,740	50.2	74.1	62.9	72.9
직 물	44,500	23,320	58.9	56.7	53.1	52.4
피부·재봉	33,620	31,200	32.0	47.2	83.2	92.8
구두 등 피혁 제품	34,410	16,960	31.4	49.6	43.3	49.3
셀룰로우스 및 제지업	55,980	46,440	46.8	50.5	80.9	83.0
등사판 및 복사기	37,390	49,040	31.9	44.7	119.6	131.2
유리 및 도자기	33,190	17,540	56.0	54.2	53.2	52.6
식품 및 유희음식 제조업	113,870	90,120	39.9	41.7	78.2	79.1
총 계	56,200	38,460	48.4	52.5	66.6	68.4

자료출처 : Tabellen A 46 und A 48 (BRD), A 47 und A 49 (DDR);

위 일람표에서는 노동생산력이 고용인당 총생산량에 의거해서 정회히 측정되었다.

동·서독의 산업분야별 자본금생산력 구조일람 1960 ~ 1968

산 업 분 야	1968년 자본금 생 산 력		1960~1968 의 변동 백분율		서독에 대한 동독의 백분율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0	1968
원 료 산 업	860	644	+ 0.9	- 6.4	80.8	74.9
에베르기 산업	361	421	- 1.6	- 7.7	124.4	116.8
광 업	553	481	-10.1	-30.5	112.6	87.0
야 금	1,175	666	-20.6	-14.4	52.6	56.8
회 공 업	1,435	958	28.9	16.2	74.0	66.8
건축 자 재	907	714	-32.0	- 3.2	55.3	78.8
금 속 가 공 업	1,475	1,366	-27.9	10.5	60.5	92.6
전 기 기 술	1,698	2,086	-15.3	3.6	100.5	122.9
조 선 업	1,134	1,110	- 8.6	9.6	81.6	97.9
기타금속 가공업	1,422	1,198	-32.5	10.9	51.3	84.3
경 공 업	1,551	1,344	-18.4	± 0	70.6	86.6
목재 및 문예작품	1,761	1,879	-19.2	10.9	77.8	106.5
직 물	1,339	1,011	-27.8	- 0.6	64.5	75.5
피복·재봉	3,227	6,794	-19.7	-16.1	201.5	210.5
구두등 피혁제품	2,130	1,075	-21.6	18.9	33.3	50.5
셀룰로우스 및 제지업	1,253	1,031	-19.2	2.0	65.3	82.3
등사판 및 복사기	1,237	2,260	-14.9	-12.9	178.4	182.7
유리 및 도자기	1,225	618	-25.6	-10.0	41.6	50.4
식품 및 유흥음식 제조업	1,666	2,350	-15.1	10.2	108.7	141.0
총 계	1,171	1,003	-13.1	- 2.3	76.2	85.7

자료출처 : Tabellen A 46 und A 50 (BRD), A 47 und A 51 (DDR)

위 일람표의 자본금생산력은 총 투입자본금 1,000DM(독일 마르크) 당 총 생산량(DM)에 근거해서 추정되었음.

A58 ~ A62

산업분야별 생산인수(生産因數 또는 要因) 및 생산과 생산능력 일람 1968년

구 분 산 업 분 야	1968년 실제			
	생 산 요 인		자본금내역	총 생산
	노 동	자 본		
	단위천명	단위백만 DM	고용인당 DM	단위백만 DM
원 료 산 업	833.5	66,950	80,330	43,060
에베르기 산업	72.5	17,140	236,470	7,230
광 업	193.5	17,450	90,170	8,400
야 금	172.5	8,570	49,670	5,710
화 공 업	304.0	19,460	64,020	18,630
진 축 자 재	91.0	4,330	47,560	3,090
금 속 가 공 업	1,112.0	21,300	19,150	29,100
전 기 기 술	261.0	4,150	15,910	8,660
조 선 업	42.0	930	22,100	1,030
기타 금속가공업	809.0	16,220	20,050	19,410
경 공 업	770.0	15,980	20,760	21,470
목재및 문예상품	144.0	2,430	16,890	4,570
적 물	283.0	6,530	23,060	6,600
피복·재봉	108.0	500	4,590	3,370
구두등 피혁제품	69.0	1,090	15,770	1,170
셀룰로우스및 제지업	59.0	2,650	45,020	2,740
등사판·복사기	36.5	790	21,700	1,790
유리·도자기	70.5	1,990	28,260	1,230
식품및 유흥음식 제조업	209.5	8,030	38,340	18,880
총 계	2,925.5	112,260	38,380	112,510

주(註): 1. 자본금내역으로 표시산출된 서독의 노동생산력조사보고에 힘입어서

동독의 경우

숫자		1968년 표준숫자			
각 요인들의 생산능력		총생산	각 요인이 지닌 비 실제적인 표준 생산력		능력실천 통계지수
노동	자본	능력및수용력	노동	자본	
DM	DM	백만 DM	DM	DM	최대실천 통계지수=100
51,660	644	56,120	67,330	838	77
99,720	421	7,230	99,720	421	100
43,410	481	8,400	43,410	481	100
33,100	666	10,350	60,000	1,208	55
61,280	958	25,840	85,000	1,328	72
33,960	714	4,300	47,250	993	72
26,170	1,366	38,560	34,680	1,810	75
33,180	2,086	8,660	33,180	2,086	100
24,520	1,110	1,180	28,100	1,180	87
23,990	1,198	28,720	35,500	1,771	68
27,880	1,344	26,770	34,770	1,675	80
31,740	1,879	4,570	31,740	1,879	100
23,320	1,011	9,200	32,500	1,409	72
31,200	6,794	3,370	31,200	6,794	100
16,960	1,075	2,140	31,000	1,963	55
46,440	1,031	3,300	55,930	1,245	83
49,040	2,260	1,790	49,040	2,260	100
17,450	618	2,400	40,100	1,206	51
90,120	2,350	18,880	90,120	2,350	100
38,460	1,003	140,330	47,980	1,250	80

산출되었음.

동·서독의 농업기업실태 일람 1960 ~ 1969

기업 규모 및 방식	농업 기업 숫자		농지이용면적에 따른 기업숫자백분율		ha(헥타)로 따져 본 기업당 평균규모	
	1960	1969	1960	1969	1960	1969
기업 총 숫자 ¹	1385,400	1157,000	서	독	9.3	11.0
1~5헥타 농지이용기업	617,500	456,800	12.5	9.3	2.6	2.6
5~10헥타농지이용기업	343,000	252,300	19.2	14.4	7.2	7.3
10~20헥타농지이용기업	286,500	280,700	30.9	31.6	13.9	14.3
20~50헥타농지이용기업	122,100	149,200	27.1	33.3	28.7	28.4
50~100헥타농지이용기업	13,700	15,200	6.8	7.7	64.7	64.6
100헥타이상 농지이용기업	2,600	2,800	3.5	3.7	170.6	166.5
			동	독		
기업 총 숫자 ¹	59,958	23,616	100.0	100.0	107.4	266.8
농업 생산 조합 ³	19,276	9,836	84.2	85.9	281.2	550.1
I 型 및 II 型	12,923	4,186	31.0	17.1	154.5	257.2
III 型	6,353	5,650	53.2	68.8	539.1	767.1
국가귀속재산(토지) ⁴	669	527	6.3	6.9	591.4	823.6
원예생산조합 ⁵	298	349	0.2	0.3	4.6	5.4
기타 사회 기업	9,513	1,734 ²	1.8	0.2 ²	12.0	11.0 ²
기타 기업	30,202	11,170 ²	7.5	6.7 ²	1.6	3.3 ²

주(註) :

1. 농지이용 면적이 최치 1헥타 이상되는 기업들만 취급하였다.
2. 1968년현제물 기준으로 하였다.
3. 농업생산조합(LPG;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
4. 국가귀속재산(VEG; Volkseigens Guter.)
5. 원예생산조합(GPG; Gartneris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LuF der BRD 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9 und 1970.

일 랫 표 A 60

동·서독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비료공급면적 및 비료공급량 일람
(농지이용 헥타당 투입비료 kg)

1957/61, 1960/61 ~ 1968/69

	서 독	동 독	서독대 동독의비	서 독	동 독	서독대 동독의비	서 독	동 독	서독대 동독의비
	질 소			인 산			가 리		
1957/61	42.1	36.6	86.9	45.5	32.5	71.4	71.1	80.2	112.8
1960/61	43.4	38.5	88.7	46.4	35.1	75.6	70.6	82.3	116.6
1961/62	43.7	39.8	91.1	44.6	33.0	74.0	72.9	77.3	106.0
1962/63	54.5	42.8	78.5	50.7	35.1	69.2	77.5	82.8	106.8
1963/64	52.7	48.3	91.7	53.9	41.3	76.6	79.4	85.2	107.3
1964/65	55.7	62.4	112.0	57.9	52.6	90.8	84.0	85.7	102.0
1965/66	63.0	66.4	105.4	60.1	47.7	79.4	85.8	92.8	108.2
1966/67	64.3	70.1	109.0	57.9	51.5	88.9	77.9	98.2	126.1
1967/68	68.9	70.5	102.3	58.5	59.0	100.9	81.2	93.8	115.5
1968/69	68.4	79.6	116.4	58.8	58.7	99.8	76.7	92.3	120.3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L.u.F. der BRD, 1969 und 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일 략 표 A 61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동·서독의 건조운반차 및 벌초타자기 숫자일람
1958, 1968 및 1969년의 경우

대 상 \ 구 분	단 위	년 도	서 독	동 독	서독대 동독의비
건조운반차 보유숫자 ¹	(台數) 대 수	1958	699,196	65,915	9.4
		1968	1,292,909	144,348	11.2
		1969	1,340,000	145,838	10.9
농지이용면적 100 헥타당 건조운반차 보유숫자	대 수	1958	4.9	1.0	20.4
		1968	9.3	2.3	24.7
		1969	9.7	2.3	23.7
실제농토 100 헥타당 건조운반차 보유숫자	대 수	1958	8.7	1.3	14.9
		1968	17.1	3.1	18.1
		1969	17.7	3.1	17.5
건조운반차 모터의 마력	(千馬力) 천마력	1958	13,150	1,901	14.5
		1968	30,981	6,244	20.2
		1969	33,019	6,636	20.1
농지이용면적 100 헥타당 건조운반차모터의 마력	마 력	1958	92.4	29.5	31.9
		1968	223.4	98.9	44.3
		1969	238.4	105.3	44.2
실제농토 100 헥타당 건조운반차 모터의 마력	마 력	1958	163.7	38.6	23.6
		1968	408.8	130.8	32.0
		1969	436.1	139.8	32.1
벌초타자기 보유 숫자	대 수	1958	26,000	4,452	17.1
		1968	150,000	17,923	11.9
		1969	160,000	18,301	11.4
경작지 10,000 헥타당 벌초타자기 보유숫자	대 수	1958	52.5	17.8	33.9
		1968	294.9	76.4	25.9
		1969	310.6	78.0	25.1

주(註) : 1. 다축건조운반차만 취급하였음
2. 1957년 현재를 기준하였음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LuF der BRD 1964 und 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0/61 und 1970.

일 랑 표 A 62

동·서독의 농업생산 비교숫자 일람
1967/61 및 1968

구 분 대 상	단 위	서 독		동 독		서독대 동독의비	
		1957/61	1968	1957/61	1968	1957/61	1968
농업이용 면적	백만헥타	14.26	13.87	6.44	6.30	45.2	45.4
총 가축 수	백 만 두	11.89	12.44	5.06	4.96	42.6	39.9
유용한 가축수	백 만 두	11.02	12.17	4.50	4.77	40.8	39.2
농림업 종사자 및 취업인구 숫자	1,000	3,794	2,630	1,416	1,068	37.3	40.6
전조운반차모타마력	백 만	15.15	30.98	2.30	6.25	15.2	20.2
질소 소비량	1,000t	602	933	239	502	39.7	53.8
인산 소비량	1,000t	652	802	209	370	32.1	46.1
가리 소비량	1,000t	1,017	1,046	511	582	50.2	55.6
총 농지 생산	백 만 t	48.05	58.01	19.17	23.35	39.9	40.3
총 가축사육 실적	백 만 t	42.62	52.36	14.57	17.46	34.2	33.3
식용품 생산	백 만 t	46.21	59.83	16.19	20.10	35.0	33.6
순(純)식용품 생산	백 만 t	40.82	49.50	13.95	17.86	34.2	36.1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LuF der BRD 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0/61 und 1970 sowie Berechnungen des
Instituts für Agrarpolitik und Agrarstatistik der TU.

A63 ~ A86

일 랫 표 A 63

동·서독 식용품생산·구조실태 일람
1957/61 및 1968

구 분 생 산 품	서 독		동 독	
	1957 / 61	1968 / 69	1957 / 61	1968
	단 위 1.000 t			
식물류 생산	10688	12696	4566	5024
곡물류	4321	5140	1772	2183
유괴과실	11	8	30	17
유지곡물	71	196	189	295
감 자	1770	1572	793	710
사탕무우	2171	2625	1230	1327
야 채	308	419	145	138
수분많은 과일	1240	1694	329	278
기 타 ¹	796	1042	78	76
가축류 생산	35521	47129	11621	15078
식용가축				
소	9400	12168	1818	3228
송아지	977	864	218	126
양	183	126	258	180
돼 지	11507	15865	4248	5465
가금(닭등)	719	1596	384	612
염 소	46	6	51	24
소의 젖	9760	11890	2976	3743
염소의 젖	130	4	177	67
계 란	2031	3930	866	1095
양모, 털실	171	132	322	320
가축중순자변화	597	538	303	218
식용품생산총계	46209	59825	16187	20102

주(註) : 1. 포도즙, 홉(맥주원료), 담배, 아마 및 레마등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inf der BRD 1970, Berechnungen des Instituts für Agrarpolitik und Agrarstatistik der TU Berlin nach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und Vorhergehenden Jahrgangen.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에 대한 동독의 백분율	
1957/61	1968/69	1957/61	1968	1957/61에 대한 1968의 성장		1957/61	1968
총 100 %				백분율		1957/61	1968
23.1	21.2	28.2	25.0	18.8	10.0	42.7	39.6
9.3	8.6	10.9	10.9	19.0	23.2	41.0	42.5
(*)	(*)	0.2	0.1	-27.3	-43.3	272.7	212.5
0.2	0.3	1.2	1.5	176.1	56.1	266.2	150.5
3.8	2.6	4.9	3.5	-11.2	-10.5	44.8	45.2
4.7	4.4	7.6	6.6	20.9	7.9	56.7	50.6
0.7	0.7	0.9	0.7	36.0	-4.8	47.1	32.9
2.7	2.8	2.0	1.4	36.6	-15.5	26.5	16.4
1.7	1.8	0.5	0.3	30.9	-2.6	9.8	7.3
76.9	78.8	71.8	75.0	32.7	29.7	32.7	32.0
20.3	20.3	11.2	16.1	29.5	77.6	19.3	26.5
2.1	1.5	1.3	0.6	-11.6	-42.2	22.3	14.6
0.4	0.2	1.6	0.9	-31.1	-30.2	141.0	142.9
24.9	26.5	26.2	27.2	37.9	28.7	36.9	34.5
1.6	2.7	2.4	3.0	122.0	59.4	53.4	38.3
0.1	(*)	0.3	0.1	-87.0	-52.9	110.9	400.0
21.1	19.9	18.4	18.6	21.8	25.8	30.5	31.5
0.3	(*)	1.1	0.3	-89.2	-62.1	136.2	478.6
4.4	6.6	5.4	5.5	93.5	26.4	42.6	2.9
0.4	0.2	2.0	1.6	-22.8	-0.6	188.3	242.4
1.3	0.9	1.9	1.1	-9.9	-28.0	30.8	40.5
100.0	100.0	100.0	100.0	29.5	24.2	35.0	33.6

일 랫 표 A 64

동·서독 농업생산량 및 농업생산력실태 일람

1957/61 . 1960 ~ 1968

	1. 헥타 (ha) 당 총 농지생산 단위 dz (200 파운드) 좌			2. 가축사육실적 (GV당 dz 좌)			3. 식용생산 단위 백만 ton	
	서 독	동 독	서독 대 동독의비	서 독	동 독	서독 대 동독의비	서 독	동 독
1957/61	33.7	29.7	88	35.9	28.9	81	46.21	16.18
1960	37.1	33.9	91	36.5	28.8	79	49.42	17.14
1961	33.3	26.1	78	37.3	28.5	76	48.02	15.72
1962	34.4	28.9	84	37.8	25.6	68	49.92	14.59
1963	37.1	29.7	80	39.4	28.9	73	52.68	16.43
1964	34.8	29.9	86	40.3	29.9	74	53.62	16.76
1965	33.5	32.8	98	39.1	33.0	84	51.51	18.00
1966	35.9	32.9	92	40.7	34.3	84	54.95	18.92
1967	40.1	36.6	91	41.5	34.2	82	58.57	19.56
1968	41.8	36.8	88	42.1	35.3	84	59.83	20.10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LuF der BRD 1970 und Vorhergehende Jahrgänge. Berechnungen des Instituts für Agrarpolitik und Agrarstatistik der TU Berlin nach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und Vorhergehende Jahrgänge.

4. 순(純) 식용 생산 단위 백만ton		5. 주민 1인당식용 생산, 단위 dz (공급능력)			6. 식용생산 AK당 dz좌 (노동생산력)			7. 순(純) 식용생산 ha당 dz좌 (농지생산력)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대 동독의비	서독	동독	서독 대 동독의비	서독	동독	서독 대 동독의비
40.82	13.95	8.4	9.4	112	.	.	.	28.6	21.6	76
44.61	14.70	8.9	9.9	111	.	.	.	31.3	22.8	73
41.43	13.63	8.5	9.2	108	.	.	.	29.2	21.2	73
43.51	12.20	8.7	8.5	98	.	.	.	30.7	19.0	62
46.14	14.46	9.1	9.6	105	.	.	.	32.6	22.6	69
45.52	14.40	9.2	9.9	108	280.6	162.9	58	32.2	22.5	70
41.19	15.91	8.7	10.6	122	279.2	178.3	64	29.3	25.0	85
45.24	16.57	9.2	11.1	121	305.6	192.6	63	32.2	26.0	81
48.53	17.21	9.8	11.4	116	339.2	202.7	60	34.7	27.1	78
49.51	17.86	9.9	11.8	119	360.2	219.8	61	35.7	28.2	79

일 랫 표 A 65

동·서독의 운수 통신제도 일람
1960 ~ 1968년의 생산요인

	단 위	서 독			
		1960	1965	1966	1967
운수의 총 생산치 ¹	백만마르크(DM)	32,140	46,020	49,150	50,000
국내총생산에대한 우편의기여 ²	" "	19,510	23,860	24,360	24,140
운수 부문 ³	%	5.9	5.7	5.6	5.6
종사자 수 ⁴	1,000 명	1,460	1,454	1,423	1,392
정식직원과 보조직원	1,000 명	99	97	95	94
투입 자본금 ⁵	십억마르크(DM)	113	139	144	152
건축물(우편국 등)	%	40	36	35	34
수송 차량	%	35	36	37	37
수송 장비	%	25	28	28	29
운수부문 ⁶	%	21	18	18	17
특별비 투자액 ⁷	백만마르크(DM)	5,840	8,530	8,550	9,510
건축물	"	1,300	1,810	2,080	2,340
차량및 장비	"	4,540	6,720	6,470	7,170
경상비 투자액 ⁸	"	6,330	8,060	7,930	9,040
건축물	"	1,470	1,630	1,850	2,170
차량및 장비	"	4,860	6,430	6,080	6,870
우편 부문 ⁹	"	13	13	12	

동독; 교정가격에 따른 기본적립자본금

6. 서독; 전체 경제분야 총투입자본금에 대한 운수부문의 총투입자본금비율
동독; 생산에 종사하는 전체 경제분야 기본적립자본금에 대한 운수부문의 기본
 7. 서독; 독일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른 산출액(도로, 교량, 하천공사비 등 제외)
 8. 서독; 독일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른 1962년시가표준 동독; 교정가격 표준
 9. 서독; 전체 경제분야투자금액에 대한 운수부문투자금액시가지비율
동독; 생산에 종사하는 경제분야들의 투자금액에 대한 운수부문 투자금액시가지
- 자료출처: 위의 숫자들은 국가경제총람을 위하여 이미 공시된 통계연방행정 및

동		독			
1968	1960	1965	1966	1967	1968
55,440	6,400	9,190	9,620	11,120	11,930
26,190	4,670	5,700	5,920	6,080	6,720
5.7	5.5	5.4	5.3	5.2	5.1
1,352	554	553	551	545	540
90	17	15	14	13	13
159	33	40	41	42	43
34	.	.	.	49	49
37	.	.	.	33	33
29	.	.	.	18	18
.	21	19	18	18	17
9,800	1,330	1,590	1,540	2,070	2,440
2,540	360	290	230	380	430
7,260	970	1,300	1,310	1,690	2,010
8,920	1,630	1,840	1,850	2,110	2,440
2,240	540	430	350	380	430
6,680	1,090	1,410	1,500	1,730	2,010
.	13	11	10	11	11

주(註) :

1. 서독 ; 총생산 = 판매 + 특정생산반제 품 및 완제품 재고 가치 변동 + 시세에 따른 자기자본투자액
 동독 ; 총생산 = 인력 운송 및 상품 운송에서 얻은 수입 + 현시세에 따른 운송료
2. 서독 ; 1962년의 시가로 계산
 동독 ; 독일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른 고정가격으로 계산
3. 서독 ; 1962년 가격을 기준해서 국내총생산액에 대해 갖는 운송부문의 기여액면비율
 동독 ;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경제분야의 고정가격 순(純)생산액에 대해 갖는 운송부문의 순(純)생산액면비율
4. 서독 ; 자료출처 "Wirtschaft und Statistik" Heft 2/1970
 동독 ; 초급자를 제외한 직업인수
5. 서독 ; 독일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른 1962년시세의 총투입자본금 (도로, 교량하천공사비등 제외)

적립자본금 비율

비율

동·서독의 통계연감에 인용수록되어 있다.

일람표 A 66
 동. 서독의 운수 통신제도 일람
 전체 운수업무실적 구조

	단 위	서 독 ^a			
		1950	1955	1960	1965
A. 상품 운송					
1) 운송 량					
a) 전체 독일운송기관으로	백만톤	688	1,232	1,649	2,194
철도 ¹	//	208	262	315	311
내륙항행	//	45	81	104	118
자동차교통 ²	//	(423)	840	1,145	1,633
이중에서					
장거리운송	//	33	70	95	122
단거리운송	//	(390)	(770)	(1,050)	1,510
바다항행	//	12	49	72	86
송유관운송	//	-	-	13	46
b) 전체독일교통로위로	//	729	1,282	1,726	2,299
철도 ¹	//	208	262	315	311
내륙항행 ⁴	//	72	125	171	196
자동차교통 ⁵	//	423	842	1,149	1,643
이중에서					
장거리운송	//	33	72	99	133
단거리운송	//	(390)	(770)	(1,050)	1,510
바다항행	//	26	53	78	103
송유관운송	//	-	-	13	46
2. 톤·킬로메타 (t/Km : 1t의 무게 를 1 Km 운반하는 량)					
a) 독일전체 운송 기관으로	십억 t/Km	63	99	126	157
철도 ⁶	//	38	47	53	58
내륙항행 ⁷	//	10	21	28	31
자동차교통 ²	//	15	31	42	59

			동 득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2,250	2,313	2,509	226	389	521	624	640	645	682
306	301	330	129	208	238	261	263	253	253
125	125	134	10	12	12	11	12	13	13
1,675	1,724	1,863	87	169	270	346	358	372	400
126	124	138	4	4	7	11	12	13	15
(1,550)	(1,600)	(1,725)	83	165	263	335	346	359	385
91	105	115	-	.	1	6	7	7	7
53	57	67	-	-	-	-	.	.	9
2,361	2,415	2,622	226	392	525	627	643	649	685
306	301	330	129	208	238	260	263	253	253
208	214	233	10	13	13	12	13	14	13
1,687	1,737	1,877	87	169	270	346	358	372	400
138	137	153	4	4	7	11	12	13	15
(1,550)	(1,600)	(1,725)	83	165	263	335	346	359	385
107	105	115	-	2	4	9	9	10	10
53	57	67	-	-	-	-	.	.	9
160	161	174	19	31	40	48	50	48	51
57	55	58	15	25	33	39	40	38	39
32	34	35	2	2	2	2	2	2	2
61	62	67	2	4	5	7	8	8	9

	단 위	서 록 a			
		1950	1955	1960	1965
이중에서					
장거리운송	십억 t/Km	8	17	23	29
단거리운송	"	(7)	(14)	(19)	30
송유관운송	"	-	-	3	9
b) 독일전체교통로위로	"	70	107	139	174
철도 ^{1 6}	"	38	47	53	58
내륙항해 ⁴	"	17	29	40	44
자동차교통 ⁵	"	15	31	43	63
이중에서					
장거리운송	"	8	17	24	33
단거리운송	"	(7)	(14)	(19)	30
송유관운송	"	-	-	3	9
B. 사람 운송	※ P/Km ; 사람 하나를 1 Km 운반하는 힘				
Personen, Km 총계	十億P/Km	86	142	231	327
철도	"	32	37	40	39
전차 ⁸	"	17	17	15	12
대형버스단거리 운송 ⁹	"	5	7	9	9
대형버스내륙항해 단운송	"	8	15	26	31
항공 ¹⁰	"	-	0	1	4
택시 및 임대차	"	.	.	(1)	(1)
개인운송	"	(24)	(66)	(139)	(231)

주(註): a - 1960년이래 「자르」지방과 서부 「베르틴」 포함

1. 독일국영철도, 연방철도 및 연방에 귀속되지않은 철도의 운송실적
2. 직업운송포함
3. 외국인의 시한부선박차용운송포함
4. 통항포함
5. 외국의 장거리 수송화물차의 직업수송실적 포함
6. 철도운임 t/Km 표준
7. 외국인의 내륙선박운송실적포함
8. 지하철운송실적 포함
9. 트롤리버스운송실적포함
10. 국내비행 및 독일 「루프트한자」항공회사운송 실적포함

			동 독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29	30	33	1	1	1	2	2	2	3
(31)	(32)	(34)	1	3	4	5	6	6	6
10	10	14	-	-	-	-	.	.	1
176	177	192	19	31	40	48	51	49	51
57	55	58	15	25	33	39	40	38	39
45	46	48	2	2	2	2	3	3	2
64	66	72	2	4	5	7	8	8	9
33	34	38	1	1	1	2	2	2	3
(31)	(32)	(34)	1	3	4	5	6	6	6
10	10	14	-	-	-	-	.	.	1
345	351	364	29	41	49	61	66	69	75
36	34	35	19	23	21	17	17	17	17
11	10	10	5	6	6	5	5	5	5
9	9	9	0	1	1	2	2	2	2
32	33	34	2	5	9	13	14	14	15
5	6	6	-	-	0	0	0	1	1
(1)	(1)	(2)
(251)	(258)	(268)	(3)	(6)	(12)	(24)	(28)	(30)	(35)

일람표 A 67

동.서독의 운수.통신제도 일람
 운수실적 구조 백분율

	서독 a				
	1950	1955	1960	1965	1966
A. 상품 운송					
1. 운송톤 (ton) 수					
a) 독일 운송기관으로					
철도 ¹	30	21	19	14	14
내륙항행	7	7	6	5	5
자동차운송 ²	61	68	70	75	75
이중에서					
장거리운송	5	6	6	6	6
단거리운송	56	62	64	69	69
바다항행 ³	2	4	4	4	4
송유관운송 ⁴	-	-	1	2	2
b) 독일내 교통로위로					
철도 ¹	28	20	18	14	13
내륙항행 ⁴	10	10	10	9	9
자동차운송 ⁵	58	66	67	71	71
이중에서					
장거리운송	5	6	6	6	6
단거리운송	53	60	61	65	65
항구	4	4	4	4	5
송유관	-	-	1	2	2
2. 톤 킬로메타					
a) 독일내 운송수단으로					
철도 ^{1 6}	60	48	42	37	36
내륙항행 ⁷	16	21	22	20	20
자동차운송 ²	24	31	34	37	38
이중에서					
장거리운송	13	17	19	18	18
단거리운송	11	14	15	19	20
송유관	-	-	2	6	6

		동 독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13	13	57	54	46	42	41	39	37
5	5	4	3	2	2	2	2	2
75	74	39	43	52	55	56	58	59
5	5	2	1	1	2	2	2	2
70	69	37	42	51	53	54	56	57
5	5	-	.	0	1	1	1	1
2	3	-	-	-	-	.	.	1
13	13	57	54	46	42	41	39	37
9	9	4	3	2	2	2	2	2
72	71	39	43	51	55	56	58	59
6	6	2	1	1	2	2	2	2
66	65	37	42	50	53	54	56	57
4	4	.	0	1	1	1	1	1
2	3	-	-	-	-	.	.	1
34	33	78	81	82	81	80	79	76
21	20	11	6	5	4	4	4	4
39	39	11	13	13	15	16	17	19
19	19	5	3	3	4	4	4	6
20	20	5	10	10	11	12	13	12
6	8	-	-	-	-	.	.	2

	서 독 a				
	1950	1955	1960	1965	1966
b) 독일내 교통路위로					
철도 ^{1 6}	54	44	38	34	32
내륙항행 ⁴	24	27	29	25	26
자동차운송 ⁵	22	29	31	36	36
이중에서					
장거 리운송	12	16	17	19	19
단거 리운송	10	13	14	17	17
송유관운송	-	-	2	5	6
B. 사람운송 (P/Km)					
철도	37	26	17	12	11
전차 ⁸	20	12	7	4	3
대형 버스단거 리운송 ⁹	6	5	4	3	3
대형 버스대륙 횡 단운송	9	11	11	9	9
항공 ¹⁰	-	0	0	1	1
택시 및 임대차량	.	.	0	0	0
개인운송	28	46	60	71	73

주(註) : a. 1960년 이래 「자르」지방과 서부「베르린」포함

1. 독일국영철도 연방철도 및 연방에 귀속되지 않은 철도의 운송실적
2. 직업운송포함
3. 외국인의 시한부선박차용운송실적포함
4. 통항포함
5. 외국인의 장거 리수송화물차의 직업적 운수실적포함
6. 철도운임 t/Km 표 준
7. 외국인의 내륙선박운송실적포함
8. 지하철운송실적포함
9. 트롤리버스운송실적포함
10. 국내비행 및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회사운송실적포함

		동 득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31	30	78	81	82	81	78	73	76
26	25	11	6	5	4	6	6	4
37	38	11	13	13	15	16	16	18
19	20	5	3	3	4	4	4	6
18	18	5	10	10	11	12	12	12
6	7	-	-	-	-	.	.	2
10	10	66	56	43	28	26	25	23
3	3	17	15	12	10	9	9	8
3	2	.	2	2	2	2	1	1
9	9	7	12	18	21	21	21	20
2	2	-	-	0	0	0	1	1
0	1
73	73	10	15	25	39	42	43	47

일람표 A 68
 동. 서독의 운수. 통신제도
 철도¹

	단 위	서 독 a			
		1950	1955	1960	1965
철로망 ² 총연장	Km	36,790	36,607	35,974	35,360
이중에서					
간선철도	//	18,422	18,121	18,591	18,571
전철 (電鐵)	//	.	2,666	4,223	6,863
상품운반톤수	백만톤	208	262	315	311
상품운송내역 ³					
농. 립산물	%	9	8	7	7
식품. 유흥음식	//	2	2	2	2
석탄 (교체연료)	//	40	39	34	30
석유	//	3	4	4	7
광석. 금속폐물	//	9	11	15	13
무쇠: 강철	//	7	8	10	12
돌. 흙 건축원료	//	15	14	12	12
비료	//	4	4	5	5
화학산품	//	3	3	4	5
완성품. 부분품. 집합상품	//	8	7	7	7
톤. 킬로메타 (t/Km) ⁴	十億 t/Km	38	47	53	58
사람운송	백만명	1,473	1,555	1,422	1,165
Persones Km (前述)	十億 P/Km	32	37	40	39
운송단위 (T. E) = $\sum . Km + P Km^5$	十億 TE	70	84	93	97
동원된 열차수					
기관차 ⁵	千 輛	13.8	11.3	11.1	10.8
통근열차 ⁶	//	36	35	29	27
화물열차 ⁸	//	306	294	315	335

			부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34,687	34,328	34,155	15,945	16,134	16,174	15,930	15,730	15,513	15,237
18,502	18,481	18,455	.	.	7,362	7,436	7,385	7,306	7,331
7,377	7,628	1,057	1,095	1,191	1,203
306	301	330	129	208	238	260	263	253	253
7	7	6	8	6	5	4	4	4	4
2	2	2	4	3	3	3	3	3	3
30	29	29	43	47	44	41	40	38	38
7	7	7	1	2	3	5	5	6	6
13	14	14	2	2	2	3	3	3	3
11	12	14	3	4	4	4	5	5	5
12	11	10	12	14	17	19	19	20	20
5	6	5	5	4	5	5	5	5	5
5	5	5	3	3	3	3	3	3	3
8	7	8	19	15	14	13	13	13	13
57	55	58	15	25	33	39	40	38	39
1,066	1,018	1,009	954	1,016	943	684	668	649	634
36	34	35	19	23	21	17	17	17	17
93	89	93	34	48	54	56	57	55	56
9.7	9.0	8.7
26	26	25
334	325	317

	단 위	서 득 a			
		1950	1955	1960	1965
동원된 원동기구분 ⁹					
증기기관차	%	92	85	66	37
전기기관차	%	7	13	28	53
디젤기관차	%	1	2	6	10
每화물차 勞 평균 운행 시간 ¹⁰	日	4.4	4.3	4.5	5.0
종사자 수	千 名	554	520	519	484
노동생산력	千 TE/B	126	162	178	200

주(註) : a 1960년 이래 「자르」지방 및 서부 「베르린」포함

1. 독일국영철도, 연방철도 및 연방에 귀속되지 않은 철도의 철로운송포함
2. 운행거리
3. 동독의 경우 : 수입(輸入) 제외
4. 철도운임 t/km 표준
5. 실제의 대단위 생산력 비교를 위해 요청되는, "운송단위 (TE: Transporteinheit)" 같은 추상적 단위로서의 화물수송과 사람운송실적의 결합이라는 것은 동서 兩쪽의 동일한 실적구조 비율이 전개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6. 배치숫자
7. 기동차, 수화물차, 철도우편차 포함
8. 개인소유의 상품운반차 포함
9. 서독의 경우 : 독일연방열차만 포함
10. 다음의 운송을 위해 준비할때까지의 화물차의 활동시간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ücher der BRD und DDR ;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H - Verkehr ; Beschäftsberichte und Statistische Monats-
 überpichten der Deutschen Bundesbahn.

			동 동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31	24	20	99	99	94	88	84	74	64
57	62	66	1	1	5	9	10	12	15
12	14	14	-	-	1	3	6	14	21
5.1	5.2	5.2	4.1	3.5	3.6	3.6	3.7	3.9	4.0
463	441	419	243	283	293	269	263	258	251
201	202	222	140	170	185	208	217	213	215

일람표 A 69
 동.서독의 운수.통신제도 일람
 항 행

	단 위	서 독 a			
		1950	1955	1960	1965
내륙항행 하천과 운하항행거리	Km	4,502	4,294	4,441	4,409
이 중에서 250 ~ 300 t 급선박항행	Km	.	.	.	3,993
독일선박의 운송톤수	백만톤	45	81	104	118
이 중에서 발동화물선운송	백만 t	11	34	64	92
추진식선박운송	//	-	-	-	3
소형화물선운송	//	34	47	40	23
독일선박운송 총 t / Km ¹	十億 t / Km	10	21	28	31
이 중에서 발동화물선	十億 t / Km	4	10	18	27
추진식선박	//	-	-	-	0
소형화물선	//	6	11	10	4
독일운하운송량 ²	백만톤	72	125	171	196
상품운송구조비율	%				
농.림산물	//	6	6	5	4
식품.유홍음식	//	3	3	3	3
석탄	//	36	29	22	14
석유	//	5	7	12	17
광석.금속폐물	//	13	16	18	15
무쇠.강철	//	4	4	5	6
돌.흙.건축자료	//	27	28	28	34
비료	//	3	3	3	3
화학산품	//	2	3	3	3
완제품	//	1	1	1	1

			동 독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4.424	4.370	4.415		2.643		2.519	2.519	2.519	2.519
4.020	4.020	4.065	.	.		1.742	1.742	1.742	1.742
125	125	134	10	12	12	11	12	13	13
99	102	111	.	.	1.9	3.7	3.4	3.3	3.3
4	5	5	.	.	-	1.8	4.2	5.3	5.9
22	18	18	.	.	9.6	5.9	4.8	4.1	3.4
32	34	35	1	2	2	2	2	2	2
28	31	32	.	.	0.4	0.8	0.9	0.8	0.8
1	1	1	.	.	.	0.1	0.4	0.5	0.6
3	2	2	.	.	1.5	0.9	0.9	0.8	0.7
208	214	233	10	13	13	12	13	14	13
4	4	3	26	11	10	10	12	10	11
3	3	3	4	2	2	2	1	2	2
14	13	13	23	32	31	30	28	25	22
18	18	17	1	1	1	1	1	2	3
13	13	15	1	2	2	2	2	2	2
6	7	7	1	2	14	6	8	9	5
35	35	34	24	33	37	40	40	43	47
3	3	3	4	4	2	2	2	2	2
3	3	4	1	2	2	1	1	1	2
1	1	1	15	11	9	6	5	4	4

	단 위	서 록 a			
		1950	1955	1960	1965
운송실태					
소형화물선 ³	천 t	2.5	2.7	2.4	1.5
발동화물선	//	0.6	1.4	2.4	3.4
추진식선박	//	-	-	0.0	0.1
총사자 수	천명	30	32	32	27
노동생산량	천t/Km/B	330	660	850	1,150
바다항행					
독일선박의 운송량 ⁴	백 만 t	12	49	72	86
독일선박의 운송실적	十億 t/Km
동원된 해선 (海船)	백만 BRt	0.8	2.9	4.8	5.8
총사자 수	천명	10	29	47	44
노동생산력	t/B	1,300	1,700	1,600	1,900
	천t/Km/B

주(註) :

a 1960년 이래 「자르」지방과 서부 「베르린」포함

1. 외국에서의 내륙항행실적포함

2. 통항포함

3. 적재 ton 수

4. 외국인의 시한부선박차용수송실적 포함

자료출처: Statistische Jahrbücher der BRD und DDR;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H - Verkehr Abteilung Binnenschiffahrt. "Deutsche Binnenschiffahrt"; Angaben des Verbandes Deutscher Reeder und des Bundesministers für Verkehr, Abteilung Seeschiffahrt.

			동 독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1.3	1.2	1.1
3.4	3.4	3.4
0.1	0.1	0.2
26	24	22	6	8	7	7	7	7	7
1,230	1,420	1,590	230	240	280	270	320	320	330
91	105	115	-	.	1	6	6	7	7
.	.	.	-	.	11	30	33	44	49
6.0	6.8	7.4	-	.	0.2	0.6	0.7	0.8	0.8
45	46	45	-	2	5	10	11	12	13
2,000	2,300	2,500	-	.	280	600	580	610	550
.	.	.	-	.	2,200	2,900	2,900	3,700	3,700

일 랑 표 A 70
 동.서독의 운수 통신택도 일람
 도로화물운송

	단 위	서 독 a			
		1950	1955	1960	1965
도로망					
자동차통로	1,000 Km	2.1	2.2	2.6	3.4
원거 리도로, 연방도로	//	24	25	25	31
I 등국도	//	49	56	57	66
II 등국도, 지방도로	//	52	48	50	57
지방자치 단체도로	//	.	229	236	250
운송톤수	백만 t	423	842	1,149	1,643
이 중에서					
장거 리운송	백만 t	33	72	99	133
이중에서					
조합의 운송	//	20	48	71	88
직업적 운송	//	13	22	24	34
외국차량의 운송	//	.	2	4	11
이중에서 (운수톤수)					
단거 리 운송 ²	//	(390)	(770)	(1,050)	1,510
이중에서					
조합의 운송	//	(180)	(350)	(472)	660
직업적 운송	//	(210)	(420)	(578)	850
톤.킬로메타	十億 t/Km	15	31	43	63
이중에서					
장거 리운송	//	8	17	24	33
이중에서					
조합의 운송	//	5	13	19	23
직업적 운송	//	3	4	4	6
외국차량의 운송	//	.	.	1	4
이중에서 (t/Km)					
단거 리운송 ²	//	(7)	14	19	30
이중에서					
조합의운송	//	(3)	(7)	(9)	14

			동 독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3.5	3.6	4.0	.	1.4	1.4	1.4	1.4	1.4	1.4
31	32	32	.	11	11	11	11	11	11
66	65	65	.	17	33	33	33	33	33
58	59	60	.	18					
.	57
1,687	1,737	1,877	87	169	270	346	358	372	400
138	137	153	4	4	7	11	12	13	15
89	85	93	2	2	4	7	8	9	10
37	39	45	2	2	3	4	4	4	5
12	13	15	-	-	-	-	-	-	-
(1,550)	(1,600)	(1,725)	83	165	263	335	346	359	385
(675)	(700)	(750)	42	68	127	159	159	157	162
(875)	(900)	(975)	41	97	136	176	187	202	223
64	66	72	2	4	5	7	8	8	9
33	34	38	.	1	1	2	2	2	3
23	23	25	.	0	1	1	1	1	2
6	7	8	.	0	0	1	1	1	1
4	4	5	-	-	-	-	-	-	-
31	32	34	2	3	4	5	6	6	6
14	15	16	1	1	2	3	3	3	3

	단 위	서 록 a			
		1950	1955	1960	1965
직업적 운송	十億 t / Km	(4)	(7)	(10)	16
동원된 차량	千 輛				
화물운송차	千 輛	358	564	670	856
보통운송차	〃	17	36	51	85
트레일러 ³	〃	212	322	356	464
이중에서					
화물차트레일러	〃	118	160	152	170
특수트레일러	〃	10	29	60	128
단축트레일러	〃	85	132	144	166
종사자 수 (발송포함)	〃	154	164	246	261
조합운송의 노동생산력	1,000 t / Km / B	52	122	114	142

주(註)

- a 1960년 이래 「자르」지방 서부「베르린」포함
1. 직업운수, 외국인 장거리 화물자동차운수실적포함
 2. 서록: 독일경제연구소 집계에 의한 일년간 통계
 3. 사람운송트레일러 제외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ücher der BRD und DDR.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H - Verkehr.

Bundesminister für Verkehr, Jahreszahlen über den Verkehr in der BRD, Kraftfahrt - bundesamt in Flensburg, Statistische Mitteilungen aus dem KBA.

Bestand an Kraftfahrzeugen und Kraftfahrzeuganhängern;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in Frankfurt/Main, Tatsachen und Zahlen aus der Kraftverkehrswirtschaft, DIW, Berlin, Wochenbericht.

			동 독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17	17	18	1	2	2	2	3	3	3
891	882	899	93	94	118	147	103	151	160
95	102	108	3	6	14	19	30	32	35
495	515	538	.	80	163	322	345	379	413
172	166	162	49	57	123	244	242	.	.
149	169	189	2	6	11	32	52	.	.
174	180	187	.	17	28	45	50	.	.
255	250	249	34	42	63	84	85	86	88
145	152	165	26	35	39	48	52	52	56

일람표 A 71

동.서독 운수.통신제도

육로사람운송

	단 위	서 독 a			
		1950	1955	1960	1965
집단운송	백만명	4.276	5.790	6.418	6.301
이중에서	//				
지하철도	//	282	288	306	366
전차	//	3.065	3.198	2.827	2.084
트롤리버스	//	108	272	293	178
대형버스단거리운송	//	(220)	876	1.441	1.836
시내단거리운송	//	3.675	4.634	4.867	4.464
대형버스대륙형단운송	//	601	1.156	1.551	1.837
택시 및 임대차량운송 ¹	//	(77)	(101)	(123)	(207)
자동차에 의한 개인운송 ¹	//	(2.300)	(6.440)	(12.280)	(18.860)
Personen Km (P/Km)	※ P / Km :	사람 하나를 1 Km 운반하는 힘			
집단운송	十億 P / Km	27	37	48	52
이중에서	//				
지하철	//	(2)	2	2	2
철도	//	15	15	13	10
트롤리버스	//	1	1	1	1
대형버스단거리운송	//	(1)	4	6	8
시내단거리운송	//	19	22	22	21
대형버스대륙형단운송	//	8	15	26	31
택시 및 임대차량운송 ¹	//	.	.	(1)	(1)
자동차에 의한 개인운송 ²	//	(24)	(66)	(139)	(231)
동원차량 숫자	千 輛	0.4	0.5	1.4	1.5
지하철기차	//	11.0	11.8	11.7	9.0
전차	//				

			동 독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6.158	5.999	5.883	.	2.054	2.655	2.829	2.829	2.832	2.819
402	412	404	.	103	105	77	75	73	72
1.919	1.728	1.593	.	1.413	1.539	1.441	1.414	1.396	1.341
156	131	101	.	65	100	114	106	97	93
1.815	1.812	1.807	.	116	223	256	252	257	275
4.292	4.083	3.905	1.758	1.697	1.967	1.888	1.847	1.823	1.781
1.866	1.916	1.978	.	357	689	941	982	1,009	1.037
(223)	(238)	(255)	.	.	24	34	34	37	37
(19.720)	(19.855)	(20.120)
52	52	52	8	12	16	20	21	21	22
2	2	2	.	0	0	0	0	0	0
9	8	8	5	6	5	5	5	5	5
1	1	.	.	0	0	0	0	0	0
8	8	8	.	1	1	1	1	1	1
20	19	18	6	7	7	7	7	7	7
32	33	34	2	5	9	13	14	14	15
(1)	(1)	(2)
(251)	(258)	(268)	(3)	(6)	(12)	(24)	(28)	(30)	(35)
1.6	1.6	1.6
8.5	7.9	7.4	.	.	4.8	4.7	4.8	4.8	4.8

	단 위	서 득 a			
		1950	1955	1960	1965
트롤리버스	千 輛	0.6	0.9	1.0	0.6
대형버스 ³	//	15.7	28.3	35.4	38.5
이중에서					
시내 단거 리운송	//	3.5	6.8	9.3	11.3
통근차량 ⁴	//	516	1,663	4,489	9,267
이중에서					
택시 및 임대차량 ¹	//	16	24	29	41
개인차량 ⁵	//	(63)	400	(2,360)	6,321
오토바이	//	914	2,433	4,106	1,924
시내 단거 리운송 종사차량	//	79	84	107	97
시내 단거 리운송 의 노 동 생 산 력	1,000 E/Km / B	241	262	206	216

주 (註) :

a 1950년 및 1955년. 「자르」 및 서부 「베르린」 제외

1. 독일경제연구소집계

2. 독일경제연구소집계

3. 트레일러포함

4. 대형연결차량포함

5. 1968. 4.3 字 동부베르린 “경제”지

자료출처: Statistischer Jahrbücher der BRD und DDR;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H - Verkehr; Kraftfahrt - Bundesamt in Flensburg; Statistische Mitteilungen aus dem KBA; Bestand an Kraftfahrzeugen und Kraftfahrzeuganhängern; Verband Öffentlicher Verkehrsbetriebe in Köln; Statistische Übersichten;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in Frankfurt/Main. Tatsachen und Zahlen aus der Verkehrswirtschaft.

			동 동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0.5	0.5	0.4	.	.	0.3	0.4	0.4	0.3	0.3
39.6	40.2	41.7	2.2	5.3	10.7	13.7	13.9	14.6	15.2
11.8	12.0	12.4	.	.	1.1	1.2	1.3	1.3	1.4
10.302	11.016	11.683	76	117	299	662	721	827	920
42	5	5	5	5	5
7.218	7.863	8.477	.	.	200	540	620	700	.
1.650	1.449	1.312	.	391	1.325	2.331	2.445	2.390	2.671
95	93	89	29	34	31	27	26	26	25
211	204	202	207	206	226	259	269	269	280

일람표 A 72
 동. 서독의 운수 통신제도 일람
 항공·송유관운송·통신제도

	단 위	서 독 a			
		1950	1955	1960	1965
항공운송 ¹	천 경	-	74	1,238	3,218
사람운송					
이중에서					
국내운송	"	-	13	351	1,258
Personen Km	백만 P/Km	-	100	1,300	4,226
이중에서					
국내운송 ²	백만 P/Km	-	(35)	(950)	(380)
항공화물 ³	천 ton	-	1	19	77
톤·킬로메타 ⁴	백만 t/Km	-	0	40	159
총사자 수	천 경	-	2.0	9.6	14.1
노동생산량	천 P/Km/B	-	49	136	299
장거리송유관운송					
송유관총연장	Km	-	-	455	1,070
운송 총톤수	백만톤	-	-	13	46
톤·킬로메타	십억 t/Km	-	-	3.0	8.9
우편 및 장거리통신제도					
주요중계소숫자	1,000	1,348	1,967	3,221	4,927
주요 tele x 중계소숫자	1,000	4	16	35	56
우송된 서신숫자 ⁵	백 만	4,084	5,545	7,934	9,280
우송된 소포숫자 ⁶	"	167	225	283	309
지역통화	"	1,706	2,346	3,472	4,498
장거리통화	"	279	562	1,075	1,833
이중에서					
사설통신	"	27	264	848	1,734
총사자 수	1,000	268	339	399	440

주(註) :

- a 1950년 및 1955년의 경우. 「자르」지방과 서부「베르린」계의
 1. 독일 「루프트한자」항공회사 및 국내항공운송실적만 취급
 2. 서독 : 독일경제연구소 집계
 3. 우편운송포함
 4. 항공화물 및 우편운송포함
 5. 우편엽서 인쇄물 업무용서류 상품전본 소형수하물포함. 서독: 동독에서의 서신 발송 및 1950년과 1955년의 서부 「베르린」에서의 서신발송포함
 6. 가격표기(表記) 우편물포함

자료출처: Statistische Jahrbücher der BRD und DDR, Statistische Taschenbücher der DDR, Geschäftsberichte der Deutschen Lufthansa und der Deutschen Bundespost.

			off			off			
1966	1967	1968	1950	1955	1960	1965	1966	1967	1968
3,688	4,267	4,971	-	.	256	419	519	649	719
1,393	1,711	1,936	-	.	158	163	191	233	248
5,049	5,653	6,289	-	.	165	373	484	606	730
(405)	(490)	(555)	-	.	40	45	53	63	69
97	112	143	-	.	5	10	12	15	16
217	263	346	-	.	5	13	16	22	24
16.5	18.0	18.3	-	.	.	2.7	2.9	3.2	3.4
306	315	344	-	.	.	136	166	192	218
1,341	1,571	1,571	-	-	-	27	.	.	447
53	57	67	-	-	-	-	.	.	9
9.9	10.0	13.7	-	-	-	-	.	.	0.7
5,409	5,973	6,679	357	481	603	766	794	820	860
60	64	69	.	1	3	5	6	7	7
9,040	8,981	9,371	1,142	1,282	1,381	1,386	1,342	1,419	1,363
304	291	299	31	34	40	42	42	39	39
4,861	5,167	5,554	623	728	817	821	840	853	880
2,042	2,260	2,587	95	128	167	253	274	296	320
1,975	2,217	2,563	.	.	12	158	190	222	249
443	444	443	93	118	125	129	129	129	129

일람표 A 73

동.서독의 운수.통신제도 일람
운송 및 주민의 고유 매수지표

	단 위	서 독	
		1960	1965
자금생산력 ¹	DM	173	172
자금강도 ²	1,000 DM, M	78	95
투자비율 ³	%	18	19
투자강도 ⁴	1,000 DM, M	4.0	5.9
노동생산력 ⁵	천 DM, M / B	13.4	16.4
교통단위 (TE) $\sum t Km + P Km$ ⁶	십억 TE	203	227
노동생산력 ⁷	천 TE / B	191	224
운송된 사람수 / 주민수 ⁸	부정수 / 주민수	143	129
P Km / 주민수 ⁹ (개인운송제외)	1,000 / 주민수	1.6	1.6
" " (" 포함)	1,000 / 주민수	4.1	5.5
t Km / 주민수 ¹⁰	1,000 / 주민수	2.3	2.6
전화중계소 / 주민수	부정수 / 주민 1,000	58	83
우송된서신 / 주민수 ¹¹	부정수 / 주민수	142	157
전화통화 / 주민수 ¹²	부정수 / 주민수	82	107
승용차 / 주민수 ¹³	부정수 / 주민 1,000	80	156

			동 득				
1966	1967	1968	1960	1965	1966	1967	1968
169	159	165	142	143	144	145	156
102	109	117	60	73	77	79	80
17	19	18	21	17	16	19	20
6.0	6.8	7.3	2.4	2.9	2.8	3.8	4.5
17.1	17.3	19.4	8.4	10.3	10.7	11.2	12.4
227	226	239	75	82	84	83	87
232	238	263	175	193	199	200	212
125	121	118	211	208	207	206	204
1.6	1.6	1.6	2.2	2.2	2.2	2.3	2.3
5.8	5.9	6.0	2.9	3.6	3.9	4.0	4.4
2.7	2.7	2.9	2.3	2.8	2.9	2.8	3.0
90	100	110	34	45	47	48	50
151	150	155	80	81	79	83	80
115	124	135	57	63	65	67	70
172	184	193	17	39	42	48	54

	단 위	서 록	
		1960	1965
승용차+오토바이+모페드/주민수	부정수/주민 1,000	154	189
도로운송사고/주민수 ¹⁴	// //	18	19
도로운송사고/자동차수 ^{14 15}	부정수 / 자동차 1,000	106	91
사고사망자/자동차수 ^{14 15}	// //	15	13

주(註):

1. 기본적립금 1,000 Mark 또는 총투입자금 1,000 DM 당 고정화폐 가치나 1962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국내총생산 속의 기여도
2. 기본적립금/종사자수, 또는 총투입자금/취업인구수
3. 변동가격 투자액/총생산
4. 변동가격 투자액/종사자수 또는 취업인구수
5. 고정가격내지 1962년 가격의 국내총생산 속의 기여도/종사자수 또는 취업인구수
6. 독일정부운송수단의 실적만 취급(개인운송, 직업운송, 海船운송 및 통신수단 제외)
7. 교통단위 = t Km + P Km / 종사자수 또는 취업인구수, (우편제외)
8. 공공운송만 취급(내륙항행 및 바다항행 제외)
9. 내륙항행 및 바다항행 제외
10. 바다항행 제외
11. 우편업서, 인쇄물, 업무용서류, 상품건본 및 소형소포 포함
12. 지역통화 및 장거리통화
13. 대형연결 자동차 포함
14. 동독: 1967년 및 1968년에 있어서의 300 Mark 이상의 재물손해 내지 일명피해만 취급
15. 기관차와 트레일러 제외

* 자료출처: Statistische Jahrbücher der BRD und DDR.

			동 독				
1966	1967	1968	1960	1965	1966	1967	1968
200	208	215	94	176	185	200	210
20	19	20	.	6	6	3	3
90	85	84	.	31	28	15	15
13	13	12	.	5	5	5	5

일람표 A 74

동.서독의 대표적인 중요한 기초에너지물질 채굴상황 일람

	단 위	1960		1965		1968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석 유	1,000 t	5,530	.	7,884	80	7,982	150
천연가스, 광유가스	백 만 m ³	642	26	2,778	133	6,488	120
갈 탄	백 만 t	96.2	225.5	101.9	250.8	101.5	247.1
석 탄	백 만 t	143.3	2.7	135.5	2.2	112.2	1.6
수 력 ¹	十億 KW	12.0	0.6	14.3	0.8	16.8	1.2
총 계	백만t SKE ²	183.2	67.2	184.3	74.2	163.8	72.8

주(註) :

1. 동독: 펌프를 저장포함

2. SKE² : Steinkohleeinheiten = 석탄단위

일람표 A 75

에네르기 물질에 대한 열량등의 환산(換算)요인

Kg당 K cal

에네르기 물질	단 위	K cal로 환산된발열량		환 산 요 인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석 탄	kg	7,000	6,000	1.00	0.86
코크스	kg	6,800	6,500	0.97	0.93
조개탄	kg	7,500	-	1.07	-
천연갈탄	kg	1,850	2,000	0.26	0.29
갈색조개탄	kg	4,800	4,700	0.69	0.67
갈색코크스, 분탄, 건조탄	kg	4,800	4,800	0.69	0.69
BHT - 코크스	kg	-	6,500	-	0.93
굳은 갈탄	kg	3,500	-	0.50	-
유 연 탄	kg	5,000	-	0.71	-
천연 석유	kg	10,000	10,000	1.43	1.43
휘 발 유	kg	10,400	10,000	1.49	1.43
석유, 디젤, 터빈연료, 휘발유	kg	10,200	10,000	1.46	1.43
석유코크스	kg	7,000	-	1.00	-
중 열 유	kg	9,800	10,000	1.40	1.43
정 련 가 스	m ³	11,200	.	1.60	.
액 체 가 스	m ³	7,700	.	1.10	.
서득 천연가스	m ³	7,700	.	1.10	.
동득 천연가스	m ³	-	9,000	-	1.29
홀랜드 천연가스	m ³	7,560	-	1.08	-
천연석유가스	m ³	9,450	.	1.35	.
痛風가스	Nm ³	1,000	.	0.14	.
메탄가스, 정화가스, 석탄가스	Nm ³	4,000	4,000	0.57	0.57
자연수력, 해외수력 등	KWh	2,800	2,800	0.40	0.40

자료출처: Arbeitskreis Energiebilanzen, ; Energiebilanzen 1960 ff., hrsg. Vom
Energiewirtschaftlichen Institut an der Universität Köln, und Angaben
aus Veröffentlichungen der DDR.

일람표 A 76

1960년에서 1969년까지의 동.서독의 기초에너지물질 사용량.

단위: 백만 t 석탄단위

	1960		1965		1968		1969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석탄, 코크스	128.7	11.5	114.5	13.0	98.5	9.4	100.8	9.7
갈탄 ¹	31.0	61.8	32.0	69.0	29.7	68.9	30.6	71.3
천연석유 및 광유 생산	47.0	2.0	112.9	5.6	146.2	10.0	164.3	12.1
천연가스	0.5	0	2.5	0.2	9.0	0.2	12.5	0.2
일차전류 ²	6.5	0.4	7.4	0.4	9.8	0.5	10.2	0.7
기타에너지	2.7	0	1.6	0.1	1.7	0	1.3	0.1
총계	216.4	75.7	270.9	88.3	294.0	89.0	320.7	94.1

주(註):

1. 조개탄, 건조용코크스, BHT-코크스 (동독)

굳은 갈탄 및 유연탄 (서독)

포함

2. 자연수력, 순(純)수력 輸入 포함

자료출처: Energiebilanzen und Berechnungen des DIW

일람표 A 77

1960년에서 1969년까지의 소비분야별

전력소비

	1960		1965		1968		1969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단위 十億 KWh					
공업 ¹	87.9	31.9	119.8	42.4	141.0	48.6	155.9	50.4
작업및소규모 소비자	27.2	7.3	46.9	10.5	62.9	13.4	69.1	14.5
운수	3.9	0.8	5.6	1.0	6.4	1.3	6.5	1.4
총계	118.0	40.0	172.3	53.9	210.3	63.3	231.5	66.3
			소비량 발전상황 1960 = 100					
공업 ¹	100	100	136	133	160	152	177	158
가정및소규모 소비자	100	100	172	144	321	184	250	199
운수	100	100	144	125	164	163	167	175
총계	100	100	146	135	178	158	196	166

주(註)

1. 공업과 관련있는 에버리지 산업의 제반 분야들 소비량 포함.

일람표 A 78

동.서독의 건축실적 발전상황 일람

구 년 도	서독 1			동독		
	건축실적총계	그 중에서 주택 건축실적		건축실적총계 2	그 중에서 주택 건축실적 3	
		1967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10億 DM	총건축실적에 대한 백분율		1967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10億 DM	총건축실적에 대한 백분율
1950	23.30	11.85	50.8	3.61	0.80	22.0
1951	24.48	12.35	50.4	4.79	.	.
1952	25.79	13.32	51.6	4.95	.	.
1953	30.27	16.02	52.9	5.17	.	.
1954	32.64	17.76	54.4	5.36	.	.
1955	37.31	19.20	51.5	5.49	2.18	39.7
1956	39.83	19.74	49.6	6.34	2.27	35.8
1957	40.38	20.27	50.2	7.09	2.94	41.5
1958	42.00	20.80	49.5	7.47	2.88	38.5
1959	47.65	23.71	49.8	8.95	3.05	34.1
1960	53.95	25.67	47.6	9.66	3.21	33.2
1961	57.86	26.68	46.1	9.94	3.39	34.1
1962	61.22	27.65	45.2	10.47	3.63	34.7
1963	63.25	28.33	44.8	10.49	3.61	34.4
1964	71.19	31.36	44.1	11.55	3.76	32.6
1965	72.84	32.08	44.0	12.51	3.62	28.9
1966	75.74	33.50	44.2	13.25	3.80	28.7
1967	71.40	32.45	45.4	14.54	3.80	26.1
1968	75.10	32.86	43.1	15.95	4.08	25.6
1969	78.77	32.05	40.7	17.65	4.21	23.9

주(註) :

1. 서부 「베르린」과 「자르」지방을 제외한 1959년 서독관할지역 및
" " " " 포함한 1960년 "
2. 전체 경제분야에서의 건축생산
3. 주택유지 및 주택건축 전체실적

자료출처 : Laufende Bauvolumensrechnung des D.I.W.

Statistisches Jahrbuch 1968, S. 239 ; 1970, S. 135 f., S158 und 160.

일 랑 표 A 79

동. 서독의 건축실적 생산 개별 비교일람

구 년 도	서 독		동 독		서독에대한 동독의비율	
	건축실적 총 계	주택건축 실 적	건축실적 총 계	주택 건축 실 적	건축실적 총 계	주택 건축 실 적
	M / 1967년 화폐가치조환산된 DM				서독 = 100	
1950	497	252	196	44	39	17
1951	516	260	261	.	51	.
1952	540	279	270	.	50	.
1953	628	333	284	.	45	.
1954	670	365	297	.	44	.
1955	758	390	306	121	40	31
1956	800	396	358	128	45	32
1957	801	402	405	168	51	42
1958	823	407	431	166	52	41
1959	923	459	517	176	56	38
1960	973	463	560	186	58	40
1961	1,030	475	580	198	56	42
1962	1,075	486	612	212	57	44
1963	1,098	492	611	210	56	43
1964	1,220	538	680	221	56	41
1965	1,234	544	735	213	60	39
1966	1,270	562	777	223	61	40
1967	1,193	542	851	222	71	41
1968	1,247	546	934	239	75	44
1969	1,295	527	1,034	247	80	47

자료출처: Laufende Bauvolumensrechnung des DIW.

Statistisches Jahrbuch 1968. S. 239 ; 1970. S. 135f.,
S. 158 und 160.

일 략 표 A 80

동. 서독의 주택건축활동 발전상황 일람

구 년 도	완성 주택 ¹	그 중 에 서 조 립 식 주 택	주택면적 총 계	주택면적 1 평방미터 당 비용 ³	건축비	부속비 ⁴	주택투자 ⁵
	단위 1,000개 (주택)	완성주택 에 대 해 '분 할 율	1,000 평방 m	M/1967년 화폐가치로 환산된 DM	백만 M / 1967년 화폐가치 로 환산된 DM		
	서 독						
1962	550.4	.	42.142	512	21,580	3,800	25,380
1963	546.8	.	42.807	518	22,170	3,360	25,530
1964	598.9	.	47.578	532	25,310	3,340	28,650
1965	568.2	.	46.163	558	25,760	3,990	29,750
1966	580.6	21.2	47,907	574	27,500	2,880	30,380
1967	549.4	24.5	45,861	601	27,560	1,330	28,890
1968	519.9	30.3	43,510	606	26,370	2,670	29,040
1969	499.9	31.3	42,202	582	24,560	4,210	28,770
	동 독						
1962	87.2	49.4	4,867	492	2,397	189	2,586
1963	76.0	50.2	4,217	491	2,071	242	2,313
1964	76.6	56.9	4,017	505	2,028	335	2,363
1965	68.2	52.7	3,530	508	1,794	544	2,338
1966	65.3	49.6	3,370	518	1,747	761	2,508
1967	76.3	54.4	3,876	544	2,109	396	2,505
1968	76.0	55.3	4,126	553	2,281	473	2,754
1969	70.3	51.0	3,955	536	2,119	716	2,835

1. 입주 또는 기성주택 전체
2. 서독에는 법정 조립식건축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다. 신고를 조정하기 위해서 건축설계가 건축인가되는 해에 완성되어 있을 것이 요청되고 있다.
3. 서독에선 순(純)건축비용, 동독에선 총(總)건축비용
4. 완성된 주택에 대한 건축비용이 분명치않게 되므로써 결과되는 제반 통계상의 過不足分の 비용포함.
5. 동독: 주택유지비용을 제외한, 주택건축에 소모된 돈.

자료출처: Ergebnisse der Bautätigkeitsstatistik und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Statistisches Jahrbuch 1970, S. 158 und 338.

일 램 표 A 81

동 . 서독의 완성주택면적발전상황 일람

구 년 도	서 독		동 독		서독에대한	동독의백분율
	주택면적단위 平方 m (m ²)					
	주택당	평 균 주민 1,000명당	주택당	평 균 주민 1,000명당	주택당	평 균 주민 1,000명당
1962	76.6	74.0	56.0	28.5	73	39
1963	78.3	74.3	55.5	24.6	71	33
1964	79.4	81.7	52.4	23.7	66	29
1965	81.2	78.2	51.8	20.7	64	26
1966	82.5	80.3	51.6	19.8	63	25
1967	83.5	76.6	50.7	22.7	61	30
1968	83.7	72.3	54.3	24.2	65	33
1969	84.4	69.4	56.0	23.2	66	33

자료출처: Ergebnisse der Bautätigkeitsstatistik und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S. 158 und 338.

일 랑 표 A 82

동. 서독의 주택상태 기본자료

	단 위	서 독		
		1950	1961	1968
주 택 총 수 ¹	千	10,083	16,409	19,640
전 체 주택 건 립 연 대 ²				
1919년 이전	%	.	41	32
1919~1945/4		.	22	17
1945/48 이 후		.	37	51
주 택 면 적 ³	백만평방 m	735	1,105	1,390
주 택 당 주 택 면 적	평 방 m	68	67	71
주 민 수	백 만	49,853	56,185	60,402
주 민 1,000 명 당				
주 택 의 수	주 택	220	292	325
주 민 1人 당 주 택 면 적	평 방 m	14.9	19.7	23.0

1. 사람이 사는 집과 비워있는 집을 합산한 숫자.

2. 서독에서는 1948년 이후에 세워진 집이 신축주택으로 계산되고 동독에서는 1945년 이후에 세워진 집이 신축주택으로 계산된다.

3. 서독에서는 전체 주택의 1%만을 임의로 표본으로 삼아서 주택평균면적과 전체면적을 산출했다.

자료출처: Ergebnisse der Gebäude - und Wohnungszählungen 1950, 1961 und 1968, Ergebnisse der Wohnungszählung 1961 und amtliche Fortschreibungsergebnisse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2, S. 373 und S. 157) sowie Berechnungen des DIW.

동			서독에 대한 동독의 비율		
1950	1961	1968	1950	1961	1968
5,072	5,583	6,023	50	34	31
.	65	58	.	.	.
.	25	22	.	.	.
.	10	20	.	.	.
270	294	318	37	27	24
53	53	53	78	79	75
18,388	17,125	17,084	37	30	28
276	327	352	125	112	108
14,7	17,2	18,6	99	87	81

알 램 포 A 83

1960년과 1961년의 동.서독 건축년도별 및 장치방식별 주택구분일람 (백분율)

년 도	구 분	주 택 총 수 ¹		이중에서 다음의 장치를 갖는 집		
				실내변소 ²	욕 실	스톱 난방 ³
		서 독				
	1900년 이 전	29	100	40	22	5
	1900 ~ 1918	18	100	59	32	9
	1919 ~ 1948	20	100	76	48	15
	1948년 이 후	33	100	91	79	19
총	계	100	100	67	47	12
		동 독				
	1900년 이 전	45	100	12	8	1
	1900 ~ 1918	20	100	33	17	1
	1919 ~ 1945	25	100	54	34	5
	1945년 이 후	10	100	70	66	6
총	계	100	100	33	22	3

1. 서독: 사람사는 집과 빈집을 합산
동독: 사람사는 집만 계산

2. 실내변소를 가진 주택의 건축년도에 관한 서부[베르린]의 보고, 통계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된다. 서부[베르린]지역내 실내변소있는 주택의 총 수와 건축년도별 주택구조는 1948년을 전후해서 세워진 일반주택에 관한 통계, 보고의 기초위에서 계산되었다.

3. 동독은 별실(別室) 난방장치제외
서독은 // // 포함

자료출처: 1% - Wohnungserhebung 1960. Heft 1, Berliner Statistik 1961, Heft 6; Ergebnisse der Wohnungszählung 1961,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3, S. 208.

일 램 표 A 84

동. 서독의 주택임대차관계 발전일람

		단	위	1950	1962	1968
1. 가정경제상태와 수준에 따른 구별						
서 독						
피고용자 4명있는 가정경제						
매 월 수입	지출수준		D M	308	796	1,042
이 중 에서						
주 택 임 대 료 ¹			D M	32	78	141
총수입지출수준에 대한백분율				10.4	9.8	13.5
노동자 및 종업원 평균가계						
매 월 수입	지출수준		D M	360	995	1,300
이 중 에서						
주 택 임 대 료			D M	36	90	163
총수입지출수준에 대한백분율				10.0	9.0	12.5
동 독						
매 월 순 수입	금 ²		M a r k	.	757	948
이 중 에서						
임 대 료 지 출 ³			M a r k	30	35	37
순 수입금에 대한백분율				.	4.6	3.9
2. 생계 기준가격목록테두리속에서의 주택임대 ⁴						
서 독 ⁵		1962 = 100		67.7	100.0	148.4
동 독 ⁶		1962 = 100		100.0	100.0	101.1

1. 개인주택소유자 임대료포함

2. 노동자와 종업원의 가계비 (실수입기준)

3. 국가가 주택건립과 주택유지를 위해서 배분 무료 서비스의 경우 제외

4. 1924년 이전 구옥, 1924~1948 구옥, 국가건축신주택 및 그후의 개인부담 건축신주택 등 3내지 4개의 유형적인 주택분류의 기초때문에 이 목록은 임대 기간내의 신축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다.

5. 구식주택체제 (1950), 신식주택체제 (1968) 표시

6. 1968년 지출구조비율 표시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65, S. 497 und 529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S. 350 und 363.

일 략 표 A 85

1960 ~ 1969까지의 동.서독의 사회(국가)생산량 이용 일람
단위 10억, 1967년 화폐가치로 환산된 변동화폐단위¹

	1960	1961	1962	1963
		서	독	
사 회 (국 가) 총 생 산 ¹	377.3	397.7	413.7	428.0
민 간 소 비 량	209.2	222.4	234.3	242.5
총 자 본 투 자 금	89.1	97.9	103.2	105.4
저 축 자 금	8.9	6.8	3.9	2.1
국 가 소 비 량	58.4	62.0	68.7	73.4
외 국 자 본	11.7	8.6	3.5	4.6
		동	독	
사 회 (국 가) 총 생 산 ²	92.8	95.8	98.0	101.2
민 간 소 비 량	56.0	58.5	58.2	58.3
총 자 본 투 자 금	16.4	16.7	17.1	17.5
저 축 자 금	2.3	1.4	3.5	2.2
기 타 이 용 ³	18.1	19.2	19.2	23.2

1. 서독에 기초함. 원전기초 1962년.

2. 세계다른 지역에서 얻은 국내 순 수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회(국가)총 생산이 국내총생산으로 간주된다.

3. 비생산적 서비스관계 제외한 외자 등.

자료출처: BRD ~ Statistisches Bundesamt, revidiert.

DDR ~ Geschätzt;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Herbert Wilkens, DIW.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456.5	482.0	496.0	494.6	530.2	572.4
255.3	272.4	282.5	284.2	296.2	319.3
118.3	123.8	124.9	114.4	124.7	140.9
5.2	9.8	3.6	- 1.3	11.0	13.5
73.2	76.7	78.4	81.0	80.3	83.6
4.5	-0.7	6.6	16.3	18.0	15.1
106.3	111.5	117.1	123.5	130.5	137.8
60.2	62.6	65.3	66.3	70.3	74.0
19.2	21.0	22.6	24.7	27.2	31.3
3.2	3.7	4.7	3.8	1.1	1.5
23.7	24.2	24.5	28.7	31.9	31.0

일 랑 표 A 86

1960 ~ 1969 까지의 동.서독의 국가총생산량 이용 일람

구조 비율 및 발전상황

(실제숫자, 기초가격, 1967)¹

이 용 종 류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구 조 비 율 (%)										
서 독										
국 가 총 생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 간 소 비 량	55.4	55.9	56.6	56.7	55.9	56.5	57.0	57.5	55.9	55.8
총 자 본 투 입 금	23.6	24.6	25.0	24.6	25.9	25.7	25.2	23.1	23.5	24.6
저 축 자 금	2.4	1.7	0.9	0.5	1.1	2.0	0.7	-0.3	2.1	2.4
국 가 소 비 량	15.5	15.6	16.6	17.1	16.1	15.9	15.8	16.4	15.1	14.6
외 국 자 본	3.1	2.2	0.9	1.1	1.0	-0.1	1.3	3.3	3.4	2.6
동 독										
국 가 총 생 산 ²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 간 소 비 량	60.3	61.1	59.4	57.6	56.7	56.1	55.8	53.7	53.9	53.7
총 자 본 투 입 금	17.7	17.4	17.4	17.3	18.0	18.9	19.3	20.0	20.9	22.7
저 축 자 금	2.5	1.5	3.6	2.2	3.0	3.3	4.0	3.1	0.8	1.1
기 타 이 용 ³	19.5	20.0	19.6	22.9	22.3	21.7	20.9	23.2	24.4	22.5
발전 상황 1960 = 100										
서 독										
국 가 총 생 산	100	105	110	113	121	128	131	131	141	152
민 간 소 비 량	100	106	112	116	122	130	135	136	142	153
총 자 본 투 입 금	100	110	116	118	133	139	140	128	140	158
저 축 자 금	-	-	-	-	-	-	-	-	-	-
국 가 소 비 량	100	106	118	126	125	131	134	139	138	143
외 국 자 본	-	-	-	-	-	-	-	-	-	-
동 독										
국 가 총 생 산 ²	100	103	106	109	115	120	126	133	141	148
민 간 소 비 량	100	104	104	104	107	112	117	118	126	132
총 자 본 투 입 금	100	102	104	107	117	128	138	151	166	191
저 축 자 금	-	-	-	-	-	-	-	-	-	-
기 타 이 용 ³	100	106	106	128	131	134	135	159	176	171

1. 서독에 기초함. 원천기초 1962

2. 세계기타지역에서 들어온 국내 순 수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가총생산이 국내총생산으로 간주됨.

3. 비생산적인 서비스 관계가 제외된 외자 등.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revidiert.

Schatzung;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Hebert Wilkens, DIW.

A87 ~ A100

일 략 표 A 87

동. 서독 (1960 ~ 1969) 주민 1인당 국가총생산과 민간소비량 일람
 1967년 화폐가치로 환산된 변동화폐.

		1960	1961	1962	1963
		독일 마르크 (DM) 및 마르크 (M)			
		서		독	
국	가	6,806	7,079	7,265	7,432
민	간	3,773	3,959	4,115	4,211
		동		독	
국	가	5,382	5,594	5,730	5,899
민	간	3,248	3,416	3,403	3,398
		변화발전 일람 1960 = 100			
		서		독	
국	가	100.0	104.0	106.7	109.2
민	간	100.0	104.7	109.1	111.6
		동		독	
국	가	100.0	103.9	106.5	109.6
민	간	100.0	105.2	104.8	104.6
		변화발전 일람 1963 = 100			
		서		독	
국	가	91.6	95.3	97.8	100.0
민	간	89.6	94.0	97.7	100.0
		동		독	
국	가	91.2	94.8	97.1	100.0
민	간	95.6	100.5	100.1	100.0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revidiert.

Schatzung;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Herbert Wilkens, DIW.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7,840	8,167	8,316	8,260	8,809	9,409
4,381	4,616	4,734	4,746	4,921	5,249
6,259	6,551	6,864	7,229	7,638	8,069
3,545	3,678	3,828	3,881	4,115	4,334
115.2	120.0	122.2	121.4	129.4	138.2
116.1	122.3	125.5	125.8	130.4	139.1
116.3	121.7	127.5	134.3	141.9	149.9
109.1	113.2	117.9	119.5	126.7	133.4
105.5	109.9	111.9	111.1	118.5	126.6
104.0	109.6	112.4	112.7	116.9	124.6
106.0	111.1	116.4	122.5	129.5	136.8
104.3	108.2	112.7	114.2	121.1	127.5

일 랑 표 A 88

1960 ~ 1969 사이의 서독 민간가정 경제 수입과 이용
단위 10억 D.M.

	1960	1961	1962	1963
전체국민의총수입	218.6	수 242.9	입 265.5	286.4
사회보장자금	12.2	13.4	14.8	15.9
직접세(直稅)	17.9	22.3	25.6	28.4
순수입	188.5	207.2	225.1	242.1
		이	용	
상품구입	120.3	131.3	142.0	149.8
용역구입	48.7	54.3	59.7	65.0
자연소비	3.4	3.4	3.5	3.4
민간소비	172.4	189.0	205.2	218.2
저축	16.1	18.2	19.9	23.9
순수입	188.5	207.2	225.1	242.1

자료출처: Berechnung des DIW.

(주석) 이 일람표는 V장 2b, 2c, 2d 및 4d절에 대한 기본일람표로 이용된다.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313.0	346.5	370.7	378.1	405.9	451.6
17.3	19.0	21.1	21.6	24.1	28.0
31.4	33.1	36.7	36.9	39.9	45.8
264.3	294.4	312.9	319.6	341.9	377.8
160.7	177.1	187.6	189.3	196.8	217.0
70.8	78.1	86.8	91.7	101.0	112.0
3.5	3.5	3.5	3.2	3.3	3.3
235.0	258.7	277.9	284.2	301.1	332.3
29.3	35.7	35.0	35.4	40.8	45.5
264.3	294.4	312.9	319.6	341.9	377.8

일 랑 표 A 89

동독(1960 ~ 1969)의 민간인가정경제수입과 이용 일람
단위 10억 마르크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수 입									
전체국민의 현금총수입	65.5	68.0	67.3	68.0	71.5	74.5	77.2	80.1	84.0	88.0
사회보장자금	3.7	3.8	3.8	3.9	4.0	4.1	4.2	4.4	4.5	4.6
적 절 세	4.2	4.6	4.6	4.6	4.9	4.9	5.3	5.8	6.1	6.3
순 현금 수입	57.6	59.6	58.8	59.5	62.6	65.5	67.7	69.9	73.4	77.1
자연 소비량	2.2	2.0	1.9	2.4	2.7	2.7	2.7	2.7	2.6	2.6
순 수 입	59.8	61.6	60.7	61.9	65.3	68.2	70.4	72.6	76.0	79.6
	이 용									
소매를 통한 상품구입	43.4	46.1	45.8	46.0	47.6	49.6	51.7	53.7	56.4	59.9
소매외의 상품구입 ¹	2.1	2.3	2.3	2.1	2.0	2.0	2.0	1.9	1.9	1.5
용 역 지 불 ²	6.6	6.8	6.9	7.0	7.3	7.5	7.8	8.0	8.2	8.4
자연 소비량	2.2	2.0	1.9	2.4	2.7	2.7	2.7	2.7	2.6	2.6
민 간 소 비 량	54.3	57.2	56.9	57.5	59.6	61.8	64.2	66.3	69.1	72.4
기 타 지 출 ³	1.4	1.5	1.7	1.7	1.6	1.6	1.7	1.7	1.7	1.7
저 금	4.1	2.9	2.1	2.7	4.1	4.8	4.5	4.6	5.2	5.5
순 수 입	59.8	61.6	60.7	61.9	65.3	68.2	70.4	72.6	76.0	79.6

1. 반찬거리, 아동주전부리 등

2. 간손질 우편, 통신 임대, 전기, 가스, 수도, 교양, 오락, 여행등을 위한 지출

3. 수수료, 이자, 부권, 세금 등을 위한 지출

자료출처: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Peter Mitzscherling, DIW.

Berechnet nach Heinrich Birner: zur Entwicklung des materiellen Lebensniveaus der Bevölkerung der DDR im Jahre 1965.

(주석) 이 일람표는 V장의 2b, 2c, 2d 및 4d절에 대한 기본 일람표로 이용된다.

일 랑 포 A 90

1965년 동.서독 국민소득 비교 일람

(사회경제적 유형분야별)

단위 10억 DM 내지 10억 M

	총 수 입			공 계			순 수 입	
	노동수입	사회수입 ³	가택수입	소계	세 금	사회보장자금		소 계
	서			독				
노 동 자 ¹	203.1 ²	14.9	4.6	226.6	18.4	18.7	37.1	185.5
자립경영자 ²	66.9	1.9	7.6	76.4	14.7	0.3	15.0	61.4
연금생활자	-	45.7	1.8	47.5	-	-	-	47.5
총 계	270.0	62.5	14.0	346.5	33.1	19.0	52.1	294.4
	동			독				
노 동 자 ¹	48.2 ²	3.7	1.3	53.2	3.3	3.3	6.6	46.6
자립경영자	13.3	1.3	4.4	19.0	1.6	0.8	2.4	16.6
및 조합참여자								
연금생활자	-	5.0	-	5.0	-	-	-	5.0
총 계	61.5	10.0	5.7	77.2	4.9	4.1	9.0	68.2

1. 초보자 및 고용된 금리생활자 포함

2. 사업에 참여한 질병있는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돈도 포함

3. 연금, 질병수당, 가택수당, 주급수당, 사망수당, 유아수당, 분민수당 등 사회보장 서비스관계 포함.

자료출처: Berechnungen des DIW zur Einkommen Schichtung der Privaten Haushalte, Wochenbericht 20 / 1970 und Sonderheft Nr. 81 des DIW. Soziale Sicherung in der DDR von Peter Mitzscherling sowie unveröffentlichte Manuskript von P. mitzscherling, berechnet nach Heinrich Birner :

일람표 A 91

동.서독(1960 ~ 1969)의 노동자수입 상승을 일람
단위 10억 DM/M

	1960	1961	1962	1963
금 료 총 액 ¹	124.5	140.4	155.5	166.9
사 회 보 장 기 금	11.7	12.8	14.3	15.4
입 금 세	7.9	10.2	11.8	13.3
순 입 금 수 입	104.9	117.4	129.4	138.2
사 회 수 입	9.6	10.6	11.5	12.5
기 타 수 입 ²	1.8	2.3	2.7	3.1
총 순 수 입	116.3	130.3	143.6	153.8
금 료 총 액 ¹³	41.5	43.3	42.6	44.3
사 회 보 장 기 금	3.1	3.1	3.2	3.2
입 금 세	2.5	2.7	2.7	2.9
순 입 금 수 입	35.9	37.5	36.7	38.2
사 회 수 입	3.4	3.4	3.5	3.5
자연소비가 포함된				
기 타 수 입	0.9	1.0	1.0	1.0
총 순 수 입	40.2	41.9	41.2	42.7

1. 질병있는 노동자에 지불된 돈 포함

2. 중요한 자금 수입

3. 사제금등 포함

자료출처: Berechnung des DIW ; Tabelle A 89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83.8	203.1	218.0	217.9	232.8	262.1
16.8	18.7	20.7	21.1	23.6	27.5
15.7	15.9	18.8	19.1	21.9	26.9
151.3	168.5	178.5	177.7	187.3	207.7
13.3	14.5	15.3	15.6	16.2	16.7
3.6	4.3	4.8	5.5	6.7	8.0
168.2	187.3	198.6	198.8	210.2	232.4
46.1	48.2	49.8	51.7	54.5	57.3
3.2	3.3	3.4	3.5	3.6	3.6
3.1	3.3	3.4	3.6	3.9	4.1
39.8	41.6	43.0	44.6	47.0	49.6
3.6	3.7	3.7	3.8	4.0	4.2
1.2	1.3	1.4	1.6	1.7	1.7
44.6	46.6	48.1	50.0	52.7	55.5

일 랑 표 A 92

동. 서독 (1960 ~ 1969)의 노동자 1인당 수입 상승 일람
 노동활동자 1인당 월 수입¹ (단위 DM/M)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서					독				
금 로 총 액 ²	510	563	615	653	712	777	833	864	919	1007
사 회 보 장 기 금	48	51	57	60	65	72	79	84	93	106
입 금 세	32	41	47	52	61	61	72	76	86	103
순 입 금	430	471	511	541	586	644	682	704	740	798
사 회 수 입	39	42	45	49	52	56	59	62	64	64
기 타 수 입 ³	7	9	11	12	14	16	18	22	26	31
노동자 1인당총순수입	476	522	567	602	652	716	759	788	830	893
	동					독				
금 로 총 액 ²⁴	498	520	512	532	548	570	583	597	623	650
사 회 보 장 기 금	37	38	38	38	38	39	40	40	41	41
입 금 세	30	32	33	35	36	39	40	42	45	47
순 입 금 수 입	431	450	441	459	474	492	503	515	537	562
사 회 수 입	41	41	42	42	43	44	44	44	46	48
기타수입 (자연소득포함)	11	12	12	12	14	15	16	19	20	20
									6	
총 순 수 입	483	503	495	513	531	551	563	578	603	630

일 랑 표 A 93

등. 서독 (1960 ~ 1969) 노동자들의 월평균수입 상승 일람
 백분율 1960년 기준 (100)

	금 료 총 액		순 입 금 수 입		총 순 수 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0	100	100	100	100	100	100
1961	110	104	110	104	110	104
1962	121	103	119	102	119	102
1963	128	107	126	106	126	106
1964	140	110	136	110	137	110
1965	152	114	150	114	150	114
1966	163	117	159	117	159	117
1967	169	120	164	119	166	120
1968	180	125	172	125	174	125
1969	197	131	186	130	188	130

자료출처: Berechnung des DIW.

Tabelle A 92

일 랫 표 A 94

동. 서독(1960 ~ 1969)에서의 몇몇 특정 경제분야 종사 노동자 및 종업원¹의 월 평균수입 비교 일람

단위 DM/M

	공 업		건 축 업		농.림 업		교통.통신		상 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960	575	571	571	600	393	475	603	587	501	487
1963	742	613	726	639	536	509	749	629	649	506
1964	794	638	842	632	575	530	793	651	692	516
1965	876	636	920	686	639	573	879	672	754	536
1966	935	669	983	703	677	603	929	689	799	544
1967	952	680	969	724	693	627	974	710	836	574
1968	1019	710	1022	766	721	679	1019	737	877	606
1969	1123	736	1125	805	786	686	1140	773	953	642

1. 서독 : 관리 포함 동 독 : 사회주의경제의 완전고용자

2. 서독 : 우편 포함 동 독 : 우편 제외

Arbeiter in Industrie und Baugewerbe = Statistisches

자료출처 : Bundesamt, "Arbeiterverdienste in Industrie und Handel", Fachserie

M, Reihe 15, Für alle Angestellten und Arbeiter in den übrigen

Bereichen : Berechnungen des DIW.

Statistische Jahrbücher der DDR, Berechnungen

des DIW.

일 랑 표 A 95

동. 서독의 노동자수입중에서 사회보장기금 및 임금세 명목으로 지출되는 부분의
백분율

(그때 그때의 금로총액에 대한 비율)

구 년 도	서 독						동 독		
	공무원 포함			공무원 제외			사회보장기 금	임금세	총 계
	사회보장기 금	임금세	총 계	사회보장기 금	임금세	총 계			
1960	9.4	6.3	15.7	10.6	6.1	16.7	7.5	6.0	13.5
1961	9.1	7.3	16.4	10.2	7.0	17.2	7.2	6.2	13.4
1962	9.2	7.6	16.8	10.3	7.3	17.6	7.5	6.3	13.8
1963	9.2	8.0	17.2	10.4	7.6	18.0	7.2	6.6	13.8
1964	9.2	8.5	17.7	10.3	8.1	18.4	7.0	6.7	13.7
1965	9.2	7.8	17.0	10.4	7.4	17.8	6.8	6.8	13.6
1966	9.5	8.6	18.1	10.7	8.1	18.8	7.0	7.0	14.0
1967	9.7	8.8	18.5	11.0	8.2	19.2	6.8	6.9	13.7
1968	10.1	9.4	19.5	11.5	8.8	20.3	6.6	7.2	13.8
1969	10.5	10.3	20.8	11.9	9.5	21.4	6.3	7.1	13.4

자료출처 : Berechnung des DIW.

Tabelle A 92

일 랫 표 A 96

동.서독의 임금세율부와 일람 (단위 DM/M)

1965년에 적용된 서울부와 일람 기준

과세대상 일 수입	구 분	미 혼 자		기			
				자녀 없는 경우		자녀 1인있는 경우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182		-	1.00	-	-	-	-
190		-	1.90	-	-	-	-
200		-	3.00	-	-	-	-
250		-	10.50	-	3.00	-	-
300		2.80	18.00	-	10.50	-	3.00
350		12.30	28.00	-	18.00	-	10.50
400		21.80	38.00	-	28.00	-	18.00
450		31.30	50.00	4.60	38.00	-	28.00
500		40.80	62.00	14.10	50.00	-	38.00
550		50.30	77.00	23.60	62.00	4.60	50.00
600		59.80	92.00	33.10	77.00	14.10	62.00
650		69.30	109.00	42.60	92.00	23.60	77.00
700		78.80	126.00	52.10	109.00	33.10	92.00
800		97.80	148.50	71.10	137.30	52.10	126.00
900		117.50	171.00	90.10	159.80	71.10	148.50
1.000		139.00	193.50	109.10	182.30	90.10	171.00
1.260		202.80	252.00	158.50	240.80	139.50	229.50
1.500		270.90	300.00	204.10	290.00	185.10	280.00
2.000		436.50	400.00	311.50	390.00	288.10	380.00
3.000		832.30	600.00	586.10	590.00	555.50	580.00
4.000		1,272.50	800.00	925.80	790.00	889.50	780.00

자료출처: Einkommensteuergesetz in der Fassung vom 16. November 1964 (BGBl. 1964.

Teil I, S. 885).

Heinz Balling: Nettolohnberechnung. Berlin (Ost), 1968.

혼 자							
자녀 2인있는경우		자녀 3인있는경우		자녀 4인있는경우		자녀 5인있는경우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10.50	-	3.00	-	-	-	-
-	18.00	-	10.50	-	3.00	-	-
-	28.00	-	18.00	-	10.50	-	3.00
-	38.00	-	28.00	-	18.00	-	10.50
-	50.00	-	38.00	-	28.00	-	18.00
-	62.00	-	50.00	-	38.00	-	28.00
6.50	77.00	-	62.00	-	50.00	-	38.00
25.50	109.00	-	92.00	-	77.00	-	62.00
44.50	137.30	16.00	126.00	-	109.00	-	92.00
63.50	159.80	35.00	148.50	6.50	137.30	-	126.00
113.00	218.30	84.50	207.00	56.00	195.80	27.50	184.50
158.50	270.00	130.00	260.00	101.50	249.80	73.00	238.50
257.10	370.00	225.80	360.00	196.50	350.00	168.00	340.00
513.60	570.00	470.30	560.00	428.50	550.00	388.50	540.00
839.30	770.00	786.80	760.00	735.50	750.00	685.30	740.00

일 랑 표 A 97

동.서독의 몇몇 특정 세금.입금 분류에 따른 임금세제 과세비율(%)
과세대상월수입 총액에 대한 백분율

구 분 과세대상월수입	미 혼 자		기 혼 자					
			자녀 1 인		자녀 3 인		자녀 5 인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400 ~ 500	19.0	24.0	-	20.0	-	15.0	-	3.0
500 ~ 600	19.0	30.0	14.1	24.0	-	20.0	-	15.0
600 ~ 700	19.0	34.0	19.0	30.0	-	24.0	-	20.0
700 ~ 800	19.0	22.5	19.0	34.0	-	30.0	-	24.0
800 ~ 900	19.7	22.5	19.0	22.5	16.0	34.0	-	30.0
900 ~ 1,000	21.5	22.5	19.0	22.5	19.0	22.5	-	34.0
1,000 ~ 1,260	24.5	22.5	19.0	22.5	19.0	22.5	10.6	22.5
1,260 ~ 1,500	28.4	20.0	19.0	21.0	19.0	22.1	19.0	22.5
1,500 ~ 2,000	33.1	20.0	20.6	20.0	19.2	20.0	19.0	20.3
2,000 ~ 3,000	39.6	20.0	26.7	20.0	24.5	20.0	22.1	20.0
3,000 ~ 4,000	44.0	20.0	33.4	20.0	31.7	20.0	29.7	20.0

자료출처: Tabelle A 96.

일람 표 A 98

등. 서독의 임금세액 상대 비교

과세대상 월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과세금액의 백분율 비교

구 분 과세대상 월수입	미 혼		기 혼					
			자 녀 1		자 녀 3		자 녀 5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400	5.5	9.5	-	4.5	-	0.8	-	-
500	8.2	12.4	-	7.6	-	3.6	-	0.6
600	10.0	15.3	2.4	10.3	-	6.3	-	3.0
700	11.3	18.0	4.7	13.1	-	8.9	-	5.4
800	12.2	18.6	6.5	15.8	-	11.5	-	7.8
900	13.1	19.0	7.9	16.5	1.8	14.0	-	10.2
1,000	13.9	19.4	9.0	17.1	3.5	14.9	-	12.6
1,260	16.1	20.0	11.1	18.2	6.7	16.4	2.2	14.6
1,500	18.1	20.0	12.3	18.7	8.7	17.3	4.9	15.9
2,000	21.8	20.0	14.4	19.0	11.3	18.0	8.4	17.0
3,000	27.7	20.0	18.5	19.3	15.7	18.7	13.0	18.0
4,000	31.8	20.0	22.2	19.5	19.7	19.0	17.1	18.5

자료출처: Tabelle A 96

일람표 A 99

동.서독(1960 ~ 1969)의 가정경제수입 원 평균액 상승 일람

	1960					
	DM	M	총 = 100		DM	M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가계수입 총액	1,019	843	100.0	100.0	1,280	932
직접세부담	83	52	8.1	6.2	128	62
사회보장기금부담	57	46	5.6	5.5	71	50
실제가계수입액	879	745	86.3	88.4	1,081	820

자료출처: Tabelle A 88 und A 89.

1964				1967					
1960=100		총 = 100		DM	M	1960=100		총 = 100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서 득	동 득
126	111	100.0	100.0	1.473	1.001	145	119	100.0	100.0
154	119	10.0	6.7	144	70	173	135	9.8	7.0
125	109	5.6	5.4	84	53	147	115	5.7	5.3
123	110	84.4	88.0	1,245	878	142	118	84.5	87.7

일 랑 표 A 100

가계규모에 따른 동·서독 노동자 및 종업원 가계 월 평균수입 일람

	1960		1964		1967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단위 DM/M					
1 인 가 계	540	417	731	435	857	486
2 인 가 계	704	665	949	731	1,109	813
3 인 가 계	825	839	1,108	894	1,291	988
4 인 가 계	947	913	1,263	961	1,464	1,058
5 인 이상가계	1,206	992	1,590	992	1,830	1,120
전 체 평 균 가 계	852	758	1,126	807	1,307	899
	전 체 평 균 가 계 = 100					
1 인 가 계	63.4	55.0	64.9	53.9	65.6	54.1
2 인 가 계	82.6	87.7	84.3	90.6	84.9	90.4
3 인 가 계	96.8	110.7	98.4	110.8	98.8	109.9
4 인 가 계	111.2	120.4	112.2	119.1	112.0	117.7
5 인 이상 가 계	141.5	130.9	141.2	122.9	140.0	124.6
전 체 평 균 가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Berechnung des DIW.

Statistischer Jahrbücher der DDR

A101 ~ A107

일람표 A 101

등.서독(1960~1967)이 가계규모 및 수입등급에 따른 노동자와 종업원의 가계 순 수입 일람.

(백분율, 총=100)

구 년 도	가 계							
	총 계		월 순 수입 등급					
	서 독	등 독	400 이하		400 ~ 600			
			서 독	등 독	서 독	등 독		
			전	채	평	균	가	계
1960	100	100	13.1	10.4	25.1	23.8		
1964	100	100	4.0	8.1	13.8	20.4		
1967	100	100	2.1	4.9	8.8	16.0		
		1	인		가		계	
1960	100	100	34.0	53.8	36.6	38.0		
1964	100	100	13.5	47.1	28.7	42.7		
1967	100	100	8.1	31.5	21.1	50.3		
		2	인		가		계	
1960	100	100	17.0	9.0	31.5	34.0		
1964	100	100	5.0	5.5	17.8	28.7		
1967	100	100	2.8	2.2	11.5	22.1		
		3	인		가		계	
1960	100	100	11.1	1.9	25.3	17.7		
1964	100	100	2.7	0.9	12.4	12.8		
1967	100	100	1.2	0.3	7.5	7.0		
		4	인		가		계	
1960	100	100	7.4	1.0	21.4	12.5		
1964	100	100	1.4	0.4	8.9	9.7		
1967	100	100	0.5	0.1	4.7	4.2		
		5	인		가		계	
1960	100	100	3.3	0.5	12.4	9.8		
1964	100	100	0.4	0.3	4.3	6.8		
1967	100	100	0.0	-	2.2	2.2		

단 위 DM / M									
월 순 수 업 분 류									
600 ~ 800		300 ~ 1,000		1,000 ~ 1,200		1,200 ~ 1,500		1,500 이상	
서 록	동 록	서 록	동 록	서 록	동 록	서 록	동 록	서 록	동 록
21.1	25.2	12.4	21.9	9.5	10.8	9.3	5.6	9.5	2.4
19.1	23.6	16.6	24.4	12.3	13.8	13.2	6.8	21.0	2.9
14.8	19.1	16.2	24.1	13.3	19.8	14.8	11.6	30.0	4.5
17.1	6.2	5.9	1.3	2.7	0.2	2.1	0.3	1.6	0.2
27.1	8.1	14.3	1.3	6.9	0.5	5.4	0.2	4.2	0.2
25.2	14.8	18.9	2.3	10.6	0.4	8.5	0.3	7.6	0.2
24.7	30.3	11.3	18.8	6.4	5.6	5.1	1.7	4.0	0.6
23.3	29.5	19.8	23.7	12.5	9.0	10.8	2.8	10.0	0.8
18.5	26.7	19.5	26.7	15.1	15.2	14.3	5.5	18.3	1.5
23.2	27.6	14.1	29.3	10.4	15.1	8.9	6.6	6.9	1.7
19.3	24.7	18.3	31.3	14.0	18.7	14.7	8.7	18.7	2.9
14.1	18.1	17.2	29.7	14.8	25.5	16.6	15.0	28.6	4.4
20.7	25.8	14.1	28.6	12.4	17.2	12.5	10.4	11.5	4.5
15.9	22.9	16.2	29.2	13.8	19.9	16.5	11.8	27.3	6.0
10.9	15.1	14.3	27.1	13.4	27.5	17.3	17.5	38.8	8.5
15.8	25.0	13.6	24.4	13.1	16.8	17.0	14.1	24.8	9.4
9.5	23.6	11.3	28.1	11.3	20.7	16.5	13.3	46.6	7.3
6.4	13.9	9.1	23.3	9.7	26.7	14.3	22.5	58.2	11.3

일 략 표 A 102

동. 서독 (1962, 1969) 의 소비자 가격

식품 및 유희음식

(서독 : DM = 독일 마르크, 동독 : M = 마르크)

구 분 상 품 종 류	단 위	1962 년		1969 년 중반		D M = 100	
		D M	M	D M	M	1962	1969년중반
감 자 ¹	5 kg	1.74	0.85	1.90	0.85	49	45
당 근 ¹	1 kg	1.01	0.50	0.97	0.49	50	51
붉은 양배추 ¹	1 kg	0.78	0.44	0.89	0.49	56	55
사과, 등 내륙산물 ¹	1 kg	1.12	1.88	0.80	1.77	168	221
케 몬 ¹	1 kg	1.47	5.00	1.87	5.00	336	267
사탕, 과일로된 잼	450 g	1.14	1.08	1.17	1.08	95	92
밀가루 W 405 형	1 kg	1.04	1.32	1.04	1.32	127	127
귀 리 부스 릭 지	//	1.30	0.98	1.48	0.98	75	66
연하고 굵은 밀가루 ²	//	1.04	1.34	1.44	1.34	129	93
제 란 국 수 (포장 된)	//	2.67	2.80	3.09	2.80	105	91
흑빵 (호밀을 혼합해서 만든)	//	0.88	0.52	1.18	0.52	59	44
흰빵 (밀가루로 만든)	//	1.24	1.00	1.56	1.00	81	64
과자류 ² (밀가루로작애구워만든)	//	1.78	1.00	2.13	1.00	56	47
사탕, 정제설탕, (포장된)	//	1.23	1.64	1.21	1.64	133	136
츠콜렛, 전유 (全乳)	100 g	1.12	3.85	0.80	3.85	344	481
코코아 가루	125g	1.05	4.00	1.04	4.00	381	385
견 쇠고기	1 kg	7.62	9.80	9.74	9.80	129	101
돼지의 갈비고기 (카틀렛)	//	7.06	8.00	7.88	8.00	113	102
돼지의 복부 고기	//	4.24	4.60	3.97	4.60	108	116
숫 병아리구이	//	.	.	3.98	4.75	.	119
지방이없는돼지고기의 순대	//	6.03	6.80	6.97	6.80	113	98

구분 상품종류	단위	1962년		1969년중반		DM=100	
		DM	M	DM	M	1962	1969년중반
음료전유	1/2ℓ	0.29	0.36	0.37	0.36	124	97
치이즈	1 kg	4.66	10.00	6.48	10.00	215	154
버터 (독일상표의)	〃	7.21	10.00	7.72	10.00	139	130
폐지기름 (독일産)	〃	2.54	3.10	2.08	3.10	122	149
마아가린	〃	2.20	4.00	2.52	4.00	182	159
달걀	1덩어리	0.20	0.37	0.20	0.36	185	180
오렌지즙	2/3강통	.	.	0.92	2.50	..	272
과즙음료 (탄산을 함유하고있는)	1ℓ	.	.	1.07	0.90	.	84
담배 (곱게 썬 연초)	50 g	1.25	3.00	1.50	3.00	240	200
필터 중형담배	10 개	0.83	1.60	0.91	1.60	193	176
포도주	0.7ℓ	6.06	17.50	6.40	17.50	290	225
병맥주	1ℓ	1.24	1.50	1.24	1.50	121	121
	1 kg	17.19	70.00	15.56	70.00	407	450
차 (茶)	50 g	1.20	1.20	1.32	1.20	100	91
커피	1 병	.	.	6.83	21.00	.	308

1. 1969년 평균가격
2. 사적인 가격조사결과
3. 지방합량 서독: 3%, 동독: 2.5%

자료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M, Preise, Löhne, Wirtschaftsrechnungen, Reihe 6 ;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일 랑 표 A 103

1962, 1969년 동. 서독 소비자 가격 일람

기타상품의 경우

구 분 상 품 종 류	1962		1969년 중반		DM = 100	
	DM	M	DM	M	1962	1969중반
남자용 구두	30.75	42.25	35.10	41.75	137	119
여자운동용 반구두	24.90	40.80	29.50	40.55	164	138
아동용 반구두	21.40	16.30	25.10	16.30	76	65
압패지 가죽구두	19.35	28.50	23.10	25.50	147	110
의교관용 낀키 (쇠가죽)	42.00	111.25	45.50	111.25	265	245
남자양복	129.00	188.00 ²	139.00	188.00	146	135
남자바지	.	.	27.50	54.30	.	198
양모와인조섬유로된여성옷감 (140cm 폭) ³	14.60	29.40	16.00	29.40	201	184
여자옷 (작업복)	.	.	56.00	79.20	.	141
아동용 양모 양복	66.80	59.20	78.00	59.20	89	76
소녀용 면직 복장	13.20	13.80	13.90	13.80	105	99
면직 노동복	20.40	18.75	23.30	19.35	92	83
남자용 와이셔츠 (화학섬유)	22.80	75.00	22.00	75.00	329	340
" " (무명)	22.50	45.00	24.20	45.00	200	186
남자용 아래내의 (무명)	5.70	6.50	7.00	6.50	114	93
부인복 한벌 (화학섬유로된)	9.75	27.70	10.70	27.70	284	259
" " (무명으로 된)	5.95	7.25	7.00	7.25	122	104
남자용 짧은	2.65	11.60	2.50	7.47	438	299
남자용 짧은 양말 (주름을 잡은)	3.10	7.45	3.30	7.45	240	226
면.모 교직으로된 각종 천	1.65	3.50	1.83	3.50	212	191
수 건	.	.	4.00	7.50	.	188
시 이 트 ⁴	10.18	17.40	11.23	17.40	171	155
갈탄으로만든 조개탄 (50kg당)	4.86	3.66	6.09	4.10	75	67
" " (")	4.86	1.70	6.09	1.70	35	28
강력세탁제 (1kg 포장된것)	4.18	3.00	4.13	3.00	72	73
부드러운세탁제 (1kg포장된것)	6.48	8.33	6.88	8.33	128	121
가정용저장식품 그라스 (1ℓ)	0.74	0.46	0.75	0.46	62	61
늑슬지않는 강철제품의 식사용구(1개)	6.57	13.13	7.50	13.65	200	182
사기쟁반 (길이 24cm 1개)	1.24	1.40	1.46	1.40	130	96
푸라이팬 (20cm)	.	.	16.50	24.20	.	147

구분 상품종류	1962		1969년중반		DM = 100	
	DM	M	DM	M	1962	1969중반
가정용 바켓스 (10ℓ들이)	3.17	.	2.13	8.80	.	413
백열등 (40W (와트))	1.00	1.00	1.20	1.00	100	83
초인종당치 ⁵	3.15	2.35	3.68	2.95	75	80
조정기쇠손잡이	28.25	33.60	24.60	35.50	119	144
1인용침대 (강철용수철을본木製의)	.	.	116.10	129.00	.	111
부엌 찬장 ⁶	.	.	480.00	572.00	.	119
옷장 ⁶	.	.	181.00	340.00	.	188
추진식폭900mm짜리 전기소제기	.	235.00	.	195.00	131	123
폭300~350mm짜리 추진식전기소제기	180.00	.	159.00	.	.	.
요리기계 수동식 사	.	.	48.50	98.00	.	202
전기풍로가 셋이달린전기 부뚜막	340.00	630.00 ²	295.00	642.00	185	218
전기냉장고 ⁷	380.00	1350.00 ²	301.00	1250.00	355	415
텔레비전 (59cm 形像管) ⁸	780.00	2050.00 ²	564.00	1760.00	263	312
휴대용 트랜지스터 ⁶	.	.	85.00	187.00	.	220
30cm L.P반 레코오드	.	.	16.46	12.00	.	73
사진기 ⁶	.	.	98.00	106.00	.	108
36방짜리 흑백소형 필름	.	2.15	2.90	2.15	.	74
일간신문 (先私)	4.65	3.50	5.93	3.50	75	59
남자용 자전거 (특허품)	154.00	242.00	139.00	242.00	157	152
자전거 타이어	15.28	23.30	16.90	23.30	152	138
승용자동차 (500~900cm ³)	.	.	3400.00	7850.00	.	231
휘발유 1ℓ	.	.	0.57	1.40	.	246
소형 타이프라이터	210.00	423.00	205.00	430.00	201	210
부인용필복사제 (17석) (특수강으로도금된 케이스)	66.60	138.20	70.50	135.00	208	191
전기안전면도기	.	.	81.80	105.00	.	128

1. 산패지 가죽

2. 1963년의 경우 (1962년 통계는 없음)

3. 서독: 35%의 순양모, 동독: 45% 유모편양모

4. 서독: 삼베, 중량 및 크기 150 × 250 cm

동독: 면화 140 × 230 cm

5. 서독: 손잡이자루가 잘다듬어져 윤택이 나는 것

6. 수출품목카타로그에 표시된 비슷한 모델

7. 서독: 병동김막이 및 자동병동조절장치가 있음 동독: 병동김막이 없음

8. 1963년 = 53cm 形像管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M, Preise, Löhne, Wirtschaftsrechnungen, Reihe 6 :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일 랑 표 A 104

동. 서독 (1962. 1969) 의 소비자 가격
서비스 분야

	단 위	1962		1969 중 반		DM = 100	
		DM	M	DM	M	1962	1969 중 반
기본요금포함된 전기료	23Kwh	5.68	3.84	6.69	3.84	68	57
2 등 통근열차요금	50km	4.00	4.00	4.25	4.00	100	94
2 등 통근열차 1 주간승차권	15km	7.20	2.50	9.00	2.50	35	28
시내전차, 트롤리버스	1회차	0.43	0.20	0.65	0.20	47	31
편지 우편료	1 회	0.20	0.20	0.30	0.20	100	67
우편엽서 우편료	1 회	0.10	0.10	0.20	0.10	100	50
전화국에서의 통화료	1 회 통화료	0.20	0.20	0.20	0.20	100	100
텔레비 시청료	1회요금	7.00	5.50 ¹	7.00	7.00	79	100
극장관람포 (2 등석)	1인관람 권 (참)	1.72	1.00	2.89	1.06	58	37
흑, 백 두추말이팔름(6x9) 현상	1 회	.	0.50	0.90	0.50	.	55
남자용 양복한벌 세탁료	//	7.20	5.75	7.85	5.75	80	73
남자이발요금 (중간 길이)	//	2.10	0.90 ²	3.30	0.90	43	27
남자용기죽구두수선료 (창대는것)	//	6.90	5.77	7.95	5.77	84	73

1. 텔레비콘 시청료가 연간 200 ~ 500 Mark 인상되었다.

2. 가격등급 II ; 동 베르린의 경우 1.40 Mark

일 랑 표 A 105

동. 서독 (1960. 1968) 의 특정 소비품목 연간 보급량¹⁾

주민 1인당 보급량

	단 위	서 독		동 독		서독에 대한 동독의 배분율	
		1960	1968	1960	1968	1960	1968
소고기·송아지고기	kg	19.5	23.0	17.5	18.4	90	80
돼지고기	kg	30.9	37.7	33.3	39.0	108	103
식용 가금	kg	3.9	7.1	3.7	4.6	95	65
계란	개(個)	228	254	197	220	86	87
밀크	ℓ	112.7	104.0	94.5	99.2	84	95
비계 (지방질식품)	kg	25.1	25.5	27.4	28.2	109	111
이 중에서	kg						
버터	kg	6.4	7.1	10.4	10.8	163	152
동·식물성 지방질	kg	12.8	12.5	9.3	8.6	73	69
마가린	kg	8.4	7.4	8.2	8.8	98	119
곡물 (농작물)	kg	81.7	68.9	99.2	95.0	121	138
감자	kg	133.0	110.0	173.9	150.0	131	136
야채 (신선한)	kg	45.8	62.9	48.0	56.7	105	90
생과일	kg	61.2	90.0	61.1	39.1	100	43
남방 (열대) 과일	kg	18.2	20.9	7.1	11.2	39	54
사탕	kg	28.6	32.3	29.3	32.9	102	102
순커피 (볶은)	kg	2.9	4.1	1.1	2.0	38	45
알콜음료 (100%)	ℓ	1.9	2.6	1.4	2.2	74	85
맥주	ℓ	94.9	129.4	79.5	86.3	84	67
포도주 및 백포도주	ℓ	.	15.2	3.2	4.6	.	30
담배	괴 작	1.282	1.753	1.069	1.201	83	69

	단 위	서 독		동 독		서독에 대한 동독의 백분율	
		1960	1968	1960	1968	1960	1968
구 두	킬 래	3.0	3.8 ²	3.0 ²	3.4 ²	100	89
테 레 비 전	주인천명당	85.2	92.8	72.8	68.1	85	73
승 용 차	〃	18.4	22.8	3.4	6.2	18	27
사 진 기	〃	15.7	16.3	15	19	96	117

1. 국내에서 해마다 규정상 정해진 양(量)
2. 추정된 양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der BRD 1969; Jahresbericht 1968 der kaffeegroßröster und -importeure ;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일 랑 표 A 106

1968년 동, 서독 소비식품의 칼로리 및 영양가 함량 비교

1인1일 음식물 영양가	서 독	동 독
칼로리 ¹		
총 소비 kcal	2,957	3,106
서독에 대한 동독의 %	100.0	105.0
단백질		
총 소비 g	80.5	77.7
서독에 대한 동독의 %	100.0	96.5
이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 g	51.6	42.9
구조비율비교	64.1	55.2
서독에 대한 동독의 %	100.0	83.1
순(純) 지방질 g	135.7	130.8
서독에 대한 동독의 %	100.0	96.4
합수탄소 g	353.5	404.0
서독에 대한 동독의 %	100.0	114.3

1. 1949년 FAO (식량농업기구)가 작성보고한 각국 영양섭취량 일람표 중에서 독일부분에 관한 것만을 뽑아서 산출됨.

자료출처: Stat. Monatsbericht des BML, Dezember 1969; Stat. Jahrbuch über ELUF der BRD 1964; Statisches Jahrbuch der DDR 1969; H-K Grafe Und H.E. Schmidt: Ernährungsatlas der DDR 1967.

일 랫 표 A 107

1969년 동.서독의 수입계층별 잠기 소비품목에 관한 가정경제 상대분류 일람
100 가구당 보유숫자

구 별 소 비 품 목	서 독				동 독			
	총	수 입 계 층			총	수 입 계 층		
		하	중	상		하	중	상
승 용 자 동 차	47	18	52	83	14	3	25	44
오 트 바 이	7	4	7	6	40	16	47	43
자 전 거	80	57	96	96	.	43	73	72
테 레 비 존	73	63	80	80	66	66	95	99
레 의 오	91	84	92	97	92	88	91	93
전 축	32	21	35	47	.	5	21	42
녹 음 기	19	9	21	33	.	2	15	23
사 전 기	67	37	80	97	.	22	72	84
소 형 영 사 기	5	1	4	11	.	1	5	13
환 등 기	15	5	16	29	.	1	12	25
전 기 냉 장 고	84	71	92	95	48	30	78	86
전 기 자동세탁기	61	41	69	78	48	36	76	83
세봉틀(전기로된)	26	15	30	38	.	3	12	17
재래식 세봉틀	37	38	35	33	.	58	50	57
전 기 소 제 기	84	72	90	95	.	64	89	94
전 기 취 사 용 기	26	14	29	40	.	8	34	44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M, Reihe 18.

1/1969 ;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S. 355f.

A108 ~ A125

일 램 표 A 108

동. 서독 (1965~1969)의 사회복지보장을 위한 현금지불수당

	서 · 동		
	1965	1966	1967
	단 위 백 만 D M		
연금, 보험금 정기지출	39.735	43.892	48.800
질병, 재해의 경우의 단기급여액	5.005	5.563	5.102
가족수당	4.376	4.553	4.288
실업자 보험금	852	763	2.020
전쟁희생자 부양금	6.976	7.071	7.568
사회적인 구제대상자	1.008	1.115	1.176
기타 수여금	816	1.059	1.130
총 계	58.768	64.016	70.084
	1965 = 100		
연금, 보험금의 정기지출	100	110.5	122.8
질병, 재해 경우의 단기급여액	100	111.1	101.9
가족수당	100	104.0	98.0
실업 보험금	100	89.5	236.9
전쟁희생자 부양금	100	101.3	108.4
사회적인 구제대상자	100	110.6	116.7
기타수수여금	100	129.7	138.4
총 계	100	108.9	119.3
	전체를 100으로 본 백분율		
연금, 보험금의 정기지출	67.6	68.6	69.6
질병, 재해 경우의 단기급여액	8.5	8.7	7.3
가족수당	7.5	7.1	6.1
실업 보험금	1.4	1.2	2.9
전쟁희생자 부양금	11.9	11.0	10.8
사회적 구제대상자	1.7	1.7	1.7
기타 수여금	1.4	1.7	1.6
총 계	100.0	100.0	100.0

자료출처: Sozialbericht 1970.
 Bundestags - Drucksache VI / 643
 Statistische Jahrbucher der DDR.

일 랑 표 A 109

동. 서독 (1965 ~ 1969) 의 사회보장을 위한 현물지급 및 기타 지출 일람

	서		독
	1965	1966	1967
	단위백만 DM		
사 회 보 험	12.782	14.886	16.335
전쟁희생자 부양	404	355	559
사회적인 구제대상자	1.257	1.371	1.544
청소년 선도	663	747	799
공공보건의료비	644	686	708
현물지급 총계	15.750	18.045	19.945
행정비	3.397	3.737	3.968
총 지 출	19.147	21.782	23.913
	1965 = 100		
사 회 보 험	100	116.5	127.8
전쟁희생자 부양	100	87.9	138.4
사회적인 구제대상자	100	109.1	122.8
청소년 선도	100	112.6	120.5
공공보건의료비	100	106.5	109.9
현물지급 총계	100	114.6	126.6
행정비	100	109.9	116.8
총 지 출	100	113.8	124.9
	전체를 100으로 본 백분율		
사 회 보 험	81.1	82.5	81.9
전쟁희생자 부양	2.6	2.0	2.8
사회적 구제대상자	8.0	7.6	7.7
청소년 선도	4.2	4.1	4.0
공공보건의료비	4.1	3.8	3.6
현물지급 총계	100.0	100.0	100.0

1. 1969년의 경우는 집계적

2. 동독에는 행정비가 경우보다 구별되어 있지 않다.

자료출처: Sozialbereich 1970. Bundestags - Drucksache VI / 643
 Statistische Jahrbucher der DDR

일 략 포 A 110

동. 서독 (1965 ~ 1969) 의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 (財政) 예산 일람

	서		
	1965	1966	1967
	세출 (단위 百万 DM)		
현금지급	58,768	64,016	70,084
현물지급	15,750	18,045	19,945
지급을 위한 순세출	74,518	82,061	90,029
행정비	3,397	3,737	3,968
순세출총계	77,915	85,798	93,997
	세입 (단위 百万 DM)		
기부금수입	42,217	46,678	47,675
공공수단수입	35,046	37,784	40,292
자본금소득, 기타수단	4,339	4,699	4,803
총세입 ¹	81,602	89,161	92,770
잔액 (+), 결손 (-)	+ 3,687	+ 3,363	-1,227
	세출 (1965 = 100)		
현금지급	100	108.9	119.3
현물지급	100	114.6	126.6
지급을 위한 순세출	100	110.1	120.8
행정비	100	109.9	116.8
순세출총액	100	110.1	120.6
	세입 (1965 = 100)		
기부금수입	100	110.6	112.9
공공수단수입	100	107.8	114.9
자본금소득, 기타수단	100	110.7	113.1
총세입	100	109.3	113.7
	세출구조 백분율		
현금지급	78.9	78.0	77.8
현물지급	21.1	22.0	22.2
	세입구조 백분율		
기부금수입	51.7	52.3	51.4
공공수단수입	43.0	42.4	43.4
자본금소득	5.3	5.3	5.2

1. 상쇄된 액이 제외된 순세입

자료출처: Vergleiche Tabellen A 108 und A 109 sowie Angaben über den Staatshaushalt in Gesetzblättern der DDR

독		동					독
1968	1969	1965	1966	1967	1968	1969	
세출 (단위 百万 DM)							
74,443	79,943	9,861	10,082	10,366	11,122	11,906	
21,871	24,166	4,407	4,428	4,692	4,922	5,178	
96,314	104,109	14,268	14,510	15,058	16,044	17,084	
4,121	4,463	
100,435	108,572	14,268	14,510	15,058	16,044	17,084	
세입 (단위 百万 DM)							
53,581	60,857	7,775	7,933	8,181	8,361	8,537	
40,739	42,865	6,493	6,577	6,877	7,683	8,547	
4,783	4,620	
99,103	108,342	14,268	14,510	15,058	16,044	17,084	
-1,332	- 230	
세출 (1965 = 100)							
126.7	136.0	100	102.2	105.1	112.8	120.7	
138.9	153.4	100	100.5	106.5	111.7	117.5	
129.2	139.7	100	101.7	105.5	112.4	119.7	
121.3	131.3	
128.9	139.3	100	101.7	105.5	112.4	119.7	
세입 (1965 = 100)							
126.9	144.1	100	102.0	105.2	107.5	109.8	
116.2	122.3	100	101.3	105.9	118.3	131.6	
112.7	108.8	
121.4	132.8	100	101.7	105.5	112.4	119.7	
세출구조 백분율							
77.3	77.0	69.1	69.5	68.8	69.3	69.7	
22.7	23.0	30.9	30.5	31.2	30.7	30.3	
세입구조 백분율							
54.1	56.2	54.5	54.7	54.3	52.1	50.0	
41.1	39.6	45.5	45.3	45.7	47.9	50.0	
4.8	4.2	

일 랑 표 A 111

동.서독 사회보장비교 특정 대수지표 비교일람
 세출·세입의 국가 총생산에 대한 백분율

	서					동				
	1965	1966	1967	1968	1969	1965	1966	1967	1968	1969
국가총생산 (단위 십억 DM/M ¹)	460.4	490.7	494.6	538.5	601.0	111.5	117.1	123.5	130.5	137.8
<세 출>										
현금지급	12.8	13.0	14.2	13.8	13.3	8.8	8.6	8.4	8.5	8.6
이 중에서										
연금·보험금정기지출	8.6	8.9	9.9	9.9	9.7	6.1	6.1	6.0	6.1	6.3
단기 현금지급 (질병·자선·재해)	1.1	1.1	1.0	1.0	1.0	1.2	1.1	1.0	1.0	1.0
가족수당	1.0	0.9	0.9	0.8	0.7	1.1	1.1	1.1	1.1	1.0
현물지급	3.4	3.8	4.0	4.1	4.0	4.0	3.8	3.8	3.8	3.8
행정비율 포함한 지출총계	16.9	17.5	19.0	18.7	18.1	12.8	12.4	12.2	12.3	12.4
<세 입>										
총 계	17.7	18.2	18.8	18.4	18.0	12.8	12.4	12.2	12.3	12.4
이 중에서										
기부금 수입	9.2	9.5	9.6	9.9	10.1	7.0	6.8	6.6	6.4	6.2
공공수단수입 ²	7.6	7.7	8.1	7.6	7.1	5.8	5.6	5.6	5.9	6.2

1. 서독: 그때 그때 가격으로 표시된 국가총생산

동독: 1967년 가격의 국가 총생산

2. 서독: 공무원 연금 포함

일 랫 표 A 112

동. 서독 (1960 ~ 1968) 의 질병가구수, 질병자수, 질병기간

구 년 도	서				동			
	질병가구 총 수	질 병 자 수		평균 외병 기간	질병가구 총 수	질 병 자 수		평 균 외병기간
		총 계	주 민 100,000 명 당			총 계	주 민 100,000 당	
1960	3,604	583,513	1,046	28.7	822	204,767	1,190	29.1
1965	3,619	631,447	1,065	27.4	757	206,154	1,210	26.7
1966	3,617	640,372	1,071	26.8	721	202,679	1,190	25.6
1967	3,609	649,590	1,084	26.4	679	198,513	1,160	25.2
1968	3,618	665,546	1,101	25.9	657	194,970	1,140	24.3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A Bevölkerung und Kultur, Reihe 7, Gesundheitswesen, III, Krankenhäuser, Berufe des Gesundheitswesens, 1968, S. 3. 4. 5.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S. 412, 415.

일 랑 표 A 113

동.서독(1960~1968)의 개업의사 및 치과의사 수 비교일람

구 년 도	서 독					
	일 반 의 사			치 과 의 사		
	총 수	의사 1인당 주 민 수	주 민 십 만 명당 의사 수	총 수	의사 1인당 주 민 수	주 민 십 만 명당 의사 수
1960	79,350	703	142	32,509	1,716	58
1965	85,801	591	145	31,660	1,873	53
1966	86,700	690	145	31,599	1,892	53
1967	88,559	677	148	31,148	1,925	52
1968	90,882	665	150	31,227	1,936	52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A, Reihe 7, III,
1968, S. 19, 23.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S. 417.

동			동		
일 반 의 사			치 과 의 사		
총 수	의사 1인당 주 민 수	주 민 십 만 명당 의사 수	총 수	의사 1인당 주 민 수	주 민 십 만 명당 의사 수
14,555	1,181	85	6,361	2,702	37
19,528	872	115	6,207	2,743	36
21,365	800	125	6,397	2,670	37
22,735	751	133	6,753	2,530	40
24,620	694	144	6,723	2,541	39

일 랑 표 A 114

동. 서독 (1962~1968) 의 지식인 수 비교 일람
단위 1,000 명

교육제도 구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서		독			
국민학교	5,375.6	5,437.0	5,487.7	5,569.1	5,676.1	5,740.4	5,873.0
특수학교 (농·맹·아)	154.2	163.8	175.3	187.6	206.1	231.8	259.1
실과 (중) 학교	471.1	495.3	528.4	570.2	619.9	708.6	770.3
8,9년제 중고등학교	851.5	863.5	895.0	963.2	1,042.8	1,192.7	1,259.2
직업학교	1,621.5	1,707.1	1,749.0	1,787.7	1,754.4	1,784.1	1,758.9
직업전문학교	124.7	133.8	146.5	159.5	170.8	195.3	197.9
전문학교 및 대학 ¹	102.4	97.2	95.2	96.3	91.3	93.8	97.9
공과대학	50.6	53.5	57.4	59.8	61.3	61.2	63.1
경제전문대학	(0.9)	(1.8)	(3.1)	(4.3)	4.9	5.6	6.2
		동		독			
10등급제공업고등학교	2,127.9	2,202.5	2,247.6	2,273.6	2,301.1	2,339.2	.
이 중에서							
IX단계 X단계 졸업	174.3	193.5	226.6	250.7	260.5	272.3	.
특수학교	61.1	66.7	67.0	66.7	70.9	71.5	.
학대개편된 실업고등학교	76.2	76.5	81.1	85.3	92.5	100.7	.
직업학교	301.9	345.7	387.1	418.9	446.2	468.7	.
이 중에서							
지방 직업학교	142.7	166.7	194.6	202.9	212.4	219.1	.
공장 직업학교	143.3	162.9	177.7	200.4	216.2	229.1	.
의과 학교	15.9	16.0	14.8	15.6	17.6	20.4	.
경영학원 ²	553.9	767.9	787.8	844.7	832.5	810.4	.
이 중에서							
전문노동자양성	102.8	125.2	140.9	158.3	150.1	139.1	.
단기교육완성	29.3	28.8	26.9	31.2	33.9	33.5	.
학사수준능력양성	55.3	78.1	77.2	81.5	98.2	113.8	.

1. 1961~1965간의 경제전문대학포함
2. 공학, 건축공학, 운송, 우편, 송신 분야

자료출처: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RD.
Dokumentation Nr. 30, Dez. 1969, Lehrerbestand und Lehrerberarf S. 10.
Statistisches Jahrbuch des Bildungswesens der DDR, 1968.

일 랫 표 A 115

동.서독(1962~1968)의 지식인 수 발전상황 일람
1962년으로 100으로 보았을 경우

교육제도 구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국민학교	101.1	102.1	103.6	105.6	106.8	109.3
특수학교(농·맹·아)	106.2	113.7	121.7	133.7	150.3	168.0
실습(중)학교	105.4	112.2	121.0	131.6	150.4	163.5
8~9년제 중교등학교	101.4	105.1	113.1	122.5	140.1	147.9
직업학교	105.3	107.9	110.2	108.2	110.0	108.5
직업전문학교	107.3	117.5	127.9	137.0	156.6	158.7
전문학교 및 대학	94.9	93.0	94.0	89.2	91.6	95.6
공과대학	105.7	113.4	118.2	121.1	120.9	124.7
경제전문대학	(200.0)	(344.4)	(447.8)	544.4	622.2	688.9
10등급체공예고등학교	103.5	105.6	106.8	108.1	109.9	.
이 중에서						
IX등급 및 X등급졸업	111.0	130.0	143.8	149.5	156.2	.
특수학교	109.2	109.7	109.2	116.0	117.0	.
확대개편된 실업고등학교	100.4	106.4	111.9	121.3	132.1	.
이 중에서						
IX등급, X등급 졸업	100.0	102.4	98.6	109.8	124.9	.
자연과학분야(B)	100.0	101.5	102.3	120.8	137.8	.
직업학교	114.5	128.2	138.8	147.8	155.2	.
경영학원	138.6	142.2	152.5	150.3	146.3	.
이 중에서						
학사수준능력 양성코스	141.2	139.6	147.4	177.6	205.7	.

자료출처: Tabelle A 114.

등.서독(1949~1975)에서 교육훈련되는 직업분야 숫자 발전변화 일람

구 년 도	서 독		동 독	
	총 수	총 수	이 중 에 서	
			기 본 직 책	교육훈련직책 ¹
1949	719	.	-	-
1950	718	.	-	-
1955	649	.	-	-
1957	.	972	-	-
1960	648	.	-	-
1964	.	658	-	-
1965	620	.	-	-
1966	568	655	-	331
1967	558	455	4	239
1968	531	389	8	193
1969	521	355	21	173
1970	515	305	26	140
1975(계획)	.	273	26	140

1.8 등급과정

자료출처: Deutscher Bundestag, 5. Wahlperiode, Drucksache V/1422, Bonn 1967, S. 10 ;
 Lehr- und anerkannte in der BRD 1968, Beilage zu H. 11/1969 der Arbeits- und sozialstatistischen Mitteilung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S. 4 ;
 Deutscher Bildungsrat, Gutachten und Studien der Bildungskommission, Bd. 11, Stuttgart 1970, S. 142f. sowie Verzeichnis der in der BRD anerkannten Lehr- und Anerkerberufe, hrsg. vom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nach dem Stand vom Sept. 1968 und eigene Berechtigungen nach dem Stand von Jan. 1969 und Sept. 1970.

일 략 포 A 117

최근 가장 중요시되는 직업유형에 참여한 초급자들의 수비율

1962년과 1967년에 직업교육을 받은 총숫자에 대한 백분율

서		독		동		독	
직업유형	1962	1967		1962	1967		1967
1. 상업직	29.0	25.4	1. 금속제작자, 금속가공노동자	24.3	23.6		
2. 금속제작자, 금속가공노동자 철물공	22.8	21.4	2. 점원직	12.6	14.0		
3. 조직, 행정, 사무등직업	10.0	11.2	3. 건축직	10.8	10.2		
4. 전기기술자	7.3	9.0	4. 전기기사직	7.9	9.0		
5. 건축직	6.1	5.5	5. 농부, 동물사육자, 정원사	8.9	7.6		
6. 체육직	4.5	4.6	6. 직물생산, 가공업자	6.7	6.1		
7. 식품및유홍음식 제조자	3.6	3.9	7. 보건의료 및체육인	6.7	6.0		
8. 특수기술직	2.5	3.0	8. 식품유홍음식제조인	3.1	4.3		
9. 직물생산, 직물가공 구두기술자(手)	3.4	2.7	9. 제도사(1962 운수업	3.7	0	0	3.1
	89.2	86.7		84.7	83.9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RD 1963, Stuttgart-Mainz 1963, S. 149.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RD 1969, Stuttgart-Mainz 1969, S. 132

sowie Statistisches Jahrbuch des Bildungswesens der DDR, 1968, S. 37f.

일람표 A 118

동.서독(1965.1969)산업분야별 초급자 수 일람

구 산 업 분 야	1. 초급자 총수(단위 千)			
	서 독		동 독	
	1965	1969	1965	1969
농림업 ¹	23	23	52	32
공업	366	394	170	199
수공업 ²	237	239	31	28
건축업	145	151	47	76
통신·정보업	59	61	23	28
상업	416	435	38	43
기타·서비스업	235	262	35	51
총계	1481	1565	396	457

1. 수리(水利)업 포함(동독의 경우)

2. 동독: 생산수공업만 취급, 서독: 기타 소규모 수공업들 모두 포함

자료출처: Goseke, G. Bruttolohns und-Gehält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Jahre 1965. In: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H.2(1966), S.156

und 157, sowie deren Beschäftigung und Arbeitnehmereinkommen in der BRD im

Jahre 1969. In: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H.2(1970), S.114

bis 115

Statistisches Taschenbuch der DDR 1966, S.32; 1970, S.38

2. 년간분야별 백분율				3. 여성초급자수 (단위千)				4. 여성초급자수 비율(%)			
서		동		서		동		서		동	
1965	1969	1965	1969	1965	1969	1965	1969	1965	1969	1965	1969
6.6	1.5	13.1	6.9	8	8	21	15	34.8	34.8	40.8	46.7
24.7	25.2	43.0	43.5	76	88	74	84	20.7	22.3	43.3	42.1
16.0	15.3	7.8	6.1	60	62	6	6	25.3	25.9	19.4	21.3
9.8	9.6	11.9	16.7	8	8	2	7	5.5	5.3	4.1	8.9
4.0	3.9	5.8	6.2	5	5	8	11	8.5	8.2	37.7	41.0
28.1	27.8	9.7	9.5	273	284	34	37	65.6	65.3	87.7	85.2
15.8	16.7	8.7	11.1	170	142	31	46	55.3	54.2	89.0	90.8
100.0	100.0	100.0	100.0	560	597	176	206	37.8	38.1	44.5	45.1

일 랑 표 A 119

초급자 및 실습전습생에 관한 서독(1962.1967)직업 유형별 일람

직 업 유 형	1. 총 수		
	1962	1966	1967
	단 위 : 명		
농부, 동물사육자, 정원만드는사람 임업, 수렵업, 어로업	24,766 66	29,669 73	34,682 104
광부, 광물채굴자, 광물굴기 내는자	6,409	2,970	2,315
石物가공자, 도자 기업자, 유리제조자	2,999	2,530	2,531
건축업자	72,863	79,837	76,816
금속생산자, 금속가공업자	21,436	16,619	15,089
태강장이, 철물공, 기계공등	250,584	281,771	282,377
전기기사	87,383	123,264	125,715
화공업기사	3,110	2,933	3,325
합성수지원료가공업자	199	420	400
목재가공업자 기타	21,024	23,019	23,731
제지업자, 종이가공업자	2,244	1,860	1,800
사진사, 인쇄업자등	22,813	24,789	24,310
직물생산가공업자, 구두제조자(手)	40,793	38,245	37,854
가죽생산, 가공업자	4,194	3,266	3,492
식품, 유제품음식제조업자	42,998	49,333	54,355
상품감독, 발송인, 창고관리인	336	274	304
고등기사, 일 반기사등	-	162	2,721
특수기능기술자	29,750	42,317	41,624
기관사등	600	507	459
상업직	346,695	354,129	354,230
운수업	12,965	16,420	15,182
숙박업	3,638	3,708	4,134
가정부직책	11,309	20,719	24,319
청소업무	2,484	2,253	2,605
체육인	53,631	59,943	63,644
조직, 관리, 사무, 직책	119,620	155,241	155,401
보건의료직	-	24,865	29,394
예술직업	7,725	10,363	10,488
총 계	1,196,624	1,371,509	1,392,465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RD 1963, S. 149;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RD 1968 und 1969

2. 총계 = 100(년간)			3. 여성초급자및 견습생			4. 여성초급자 비율		
1962	1966	1967	1962	1966	1967	1962	1966	1967
단위 : %			단위 : 명			단위 : %		
2.1	2.2	2.5	2,897	3,532	3,867	11.7	11.9	11.1
0.0	0.0	0.0	-	-	1	0.0	0.0	1.0
0.5	0.2	0.2	-	-	-	0.0	0.0	0.0
0.3	5.8	0.2	284	261	264	9.5	10.3	10.4
6.1	1.2	5.5	136	189	196	0.2	0.2	0.3
1.8	1.2	1.1	169	124	144	0.8	0.7	1.0
21.0	20.5	20.3	2,217	3,160	3,440	0.9	1.1	1.2
7.3	9.0	9.0	68	126	59	0.1	0.1	0.1
0.3	0.2	0.2	537	583	623	17.3	19.9	18.7
0.0	0.0	0.0	-	-	-	0.0	0.0	0.0
1.8	1.7	1.7	299	255	231	1.4	1.1	1.0
1.2	0.1	0.1	252	223	251	11.2	12.0	13.9
1.9	1.8	1.7	4,462	6,014	5,815	19.6	24.3	23.9
3.4	2.8	0.1	34,681	33,028	33,366	85.0	86.4	88.1
0.4	0.2	1.7	1,043	1,194	1,350	24.9	36.6	38.7
3.6	3.6	3.9	2,374	2,692	2,931	5.5	5.5	5.4
0.0	0.0	0.0	81	50	73	24.1	18.2	24.0
-	0.0	0.2	-	-	100	-	0.0	3.7
2.5	3.1	3.0	9,840	14,892	14,510	33.1	35.2	34.9
0.1	0.0	0.0	-	-	-	0.0	0.0	0.0
29.0	25.8	25.4	228,327	232,417	226,378	65.9	65.6	63.9
1.1	1.2	1.1	-	4	6	0.0	0.0	0.0
0.3	0.3	0.3	430	427	487	11.8	11.5	11.8
0.9	1.5	1.7	11,277	20,659	24,237	99.7	99.8	99.7
0.2	0.2	0.2	379	157	141	15.3	7.0	5.4
4.5	4.4	4.6	47,936	55,272	58,443	89.4	92.2	91.8
10.0	11.3	11.2	76,159	103,500	103,207	63.7	66.7	66.4
-	1.8	2.1	-	24,865	29,394	-	100.0	100.0
0.7	0.9	0.8	2,893	4,987	4,986	37.5	48.1	47.5
100.0	100.0	100.0	426,741	508,621	514,500	35.7	37.1	36.9

일람표 A 120

등록(1962~1967)의 직업유형별 초급자 수 일람

직업유형	1. 총 수		
	1962	1966	1967
	단위 : 명		
농부, 동물사육자, 정원설계사	22,747	34,651	29,989
농업, 수렵업, 어로업	1,570	1,898	1,480
광업분야	2,804	1,952	1,314
石物가공자, 도자기업자	968	1,890	1,875
초자(유리) 생산업자	600	1,428	1,055
건축업자	27,654	41,000	40,163
금속생산, 가공업자	62,076	96,021	92,756
철기기사	20,250	35,865	35,397
화공업 기사	6,486	8,162	7,395
합성수지가공업자	47	803	851
목재가공업자등	3,437	5,963	5,720
종이 생산, 가공업자	605	1,505	1,207
제도사	9,504	8,880	9,009
직물생산, 가공업자	17,180	25,764	23,918
피혁생산, 가공업자	1,849	3,716	3,394
식품, 유통음식제조업자	7,964	16,951	16,993
원료생산가공작업 조역자(助役者)	18	848	1,006
기술공	3,903	5,696	6,782
기관사 기타	2,802	7,130	6,674
상점점원직	32,287	51,360	55,074
운수업	6,667	11,647	12,315
숙박업자	797	2,009	2,088
가정부직책	243	1,622	1,683
청소업무	4	46	42
보건의료, 체육업	17,106	23,643	23,525
관리, 사무 직책	4,595	8,019	9,554
교육직책	26	38	33
교육연구직	81	100	133
예술직업	1,401	1,419	1,627
	255,671	400,026	393,236

자료출처 : Statistisches Jahrbuch des Bildungswesens der DDR 1968

2. 총 계 = 100			3. 여성초급자수			4. 여성초급자 의비율		
1962	1966	1967	1962	1966	1967	1962	1966	1967
단위 : %			단위 : 명			단위 : %		
8.9	8.7	7.6	11,503	17,248	15,224	50.6	49.8	50.8
0.6	0.5	0.4	151	249	192	9.6	13.1	13.0
1.1	0.5	0.3	90	395	325	3.2	20.2	24.7
0.4	0.5	0.5	453	942	997	46.8	49.8	53.2
0.2	0.4	0.3	275	756	487	45.8	52.9	46.2
10.8	10.3	10.2	261	707	754	0.9	1.7	1.9
24.3	24.0	23.6	3,353	8,545	8,189	5.4	8.9	8.8
7.9	9.0	9.0	1,051	4,174	4,065	5.2	11.6	11.5
2.6	2.0	1.9	4,136	5,623	5,183	63.8	68.9	70.1
0.0	0.2	0.2	32	627	663	68.1	78.1	77.9
1.4	1.5	1.5	520	1,071	1,120	15.1	18.0	19.6
0.2	0.4	0.3	362	905	766	59.8	60.1	63.5
3.7	2.2	2.3	7,703	7,651	7,770	81.1	86.2	86.2
6.7	6.4	6.1	15,147	23,648	21,971	88.2	91.8	91.9
0.7	0.9	0.9	1,144	2,637	2,570	61.9	71.0	75.7
3.1	4.2	4.3	2,477	7,421	7,907	31.1	43.8	46.5
0.0	0.2	0.3	7	369	542	38.9	43.5	53.9
1.6	1.4	1.8	2,190	3,213	3,823	56.1	56.4	56.4
1.1	1.8	1.7	305	1,910	1,683	10.9	26.8	25.2
12.6	12.8	14.0	30,230	49,328	52,828	93.6	96.0	95.9
2.6	2.9	3.1	4,340	6,699	7,033	65.1	57.5	57.1
0.3	0.5	0.5	389	1,323	1,350	48.8	65.9	64.7
0.1	0.4	0.4	242	1,615	1,674	99.6	99.6	99.5
0.0	0.0	0.0	-	8	17	-	17.4	40.5
6.7	5.9	6.0	16,388	23,144	23,028	95.8	97.9	97.9
1.8	2.0	2.4	4,552	7,985	9,490	99.1	99.6	99.3
0.0	0.0	0.0	1	5	8	3.8	13.2	24.2
0.0	0.0	0.0	78	96	126	96.3	96.0	94.7
0.6	0.4	0.4	1,158	1,250	1,440	82.7	88.1	88.5
100.0	100.4	100.0	108,538	179,544	179,544	42.5	44.9	46.1

일람표 A 121

동. 서독(1964. 1968)의 인기있는 기술계통 연구분야

연 구 분 야	서 독		동 독	
	1964	1968	1964	1968
	단 위 : 名			
기계학과 ¹	35,479	40,958	22,281	25,540
건축학과 ²	18,761	16,734	7,098	6,595
전기기술과	15,215	17,496	7,577	11,447
공업경제학과	-	-	5,800	19,077
기 타	13,698	3,924	14,561	11,373
총 계	83,153	79,112	57,317	74,032
전체를 100으로 본 각분야 백분비				
기계학과 ¹	42.7	51.8	38.9	34.5
건축학과 ²	22.6	21.2	12.4	8.9
전기기술과	18.2	22.1	13.2	15.5
공업경제학과	-	-	10.1	25.8
기 타	16.5	4.9	25.4	15.4

1. 정련기술, 기관조립, 선박조립, 물리학기술, 조직기술, 완성기술등의 전공분야 포함.

2. 고등건축기술, 측량기술, 건축토목기술, 설비기술, 제작재료배합기술 등의 전공분야 포함.

자료출처: Berechnungen nach Angaben des Statistischen Jahrbuchs der BRD 1966 und des Statistischen Bundesamts, Bevölkerung und Kultur, Reihe 10, III, Juli 1970 sowie des Statistischen Jahrbuchs der DDR 1969.

일람표 A 122

동·서독(1960~1968)의 특정 전공분야별 기술 및 자연과학계통의 전문학교졸업생수(외국인제외) 비교일람

전공분야	서독			동독		
	1960 ¹⁾	1964	1968	1960	1964	1968
	단위 : 명					
광업 및 제련(야금)	224	373	232	1,537	1,670	848
기계제작 ²⁾	6,335	11,340	10,742	3,857	6,521	6,000
건축, 토목 ³⁾	4,171	5,262	5,344	1,858	2,212	1,515
전기기술 ⁴⁾	2,427	4,526	4,844	1,352	1,883	2,053
화공학과 ⁵⁾	538	527	1,542	672	1,154	799
기타전공	2,612	4,127	2,512	2,640	3,532	3,909
총계	16,307	26,155	25,215	11,916	16,972	15,124
	전체를 100으로 본 전공분야별 백분율					
광업 및 제련(야금)	1.4	1.4	0.6	12.9	9.8	5.6
기계제작 ²⁾	38.7	43.4	42.6	32.4	38.5	39.7
건축, 토목 ³⁾	25.6	20.1	21.2	15.6	13.0	10.0
전기기술 ⁴⁾	14.8	17.3	19.2	11.4	11.1	13.6
화공학과 ⁵⁾	3.3	2.0	6.1	5.6	6.7	5.3
기타전공	16.7	16.0	10.0	22.6	20.9	25.8

1. 서부「베르린」제외

2. 기계제작, 정련기술, 물리학기술, 선박조립 등
3. 고층건물건축, 측량, 석재기술, 지하공사 등
4. 일반전기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5. 화학기술, 사진기술, 운전기술, 화학, 핵화학 등

자료출처: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69. Statistische Jahrbücher der BRD 1962, 1966 und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Kultur, Reihe 10, III, Juli 1970.

동·서독(1960~1969)의 전공분야별 대학교학생숫자 비교일람(외국인 제외)

구분	서독		동독		서독		동독							
	1960/61	1964/68	1967/68	1960	1964	1968	1969	1964/65	1967/68	1960	1964	1968	1969	
	2. 전체를 100으로 본 백분율(분야별)													
전공분야	1. 절대 숫자													
수학, 자연과학 ^{1,10}	21,249	28,969	34,670	7,915	8,108	9,169	10,072	10.3	10.4	11.4	7.8	7.3	8.3	8.2
기술과학 ²	27,412	34,086	29,746	23,716	26,910	28,825	36,442	13.4	12.3	9.8	23.3	24.3	26.1	29.7
의학, 농학 ³	28,493	40,895	42,961	22,375	23,802	18,318	16,548	13.9	14.7	14.1	22.0	21.5	16.6	13.5
경영학 ⁴	19,524	32,405	31,769	14,970	11,175	14,068	17,680	9.5	11.7	10.4	14.7	10.1	12.7	14.4
철학, 역사학, 국가학, 법률학 ^{5,11}	20,547	27,625	35,254	4,745	3,253	4,593	5,341	10.0	9.9	11.6	4.7	2.9	4.2	4.3
문화예술, 체육학(합) ⁶	8,947	10,815	11,023	1,709	2,084	2,382	2,450	4.4	3.9	3.6	1.7	1.9	2.2	2.0
언어학, 문학 ^{7,12}	13,295	12,534	13,154	1,409	1,180	1,034	1,160	6.4	4.5	4.3	1.4	1.1	0.9	0.9
예술(단) ⁸	6,066	6,981	7,185	1,776	1,703	1,754	1,910	3.0	2.5	2.4	1.7	1.5	1.6	1.6
교육학적기본전공연구분야 ^{9,10,11,12}	59,824	83,284	98,722	23,158	32,449	30,438	31,187	29.1	30.0	32.4	22.8	29.3	27.5	25.4
기타	222	82	67	-	-	-	-	0.0	0.0	0.0	-	-	-	-
총계	205,579	277,677	304,551	101,773	110,664	110,581	122,7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Statistische Jahrbücher der BRD 1962, 1966, 1969, 1970,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1. 심리학, 수학, 응용수학,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기상학, 기상학, 물리수학, 화학, 물리화학, 생물학, 기타자연과학
2. 야금, 광업 및 정련, 항공기조립, 선박조립, 기계조립, 측량, 건축기술, 조각
3. 일반의학, 치과의학, 동물의학, 약학, 농학, 원예학, 양조학, 임학, 목공학, 생활화학, 가정 및 영양학
4. 민족경제학, 민족기술경제학, 공상경영학, 기술경제학
5. 철학, 사회학 및 사회과학, 정치학, 역사학, 선사학, 민족학(인종학), 예술사학, 법률학
6. 고고학, 음악학과, 연극학, 이집트고고학, 기타계반철학분야, 선교신학, 구교신학, 운동, 체조학, 「필론」체육대학계반연구과정
7. 독일어학, 라틴어학, 그리스어학, 라틴어 및 그리스어학, 영어, 불어, 영어 및 불어, 영어 및 불어, 기타로마어, 스페인어학, 통역학(通訳学), 기타유럽어학, 유사어학, 동양어학, 신문학
8. 형성예술 및 음악대학생
9. 일반교육학, 상업제통사범학교,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생,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그리스어 및 이런계통 70%에 달하는 동역사학전공대학생수 등
10. 수학, 물리학, 물리수학, 화학, 생물학, 지학분야 대학생숫자의 30%정도가 그 분야 교육학적기본연구에 참여한다. (교사가 되기위하여)
11. 역사학과는 연구한 대학생의 30%만이 학문연구과정으로 끝나고 나머지 70%정도는 그 학과분야의 선생을 지망한다. (10과 반대)
12. 독일어학과, 라틴어학과, 라틴어 및 희랍어학과, 영어학과, 불어학과, 영어 및 불어학과 등은 대학생숫자의 30%정도가 학문연구과정으로 끝나고 나머지 70%정도는 자기기가 전공한 그 학과분야의 선생이되는 경향이있다. (11의 경우와 같다)
13. 서부「베를린」계의

일람표 A.124

동·서독(1962~1969)의 대학졸업생숫자 비교

구분	서독			동독			서독			동독			
	1962	1964	1967	1962	1964	1967	1962	1964	1967	1962	1964	1967	
	절대숫자						전체를 100으로본 전공분야별 백분율						
수학, 자연과학 1	1,849	2,138	2,625	1,086	1,282	1,370	1,261	5.2	5.4	5.5	6.2	6.6	7.4
기술과학	3,735	2,987	4,430	2,596	2,746	3,760	3,885	10.5	10.1	9.3	14.9	14.6	20.4
의학, 농학 2	4,669	5,382	7,130	3,452	3,718	3,820	3,668	13.1	13.6	15.0	19.8	19.0	20.8
경영학 3	2,812	3,160	4,870	2,754	2,688	1,459	2,470	7.9	8.0	10.2	15.8	13.8	7.9
철학, 역사학, 국가학, 법률학	3,745	3,302	4,260	888	1,069	336	582	10.5	8.3	8.9	5.1	5.5	1.8
문학, 언어학, 문화, 예술편, 예술, 체육학(합)	902	2,075	2,545	522	549	504	616	5.4	5.2	5.4	3.0	2.7	2.7
예술(단)	1,500	1,450	1,860	332	425	337	294	4.2	3.7	3.9	1.9	2.2	1.8
사범대학 5	15,337	18,195	19,950	5,829	6,930	6,812	6,492	43.4	45.7	41.8	33.4	35.6	37.0
총계	35,549	39,689	47,670	17,459	19,407	18,398	19,2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und Institut für sozialökonomische

Strukturforschung.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1970.

1. 서독의 경우 심리학을 연구하는 대학생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음.
2. 서독의 경우 생활응용화학을 연구하는 대학생숫자가 제외되었음.
3. 서독의 경우 상업사범학교학생 숫자가 포함되었음.
4. 서독의 경우 교육학전공학생과 심리학전공학생수가 포함되었음.
5. 동독의 경우 각분야 교육전공과정학생(사범학교과정학생)이 다 망라되었음.



동·서독(1960~1969)의 대학교재학생수 비교일람

구 분 년 도/학 기	서		독		동			특 여자대학생 숫자의전체 에대한 %
	대 학 생 수 (외국인 제외)	이 중 에 서 여 자 대 학 생	여 자 대 학 생 숫 자 의 전 체 에 대 한 %	대 학 생 수 (외국인 제외)	이 중 에 서 여 자 대 학 생	대 학 생 수 (외국인 제외)	이 중 에 서 여 자 대 학 생	
1960 WS	225.9 ¹	63.7 ¹	28.2 ¹	101.8	25.1	24.9		
1964 WS	277.7	77.2	27.8	110.7	28.6	25.8		
1968 SS	313.1 ²	98.5 ²	31.2 ²	110.6	35.1	31.7		
1969 SS	337.2 ³	104.5 ³	31.0 ³	122.8	41.7	33.9		

1. 1961~1965의 여를학기중의 형성예술편제, 음악, 체육, 대학생 숫자
2. 1967~1968의 겨울학기중의 사범학교학생 숫자
(함부르크 및 바이에른 지방의 대학생 숫자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이 두 지방에서는 사범학교학생 숫자를 인문대학학생 숫자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해 버리기 때문이다.)
3. 1968~1969의 겨울학기중의 사범학교학생 숫자
(같은 이유에서 함부르크 및 바이에른 지방 제외)

자료출처: Statistische Jahrbücher der BRD und DDR.

WS = Wintersemester, SS = Sommersemester

